

서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정부와 이스라엘국(이하 “이스라엘”이라 한다) 정부(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강한 동반자 관계를 인식하고,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에서 확장되고 안정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창출하여 양국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을 확신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정립할 것과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사업환경을 증진시키며,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 그리고 보다 폭넓은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것과 양국 경제의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분야들 간에 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이 협정이 환경 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국이 모두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및 양자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1절 최초규정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1.2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이 협정의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와 같이,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그 이동을 촉진하여, 자유무역지대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을 증진하고 투자 기회를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것이다.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세계무역기구협정의 후속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 서로에 대한 그들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과 제1항에 언급된 협정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1.4조

다른 협정의 언급

이 협정이 다른 협정 또는 법적 문서의 전체 또는 부분을 언급하거나, 언급하여 이 협정에 통합시키는 경우, 그 언급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관련 각주, 주해 및 주석을 포함한다.

제1.5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정부 및 당국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제1.6조

영역적 적용

1. 한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된다.
2.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협정은 이스라엘의 영역에 적용된다.

제2절

일반 정의

제1.7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제9.31조(정의)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관세는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한다.¹ 다만,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규정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한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세”는 한국의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되는 조정관세를 포함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모든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존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GATS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5항a호에 정의된 것들을 포함하여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말하고,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그들 각자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하고,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류의 주, 그리고 소호의 주 및

그 후속 개정을 포함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19.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는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 조치, 관행의 형태이거나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대하여,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², 그리고

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 국민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

²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은 이 협정에 따른 혜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³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효 중인 모든 면제를 포함한다.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내국민 대우

제2.2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2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3조 상품분류

양 당사국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합치하는 각 당사국

각자의 관세품목분류표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3.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나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 후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제19.1조제3항 바호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나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인하를 한 후에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3절 특별 제도

제2.5조 관세 면제

1.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 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관세 면제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관세 면제의 적용을 기존 수혜자에 대하여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할 수 없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존의 관세 면제의 지속에 대하여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제2.6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된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 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및 수입에 부과되는 그 밖의 조세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에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과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

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해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2.7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2.8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않을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중 어떠한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

제4절

비관세조치

제2.9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식료품 또는 그 밖의 필수 생산품의 심각한 부족을 이유로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생산품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의 채택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을 필요한 한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4.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통합된 1994년도 GATT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5.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의 비당사국의 상품 수입에 대하

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격책정, 마케팅 또는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에서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관계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과 규정을 유지하는 당사국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항은 당사국이 제6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당국과 그 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2.10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¹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요구되는 한도에서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을 정부의

¹ 제1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이 효력을 발생하기 최소 30일 전에 그렇게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전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국에 이를 즉시 통보한다.

제2.11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합치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할 수 없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제2.12조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1.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2.13조

국영무역기업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른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국영무역기업의 개별 사례,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방식 및 그 운영이 양자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비밀정보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조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제2.14조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

1. 제16장(투명성)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러한 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제2.17조에 규정된 상품무역위원회는 당사국이 특정한 비관세 조치를 확인할 때 그 조치를 검토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며, 그리고 모든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양 당사국에 12개월 내에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상품무역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권고사항은 검토 또는 조치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제출된다.

제2.15조

관세율할당 운영

부록 2-나-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을 수립한 당사국은 그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13조와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운영한다.

제5절 그 밖의 조치

제2.16조 국제수지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하여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1994 년도 GATT 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를 포함하는 1994 년도 GATT 에 따라 그 당사국은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의 채택에 대하여,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즉시 협의한다.

제6절 제도 규정

제2.17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 및 제7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과 제7장(무역구제)의 이행과 운영을 점검하는 것

나.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증진하는 것

다.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그리고

라.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호부터 다호까지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장을 제공하는 것

제7절

정의

제2.18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및/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 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정 수준이나 비율이 수출될 것

나.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 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라.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 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외환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그러나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바.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될 것

사.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탈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 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며,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부속서 2-가

제 2.2 조, 제 2.9 조 및 제 2.12 조에 대한 예외

한국의 조치

제 2.2 조(내국민 대우) 및 제 2.9 조(수입 및 수출 제한)는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조치

1. 제 2.2 조와 제 2.9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1994 년 비코셔 육류 수입에 관한 이스라엘법」 및 그 개정에 따른 비코셔 육류의 수입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2. 제 2.9 조(수입 및 수출 제한) 및 제 2.12 조(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는 「1991 년 무역 부과금 및 세이프가드 조치법」과 「1979 년 수출입령(신판)」 및 그 개정에 따라 금속 폐기물 및 부스러기의 수출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유지하는 통제 및 부과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 항가호에 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스라엘은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수입을 담당하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과의 접촉 및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제 1 항가호에서 언급된 조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스라엘은 그 조치를 한국에 적용하지 않는다.

부속서 2-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 유형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어,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6”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

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차.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6”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카.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9”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9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MFN-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15퍼센트가 인하되어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기준관세율의 85퍼센트가 유지된다.

파.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MFN-2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5퍼센트가 인하되어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기준관세율의 75퍼센트가 유지된다.

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MFN-50%”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50퍼센트가 인하되어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기준관세율의 50퍼센트가 유지된다.

거.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X”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너. 단계별 양허유형 “Y”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2. 품목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품목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한국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이스라엘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이스라엘 셰켈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22.5조(발효 및 종료)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 주해
한국의 관세양허표

1. 한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6년 1월 1일 발효 중인 한국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일반 주해
이스라엘의 관세양허표

1. 상품 주문에 대한 관세와 면세 및 구매세(이하 “이스라엘 관세양허표”라 한다)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관세양허표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이스라엘 관세양허표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이스라엘 관세양허표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이스라엘 관세양허표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6년 1월 1일 발효 중인 이스라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부록 2-나-1
이스라엘의 관세율할당 운영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이스라엘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이스라엘 관세양허표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한국의 원산지 상품에는 이스라엘 관세양허표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관세양허표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한국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이스라엘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세계무역기구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쿼터 내 물량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관세양허표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않는다.
2. 수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이 부록에 기술된 생산품에 관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이 장에 따른 관세율할당은 다음과 같다.

냉동 닭고기

- 가. 02071200, 02071400으로 분류된 한국의 원산지 상품 1,000메트릭톤의 연간 총량은 부속서 2-나 제1항하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MFN-50%”에 따라 최혜국 실행 관세율의 50퍼센트로 반입이 허용된다.
- 나. 가호에 규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반입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제 1 항거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참치 통조림

가. 16041490으로 분류된 한국의 원산지 상품 200메트릭톤의 연간 총량은
무관세 반입이 허용된다.

나. 가호에 규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반입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제 1 항거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주해
한국 양허표

1. 정의

가. **종가세**란 상품 가격의 백분율로 산정되는 세율을 말한다.

나. **종량세**란 개별 측정 단위별 세액을 말한다.

다. **선택관세**란 종가세나 종량세 중 어느 하나가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유형을 말한다.

2. 한국 기준세율에 기초한 다양한 유형의 관세 적용

HSK 2016	기준세율
2501001010	1%
8523292231	20원/분(표준속도)
0706101000	30% 또는 134원/kg, 양자 중 고액(율)
3706903020	468원/m 또는 6.5%

가. 종가세

✓ 2501001010: 1%

나. 종량세

✓ 8523292231: 20원/분(표준속도)

다. 선택관세

✓ 0706101000: 30% 또는 134원/kg, 양자 중 고액(율)

✓ 3706903020: 468원/m 또는 6.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양허표에 “-”로 표시된 48개 HS 코드 각각은 특정한 품목명을 식별하기 위하여 그 위 행의 HS 코드로부터 파생된다. 이러한 행들은 그 위 행의 HS 코드와 기준세율이 상이하다.

주해
이스라엘 양허표

1. 정의

가. **세율(%)**이란 상품 가격의 백분율로 산정되는 세율을 말한다(종가세).

나. **단위별 세액(NIS)**이란 개별 측정 단위별 세액을 말한다(종량세).

다. **NIS**란 이스라엘 신 셰켈을 말한다.

라. **선택관세**란 종가세나 종량세 중 어느 하나가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유형을 말한다.

마. **복합관세**란 종가세와 종량세가 모두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유형을 말한다.

2. 이스라엘 기준세율에 기초한 다양한 유형의 관세 적용

HSI 2016	기준세율					
	세율(%)	단위별 세액(NIS)	No More than(%)	No Less than(NIS)	측정 단위	쿼터
02031100	30	0	0	0	Kg	없음
03019190	0	2.5	0	0	Kg	없음
07112000	12	0	0	1.02	Kg	없음
01041090	0	6.22	170	0	Kg	없음
02109390	16	417	85	0	Tons	없음
15091010	12	4.68	0	5.73	Kg	없음

가. 종가세

✓ 02031100: 30%

나. 중량세

✓ 03019190: 2.5 NIS/Kg

다. 선택관세

✓ 07112000: 12% 또는 1.02 NIS/Kg, 양자 중 고액(율)

✓ 01041090: 6.22 NIS/Kg 또는 170%, 양자 중 저액(율)

라. 복합관세

✓ 02109390: [16%+417 NIS/Ton] 또는 [85%], 양자 중 저액(율)

✓ 15091010: [12%+4.68 NIS/Kg] 또는 [5.73 NIS/Kg], 양자 중 고액(율)

부속서 2-나
한국 양허표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101211000	농가 사육용	0	0
0101219000	기타	8	5
0101291000	경주말	8	5
0101299000	기타	8	5
0101301000	번식용	8	0
0101309000	기타	8	5
0101900000	기타	8	0
0102211000	젖소	89.1	0
0102212000	육우(肉牛)	89.1	0
0102219000	기타	89.1	0
0102291000	젖소	40	X
0102292000	육우(肉牛)	40	X
0102299000	기타	0	0
0102310000	번식용	89.1	0
0102391000	젖소	40	X
0102392000	육우(肉牛)	40	X
0102399000	기타	0	0
0102901000	번식용	89.1	0
0102909010	젖소	40	X
0102909020	육우(肉牛)	40	X
0102909090	기타	0	0
0103100000	번식용	18	0
0103910000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18	X
0103920000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8	X
0104101000	번식용	0	0
0104109000	기타	8	5
0104201000	젖산양	8	5
0104209000	기타	8	5
0105111000	번식용	9	0
0105119000	기타	9	5
0105120000	칠면조	9	5
0105131000	번식용	0	0
0105139000	기타	18	10
0105140000	거위	9	5
0105150000	기니아새	9	0
0105941000	번식용	9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105949000	기타	9	5
0105991010	번식용	0	0
0105991090	기타	18	10
0105992000	철면조	9	5
0105999000	기타	9	5
0106110000	영장류	8	5
0106121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8	5
0106122000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8	5
010613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8	3
0106141000	번식용	0	0
0106149000	기타	8	5
0106191000	개	8	5
0106193000	사슴	8	5
0106194000	곰	8	5
0106195010	번식용	0	0
0106195090	기타	8	5
0106196010	번식용	0	0
0106196090	기타	8	5
0106199000	기타	8	3
0106201000	뱀	8	5
0106202000	자라	8	5
0106203000	거북	8	5
0106209000	기타	8	5
0106310000	맹금류	8	5
0106320000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8	5
0106330000	타조와 에뮤(emu)[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드아(Dromaius novaehollandiae)]	8	5
0106390000	기타	8	0
0106411000	꿀벌	8	5
0106419000	기타	8	5
0106490000	기타	8	0
0106901000	양서류	8	5
0106903010	갯지렁이	8	5
0106903020	실지렁이	8	5
0106903090	기타	8	5
0106909000	기타	8	5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X
0201201000	갈비	40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201209000	기타	40	X
0201300000	뼈 없는 것	40	X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X
0202201000	갈비	40	X
0202209000	기타	40	X
0202300000	뼈 없는 것	40	X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X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5	X
0203191000	삼겹살	22.5	X
0203199000	기타	22.5	X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5	X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X
0203291000	삼겹살	25	X
0203299000	기타	25	X
02041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10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10
02042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10
0204230000	뼈 없는 것	22.5	10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5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10
02044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5
0204430000	뼈 없는 것	22.5	10
02045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22.5	10
0204502000	냉동한 것	22.5	10
02050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27	10
0205002000	냉동한 것	27	10
020610000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0206210000	혀	18	X
0206220000	간	18	X
0206291000	꼬리	18	X
0206292000	족	18	X
0206299000	기타	18	X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0206410000	간	18	X
0206491000	족	18	X
0206499000	기타	18	X
02068000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0
0207111000	중량이 550 그램 이하인 것	18	X
0207119000	기타	18	X
0207121000	중량이 550 그램 이하인 것	20	X
0207129000	기타	20	X
0207131010	다리	18	X
0207131020	가슴	18	X
0207131030	날개	18	X
0207131090	기타	18	X
0207132010	간	22.5	X
0207132090	기타	27	X
0207141010	다리	20	X
0207141020	가슴	20	X
0207141030	날개	20	X
0207141090	기타	20	X
0207142010	간	22.5	X
0207142090	기타	27	X
020724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0
020725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7
0207261000	절단육	18	10
0207262010	간	22.5	10
0207262090	기타	27	10
0207271000	절단육	18	7
0207272010	간	22.5	7
0207272090	기타	27	7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X
0207441000	절단육	18	X
0207442010	간	22.5	X
0207442090	기타	27	X
0207451000	절단육	18	X
0207452010	간	22.5	X
0207452090	기타	27	X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0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10
0207541000	절단육	18	10
0207542010	간	22.5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207542090	기타	27	10
0207551000	절단육	18	10
0207552010	간	22.5	10
0207552090	기타	27	10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0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0207603100	절단육	18	10
0207603210	간	22.5	10
0207603290	기타	27	10
0207604100	절단육	18	10
0207604210	간	22.5	10
0207604290	기타	27	10
0208100000	토끼의 것	22.5	10
0208300000	영장류의 것	18	10
0208401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5
0208402000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5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8	10
020860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18	10
0208901000	사슴의 것	27	10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30	5
0208909090	기타	18	10
0209100000	돼지의 것	3	0
0209900000	기타	3	0
021011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X
021012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0	X
0210190000	기타	25	X
0210201000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27	X
0210209000	기타	27	X
0210910000	영장류의 것	22.5	10
0210921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5
0210922000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5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2.5	10
0210991010	소의 것	22.5	X
0210991020	돼지의 것	22.5	X
0210991030	가금(家禽)류의 것	22.5	10
0210991090	기타	22.5	X
0210999010	면양과 산양의 것	22.5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210999020	가금(家禽)류의 것	22.5	10
0210999090	기타	22.5	10
0301111000	비단잉어	10	5
0301119000	기타	10	5
0301190000	기타	10	5
0301911000	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옹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옹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옹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10	5
0301912000	옹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와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10	5
0301921000	실뱀장어(한 마리당 0.3 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301922000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 그램을 초과하고 50 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5	X
0301929010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	10	X
0301929090	기타	22% 또는 1,5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3019300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i>Cyprinus carpio</i>)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i>Carassius carassius</i>)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 종 · 시리누스(<i>Cirrhinus</i>) 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10	5
030194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i>Thunnus thynnus</i>)]	10	5
030194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i>Thunnus orientalis</i>)]	10	5
030195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i>Thunnus maccoyii</i>)]	10	5
0301992000	방어	10	5
0301994010	치어(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301994090	기타	28% 또는 2,052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301995000	붕장어	10	10
0301996000	갯장어	10	5
0301997000	먹장어	10	5
0301998000	넙치류	10	X
0301999010	능성어	10	5
0301999020	복어	10	5
0301999030	틸라피아	10	5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10
0301999051	치어(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301999059	기타	28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301999060	송어	10	5
0301999070	미꾸라지	10	5
0301999080	메기	10	5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Hexagrammos)종·아그라무스(Agrammus)종]	10	5
0301999092	붕어	10	5
0301999093	연어	10	5
0301999094	초어	10	5
0301999095	민어	10	X
0301999096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는 제외한다]	10	5
0301999099	기타	10	5
030211100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20	5
0302112000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웅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0	5
03021300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20	5
030214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0	5
0302190000	기타	20	5
0302210000	넙치[레인하르트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20	10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20	10
03022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20	5
0302240000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20	10
0302290000	기타	20	10
03023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20	5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20	10
0302330000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	20	10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20	10
03023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20	5
03023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20	5
03023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20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302390000	기타	20	5
03024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20	5
0302420000	멸치[엔그라우리스(<i>Engraulis</i>) 종]	20	10
03024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i>Sardinops</i>) 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 종], 브리스링(<i>brisling</i>)이나 스프렛(<i>sprats</i>)[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20	5
03024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i>Scomber scombrus</i>)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콤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20	10
03024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i>Trachurus</i>) 종]	20	5
0302460000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i>Rachycentron canadum</i>)]	20	5
03024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20	5
0302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20	5
03025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i>Melanogrammus aeglefinus</i>)]	20	5
03025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i>Pollachius virens</i>)]	20	5
03025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i>Merluccius</i>) 종 · 유르피키스(<i>Urophycis</i>) 종]	20	5
03025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i>Theragra chalcogramma</i>)]	20	5
0302560000	블루 화이팅스(<i>blue whittings</i>)[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i>Micromesistius poutassou</i>)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i>Micromesistius australis</i>)]	20	5
0302590000	기타	20	5
03027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 종]	20	5
0302720000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 종 · 실루러스(<i>Silurus</i>) 종 · 클라리아스(<i>Clarias</i>) 종 · 익타루루스(<i>Ictalurus</i>) 종]	20	5
0302730000	잉어[사이프린스 카르피오(<i>Cyprinus carpio</i>)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i>Carassius carassius</i>)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 종 · 시리누스(<i>Cirrhinus</i>) 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20	5
0302740000	뱀장어[앙귤라(<i>Anguilla</i>) 종]	20	10
0302790000	기타	20	5
0302810000	곰상어와 그 밖의 상어	20	5
0302820000	가오리와 흉어[라지대(<i>Rajidae</i>) 과]	20	5
0302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 종]	20	5
0302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i>Dicentrarchus</i>) 종]	20	5
0302850000	돔[스파리대(<i>Sparidae</i>) 과]	20	10
0302891000	방어	20	5
0302892000	갈치	20	X
0302893000	붕장어	20	10
0302894000	갯장어	20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302895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5
0302896000	돔[스파리대(Sparidae)과는 제외한다]	20	10
0302899010	삼치	20	10
0302899020	복어	20	X
0302899030	병어	20	5
0302899040	아귀	20	5
0302899090	기타	20	5
0302901000	간	20	5
0302902000	어란(魚卵)	20	5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10	5
0303120000	그 밖의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10	5
030313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5
030314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5
0303190000	기타	10	5
030323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5
030324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루스(Silurus)종 · 클라리아 스(Clarias)종 · 익타루루스(Ictalurus)종]	10	5
0303250000	잉어[사이프린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 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10	5
0303260000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10	10
0303290000	기타	10	5
0303310000	넙치[레인하르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10	10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10	10
03033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10	5
0303340000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10	10
0303390000	기타	10	X
03034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10	5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10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303430000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10	10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10	10
03034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10	5
03034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0	5
03034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	5
0303490000	기타	10	5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0	5
03035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 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 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10	5
03035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10	X
03035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 종]	10	X
03035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10	5
03035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X
03036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5
030364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10	5
030365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10	5
030366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 종 · 유르피키스(Urophycis) 종]	10	5
030367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2	X
0303680000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10	5
0303691000	새꼬리민태	10	5
0303699000	기타	22	X
0303810000	곰상어와 그 밖의 상어	10	5
0303821000	가오리	10	5
0303822000	홍어	10	X
0303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 종]	10	5
0303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 종]	10	5
0303891000	은대구	10	5
0303892000	갈치	10	X
0303893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쿠스(Branchiostegus japonicus)]	10	X
0303893090	기타	10	X
0303894000	붕장어	10	10
0303895000	조기	10	X
0303896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8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303897000	삼치	10	10
0303898000	복어	10	5
0303899010	보리멸	10	5
0303899020	홍살치	10	5
0303899030	달고기	10	5
0303899040	임연수어	10	5
030389905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X
0303899060	아귀	10	X
0303899070	먹장어(대서양 또는 태평양)	10	5
0303899080	밀크피쉬	10	5
0303899091	민어	10	X
0303899092	까나리	10	5
030389909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	10	5
0303899099	기타	10	5
0303901000	간	10	5
0303902010	명란	10	5
0303902090	기타	10	5
03043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20	5
03043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20	5
03043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20	5
0304390000	기타	20	5
03044100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0	5
030442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웅코링쿠스 크리스ogas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0	5
0304431000	가자미	20	10
0304439000	기타	20	10
03044400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o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20	5
030445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0	5
030446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20	5
0304491000	붕장어	20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304492000	참다랑어	20	5
0304499000	기타	20	5
0304511000	연육	20	5
0304519000	기타	20	5
0304521000	연육	20	5
0304529000	기타	20	5
0304531000	연육	20	5
0304539000	기타	20	5
0304541000	연육	20	5
0304549000	기타	20	5
0304551000	연육	20	5
0304559000	기타	20	5
0304591010	연육	20	10
0304591090	기타	20	10
0304592010	연육	20	10
0304592090	기타	20	10
0304593010	연육	20	5
0304593090	기타	20	5
0304599010	연육	20	5
0304599090	기타	20	5
03046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5
03046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10	5
03046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10	5
0304690000	기타	10	5
03047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5
0304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10	5
03047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10	5
03047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10	5
03047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0	5
0304790000	기타	10	5
03048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304820000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옹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옹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옹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 옹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 ·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10	5
0304831000	가자미	10	10
0304839000	기타	10	10
030484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10	5
030485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종]	10	5
030486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10	5
0304871000	참다랑어	10	5
0304879000	기타	10	10
0304891000	붕장어의 것	10	10
0304892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종은 제외한다]의 것	10	5
0304893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종은 제외한다]의 것	10	5
0304894000	쥐치의 것	10	5
0304899000	기타	10	5
0304911000	냉동 연육	10	5
0304919000	기타	10	5
0304921000	냉동 연육	10	5
0304929000	기타	10	5
0304931000	냉동 연육	10	5
0304939000	기타	10	5
0304941000	냉동 연육	10	5
0304949000	기타	10	5
0304951000	냉동 연육	10	5
0304959000	기타	10	5
0304991000	냉동 연육	10	5
0304999000	기타	10	5
0305100000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5
0305201000	간	20	5
0305202000	건조 어란(魚卵)	20	5
0305203000	훈제 어란(魚卵)	20	5
0305204010	명태의 것	20	5
0305204020	조기의 것	20	5
0305204030	청어의 것	20	5
0305204090	기타	20	5
0305311000	건조한 것	20	5
030531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305321000	건조한 것	20	5
030532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5391000	건조한 것	20	5
03053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54100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i>Oncorhynchus nerka</i>)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i>Oncorhynchus gorbuscha</i>) · 웅코링쿠스 케타(<i>Oncorhynchus keta</i>) · 웅코링쿠스 차비차(<i>Oncorhynchus tshawytscha</i>) · 웅코링쿠스 키수츠(<i>Oncorhynchus kisutch</i>) · 웅코링쿠스 마소(<i>Oncorhynchus masou</i>)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i>Oncorhynchus rhodurus</i>)],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i>Salmo salar</i>)],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i>Hucho hucho</i>)]	20	5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20	5
0305430000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웅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웅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웅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 웅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20	5
03054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종],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종 · 실루루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종 · 익타루루스(<i>Ictalurus</i>)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i>Cyprinus carpio</i>)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i>Carassius carassius</i>)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종 · 시리누스(<i>Cirrhinus</i>)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뱀장어[앙귤라(<i>Anguilla</i>)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종]	20	5
0305491000	멸치	20	10
0305492000	명태	20	5
0305499000	기타	20	5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20	5
0305592000	멸치	20	X
0305593000	명태(북어)	20	5
0305594000	조기(굴비)	20	10
0305595000	북어	20	5
0305596000	갯장어	20	5
0305597000	까나리	20	5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20	5
0305599000	기타	20	5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20	5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20	5
0305631000	멸치젓	20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305639000	기타	20	10
03056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20	5
0305691000	연어	20	5
0305692000	송어	20	5
0305693000	갈치	20	10
0305694000	정어리	20	5
0305695000	고등어	20	10
0305696000	조기	20	10
0305697000	전갱이	20	5
0305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5
0305699000	기타	20	5
0305711000	훈제한 것	20	5
0305712000	건조한 것	20	5
030571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5721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의 것	20	5
0305729000	기타	20	5
0305790000	기타	20	5
0306111000	훈제한 것	20	5
0306119000	기타	20	5
03061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03061210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5
0306129000	기타	20	5
0306141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0306141012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5
0306141090	기타	20	5
0306142010	훈제한 것	20	5
0306142090	기타	20	5
0306143010	훈제한 것	20	10
0306143090	기타	14	X
0306149010	훈제한 것	20	5
0306149090	기타	14	5
0306151000	훈제한 것	20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306159000	기타	20	5
0306161010	훈제한 것	20	10
0306161090	기타	20	10
0306169010	훈제한 것	20	10
0306169090	기타	20	10
0306171010	훈제한 것	20	10
0306171090	기타	20	10
0306179010	훈제한 것	20	10
0306179090	기타	20	10
0306191000	훈제한 것	20	5
0306199000	기타	20	5
0306211000	훈제한 것	20	5
0306219000	기타	20	5
03062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03062210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5
0306229000	기타	20	5
0306241010	꽃게	20	10
0306241020	대게	20	X
0306241090	기타	20	5
0306242000	건조한 것	20	5
030624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6244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0306244012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5
0306244090	기타	20	5
030625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5
0306252000	건조한 것	20	5
030625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6254000	훈제한 것	20	5
030626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10
0306262000	건조한 것	20	10
030626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35% 또는 236 원/kg, 양자 중 고액(을)	X
0306264000	훈제한 것	20	10
030627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10
0306272000	건조한 것	20	10
030627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35% 또는 236 원/kg, 양자 중 고액(을)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306274000	훈제한 것	20	10
030629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5
0306292000	건조한 것	20	5
0306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6294000	훈제한 것	20	5
0307111010	종패용	0	0
0307111090	기타	5	5
0307119000	기타	20	10
0307191000	냉동한 것	20	10
0307192000	건조한 것	20	10
0307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10
0307194000	훈제한 것	20	10
0307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5
0307291000	냉동한 것	20	5
0307292000	건조한 것	20	5
0307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7294000	훈제한 것	20	5
03073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5
0307391000	냉동한 것	20	5
0307392000	건조한 것	20	5
0307393000	훈제한 것	20	5
0307399000	기타	20	5
0307411000	갑오징어	10	5
0307412000	오징어	10	10
0307491010	갑오징어	10	5
0307491020	오징어	22	X
03074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10	10
0307493000	건조한 것	10	10
0307494010	갑오징어	20	5
0307494020	오징어	20	10
0307511000	낙지	20	10
0307512000	주꾸미	20	5
0307519000	기타	20	10
0307591010	문어	20	10
0307591020	낙지	20	10
0307591030	주꾸미	20	5
0307591090	기타	20	10
0307592000	건조한 것	20	10
0307593000	훈제한 것	20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0307599000	기타	20	10
0307601000	훈제한 것	20	5
0307609000	기타	20	5
0307711010	치패(稚貝)	20	5
0307711090	기타	20	5
0307712010	종패용	0	0
0307712090	기타	20	5
0307713000	새조개	20	5
0307714000	바지락	20	5
0307719000	기타	20	5
0307791010	새조개	20	5
0307791020	개량조개	20	5
0307791030	바지락	20	5
0307791040	피조개	20	5
0307791090	기타	20	5
0307792010	개량조개	20	5
0307792020	바지락	20	5
0307792090	기타	20	5
0307793010	개량조개	20	5
0307793020	바지락	20	5
0307793090	기타	20	5
0307794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0307794019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5
0307794090	기타	20	5
03078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X
0307891000	냉동한 것	20	10
0307892000	건조한 것	20	10
03078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10
0307894000	훈제한 것	20	10
0307911000	소라	20	5
0307912010	종패용	0	0
0307912090	기타	20	5
0307913000	개아지살	20	5
0307914000	재첩	20	5
0307919000	기타	20	5
0307991100	개아지살	20	5
0307991200	소라	20	5
0307991900	기타	20	5
0307992100	개아지살	20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307992900	기타	20	5
0307993100	소라	20	5
0307993900	기타	20	5
03079941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03079941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5
0307994900	기타	20	5
03081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5
0308191000	냉동한 것	20	5
0308192000	건조한 것	20	5
0308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8194000	훈제한 것	20	5
0308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5
0308291000	냉동한 것	20	5
0308292000	건조한 것	20	5
0308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8294000	훈제한 것	20	5
030830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5
0308302000	냉동한 것	20	5
0308303000	건조한 것	20	7
03083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8305000	훈제한 것	20	5
0308901011	종묘(種苗)	0	0
0308901019	기타	20	5
0308901090	기타	20	5
0308902010	우렁챙이(멍게)	20	5
0308902090	기타	20	5
0308903010	우렁챙이(멍게)	20	5
0308903090	기타	20	5
03089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8905000	훈제한 것	20	5
04011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인 것	36	X
04012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36	X
0401401000	냉동크림	36	X
0401409000	기타	36	X
0401501000	냉동크림	36	X
0401509000	기타	36	X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176	X
0402101090	기타	176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402109000	기타	176	X
0402211000	전지분유	176	X
0402219000	기타	176	X
0402290000	기타	176	X
0402911000	무가당연유(無加糖煉乳)	89	X
0402919000	기타	89	X
0402991000	가당연유(加糖煉乳)	89	X
0402999000	기타	89	X
0403101000	액체 상태인 것	36	X
0403102000	냉동한 것	36	X
0403109000	기타	36	X
0403901000	버터밀크	89	X
0403902000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36	X
0403903000	케피어(kephir)	36	X
0403909000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36	X
0404101011	사료용	49.5	12
0404101019	기타	49.5	12
0404101091	사료용	49.5	X
0404101099	기타	49.5	X
0404102111	사료용	49.5	X
0404102119	기타	49.5	X
0404102121	사료용	49.5	12
0404102129	기타	49.5	12
0404102131	사료용	49.5	12
0404102139	기타	49.5	12
0404102191	사료용	49.5	X
0404102199	기타	49.5	X
0404102910	사료용	49.5	X
0404102990	기타	49.5	X
0404901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36	X
0404902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36	X
0405100000	버터	89	X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8	X
0405900000	기타	89	X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36	X
0406101020	크림 치즈	36	X
0406101090	기타	36	X
0406102000	커드(curd)	36	X
040620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36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36	X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36	X
040690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36	X
0406902000	하우다 치즈(Gouda cheese)	36	X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Camembert cheese)	36	X
0406904000	에멘탈 치즈(Emmental cheese)	36	X
0406909000	기타	36	X
04071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7	10
0407190000	기타	27	10
04072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7	10
0407290000	기타	27	10
0407900000	기타	27	10
0408110000	건조한 것	27	X
0408190000	기타	27	X
0408910000	건조한 것	27	10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41.6	X
0408999000	기타	27	X
0409000000	천연꿀	243% 또는 1,864 원/kg, 양자 중 고액(율)	19
0410001000	거북알	8	5
0410002000	칼새동지	8	5
0410003000	로열젤리	8	5
0410009000	기타	8	5
050100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3	0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3	0
0502902000	염소털	3	0
0502909000	기타	3	0
0504001010	소의 것	27	10
0504001021	소시지 케이싱용	27	10
0504001029	기타	27	10
0504001031	소시지 케이싱용	27	10
0504001039	기타	27	10
0504001090	기타	27	10
0504002000	방광	27	10
0504003000	위	27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505100000	숨털과 충전재용 깃털	3	5
0505901000	깃털 가루	5	5
0505909000	기타	5	5
050610000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3	0
0506901010	호랑이의 것	3	0
0506901020	소의 것	9	5
0506901090	기타	3	0
0506902000	뿔가루	25.6	15
0506909000	기타	3	0
0507101000	상아	8	5
0507102000	서각	8	5
0507109000	기타	8	5
0507901110	전지(全枝)	20	X
0507901190	기타	20	X
0507901200	녹각	20	X
0507902010	귀갑(龜甲)과 귀판(龜板)	8	5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8	5
0507902030	천산갑(穿山甲)	8	5
0507902040	발굽과 발톱	8	5
0507902090	기타	8	5
0508001000	산호	8	5
0508002010	진주패각	8	5
0508002020	청패각(전복)	8	5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8	5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8	5
0508002050	트로커스(Trochus) 패각	8	5
0508002060	아고야(Agoya) 패각	8	5
0508002070	민물패각[메가로나시아스네보사(Megalonaia sneriosa), 앰브레마프리카타(Amblymaplicata), 콰드루라 콰드루라(Quadrula quadrula)종]	8	5
0508002090	기타	8	5
0508009000	기타	8	5
0510001000	용연향(ambergris)	8	5
0510002000	해리향(castoreum)	8	5
0510003000	사향	8	5
0510004000	우황	8	5
0510005000	오령지	8	5
0510009010	체장	8	5
0510009020	담즙	8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510009030	합개(蛤蚧)	8	5
0510009090	기타	8	5
0511100000	소의 정액	0	0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brine shrimp) 알	8	5
0511911090	기타	8	5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waste)	5	5
0511919000	기타	8	5
0511991000	동물의 피	8	5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	0
0511992090	기타	0	0
0511993010	소의 것	18	0
0511993020	돼지의 것	18	0
0511993090	기타	0	0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18	10
0511995011	정돈한 것	3	0
0511995019	기타	3	0
0511995020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	3	0
0511996000	동물성의 해면	8	5
0511999010	잠종(蠶種)	18	10
0511999020	누에번데기	8	5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 3 류 물품의 사체는 제외한다)	8	5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	8	5
0511999090	기타	8	5
0601101000	튤립의 것	8	7
0601102000	백합의 것	4	7
0601103000	달리아의 것	8	12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8	7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5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8	12
0601107000	프리지어의 것	8	12
0601108000	수선화의 것	8	5
0601109000	기타	8	5
0601201000	튤립의 것	8	12
0601202000	백합의 것	8	10
0601203000	다알리아의 것	8	12
0601204000	히아신스의 것	8	12
06012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5
060120600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8	X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8	12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601208000	프리지어의 것	8	12
0601209010	수선화의 것	8	5
0601209090	기타	8	10
0602101000	과일나무의 것	8	5
0602109000	기타	8	10
0602201000	사과나무	18	0
0602202000	배나무	18	0
0602203000	복숭아나무	18	0
0602204000	포도나무	8	0
0602205000	감나무	8	0
0602206000	귤나무	18	0
0602207010	밤나무	8	10
0602207020	호도나무	8	10
0602207030	잣나무	8	10
0602209000	기타	8	5
060230000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10
060240000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10
0602901010	난초	8	5
0602901020	카네이션	8	12
0602901030	구즈마니아	8	5
0602901040	안개초	8	12
0602901050	국화	8	12
0602901060	선인장류	8	5
0602901090	기타	8	10
0602902011	분재용	8	10
0602902019	기타	8	10
0602902020	낙엽송	8	10
0602902030	삼나무	8	10
0602902040	편백	8	10
0602902050	리기테다	8	10
0602902061	분재용	8	10
0602902069	기타	8	10
0602902071	분재용	8	10
0602902079	기타	8	10
0602902081	분재용	8	10
0602902089	기타	8	10
0602902091	분재용	8	10
0602902099	기타	8	10
0602909010	목단	8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602909020	동백	8	10
0602909030	뽕나무	18	5
0602909040	버섯의 종균(種菌)	8	X
0602909090	기타	8	5
0603110000	장미	25	10
0603120000	카네이션	25	10
0603131000	심비디움(Cymbidiums)	25	10
0603132000	팔레놉시스(Phalaenopsis)	25	10
0603139000	기타	25	15
0603140000	국화	25	15
0603150000	백합[릴리움(Lilium)종]	25	15
0603191000	튤립	25	15
0603192000	글라디올러스	25	15
0603194000	안개초	25	15
0603199000	기타	25	15
0603900000	기타	25	10
0604201000	이끼와 지의(地衣)	8	10
0604202010	은행잎	8	10
0604202090	기타	8	10
0604209000	기타	8	5
0604901000	이끼와 지의(地衣)	8	10
0604909000	기타	8	5
0701100000	종자용	304	X
0701900000	기타	304	X
070200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7
0703101000	양파	135% 또는 18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03102000	쪽파	27	X
0703201000	껍질을 깎 것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03209000	기타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03901000	리크(leek)	27	X
0703909000	기타	27	X
070410000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27	X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27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704901000	양배추	27	X
0704902000	배추	27	X
0704909000	기타	27	X
0705110000	결구(結球) 상추	45	X
0705190000	기타	45	X
0705210000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8	X
0705290000	기타	8	X
0706101000	당근	30% 또는 134 원/kg, 양자 중 고액(을)	7
0706102000	순무	27	X
0706901000	무	30	X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27	X
0706903000	더덕	27	X
0706904000	도라지	27	X
0706909000	기타	27	X
070700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7	X
07081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7	10
0708200000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27	10
070890000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27	X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7	X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27	12
070940000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27	X
0709517000	양송이 버섯	30	10
0709519000	기타	30	10
0709591000	송이버섯	30	X
0709592000	표고버섯	40% 또는 1,625 원/kg, 양자 중 고액(을)	X
0709593000	영지버섯	30	10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	30	10
0709594090	기타	30	10
0709595000	팽이버섯	30	10
0709596000	송로(松露)	27	X
0709599000	기타	30	10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을)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709609000	기타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09700000	시금치류	27	10
0709910000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27	10
0709920000	올리브	27	10
0709930000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27	X
0709991000	고사리	30	X
0709992000	고비	27	X
0709999000	기타	27	10
0710100000	감자	27	10
0710210000	완두[피성 새티범(Pisum sativum)]	27	7
0710220000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27	7
0710290000	기타	27	7
0710300000	시금치류	27	10
0710400000	스위트콘	30	7
0710801000	양파	27	X
0710802000	마늘	27	X
0710803000	죽순	27	X
0710804000	당근	27	X
0710805000	고사리	30	X
0710806000	송이버섯	27	X
0710807000	고추류[캡시쿰(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7	X
0710808010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27	15
0710808020	고려엉겅퀴(곤드레)	27	15
0710809000	기타	27	X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X
0711200000	올리브	27	5
0711400000	오이류	30	X
07115100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30	10
0711591000	송로(松露)	27	X
0711599000	기타	30	5
0711901000	마늘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1903000	죽순	27	X
0711904000	당근	30	X
0711905010	고사리	30	X
0711905020	고비	27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711905091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1905099	기타	27	X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X
0712200000	양파	135% 또는 18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2311000	양송이 버섯	30	10
0712319000	기타	30% 또는 1,218 원/kg, 양자 중 고액(율)	10
07123200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30% 또는 1,218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30% 또는 1,218 원/kg, 양자 중 고액(율)	10
0712391010	송이버섯	30	X
0712391020	표고버섯	40% 또는 1,625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2391030	영지버섯	30% 또는 842 원/kg, 양자 중 고액(율)	10
0712391040	느타리버섯	30	10
0712391050	팽이버섯	30	10
0712391090	기타	30% 또는 1,218 원/kg, 양자 중 고액(율)	10
0712392000	송로(松露)	27	X
0712901000	마늘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2902010	고사리	30% 또는 1,807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2902020	무	30	X
0712902030	파	30% 또는 1,159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712902040	당근	30% 또는 864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2902050	호박	30	X
0712902060	양배추	30	X
0712902070	토란줄기	30	5
0712902080	고구마줄기	30	5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370	X
0712902092	스위트콘(기타)	370	X
0712902093	감자	27	10
0712902094	고비	30% 또는 1,446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2902095	더덕	30	X
0712902096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30	X
0712902097	고려엉겅퀴(곤드레)	30	X
0712902099	기타	30	0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10
0713101000	종자용	27	10
0713102000	사료용	0	0
0713109000	기타	27	10
071320000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27	X
0713311000	종자용	607.5	X
0713319000	기타	607.5	X
0713321000	종자용	420.8	10
0713329000	기타	420.8	X
0713331000	종자용	27	3
0713339000	기타	27	X
0713340000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 ·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27	X
0713350000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27	X
0713390000	기타	27	X
0713400000	렌즈콩	27	X
071350000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 · 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27	10
071360000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27	10
0713900000	기타	27	5
0714101000	신선한 것	887.4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714102010	칩	887.4	X
0714102020	펠릿(pellet)	887.4	X
0714102090	기타	887.4	X
0714103000	냉장한 것	887.4	X
0714104000	냉동한 것	45	X
0714201000	신선한 것	385% 또는 338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4202000	건조한 것	385	X
0714203000	냉장한 것	385	X
0714204000	냉동한 것	45	X
0714209000	기타	385	X
0714301000	냉동한 것	45	X
0714309000	기타	385	X
0714401000	냉동한 것	45	X
0714409000	기타	385	X
0714501000	냉동한 것	45	X
0714509000	기타	385	X
0714901010	냉동한 것	45	X
0714901090	기타	18	X
0714909010	냉동한 것	45	X
0714909090	기타	385	X
0801110000	말린 것	30	15
0801120000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30	15
0801190000	기타	30	15
0801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15
0801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X
0801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15
0801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15
08021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10
08021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7
0802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10
0802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10
0802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5	X
0802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X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19.4% 또는 1,47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8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219.4% 또는 1,47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8025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12
08025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12
08026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10
08026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12
080270000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30	X
0802800000	빈랑자(areca nut)	30	15
0802901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66.8% 또는 2,664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802901020	껍데기를 벗긴 것	566.8% 또는 2,664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802902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7.0% 또는 803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802902020	껍데기를 벗긴 것	27.0% 또는 803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802909000	기타	30	X
0803100000	플랜틴(plantain)	30	15
0803900000	기타	30	15
0804100000	대추야자	30	10
0804200000	무화과	30	10
0804300000	파인애플	30	15
0804400000	아보카도(avocado)	30	5
0804501000	구아바(guava)	30	15
0804502000	망고(mango)	30	7
0804503000	망고스틴(mangosteen)	30	15
0805100000	오렌지	50	X
0805201000	감귤	144	X
0805209000	기타	144	16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30	7
0805501000	레몬(시트리스 리몬 및 시트리스 리머눔)	30	7
0805502010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30	X
0805502020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144	X
0805900000	기타	144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806100000	신선한 것	45	X
0806200000	건조한 것	21	X
0807110000	수박	45	X
0807190000	기타	45	X
0807200000	포포(papaw)[파파야(papaya)]	30	15
0808100000	사과	45	X
0808300000	배	45	X
0808400000	마르멜로(quince)	45	12
0809100000	살구	45	12
0809210000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24	15
0809290000	기타	24	15
0809300000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45	X
0809401000	자두	45	12
0809402000	슬로(sloe)	45	12
0810100000	초본류 딸기	45	15
0810200000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loganberry)	45	12
0810300000	흑색 · 백색 ·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45	12
0810400000	크랜베리(cranberry) · 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일	45	15
0810500000	키위프루트(kiwifruit)	45	15
0810600000	두리안(durian)	45	15
0810701000	단감	45	X
0810709000	기타	50	MFN-15%
0810903000	대추	611.5% 또는 5,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810905000	매실	50	X
0810909000	기타	45	MFN-15%
0811100000	초본류 딸기	30	X
0811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 · 백색 · 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30	10
0811901000	밤	30	X
0811902000	대추	30	X
0811903000	잣	30	X
0811909000	기타	30	10
0812100000	체리	30	12
0812901000	초본류 딸기	30	X
0812909000	기타	30	15
0813100000	살구	45	12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813200000	프룬(prune)	18	10
0813300000	사과	45	X
0813401000	감	50	X
0813402000	대추	611.5% 또는 5,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813409000	기타	45	X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45	X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30	12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30	5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2	15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10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8	12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8	12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3	10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8	12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513.6	X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3.6	X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40	10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40	10
0903000000	마테(maté)	25	10
0904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3
0904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5
09042100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905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5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
0906110000	계피[신나모ם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8	5
0906191000	계피[신나모ם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을 제외한다]	8	5
0906192000	계피나무의 꽃	8	5
0906201000	계피	8	5
0906202000	계피나무의 꽃	8	5
0907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7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908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8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5
0908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8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
0908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8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
0909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9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
0909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9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
090961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8	5
090961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8	5
090961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8	5
090962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8	0
090962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8	5
090962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8	5
091011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91011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910119000	기타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91012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91012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910129000	기타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910200000	사프란(saffron)	8	5
0910300000	심황[강황(薑黃)]	8	5
0910911000	카레	8	5
0910919000	기타	8	5
0910991000	타임과 월계수의 잎	8	5
0910999000	기타	8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01110000	종자	3	3
1001190000	기타	3	0
1001911000	메슬린(meslin)	3	3
1001919000	기타	1.8	0
1001991010	메슬린(meslin)	3	0
1001991090	기타	0	0
1001992010	메슬린(meslin)	3	0
1001992090	기타	1.8	0
1001999010	메슬린(meslin)	3	0
1001999090	기타	1.8	0
1002100000	종자	108.7	12
1002900000	기타	3	0
1003101000	맥주보리	513	X
1003102000	겉보리	324% 또는 326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03103000	쌀보리	299.7% 또는 361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03109000	기타	299.7	X
1003901000	맥주보리	513	X
1003902000	겉보리	324% 또는 326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03903000	쌀보리	299.7% 또는 361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03909000	기타	299.7	X
1004100000	종자	554.8	12
1004900000	기타	3	0
1005100000	종자용	328	X
1005901000	사료용	328	12
1005902000	팝콘	630	X
1005909000	기타	328	12
1006100000	벼	513	Y
1006201000	메현미	513	Y
1006202000	찰현미	513	Y
1006301000	맬쌀	513	Y
1006302000	찰쌀	513	Y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513	Y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1007100000	종자	779.4	X
1007900000	기타	3	0
1008100000	메밀	256.1	X
1008211000	조	18	10
1008219000	기타	3	0
1008291000	조	3	0
1008299000	기타	3	0
1008300000	카나리시드(canary seed)	3	0
1008400000	포니오(Fonio)[디지털리아(Digitalia)종]	800.3	X
100850000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800.3	X
1008600000	라이밀(tritcale)	800.3	X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800.3	X
1101001000	밀가루	3	3
1101002000	메슬린(meslin) 가루	5	3
1102200000	옥수수가루	5	3
1102901000	보릿가루	260	X
1102902000	쌀가루	513	Y
1102903000	호밀가루	5	3
1102909000	기타	800.3	X
1103110000	밀로 만든 것	288.2	X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62.9	X
1103191000	보리로 만든 것	260	X
1103192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X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513	Y
1103199000	기타	800.3	X
1103201000	밀로 만든 것	288.2	X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513	Y
1103203000	보리로 만든 것	260	X
1103209000	기타	800.3	X
1104120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X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513	Y
1104192000	보리로 만든 것	233	X
1104199000	기타	800.3	X
1104220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X
11042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67	X
1104291000	율무로 만든 것	800.3	X
1104292000	보리로 만든 것	126	X
1104299000	기타	800.3	X
1104301000	쌀로 만든 것	5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104309000	기타	5	X
1105100000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304	X
1105200000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304	X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	5
1106201000	참깨의 것	8	10
1106209000	기타	8	10
1106300000	제 8 류 물품의 것	8	10
1107100000	볶지 않은 것	269	X
1107201000	훈연(燻煙)한 것	269	X
1107209000	기타	27	10
1108110000	밀로 만든 것	50.9	X
1108121000	식품용	226	X
1108129000	기타	226	X
1108130000	감자로 만든 것	455	X
1108141000	식품용	455	X
1108149000	기타	455	X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것	241.2	X
1108199000	기타	800.3	X
1108200000	이눌린(inulin)	800.3	X
110900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8	5
1201101000	콩나물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201109000	기타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201901000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201902000	사료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201903000	콩나물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201909000	기타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202301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30.5	X
1202302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30.5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2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30.5	X
12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30.5	X
1203000000	코프라(copra)	3	0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3	0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1205109000	기타	10	10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1205909000	기타	10	10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5	7
120710000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3	0
1207210000	종자	3	0
1207291000	사료용	2	0
1207299000	기타	3	0
1207300000	피마자	3	0
1207400000	참깨	630% 또는 6,66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207500000	겨자씨	3	0
120760000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3	0
1207700000	멜론 종자	3	0
1207910000	양귀비씨	3	0
1207991000	들깨	40% 또는 4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207992000	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	3	0
1207999000	기타	3	0
1208100000	대두로 만든 것	3	0
1208900000	기타	3	0
1209100000	사당무 종자	0	0
1209210000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	0
12092200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0	0
1209230000	페스큐(fescue) 종자	0	0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0	0
1209250000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 · 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0	0
1209291000	루핀(lupine) 종자	0	0
1209292000	수단그래스(Sudan grass) 종자	0	0
1209293000	오차드그래스(orchard grass) 종자	0	0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timothy grass) 종자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1209299000	기타	0	0
120930000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	0
1209911010	양파 종자	0	0
1209911090	기타	0	0
1209912000	무 종자	0	0
1209913000	고추 · 단고추와 착색단고추류의 종자	0	0
1209914000	양배추 종자	0	0
1209915000	토마토 종자	0	0
1209919000	기타	0	0
1209991010	참나무	0	0
1209991090	기타	0	0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0	0
1209993000	담배 종자	0	0
1209994000	잔디 종자	0	0
1209999000	기타	0	0
1210100000	홉(hop)[잘게 부순 것 · 가루 모양,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30	X
1210201000	홉(hop)	30	X
1210202000	루플린(lupulin)	30	X
1211201110	산양삼(山養蔘)	222.8	X
1211201190	기타	222.8	X
1211201211	본삼	222.8	X
1211201219	기타	222.8	X
1211201291	본삼	222.8	X
1211201299	기타	222.8	X
1211201311	본삼	754.3	X
1211201319	기타	754.3	X
1211201391	본삼	754.3	X
1211201399	기타	754.3	X
1211202110	가루	18	X
1211202120	타브렛이나 캡슐	18	X
1211202190	기타	18	X
1211202210	가루	754.3	X
1211202220	타브렛이나 캡슐	754.3	X
1211202290	기타	754.3	X
1211209100	인삼잎과 줄기	754.3	X
1211209200	종자	754.3	X
1211209900	기타	754.3	X
1211300000	코카잎	8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211400000	양귀비줄기	8	5
1211901000	부자(附子)	8	5
1211902000	황련(黃連)	8	5
1211903000	원지(遠志)	8	5
1211904000	패모(貝母)	8	5
1211905000	두충(杜冲)	8	10
1211906000	감초	8	5
1211909010	사인(砂仁)	8	5
1211909020	산조인(酸棗仁)	8	5
1211909030	사군자(使君子)	8	5
1211909040	용안육(龍眼肉)	8	5
1211909050	산사자(山査子)	8	5
1211909060	연자육(蓮子肉)	8	5
1211909070	박하	8	5
1211909080	초피(椒皮)	8	10
1211909091	건조한 도라지	8	X
1211909092	구기자	8	5
1211909093	오미자	8	5
1211909099	기타	8	5
1212211010	건조한 것	20	10
1212211020	냉장한 것	20	10
1212211030	냉동한 것	10	10
1212211090	기타	20	10
1212212010	건조한 것	20	5
1212212020	염장한 것	20	5
1212212030	냉장한 것	20	5
1212212040	냉동한 것	45	5
1212212090	기타	20	5
1212213010	건조한 것	20	5
1212213020	냉장한 것	20	5
1212213030	냉동한 것	45	5
1212213090	기타	20	5
1212214010	신선한 것	20	5
1212214020	냉장한 것	20	5
1212214030	냉동한 것	45	5
1212214090	기타	20	5
1212215010	염장한 것	20	10
1212215020	냉장한 것	20	10
1212215030	냉동한 것	45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212215090	기타	20	10
1212216010	냉동한 것	45	5
1212216090	기타	20	5
1212217011	냉동한 것	45	5
1212217019	기타	20	5
1212217021	냉동한 것	45	5
1212217029	기타	20	5
1212217031	냉동한 것	45	5
1212217039	기타	20	5
1212218011	냉동한 것	45	5
1212218019	기타	20	5
1212218021	냉동한 것	45	5
1212218029	기타	20	5
1212218031	냉동한 것	45	5
1212218039	기타	20	5
1212219011	냉동한 것	45	5
1212219019	기타	20	5
1212219091	냉동한 것	45	5
1212219099	기타	20	5
1212291010	냉동한 것	10	10
1212291090	기타	20	10
1212292010	냉동한 것	45	5
1212292090	기타	20	5
1212293010	냉동한 것	45	5
1212293090	기타	20	5
1212294010	냉동한 것	45	5
1212294090	기타	20	5
1212295010	냉동한 것	45	10
1212295090	기타	20	10
1212296010	냉동한 것	45	5
1212296090	기타	20	5
1212297011	냉동한 것	45	5
1212297019	기타	20	5
1212297021	냉동한 것	45	5
1212297029	기타	20	5
1212297031	냉동한 것	45	5
1212297039	기타	20	5
1212298011	냉동한 것	45	5
1212298019	기타	20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212298021	냉동한 것	45	5
1212298029	기타	20	5
1212298031	냉동한 것	45	5
1212298039	기타	20	5
1212299011	냉동한 것	45	5
1212299019	기타	20	5
1212299091	냉동한 것	45	5
1212299099	기타	20	5
1212910000	사탕무	3	10
12129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20	X
1212930000	사탕수수	3	10
1212940000	치커리(chicory) 뿌리	8	5
1212992000	구약구(kuyaku) 뿌리	8	5
1212993000	꽃가루	8	5
1212996000	살구·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의 핵(核)	8	5
1212999000	기타	8	0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8	5
1214101000	사료용	1	0
1214109000	기타	10	0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100.5	X
1214909011	사료용	1	0
1214909019	기타	18	0
1214909090	기타	100.5	X
1301200000	아라비아 검	3	0
1301901000	올레오레진(oleoresin)	3	5
1301902010	셀락(shellac)	3	0
1301902090	기타	3	0
1301909000	기타	3	5
1302110000	아편	8	5
1302120000	감초로 만든 것	8	5
1302130000	홉(hop)으로 만든 것	30	X
1302191110	인삼 추출물(extract)	20	X
13021911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20	X
1302191190	기타	20	X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754.3	X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754.3	X
1302191290	기타	754.3	X
1302191900	기타	20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302192000	캐슈너트 쉼액(cashew nut shell liquid)	8	5
1302193000	생칠(生漆)	8	10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8	10
1302199020	콜라 추출물(extract)	8	5
1302199031	당귀(當歸) 추출물	8	5
1302199032	오미자(五味子) 추출물	8	5
1302199033	작약(芍藥) 추출물	8	5
1302199034	천궁(川芎) 추출물	8	5
1302199035	황기(黃芪) 추출물	8	5
1302199039	기타	8	5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extract)	8	5
1302199099	기타	8	5
1302200000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8	5
1302311000	실 한천	8	5
1302312000	가루 한천	8	5
1302319000	기타	8	5
13023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 ·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8	5
1302390000	기타	8	5
1401101000	맹종죽(孟宗竹)	8	10
1401102000	청환죽(靑丸竹)	8	10
1401109000	기타	8	10
1401201000	쪄개거나 뽑아서 늘린 것	8	10
1401209000	기타	8	10
1401901000	참줄기껍질	8	10
1401909000	기타	8	10
1404200000	면(綿) 린터(linter)	3	0
1404901000	조각용 종자 · 껍질 · 너트(예: 상아야자)	3	5
1404902010	닥나무나 꾸지나무(paper mulberry) 껍질	3	5
1404902020	삼지닥나무(edgeworthia papyrifera) 껍질	3	5
1404902090	기타	3	7
1404903010	떡갈잎	5	10
1404903020	청미래덩굴잎	5	10
1404903090	기타	5	10
1404904000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kapok) · 식물성 헤어 · 거머리말][층상(層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3	5
1404905000	비나 브러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 · 피아사바(piassava) · 카우치 그라스(couch- grass) · 이스틸리(istile)](다발이나 꾸러미 상태인지에 상관없다)	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404906010	오배자(五倍子)	3	5
1404906020	아몬드 핵(almond hull)	3	5
1404906090	기타	3	5
1404909000	기타	3	10
1501101000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3	0
1501109000	기타	3	0
1501201000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3	0
1501209000	기타	3	0
1501900000	기타	3	0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2	0
1502101090	기타	2	0
1502109000	기타	3	0
15029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2	0
1502901090	기타	2	0
1502909000	기타	3	0
1503002000	라드유(lard oil)	3	0
1503009000	기타	3	0
1504101000	상어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3	5
1504109000	기타	3	5
1504200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3	5
1504301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3	5
1504309000	기타	3	5
1505001000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3	0
1505009000	기타	3	0
1506001000	우각유(neat's foot oil)와 그 분획물	3	0
1506009000	기타	3	0
1507101000	식품용	5	10
1507102000	바이오디젤 제조용	5	10
1507109000	기타	5	10
1507901010	식품용	5	10
1507901020	바이오디젤 제조용	5	10
1507901090	기타	5	10
1507909000	기타	5	10
1508100000	조유(粗油)	27	X
1508901000	정제유(精製油)	27	X
1508909000	기타	27	X
1509100000	버진(virgin)	5	5
1509900000	기타	5	5
1510000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5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1100000	조유(粗油)	3	0
1511901000	팜 올레인(palm olein)	2	0
1511902000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2	0
1511909000	기타	2	0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5	5
1512112000	잇꽃유	5	5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5	5
1512191020	잇꽃유	5	5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5	5
1512199020	잇꽃유	5	5
15122100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	5
1512291000	정제유(精製油)	5	5
1512299000	기타	5	5
1513110000	조유(粗油)	3	0
1513191000	정제유(精製油)	3	0
1513199000	기타	3	0
1513211000	팜핵유(palm kernel oil)	5	5
1513212000	바바수유(babassu oil)	8	5
1513291010	팜핵유(palm kernel oil)	5	5
1513291020	바바수유(babassu oil)	8	5
1513299000	기타	8	5
1514110000	조유(粗油)	5	X
1514191000	정제유(精製油)	5	X
1514199000	기타	5	10
151491100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5	X
1514912000	겨자유	5	10
151499101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5	10
1514991020	겨자유	5	10
1514999000	기타	5	10
1515110000	조유(粗油)	5	5
1515190000	기타	5	5
1515210000	조유(粗油)	5	10
1515290000	기타	5	5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5	5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630% 또는 12,060 원/kg , 양자 중 고액(을)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X
1515909010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5	5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8	5
1515909030	호호바유(jojoba oil)와 그 분획물	8	3
1515909040	동유(tung oil)와 그 분획물	8	5
1515909090	기타	5	5
1516101000	우지(牛脂)와 그 분획물	8	5
1516102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8	5
1516109000	기타	8	5
1516201010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	36	X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36	X
1516201030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36	X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X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36	X
1516202010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40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90	기타	8	5
1517100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8	5
1517901000	이미테이션 라드	8	5
1517902000	쇼트닝	8	5
1517909000	기타	8	5
1518001000	탈수피마자유	8	5
1518002000	에폭시화(epoxidised)한 대두유	8	5
1518009010	사료용	5	5
1518009090	기타	8	5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8	5
1521101000	카나버 왁스	8	5
1521102000	팜왁스	8	5
1521109000	기타	8	5
1521901000	경납(鯨蠟)	8	5
1521902000	밀랍(蜜蠟)	8	5
1521909000	기타	8	5
1522001010	천연의 것	8	5
1522001090	기타	8	5
1522009000	기타	8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601001000	소시지	18	10
1601009000	기타	30	12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X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2
1602209000	기타	30	12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7
1602319000	기타	30	7
1602321010	삼계탕	30	X
1602321090	기타	30	X
1602329000	기타	30	X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3
1602399000	기타	30	3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X
1602419000	기타	27	X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X
1602429000	기타	27	X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X
1602499000	기타	27	X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72	X
1602509000	기타	72	X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X
1602909000	기타	30	X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30	X
1603002000	육즙	30	X
1603003000	어류의 추출물(extract)	30	5
1603004000	어류의 즙	30	5
1603009000	기타	30	5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4119000	기타	20	5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4129000	기타	20	5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4139000	기타	20	5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20	5
1604141012	삶은 것	20	5
1604141019	기타	20	5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20	10
1604141022	삶은 것	20	10
1604141029	기타	20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20	10
1604141032	삶은 것	20	10
1604141039	기타	20	10
1604149000	기타	20	5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4159000	기타	20	10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4169000	기타	20	10
16041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4179000	기타	20	10
1604191010	콩치	20	5
1604191020	전갱이	20	5
1604191090	기타	20	7
1604199010	쥐치포	20	5
1604199090	기타	20	7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paste)	20	5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mar inade)	20	5
1604203000	생선소시지	20	5
1604204010	게맛의 것	20	5
1604204090	기타	20	5
1604209000	기타	20	5
1604310000	캐비아	20	5
1604320000	캐비아 대용물	20	5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101091	붉은대게살	20	5
1605101099	기타	20	5
1605109000	기타	20	5
1605211000	빵가루를 입힌 것	20	10
1605219000	기타	20	10
1605290000	기타	20	10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309000	기타	20	5
16054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409000	기타	20	5
16055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519000	기타	20	10
16055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529000	기타	20	5
16055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605539000	기타	20	5
160554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541090	기타	20	5
160554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542091	조미오징어	20	10
1605542099	기타	20	10
16055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559000	기타	20	10
160556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561090	기타	20	5
160556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562090	기타	20	5
160556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569090	기타	20	5
16055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579000	기타	20	10
160558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589000	기타	20	5
160559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591090	기타	20	5
160559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592090	기타	20	5
160559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599090	기타	20	5
16056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619000	기타	20	5
16056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629000	기타	20	5
16056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639000	기타	20	5
16056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699000	기타	20	5
1701121000	당도(糖度)가 98.5 도 이하인 것	3	10
1701122000	당도(糖度)가 98.5 도를 초과하는 것	3	10
1701130000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3	10
1701141000	당도(糖度)가 98.5 도 이하인 것	3	10
1701142000	당도(糖度)가 98.5 도를 초과하는 것	3	15
1701910000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30	X
1701990000	기타	30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1702111000	유당(乳糖)	49.5	10
1702119000	유당(乳糖)시럽	20	10
1702191000	유당(乳糖)	49.5	X
1702199000	유당(乳糖)시럽	20	X
1702201000	단풍당	8	5
1702202000	단풍당시럽	8	5
1702301000	포도당	8	10
1702302000	포도당시럽	8	10
1702401000	포도당	8	10
1702402000	포도당시럽	8	10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8	6
1702601000	과당	8	10
1702602000	과당시럽	8	10
1702901000	인조꿀	243	X
1702902000	캐러멜당	8	5
1702903000	맥아당	8	5
1702909000	기타	8	5
1703101000	주정 제조용	3	0
1703109000	기타	3	0
1703901000	주정 제조용	3	0
1703909000	기타	3	0
1704100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5
170490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8	5
1704902010	드롭스(drops)	8	5
1704902020	캐러멜	8	5
1704902090	기타	8	5
1704909000	기타	8	5
1801001000	생 것	2	0
1801002000	볶은 것	8	5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8	5
1802009000	기타	8	5
180310000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5	3
1803200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5	3
180400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5	3
180500000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5	3
180610000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3
18062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5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8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806209090	기타	8	5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3
1806319000	기타	8	3
180632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5
1806329000	기타	8	5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3
1806902111	조제 분유	36	10
1806902119	기타	40	10
1806902191	오트밀의 것	8	5
1806902199	기타	8	5
1806902210	보릿가루의 것	8	5
1806902290	기타	513	Y
1806902910	맥아 추출물(extract)	30	7
1806902920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36	10
1806902991	오트밀의 것	8	5
1806902992	보릿가루의 것	8	5
1806902999	기타	513	Y
180690301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5.4	5
1806903091	낱알 모양의 쌀	8	X
1806903099	기타	8	5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 분의 50 이상의 것)	8	5
1806909090	기타	8	5
1901101010	조제 분유	36	12
1901101090	기타	40	12
1901109010	오트밀의 것	8	5
1901109090	기타	8	5
1901201000	쌀가루의 것	513	Y
1901202000	보릿가루의 것	8	10
1901209000	기타	513	Y
1901901000	맥아 추출물(extract)	30	12
19019020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것	36	X
19019020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는 것	36	X
1901909010	오트밀	8	5
1901909091	쌀가루의 것	513	Y
1901909092	보릿가루의 것	8	10
1901909099	기타	513	Y
1902111000	스파게티	5	5
1902112000	마카로니	5	5
1902119000	기타	5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902191000	국수	5	5
1902192000	당면	26% 또는 206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902193000	냉면	5	5
1902199000	기타	5	5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5
1902301010	라면	5	0
1902301090	기타	5	5
1902309000	기타	5	5
1902400000	쿠스쿠스(couscous)	5	0
1903001000	타피오카	8	5
1903009000	기타	8	5
1904101000	콘 플레이크(corn flake)	5.4	5
1904102000	콘 칩	5.4	5
1904103000	튀긴 쌀	5.4	10
1904109000	기타	5.4	0
1904201000	무슬리(Mu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	45	X
1904209000	기타	5.4	10
1904300000	불거 밀(bulgur wheat)	8	10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50	X
1904901090	기타	8	X
1904909000	기타	8	10
1905100000	귀리빵	8	5
190520000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5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8	7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8	5
1905400000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8	5
1905901010	빵	8	5
1905901020	건빵	8	5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8	5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5	5
1905901050	쌀과자	8	5
1905901090	기타	8	5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8	5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8	5
1905909090	기타	8	5
2001100000	오이류	30	12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30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001909010	쪽파	30	X
2001909020	토마토	30	10
2001909030	꽃양배추	30	10
2001909040	스위트콘	30	12
2001909050	염교(rakkyo)	30	X
2001909060	마늘	30	X
2001909070	양파	30	X
2001909090	기타	30	5
200210000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8	10
2002901000	토마토 페이스트(paste)(가용성 고형분이 100 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2002909000	기타	8	10
2003104000	양송이 버섯	20	5
2003109000	기타	20	5
2003901000	표고버섯	20	X
2003902000	송이버섯	20	X
2003903000	송로(松露)	20	X
2003909000	기타	20	5
2004100000	감자	18	X
2004901000	스위트콘	30	7
2004909000	기타	30	X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pureed corn)	20	7
2005109000	기타	20	7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20	X
2005209000	기타	20	X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X
2005511000	녹두	20	X
2005512000	팥	20	X
2005519000	기타	20	X
2005591000	녹두	20	X
2005592000	팥	20	X
2005599000	기타	20	X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X
2005700000	올리브	20	10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10
2005910000	죽순	20	X
2005991000	김치	20	5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20	15
2005993000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20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005994000	고려엉겅퀴(곤드레)	20	X
2005999000	기타	20	X
2006001000	마롱 글라세(marrons glacés)	30	X
2006002000	파인애플	30	15
2006003000	생강	30	X
2006004000	연 뿌리	30	5
2006005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5
2006006010	껍질을 제거한 콩	20	5
2006006090	기타	20	5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10
2006008000	올리브	20	5
200600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5
2006009020	죽순	20	X
2006009030	그 밖의 채소	20	X
2006009090	기타	30	X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7
200791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30	12
2007919000	기타	30	X
200799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30	10
2007999000	기타	30	7
2008111000	피넛 버터	50	X
2008119000	기타	63.9	X
2008191000	밤	50	X
2008192000	코코넛	45	X
2008199000	기타	45	7
2008200000	파인애플	45	15
2008301000	유자	45	X
2008309000	기타	45	X
2008400000	배	45	X
2008500000	살구	45	12
2008600000	체리	45	7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X
2008709000	기타	45	X
2008800000	초본류 말기	45	10
2008910000	팜 하트(palm heart)	45	X
200893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45	10
200897101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12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008971090	기타	45	X
2008972000	과실 쉼러드	45	X
2008979000	기타	45	X
2008991000	포도	45	X
2008992000	사과	45	X
2008993000	팝콘	45	12
2008994000	소금에 절인 초피	45	X
2008999000	기타	45	X
2009110000	냉동한 것	54	10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54	X
2009190000	기타	54	X
20092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30	10
2009290000	기타	30	8
2009311000	레몬주스	50	X
2009312000	라임주스	50	X
2009319000	기타	54	X
2009391000	레몬주스	50	10
2009392000	라임주스	50	10
2009399000	기타	54	10
20094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50	X
2009490000	기타	50	10
2009500000	토마토주스	30	X
2009610000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5	X
2009690000	기타	45	X
20097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5	X
2009790000	기타	45	15
200981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50	X
2009891010	복숭아주스	50	15
2009891020	딸기주스	50	X
2009891090	기타	50	10
2009892000	채소 주스	30	12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15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15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12
2009901090	기타	50	10
2009902000	채소로 만든 것	30	12
2009909000	기타	50	12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8	5
2101119000	기타	8	5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8	5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8	5
2101129090	기타	8	5
2101201000	설탕·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40	X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40	X
2101209019	기타	40	X
2101209090	기타	40	X
2101301000	보리의 것	8	5
2101309000	기타	8	5
2102101000	양조효모	8	5
2102102000	증류효모	8	5
2102103000	제빵효모	8	5
2102104000	배양효모	8	5
2102109000	기타	8	5
2102201000	불활성 효모	8	5
2102202000	누룩	8	5
2102203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8	5
2102203090	기타	8	5
2102204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8	5
2102204090	기타	8	5
2102209000	기타	8	5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8	5
2103100000	간장	8	0
2103201000	토마토 케찹	8	12
2103202000	토마토 소스	8	12
210330100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8	5
2103302000	조제한 겨자	8	5
2103901010	된장	45	0
2103901020	춘장	45	5
2103901030	고추장	35	0
2103901090	기타	45	X
2103909010	마요네스	45	5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45	5
2103909030	혼합조미료	45	12
2103909040	메주	8	X
2103909090	기타	45	12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18	7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104102000	어류로 만든 것	30	5
2104103000	채소로 만든 것	18	7
2104109000	기타	18	7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30	7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8	5
2105001090	기타	8	5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8	5
2105009090	기타	8	5
2106101000	두부	8	5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8	5
2106109030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8	5
2106901010	콜라 베이스	8	0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8	5
2106901090	기타	8	5
21069020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5
2106903011	인삼차	8	X
2106903019	기타	8	X
2106903021	홍삼차	754.3	X
2106903029	기타	754.3	X
2106904010	김	8	10
2106904090	기타	8	5
2106909010	커피크리머	8	5
210690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것	8	10
210690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고 100 분의 70 이하인 것	8	10
210690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는 것	8	10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	5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8	5
2106909050	향미(香味)용 조제품	8	5
2106909060	도토리 가루	8	10
21069090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5
2106909080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7
2106909091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8	10
2106909099	기타	8	5
2201100000	광천수와 탄산수	8	5
2201901000	얼음과 눈	8	5
2201909000	기타	8	5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8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202109000	기타	8	5
2202901000	인삼음료	8	X
2202902000	과실주스 음료	9	7
2202903000	식혜	8	5
2202909000	기타	8	0
2203000000	맥주	30	10
220410000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15	0
2204211000	붉은 포도주	15	0
2204212000	흰 포도주	15	0
2204219000	기타	15	0
2204291000	붉은 포도주	15	0
2204292000	흰 포도주	15	0
2204299000	기타	15	0
2204300000	그 밖의 포도즙	30	12
220510000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	X
2205900000	기타	15	X
2206001010	사과주	15	10
2206001020	배술	15	10
2206001090	기타	15	10
2206002010	청주	15	5
2206002020	약주	15	5
2206002030	탁주	15	5
2206002090	기타	15	10
2206009010	와인쿨러(제 2009 호나 제 2202 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15	5
2206009090	기타	15	5
2207101000	조주정(粗酒精)	10	X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270	X
2207109090	기타	30	10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8	5
2208201000	꼬냇	15	10
2208209000	기타	15	10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	20	10
2208302000	버본 위스키	20	5
2208303000	라이(rye) 위스키	20	5
2208309000	기타	20	10
220840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20	10
2208500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20	10
2208600000	보드카	20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208701000	인삼주	20	5
2208702000	오가피주	20	X
2208709000	기타	20	10
2208901000	브랜드류(소호 제 2208.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20	10
2208904000	소주	30	3
2208906000	고량주	30	5
2208907000	데킬라	20	5
2208909000	기타	30	10
2209001000	양조식초	8	5
2209009000	기타	8	5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9	X
2301102000	수지박(greaves)	5	3
2301201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5	5
2301209000	기타	5	5
2302100000	옥수수에서 나온 것	5	3
2302300000	밀에서 나온 것	2	0
2302401000	쌀에서 나온 것	5	3
2302409000	기타	5	3
230250000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5	3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0	0
2303200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5	3
2303301000	사료용	2	3
2303309000	기타	5	0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8	0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	3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2	0
2306200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5	3
2306300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5	3
23064100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0	0
2306490000	기타	0	0
230650000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	0
2306600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2	0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63% 또는 72 원/kg, 양자 중 고액(율)	X
2306902000	들깨에서 나온 것	5	3
2306903000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5	3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306909000	기타	5	3
23070000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5	3
2308001000	도토리	5	10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5	10
2308003000	목화씨 껍질	5	3
2308009000	기타	46.4	X
2309101000	개사료	5	3
2309102000	고양이 사료	5	3
2309901010	양돈용	4.2	0
2309901020	양계용	4.2	0
2309901030	어류용	5	0
2309901040	축우용	4.2	0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	71	X
2309901099	기타	5	0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50.6	X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50.6	X
2309902091	1994. 12. 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5	0
2309902099	기타	50.6	X
2309903010	향생물질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30	미량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90	기타	5	0
2309909010	낙시용 떡밥	5	X
2309909090	기타	50.6	X
2401101000	황색종(種)	20	X
2401102000	버어리(bur ley)종(種)	20	X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20	X
2401109000	기타	20	X
2401201000	황색종	20	X
2401202000	버어리(bur ley)종(種)	20	X
2401203000	오리엔트종(種)	20	X
2401209000	기타	20	X
2401301000	앞의 주맥(主脈)	20	X
2401302000	앞 부스러기	20	X
2401309000	기타	20	X
2402101000	시가(cigar)	40	X
2402102000	셔루트(cheroot)	40	X
2402103000	시가릴로(cigarillo)	40	X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402201000	필터담배	40	X
2402209000	기타	40	X
2402900000	기타	40	X
2403110000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40	X
2403191000	파이프 담배	40	X
2403199000	기타	40	X
2403911000	판상엽(板狀葉)	32.8	X
2403919000	기타	40	X
2403991000	씹는 담배	40	X
2403992000	코 담배	40	X
2403993000	담배의 추출물(extracts)과 에센스(essence)	40	X
2403994000	입안에 머금는 담배(예: 스누스)	40	X
2403999000	기타	40	X
2501001010	암염(岩鹽)	1	0
2501001020	천일염	1	15
2501009010	식염	8	5
2501009020	순염화나트륨	8	10
2501009090	기타	8	5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0
25030000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	0
2504101000	인상(鱗狀)흑연	3	0
2504102000	토상(土狀)흑연	3	0
2504109000	기타	3	0
2504901000	인상(鱗狀)흑연	3	0
2504902000	토상(土狀)흑연	3	0
2504909000	기타	3	0
2505100000	규사	2	0
2505901010	점토사	3	0
2505901020	장석사(長石砂)	3	0
2505901090	기타	3	0
2505909000	기타	3	0
2506101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 분의 0.06 미만인 것	3	0
2506102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 분의 0.06 이상이고 100 분의 0.1 이하인 것	3	0
2506103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 분의 0.1 을 초과하는 것	3	0
250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0
2506209000	기타	3	0
2507001010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3	0
2507001090	기타	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507002010	와목점토(蛙目粘土)	3	0
2507002020	목절점토(木節粘土)	3	0
2507002090	기타	3	0
2507009000	기타	3	0
2508100000	벤토나이트(bentonite)	3	0
2508300000	내화(耐火)점토	3	0
2508401000	산성백토	3	0
2508402000	탈색토(奪色土)와 표포토(漂布土)	3	0
2508409000	기타	3	0
2508501000	홍주석(紅柱石)	3	0
2508502000	남정석(藍晶石)	3	0
2508503000	규선석(硅線石)	3	0
2508600000	멀라이트(mullite)	3	0
2508701000	샤모트(chamotte)	3	0
2508702000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3	0
2509000000	초크	3	0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0	0
2510102000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1	0
2510109000	기타	1	0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3	0
2510202000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3	0
2510209000	기타	3	0
251110000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3	0
251120000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3	0
2512000000	규조토[예: 키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겔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0
2513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불규칙한 조각[잘게 부순 부서(빔스키)을 포함한다]	3	0
2513109000	기타	3	0
2513201010	금강사(金剛砂)	3	0
2513201020	천연 커런덤(corundum)	3	0
2513201030	천연 석류석	3	0
2513201090	기타	3	0
2513202010	금강사(金剛砂)	3	0
2513202020	천연 커런덤(corundum)	3	0
2513202030	천연 석류석	3	0
2513202090	기타	3	0
25140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0
2514009000	기타	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515111000	대리석	3	0
2515112000	트래버틴(travertine)	3	0
2515121000	대리석	3	0
2515122000	트래버틴(travertine)	3	0
251520000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碑石)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 석고(alabaster)	3	0
2516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0
2516120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0
251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0
2516209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0
25169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0
2516909000	기타	3	0
2517101000	자갈	3	0
2517102000	쇄석(碎石)	3	0
2517109000	기타	3	0
2517200000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0
251730000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3	0
2517410000	대리석으로 만든 것	3	0
2517491000	현무암으로 만든 것	3	0
2517492000	화강암으로 만든 것	3	0
2517499000	기타	3	0
2518100000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3	0
2518200000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3	0
251830000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3	0
251910000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3	0
2519901000	용융(溶融)·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3	0
2519902000	천연 산화마그네슘	3	3
2519909000	기타	3	0
2520101000	석고	5	0
2520102000	무수(無水)석고	5	0
2520201000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5	0
2520209000	기타	5	0
2521001000	석회석	3	0
2521009000	기타	3	0
2522100000	생석회(生石灰)	3	0
2522200000	소석회(消石灰)	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522300000	수경성(水硬性) 석회	3	0
2523100000	시멘트 클링커(clinker)	5	0
2523210000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0
2523290000	기타	5	0
252330000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8	0
2523901000	슬래그(slag) 시멘트	5	0
2523909000	기타	5	0
2524100000	청(靑)석면	5	0
2524901000	갈(褐)석면	5	0
2524902000	백(白)석면	5	0
2524909000	기타	5	0
252510000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갬 운모	3	0
2525200000	운모 가루	3	0
2525300000	운모 웨이스트(waste)	3	0
2526101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0
2526109000	기타	3	0
2526200000	부수거나 가루인 것	5	0
2528001000	천연 봉산나트륨과 그 정광(精鑛)[하소(煅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0
2528002000	봉산칼슘	3	0
2528003000	염화봉산마그네슘	3	0
2528004000	천연 봉산	3	0
2528009000	기타	3	0
2529100000	장석(長石)	3	0
2529211000	가루	2	0
2529219000	기타	2	0
2529221000	가루	2	0
2529229000	기타	2	0
2529301000	백류석(白榴石)	2	0
2529302000	하석(霞石)	2	0
2529303000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2	0
2530101000	질석(蛭石)	3	0
2530102000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	3	0
2530200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3	0
2530901000	천연 황화비소	3	0
2530902000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망간광	3	0
2530903000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	3	0
2530904000	주사(朱沙)	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530905000	납석(蠟石)	3	0
2530906000	불석(沸石)	3	0
2530907000	명반석(明礬石)	3	0
2530908000	규회석(硅灰石)	3	0
2530909010	도석(陶石)	3	0
2530909020	견운모(絹雲母)	3	0
2530909030	어스컬러(earth colour)	8	0
2530909040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8	0
2530909050	천연 빙정석(氷晶石)과 천연 치올라이트(chiolite)	3	0
2530909091	천연탄산칼슘	3	0
2530909099	기타	3	0
2601111000	적(赤)철광	0	0
2601112000	자(磁)철광	0	0
2601119000	기타	0	0
2601121000	적(赤)철광	0	0
2601122000	자(磁)철광	0	0
2601129000	기타	0	0
260120000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1	0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0
260300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700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1001000	흑중석(wolframite)	0	0
2611002000	회중석(scheelite)	0	0
2611009000	기타	0	0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3100000	배소(焙燒)한 것	0	0
2613900000	기타	0	0
2614001000	금홍석(rutile)	0	0
2614002000	예추석(anatase)	0	0
2614009000	기타	0	0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615901000	니오븀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5902000	탄탈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5903000	바나듐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6100000	은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6901000	금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6902000	백금광과 그 정광(精鑛)[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0
2617100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2000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3000	베릴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4000	비스무트(bismuth)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9000	기타	0	0
261800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	0
2619001010	용광로 슬래그(slag)	2	0
2619001090	기타	2	0
2619002000	드로스(dross)	2	0
2619003000	스케일링(scaling)	2	0
2619009000	기타	2	0
2620110000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2	0
2620190000	기타	2	0
2620210000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2	0
2620290000	기타	2	0
262030000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2	0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2	0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2	0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2	0
2620990000	기타	2	0
2621100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	0
2621900000	기타	2	0
2701110000	무연탄	0	0
2701121000	강점결성 코크스용 탄	0	0
2701122000	그 밖의 코크스용 탄	0	0
2701129010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2 미만인 것(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 기준에 의한다)	0	0
2701129090	기타	0	0
2701190000	그 밖의 석탄	0	0
2701201000	연탄	1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701202000	조개탄(ovoid)	1	0
2701209000	기타	1	0
270210000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1	0
2702200000	응결시킨 갈탄	1	0
2703001000	응결시키지 않은 것	1	0
2703002000	응결시킨 것	1	0
2704001010	석탄에서 제조한 것	3	0
2704001090	기타	3	0
2704002000	반성(半成) 코크스	3	0
2704003000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3	0
270500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0
2706001000	콜타르(coal tar)	5	0
2706002000	갈탄 타르나 토탄 타르	5	0
2706009000	기타	5	0
2707100000	벤조올(벤젠)	3	0
2707200000	톨루올(톨루엔)	3	0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3	0
2707400000	나프탈렌	5	0
2707500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2707910000	크레오소트(creosote)유	5	0
2707991000	솔벤트 나프타(solvent naphtha)	5	0
2707992000	안트라센(anthracene)	5	0
2707993000	페놀(석탄산)	8	0
2707999000	기타	5	0
2708100000	피치(pitch)	5	0
2708200000	피치코크스(pitch cokes)	5	0
270900101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796 을 초과하고 0.841 이하인 것	3	0
270900102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41 을 초과하고 0.847 이하인 것	3	0
270900103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47 을 초과하고 0.855 이하인 것	3	0
270900104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55 를 초과하고 0.869 이하인 것	3	0
270900105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69 를 초과하고 0.885 이하인 것	3	0
270900106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85 를 초과하고 0.899 이하인 것	3	0
270900107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99 를 초과하고 0.904 이하인 것	3	0
270900108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904 를 초과하고 0.966 이하인 것	3	0
2709001090	기타	3	0
2709002000	역청유(瀝靑油)	3	0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710122000	항공 휘발유	3	0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0
2710124000	나프타	0.5	0
2710125000	엔·지·엘(NGL)	0.5	0
2710129000	기타	5	0
2710191010	제트 연료유	5	0
2710191090	기타	5	0
2710192010	등유	3	0
2710192020	제트 연료유	3	0
2710192030	노르말 파라핀(normal paraffin)	5	0
2710192090	기타	5	0
2710193000	경유	3	0
2710194010	경질(輕質)중유(벵커에이유)	3	0
2710194020	중유(벵커비유)	3	0
2710194030	벵커시유	3	0
2710194090	기타	5	0
2710195010	조유(粗油)	7	0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7	0
2710196000	신전유(extender oil)	8	0
2710197110	항공기용 기관오일	7	0
2710197120	자동차용 기관오일	7	0
2710197130	선박용 기관오일	7	0
2710197210	실린더오일	7	0
2710197220	스핀들(spindle)오일	7	0
2710197230	기어오일	7	0
2710197240	터빈오일	7	0
2710197250	냉동기오일	7	0
2710197310	콤파운드오일	7	0
2710197320	유동파라핀	7	0
2710197330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	0
2710197410	방청유(anti-corrosive oil)	7	0
2710197420	절삭유	7	0
2710197430	세척유	7	0
2710197440	주형이형유	7	0
2710197450	유압브레이크유	7	0
2710197510	프로세스유	7	0
2710197520	전기전열유	7	0
2710197530	열처리유	7	0
2710197540	열매체유	7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710197900	기타	7	0
271019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20	칼슘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40	리튬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90	기타	8	0
2710199000	기타	8	0
2710201010	자동차 휘발유	5	0
2710201020	항공 휘발유	5	0
271020103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0
2710201040	나프타	0.5	0
2710201050	엔·지·엘(NGL)	0.5	0
2710201090	기타	5	0
2710209110	제트 연료유	5	0
2710209190	기타	5	0
2710209210	등유	5	0
2710209220	제트 연료유	5	0
2710209230	노르말 파라핀(normal paraffin)	5	0
2710209290	기타	5	0
2710209300	경유	5	0
2710209410	경질(輕質)중유(벵커에이유)	5	0
2710209420	중유(벵커비유)	5	0
2710209430	벵커시유	5	0
2710209490	기타	5	0
2710209510	조유(粗油)	7	0
2710209520	윤회유 기유(基油)	7	0
2710209600	신전유(extender oil)	8	0
2710209711	항공기용 기관오일	7	0
2710209712	자동차용 기관오일	7	0
2710209713	선박용 기관오일	7	0
2710209721	실린더오일	7	0
2710209722	스핀들(spindle)오일	7	0
2710209723	기어오일	7	0
2710209724	터빈오일	7	0
2710209725	냉동기오일	7	0
2710209731	컴파운드오일	7	0
2710209732	유동파라핀	7	0
2710209733	자동변속기용 윤회유	7	0
2710209741	방청유	7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710209742	절삭유	7	0
2710209743	세척유	7	0
2710209744	주형이형유	7	0
2710209745	유압브레이크유	7	0
2710209751	프로세스유	7	0
2710209752	전기전열유	7	0
2710209753	열처리유	7	0
2710209754	열매체유	7	0
2710209790	기타	7	0
27102098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0
2710209820	칼슘을 첨가한 것	8	0
27102098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0
2710209840	리튬을 첨가한 것	8	0
2710209890	기타	8	0
2710209900	기타	8	0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3	0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	0
2710911090	기타	5	0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3	0
2710912090	기타	5	0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3	0
2710914010	경질(輕質)중유(벵커에이유)·중유(벵커비유)·벵커시유의 것	3	0
2710914090	기타	5	0
2710915000	조유(粗油)·윤회유[신전유(extend oil)는 제외한다]·윤회유기유(基油)의 것	7	0
2710919000	기타	8	0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3	0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	0
2710991090	기타	5	0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3	0
2710992090	기타	5	0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3	0
2710994010	경질(輕質)중유(벵커에이유)·중유(벵커비유)·벵커시유의 것	3	0
2710994090	기타	5	0
2710995000	조유(粗油)·윤회유[신전유(extend oil)는 제외한다]·윤회유기유(基油)의 것	7	0
2710999000	기타	8	7
2711110000	천연가스	3	0
2711120000	프로판	3	0
2711130000	부탄	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711141000	에틸렌	5	0
2711142000	프로필렌	5	0
2711143000	부틸렌	5	0
2711144000	부타디엔	5	0
2711190000	기타	5	0
2711210000	천연가스	3	0
2711290000	기타	5	0
2712101000	바셀린	8	0
2712109000	기타	8	0
2712200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2712901010	슬랙왁스와 스케일왁스	8	0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	8	0
2712901090	기타	8	0
2712909010	몬탄왁스	8	0
2712909020	토탄왁스	8	0
2712909030	세레신왁스	8	0
2712909040	합성 파라핀왁스	8	0
2712909090	기타	8	0
2713110000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5	0
2713120000	하소(煨燒)한 것	5	0
2713200000	석유역청(瀝靑)	5	0
271390000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5	0
2714100000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5	0
2714901000	천연의 역청(瀝靑)과 아스팔트	5	0
2714902000	아스팔타이트	5	0
2714903000	아스팔트질의 암석	5	0
2715001000	컷백(cut-back)	5	0
2715002000	아스팔트·역청(瀝靑)·피치(pitch)·타르의 에멀션(emulsion)이나 안정분산액	5	5
2715003000	매스틱(mastic)	5	0
2715009000	기타	5	5
2716000000	전기에너지	5	0
2801100000	염소	5.5	0
2801200000	요드	5.5	0
2801301000	플루오르	5.5	0
2801302000	브롬	5.5	0
2802001000	승화황(昇華黃)	5	0
2802002000	침강황(沈降黃)	5	0
2802003000	콜로이드황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03001000	아세틸렌 블랙	5.5	0
2803009011	이차전지 제조용	5	0
2803009019	기타	5.5	0
2803009090	기타	5.5	0
2804100000	수소	5.5	0
2804210000	아르곤	5.5	0
2804291000	헬륨	5.5	0
2804292000	네온	5.5	0
2804293000	크립톤	5.5	0
2804294000	크세논	5.5	0
2804299000	기타	5.5	0
2804300000	질소	5.5	0
2804400000	산소	5.5	0
2804501000	붕소	5.5	0
2804502000	텔루르	5.5	0
2804610000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3	0
2804690000	기타	5	0
2804701000	황린	5	0
2804709000	기타	5.5	0
2804800000	비소	5.5	0
2804900000	셀렌	5.5	0
2805110000	나트륨	5.5	0
2805120000	칼슘	5.5	0
2805190000	기타	5.5	0
2805301000	세륨그룹	5.5	0
2805302000	테르븀그룹	5.5	0
2805303000	에르븀그룹	5.5	0
2805304000	이트륨	5.5	0
2805305000	스칸듐	5.5	0
2805309000	기타	5.5	0
2805400000	수은	5.5	0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5.5	0
2806200000	클로로황산	5.5	0
2807001010	반도체 제조용	5.5	0
2807001090	기타	5.5	0
2807002000	발연황산	5.5	0
2808001010	반도체 제조용	5.5	0
2808001090	기타	5.5	0
2808002000	황질산	5.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09100000	오산화인	5.5	0
2809201010	반도체 제조용	5.5	0
2809201090	기타	5.5	0
2809202010	메타인산	5.5	0
2809202020	피로인산	5.5	0
2809202090	기타	5.5	0
2810001010	삼산화 이붕소	5.5	0
2810001090	기타	5.5	0
2810002000	오르토붕산	5.5	0
2810003000	메타붕산	5.5	0
2810009000	기타	5.5	0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11119000	기타	5.5	0
2811191000	황화수소	5.5	0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5.5	0
2811193000	술파민산	5.5	0
2811194000	과염소산	5.5	0
2811195000	염소산	5.5	0
2811196000	하이포아인산	5.5	0
2811197000	아인산	5.5	0
2811198000	비산	5.5	0
2811199010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 (청산)	5.5	0
2811199090	기타	5.5	0
2811210000	이산화탄소	5.5	0
2811221000	화이트카본	5.5	0
2811229010	실리카겔	5.5	0
2811229090	기타	5.5	0
2811291000	일산화탄소	5.5	0
2811292000	아산화질소	5.5	0
2811293000	이산화질소	5.5	0
2811294000	삼산화비소	5.5	0
2811295000	오산화비소	5.5	0
2811299000	기타	5.5	0
2812101010	삼염화요드	5	0
281210102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5	0
281210103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5	0
2812101040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	5	0
2812101050	셀퍼 모노클로라이드	5	0
2812101060	셀퍼 디클로라이드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12101090	기타	5	0
2812102010	티오닐 클로라이드	5	0
281210202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 (포스겐)	5	0
281210203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5	0
2812102090	기타	5	0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5.5	0
2812902000	설퍼헥사플루오라이드	5.5	0
2812909000	기타	5.5	0
2813100000	이황화탄소	5.5	0
2813901020	오황화인	5.5	0
2813901090	기타	5.5	0
2813902010	오황화비소	5.5	0
2813902090	기타	5.5	0
2813903000	황화규소	5.5	0
2813909000	기타	5.5	0
2814100000	무수(無水)암모니아	1	0
2814200000	암모니아수	2	0
2815110000	고체	5.5	0
281512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8	0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5.5	0
2815301000	과산화나트륨	5.5	0
2815302000	과산화칼륨	5.5	0
2816101000	수산화마그네슘	5.5	0
2816102000	과산화마그네슘	5.5	0
281640000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5.5	0
2817001000	산화아연	5.5	0
2817002000	과산화아연	5.5	0
2818101000	선별된 알갱이 모양	3	0
2818109000	기타	3	0
281820000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1	0
2818301000	알루미나겔	5.5	0
2818309000	기타	5.5	0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5.5	0
2819901010	산화제이크로뮴	5.5	0
2819901090	기타	5.5	0
2819902000	수산화크로뮴	5.5	0
2820100000	이산화망간	5	0
2820901000	일산화망간	5.5	0
2820902000	삼산화제이망간	5.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20909000	기타	5.5	0
2821101000	산화철	5.5	0
2821102000	수산화철	5.5	0
2821200000	어스컬러(earth colour)	5.5	0
2822001010	산화제이코발트	5.5	0
2822001091	이차전지 제조용	3	0
2822001099	기타	5.5	0
2822002010	수산화제일코발트	5.5	0
2822002090	기타	5.5	0
2823001000	아나타스형	5.5	0
2823009000	기타	5.5	0
282410000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5.5	0
2824901000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5.5	0
2824909000	기타	5.5	0
282510100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5.5	0
2825109010	히드라진	5.5	0
2825109020	히드라진과 무기염	5.5	0
2825109030	히드록실아민	5.5	0
2825109041	히드록실 암모늄클로라이드(히드록실아민염산염)	5.5	0
2825109049	기타	5.5	0
2825201000	산화리튬	5.5	0
2825202000	수산화리튬	5	0
2825301000	오산화바나듐	1	0
2825309000	기타	3	0
2825401000	산화니켈	5.5	0
2825402000	수산화니켈	5.5	0
2825501000	산화구리	5.5	0
28255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825502090	기타	5.5	0
2825601000	산화게르마늄	5.5	0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5.5	0
2825701000	산화몰리브덴	3	0
2825702000	수산화몰리브덴	5.5	0
2825800000	산화안티모니	5.5	0
2825901010	산화칼슘	5.5	0
2825901020	산화텅스텐	1	0
2825901030	산화석	5.5	0
2825901090	기타	5.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825902010	수산화칼슘	5.5	0
2825902020	수산화망간	5.5	0
2825902030	수산화텅스텐	5.5	0
2825902040	수산화석	5.5	0
2825902090	기타	5.5	0
2825903010	과산화니켈	5.5	0
2825903090	기타	5.5	0
2825909000	기타	5.5	0
28261200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5.5	0
2826191000	플루오르화칼슘	5.5	0
2826193010	산성플루오르화칼륨	5.5	0
2826193090	기타	5.5	0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이나 플루오르화나트륨	5.5	0
2826195000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6)	5.5	0
2826199000	기타	5.5	0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 [인조 빙정석(氷晶石)]	5.5	0
2826901000	인조치올라이트	5.5	0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5.5	0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5.5	0
2826904000	플루오르화인산염	5.5	0
2826905000	플루오르화황산염	5.5	0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규산칼륨	5.5	0
2826909000	기타	5.5	0
2827100000	염화암모늄	5.5	0
2827200000	염화칼슘	5.5	0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5.5	0
2827320000	알루미늄 염화물	5.5	0
2827350000	니켈 염화물	5.5	0
2827391000	구리염화물	5.5	0
2827399000	기타	5.5	0
2827411000	산화염화구리	5.5	0
282741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827412090	기타	5.5	0
2827491000	산화염화물	5.5	0
2827492000	수산화염화물	5.5	0
2827511000	브롬화나트륨	5.5	0
2827512000	브롬화칼륨	5.5	0
2827591000	브롬화칼슘	5.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27599000	기타	5.5	0
2827601000	산화요드화물	5.5	0
2827609010	요드화칼륨	5.5	0
2827609090	기타	5.5	0
282810000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5.5	0
2828901010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5.5	0
2828901020	하이포아염소산칼륨	5.5	0
2828901090	기타	5.5	0
2828902010	아염소산나트륨	5.5	0
2828902020	아염소산알루미늄	5.5	0
2828902090	기타	5.5	0
2828903000	하이포아브롬산염	5.5	0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5.5	0
2829191000	염소산칼륨	5.5	0
2829192000	염소산바륨	5.5	0
2829199000	기타	5.5	0
2829901010	과염소산나트륨	5.5	0
2829901020	과염소산암모늄	5.5	0
2829901090	기타	5.5	0
2829902010	브롬산염	5.5	0
2829902020	과브롬산염	5.5	0
2829902030	요오드산염	5.5	0
2829902040	과요오드산염	5.5	0
2830101000	황화수소나트륨	5.5	0
2830109000	기타	5.5	0
2830901000	황화물	5.5	0
2830902000	폴리황화물	5.5	0
2831101000	아이티온산나트륨	5.5	0
2831102000	숯폭실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 숯폭실산나트륨)	5.5	0
2831901000	아이티온산염	5.5	0
2831902000	숯폭실산염	5.5	0
2832101000	아황산수소나트륨	5.5	0
2832109000	기타	5.5	0
2832201000	아황산 암모늄	5.5	0
2832202000	아황산 칼륨	5.5	0
2832203000	아황산 칼슘	5.5	0
2832209000	기타	5.5	0
2832301000	티오황산 암모늄	5.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832302000	티오황산 나트륨	5.5	0
2832303000	티오황산 칼륨	5.5	0
2832309000	기타	5.5	0
2833110000	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1000	황산수소나트륨	5.5	0
2833192000	이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9000	기타	5.5	0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5.5	0
2833221000	이차전지 제조용	5	0
2833229000	기타	5.5	0
2833240000	황산니켈	5	0
283325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833259000	기타	5.5	0
2833270000	황산바륨	5.5	0
2833291000	황산철	5.5	0
2833292010	이차전지 제조용	5	0
2833292090	기타	5.5	0
2833293010	이차전지 제조용	5	0
2833293090	기타	5.5	0
2833299000	기타	5.5	3
2833300000	명반	5.5	0
2833401000	과황산암모늄	5.5	0
2833402000	과황산나트륨	5.5	0
2833403000	과황산칼슘	5.5	0
2833409000	기타	5.5	0
2834101000	아질산나트륨	5.5	0
2834109000	기타	5.5	0
2834210000	질산칼륨	5.5	0
2834291000	질산바륨	5.5	0
2834299000	기타	5.5	0
2835101010	하이포아인산나트륨	5.5	0
2835101020	하이포아인산칼슘	5.5	0
2835101090	기타	5.5	0
2835102000	아인산염	5.5	0
2835221000	인산일나트륨	5.5	0
2835222000	인산이나트륨	5.5	0
2835240000	인산칼륨	5.5	0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5.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35260000	그 밖의 인산칼슘	5.5	0
2835291000	인산알루미늄	5.5	0
2835299000	기타	5.5	0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 (트리폴리인산나트륨)	5.5	0
2835391000	메타인산나트륨	5.5	0
2835392000	피로인산나트륨	5.5	0
2835399000	기타	5.5	0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3	0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나트륨)	5.5	0
2836400000	탄산칼륨	5.5	0
2836500000	탄산칼슘	5.5	0
2836600000	탄산바륨	5.5	0
2836910000	탄산리튬	5	0
2836920000	탄산스트론튬	5.5	0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5.5	0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암모늄	5.5	0
2836991031	이차전지 제조용	5	0
2836991039	기타	5.5	0
2836991090	기타	5.5	0
2836992000	과산화탄산염 (과탄산염)	5.5	0
2837111000	시아나화나트륨	5.5	0
2837112000	산화시아나화나트륨	5.5	0
2837191010	시아나화칼륨	5.5	0
2837191020	시아나화구리	5.5	0
2837191030	시아나화아연	5.5	0
2837191090	기타	5.5	0
2837192000	산화시아나화물	5.5	0
2837201000	페로시아나화물	5.5	0
2837202000	페리시아나화물	5.5	0
2837209000	기타	5.5	0
2839110000	메타규산나트륨	5.5	0
2839190000	기타	5.5	0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5.5	0
2839902000	규산바륨	5.5	0
2839909000	기타	5.5	0
2840110000	무수물 (無水物)	5	0
2840190000	기타	5	0
2840200000	그 밖의 붕산염	5	0
2840300000	과산화붕산염 (과붕산염)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5.5	0
2841501000	크롬산칼륨	5.5	0
2841509000	기타	5.5	0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5.5	0
2841691000	아망간산염	5.5	0
2841692000	망간산염	5.5	0
2841693000	과망간산염	5.5	0
2841700000	몰리브덴산염	5.5	0
2841800000	텅스텐산염 [울프라메이트(wolframate)]	5	0
2841901000	주석산염	5.5	0
2841902010	티탄산바륨	5.5	0
2841902020	티탄산스트론튬	5.5	0
2841902030	티탄산납	5.5	0
2841902090	기타	5.5	0
2841903000	안티몬산염	5.5	0
2841904000	철산염과 아철산염	5.5	0
2841905000	바나듐산염	5.5	0
2841906000	비스무트산염	5.5	0
2841909000	기타	5.5	0
2842101000	알루미늄노실리케이트	6.5	0
2842109000	기타	5.5	0
2842901000	셀렌산염	5.5	0
2842903000	황을 함유하는 겐염이나 착염	5.5	0
2842905000	셀렌의 겐염이나 착염	5.5	0
2842909000	기타	5.5	0
2843101000	콜로이드 은	5.5	0
2843102000	콜로이드 금	5.5	0
2843103000	콜로이드 백금	5.5	0
2843109000	기타	5.5	0
284321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43219000	기타	5.5	0
284329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43299000	기타	5.5	0
2843301000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5.5	0
2843309000	기타	5.5	0
2843901000	아말감(amalgam)	5.5	0
2843909010	백금 화합물	5.5	0
2843909090	기타	5.5	0
2844101000	천연 우라늄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844102000	분산물(分散物)(천연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109000	기타	0	0
2844201000	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	0	0
2844202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 · 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209000	기타	0	0
2844301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309000	기타	0	0
2844401000	방사성원소	0	0
2844402000	방사성동위원소	0	0
2844403000	분산물(分散物)(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409000	기타	0	0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0	0
284510000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0	0
2845901000	중수소	0	0
2845902000	탄소의 동위원소	0	0
2845909000	기타	0	0
2846100000	세륨화합물	5	0
2846901000	산화이트륨	5	0
2846909000	기타	5	0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47009000	기타	5.5	0
2848001000	인동(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	0
2848002000	인화알루미늄	5.5	0
2848009000	기타	5.5	0
2849100000	탄화칼슘	5.5	0
2849200000	탄화규소	5	0
2849901000	복탄화물	5.5	0
2849909010	탄화텅스텐	5.5	0
2849909090	기타	5.5	0
2850001000	수소화물	5.5	0
2850002000	질화물	5.5	0
2850003000	아지드화물	5.5	0
2850004000	규화물	5.5	0
2850005000	붕화물	5.5	0
2852101000	소호 제 2825.90 호, 제 2827.39 호, 제 2827.49 호, 제 2827.60 호, 제 2830.90 호, 제 2833.29 호, 제 2834.29 호, 제 2835.39 호, 제 2837.19 호, 제 2837.20 호, 제 2841.50 호, 제 2842.10 호, 제 2842.90 호, 제 2843.90 호, 제 2848.00 호,	5.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제 2849.90 호, 제 2850.00 호, 제 2853.00 호의 것		
2852102000	제 2931 호의 것, 소호 제 2918.11 호, 제 2932.99 호, 제 2934.99.9090 호, 제 3201.90.2000 호, 제 3201.90.4000 호, 제 3206.50 호, 제 3707.90 호, 제 3822.00.1091 호, 제 3822.00.2091 호의 것	6.5	0
2852103000	제 2934.99.2000 호, 제 3822.00.1092 호, 제 3822.00.2092 호의 것	6.5	0
2852104000	소호 제 3502.90 호, 제 3504.00 호의 것	8	0
2852105000	제 3822.00.101 호, 제 3822.00.102 호, 제 3822.00.1093 호, 제 3822.00.201 호, 제 3822.00.202 호, 제 3822.00.2093 호의 것	0	0
2852106000	제 3822.00.1099 호, 제 3822.00.2099 호의 것	8	3
2852901000	소호 제 2830.90 호, 제 2835.39 호, 제 2842.10.9000 호, 제 2848.00 호, 제 2849.90 호, 제 2850.00 호의 것	5.5	0
2852902000	제 2842.10.1000 호, 제 2934.99.2000 호, 제 2934.99.9090 호, 제 3201.90 호, 제 3824.90.2100 호, 제 3824.90.2200 호, 제 3824.90.2490 호 부터 제 3824.90.9090 호까지의 것	6.5	0
2852903000	소호 제 3501.90 호의 카세인산염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의 것(커피크리머 제조용은 제외한다)	20	10
2852904000	소호 제 3502.90 호, 제 3504.00 호의 것	8	5
2853001000	증류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5.5	0
2853002000	압축공기	5.5	0
2853003000	아말감(amalgam)	5.5	0
285300401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5.5	0
2853004090	기타	5.5	0
2853005000	알칼리 아미드	5.5	0
2853009000	기타	5.5	0
2901101000	부탄	0	0
2901102000	헥산	0	0
2901103000	헵탄	0	0
2901109000	기타	0	0
2901210000	에틸렌	0	0
2901220000	프로펜(프로필렌)	0	0
290123000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	0
2901241000	1,3-부타디엔	0	0
2901242000	이소프렌	0	0
2901291000	헥센	0	0
2901292000	옥텐	0	0
2901299000	기타	0	0
2902110000	시클로헥산	5	0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5	0
2902199000	기타	5	0
2902200000	벤젠	3	0
2902300000	톨루엔	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02410000	오르토-크실렌	5	0
2902420000	메타-크실렌	5	0
2902430000	파라-크실렌	3	0
2902440000	혼합크실렌 이성체	3	0
2902500000	스티렌	0	0
2902600000	에틸벤젠	5	0
2902700000	큐멘	3	0
2902901000	나프탈렌	0	0
2902902000	메틸나프탈렌	0	0
2902903000	메틸스티렌	0	0
2902909000	기타	0	0
2903111000	염화메탄 (염화메틸)	5.5	0
2903112000	염화에탄 (염화에틸)	5.5	0
2903120000	이염화메탄 (염화메틸렌)	5.5	0
2903130000	클로로포름 (삼염화메탄)	5.5	0
2903140000	사염화탄소	5.5	0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 (ISO) (1,2-이염화에탄)	5	0
2903191000	1,1,1-트리클로로에탄 (메틸클로로포름)	5.5	0
2903199000	기타	5.5	0
2903210000	염화비닐 (염화에틸렌)	5.5	0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5.5	0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 (과염화에틸렌)	5.5	0
2903290000	기타	5.5	0
2903310000	이브롬화에틸렌 (ISO) (1,2-디브로모에탄)	5.5	0
2903391000	브로모메탄 (메틸 브로마이드)	5.5	0
2903392000	브로모에탄 (1,2-디브로모에탄은 제외한다)	5.5	0
2903393000	요드메탄	5.5	0
2903394000	헥사플루오르에탄 (CFC-116)	5.5	0
2903395000	1,1-디플루오르에탄 (HFC-152a)	5.5	0
2903396000	1,1,1,2-테트라 플루오르에탄 (HFC-134a)	5.5	0
2903397000	1,1,1,3,3,3-펜타플루오로-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5.5	0
2903399000	기타	5.5	0
290371000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0
290372000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5.5	0
2903730000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	5.5	0
290374000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0
290375000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5.5	0
2903761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하론-1211)	5.5	0
2903762000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하론-1301)	5.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03763000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하론-2402)	5.5	0
2903771000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5.5	0
2903772000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0
2903773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5.5	0
2903774010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CFC-114)	5.5	0
2903774020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 (CFC-115)	5.5	0
2903775000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CFC-13)	5.5	0
2903776010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 (CFC-111)	5.5	0
2903776020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CFC-112)	5.5	0
2903777010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CFC-211)	5.5	0
2903777020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CFC-212)	5.5	0
2903777030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CFC-213)	5.5	0
2903777040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CFC-214)	5.5	0
2903777050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CFC-215)	5.5	0
2903777060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 (CFC-216)	5.5	0
2903777070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 (CFC-217)	5.5	0
2903779000	기타	5.5	0
2903780000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5.5	0
2903791110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 (HCFC-21)	5.5	0
2903791120	클로로플루오르메탄 (HCFC-31)	5.5	0
2903791210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HCFC-124)	5.5	0
2903791290	기타	5.5	0
2903791300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5.5	0
2903792000	불소와 염소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에탄·프로판의 유도체	5.5	0
2903799000	기타	5.5	0
29038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ISO)] [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5.5	0
29038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5.5	0
2903890000	기타	5.5	0
2903911000	클로로벤젠	5.5	0
2903919000	기타	5.5	0
2903921000	헥사클로로벤젠(ISO)	5.5	0
2903922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5.5	0
2903991000	염화벤질	5.5	0
2903992010	1,2,4-트리클로로벤젠	5.5	0
2903992090	기타	5.5	0
2903993000	벤조트리클로라이드	5.5	0
2903999000	기타	5.5	0
2904101000	벤젠 술폰산	5.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04109000	기타	5.5	0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5.5	0
2904209010	니트로벤젠	5.5	0
2904209020	4-니트로비페닐과 이들의 염	5.5	0
2904209090	기타	5.5	0
2904901000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	5.5	0
2904902000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5.5	0
2904903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 (클로로피크린)	5.5	0
2904909000	기타	5.5	0
2905110000	메탄올 (메틸알코올)	2	0
2905121000	1-프로판올 (프로필알코올)	5.5	0
2905122010	반도체 제조용	5.5	0
2905122090	기타	5.5	0
2905130000	1-부탄올 (노르말-부틸알코올)	5	0
2905140000	그 밖의 부탄올	5.5	0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5.5	0
2905169000	기타	5.5	0
2905171000	1-도데칸올 (라우릴알코올)	5.5	0
2905172000	1-헥사데칸올 (세틸알코올)	5.5	0
2905173000	1-옥타데칸올 (스테아릴알코올)	5.5	0
2905191000	헵틸알코올	5.5	0
2905192000	노닐알코올	5.5	0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	0
2905194000	펜탄올 (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5.5	0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 (피나코릴 알코올)	5	0
2905199020	2-프로필 헵틸 알코올	5	0
2905199030	이소데실 알코올	3	0
2905199090	기타	5	0
2905221000	게라니올 · 시트로네올 · 리날롤 · 로디놀 · 네올	5	0
2905229000	기타	5	0
2905290000	기타	5	0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 (에탄디올)	3	0
2905320000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판-1,2-디올)	5.5	0
2905391000	1,4-부탄디올	5.5	0
2905392000	네오펜틸 글리콜	5.5	0
2905399000	기타	5.5	0
29054100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 (트리메틸올프로판)	5.5	0
2905420000	펜타에리트리톨	5.5	0
2905430000	만니톨	8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054400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8	5
2905450000	글리세롤	8	5
2905490000	기타	5.5	5
2905510000	에스클로비놀(INN)	5.5	0
2905590000	기타	5.5	0
2906110000	멘톨	5.5	0
2906120000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디메틸시클로헥산올	5.5	0
2906131000	스테롤	5.5	0
2906132000	이노시톨	5.5	0
2906191000	보르네올	5.5	0
2906192000	테르피네올	5.5	0
2906199000	기타	5.5	0
2906210000	벤질알코올	5.5	0
2906291000	페닐에틸알코올	5.5	0
2906292000	페닐프로필알코올	5.5	0
2906293000	신나밀알코올	5.5	0
2906299000	기타	5.5	0
2907111000	페놀	5.5	7
2907112000	페놀의 염	5.5	0
2907121000	크레졸	5.5	0
2907122000	크레졸의 염	5.5	0
2907131000	옥틸페놀	5.5	0
2907132000	노닐페놀	5	0
2907139000	기타	5.5	0
2907151000	나프톨	5.5	0
2907152000	나프톨의 염	5.5	0
2907191000	티몰	5.5	0
2907192000	크실레놀과 이들의 염	5.5	0
2907199000	기타	5.5	0
2907211000	레소르시놀	5.5	0
2907212000	레소르시놀의 염	5.5	0
2907221000	히드로퀴논	5.5	0
2907222000	히드로퀴논의 염	5.5	0
2907231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5.5	7
2907232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의 염	5.5	0
2907291000	카테콜	5.5	0
2907299000	기타	5.5	0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5	0
2908191000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은 제외한다)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08192000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5	0
2908193000	트리브로모페놀	5	0
2908199000	기타	5	0
2908910000	디노셉(ISO)과 그 염	5.5	0
2908920000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5.5	0
2908991000	나프톨술폰산과 이들의 염	5.5	0
2908992000	페놀술폰산	5.5	0
2908993000	니트로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5.5	0
2908994000	니트로소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5.5	0
2908999000	기타	5.5	0
2909110000	디에틸에테르	5.5	0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5.5	0
2909192000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5.5	0
2909199000	기타	5.5	0
2909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5.5	0
2909301000	아니솔	5.5	0
2909302000	아네톨	5.5	0
2909303000	디페닐 에테르	5.5	0
2909304000	앰브렛 머스크	5.5	0
2909305000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5.5	0
29093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09309090	기타	5.5	0
29094100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5.5	0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5	0
2909441000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5.5	0
2909449000	기타	5.5	0
2909491000	트리에틸렌 글리콜	5.5	0
2909499000	기타	5.5	0
2909501000	오이게놀	5.5	0
2909502000	이소오이게놀	5.5	0
2909503000	에테르알코올페놀	5.5	0
2909509000	기타	5.5	0
2909601000	과산화알코올	5.5	0
2909602000	디쿠밀퍼록사이드	5.5	0
2909603000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5.5	0
2909609000	기타	5.5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10100000	옥시란 (에틸렌옥사이드)	5	0
2910200000	메틸옥시란 (프로필렌옥사이드)	5.5	0
2910300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5.5	0
2910400000	디엘드린 (ISO, INN)	5.5	0
2910900000	기타	5.5	0
2911001010	아세탈	5.5	0
2911001020	헤미아세탈	5.5	0
2911009000	기타	5.5	0
2912110000	메탄알 (포름알데히드)	5.5	0
2912120000	에탄알 (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191000	시트로넬알데히드	5.5	0
2912192000	시틀알	5.5	0
2912193000	부탄알 (부티르알데히드, 노르말-이성체)	5.5	0
2912199000	기타	5.5	5
2912210000	벤즈알데히드	5.5	0
2912292000	페닐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293000	신남알데히드	5.5	0
2912294000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	5.5	0
2912295000	시클라멘알데히드	5.5	0
2912299000	기타	5.5	5
2912410000	바닐린 (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5	0
2912420000	에틸바닐린 (3-메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491000	3,4,5-트리메톡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499000	기타	5.5	0
2912501000	트리옥산	5.5	0
2912502000	파라알데히드	5.5	0
2912503000	메타알데히드	5.5	0
2912509000	기타	5.5	0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5.5	0
29130000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 도체	5.5	0
2914110000	아세톤	5.5	7
2914120000	부탄온 (메틸에틸케톤)	3	0
2914130000	4-메틸펜탄-2-온 (메틸이소부틸케톤)	5.5	0
2914191000	3,3-디메틸-2-부타논 (피나콜론)	5.5	0
2914199000	기타	5.5	0
2914221000	시클로헥사논	5	0
2914222000	메틸시클로헥사논	5	0
2914231000	이오논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14232000	메틸이오논	5	0
2914291000	자스몬	5	0
2914299000	기타	5	0
29143100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5.5	0
2914390000	기타	5.5	0
2914401000	디아세톤 알코올(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	5.5	0
2914409000	기타	5.5	0
2914501000	케톤-페놀	5.5	0
2914509000	기타	5.5	0
2914610000	안트라퀴논	5.5	0
2914691000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5.5	0
2914699010	퀴논알코올·퀴논페놀과 퀴논알데히드	5.5	0
2914699090	기타	5.5	0
2914701000	케톤 머스크	5	0
29147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4709090	기타	5	0
2915110000	포름산	5.5	0
2915121000	포름산 칼슘	5.5	0
2915122000	포름산 암모늄	5.5	0
2915129000	기타	5.5	0
2915131000	포름산 메틸	5.5	0
2915132000	2-에탈헥실클로로포메이트	5.5	0
2915139000	기타	5.5	0
2915210000	초산	5.5	0
2915240000	무수(無水)초산	5.5	0
2915291000	초산칼슘	5.5	0
2915292000	초산나트륨	5.5	0
2915293000	초산코발트	5.5	0
2915299000	기타	5.5	0
2915310000	초산에틸	5.5	0
2915320000	초산비닐	5.5	0
291533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915339000	기타	5.5	0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5.5	0
2915391000	초산아밀	5.5	0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5.5	0
2915393000	초산메틸	5.5	0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5.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15395000	초산 2-에톡시에틸	5.5	0
2915399000	기타	5.5	0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5.5	0
2915409000	기타	5.5	0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5.5	0
2915600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5	0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5.5	0
2915702010	스테아르산	5.5	0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5	0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5.5	0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5.5	0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5.5	0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5.5	0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5.5	0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5.5	0
2915702090	기타	5.5	0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5.5	0
2915909010	2-에틸헥소산	5.5	0
2915909090	기타	5.5	7
2916111000	아크릴산	6.5	0
2916119000	기타	6.5	0
2916121000	아크릴산에틸	6.5	0
2916122000	아크릴산메틸	6.5	0
2916123000	아크릴산부틸	6.5	0
2916124000	아크릴산 2-에틸헥실	6.5	0
2916129000	기타	6.5	0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6.5	0
2916139000	기타	6.5	0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6.5	0
2916149000	기타	6.5	10
291615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5
2916152000	리놀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6153000	리놀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6160000	비나파크릴 (ISO)	6.5	0
2916190000	기타	6.5	5
2916201000	시클로 헥산카르복시산	6.5	0
2916202000	시클로 펜테닐 초산	6.5	0
2916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16209090	기타	6.5	5
2916311000	벤조산	6.5	0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6.5	0
2916313000	벤조산벤질	6.5	0
291631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6319090	기타	6.5	0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6.5	0
2916322000	염화벤조일	6.5	0
2916341000	페닐아세트산	6.5	0
2916342000	페닐아세트산의 염	6.5	0
2916391000	계피산	6.5	0
2916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6399090	기타	6.5	5
2917111000	옥살산	6.5	0
2917112000	옥살산의 염	6.5	0
2917113000	옥살산의 에스테르	6.5	0
2917121000	아디프산	6.5	7
2917122000	아디프산의 염	6.5	0
2917123010	아디프산 디옥틸	6.5	0
2917123090	기타	6.5	0
2917131000	아젤라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7132000	세바스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7140000	무수말레산	6.5	0
2917191000	말레산	6.5	0
2917192000	숙신산	6.5	0
2917193000	숙신산 나트륨	6.5	0
2917194000	말론산 디에틸	6.5	0
2917195000	말론산 디이소프로필	6.5	0
2917199000	기타	6.5	0
2917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6.5	0
291732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6.5	0
2917329000	기타	6.5	0
2917331000	오르토프탈산디노닐	6.5	0
2917332000	오르토프탈산디데실	6.5	0
2917341000	오르토프탈산 디헥틸	6.5	0
2917342000	오르토프탈산 디이소데실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17343000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6.5	0
2917349000	기타	6.5	0
2917350000	무수프탈산	6.5	0
2917361000	테레프탈산	3	0
2917369000	기타	6.5	0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6.5	0
2917391000	이소프탈산	6.5	0
2917392000	트리옥틸트리메리테이트 (T.O.T.M)	6.5	0
2917393000	무수트리멜리트산	6.5	0
2917399000	기타	6.5	0
2918111000	락트산	6.5	0
2918112000	락트산의 염	6.5	0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20000	타르타르산	6.5	0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6.5	0
2918132000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	6.5	5
2918140000	시트르산	6.5	0
2918151010	시트르산 칼슘	6.5	0
2918151090	기타	6.5	0
2918152000	시트르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61000	글루콘산	6.5	5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6.5	5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6.5	5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 (ISO)	6.5	0
2918191010	말산	6.5	0
2918191020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 (벤질산)	6.5	0
2918191090	기타	6.5	0
2918192010	말산의 염	6.5	0
2918192090	기타	6.5	0
2918193010	말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93020	메틸벤질레이트	6.5	0
2918193090	기타	6.5	0
2918199000	기타	6.5	0
2918211000	살리실산	6.5	0
2918212010	살리실산 나트륨	6.5	5
2918212090	기타	6.5	5
2918221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6.5	0
2918222000	오르토-아세틸살리산의 염	6.5	5
2918223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에스테르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18231010	살리실산 메틸	6.5	5
2918231020	살리실산 에틸	6.5	0
2918231090	기타	6.5	5
2918232000	그 밖의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6.5	5
2918291000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6.5	0
2918299010	갈산	6.5	0
2918299020	파라히드록시 나프토산	6.5	0
291829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6.5	0
2918299040	갈산의 염과 에스테르	6.5	0
2918299090	기타	6.5	0
29183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8309000	기타	6.5	0
2918910000	2,4,5-트리(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89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8999000	기타	6.5	0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6.5	0
291990101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9901019	기타	6.5	0
2919901020	글리세로인산	6.5	0
2919901090	기타	6.5	0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6.5	0
2919909000	기타	6.5	0
29201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0119000	기타	6.5	0
2920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0199010	0.0-디메틸-0-(3-메틸-4-니트로페닐)티오포스페이트	6.5	0
2920199090	기타	6.5	0
2920901010	황산디메틸	6.5	0
2920901020	황산디에틸	6.5	0
2920901090	기타	6.5	0
2920902000	아질산에스테르와 질산에스테르의 것	6.5	0
2920903000	탄산에스테르의 것	6.5	0
2920904010	디메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20	디에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3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2090404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0909090	기타	6.5	0
2921111010	메틸아민	6.5	0
2921111020	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12010	디메틸아민	6.5	0
2921112020	디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13010	트리메틸아민	6.5	0
2921113020	트리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91000	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0
2921192000	디에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199010	디메틸라우릴아민	6.5	0
2921199020	클로르메탄 (INN)[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6.5	0
2921199030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6.5	0
2921199040	트리클로르메탄 (INN)[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6.5	0
2921199050	디-이소프로필아민	6.5	0
2921199060	엔,엔-다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6.5	0
292119907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1199090	기타	6.5	5
2921211000	에틸렌디아민	6.5	0
2921212000	에틸렌디아민의 염	6.5	0
2921221000	헥사메틸렌디아민	6.5	0
2921222000	헥사메틸렌디아민 아디페이트	6.5	0
2921229000	기타	6.5	0
2921291000	디에틸렌 트리아민	5	0
2921292000	트리에틸렌 테트라아민	5	0
2921299000	기타	5	0
2921301000	시클로 헥실아민	6.5	0
2921309000	기타	6.5	0
2921411000	아닐린	6.5	0
2921412000	아닐린의 염	6.5	0
2921421000	아닐린의 니트로할로겐화 유도체	6.5	0
2921422000	2,4,5-트리클로로아닐린	6.5	0
292142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1429090	기타	6.5	0
2921431000	para-톨루이딘-메타-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2000	2-클로로-para-톨루이딘-5-술폰산과 그 염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21433000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9010	톨루이딘	6.5	0
292143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1439099	기타	6.5	0
2921441000	디페닐아민	6.5	0
2921449000	기타	6.5	0
2921451000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5901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459030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5	0
2921459090	기타	6.5	0
2921460000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펜터민(INN), 이들의 염	6.5	0
29214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1499000	기타	6.5	0
2921511000	엔-페닐-엔-이소프로필 파라-페닐렌디아민	6.5	0
292151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6.5	0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6.5	0
2921519090	기타	6.5	0
2921591000	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염	6.5	0
2921599010	벤지딘	6.5	0
2921599020	벤지딘 디히드로 클로라이드	6.5	0
2921599030	4,4'-디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599040	벤지딘의 염(벤지딘디히드로클로라이드의 것은 제외한다)	6.5	0
2921599050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6.5	0
2921599090	기타	6.5	0
2922111000	모노에탄올아민	6.5	0
2922112000	모노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6.5	0
2922122000	디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31000	트리에탄올아민	3	0
2922132000	트리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400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5	0
2922191000	아릴에탄올아민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22193010	엔, 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2193020	엔, 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2193090	기타	6.5	0
2922194000	에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195000	메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196000	디에틸아미노에탄올	6.5	0
2922199000	기타	6.5	0
2922211000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6.5	0
2922212000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염	3	0
2922213000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6.5	0
2922219000	기타	6.5	0
2922291000	파라-아미노페놀	6.5	0
2922299010	메타-아미노페놀	6.5	0
2922299020	오르토-아미노페놀	6.5	0
2922299030	아미노 크레졸	6.5	0
2922299040	페네티딘과 이들의 염	6.5	0
2922299090	기타	6.5	0
2922310000	암페프라몬(INN) · 메타돈(INN) · 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6.5	0
2922392000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이들의 염	6.5	0
2922393000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6.5	0
2922399000	기타	6.5	0
2922411000	리신	6.5	0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6.5	0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6.5	0
2922421000	글루탐산	5	0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6.5	0
2922423000	그 밖의 글루탐산의 염	6.5	0
2922431000	안트라닐산	6.5	0
2922439000	안트라닐산의 염	6.5	0
2922440000	탈리딘(INN)과 그 염	6.5	0
2922491000	글리신	6.5	0
2922492000	알라닌	6.5	0
2922493000	류우신	6.5	0
2922494000	바린	6.5	0
2922495000	아스파르트산	6.5	0
2922496000	페닐글리신	6.5	0
2922497000	에틸파라아미노 벤조에이트	6.5	0
2922499000	기타	6.5	0
2922501000	세린	6.5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22502000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6.5	0
2922503000	1-파라-니트로 페놀-2-아미노-1,3-프로판디올	6.5	0
2922504000	디알파히드록시페닐글리신	6.5	5
29225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2509090	기타	6.5	5
2923101000	콜린	6.5	0
2923102000	콜린의 염	6.5	0
2923201000	레시틴	6.5	0
2923202000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5	0
2923900000	기타	6.5	7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6.5	5
29241210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6.5	0
2924122000	모노크로토포스(ISO)	6.5	0
2924123000	포스파미돈(ISO)	6.5	0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6.5	0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5	0
2924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4199090	기타	6.5	5
29242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4219000	기타	6.5	0
29242300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6.5	0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6.5	0
2924291010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6.5	0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6.5	5
2924291090	기타	6.5	5
2924292000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5	0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6.5	0
2924299091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0	0
2924299092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4299099	기타	6.5	0
2925111000	사카린	6.5	0
2925112000	사카린의 염	6.5	0
2925120000	구루테치미드(INN)	6.5	0
2925191000	프탈이미드	6.5	0
2925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5199090	기타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 (ISO)	6.5	0
2925291000	디페닐구아니딘	6.5	0
2925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5299090	기타	6.5	0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6.5	0
2926200000	1-시아노구아니딘 (디시안디아미드)	6.5	0
2926300000	펜프로포렉스 (INN)와 그 염, 메사돈 (INN) 제조중간체 (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6.5	0
2926901000	아세토니트릴	6.5	0
2926902000	1,4-디아미노-2,3-디시아노안트라퀴논	6.5	0
2926909010	말로노니트릴	6.5	0
2926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6909099	기타	6.5	0
2927001100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술폰산	6.5	0
2927001900	기타	6.5	0
2927002100	아조디카본아미드	6.5	0
2927002910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	6.5	0
2927002990	기타	6.5	0
2927003000	아족시화합물	6.5	0
2928001000	페닐히드라진	6.5	0
2928009010	페릴랄틴	6.5	0
2928009020	메틸에틸 케토옥심	6.5	0
29280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8009099	기타	6.5	3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6.5	0
2929102000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6.5	0
2929109000	기타	6.5	0
2929901000	이소시아나화물	6.5	0
29299030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6.5	0
2929904000	디에틸-노르말, 노르말-디메틸 포스포르 아미데이트	6.5	0
2929905000	오르토-에틸-2-디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6.5	0
29299060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드 디할라이드	6.5	0
2929909000	기타	6.5	0
29302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0201090	기타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302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0202090	기타	6.5	0
2930301000	티우람모노술폜아이드	6.5	0
2930302000	티우람디술폜아이드	6.5	0
2930303000	티우람테트라술폜아이드	6.5	0
2930400000	메티오닌	6.5	0
2930501000	캡타폴(ISO)	6.5	0
2930502000	메타미도포스(ISO)	6.5	0
2930901000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6.5	0
2930902010	티오우레아	6.5	0
2930902020	티오카르바닐리드	6.5	0
2930902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0902099	기타	6.5	0
2930903010	티오알코올	6.5	0
2930903020	티오페놀	6.5	0
293090303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탄티올	6.5	0
293090304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4010	티오디글리콜(INN)[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폜아이드]	6.5	0
2930904020	티오아닐린	6.5	0
2930904090	기타	6.5	0
2930905010	2-클로로 에틸클로로메틸술폜아이드	6.5	0
2930905020	비스(2-클로로에틸)술폜아이드	6.5	0
2930905030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탄	6.5	0
2930905040	1,2-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탄	6.5	0
2930905050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프로판	6.5	0
2930905060	1,4-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부탄	6.5	0
2930905070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6.5	0
2930905081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	6.5	0
2930905082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틸)에테르	6.5	0
2930905090	기타	6.5	0
29309060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와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7000	오, 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8000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6.5	0
2930909010	티오산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30909020	이소티오시아네이트	6.5	0
2930909030	시스테인	6.5	0
2930909040	시스틴	6.5	0
2930909050	글루타티온	6.5	0
2930909060	8-클로로-6-토시록틴산에틸에스테르	6.5	0
2930909070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 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탄소화합물 그룹에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를 포함한 화합물	6.5	0
2930909080	디티오카르본산염 (크산틴산염)	6.5	0
2930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0909099	기타	6.5	5
2931100000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6.5	0
2931200000	트리부틸탄 화합물	6.5	0
2931901010	2-클로로비닐 디클로로아르신	6.5	0
2931901020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6.5	0
2931901030	트리스(2-클로로비닐) 아르신	6.5	0
2931901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1901099	기타	6.5	0
2931902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1902200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0
2931902300	오-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0
29319024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6.5	0
29319025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6.5	0
2931902911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902912	디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902913	디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902914	디메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902915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1902919	기타	6.5	0
29319029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1902999	기타	6.5	0
293190301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31903090	기타	6.5	0
2931904010	메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904020	메틸포스피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90403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904040	에틸포스피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904090	기타	6.5	0
2931909010	디부틸 틴 옥사이드	6.5	0
2931909020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6.5	0
293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1909099	기타	6.5	0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6.5	0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 (푸르푸르알데히드)	6.5	0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6.5	0
293213200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6.5	0
2932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2199000	기타	6.5	5
2932201010	쿠마린	5	0
2932201020	메틸쿠마린	5	0
2932201030	에틸쿠마린	5	0
2932209010	노나락톤	5	0
2932209020	운데카락톤	5	0
2932209030	부티로락톤	5	0
2932209040	산토닌	5	0
2932209050	페놀프탈레인	5	0
2932209060	글루쿠로노락톤	5	0
2932209070	탈수소초산과 그 염	5	0
2932209080	아세틸케텐 (디케텐)	5	0
29322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2209099	기타	5	0
2932910000	이소사프롤	6.5	0
29329200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5	0
2932930000	피페로날	6.5	0
2932940000	사프롤	6.5	0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 (모든 이성체)	6.5	5
2932991000	디옥산	6.5	0
2932992000	벤조푸란 (쿠마론)	6.5	0
2932993000	시네올	5.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32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2999090	기타	6.5	5
2933111000	메틸렌비스(1-페닐-2,3-디메틸-4-메틸아미노피라조론-5)	6.5	0
2933119010	페나존(안티피린)	6.5	0
2933119030	설피린	6.5	0
2933119040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6.5	0
293311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119099	기타	6.5	0
2933191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6.5	0
2933199010	페닐부타존	6.5	0
2933199020	피라졸레이트	6.5	0
29331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199099	기타	6.5	0
2933211000	히단토인	6.5	0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6.5	0
2933291000	리시딘	6.5	5
2933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299090	기타	6.5	5
2933311000	피리딘	6.5	0
2933312000	피리딘의 염	6.5	0
2933321000	피페리딘	6.5	0
2933329000	피페리딘의 염	6.5	5
2933330000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일(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6.5	0
2933391000	이소니코틴산 히드라지드	6.5	0
2933393000	3-하이드록시-1-메틸피페리딘	6.5	0
2933394000	3-퀴누클리디닐 벤질레이트	6.5	5
2933395000	퀴누클리딘-3-올	6.5	5
2933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399090	기타	6.5	5
2933410000	레보파놀(INN)과 그 염	6.5	5
2933491000	피비니움파모에이트	6.5	5
29334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2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한정한다)		
2933499090	기타	6.5	5
29335200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6.5	0
2933530000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탈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6.5	0
2933540000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6.5	0
2933550000	로프라졸람(INN)·메크로과론(INN)·메타과론(INN)·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6.5	0
2933591100	5-플루오로우라실	6.5	7
2933591910	피리미딘	6.5	7
29335919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591999	기타	6.5	3
2933592010	피페라진	6.5	7
2933592020	시트르산 피페라진	6.5	7
2933592030	아디프산 피페라진	6.5	7
2933592040	1-아미노-4-메틸피페라진	6.5	7
2933592090	기타	6.5	7
2933610000	멜라민	6.5	0
2933691000	염화시아놀	3	0
2933692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	6.5	0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6.5	0
29336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699099	기타	6.5	0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3	0
2933720000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6.5	5
2933791000	이사틴	6.5	0
2933792000	2- 히드록시퀴놀린	6.5	0
2933793000	1-비닐-2-피롤리돈	6.5	0
2933799000	기타	6.5	5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6.5	5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6.5	7
2933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33999090	기타	6.5	3
2934101000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	6.5	0
29341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4109090	기타	6.5	0
2934201000	벤조티아졸	6.5	0
2934202000	머캬프토 벤조티아졸	6.5	0
2934203000	디벤조티아졸린 디술파이드	6.5	0
2934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4209090	기타	6.5	0
2934301000	페노티아진 (티오디페닐아민)	6.5	0
2934309000	기타	6.5	0
2934910000	아미노렉스 (INN) · 브로티졸람 (INN) · 클로티아제팜 (INN) · 클록사졸람 (INN) · 덱스트로모라마이드 (INN) · 할록사졸람 (INN) · 케타졸람 (INN) · 메소카브 (INN) · 옥사졸람 (INN) · 페올린 (INN) · 펜디메트라진 (INN) · 펜메트라진 (INN) · 서펜타닐 (INN)과 이들의 염	6.5	0
2934991000	모르포린	6.5	5
2934992000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6.5	5
2934993000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6.5	5
2934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4999090	기타	6.5	5
2935002000	5-아미노-2-메틸-엔-페닐벤젠 술폰아미드	6.5	5
2935003000	파라-톨루이딘-3-술폰아닐리드	6.5	5
2935004000	2-아미노-엔-에틸벤젠 술폰아닐리드	6.5	5
2935006000	술파메톡사졸	6.5	5
2935007000	술파메톡신	6.5	5
2935008010	술파민	6.5	5
2935008020	술파피리딘	6.5	5
2935008030	술파디아아진	6.5	5
2935008040	술파메라진	6.5	5
2935008050	술파티아졸	6.5	5
2935008090	기타	6.5	5
293500902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5009090	기타	6.5	5
2936210000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20000	비타민 B1 과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30000	비타민 B2 와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4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36250000	비타민 B6 와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60000	비타민 B12 와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6.5	5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6.5	0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6.5	0
2936279000	기타	6.5	0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6.5	0
2936289000	기타	6.5	5
2936291010	비타민 B9	6.5	0
2936291090	기타	6.5	0
2936292000	비타민 D 와 이들의 유도체	6.5	5
2936293000	비타민 H 와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94000	비타민 K 와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99000	기타	6.5	0
2936901000	프로비타민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0
2936909000	기타	6.5	0
2937111000	소호 제 2933.9 호나 제 2934.9 호의 것	6.5	0
2937119000	기타	0	0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0	0
2937191000	소호 제 2933.9 호나 제 2934.9 호의 것	6.5	0
2937199000	기타	0	0
2937211000	코르티손	0	0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0	0
2937213000	프레드니손	0	0
2937214000	프레드니손	0	0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0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0	0
2937292000	소호 제 2914.50 호의 것	5.5	0
2937299000	기타	0	0
2937501000	소호 제 2918.19 호, 제 2918.9 호의 것	6.5	0
2937502000	소호 제 2934.9 호의 것	6.5	0
2937509000	기타	0	0
2937901000	소호 제 2933.9 호, 제 2934.9 호의 것	6.5	0
2937902100	에피네프린	0	0
2937902910	소호 제 2922.50 호의 것	6.5	0
2937902990	기타	0	0
2937903000	아미노산 유도체	0	0
2937909000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2938101000	루토시드 (루틴)	6.5	0
2938102000	루토시드의 유도체	6.5	0
2938901000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6.5	0
293890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6.5	0
2938903000	사포닌	6.5	0
2938904000	스테비오사이드	6.5	5
2938909000	기타	6.5	0
2939111000	모르핀	0	0
2939112000	에틸모르핀	0	0
2939113000	코데인	0	0
2939114000	양귀비 줄기 농축물 (전중량의 100 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2939119000	기타	0	0
2939190000	기타	0	0
2939200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0	0
2939411000	에페드린	0	0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0	0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 (INN)	0	0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0	0
2939430000	캐친 (INN)과 그 염	0	0
2939440000	놀에페드린과 그 염	0	0
2939490000	기타	0	0
2939510000	페네틸린 (INN)과 그 염	0	0
2939590000	기타	0	0
2939611000	엘고메트린 (INN)	0	0
2939619000	엘고메트린 (INN)의 염	0	0
2939621000	엘고타민 (INN)	0	0
2939629000	엘고타민 (INN)의 염	0	0
2939631000	리세르그산	0	0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0	0
2939690000	기타	0	0
2939910000	코카인 · 에크코닌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 (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이들의 염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0	0
2939991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	0	0
2939992000	아레코린	0	0
2939993000	피페린	0	0
2939994000	니코틴과 그 염	0	0
2939999000	기타	0	0
2940001010	갈락토오스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40001020	소르보오스	6.5	0
2940001030	키실로오스	6.5	0
2940001090	기타	6.5	0
2940002010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6.5	0
2940002090	기타	6.5	0
2941101000	페니실린 지(G) 칼륨	6.5	0
2941109010	페니실린 지(G) 나트륨	6.5	0
2941109020	페니실린 브이(V)	6.5	0
2941109090	기타	6.5	5
29412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41209000	기타	6.5	0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2000	염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9000	기타	6.5	5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6.5	0
2941501000	에리트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6.5	0
2941509000	기타	6.5	0
2941902000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틸-6-메틸렌-5-옥시테트라사이클린-파라톨루엔술포네이트	6.5	0
2941909010	황산 카나마이신	6.5	0
2941909020	레더마이신	6.5	0
2941909030	황산 겐타마이신	6.5	0
2941909040	류코마이신	6.5	0
294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41909099	기타	6.5	3
2942001000	케텐	6.5	0
2942009010	아세트 아비산 동	6.5	0
2942009090	기타	6.5	5
3001201000	선(腺) 추출물	0	0
3001202000	간장 추출물	0	0
3001203000	담낭 추출물	0	0
3001204000	췌장 추출물	0	0
3001205000	위장 추출물	0	0
3001209000	기타	0	0
3001901010	인체의 것	0	0
3001901090	기타	0	0
3001902010	웅담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001902090	기타	0	0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0	0
3001909020	인체의 것	0	0
3001909090	기타	0	0
300210100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	0
3002102010	헤모글로빈	0	0
3002102020	글로불린(globulin)	0	0
3002103000	트롬빈(thrombin)과 프로트롬비나제(prothrombinase)	0	0
3002109010	면역혈청	0	0
3002109020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0	0
3002109030	소호 제 2925.29 호, 제 2933.29 호, 제 2934.99 호, 제 2937.90.1000 호, 제 3002.90.3010 호, 제 3907.20 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6.5	0
3002109040	제 2937.90.9000 호의 것	0	0
3002109050	제 3002.90.3020 호의 것	0	0
3002109090	기타	0	0
300220000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0	0
3002301000	구제역 백신	0	0
3002309000	기타	0	0
3002901000	사람의 피	0	0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3002903010	색시톡신(saxitoxin)	6.5	0
3002903020	리신(ricin)	8	0
3002903090	기타	0	0
3002904000	미생물 배양체	0	0
3002905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0	0
3002906000	살균소	0	0
3002907000	제 2933.29 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6.5	0
3002908000	제 3002.10 호 제 1 목부터 제 3 목까지의 것	0	0
3002909000	기타	0	0
3003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8	0
3003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0
3003201000	항결핵제와 항암제	8	5
3003209010	클로람 페니콜제제	8	0
3003209090	기타	8	0
3003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0
3003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003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0
3003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8	0
3003393000	갑상샘과 부갑상샘 호르몬제제	8	0
3003394000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8	0
3003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8	0
3003396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8	0
3003397000	남성 호르몬제제	8	0
3003398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8	0
3003399000	기타	8	5
3003401000	항암제	8	0
3003409110	모르핀제제	8	0
3003409120	키닌제제	8	0
3003409130	테오브로민제제	8	0
3003409210	카페인제제	8	0
3003409220	스트리키닌제제	8	0
3003409230	에페드린제제	8	0
3003409310	코카인제제	8	0
3003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8	0
3003409330	니코틴제제	8	0
3003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0
3003409500	아레코린제제	8	0
3003409600	피페린제제	8	0
3003409900	기타	8	5
30039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 항암제	8	7
3003909100	아스피린제제	8	7
3003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7
3003909300	비타민제제	8	7
3003909400	녹용제제	8	7
3003909500	인삼제제	8	7
3003909600	로열젤리 제제	8	7
3003909900	기타	8	3
3004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8	5
3004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0
30042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 항암제	8	5
3004209100	클로람페니콜제제	8	0
30042092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8	5
3004209300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제제	8	5
3004209400	카나마이신제제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004209900	기타	8	3
3004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5
30043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8	5
3004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5
3004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0
3004392000	수액성 호르몬제제	8	0
3004393000	갑상샘과 부갑상샘 호르몬제제	8	0
3004394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8	0
3004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8	0
3004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8	0
3004397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8	5
3004399000	기타	8	5
3004401000	항암제	8	3
3004409110	모르핀제제	8	0
3004409120	키닌제제	8	0
3004409130	테오브로민제제	8	0
3004409210	카페인제제	8	0
3004409220	스트리크닌제제	8	0
3004409230	에페드린제제	8	0
3004409310	코카인제제	8	0
3004409320	맥각알칼로이드제제	8	0
3004409330	니코틴제제	8	5
3004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0
3004409500	아레코린제제	8	0
3004409600	피페린제제	8	0
3004409900	기타	8	5
3004501000	비타민 A 제제	8	0
3004502010	비타민 B1 제제	8	0
3004502090	기타	8	5
3004503000	비타민 C 제제	8	5
3004504000	비타민 D 제제	8	5
3004505000	비타민 E 제제	8	0
3004506000	비타민 H 제제	8	0
3004507000	비타민 K 제제	8	0
3004509000	기타	8	5
30049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 항암제	8	3
3004909100	아스피린제제	8	7
3004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3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004909300	녹용제제	8	7
3004909400	인삼제제	8	7
3004909500	로알제리 제제	8	7
3004909900	기타	8	3
3005101000	반창고	0	0
3005109000	기타	0	0
3005901000	탈지면	0	0
3005902000	거즈	0	0
3005903000	붕대	0	0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0	0
3005909000	기타	0	0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 컷거트(catgut)	0	0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0	0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0	0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0	0
3006104000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0	0
3006105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7
300610502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8	0
3006105090	기타	0	0
3006200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0	0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0	0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 투여용)	0	0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0	0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0	0
3006403000	뼈 형성용 시멘트	0	0
3006500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0	0
3006600000	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0
300670000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6.5	0
3006910000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6.5	0
3006921010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3006921090	기타	0	0
300692201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	0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0	0
3006922031	색시톡신(saxitoxin)	6.5	0
3006922032	리신(ricin)	8	0
3006922090	기타	0	0
3006923000	제 3003 호와 제 3004 호의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006924000	제 3005 호와 제 3006 호의 것	0	0
3006925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6.5	0
3101001010	구아노(guano)	6.5	0
3101001090	기타	6.5	0
3101002000	식물성 비료	6.5	0
3101003000	동물성 ·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6.5	0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2	0
3102109000	기타	6.5	0
3102210000	황산암모늄	6.5	0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6.5	0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6.5	0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0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102501000	천연의 것	6.5	0
3102509000	기타	6.5	0
3102600000	질산칼슘 ·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6.5	0
3102800000	요소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6.5	0
3102909000	기타	6.5	0
3103100000	과인산석회	6.5	0
3103901000	소성인산석회	6.5	0
3103902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0.2 이상으로 한정한다)	6.5	0
3103903000	기타 인산석회	6.5	0
3103904000	혼합 인산질비료	6.5	0
3103909000	기타	6.5	0
3104200000	염화칼륨	0	0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2 이하인 것	1	0
3104309000	기타	6.5	0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것	1	0
3104901090	기타	6.5	0
3104909000	기타	1	0
310510000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6.5	0
3105200000	질소 · 인 ·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6.5	5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6.5	0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6.5	0
3105590000	기타	6.5	0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6.5	5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6.5	0
3105909000	기타	6.5	0
3201100000	케브라초 추출물(quebracho extract)	6.5	0
320120000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6.5	0
3201901010	망그로브 추출물(extract)	6.5	0
3201901020	미로보란 추출물(extract)	6.5	0
3201901030	수마크 추출물(extract)	6.5	0
3201901040	감비어 추출물(extract)	6.5	0
3201901090	기타	6.5	0
3201902000	탄닌산과 그 염	6.5	0
3201903000	탄닌의 에테르나 에스테르	6.5	0
3201904000	그 밖의 탄닌의 유도체	6.5	0
3202101000	방향족 신탄스	6.5	0
3202102000	염화 알킬술폰	6.5	0
3202103000	수지성 유연제	6.5	0
3202109000	기타	6.5	0
3202901000	무기유연제	6.5	0
3202902000	인조 탈회제	6.5	0
3202909000	기타	6.5	0
3203001100	천연 인디고(indigo)	6.5	0
3203001910	로그우드(logwood)	6.5	0
3203001920	백단향(白檀香)	6.5	0
3203001930	엽록소	6.5	0
3203001990	기타	6.5	0
3203002010	코치니엘(cochineal)	6.5	0
3203002020	커미즈(kermes)	6.5	0
3203002030	세피아(sepia)	6.5	0
3203002090	기타	6.5	0
3203003000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0
3204111000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press cake)으로 한정한다]	4	0
3204119000	기타	8	0
3204121000	산성염료와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22000	매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30000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40000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50000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92000	래피드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93000	황화염료·황화 건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99000	기타	8	0
320420000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	6.5	0
320490101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5	0
3204901090	기타	6.5	0
3204909000	기타	6.5	0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색소	6.5	0
3205009000	기타	6.5	0
3206110000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6.5	0
3206190000	기타	6.5	0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6.5	0
3206411000	군청	6.5	0
3206419000	기타	6.5	0
3206421000	리도폰(lithopone)	6.5	0
3206429000	기타	6.5	0
3206491000	아연회	6.5	0
3206492000	광물성 블랙	6.5	0
3206493000	어스칼러(colored earth)	6.5	0
3206494000	용해성 만다이크에브라운	6.5	0
3206495000	코발트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6.5	0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6.5	0
3206499000	기타	6.5	0
320650000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6.5	0
3207100000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207201000	법랑과 유약	6.5	0
3207202000	슬립	6.5	0
3207209000	기타	6.5	0
3207301000	금으로 만든 것	6.5	0
3207302000	백금으로 만든 것	6.5	0
3207303000	팔라듐으로 만든 것	6.5	0
3207304000	은으로 만든 것	6.5	0
3207309000	기타	6.5	0
320740000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208101010	에나멜	6.5	0
3208101090	기타	6.5	0
320810200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10300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3208201011	에나멜	6.5	0
3208201019	기타	6.5	0
32082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201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3208202011	에나멜	6.5	0
3208202019	기타	6.5	0
3208202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202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3208901011	에나멜	6.5	0
3208901019	기타	6.5	0
32089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901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3208909011	에나멜	6.5	0
3208909019	기타	6.5	0
3208909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909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3209101011	에나멜	6.5	0
3209101019	기타	6.5	0
32091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6.5	0
3209102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9901011	에나멜	6.5	0
3209901019	기타	6.5	0
32099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9909011	에나멜	6.5	0
3209909019	기타	6.5	0
3209909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10001011	에나멜	6.5	0
3210001019	기타	6.5	0
3210001091	에나멜	6.5	0
3210001099	기타	6.5	0
3210002010	오일 바니시(vernish)	6.5	0
3210002020	락·천연 검이나 천연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ernish)와 래커(lacquer)	6.5	0
3210002030	역청질·피치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ernish)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210002040	용제를 함유하지 않은 액상 바니시(varnish)	6.5	0
3210003010	디스템퍼(distemper)	6.5	0
3210003090	기타	6.5	0
3211000000	조제 드라이어	6.5	0
3212100000	스탬프용 박(箔)	6.5	0
3212901000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6.5	0
3212909000	기타	6.5	0
3213101000	유성 물감	6.5	0
3213102000	수성 물감	6.5	0
3213109000	기타	6.5	0
3213901000	유성 물감	6.5	0
3213902000	수성 물감	6.5	0
3213909000	기타	6.5	0
321410106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6.5	0
3214101090	기타	6.5	0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6.5	0
3214109000	기타	6.5	0
3214900000	기타	6.5	0
3215110000	흑색	6.5	0
3215190000	기타	6.5	0
3215901000	필기용 잉크	6.5	0
3215902000	제도용 잉크	6.5	0
3215903000	복사용 잉크	6.5	0
3215904010	유성	6.5	0
3215904020	수성	6.5	0
3215904030	유성·수성 겸용	6.5	0
3215905000	금속성 잉크	6.5	0
3215906010	유성	6.5	0
3215906020	수성	6.5	0
3215906030	유성·수성 겸용	6.5	0
3215909000	기타	6.5	0
3301120000	오렌지유	5	3
3301130000	레몬유	5	3
3301190000	기타	5	3
33012400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5	3
3301250000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5	3
3301291000	바닐라유	5	3
3301292000	시트로넬라유	5	3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301293000	신나몬바크유	5	3
3301294000	신나몬리프유	5	3
3301299000	기타	5	3
3301300000	레지노이드(resinoid)	8	5
3301901000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8	5
3301902000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8	5
3301903000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8	5
3301904100	아편에서 추출한 것	8	5
3301904200	감초에서 추출한 것	8	5
3301904300	홉(hop)에서 추출한 것	30	12
3301904400	제충국(除蟲菊)에서 추출한 것이나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	8	5
3301904510	백삼에서 추출한 것	20	X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것	754.3	X
3301904530	그 밖의 인삼에서 추출한 것	20	X
3301904600	캐슈너트 셸액(cashew nut shell liquid)에서 추출한 것	8	5
3301904700	생칠(生漆)에서 추출한 것	8	5
3301904800	기타	8	5
3302101000	식품공업용	5	0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30	0
3302102019	기타	8	0
3302102090	기타	5	0
3302900000	기타	6.5	5
3303001000	향수	6.5	5
3303002000	화장수	6.5	0
3304101000	립스틱	6.5	5
3304109000	기타	6.5	5
3304201000	아이섀도	6.5	5
3304209000	기타	6.5	5
3304301000	네일에나멜	6.5	5
3304309000	기타	6.5	5
3304911000	페이스파우더	6.5	5
3304912000	베이비파우더(탈쿰파우더를 포함한다)	6.5	0
3304919000	기타	6.5	0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6.5	5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6.5	5
3304993000	어린이용 제품류	6.5	0
3304999000	기타	6.5	3
3305100000	샴푸	5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5	5
3305300000	헤어 래커(hair lacquer)	5	0
3305901000	헤어린스	5	5
3305902000	헤어크림	5	5
3305909000	기타	5	7
3306100000	치약	6.5	5
3306201011	70 데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	8	0
3306201019	기타	8	0
3306201020	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를 초과하는 것	8	0
3306209000	기타	8	5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6.5	5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6.5	5
330710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6.5	0
3307109000	기타	6.5	3
330720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6.5	5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6.5	3
330730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6.5	5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6.5	0
3307490000	기타	6.5	5
3307901000	탈모제	6.5	0
3307902000	향낭	6.5	0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6.5	5
3307909000	기타	6.5	0
3401111000	약용비누	6.5	0
3401119000	기타	6.5	7
3401191010	세탁비누	6.5	0
3401191090	기타	6.5	0
340119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6.5	0
3401200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6.5	0
340130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5
3402110000	음이온성	8	0
3402120000	양이온성	8	0
340213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402139000	기타	8	0
3402190000	기타	8	0
3402201000	조제 세제	5	0
3402202000	조제 청정제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402209000	기타	6.5	0
3402901000	조제 계면활성제	6.5	0
3402902000	조제 세제	5	0
3402903000	조제 청정제	6.5	0
34031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1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119000	기타	6.5	0
3403191000	조제 절삭유	6.5	0
3403192000	볼트·너트 방출제	6.5	0
3403193000	방청제나 부식방지제	6.5	0
3403194000	이형(mold release) 조제품	6.5	0
3403195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6.5	0
3403199000	기타	6.5	0
34039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9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919000	기타	6.5	0
3403991000	조제 절삭유	6.5	0
3403992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6.5	0
3403999000	기타	6.5	0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6.5	0
3404901010	클로로 파라핀왁스	6.5	0
3404901030	폴리알킬렌왁스	6.5	0
3404901040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6.5	0
3404901090	기타	6.5	0
3404902000	조제 왁스	6.5	0
34051000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40520000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405300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6.5	0
34054000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6.5	0
3405901010	초크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405901020	규조토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405901030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405901090	기타	6.5	0
3405909000	기타	6.5	0
340600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6.5	0
3407002000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6.5	5
3407003000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501101000	커피 크림어 제조용	8	10
3501109000	기타	20	10
3501901110	커피 크림어 제조용	8	10
3501901190	기타	20	10
3501901200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20	10
3501902000	카세인 글루(casein glue)	20	10
3502110000	건조한 것	8	10
3502190000	기타	8	10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8	10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8	0
3502909000	기타	8	0
3503001010	젤라틴	8	7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8	5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isinglass)	8	5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	8	5
3504001010	펩톤(peptone)	8	0
3504001020	펩톤(peptone) 유도체	8	0
3504002010	케라틴	8	0
3504002020	핵산단백질	8	0
3504002030	유리단백질	8	0
3504002090	기타	8	0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	8	0
3505101000	덱스트린	8	5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8	5
3505103000	배소전분	385.7	X
3505104010	식품용	385.7	X
3505104090	기타	385.7	X
3505105010	식품용	385.7	X
3505105090	기타	385.7	X
3505109010	식품용	385.7	X
3505109090	기타	385.7	X
3505201000	전분 글루(glue)	201.2	X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glue)	201.2	X
3505209000	기타	201.2	X
350610100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506109000	기타	6.5	0
3506910000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506991000	비엔나 글루(glue)	6.5	0
3506992000	화학처리한 천연검에서 얻은 글루(glue)	6.5	0
3506993000	규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6.5	0
3506999000	기타	6.5	0
350710000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6.5	0
3507901010	트립신	6.5	5
3507901020	키모트립신	6.5	5
3507901030	알파아밀라제	6.5	5
3507901040	리파제	6.5	5
3507901090	기타	6.5	5
3507902000	펍신	6.5	5
3507903000	맥아효소	6.5	5
3507904010	파파인	6.5	5
3507904020	브로멜라인	6.5	5
3507904030	피신	6.5	5
3507906010	아밀라제	6.5	5
3507906020	프로테아제	6.5	5
3507907000	펙틴효소	6.5	5
3507908000	시토크롬 시(C) 산화효소	6.5	5
3507909000	기타	6.5	5
3601001000	흑색화약	6.5	0
3601002000	무연화약	6.5	0
360200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6.5	0
3603001000	도화선	6.5	0
3603002000	도폭선	6.5	0
3603003000	뇌관	6.5	0
3603004000	점화기	6.5	0
3603005000	전기뇌관	6.5	0
3604100000	불꽃제품	6.5	0
3604901000	신호용 조명탄	6.5	0
3604909000	기타	6.5	0
3605001000	황린(黃磷) 성냥	6.5	0
3605009000	기타	6.5	0
360610000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6.5	0
3606901010	메타 연료	6.5	0
3606901020	헥사민	6.5	0
3606901030	고체 알코올	6.5	0
3606901090	기타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606902010	라이터 돌	6.5	0
3606902090	기타	6.5	0
3606909010	라이터 돌	6.5	0
3606909090	기타	6.5	0
3701100000	엑스선용	6.5	5
370120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0
3701301000	반도체 제조용	6.5	0
3701309100	인쇄재판용	6.5	0
37013092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1309910	천문용	6.5	0
3701309920	항공촬영용	6.5	0
3701309991	평판디스플레이용 [블랭크마스크 (blank mask) 로 한정한다]	3	0
3701309999	기타	6.5	0
3701911000	반도체 제조용	6.5	0
3701919100	인쇄재판용	6.5	0
37019192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1919910	천문용	6.5	0
3701919920	항공촬영용	6.5	0
3701919990	기타	6.5	0
3701991000	반도체 제조용	3	0
3701999100	인쇄재판용	6.5	0
37019992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1999910	천문용	6.5	0
3701999920	항공촬영용	6.5	0
3701999990	기타	6.5	0
3702100000	엑스선용	6.5	0
3702311110	네거티브	6.5	0
3702311120	포지티브	6.5	0
3702311210	네거티브	6.5	0
3702311220	포지티브	6.5	0
3702311910	네거티브	6.5	0
3702311920	포지티브	6.5	0
3702312000	인쇄재판용	6.5	0
370231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319010	광전복음용	6.5	0
370231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319090	기타	6.5	0
3702321110	네거티브	6.5	0
3702321120	포지티브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702321210	네거티브	6.5	0
3702321220	포지티브	6.5	0
3702321910	네거티브	6.5	0
3702321920	포지티브	6.5	0
370232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3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32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32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32903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0
3702329090	기타	6.5	0
3702391110	네거티브	6.5	0
3702391120	포지티브	6.5	0
3702391210	네거티브	6.5	0
3702391220	포지티브	6.5	0
3702391910	네거티브	6.5	0
3702391920	포지티브	6.5	0
370239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39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39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39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399090	기타	6.5	0
3702411010	네거티브	6.5	0
3702411020	포지티브	6.5	0
370241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41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41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41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419090	기타	6.5	0
3702421010	네거티브	6.5	0
3702421020	포지티브	6.5	0
370242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4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42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42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429090	기타	6.5	0
3702431010	네거티브	6.5	0
3702431020	포지티브	6.5	0
370243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43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70243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43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439090	기타	6.5	0
3702441010	네거티브	6.5	0
3702441020	포지티브	6.5	0
3702442000	인쇄재판용	6.5	0
370244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44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44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449090	기타	6.5	0
3702521010	네거티브	6.5	0
3702521020	포지티브	6.5	0
3702522000	인쇄재판용	6.5	0
37025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2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52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529090	기타	6.5	0
3702530000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6.5	0
3702541010	네거티브	6.5	0
3702541020	포지티브	6.5	0
3702542000	인쇄재판용	6.5	0
370254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4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54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549090	기타	6.5	0
3702551010	네거티브	6.5	0
3702551020	포지티브	6.5	0
3702552000	인쇄재판용	6.5	0
370255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5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55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559090	기타	6.5	0
3702561010	네거티브	6.5	0
3702561020	포지티브	6.5	0
3702562000	인쇄재판용	6.5	0
370256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6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569020	항공촬영용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702569090	기타	6.5	0
3702961010	네가티브	6.5	0
3702961020	포지티브	6.5	0
3702962000	인쇄재판용	6.5	0
370296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96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96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969090	기타	6.5	0
3702971010	네가티브	6.5	0
3702971020	포지티브	6.5	0
3702972000	인쇄재판용	6.5	0
370297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97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97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979090	기타	6.5	0
3702981010	네가티브	6.5	0
3702981020	포지티브	6.5	0
3702982000	인쇄재판용	6.5	0
370298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98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98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989090	기타	6.5	0
3703101010	엑스선용	6.5	0
3703101020	심전계용	6.5	0
3703101030	사진복사용	6.5	0
3703101040	기록용	6.5	0
3703101090	기타	6.5	0
3703109010	엑스선용	6.5	0
3703109020	심전계용	6.5	0
3703109030	사진복사용	6.5	0
3703109040	기록용	6.5	0
3703109090	기타	6.5	0
3703201000	엑스선용	6.5	0
3703202000	심전계용	6.5	0
3703203000	사진복사용	6.5	0
3703204000	기록용	6.5	0
3703209000	기타	6.5	0
3703901000	엑스선용	6.5	0
3703902000	심전계용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703903000	사진복사용	6.5	0
3703904000	기록용	6.5	0
3703909000	기타	6.5	0
3704001110	뉴스용	0	0
370400112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3704001190	기타	0	0
3704001200	오프셋 복사용(엽서·그림엽서·카드·캘린더 제작용으로 한정한다)	0	0
3704001300	반도체 제조용	0	0
3704001900	기타	0	0
3704002000	사진 인화지·판지·직물	6.5	0
3705101000	엽서·그림엽서·카드와 캘린더 제작용	6.5	0
3705109000	기타	0	0
3705901000	반도체 제조용	3	0
3705902010	엑스선 촬영한 것	0	0
3705902020	도서를 복사한 것	0	0
3705902030	서류를 복사한 것	0	0
3705903000	마이크로필름	0	0
3705909010	학술연구용	0	0
3705909020	천문용	0	0
3705909030	항공촬영용	0	0
3705909090	기타	0	0
37061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195 원/m 또는 6.5	0
3706102000	뉴스용	4 원/m 또는 6.5	0
3706103010	편집용 필름(rush)	26 원/m 또는 6.5	0
37061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468 원/m 또는 6.5	0
37061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78 원/m 또는 6.5	0
37061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26 원/m 또는 6.5	0
3706105010	네거티브	1,092 원/m 또는 6.5	0
3706105020	포지티브	182 원/m 또는 6.5	0
3706106010	네거티브	1,560 원/m 또는 6.5	0
3706106020	포지티브	260 원/m 또는 6.5	0
37069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9 원/m 또는 6.5	0
3706902000	뉴스용	5 원/m 또는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5	
3706903010	편집용 필름(rush)	26 원/m 또는 6.5	0
37069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468 원/m 또는 6.5	0
37069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78 원/m 또는 6.5	0
37069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26 원/m 또는 6.5	0
3706905010	네거티브	25 원/m 또는 6.5	0
3706905020	포지티브	8 원/m 또는 6.5	0
3706906010	네거티브	1,092 원/m 또는 6.5	0
3706906020	포지티브	182 원/m 또는 6.5	0
3707100000	감광유제	6.5	0
3707901010	반도체 제조용	6.5	0
370790102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5	0
3707901090	기타	6.5	0
3707902100	천연색 사진용	6.5	0
3707902910	엑스선용	6.5	0
3707902920	인쇄제판용	6.5	0
3707902990	기타	6.5	0
3707903100	천연색 사진용	6.5	0
3707903910	엑스선용	6.5	0
3707903920	인쇄제판용	6.5	0
3707903990	기타	6.5	0
3707909100	증도제와 감도제	6.5	0
3707909200	조색제	6.5	0
3707909300	세정제	6.5	0
3707909400	섬광재료	6.5	0
3707909900	기타	6.5	0
3801101000	이차전지 제조용	4	0
3801109000	기타	6.5	0
380120000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6.5	0
3801300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6.5	0
3801900000	기타	6.5	0
3802100000	활성탄	6.5	0
3802901010	활성 규조토	6.5	0
3802901020	활성토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802901090	기타	6.5	0
3802902000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6.5	0
380300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0
3804001000	액체 상태인 것	6.5	0
3804009000	기타	6.5	0
3805101000	검테레빈유	6.5	0
3805102000	우드테레빈유	6.5	0
3805103000	황산테레빈유	6.5	0
3805900000	기타	6.5	0
3806101000	로진(rosin)	6.5	5
3806102000	수지산	6.5	0
3806201000	로진염	6.5	0
3806202000	수지산염	6.5	0
3806209000	기타	6.5	0
3806300000	에스테르 검(ester gum)	6.5	0
3806902000	런검(gum)	6.5	0
3806903000	로진스피릿과 로진유	6.5	0
3806909000	기타	6.5	0
3807001000	목(木)타르·목(木)타르유·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6.5	0
3807002000	목(木)나프타	6.5	0
3807003000	식물성 피치(pitch)	6.5	0
3807009010	목초액	6.5	5
3807009090	기타	6.5	0
38085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08509000	기타	6.5	0
38089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08919000	기타	6.5	0
3808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08929000	기타	6.5	3
3808931000	제초제	6.5	0
3808932000	발아억제제	6.5	0
3808933000	식물성장조절제	6.5	0
3808940000	소독제	6.5	3
3808991000	살서제(취약)	6.5	0
3808999000	기타	6.5	0
380910000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5
3809910000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809920000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0
38099300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0
38101010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6.5	0
3810109000	기타	6.5	0
3810901000	납불임·땀질이나 용접용의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6.5	0
3810909000	기타	6.5	0
3811110000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1190000	기타	6.5	0
3811210000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5	0
3811290000	기타	5	0
3811900000	기타	6.5	0
38121010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2000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3000	티우람 술파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4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5000	머캅토 벤조티아졸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6000	디벤조티아질 디술파이드(DM)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9000	기타	6.5	0
3812200000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6.5	0
3812301000	산화방지 조제품	6.5	0
3812302000	그 밖의 복합안정제	6.5	0
3813001000	소화기용 조제품	6.5	0
3813002000	소화기용 장전물	6.5	0
3813003000	장전된 소화탄	6.5	0
3814001010	아세톤·초산메틸과 메틸알코올 혼합물	6.5	0
3814001020	초산에틸·부틸알코올과 톨루엔 혼합물	6.5	0
3814001090	기타	6.5	0
3814002110	반도체 제조용	6.5	0
3814002190	기타	6.5	0
3814002900	기타	6.5	0
3815110000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6.5	0
3815121000	백금이나 백금화합물의 것	6.5	0
3815122000	팔라듐이나 팔라듐화합물의 것	6.5	0
3815129000	기타	6.5	0
3815191000	활성물질로서 철이나 철화합물의 것	6.5	0
3815192000	티타늄이나 티타늄화합물의 것	6.5	0
3815199000	기타	6.5	0
3815901000	반응시작제	6.5	0
3815909000	기타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816001000	내화시멘트	6.5	0
3816002000	내화모르타르	6.5	0
3816003000	내화콘크리트	6.5	0
3816009000	기타	6.5	0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 · 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0
3818001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	0	0
3818002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0	0
3819001000	유압제동액	6.5	0
3819002000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6.5	0
3820001000	부동(不凍) 조제품	6.5	0
3820002000	조제 제빙액	6.5	0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식물 · 인간 ·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6.5	3
3822001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0
3822001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0
382200101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 의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1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0
3822001019	기타	0	0
3822001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1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6.5	0
3822001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5	5
3822001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 의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1099	기타	8	0
3822002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0
3822002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0
382200201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 의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2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0
3822002019	기타	0	0
382200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2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6.5	0
3822002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5	0
3822002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 의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822002099	기타	8	0
3822003041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0	0
3822003042	이 표에서 세율이 1 퍼센트인 것	1	0
3822003043	이 표에서 세율이 2 퍼센트인 것	2	0
3822003044	이 표에서 세율이 3 퍼센트인 것	3	0
3822003045	이 표에서 세율이 4 퍼센트인 것	4	0
3822003046	이 표에서 세율이 5 퍼센트인 것	5	0
3822003047	이 표에서 세율이 5.4 퍼센트인 것	5.4	0
3822003048	이 표에서 세율이 6.5 퍼센트인 것	6.5	0
3822003049	이 표에서 세율이 7 퍼센트인 것	7	0
3822003050	이 표에서 세율이 8 퍼센트인 것	8	0
3822003051	이 표에서 세율이 10 퍼센트인 것	10	0
3822003052	이 표에서 세율이 20 퍼센트인 것	20	0
3822003053	이 표에서 세율이 27 퍼센트인 것	27	0
3822003054	이 표에서 세율이 30 퍼센트인 것	30	0
3822003055	이 표에서 세율이 36 퍼센트인 것	36	0
3822003056	이 표에서 세율이 40 퍼센트인 것	40	0
3822003057	이 표에서 세율이 50 퍼센트인 것	50	0
3822003058	제 3706.10.1000 호, 제 3706.10.5020 호, 제 3706.90.6020 호의 것	182 원/m 또는 6.5	0
3822003059	제 3706.10.2000 호, 제 3706.90.2000 호의 것	4 원/m 또는 6.5	0
3822003060	제 3706.10.3010 호, 제 3706.10.4000 호, 제 3706.90.3010 호, 제 3706.90.4000 호의 것	26 원/m 또는 6.5	0
3822003061	제 3706.10.3020 호, 제 3706.90.3020 호의 것	468 원/m 또는 6.5	0
3822003062	제 3706.10.3030 호, 제 3706.90.3030 호의 것	78 원/m 또는 6.5	0
3822003063	제 3706.10.5010 호, 제 3706.90.6010 호의 것	1,092 원/m 또는 6.5	0
3822003064	제 3706.10.6010 호의 것	1,560 원/m 또는 6.5	0
3822003065	제 3706.10.6020 호의 것	260 원/m 또는 6.5	0
3822003066	제 3706.90.1000 호, 제 3706.90.5020 호의 것	8 원/m 또는 6.5	0
3822003067	제 3706.90.5010 호의 것	25 원/m 또는 6.5	0
3823110000	스테아린산	8	0
3823120000	올레인산	8	0
3823130000	톨유(tall oil) 지방산	8	0
3823191000	팔미틴산	8	0
3823192000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8	0
3823199000	기타	8	0
3823701000	세틸 알코올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5	0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5	0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3	0
38237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23709090	기타	5	0
3824100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6.5	0
382430000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824400000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6.5	0
3824500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5	0
382460000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	5
38247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본 재료로 한 세정제	6.5	0
3824719000	기타	6.5	0
382472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에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300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400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82475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5	0
382476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70000	브로모에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에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80000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6.5	0
3824790000	기타	6.5	0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5	0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6.5	0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5	0
3824901000	크롬광 배소물	5	0
3824902100	진공관의 게터(getter)	6.5	0
3824902200	탄소저항 조제품이나 세라믹솔리드 저항 조제품	6.5	0
38249024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24902490	기타	6.5	0
38249031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2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3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킬하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382490340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5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킬하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6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7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8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11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19	기타	6.5	0
382490392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30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그룹 이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탄소화합물 그룹에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로 주로 구성된 화학품의 기타 혼합물	6.5	0
3824903990	기타	6.5	0
3824904100	혼합 폴리에틸렌글리콜	6.5	0
3824904200	이온교환체	6.5	0
3824904300	스케일방지제	6.5	0
3824904400	바니시(vernish)경화제나 글루(glue)의 경화제	6.5	0
3824905100	잉크제거제	6.5	0
3824905200	등사판 원지수정제	6.5	0
3824905300	수정액	6.5	0
3824906100	페인트용 혼합증량제	6.5	0
3824906200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6.5	0
3824906300	소다석회	6.5	0
3824906400	수화실리카겔	6.5	0
3824906500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6.5	0
3824906600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6.5	0
3824907100	도금용 조제품	6.5	0
3824907200	영화파라핀	6.5	0
3824907300	소포제	6.5	0
3824907400	발포제	6.5	0
3824907500	조제 탄산칼슘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824907600	액정용 조제품	6.5	0
3824907700	암모니아성 가스액	6.5	0
3824908010	메틸에틸케톤 퍼록사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24908090	기타	6.5	0
3824909010	미량요소비료(제 31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0
3824909030	추잉껌 베이스	6.5	0
3824909050	나프텐산과 이들의 수불용성염과 이들의 에스테르	6.5	0
3824909061	니코틴을 함유한 것	6.5	0
3824909069	기타	6.5	0
3824909090	기타	6.5	0
3825100000	생활폐기물	6.5	0
3825200000	하수 찌꺼기	6.5	0
3825301000	제 3005 호의 것	0	0
3825302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6.5	0
3825303000	소호 제 4015.11 호의 것	8	0
3825304000	소호 제 9018.3 호의 것	8	0
38254100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490000	기타	6.5	0
3825500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6.5	0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690000	기타	6.5	0
3825900000	기타	6.5	0
38260000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5
390110100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6.5	0
3901109000	기타	6.5	0
3901201000	펄프의 것	6.5	0
3901209000	기타	6.5	0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6.5	0
3901900000	기타	6.5	0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6.5	0
3902200000	폴리이소부틸렌	6.5	0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6.5	0
3902900000	기타	6.5	0
3903110000	발포성의 것	6.5	0
3903190000	기타	6.5	0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6.5	0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6.5	0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903909000	기타	6.5	0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6.5	0
3904220000	가소화한 것	6.5	0
3904300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6.5	0
390440000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6.5	0
3904500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6.5	0
39046100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6.5	0
3904690000	기타	6.5	0
3904900000	기타	6.5	0
3905120000	물에 분산된 것	6.5	0
3905190000	기타	6.5	0
3905210000	물에 분산된 것	6.5	0
3905290000	기타	6.5	0
3905300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3905910000	공중합체(共重合體)	6.5	0
3905990000	기타	6.5	5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6.5	0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8	0
3906909000	기타	8	0
3907100000	폴리아세탈수지	6.5	0
3907201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6.5	0
390720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6.5	0
390720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6.5	0
3907209000	기타	6.5	0
3907301000	반도체 제조용	6.5	0
3907309000	기타	6.5	3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6.5	0
3907500000	알키드수지	6.5	0
3907600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0
3907700000	폴리(락트산)	6.5	0
3907910000	불포화인 것	6.5	0
390799100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0
3907999000	기타	6.5	0
3908101000	폴리아미드 -6	6.5	0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6.5	0
3908103000	폴리아미드 -11, -12, -6,9, -6,10 또는 -6,12	6.5	0
3908900000	기타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3909101000	요소수지	6.5	0
3909102000	티오요소수지	6.5	0
3909200000	멜라민수지	6.5	0
3909300000	그 밖의 아미노수지	6.5	0
3909400000	페놀수지	6.5	0
3909500000	폴리우레탄	6.5	0
3910001000	반도체 제조용	6.5	0
3910009010	실리콘오일	6.5	0
3910009020	실리콘고무	6.5	0
3910009090	기타	6.5	0
3911101000	석유수지	8	0
3911102000	쿠마론·인텐이나 쿠마론-인텐수지	8	0
3911103000	폴리테르펜	8	0
3911901000	폴리숄파이드	6.5	0
3911902000	폴리숄폰	6.5	0
3911903000	푸란수지	6.5	0
3911909000	기타	6.5	0
39121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5	0
3912120000	가소화한 것	5	0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6.5	0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6.5	5
3912319000	기타	6.5	5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6.5	0
3912399000	기타	6.5	0
3912901000	재생 셀룰로오스	6.5	0
3912909000	기타	6.5	5
3913101000	알긴산 나트륨	6.5	0
3913102000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6.5	0
3913109000	기타	6.5	0
3913901000	경화단백질	6.5	0
3913902010	염화고무	6.5	0
3913902020	염산고무	6.5	0
3913902030	산화고무	6.5	0
3913902040	환화고무	6.5	0
3913902090	기타	6.5	0
3913909010	덱스트란	6.5	0
3913909090	기타	6.5	0
3914001000	양이온성의 것	6.5	0
3914009000	기타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15101000	제조 당시 필름·시트(sheet)·판·박(箔) 상태의 것	6.5	0
3915102000	제조 당시 파이프·호스 상태의 것	6.5	0
3915109000	기타	6.5	0
39152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53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5901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5902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5903000	폴리아세탈수지로 만든 것	6.5	0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0
3915905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15909000	기타	6.5	0
3916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2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90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903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904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16909000	기타	6.5	0
3917101000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6.5	0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로 만든 것	6.5	0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23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29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292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17299000	기타	6.5	0
391731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19000	기타	6.5	0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29000	기타	6.5	0
391733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3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39000	기타	6.5	0
391739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9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99000	기타	6.5	0
3917400000	연결구류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1810100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6.5	0
391810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8109000	기타	6.5	0
391890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0
3919100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6.5	0
3919900000	기타	6.5	0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0430000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6.5	0
3920490000	기타	6.5	0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0590000	기타	6.5	0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0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0
3920690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0
392071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07910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0
3920799000	기타	6.5	0
392091000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0
3920920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2093000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0
392094000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0
3920991000	항공기용	6.5	0
3920999010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0
3920999090	기타	6.5	0
3921110000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12000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1300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6.5	0
392114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0
3921191090	기타	6.5	0
3921192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0
3921192090	기타	6.5	0
392119301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193090	기타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21194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19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0
3921194090	기타	6.5	0
392119501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6.5	0
392119502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1195090	기타	6.5	0
392119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0
392119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2119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0
392119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0
3921199090	기타	6.5	0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904010	경질의 것	6.5	0
3921904020	연질의 것	6.5	0
392190501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905090	기타	6.5	0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90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0
3921906090	기타	6.5	0
392190701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190702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6.5	0
392190703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1907090	기타	6.5	0
392190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0
392190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2190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0
392190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0
392190905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6.5	0
3921909090	기타	6.5	0
3922101000	목욕통과 샤워통	6.5	0
3922102000	세면대	6.5	0
3922103000	설거지통	6.5	0
392220000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6.5	0
3922901000	비데	6.5	0
3922909000	기타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2310000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329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0
392330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400000	스풀(spool)·콤프(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50000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900000	기타	6.5	0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5	0
3924901000	비누접시와 통	6.5	0
3924902000	탁상보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6.5	0
3924909000	기타	6.5	0
3925100000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9252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6.5	0
392530000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6.5	0
3925900000	기타	6.5	0
3926101000	필통과 지우개	6.5	0
3926102000	바인더	6.5	0
3926109000	기타	6.5	0
39262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6.5	0
3926300000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6.5	0
3926400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6.5	0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6.5	0
3926902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살·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6.5	0
3926903000	레이블과 태그	6.5	0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6.5	0
3926905000	그림틀·사진틀·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	6.5	0
3926906000	앨범	6.5	0
3926909000	기타	6.5	0
4001100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4001210000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0	0
40012200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0
4001290000	기타	0	0
4001301000	치클검(chicle gum)	2	0
4001309000	기타	2	0
4002110000	라텍스	8	0
4002190000	기타	8	0
4002201000	라텍스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002209000	기타	8	0
4002311000	라텍스	5	0
4002319000	기타	5	0
4002391000	라텍스	5	0
4002399010	염화부틸고무(CIIR)의 것	5	0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5	0
4002410000	라텍스	8	0
4002490000	기타	8	0
4002510000	라텍스	8	0
4002590000	기타	8	0
4002601000	라텍스	8	0
4002609000	기타	8	0
4002701000	라텍스	8	0
4002709000	기타	8	0
4002801000	라텍스	8	0
4002809000	기타	8	0
4002910000	라텍스	8	0
4002991000	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XNBR)의 것	8	0
4002992000	아크릴로니트릴 이소프렌고무(NIR)의 것	8	0
4002993000	티오폴라스트(TM)	8	0
4002999000	기타	8	0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0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 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3	0
40051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8	0
4005109000	기타	8	0
400520000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8	0
4005910000	판·시트(sheet)·스트립	8	0
4005991000	배합고무 라텍스	8	0
4005999000	기타	8	0
400610000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8	0
4006901000	고무막대(rod)	8	0
4006902000	고무관	8	0
4006903000	고무형재(形材)	8	0
4006904000	고무디스크·링·와셔	8	0
4006905000	고무실	8	0
4006909000	기타	8	0
4007001000	고무실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007002000	고무끈	8	0
40081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119000	기타	8	0
40081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199000	기타	8	0
400821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219000	기타	8	0
400829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299000	기타	8	0
40091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0
40091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2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0
40092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3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0
40093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4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0
40094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101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91000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99000	기타	8	0
401031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401032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0
401033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401034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0
401035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036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0390000	기타	8	0
4011101000	라디알 구조의 것	5	0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5	0
4011109000	기타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011201010	림의 지름이 49.53 센티미터 미만인 것	5	0
4011201090	기타	5	0
4011202010	림의 지름이 49.53 센티미터 미만인 것	5	0
4011202090	기타	5	0
4011209000	기타	5	0
4011300000	항공기용	5	0
4011400000	모터사이클용	5	0
4011500000	자전거용	5	0
4011610000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5	0
4011620000	건설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5	0
4011630000	건설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4011690000	기타	5	0
4011920000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5	0
4011930000	건설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5	0
4011940000	건설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4011990000	기타	5	0
4012110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0
4012120000	버스용·화물자동차용	8	0
4012130000	항공기용	5	0
4012190000	기타	8	0
4012201000	항공기용	5	0
40122090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0
401220902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의 것	8	0
4012209090	기타	8	0
4012901010	솔리드 타이어	5	0
4012901020	쿠션 타이어	5	0
4012901030	타이어트래드	5	0
4012901040	타이어 플랩	5	0
4012909010	솔리드 타이어	8	0
4012909020	쿠션 타이어	8	0
4012909030	타이어트래드	8	0
4012909040	타이어 플랩	8	0
4012909090	기타	8	0
4013101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0
4013102000	버스·화물차용	8	0
4013200000	자전거용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013901000	항공기용	5	0
4013909010	모터싸이클 · 모터스쿠터용	8	0
4013909020	산업용 · 농경용	8	0
4013909090	기타	8	0
4014100000	콘돔	8	0
4014901000	젓꼭지	8	0
4014909000	기타	8	0
4015110000	외과용	8	0
4015190000	기타	8	0
4015901000	잠수복	8	0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8	0
4015909000	기타	8	0
401610000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8	0
4016910000	바닥깔개와 매트	8	0
4016920000	지우개	8	0
4016930000	개스킷(gasket) · 와셔(washer) · 그 밖의 실(seal)	8	0
4016940000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0
4016951000	공기 매트리스	8	0
4016952000	베개	8	0
4016953000	쿠션	8	0
4016959000	기타	8	0
4016991010	기구 · 비행선 · 비행기계류 · 글라이더 · 연과 로토슈트의 부품	0	0
4016991090	기타	8	0
4016992000	고무밴드	8	0
4016993000	병마개	8	0
4016999000	기타	8	0
4017001000	경질고무	8	0
4017002000	경질고무의 제품	8	0
41012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	0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1501011	카우하이드(cow hide)	0	0
410150101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0	0
4101501013	옥스하이드(ox hide)	0	0
4101501014	불하이드(bull hide)	0	0
4101501019	기타	0	0
4101501021	카우하이드(cow hide)	0	0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0	0
4101501023	옥스하이드(ox hide)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101501024	불하이드(bull hide)	0	0
4101501029	기타	0	0
4101501090	기타	0	0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1901011	송아지의 원피	0	0
4101901019	기타	0	0
4101901091	송아지의 원피	0	0
4101901099	기타	0	0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2100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0
410221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	0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229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	0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3201010	뱀의 원피	0	0
4103201020	도마뱀의 원피	0	0
4103201030	악어의 원피	0	0
4103201090	기타	0	0
4103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33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	0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3901010	장어류의 원피	0	0
4103901020	캥거루의 원피	0	0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0	0
4103901090	기타	0	0
410390201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3	0
4103902090	기타	3	0
4104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3	0
4104190000	기타	3	0
41044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3	0
4104490000	기타	3	0
410510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3	0
410530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3	0
41062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3	0
41062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3	0
41063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106320000	건조 상태의 컷(크러스트)	5	0
4106400000	파충류의 원피	5	0
4106910000	습윤 상태의 컷[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0
4106920000	건조 상태의 컷(크러스트)	5	0
4107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0
41071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0
4107190000	기타	5	0
41079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0
41079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0
4107990000	기타	5	0
4112000000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5	0
4113100000	산양의 가죽	5	0
4113200000	돼지의 가죽	5	0
4113300000	파충류의 가죽	5	0
4113900000	기타	5	0
4114100000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5	0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5	0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5	0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5	0
4115100000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성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0
4115200000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3	0
4201001000	파충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1009010	안장과 안장용 방석	8	0
4201009020	고삐줄	8	0
4201009030	끈	8	0
4201009040	재갈	8	0
4201009090	기타	8	0
42021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90	기타	8	0
42021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2021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0
42021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0
4202121090	기타	8	0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42021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4202199000	기타	8	0
42022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90	기타	8	0
42022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2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0
42022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0
4202221090	기타	8	0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42022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4202299000	기타	8	0
42023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90	기타	8	0
42023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3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0
42023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0
4202321090	기타	8	0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42023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4202399000	기타	8	0
42029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9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9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9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202911050	강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911090	기타	8	0
42029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9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0
42029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0
4202921090	기타	8	0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42029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4202999000	기타	8	0
4203101010	코트류	13	0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1050	조끼류	13	0
4203101060	바지류	13	0
4203101070	스커트류	13	0
4203101080	오버롤류	13	0
4203101090	기타	13	0
4203102010	코트류	13	0
4203102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2050	조끼류	13	0
4203102060	바지류	13	0
4203102070	스커트류	13	0
4203102080	오버롤류	13	0
4203102090	기타	13	0
4203103010	코트류	13	0
4203103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3050	조끼류	13	0
4203103060	바지류	13	0
4203103070	스커트류	13	0
4203103080	오버롤류	13	0
4203103090	기타	13	0
4203109010	코트류	13	0
4203109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9050	조끼류	13	0
4203109060	바지류	13	0
4203109070	스커트류	13	0
4203109080	오버롤류	13	0
4203109090	기타	13	0
4203211000	야구장갑	1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203212000	골프장갑	13	0
4203213000	스키장갑	13	0
4203214000	모터사이클장갑	13	0
4203215000	배팅장갑	13	0
4203216000	테니스장갑	13	0
4203217000	아이스하키장갑	13	0
4203219000	기타	13	0
4203291000	작업용 장갑	13	0
4203292000	방한용 장갑	13	0
4203293000	운전용 장갑	13	0
4203299000	기타	13	0
420330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13	0
420330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13	0
420330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13	0
420330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13	0
4203301090	기타	13	0
4203309000	기타	13	0
420340000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13	0
4205001110	벨트	8	0
4205001190	기타	8	0
4205001900	그 밖의 가죽제품	8	0
4205002110	벨트	8	0
4205002190	기타	8	0
42050029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	8	0
4206001000	캣거트(catgut)	8	0
4206009000	기타	8	0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0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0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0
4301801000	친칠라의 것	3	0
4301802000	오파섬(opossum)의 것	3	0
4301803000	라쿤(raccoon)의 것	3	0
4301804000	코요테의 것	3	0
4301805000	토끼의 것	3	0
4301806000	사향뒤쥐의 것	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301809000	기타	3	0
4301900000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3	0
4302110000	밍크의 것	5	0
4302191000	비버(beaver)의 것	5	0
4302192000	사향뒤쥐의 것	5	0
4302193000	여우의 것	5	0
4302195000	친칠라의 것	5	0
4302196000	오파섬(opossum)의 것	5	0
4302197000	라쿤(raccoon)의 것	5	0
4302198000	코요테의 것	5	0
4302199010	면양의 것	5	0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Caracul) · 페르시아와 이와 유사한 어린 양 · 인도 · 중국 · 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4302199090	기타	5	0
4302201000	밍크의 것	5	0
4302202000	토끼의 것	5	0
4302203000	비버(beaver)의 것	5	0
4302204000	사향뒤쥐의 것	5	0
4302205000	여우의 것	5	0
4302207000	친칠라의 것	5	0
4302209010	오파섬(opossum)의 것	5	0
4302209020	라쿤(raccoon)의 것	5	0
4302209030	코요테의 것	5	0
4302209090	기타	5	0
430230000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4303101100	밍크의 것	16	0
4303101200	토끼의 것	16	0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16	0
4303101400	비버(beaver)의 것	16	0
4303101500	사향뒤쥐의 것	16	0
4303101600	여우의 것	16	0
4303101800	친칠라의 것	16	0
4303101910	오파섬(opossum)의 것	16	0
4303101920	라쿤(raccoon)의 것	16	0
4303101930	코요테의 것	16	0
4303101990	기타	16	0
4303102100	밍크의 것	16	0
4303102200	토끼의 것	16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4303102300	어린 양의 것	16	0
4303102400	비버(beaver)의 것	16	0
4303102500	사향뒤쥐의 것	16	0
4303102600	여우의 것	16	0
4303102800	친칠라의 것	16	0
4303102910	오파섬(opossum)의 것	16	0
4303102920	라쿤(raccoon)의 것	16	0
4303102930	코요테의 것	16	0
4303102990	기타	16	0
4303900000	기타	16	0
4304001000	인조모피	8	7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8	7
4401100000	멜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2	0
4401210000	침엽수류	2	0
4401221000	펄프 제조용	0	0
4401229000	기타	2	0
4401310000	목재 펠릿(pellet)	2	0
4401390000	기타	2	0
4402101000	성형 목탄	2	3
4402109000	기타	2	3
4402901000	성형 목탄	2	3
4402909000	기타	2	3
4403101000	열대산 목재	0	0
4403102000	활엽수	0	0
4403109000	침엽수	0	0
4403201000	삼나무	0	0
4403202000	미송	0	0
4403203000	적송	0	0
4403204000	전나무	0	0
4403205000	낙엽송	0	0
4403207000	가문비나무	0	0
4403208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	0
4403209000	기타	0	0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0
4403491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 아란(Alan)	0	0
4403492000	케루잉(Keruing) · 라민(Ramin) · 카풀(Kapur) · 티크(Teak) · 종콩(Jongkong) · 멜바우(Merbau) · 제루통(Jelutong) · 캄파스(Kempas)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03493000	오꾸메(Okoumé) · 오베체(Obeche) · 사펠리(Sapelli) · 시뵘(Sipo) · 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 · 마코레(Makoré) · 이로코(Iroko)	0	0
4403494000	티아마(Tiama) · 만소니아(Mansonia) · 이롬바(Ilomba) · 디벤투(Dibétou) · 림바(Limba) · 아조베(Azobé)	0	0
4403495000	마호가니(Mahogany)와 발사(Balsa)	0	0
4403499000	기타	0	0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0	0
4403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0	0
4403991010	자단(rosewood)	0	0
4403991020	흑단(ebony wood)	0	0
4403991040	물푸레나무	0	0
4403991050	호두나무	0	0
4403991090	기타	0	0
4403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0	0
4403993010	사시나무	0	0
4403993020	포플러	0	0
4403993030	단풍나무	0	0
4403993040	느릅나무	0	0
4403993050	자작나무	0	0
4403993060	피나무	0	0
4403994000	오동나무	0	0
4403999011	말라스(Malas)	0	0
4403999012	타운(Taun)	0	0
4403999019	기타	0	0
4403999090	기타	0	0
4404100000	침엽수류	5	5
4404200000	활엽수류	5	5
4405000000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5	5
4406100000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5	5
4406900000	기타	5	5
4407101000	삼나무	5	5
440710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5	5
4407102020	헴록(Hemlock)	5	5
4407102090	기타	5	5
4407103000	적송	5	5
4407104000	전나무	5	5
4407105000	낙엽송	5	5
4407107000	가문비나무	5	5
4407108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5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07109010	편백나무	5	5
4407109090	기타	5	5
44072100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5	5
4407220000	비롤라(Virola)·임부아(Imbuia)·발사(Balsa)	5	5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5	5
4407260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5	5
4407270000	사펠리(Sapelli)	5	5
4407280000	이로코(Iroko)	5	5
4407291000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کمپاس(Kempas)	5	5
4407292000	티크(Teak)	5	5
4407293000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시뽀(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꼬레(Makoré)·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벤투(Dibétou)·림바(Limba)·아조베(Azobé)	5	5
4407299000	기타	5	5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5	5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5	5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5	5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5	5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5	5
4407991010	자단(rosewood)	5	5
4407991020	흑단(ebony wood)	5	5
4407991040	호두나무	5	5
4407991090	기타	5	5
4407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5	5
4407993010	사시나무	5	5
4407993020	포플러	5	5
4407993040	느릅나무	5	5
4407993050	자작나무	5	5
4407993060	피나무	5	5
4407994000	오동나무	5	5
4407999010	열대산 목재(앞에서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5	5
4407999090	기타	5	5
440810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5
4408109100	합판 제조용	2	0
4408109200	무늬목	3	5
4408109910	삼나무	5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08109920	미송	5	5
4408109930	적송	5	5
4408109940	전나무	5	5
4408109950	낙엽송	5	5
4408109960	가문비나무	5	5
4408109970	라디에타소나무	5	5
4408109990	기타	5	5
4408313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5
4408319011	합판 제조용	2	0
4408319012	무늬목	3	5
4408319019	기타	5	5
4408319021	합판 제조용	2	0
4408319022	무늬목	3	5
4408319029	기타	5	5
440839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5
4408399011	합판 제조용	2	0
4408399012	무늬목	3	5
4408399019	기타	5	5
4408399021	합판 제조용	2	0
4408399022	무늬목	3	5
4408399029	기타	5	5
4408399031	합판 제조용	2	0
4408399032	무늬목	3	5
4408399039	기타	5	5
4408399041	합판 제조용	2	0
4408399042	무늬목	3	5
4408399049	기타	5	5
4408399051	합판 제조용	2	0
4408399052	무늬목	3	5
4408399059	기타	5	5
4408399091	합판 제조용	2	0
4408399092	무늬목	3	5
4408399099	기타	5	5
4408901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5
4408909150	합판 제조용	2	0
4408909160	무늬목	3	5
4408909191	자단(Rosewood)	5	5
4408909192	흑단(Ebony wood)	5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08909193	물푸레나무	5	5
4408909194	호두나무	5	5
4408909195	참나무	5	5
4408909199	기타	5	5
4408909210	합판 제조용	2	0
4408909220	무늬목	3	5
4408909290	기타	5	5
4408909370	합판 제조용	2	0
4408909380	무늬목	3	5
4408909391	사시나무	5	5
4408909392	포플러	5	5
4408909393	단풍나무	5	5
4408909394	느릅나무	5	5
4408909395	자작나무	5	5
4408909396	피나무	5	5
4408909410	합판 제조용	2	0
4408909420	무늬목	3	5
4408909490	기타	5	5
4408909912	합판 제조용	2	0
4408909913	무늬목	3	5
4408909914	바보엔(baboen)	5	5
4408909919	기타	5	5
4408909991	합판 제조용	2	0
4408909992	무늬목	3	5
4408909999	기타	5	5
4409101000	사이딩(Siding)	8	12
4409102000	플로어링(Flooring)	8	12
4409109000	기타	8	12
44092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8	12
4409291000	사이딩(Siding)	8	12
4409292000	플로어링(Flooring)	8	12
4409299000	기타	8	12
441011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12
4410112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으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011300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0119000	기타	8	12
441012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10
4410129000	기타	8	12
4410191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10191090	기타	8	10
4410199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10
441019902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019903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0199090	기타	8	10
4410900000	기타	8	10
441112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2
441112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1129000	기타	8	10
441113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2
441113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1139000	기타	8	10
44111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2
4411142010	마루판	8	10
4411142090	기타	8	10
4411149000	기타	8	10
441192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2
4411922010	마루판	8	10
4411922090	기타	8	10
4411929000	기타	8	10
441193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2
4411932010	마루판	8	10
4411932090	기타	8	10
4411939000	기타	8	10
44119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0
4411949000	기타	8	10
441210101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10102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8	10
4412102000	마루판	8	10
4412109010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8	10
4412109090	기타	8	10
4412311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12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이상 4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13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1401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 8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0
4412314020	두께가 8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0
441231500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상 12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2
4412316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2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12317000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321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22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이상 4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23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2401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 8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0
4412324020	두께가 8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0
441232500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상 12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2
4412326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2
4412327000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39101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91090	기타	10	10
441239901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99090	기타	10	10
4412941000	블록보드(blockboard)	8	10
4412942000	라민보드(laminboard)	8	10
4412943000	배튼보드(battenboard)	8	10
441299101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0
4412991019	기타	8	10
441299102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0
4412991029	기타	8	10
441299103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0
4412991039	기타	8	10
4412991041	마루판[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4412991042	마루판(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8	10
4412991043	기타[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4412991049	기타	8	10
4412992010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0
4412992090	기타	8	10
4412993010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0
4412993090	기타	8	10
441299911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999119	기타	8	10
441299919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0
4412999199	기타	8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1299921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999219	기타	8	10
441299929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0
4412999299	기타	8	10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10
441400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8	10
4415100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8	10
4415200000	팔릿(pallet)·박스팔릿(box pallet)·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릿칼라(pallet collar)	8	10
4416000000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텀(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8	10
4417000000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8	10
4418100000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8	10
4418200000	문·문틀·문지방	8	10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8	10
4418500000	지붕을 이는 판자	8	10
4418600000	기둥과 들보	8	10
441871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10
4418719000	기타	8	10
441872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1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10
4418729000	기타	8	1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10
441879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10
4418799000	기타	8	10
4418901000	셀룰러우드패널	8	10
4418909000	기타	8	10
4419001000	대접(공기)	8	10
4419002010	대나무로 만든 것	8	10
4419002090	기타	8	10
4419009000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8	10
4420101000	작은 조각상	8	10
4420109000	기타	8	10
4420901000	마르케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8	10
4420902010	담배상자	8	10
4420902020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10
4420902030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8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20902090	기타	8	10
4420909010	담배용 상자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10
4420909020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8	10
4420909090	기타	8	10
4421100000	옷걸이	8	10
4421901010	보빈	8	10
4421901090	기타	8	10
4421902000	성냥개비의 나무와 신발용의 나무 못	8	10
4421903000	이쑤시개	8	10
442190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8	10
4421905000	부채 · 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이들의 살과 자루(살 ·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8	10
4421909000	기타	8	10
450110000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10
4501900000	기타	8	10
450200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 · 판 모양 · 시트(sheet) 모양 ·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8	10
4503100000	마개	8	10
4503900000	기타	8	10
4504100000	블록 ·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 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 · 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8	10
4504900000	기타	8	10
4601211000	매트류	8	0
4601212000	발	8	0
4601221000	매트류	8	0
4601222000	발	8	0
4601291000	매트류	8	0
4601292000	발	8	0
4601921000	은죽발장(폭이 35 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4601929000	기타	8	0
46019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8	0
4601941000	은죽발장(폭이 35 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4601949000	기타	8	0
4601991000	플라스틱재료로 엮은 시트(sheet) 모양의 물품	8	0
4601999000	기타	8	0
4602111000	바구니	8	10
4602112000	쟁반, 접시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	10
4602119000	기타	8	10
4602120000	등나무로 만든 것	8	1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602191000	골풀제품	8	0
4602199000	기타	8	0
4602900000	기타	8	0
470100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100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0	0
4703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3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3211000	반표백한 것	0	0
4703212000	표백한 것	0	0
4703291000	반표백한 것	0	0
4703292000	표백한 것	0	0
4704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4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42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42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500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	0
470610000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0	0
470620000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	0
4706301000	기계펄프	0	0
4706302000	화학펄프	0	0
4706303000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0	0
4706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691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692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692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693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693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71000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0	0
4707200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470730000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0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48010000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4802100000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0	0
4802200000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0	0
4802400000	벽지용 원지(原紙)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80254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41090	기타	0	0
480254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49090	기타	0	0
480255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51020	복사용지	0	0
480255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51040	팬시지	0	0
4802551090	기타	0	0
480255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59090	기타	0	0
480256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61020	복사용지	0	0
480256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61040	팬시지	0	0
4802561090	기타	0	0
480256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69090	기타	0	0
480257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71020	복사용지	0	0
480257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71040	팬시지	0	0
4802571090	기타	0	0
480257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79090	기타	0	0
480258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1020	팬시지	0	0
4802581090	기타	0	0
4802582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2090	기타	0	0
480258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9090	기타	0	0
480261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11020	복사용지	0	0
480261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11040	팬시지	0	0
4802611090	기타	0	0
480261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19090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80262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21020	복사용지	0	0
480262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21040	팬시지	0	0
4802621090	기타	0	0
480262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29090	기타	0	0
480269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91020	복사용지	0	0
480269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91040	팬시지	0	0
4802691090	기타	0	0
480269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99090	기타	0	0
4803001000	화장지 · 안면용 티슈스톡	0	0
480300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0	0
4803009000	기타	0	0
4804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804190000	기타	0	0
4804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804290000	기타	0	0
480431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4804312000	콘덴서지와 판지	0	0
4804313000	포장지와 판지	0	0
4804319000	기타	0	0
480439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4804392000	콘덴서지와 판지	0	0
4804393000	포장지와 판지	0	0
4804399000	기타	0	0
4804411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11090	기타	0	0
4804419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19090	기타	0	0
4804421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42102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 · 의약품 · 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04421030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04421090	기타	0	0
4804429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80442902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0442903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04429090	기타	0	0
4804491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99000	기타	0	0
4804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80452100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522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04523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04529000	기타	0	0
4804590000	기타	0	0
4805110000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0	0
4805120000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0	0
4805190000	기타	0	0
480524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249000	기타	0	0
480525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259000	기타	0	0
4805300000	아황산포장지	0	0
4805400000	여과지와 판지	0	0
4805500000	펠트지와 판지	0	0
480591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19010	컨텐츠지와 판지	0	0
4805919090	기타	0	0
480592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29000	기타	0	0
480593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39000	기타	0	0
4806100000	황산지	0	0
4806200000	내지지(耐脂紙)	0	0
480630000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0	0
4806401000	글라신지(glassine paper)	0	0
4806409000	기타	0	0
48070000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4808100000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0	0
4808401000	자루(sack)용	0	0
4808409000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808900000	기타	0	0
4809201000	한 겹의 것	0	0
4809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	0
4809901000	전사지	0	0
4809902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 그램 이상인 것	0	0
4809902090	기타	0	0
4809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4809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4809909000	기타	0	0
4810131000	인쇄용·필기용 종지와 판지	0	0
4810139000	기타	0	0
4810141000	인쇄용·필기용 종지와 판지	0	0
4810149000	기타	0	0
4810191000	인쇄용·필기용 종지와 판지	0	0
4810199000	기타	0	0
48102200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0	0
4810290000	기타	0	0
481031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1031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10319000	기타	0	0
481032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1032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10329000	기타	0	0
4810390000	기타	0	0
4810921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이하인 것	0	0
4810921090	기타	0	0
4810922000	아이보리판지	0	0
4810929000	기타	0	0
4810991000	지형지	0	0
4810992000	여과지	0	0
4810999000	기타	0	0
4811101000	루핑지	0	0
4811109000	기타	0	0
4811410000	셀프접착지	0	0
4811490000	기타	0	0
4811511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며 265 그램 이하인 것	0	0
481151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0
4811519019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811519090	기타	0	0
4811590000	기타	0	0
481160000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0	0
4811901010	괘선, 선이나 방안선을 그은 것	0	0
4811901090	기타	0	0
4811902010	셀룰로오스워딩	0	0
4811902090	기타	0	0
48120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0	0
481310000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0	0
481320000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0	0
4813900000	기타	0	0
4814201000	벽지	0	0
4814202000	링크라스타	0	0
4814209000	기타	0	0
4814901010	갈포섬유로 만든 것	0	0
4814901090	기타	0	0
4814909000	기타	0	0
4816201000	한 겹의 것	0	0
4816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	0
4816901000	전사지	0	0
4816902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 그램 이상인 것	0	0
4816902090	기타	0	0
4816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4816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4816905000	등사원지	0	0
4816909000	기타	0	0
4817100000	봉투	0	0
4817200000	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카드	0	0
4817300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지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4818100000	화장지	0	0
4818200000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0	0
481830000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0	0
48185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	0	0
4818900000	기타	0	0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481920000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0
481930000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0	0
481940000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819501000	액체 포장에 적합한 것	0	0
4819509000	기타	0	0
481960000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482010000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 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4820200000	연습장	0	0
482030000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서류철 표지	0	0
4820400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삼입식 카본세트	0	0
482050000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0	0
4820900000	기타	0	0
4821100000	인쇄한 것	0	0
4821900000	기타	0	0
4822100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0	0
4822900000	기타	0	0
4823200000	여과용 종이와 판지	0	0
4823400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이얼	0	0
48236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4823690000	기타	0	0
48237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0	0
4823901010	구멍을 뚫은 카드	0	0
4823901090	기타	0	0
4823902000	전기절연지	0	0
4823903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3019	기타	0	0
482390302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3029	기타	0	0
4823903090	기타	0	0
4823905000	자카드(Jacquard) 직기용 구멍을 뚫은 종이	0	0
482390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9019	기타	0	0
4823909090	기타	0	0
4901101000	국문판	0	0
4901109000	기타	0	0
4901911000	국문판	0	0
4901919000	기타	0	0
4901991000	국문판	0	0
4901999000	기타	0	0
4902101010	신문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902101090	기타	0	0
4902109000	기타	0	0
4902901010	잡지	0	0
4902901090	기타	0	0
4902909010	잡지	0	0
4902909090	기타	0	0
490300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0	0
490400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4905100000	지구의	0	0
4905911000	지도와 해도	0	0
4905919000	기타	0	0
4905990000	기타	0	0
4906001000	설계도	0	0
4906002000	도안	0	0
4906009000	기타	0	0
4907001000	우표(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4907002000	항공화물증권	0	0
4907009000	기타	0	0
4908100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0	0
490890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로서 쿠션 플로어링 시트(sheet)용의 것	0	0
4908909000	기타	0	0
49090000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4910001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것	0	0
4910009000	기타	0	0
491110000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911911000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0	0
4911919000	기타	0	0
4911990000	기타	0	0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1% 또는 5,276 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1010	20 데시텍스 이하인 것	3	0
5002001020	20 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5.56 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 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1030	25.56 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8.89 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 원/kg, 양자 중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고액(율)	
5002001040	28.89 데시텍스를 초과하고 36.67 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 원/kg ,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1050	36.67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51.7% 또는 17,215 원/kg ,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2000	옥사(doupion silk)	3	0
5002009000	기타	8	0
5003001000	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	2	0
5003009000	기타	2	0
500400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3	0
5005001000	견수방사	3	0
5005002000	견방사	3	0
5005003000	견방주사	3	0
5006001000	견사	8	0
5006002000	견수방사	8	0
5006003000	견방사	8	0
5006004000	견방주사	8	0
5006005000	누에의 거트(gut)	8	0
5007100000	견 노일(noil) 직물	13	0
5007201000	생지견직물	13	0
5007202010	홀치기가공	13	0
5007202020	사틴	13	0
5007202030	크렘 데신(crepe de chine)	13	0
5007202090	기타	13	0
5007209000	기타	13	0
5007901000	생지견직물	13	0
5007902000	아세테이트사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3000	그 밖의 인조섬유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4000	양모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9000	기타	13	0
5101110000	깎은 양모	0	0
5101190000	기타	0	0
5101210000	깎은 양모	0	0
5101290000	기타	0	0
5101300000	탄화처리한 것	0	0
51021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2190000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102200000	동물의 거친 털	0	0
51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0	0
5103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	0
510330000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0	0
51040000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0
5105100000	카드(card)한 양모	0	0
5105210000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5105290000	기타	0	0
51053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5390000	기타	0	0
510540000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5106101000	순모의 것	8	0
5106109000	기타	8	0
5106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9000	기타	8	0
5107101000	순모의 것	8	0
5107102000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1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8100000	카드(card)한 것	8	0
5108200000	코움(comb)한 것	8	0
5109101000	양모사	8	0
51091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8	0
5109901000	양모사	8	0
51099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8	0
51100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8	0
5111111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5111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0
5111191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5111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11120000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111300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111900000	기타	13	0
5112111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5112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0
5112191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5112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0
511220000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112300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112900000	기타	13	0
511300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201001000	실면(實綿)	0	0
5201009010	섬유 길이가 2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20	섬유 길이가 23.2 밀리미터 이상 25.4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30	섬유 길이가 25.4 밀리미터 이상 28.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50	섬유 길이가 28.5 밀리미터 이상 34.9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60	섬유 길이가 34.9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520210000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0	0
5202910000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0
5202990000	기타	0	0
520300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520411000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8	0
5204190000	기타	8	0
5204200000	소매용	8	0
52051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119000	기타	8	0
5205121010	370.37 데시텍스 이하 232.56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27 수 이상 43 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1	0
5205121090	기타	8	0
5205129000	기타	8	0
52051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139000	기타	8	0
52051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149000	기타	8	0
52051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159000	기타	8	0
52052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21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2052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229000	기타	8	0
52052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239000	기타	8	0
52052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249000	기타	8	0
520526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269000	기타	8	0
520527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279000	기타	8	0
520528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289000	기타	8	0
52053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319000	기타	8	0
5205321010	370.37 데시텍스 이하 232.56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27 수 이상 43 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1	0
5205321090	기타	8	0
5205329000	기타	8	0
52053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339000	기타	8	0
52053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349000	기타	8	0
52053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359000	기타	8	0
52054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419000	기타	8	0
52054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429000	기타	8	0
52054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439000	기타	8	0
52054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449000	기타	8	0
520546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469000	기타	8	0
520547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479000	기타	8	0
520548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489000	기타	8	0
52061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206119000	기타	8	0
52061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129000	기타	8	0
52061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139000	기타	8	0
52061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149000	기타	8	0
52061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159000	기타	8	0
52062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219000	기타	8	0
52062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229000	기타	8	0
52062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239000	기타	8	0
52062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249000	기타	8	0
52062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259000	기타	8	0
52063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19000	기타	8	0
52063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29000	기타	8	0
52063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39000	기타	8	0
52063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49000	기타	8	0
52063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59000	기타	8	0
52064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419000	기타	8	0
52064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429000	기타	8	0
52064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439000	기타	8	0
52064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449000	기타	8	0
52064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45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20710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7109000	기타	8	0
520790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7909000	기타	8	0
52081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1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1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10	0
52082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2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2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2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10	0
52083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3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3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3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84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4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4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4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85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5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5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599000	기타	10	0
52091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1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1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92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2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2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93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3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1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포함한다]		
52093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94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420000	데님(denim)	10	0
5209430000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4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95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5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5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01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1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199000	기타	10	0
52102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2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299000	기타	10	0
52103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3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3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04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4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499000	기타	10	0
52105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5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11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11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1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1200000	표백한 것	10	0
52113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13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3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14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1420000	데님(denim)	10	0
5211430000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4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15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2115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5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10	0
5212120000	표백한 것	10	0
5212130000	염색한 것	10	0
52121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5212150000	날염한 것	10	0
5212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10	0
5212220000	표백한 것	10	0
5212230000	염색한 것	10	0
52122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5212250000	날염한 것	10	0
530110000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	0
5301210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2	0
5301290000	기타	2	0
5301301000	아마의 토우(tow)	2	0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waste)	2	0
530210000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	0
5302901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2	0
5302902010	대마의 토우(tow)	2	0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waste)	2	0
5303101000	황마	2	0
530310200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	2	0
5303901010	황마	2	0
5303901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	2	0
5303909010	황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0
5303909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0
5305001000	코코넛[코이어(coir)]의 것	2	0
5305002000	아바카의 것	2	0
5305003000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것	2	0
5305009000	기타	2	0
5306101000	순아마사	8	0
5306102000	훈방아마사	8	0
5306201000	순아마사	8	0
5306202000	훈방아마사	8	0
5307101000	황마사	8	0
530710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307201000	황마사	8	0
5307209000	기타	8	0
5308100000	코이어(coir)사	8	0
5308200000	대마사	8	0
5308901000	라미(ramie)사	8	0
5308909000	기타	8	0
5309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0
5309190000	기타	2	0
5309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0
5309290000	기타	2	0
5310101000	황마직물	8	0
5310109000	기타	8	0
5310901000	황마직물	8	0
5310909000	기타	8	0
5311001000	라미(ramie)의 것	8	0
5311002000	대마의 것	8	0
5311003000	종이실(paper yarn)의 것	8	0
5311009000	기타	8	0
5401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11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1109000	기타	8	0
5401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0
5401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401209000	기타	8	0
5402110000	아라미드의 것	8	0
5402191011	타이어 코드사	8	0
5402191012	어망사	8	0
5402191019	기타	8	0
5402191021	타이어 코드사	8	0
5402191022	어망사	8	0
5402191029	기타	8	0
5402191090	기타	8	0
5402199000	기타	8	0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5402311010	나일론 6 의 것	8	0
5402311020	나일론 66 의 것	8	0
5402311090	기타	8	0
540231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402321010	나일론 6 의 것	8	0
5402321020	나일론 66 의 것	8	0
5402321090	기타	8	0
5402329000	기타	8	0
540233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339000	기타	8	0
540234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402390000	기타	8	0
5402440000	탄성사	8	0
5402451010	나일론 6 의 것	8	0
5402451020	나일론 66 의 것	8	0
5402451090	기타	8	0
5402459000	기타	8	0
540246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469000	기타	8	0
540247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479000	기타	8	0
540248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54024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499000	기타	8	0
54025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25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25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599000	기타	8	0
54026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26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26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692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0
5402699000	기타	8	0
5403100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1	0
5403311000	텍스처드사	1	0
5403319000	기타	1	0
5403321000	텍스처드사	1	0
5403329000	기타	1	0
5403331000	텍스처드사	8	0
5403339000	기타	8	0
5403391000	텍스처드사	8	0
5403399000	기타	8	0
5403411000	텍스처드사	1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403419000	기타	1	0
5403421000	텍스처드사	8	0
5403429000	기타	8	0
5403491000	텍스처드사	8	0
5403499000	기타	8	0
5404110000	탄성사	8	0
540412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5404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4192000	폴리우레탄의 것	8	0
5404193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0
5404199000	기타	8	0
5404901000	스트립 모양의 것	8	0
5404909000	기타	8	0
5405001000	모노필라멘트	8	0
5405009000	기타	8	0
5406001000	합성필라멘트사	8	0
5406002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	8	0
5407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20000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8	0
540730000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8	0
5407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7420000	염색한 것	8	0
54074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7440000	날염한 것	8	0
5407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7520000	염색한 것	8	0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7540000	날염한 것	8	0
54076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7612000	염색한 것	8	0
540761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7614000	날염한 것	8	0
54076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7692000	염색한 것	8	0
540769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7694000	날염한 것	8	0
540771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1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40772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29000	기타	8	0
540773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39000	기타	8	0
540774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49000	기타	8	0
54078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19000	기타	8	0
54078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29000	기타	8	0
54078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39000	기타	8	0
54078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49000	기타	8	0
5407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19000	기타	8	0
5407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29000	기타	8	0
54079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39000	기타	8	0
54079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49000	기타	8	0
5408100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408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8220000	염색한 것	8	0
54082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8240000	날염한 것	8	0
5408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8320000	염색한 것	8	0
54083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8340000	날염한 것	8	0
5501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12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01301000	아크릴의 것	8	0
550130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1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501900000	기타	8	0
55020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7.5	0
5502002010	44,000 데시텍스 미만의 것	7.5	0
5502002020	44,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7.5	0
5502009000	기타	7.5	0
550311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119000	기타	8	0
550319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199000	기타	8	0
5503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209010	폴리 트리메탈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503209090	기타	8	0
5503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301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8	0
5503301090	기타	8	0
5503302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302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8	0
5503302090	기타	8	0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503900000	기타	8	0
5504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1	0
550410200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1	0
5504109000	기타	1	0
5504901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4902000	리오셀(lyocell)의 것	2	0
550490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2	0
55052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 의 것	2	0
5506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6109000	기타	8	0
5506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6209000	기타	8	0
5506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6301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8	0
5506301090	기타	8	0
5506302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6302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8	0
5506302090	기타	8	0
5506900000	기타	8	0
55070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700102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8	0
5507001090	기타	8	0
55070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7009000	기타	8	0
5508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8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08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8109000	기타	8	0
55082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08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8209000	기타	8	0
5509111000	강력사	8	0
5509119000	기타	8	0
5509121000	강력사	8	0
5509129000	기타	8	0
5509211000	강력사	8	0
5509219000	기타	8	0
5509221000	강력사	8	0
5509229000	기타	8	0
550931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3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932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3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9410000	단사	8	0
5509420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509510000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8	0
5509520000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8	0
5509530000	주로 면과 혼방한 것	8	0
5509590000	기타	8	0
550961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6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962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6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9691010	아크릴의 것	8	0
5509691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9692010	아크릴의 것	8	0
55096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9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9919000	기타	8	0
5509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9929000	기타	8	0
5509990000	기타	8	0
5510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10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119000	기타	8	0
5510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10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129000	기타	8	0
55102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10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209000	기타	8	0
5510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10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309000	기타	8	0
55109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109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909000	기타	8	0
5511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1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11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11109000	기타	8	0
55112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112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112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511209000	기타	8	0
5511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11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1309000	기타	8	0
55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2191000	염색한 것	10	0
5512192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	0
5512193000	날염한 것	10	0
5512211000	아크릴의 것	10	0
55122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2290000	기타	10	0
5512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2919000	기타	10	0
55129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2999000	기타	10	0
5513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3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55131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0
5513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1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199000	기타	10	0
5513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323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5513239000	기타	10	0
5513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2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299000	기타	10	0
55133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33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3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3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399000	기타	10	0
5513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3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4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513499000	기타	10	0
5514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4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5514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1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4193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직물	10	0
5514199000	기타	10	0
5514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42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55142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0
5514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2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4299000	기타	10	0
551430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5514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44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55144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0
5514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4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4499000	기타	10	0
55151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119000	기타	10	0
55151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129000	기타	10	0
551513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139000	기타	10	0
55151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199000	기타	10	0
55152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219000	기타	10	0
55152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229000	기타	10	0
55152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299000	기타	10	0
5515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515919000	기타	10	0
55159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999000	기타	10	0
5516111000	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 의 것	10	0
5516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19000	기타	10	0
5516121000	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 의 것	10	0
5516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29000	기타	10	0
5516131000	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 의 것	10	0
55161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39000	기타	10	0
5516141000	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 의 것	10	0
55161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49000	기타	10	0
5516211000	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 의 것	10	0
55162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19000	기타	10	0
5516221000	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 의 것	10	0
55162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29000	기타	10	0
5516231000	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 의 것	10	0
55162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39000	기타	10	0
5516241000	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 의 것	10	0
55162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49000	기타	10	0
5516311000	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 의 것	10	0
55163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19000	기타	10	0
5516321000	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 의 것	10	0
55163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29000	기타	10	0
5516331000	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 의 것	10	0
55163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39000	기타	10	0
5516341000	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 의 것	10	0
55163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49000	기타	1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5164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4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19000	기타	10	0
55164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4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29000	기타	10	0
55164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4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39000	기타	10	0
55164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4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49000	기타	10	0
55169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9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19000	기타	10	0
55169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9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29000	기타	10	0
55169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9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39000	기타	10	0
55169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9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49000	기타	10	0
56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6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601290000	기타	8	0
5601301000	섬유의 플록(flock)	8	0
5601309000	기타	8	0
5602101000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	8	0
5602102000	스티치 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8	0
5602211000	피아노 펠트(felt)	8	0
5602219000	기타	8	0
560229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8	0
5602900000	기타	8	0
560311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8	0
5603119000	기타	8	0
560312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8	0
560312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60313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8	0
5603139000	기타	8	0
560314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8	0
5603149000	기타	8	0
560391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2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을 초과하고 70 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3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4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8	0
560410000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5604901000	모조 캣거트(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0
56049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서 침투·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5604909000	기타	8	0
560500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5606001000	짐프사(Gimped yarn)	8	0
5606002000	셔닐사(chenille yarn)	8	0
5606003000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8	0
5606009000	기타	8	0
5607210000	포장용 끈	10	0
5607290000	기타	10	0
5607410000	포장용 끈	10	0
5607490000	기타	10	0
5607500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0
5607901000	제 5303 호의 황마, 방직용 인피섬유로 만든 것	10	0
5607909000	기타	10	0
56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0
5608119000	기타	10	0
560819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0
5608199000	기타	10	0
5608901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5608909000	기타	10	0
5609001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609002000	식물성 섬유로 만든 것(면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8	0
56090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609009000	기타	8	0
5701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7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100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10	0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 깔개	10	0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500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10	0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2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3200000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10	0
570330000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41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704900000	기타	10	0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0
5801101000	파일(pile)직물	13	0
5801102000	셔닐(chenille)직물	13	0
58012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3	0
58012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3	0
58012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3	0
5801260000	셔닐(chenille)직물	13	0
5801271000	절단되지 않은 것	13	0
5801272000	절단된 것	13	0
58013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3	0
58013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3	0
58013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3	0
5801360000	셔닐(chenille)직물	13	0
5801371000	절단되지 않은 것	13	0
5801372000	절단된 것	13	0
58019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3	0
580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8	0
5802190000	기타	8	0
58022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5802300000	터프트(tuft)한 직물	8	0
58030000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8	0
58041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5804102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5804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5804109000	기타	13	0
580421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58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5804292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5804299000	기타	13	0
5804300000	손으로 만든 레이스	13	0
580500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05001090	기타	8	0
5805002000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8	0
5806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06102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806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806109000	기타	8	0
580620000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5806310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806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806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06392000	식물성섬유(면은 제외한다)로 만든 것	8	0
5806399000	기타	8	0
580640000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덱)	8	0
5807101000	레이블(label)	8	0
5807109000	기타	8	0
5807901000	레이블(label)	8	0
5807909000	기타	8	0
580810000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8	0
5808901000	장식용 트리밍(trimming)	8	0
5808909000	기타	8	0
580900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8	0
581010000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810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5810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5810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811001000	견으로 만든 것	8	0
58110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11003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8110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811009000	기타	8	0
590110000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8	0
5901901000	투사포(tracing cloth)	8	0
5901902000	회화용 캔버스	8	0
5901903000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8	0
5902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8	0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8	0
5902900000	기타	8	0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10	0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10	0
5903900000	기타	10	0
5904100000	리놀룸	8	0
5904900000	기타	8	0
5905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8	0
590610000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8	0
5906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8	0
5906990000	기타	8	0
5907001000	건성유의 조제품이나 기름을 도포·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8	0
5907002000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8	0
5907009000	기타	8	0
5908001000	심지	8	0
5908009000	기타	8	0
5909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0
591000000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5911101000	세폭(細幅)직물로 만든 것	8	0
5911109000	기타	8	0
591120000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8	0
591131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8	0
591132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8	0
59114000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8	0
5911900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001101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6001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6001109000	기타	10	0
60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60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6001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6001910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6001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60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6002400000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0
6002900000	기타	10	0
60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6003200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6003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0
6003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0
6003900000	기타	10	0
6004100000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0
6004900000	기타	10	0
6005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5220000	염색한 것	10	0
6005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5240000	날염한 것	10	0
6005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5320000	염색한 것	10	0
60053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5340000	날염한 것	10	0
6005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5420000	염색한 것	10	0
6005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5440000	날염한 것	10	0
6005900000	기타	10	0
6006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6006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6220000	염색한 것	10	0
6006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6240000	날염한 것	10	0
6006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6320000	염색한 것	1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0063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6340000	날염한 것	10	0
6006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6420000	염색한 것	10	0
6006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6440000	날염한 것	10	0
6006900000	기타	10	0
6101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1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1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2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2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2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2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2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31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1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3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4199000	기타	13	0
61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104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04499000	기타	13	0
61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46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6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51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5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5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5909000	기타	13	0
61061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6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6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6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06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6909000	기타	13	0
61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71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1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7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7999000	기타	13	0
61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1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8199000	기타	13	0
61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3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83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3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8999000	기타	13	0
6109101000	티셔츠	13	0
6109109000	기타	13	0
6109901010	티셔츠	13	0
6109901090	기타	13	0
6109902010	티셔츠	13	0
6109902090	기타	13	0
6109903010	티셔츠	13	0
6109903090	기타	13	0
6109909010	티셔츠	13	0
6109909090	기타	13	0
6110110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6110120000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13	0
6110190000	기타	13	0
6110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10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0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0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10909000	기타	13	0
6111201000	의류	8	0
6111202000	부속품	8	0
6111301000	의류	8	0
6111302000	부속품	8	0
6111901000	의류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111902000	부속품	8	0
6112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12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209000	기타	13	0
61123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4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3001000	제 5903 호의 것	13	0
6113002000	제 5906 호의 것	13	0
6113003000	제 5907 호의 것	13	0
6114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14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4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4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14909000	기타	13	0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13	0
61152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115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53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115309000	기타	13	0
611594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1595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1596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5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610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8	0
6116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6116921000	작업용 장갑	8	0
6116929000	기타	8	0
6116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0
6116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61171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171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17103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171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117109000	기타	13	0
6117801000	넥타이류	13	0
6117809000	기타	13	0
6117900000	부분품	13	0
6201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1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1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1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1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1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19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1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1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2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2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29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2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2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3299000	기타	13	0
62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0
6203429000	기타	13	0
62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2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1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199000	기타	13	0
62042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299000	기타	13	0
62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3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399000	기타	13	0
62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499000	기타	13	0
62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5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599000	기타	13	0
62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6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0
6204629000	기타	13	0
62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6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699000	기타	13	0
62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5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5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5909000	기타	1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206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3	0
6206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63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64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64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6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719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199000	기타	13	0
62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79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7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7993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99302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999000	기타	13	0
62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1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8192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8199000	기타	13	0
62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9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8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8999000	기타	13	0
6209201000	의류	8	0
6209202000	부속품	8	0
6209301000	의류	8	0
6209302000	부속품	8	0
620990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209901090	기타	8	0
6209902000	부속품	8	0
6210101000	제 5602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102000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2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2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2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3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3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3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4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4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4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5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5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5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111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119000	기타	13	0
621112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129000	기타	13	0
6211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209000	기타	13	0
62113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13	0
6211329000	기타	13	0
62113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3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11399000	기타	13	0
62114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13	0
6211429000	기타	13	0
62114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4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4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11499000	기타	13	0
62121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12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12109000	기타	13	0
62122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122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212209000	기타	13	0
6212300000	코르슬렛(corselette)	13	0
6212900000	기타	13	0
6213200000	면으로 만든 것	8	0
621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6214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0
6214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6214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0
6214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8	0
621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6215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0
621520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621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6216001000	플라스틱·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것	8	0
6216009000	기타	8	0
6217100000	부속품	13	0
6217900000	부분품	13	0
6301100000	전기모포	10	0
6301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0
630130000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0
630140000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0
630190000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10	0
63021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2109000	기타	13	0
6302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2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3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40000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3	0
63025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25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600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302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3029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303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3199000	기타	13	0
6303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39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303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41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3	0
6304190000	기타	13	0
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3	0
6304920000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0
6304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0
6304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0
6305100000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鞣皮)섬유로 만든 것	8	0
63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8	0
6305320000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6305330000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0
6305390000	기타	8	0
630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6306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300000	돗	13	0
63064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64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9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69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909000	기타	13	0
6307100000	마루뒹이포·접시뒹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10	0
6307200000	구멍재킷과 구멍벨트	10	0
6307901000	신발류 끈	10	0
6307902000	보자기	10	0
6307903000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10	0
6307909000	기타	10	0
63080000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1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8	0
6310100000	선별한 것	8	0
6310900000	기타	8	0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8	0
6401921000	스키부츠	8	0
6401929010	고무로 만든 것	8	0
6401929090	기타	8	5
6401991010	고무로 만든 것	8	0
6401991090	기타	8	0
6401999000	기타	8	0
64021200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13	0
6402190000	기타	13	0
640220000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402911000	방한화	13	0
6402912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2919000	기타	13	0
6402991000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13	0
6402992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2999000	기타	13	5
64031200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13	0
6403190000	기타	13	0
6403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40340000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403511000	드레스화	13	0
6403519000	기타	13	0
6403591000	드레스화	13	0
6403599000	기타	13	0
6403911000	드레스화	13	0
6403912000	등산화	13	0
6403913000	편상화(lace-boots)	13	0
6403914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3919000	기타	13	3
6403991000	드레스화	13	0
6403992000	등산화	13	0
6403993000	편상화(lace-boots)	13	0
6403994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403999000	기타	13	0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4191000	실내화	13	0
6404199000	기타	13	5
6404201000	실내화	13	0
6404209000	기타	13	0
640510000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3	0
6405200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3	0
6405900000	기타	13	0
6406101000	갑피	8	0
6406102000	부분품	8	0
6406201000	바깥바닥	8	0
6406202000	뒷굽	8	0
6406901000	목재로 만든 것	8	0
6406909010	갈아 끼울수 있는 안창	8	0
6406909020	힐 쿠션	8	0
6406909030	각반	8	0
6406909040	레깅	8	0
6406909090	기타	8	0
650100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8	0
650200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6505001000	헤어네트	8	0
6505009011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0
650500901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8	0
6505009021	운동모	8	0
6505009022	베레모	8	0
6505009029	기타	8	0
6505009090	기타	8	0
6506100000	안전모자	8	0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6506991000	가죽으로 만든 것	8	0
6506992000	금속으로 만든 것	8	0
650699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507000000	헤드밴드 · 내장재 · 커버 · 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모자의 프레임(frame) · 챙 · 턱끈	8	0
660110000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13	0
66019100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13	0
6601991000	지팡이 겸용 우산	13	0
6601992000	양산	13	0
6601999000	기타	13	0
6602001000	지팡이	8	0
6602002000	시트스틱(seat-stick)	8	0
6602003000	채찍 · 승마용 채찍	8	0
6602009000	기타	8	0
660320000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13	0
6603900000	기타	13	0
6701000000	새의 깃털이나 송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 깃털과 그 부분 · 송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 깃촉(quill)은 제외한다]	8	0
6702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6702901000	직물로 만든 것	8	0
6702902000	종이로 만든 것	8	0
6702909000	기타	8	0
6703001010	세척 · 정돈한 것	8	0
6703001090	기타	8	0
6703009000	기타	8	0
6704110000	전체가발	8	0
6704191000	부분가발	8	0
6704192000	가수염	8	0
6704193000	가눈썹	8	0
6704194000	가속눈썹	8	0
6704199000	기타	8	0
6704201000	전체가발	8	0
6704202000	부분가발	8	0
6704203000	가수염	8	0
6704204000	가눈썹	8	0
6704205000	가속눈썹	8	0
6704209000	기타	8	0
670490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0
6801000000	포석 · 연석 ·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8	0
6802100000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 · 조각 · 가루	8	0
6802211000	대리석	8	7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802212000	트래버틴(travertine)	8	0
6802213000	설화석고(alabaster)	8	0
6802230000	화강암	8	5
6802291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8	7
6802299000	기타	8	5
6802911000	대리석	8	0
6802912000	트래버틴(travertine)	8	0
6802913000	설화석고(alabaster)	8	0
6802920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8	0
6802930000	화강암	8	5
6802990000	그 밖의 돌	8	5
6803001000	벼루	8	5
6803009000	기타	8	5
680410000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 용·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8	0
6804210000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6804220000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재의 것	8	3
6804230000	천연석으로 만든 것	8	0
6804300000	수지석(手砥石)	8	0
6805100000	방직용 섬유직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80520000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80530000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806101000	슬래그 울(slag wool)	8	0
6806102000	암면(rock wool)	8	0
6806103000	세라믹 파이버	8	0
6806109000	기타	8	0
6806201000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8	0
6806202000	팽창점토	8	0
6806204000	팽창퍼라이트	8	0
6806209000	기타	8	0
6806901000	내화피복재	8	0
6806909000	기타	8	0
6807100000	롤 모양인 것	8	0
6807900000	기타	8	0
6808000000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8	0
6809110000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809190000	기타	8	0
6809900000	그 밖의 제품	8	0
6810111000	블록	8	0
6810112000	벽돌	8	0
6810191000	타일	8	0
6810192000	판석	8	0
6810193000	기와(지붕타일)	8	0
6810199000	기타	8	0
68109100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8	0
6810991000	빔(beam)과 거더(girder)	8	0
6810992000	파일	8	0
6810993000	전신주	8	0
6810994000	철도 받침목	8	0
6810995000	관	8	0
6810999000	기타	8	0
6811401010	지붕·천장·벽과 바닥재용	8	0
6811401090	기타	8	0
6811402010	지붕·천장·벽과 바닥재용	8	0
6811402090	기타	8	0
6811403000	관·관의 연결구류	8	0
6811409010	지붕·천장·벽과 바닥재용	8	0
6811409090	기타	8	0
6811810000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8	0
6811820000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8	0
6811891000	관·관의 연결구류	8	0
6811899000	기타	8	0
6812801000	의류·의류부속품·신발·모자류	8	0
6812802000	종이·표지용 판지·펠트(felt)	8	0
6812803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트(jointing)	8	0
6812809000	기타	8	0
6812910000	의류·의류 부속품·신발·모자류	8	0
6812920000	종이·표지용 판지·펠트(felt)	8	0
6812930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트(jointing)	8	0
6812990000	기타	8	0
6813201010	자동차용	8	0
6813201090	기타	8	0
6813202010	자동차용	8	0
681320209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813209010	자동차용	8	0
6813209090	기타	8	0
6813810000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8	0
6813891000	클러치 페이싱	8	0
6813899000	기타	8	0
681410000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6814900000	기타	8	0
6815101000	비전기용 흑연제품	8	0
6815102000	탄소섬유	8	0
6815109000	기타	8	0
6815200000	이탄(泥炭)제품	8	0
6815910000	마그네사이트·백운석·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8	0
6815990000	기타	8	5
6901001000	벽돌	8	0
6901002000	블록	8	0
6901003000	타일	8	0
6901009010	슬래브와 패널	8	0
6901009090	기타	8	0
6902100000	마그네슘·칼슘·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8	0
6902200000	알루미나·실리카,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8	0
6902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902909000	기타	8	0
6903101000	레토르트(retort)	8	0
6903102010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3	0
6903102090	기타	8	0
6903103000	반응그릇	8	0
6903104000	머플	8	0
6903105000	노즐	8	0
6903106000	플러그(plug)	8	0
6903107000	관(管)	8	0
6903108000	막대(bar, rod)	8	0
6903109000	기타	8	0
6903201000	레토르트(retort)	8	0
6903202000	도가니	8	0
6903203000	반응그릇	8	0
6903204000	머플	8	0
6903205000	노즐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903206000	플러그(plug)	8	0
6903207000	관(管)	8	0
6903208000	막대(bar, rod)	8	0
6903209000	기타	8	0
6903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903909010	레토르트(retort)	8	0
6903909020	도가니	8	0
6903909030	반응그릇	8	0
6903909040	머플	8	0
6903909050	노즐	8	0
6903909060	플러그(plug)	8	0
6903909070	관(管)	8	0
6903909080	막대(bar, rod)	8	0
6903909090	기타	8	0
6904100000	건축용 벽돌	8	0
6904900000	기타	8	0
6905100000	기와(지붕타일)	8	0
6905901000	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	8	0
6905902000	건축용 장식품	8	0
6905909000	기타	8	0
6906001000	관(管)·도관(導管)·홍통	8	0
6906002000	관의 연결구류	8	0
6907101000	자기제의 것	8	0
6907109000	기타	8	0
6907901000	자기제의 것	8	0
6907909000	기타	8	0
6908101000	자기제의 것	8	0
6908109000	기타	8	0
6908901000	자기제의 것	8	0
6908909000	기타	8	0
6909110000	자기제의 것	8	0
69091200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8	0
6909190000	기타	8	0
6909900000	기타	8	0
6910101000	세면대	8	0
6910102000	목욕통	8	0
6910103000	수세식 변기통	8	0
6910104000	소변기	8	0
691010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910900000	기타	8	0
6911101000	커피 세트 · 티세트	8	0
6911102000	공기, 대접과 접시	8	0
6911109000	기타	8	0
6911901000	가정용품	8	0
6911902000	화장용품	8	0
6911909000	기타	8	0
6912001010	커피 세트 · 티세트	8	0
6912001020	공기, 대접과 접시	8	0
6912001090	기타	8	0
6912002000	가정용품	8	0
6912003000	화장용품	8	0
6912009000	기타	8	0
6913101000	조각상 · 작은 조각상 · 흉상	8	0
6913109020	식탁장식용품	8	0
6913109090	기타	8	0
6913901000	조각상 · 작은 조각상 · 흉상	8	0
6913909020	식탁장식용품	8	0
6913909090	기타	8	0
6914101000	화분	8	0
6914109000	기타	8	0
6914901000	화분	8	0
6914909000	기타	8	0
7001001000	괴(塊)	5	0
7001002000	웨이스트(waste) · 스크랩(scrap), 깨진 유리	3	0
7002100000	구(球)	8	0
700220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02209000	기타	8	0
700231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02319000	기타	8	0
70023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0
7002390000	기타	8	0
700312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하고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0312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319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하고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하고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하고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하고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320000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8	0
7003300000	프로파일(profile)	8	0
70042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하고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하고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하고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하고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49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하고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하고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하고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하고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101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1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하고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1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하고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1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102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2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하고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2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하고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2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109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9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하고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9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하고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9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21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하고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0521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701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7020	두께가 10 밀리미터 초과하고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7030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291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5291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0
7005291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5291040	액정 디스플레이용	8	0
7005291091	맑은 유리	8	0
7005291092	저철분 유리	8	0
7005291099	기타	8	0
7005292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5292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0
7005292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5292091	맑은 유리	8	0
7005292092	저철분 유리	8	0
7005292099	기타	8	0
7005293010	맑은 유리	8	0
7005293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3090	기타	8	0
7005294010	맑은 유리	8	0
7005294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4090	기타	8	0
7005295010	맑은 유리	8	0
7005295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5090	기타	8	0
7005296010	맑은 유리	8	0
7005296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6090	기타	8	0
7005297010	맑은 유리	8	0
7005297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7090	기타	8	0
7005298010	맑은 유리	8	0
7005298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8090	기타	8	0
7005299010	맑은 유리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05299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9090	기타	8	0
7005300000	망입(網入) 유리	8	0
700600100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600200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0
700600300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6004000	액정 디스플레이용	8	0
7006009000	기타	8	0
7007111000	두께가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7112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7191000	두께가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7192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7211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0
7007212000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0
7007291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0
7007292000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0
700800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8	0
700910000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	0
7009910000	틀이 붙지 않은 것	8	0
7009920000	틀이 붙은 것	8	0
7010100000	앰플	8	0
701020000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8	0
7010900000	기타	8	0
7011100000	전등용	8	0
7011201000	천연색용	8	0
7011209000	기타	8	0
7011900000	기타	8	0
7013100000	유리 도자제의 것	8	0
701322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0
7013280000	기타	8	0
701333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0
7013370000	기타	8	0
70134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0
70134200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8	0
7013490000	기타	8	0
70139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0
7013990000	기타	8	0
7014001000	실드빔 램프(sealed beam lamp)의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14009010	신호용 유리제품	8	0
7014009020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	8	0
7015100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8	0
7015901000	선글라스용	8	0
7015902000	시계용 유리 와 이와 유사한 것	8	0
7015909000	기타	8	0
701610000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8	0
7016901000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8	0
7016909010	레드라이트(leaded light)	8	0
7016909020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8	0
7016909090	기타	8	0
7017100000	석영유리 또는 그 밖의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8	0
70172000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0
7017900000	기타	8	0
7018101000	비드(bead)	8	0
7018102000	모조 진주	8	0
7018103000	모조 귀석과 반귀석	8	0
7018104000	모조 산호	8	0
7018109000	기타	8	0
7018200000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8	0
7018901000	유리안구(인체용은 제외한다)	8	0
7018909000	기타	8	0
7019110000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7019120000	로빙(roving)	8	0
7019190000	기타	8	0
7019310000	매트(mat)	8	0
7019320000	얇은 시트(sheet)(보일)	8	0
7019390000	기타	8	0
7019400000	로빙(roving) 직물	8	0
7019510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7019520000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7019590000	기타	8	0
7019901000	글라스울(glass wool)	8	0
7019909000	기타	8	0
7020001011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7020001012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석영 도가니	3	0
702000101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20001019	기타	8	0
7020001090	기타	8	0
7020009000	기타	8	0
7101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	8	0
7101102000	가공한 것	8	0
7101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	8	0
7101220000	가공한 것	8	0
7102100000	선별하지 않은 것	1	0
71022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	0
7102290000	기타	5	0
71023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	0
7102390000	기타	5	0
7103100000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1	0
7103911000	공업용	5	0
7103919010	루비	5	0
7103919020	사파이어	5	0
7103919030	에메랄드	5	0
7103991000	공업용	5	0
7103999010	오팔	5	0
7103999020	비취	5	0
7103999030	옥수(玉髓)	5	0
7103999040	수정	5	0
7103999090	기타	5	0
7104100000	압전기용 석영	5	0
7104201000	다이아몬드	5	0
7104209000	기타	5	0
7104901010	다이아몬드	5	0
7104901020	인조수정	5	0
7104901090	기타	5	0
7104909010	다이아몬드	5	0
7104909090	기타	5	0
7105101000	천연의 것	5	0
7105102000	합성한 것	5	0
7105901000	석류석의 것	5	0
7105909000	기타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106100000	가루	3	5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3	0
7106919000	기타	3	0
710692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0
710692200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3	0
7106923000	선	3	0
7106929000	기타	3	0
710700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0
710700200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3	0
7107003000	선	3	0
7107004000	관(管)과 중공(中空)봉	3	0
7107009000	기타	3	0
7108110000	가루	3	0
7108121000	럼프(lump)·빌릿(billet)·알갱이	3	0
7108129000	기타	3	5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	3	0
7108131090	기타	3	0
710813901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0
710813902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3	0
7108139090	기타	3	0
7108200000	화폐용	0	0
710900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0
7110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0
7110190000	기타	3	0
7110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0
7110290000	기타	3	0
71103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0
7110390000	기타	3	0
71104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0
7110490000	기타	3	0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0
711230000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2	0
711291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19000	기타	3	0
711292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29000	기타	3	0
711299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 ing)·스크랩(scrap)의 것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112999000	기타	3	0
71131100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7113191000	백금으로 만든 것	8	0
7113192000	금으로 만든 것	8	0
7113199000	기타	8	0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8	0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8	0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8	0
7113209000	기타	8	0
7114111000	식탁용	8	0
7114112000	화장실용	8	0
711411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8	0
7114114000	깍연용	8	0
7114119000	기타	8	0
7114191000	식탁용	8	0
7114192000	화장실용	8	0
711419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8	0
7114194000	깍연용	8	0
7114199000	기타	8	0
7114201000	식탁용	8	0
7114202000	화장실용	8	0
711420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8	0
7114204000	깍연용	8	0
7114209000	기타	8	0
711510000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7115901010	백금 도가니	8	0
7115901090	기타	8	0
7115909010	금으로 만든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0
7115909020	은으로 만든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0
7115909090	기타	8	0
7116101000	천연진주로 만든 것	8	0
7116102000	양식진주로 만든 것	8	0
7116201000	공업용	8	0
7116209010	신변장식용	8	0
7116209090	기타	8	0
7117110000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8	0
7117191000	목걸이	8	0
7117192000	팔찌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117193000	귀걸이	8	0
7117194000	브로치	8	0
7117195000	반지	8	0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8	0
7117199000	기타	8	0
7117900000	기타	8	0
711810000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	0
7118901000	금화	0	0
7118902000	은화	0	0
7118909000	기타	0	0
7201101000	주물용	0	0
7201102000	제강용	0	0
7201109000	기타	0	0
7201200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01501000	합금선철	2	0
7201502000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2	0
72021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5	0
7202190000	기타	5	0
7202210000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2	0
7202291000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	3	0
7202299000	기타	3	0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5	0
72024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2	0
7202490000	기타	2	0
720250000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2	0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3	0
720270000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3	0
720280000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텅스텐(ferro-silico-tungsten)	3	0
7202910000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3	0
7202920000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3	0
7202930000	페로니오븀(ferro-niobium)	3	0
7202991000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0
7202999000	기타	3	0
720310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0
7203900000	기타	1	0
720410000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7204290000	기타	0	0
720430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204410000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7204490000	기타	0	0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0	0
7205101000	숫(shot)	5	0
7205102000	그릿(grit)	5	0
7205109000	기타	5	0
7205210000	합금강의 것	3	0
7205290000	기타	3	0
7206100000	잉곳(ingot)	0	0
7206900000	기타	0	0
7207111000	블룸(bloom)	0	0
7207112000	빌릿(billet)	0	0
7207121000	슬래브	0	0
7207122000	시트바(sheet bar)	0	0
7207190000	기타	0	0
7207201000	블룸(bloom)	0	0
7207202000	빌릿(billet)	0	0
7207203000	슬래브	0	0
7207204000	시트바(sheet bar)	0	0
7207209000	기타	0	0
72081010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081090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0825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59000	기타	0	0
720826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69000	기타	0	0
720827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79000	기타	0	0
720836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69000	기타	0	0
720837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79000	기타	0	0
720838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89000	기타	0	0
720839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99000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20840000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0	0
720851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19000	기타	0	0
720852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29000	기타	0	0
720853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39000	기타	0	0
720854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49000	기타	0	0
7208900000	기타	0	0
720915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59000	기타	0	0
720916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69000	기타	0	0
720917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79000	기타	0	0
720918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89000	기타	0	0
720925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59000	기타	0	0
720926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69000	기타	0	0
720927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79000	기타	0	0
720928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89000	기타	0	0
7209900000	기타	0	0
7210110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0120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020000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합석판을 포함한다)	0	0
72103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309000	기타	0	0
7210410000	물결 모양의 것	0	0
7210491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491090	기타	0	0
721049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499090	기타	0	0
721050000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0690000	기타	0	0
7210701000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	0
7210702000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	0
72109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09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0909000	기타	0	0
7211130000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0	0
721114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149000	기타	0	0
721119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199000	기타	0	0
721123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239000	기타	0	0
721129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299000	기타	0	0
72119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909000	기타	0	0
7212101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2102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22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209000	기타	0	0
7212301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301090	기타	0	0
721230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309090	기타	0	0
7212401000	두께가 4.75mm 이상인 것	0	0
7212402000	두께가 4.75mm 미만인 것	0	0
72125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25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2509000	기타	0	0
7212600000	클래드(clad)한 것	0	0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0	0
721320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391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0	0
7213911090	기타	0	0
7213919000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21399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0	0
7213991090	기타	0	0
7213999000	기타	0	0
7214100000	단조(鍛造)한 것	0	0
7214201000	철근	0	0
7214209000	기타	0	0
7214300000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4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0	0
721499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0	0
7214999000	기타	0	0
7215100000	괘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550000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5900000	기타	0	0
7216101000	유(U)형강	0	0
7216102000	아이(I)형강	0	0
7216103000	에이치(H)형강	0	0
7216210000	엘(L)형강	0	0
7216220000	티(T)형강	0	0
7216310000	유(U)형강	0	0
7216320000	아이(I)형강	0	0
7216333000	높이가 300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6334000	높이가 300 밀리미터 이상 6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216335000	높이가 60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216401000	엘(L)형강	0	0
7216402000	티(T)형강	0	0
721650000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66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0	0
7216690000	기타	0	0
72169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0	0
7216990000	기타	0	0
721710000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7217200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7301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7309000	기타	0	0
7217900000	기타	0	0
7218101000	잉곳(ingot)	0	0
7218109000	기타	0	0
7218911000	슬래브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218912000	시트바(sheet bar)	0	0
7218919000	기타	0	0
7218991000	블룸(bloom)	0	0
7218992000	빌릿(billet)	0	0
7218999000	기타	0	0
721911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111090	기타	0	0
7219119000	기타	0	0
721912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121090	기타	0	0
7219129000	기타	0	0
721913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131090	기타	0	0
7219139000	기타	0	0
721914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141090	기타	0	0
7219149000	기타	0	0
721921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211090	기타	0	0
7219219000	기타	0	0
721922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221090	기타	0	0
7219229000	기타	0	0
721923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231090	기타	0	0
7219239000	기타	0	0
721924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241090	기타	0	0
7219249000	기타	0	0
721931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311090	기타	0	0
7219319000	기타	0	0
721932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321090	기타	0	0
7219329000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21933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331090	기타	0	0
7219339000	기타	0	0
721934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341090	기타	0	0
7219349000	기타	0	0
721935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351090	기타	0	0
7219359000	기타	0	0
721990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901090	기타	0	0
7219909000	기타	0	0
722011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20111090	기타	0	0
7220119000	기타	0	0
722012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20121090	기타	0	0
7220129000	기타	0	0
722020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20201090	기타	0	0
7220209000	기타	0	0
722090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20901090	기타	0	0
7220909000	기타	0	0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2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7222190000	기타	0	0
722220000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2300000	그 밖의 봉	0	0
7222400000	형강(形鋼)	0	0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0	0
7224101000	잉곳(ingot)	0	0
7224109000	기타	0	0
7224901000	블룸(bloom)	0	0
7224902000	빌릿(billet)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224903000	슬래브	0	0
7224904000	시트바(sheet bar)	0	0
7224909000	기타	0	0
7225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0
7225190000	기타	0	0
72253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30901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309091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이고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25309092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이고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25309099	기타	0	0
72254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40901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409091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이며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25409092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이고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25409099	기타	0	0
72255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509000	기타	0	0
722591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1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19090	기타	0	0
722592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29011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29019	기타	0	0
7225929091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29099	기타	0	0
722599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99000	기타	0	0
7226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0
7226190000	기타	0	0
72262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691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이고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26912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이고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26919000	기타	0	0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0
7226991000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 미크론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6992000	아연을 전해도금이나 전해 도포한 것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226993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이나 도포한 것	0	0
7226999000	기타	0	0
72271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7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7227901000	내열강의 것	0	0
722790901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이고 전 중량의 100 분의 0.003 미만인 것	0	0
722790902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3 이상인 것	0	0
7227909090	기타	0	0
7228100000	고속도강의 붕	0	0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붕	0	0
722830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인 것	0	0
7228309000	기타	0	0
722840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인 것	0	0
7228409000	기타	0	0
7228500000	그 밖의 붕[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8601000	철근(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8609000	기타	0	0
722870101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인 것	0	0
7228701090	기타	0	0
7228709000	기타	0	0
7228800000	중공(中空)드릴봉	0	0
7229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7229901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1090	기타	0	0
7229902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2090	기타	0	0
7229909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9090	기타	0	0
7301101000	유(U)형	0	0
7301109000	기타	0	0
7301201000	유(U)형강	0	0
7301202000	에이치(H)형강	0	0
7301203000	아이(I)형강	0	0
7301209000	기타	0	0
7302101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1090	기타	0	0
7302102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2090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302103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3090	기타	0	0
7302104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4090	기타	0	0
730230000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8	0
73024000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0	0
7302900000	기타	0	0
7303001010	구상흑연 주철로 만든 것	8	0
7303001090	기타	8	0
7303002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0
730411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7304190000	기타	0	0
730422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0	0
7304230000	그 밖의 드릴파이프	0	0
7304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4290000	기타	0	0
73043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390000	기타	0	0
73044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490000	기타	0	0
73045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590000	기타	0	0
7304900000	기타	0	0
7305111000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422.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305112000	바깥지름이 1,422.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30512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5190000	기타	0	0
7305200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0	0
7305311000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0	0
7305312000	전기저항 용접한 것	0	0
7305319000	기타	0	0
7305390000	기타	0	0
7305900000	기타	0	0
7306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6190000	기타	0	0
7306211000	케이싱	0	0
7306212000	튜빙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306291000	케이싱	0	0
7306292000	튜브	0	0
730630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301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	0
7306301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7306301090	기타	0	0
7306302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302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	0
7306302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7306302090	기타	0	0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306500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661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611090	기타	0	0
730661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730661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730669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691090	기타	0	0
730669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730669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7306901000	이중벽(double wall) 강관	0	0
7306909000	기타	0	0
730711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8	0
7307190000	기타	8	0
7307210000	플랜지(flange)	8	0
73072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7229000	기타	8	0
73072300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8	0
7307290000	기타	8	0
7307910000	플랜지(flange)	8	0
73079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7929000	기타	8	0
7307930000	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8	0
7307991000	나선가공한 것(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7307999000	기타	8	0
7308100000	다리wa 교량	0	0
7308200000	탑과 격자주(格子柱)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3083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0
7308400000	비계(飛階)·차단기·지주·광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8	0
7308901000	수문	0	0
7308909000	기타	0	0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731010000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8	0
7310210000	납땀이나 크리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8	0
7310290000	기타	8	0
7311001000	용적이 30 리터 이하인 것	8	0
7311002000	용적이 30 리터를 초과하고 100 리터 이하인 것	8	0
7311003000	용적이 1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8	0
7312101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1019	기타	0	0
7312101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1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1099	기타	0	0
7312102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2019	기타	0	0
7312102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2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2099	기타	0	0
7312900000	기타	0	0
7313001000	유자선(有刺銃)	0	0
7313009000	기타	0	0
7314120000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14140000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14190000	기타	0	0
7314200000	그릴·망·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143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314390000	기타	0	0
73144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3144200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7314490000	기타	0	0
731450000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315110000	롤러체인(roller chain)	8	0
7315120000	그 밖의 체인	8	0
7315190000	부분품	8	0
7315200000	스키드체인(skid chain)	8	0
7315810000	스터드링크(stud-link)	8	0
73158200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7315890000	기타	8	0
7315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0
7316001000	닢	8	0
7316002000	부분품	8	0
7317001011	도금·도포·페인트한 것	0	0
7317001019	기타	0	0
7317001021	도금·도포·페인트한 것	0	0
7317001029	기타	0	0
7317002000	압정	0	0
7317003000	제도용과 사무용 핀	0	0
7317004000	파형 못	0	0
7317005000	스테이플	0	0
7317009000	기타	0	0
7318110000	코치 스크루(coach screw)	8	0
7318120000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8	0
7318130000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8	0
7318140000	셀프타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8	0
7318151000	머신스크루(screw)	8	0
7318152000	볼트(bolt)	8	0
7318153000	볼트(bolt)·너트(nut)(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7318159000	기타	8	0
7318160000	너트(nut)	8	0
7318190000	기타	8	0
7318210000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8	0
7318220000	그 밖의 와셔(washer)	8	0
7318230000	리벳(rivet)	8	0
7318240000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8	0
7318290000	기타	8	0
7319401000	안전핀	8	0
7319402000	반도체 웨이퍼·반도체 디바이스의 측정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핀	8	0
7319409000	기타	8	0
7319901010	수봉침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319901020	수편침	8	0
7319901090	기타	8	0
7319909000	기타	8	0
7320101000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8	0
7320102000	기관차·철도 차량용 판상 스프링	8	0
7320109000	기타	8	0
7320201000	자동차용	8	0
7320202000	충격 흡수용	8	0
7320203000	철도차량 연계완충기용	8	0
7320204000	가구용	8	0
7320209000	기타	8	0
7320901000	평나선형 스프링	8	0
7320909000	그 밖의 스프링	8	0
73211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8	0
7321120000	액체연료용	8	0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8	0
73218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8	0
7321820000	액체연료용	8	0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8	0
7321900000	부분품	8	0
7322111000	방열기	8	0
7322112000	부분품	8	0
7322191000	방열기	8	0
7322192000	부분품	8	0
732290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8	0
7322909010	공기가열기	8	0
7322909020	온풍배분기	8	0
7322909030	부분품	8	0
732310000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0
732391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8	0
732392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8	0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0
73239400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8	0
7323990000	기타	8	0
7324101000	설거지통	8	0
7324102000	세면대	8	0
7324210000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7324291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324299000	기타	8	0
7324901000	화장용 세트	8	0
7324908000	기타	8	0
7324909000	부분품	8	0
732510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8	0
73259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325991000	주철로 만든 것	8	0
7325992000	주강으로 만든 것	8	0
7325993000	합금강으로 만든 것	8	0
7325999000	기타	8	0
73261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326190000	기타	8	0
732620000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8	0
7326901000	방직기계용 보빈(bobbin)	8	0
7326909000	기타	8	0
7401001000	구리의 매트(mat)	0	0
7401002000	시멘트동(침전동)	0	0
7402001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0	0
7402002000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0	0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3	0
7403120000	와이어바(wire-bar)	5	0
7403130000	빌릿(billet)	5	0
7403191000	슬래브	5	0
7403192000	잉곳(ingot)	5	0
7403199000	기타	5	0
7403210000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5	0
7403220000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5	0
7403291010	구리-니켈의 합금(백동)	5	0
7403291020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5	0
7403299000	기타	5	0
740400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40500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5	0
7406100000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8	0
7406201000	충상조직인 가루	8	0
7406202000	플레이크(flake)	8	0
7407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0
7407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0
7407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0
740729201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40729202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0
7407299000	기타	8	0
7408110000	황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408190000	기타	8	0
7408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0
7408221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0
7408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0
7408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0
7408299000	기타	8	0
740911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119000	기타	8	0
740919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199000	기타	8	0
740921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219000	기타	8	0
740929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299000	기타	8	0
740931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319000	기타	8	0
740939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399000	기타	8	0
740940101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401090	기타	8	0
740940201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402090	기타	8	0
740990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909000	기타	8	0
741011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0
741012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8	0
741021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8	0
7410219000	기타	8	0
741022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8	0
7410229000	기타	8	0
7411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0
7411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0
7411221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0
7411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0
7411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0
741129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412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	0
741220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3	0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3	0
7415101000	귀금속을 도금·피복·도포한 것	8	0
7415109000	기타	8	0
7415210000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8	0
7415290000	기타	8	0
7415330000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8	0
7415390000	기타	8	0
7418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0
7418109010	식탁용품·주방용품	8	0
741810902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5	0
7418109030	그 밖의 가정용 물품	8	0
7418109091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용	5	0
7418109099	기타	8	0
7418201000	위생용품	8	0
7418202000	부분품	8	0
7419101000	체인	8	0
7419102000	부분품	8	0
7419910000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419991010	클로스(cloth)	8	0
7419991090	기타	8	0
7419992000	구리로 만든 스프링	8	0
7419999000	기타	8	0
7501100000	니켈의 매트(mat)	0	0
7501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	0
7501201090	기타	0	0
7501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	0
7501209090	기타	0	0
7502101000	음극	3	0
7502109000	기타	3	0
7502200000	니켈 합금	3	5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504001000	가루	5	0
7504002000	플레이크(flake)	5	0
7505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0
7505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0
75052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5052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0
75061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3	0
7506102000	박(箔)	5	0
75062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5	0
7506202000	박(箔)	5	0
7507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8	0
7507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8	0
7507200000	관(管) 연결구류	8	0
750810000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8	0
75089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5089020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0
75089020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8	0
7508909000	기타	8	0
76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1	0
7601201000	캐스팅 열로이(casting alloy)	1	0
7601202000	빌릿(billet)	3	0
7601209000	기타	1	0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603100000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8	0
7603201000	가루	8	0
7603202000	플레이크(flake)	8	0
7604101000	봉	8	0
760410201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0
7604102090	기타	8	0
7604210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0
7604291000	봉	8	0
7604299000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	8	0
7605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605190000	기타	8	0
76052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605290000	기타	8	0
7606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6119000	기타	8	0
76061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0
76069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6919000	기타	8	0
76069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0
7607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711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7199000	기타	8	0
760720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7209000	기타	8	0
7608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0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0
7609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8	0
76101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0
7610901000	구조물	8	0
7610908000	기타	8	0
7610909000	부분품	8	0
7611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7612100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8	0
7612901000	경질의 튜브형 용기	8	0
7612909010	용적이 1 리터 미만인 것	8	0
7612909020	용적이 1 리터 이상 20 리터 미만인 것	8	0
7612909030	용적이 20 리터 이상인 것	8	0
7613001000	압축가스용	8	0
7613002000	액화가스용	8	0
7614100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8	0
7614900000	기타	8	0
7615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0
761510901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5	0
7615109020	식탁용품·주방용품	8	0
7615109030	그 밖의 가정용 물품	8	0
7615109090	부분품	8	0
7615201000	위생용품	8	0
7615202000	부분품	8	0
7616100000	못·압정·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616910000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8	0
7616991000	보빈(bobbin)	8	0
7616999010	알루미늄 파우치(pouch)	8	0
7616999020	알루미늄 노브(knob)	8	0
761699909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801101000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3	0
7801109000	기타	3	0
78019100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3	0
7801991000	정제하지 않은 납	1	0
7801992010	납-주석 합금	3	0
7801992090	기타	3	0
780200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804111000	시트(sheet) · 스트립	8	0
7804112000	박(箔)	8	0
7804190000	기타	8	0
7804201000	가루	8	0
7804202000	플레이크(flake)	8	0
7806001000	납으로 만든 용기	8	0
7806002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806003010	봉	8	0
7806003020	프로파일(profile)	8	0
7806003030	선(線)	8	0
7806004010	관(管)	8	0
7806004020	관(管) 연결구류	8	0
7806009000	기타	8	0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3	0
790112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3	0
7901201000	아연-알루미늄 합금	3	0
7901202000	아연-구리 합금	3	0
7901209000	기타	3	0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903100000	아연 더스트(dust)	8	0
7903901000	가루	8	0
7903902000	플레이크(flake)	8	0
7904001000	봉	8	0
7904002000	프로파일(profile)	8	0
7904003000	선(線)	8	0
7905001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8	0
7905002000	박(箔)	8	0
7907001000	아연으로 만든 홀통 · 지붕덮개 · 채광 창틀과 그 밖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8	0
7907002010	관(管)	8	0
7907002020	관(管) 연결구류	8	0
7907009010	전기도금용 양극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907009090	기타	8	0
80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주석	2	0
8001200000	주석 합금	3	0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003001010	합금하지 않은 것	8	0
8003001090	기타	8	0
8003002010	합금하지 않은 것	8	0
8003002090	기타	8	0
80070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8007002000	판·쉬트(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007003010	박(箔)	8	0
8007003021	가루	8	0
8007003022	플레이크(flake)	8	0
8007004000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8	0
8007009000	기타	8	0
8101100000	가루	3	0
8101940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3	0
8101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8	0
8101969000	기타	8	0
8101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101991010	붕	8	0
8101991020	프로파일(profile)	8	0
8101991030	판·시트(sheet)·스트립	8	0
8101991040	박(箔)	8	0
8101999000	기타	8	0
8102100000	가루	3	0
8102940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3	0
8102951000	붕	8	0
8102952000	프로파일(profile)	8	0
8102953000	판·시트(sheet)·스트립	8	0
8102954000	박(箔)	8	0
8102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8	0
8102969000	기타	8	0
8102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102990000	기타	8	0
8103201000	괴(塊)	3	0
8103202000	가루	3	0
8103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103900000	기타	8	0
8104110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3	0
8104190000	기타	3	0
8104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104301000	줄밥(rasping)·연삭설(tuning)·알갱이	8	0
8104302000	가루	8	0
8104901000	붕	8	0
8104909000	기타	8	0
8105201000	괴(塊)	3	0
810520200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3	0
8105203000	가루	2	0
8105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5900000	기타	3	0
8106001010	괴(塊)	3	0
81060010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6001030	가루	3	0
8106009000	기타	3	0
8107201000	괴(塊)	3	0
8107202000	가루	3	0
8107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7900000	기타	3	0
8108201000	괴(塊)	2	0
8108202000	가루	3	0
8108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8901000	판과 스트립	8	0
8108902000	관	8	0
8108909000	기타	8	0
8109201000	괴(塊)	3	0
8109202000	가루	3	0
8109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9901010	관	0	0
8109901020	판·시트(sheet)·스트립	0	0
8109901030	붕	0	0
8109901090	기타	0	0
8109909000	기타	3	0
811010000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3	0
8110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0900000	기타	3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	0
8112120000	괴(塊), 가루	3	0
811213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190000	기타	3	0
8112210000	괴(塊), 가루	3	0
81122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290000	기타	3	0
8112510000	괴(塊), 가루	3	0
81125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590000	기타	3	0
8112921000	게르마늄	3	0
8112922000	바나듐	3	0
8112923000	갈륨	3	0
8112924000	하프늄	3	0
8112925000	인듐	3	0
8112926000	니오븀(컬럼븀)	3	0
8112927000	레늄	3	0
8112929000	기타	3	0
8112991000	게르마늄	3	0
8112992000	바나듐	3	0
8112993000	갈륨	3	0
8112994000	하프늄	3	0
8112995000	인듐	3	0
8112996000	니오븀(컬럼븀)	3	0
8112997000	레늄	3	0
8112999000	기타	3	0
811300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3	0
8201100000	가래와 삽	8	0
8201300000	곡괭이 · 픽스(picks) · 괭이 · 쇠스랑	8	0
8201400000	도끼 · 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8	0
8201500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8	0
8201600000	올타리 전단기(剪斷機) · 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8	0
8201901000	낫	8	0
8201902000	초절기(草切機)	8	0
8201903000	제재(製材)용 썰기	8	0
8201904000	포크	8	0
8201909000	기타	8	0
8202101000	목재용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202102000	금속용	8	0
8202109000	기타	8	0
8202200000	띠톱의 날	8	0
8202310000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8	0
8202391000	작용하는 부분이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8	0
8202392010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를 개별 단위로 절단하는 기기용	8	0
8202392090	기타	8	0
8202393000	작용하는 부분이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0
8202399000	부분품	8	0
8202400000	체인톱의 날	8	0
8202911000	쇠톱의 날	8	0
8202919000	기타	8	0
8202991000	사파이어 잉곳(ingot) 절단용	5	0
8202999000	기타	8	0
8203101000	톱날용	8	0
8203109000	기타	8	0
820320100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8	0
8203202000	집게	8	0
8203203000	핀셋	8	0
8203204000	못뽑기	8	0
8203209000	기타	8	0
820330000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8	0
8203401000	파이프커터(pipe-cutter)	8	0
8203402000	볼트크로퍼(bolt cropper)와 클리퍼	8	0
8203403000	천공펀치	8	0
8203409000	기타	8	0
8204110000	조절할 수 없는 것	8	0
8204120000	조절할 수 있는 것	8	0
820420000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205101000	드릴링용	8	0
8205102000	드레딩(threading)용	8	0
8205103000	태핑(tapping)용	8	0
8205109000	기타	8	0
8205200000	망치(hammer, sledge hammer)	8	0
8205300000	목재 가공용 대패·끌·동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8	0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8	0
8205510000	가정용 공구	8	0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205592000	땀인두	8	0
8205593000	그리스 건(grease gun)	8	0
8205595000	광산용과 토목공사용 공구	8	0
8205596000	미장용과 도장용 공구	8	0
8205597000	시계 제조용 공구	8	0
8205599000	기타	8	0
8205600000	블로램프(blow lamp)	8	0
8205701000	바이스(vice)	8	0
8205702000	클램프(clamp)	8	0
8205709000	기타	8	0
8205901000	모루	8	0
8205902000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	8	0
8205909010	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	8	0
8205909090	기타	8	0
82060000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	0
8207130000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	0
8207191000	작용하는 부분을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0
8207199000	부분품	8	0
8207201000	인발(引拔)용	8	0
8207202000	압출용	8	0
8207301000	프레싱(pressing)용	8	0
8207302000	스탬핑(stamping)용	8	0
8207303000	펀칭(punching)용	8	0
8207309000	기타	8	0
8207401000	태핑(tapping)용	8	0
8207402000	드레딩(threading)용	8	3
8207409000	기타	8	0
8207501010	고속도강으로 만든 것	8	0
8207501090	기타	8	0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brace bit)	8	0
8207509000	기타	8	0
8207601000	리머(reamer)	8	0
8207602000	랩(lap)	8	0
8207603000	브로치(broach)	8	0
8207609000	기타	8	0
8207701000	기어커터	8	0
8207702000	밀링커터	8	0
8207703000	기어커팅 호브(gear cutting hob)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207704000	로터리파일	8	0
8207709000	기타	8	0
8207801000	선반용 공구	8	0
8207809000	기타	8	0
8207901000	다이아몬드 공구	8	0
8207909000	기타	8	0
8208100000	금속 가공용	8	0
8208200000	목재 가공용	8	0
820830000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8	0
8208400000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의 것	8	0
8208900000	기타	8	0
8209001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으로 감마코팅 처리된 것	8	0
8209001040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	5
8209001090	기타	8	0
8209002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8	0
8209002040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	0
8209002090	기타	8	0
8210001000	분쇄기·마쇄기	8	0
8210002000	추출기·압착기	8	0
8210003000	비터(beater)·믹서	8	0
8210004000	세절기·커터	8	0
8210005000	오프너·코르크·실러	8	0
8210008000	그 밖의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8	0
8210009000	부분품	8	0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8	0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	0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8	0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8	0
8211940000	칼날	8	0
821195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8	0
8212100000	면도기	8	0
821220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	0
8212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0
8213001000	가정용·사무용 가위	8	0
8213002010	재단용 가위	8	0
8213002020	이발용 가위	8	0
8213002090	기타	8	0
8213003000	매니큐어용 가위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213004000	가위날	8	0
8213009000	기타	8	0
8214101000	연필깎이	8	0
8214109000	기타	8	0
821420000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	0
8214901000	이발기	8	0
8214902000	정육점이나 주방용 칼붙이와 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	8	0
8214909000	기타	8	0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8	0
8215911000	스푼	8	0
8215912000	포크	8	0
821591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8	0
821591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0
8215915000	각종 집게	8	0
8215919000	기타	8	0
8215991000	스푼	8	0
8215992000	포크	8	0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8	0
821599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0
8215995000	각종 집게	8	0
8215999000	기타	8	0
8301100000	자물쇠	8	0
830120000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8	0
830130000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8	0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8	0
8301401090	기타	8	0
8301409000	기타	8	0
8301500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8	0
8301600000	부분품	8	0
8301700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8	0
8302100000	경첩	8	0
8302200000	카스터(caster)	8	0
83023000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0
8302411000	문·창에 적합한 것	8	0
8302419000	기타	8	0
830242000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302491000	트렁크·슈트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여행용구에 적합한 것	8	0
8302499000	기타	8	0
830250000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	0
8302600000	자동도어 폐지기	8	0
8303001000	금고	8	0
8303009000	기타	8	0
8304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	0
830510000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8	0
830520000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8	0
8305900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0
8306100000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8	0
83062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	0
8306290000	기타	8	0
830630100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8	0
8306302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	0
8307100000	철강으로 만든 것	8	0
830790000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0
8308101000	훅(hook)	8	0
8308102000	아이(eye)·아일릿(eyelet)	8	0
830820000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8	0
8308901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	8	0
8308902000	버클(buckle)과 버클(buckle)걸쇠	8	0
8308903000	구슬	8	0
8308904000	스팽글(spangle)	8	0
8308909000	기타	8	0
830910000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8	0
8309901000	캔뚜껑(E.O.E)	8	0
8309909000	기타	8	0
8310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3111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109000	기타	8	0
83112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209000	기타	8	0
83113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309010	납-주석 합금의 땀납	8	0
831130909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3119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909000	기타	8	0
8401100000	원자로	0	0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0	0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0	0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0	0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8	0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8	0
8402191000	열매체보일러	8	0
8402199000	기타	8	0
840220000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	0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8	0
-	- 바이오매스 보일러용	5	0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8	0
-	- 바이오매스 보일러용	5	0
8403101000	유류를 사용하는 것	8	0
8403102000	석탄을 사용하는 것	8	0
8403103000	가스를 사용하는 것	8	0
8403109000	기타	8	0
8403900000	부분품	8	0
8404101000	연료절약기	5	0
8404102000	과열기	5	0
8404103000	그을음제거기	5	0
8404104000	가스회수기	5	0
8404109000	기타	5	0
8404200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5	0
8404901000	보일러용 응축기의 것	5	0
8404902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것	5	0
8404909000	기타	8	0
-	- 제 8403 호의 중앙난방용 보일러의 보조장치의 것	5	0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8	0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8	0
84051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8	0
8405104000	산소 발생기	8	0
8405109000	기타	8	0
84059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2000	수성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4000	산소 발생기의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05909000	기타	8	0
8406103000	출력이 2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0
8406109000	기타	5	0
8406811000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고 10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812000	출력이 100 메가와트를 초과하고 30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813000	출력이 30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0
8406820000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901000	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	8	0
8406909000	기타	8	0
-	- 날개와 로터(rotor)	5	0
8407100000	항공기용 엔진	0	0
8407210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	8	0
8407290000	기타	8	0
8407311000	모터사이클용	8	0
8407319000	기타	8	0
8407321000	모터사이클용	8	0
8407329000	기타	8	0
8407331000	모터사이클용	8	0
8407339000	기타	8	0
8407341000	모터사이클용	8	0
8407349000	기타	8	0
8407901000	철도 기관차용	0	0
8407909000	기타	8	0
840810100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408102000	출력이 30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2,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408103000	출력이 2,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4082010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20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3000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4,000 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4000	실린더용량이 4,000 시시를 초과하고 10,000 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5000	실린더용량이 10,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8	0
8408901010	철도 기관차용 내연기관	0	0
8408901090	기타	5	0
8408909010	선박용 내연기관	8	0
8408909021	출력이 400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기용[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500 이나 1,800 인 것으로 한정한다]	4	0
8408909029	기타	8	0
8408909030	제 8429 호용 내연기관	8	0
840890909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09100000	항공기 엔진용	5	0
8409911000	제 87 류의 차량용	8	0
8409912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의 것	8	0
8409919000	기타	8	0
8409991000	철도차량용	5	0
8409992000	제 87 류의 차량용	8	0
840999301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3020	출력이 30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2,000 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3030	출력이 2,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9010	발전용	8	0
8409999090	기타	8	0
8410111000	수력터빈	0	0
8410119000	기타	8	0
8410120000	동력이 1,00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8410130000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0	0
8410901090	기타	8	0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0	0
8410909090	기타	8	0
8411111000	항공기용	3	0
8411119010	선박용	8	0
8411119090	기타	8	0
8411121000	항공기용	3	0
8411129010	선박용	8	0
8411129090	기타	8	0
8411211000	항공기용	3	0
8411219010	선박용	8	0
8411219090	기타	8	0
8411221000	항공기용	3	0
8411229010	선박용	8	0
8411229090	기타	8	0
8411811000	항공기용	3	0
8411819010	선박용	8	0
8411819090	기타	8	0
8411821000	항공기용	3	0
8411829010	선박용	8	0
8411829090	기타	8	0
-	- 출력이 5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11911000	항공기용	3	0
8411919000	기타	8	0
8411991000	항공기용	3	0
8411999000	기타	5	0
8412101010	램제트나 펄스제트 엔진	5	0
8412101090	기타	5	0
8412109000	기타	8	0
8412211000	액압실린더	8	0
8412219000	기타	8	0
8412290000	기타	8	0
84123100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8	0
8412390000	기타	8	0
8412800000	기타	8	0
8412901010	램제트나 펄스제트 엔진의 것	5	0
8412901090	기타	5	0
8412902000	수력엔진의 것	0	0
8412909000	기타	8	0
-	- 풍력터빈용 날개와 허브(hub)	5	0
8413111000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8	0
8413190000	기타	8	0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413301000	항공기용	8	0
8413302000	철도 기관차용	8	0
8413303000	선박용	8	0
8413304000	제 87 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8	0
8413309000	기타	8	0
8413400000	콘크리트 펌프	8	0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509010	플러저펌프	8	0
8413509020	피스톤펌프	8	0
8413509030	다이아프램펌프	8	0
8413509090	기타	8	0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609010	기어펌프	8	0
8413609020	베인펌프	8	0
8413609030	스크루펌프	8	0
8413609090	기타	8	0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13709010	터빈펌프	8	0
8413709020	볼류트 펌프	8	0
8413709090	기타	8	0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819000	기타	8	0
8413820000	액체엘리베이터	8	0
8413911000	급유용 펌프의 것	8	0
8413912000	내연기관의 것	8	0
8413913000	왕복펌프의 것	8	0
8413914000	원심펌프의 것	8	0
8413915000	로터리펌프의 것	8	0
8413919000	기타	8	0
8413920000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8	0
8414101000	항공기용	8	0
84141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10^{-3} 토르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0
8414109090	기타	8	0
8414200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8	0
841430100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430200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4400000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8	0
8414511000	항공기용	8	0
8414519000	기타	8	3
8414591000	항공기용	8	0
8414599000	기타	8	0
8414601000	항공기용	8	0
8414609000	기타	8	3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14809110	항공기용	8	0
8414809190	기타	8	0
8414809210	사용동력이 74.6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4809220	사용동력이 74.6 킬로와트 이상 373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4809230	사용동력이 373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4809900	기타	8	0
8414901000	팬과 후드의 것	8	0
8414909010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것	8	0
841490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은 제외한다)	8	0
8414909090	기타	8	0
8415101011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3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15101012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101021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1022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10201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3
841510202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200000	자동차용(탐승자용으로 한정한다)	8	0
841581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8	0
841582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1583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8	0
8415900000	부분품	8	0
841610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8	0
841610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 리터를 초과하고 1,500 리터 미만인 것	8	0
841610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 리터 이상인 것	8	0
8416201000	잘게 부순 고체연료용	8	0
8416202000	기체연료용	8	0
8416209000	기타	8	0
8416300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	0
8416901000	노용 버너의 것	8	0
8416909000	기타	8	0
8417101010	철광석용	8	0
8417101090	기타	8	0
8417102010	철강용	8	0
8417102090	기타	8	0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8	0
8417801010	시멘트용	8	0
8417801020	유리용	8	0
8417801030	도자기용	8	0
8417801090	기타	8	0
8417802000	이화학용	8	0
8417809000	기타	8	0
-	- 폐기물 소각용	5	0
8417900000	부분품	8	0
-	- 폐기물 소각로의 것	5	0
8418101010	용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8	0
8418101020	용량이 200 리터를 초과하고 400 리터 이하인 것	8	0
8418101030	용량이 4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18109000	기타	8	0
8418211000	용량이 200 리터 미만인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18212000	용량이 200 리터 이상 400 리터 미만인 것	8	3
8418213000	용량이 400 리터 이상인 것	8	0
841829100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	0
8418299000	기타	8	3
841830000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18501000	쇼케이스	8	0
8418509000	기타	8	0
8418610000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	5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8	3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8	0
8418692020	아이스큐버	8	0
8418692030	냉수기	8	0
8418692090	기타	8	0
8418693000	열펌프	8	0
84189100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8	0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8	3
8418999000	기타	8	0
8419110000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8	0
8419190000	기타	8	0
-	- 태양열 물가열기	5	0
8419200000	내과용 · 외과용 · 실험실용 살균기	0	0
8419310000	농산물용	8	0
8419320000	목재용 · 제지펄프용 · 종이용 · 판지용	8	0
841939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핀 드라이어	3	0
8419399000	기타	8	0
-	- 슬러지 건조기(sludge dryer)	5	0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8	0
8419501000	항공기용	8	0
8419509000	기타	8	0
8419600000	기체 액화용 기기	5	0
841981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8	0
8419891000	인조섬유 제조용 종합기	8	0
8419899010	가열기	8	0
8419899020	냉각기	8	0
-	- 냉각탑	5	0
8419899030	증발기	8	0
-	- 증기압축식 증발기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19899040	응축기	5	0
8419899050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8	0
8419899060	고온항온기 · 저온항온기	8	0
8419899070	항온항습기	8	0
8419899080	공기조절기	8	0
8419899090	기타	8	0
-	- 폐수의 건조 · 저온 살균 · 염분 제거용과 바이오가스의 저온 살균 · 소화(消化) · 정제용 기기	5	0
8419901000	인조섬유 제조용 종합기의 것	8	0
841990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5	0
841990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8	0
841990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8	0
8419909040	내과용 · 외과용 · 실험실용 살균장치의 것	0	0
8419909090	기타	8	0
-	- 폐수의 건조 · 저온 살균 · 염분 제거용 기기의 것, 바이오가스의 저온 살균 · 소화(消化) · 정제용 기기의 것, 용제 재활용 장치의 것, 슬러지 건조기(sludge dryer)의 것, 냉각탑의 것, 증기압축식 증발기의 것, 응축기의 것, 소호 제 8419.50 호의 것, 소호 제 8419.60 호의 것	5	0
8420101000	제지용	8	0
8420102000	직물용	8	0
8420103000	가죽용	8	0
8420104000	고무용 · 플라스틱용	8	0
8420109000	기타	8	0
8420910000	실린더	8	0
8420990000	기타	8	0
8421110000	크림분리기	8	0
8421120000	의류탈수기	8	0
8421191000	내과용 · 외과용 · 이화학용	8	5
8421192000	식품공업용	8	0
8421193000	석유화학공업용	8	0
8421199000	기타	8	0
8421211000	가정형	5	0
8421219010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5	0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3	0
8421219090	기타	5	0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8	0
8421231000	제 87 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3
8421232000	항공기용	8	0
842123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21291000	낙농용	8	0
8421292000	유해성 폐수처리용	5	0
8421293000	반도체 제조용	0	0
8421294000	항공기용	8	0
8421299000	기타	8	0
-	- 흑색 폐액(廢液)에서의 알칼리 회수용, 전기투석용, 냉매 회수용·순환용, 인쇄 회로판의 부식액 회수용, 재생수 회수용·처리용	5	0
8421311000	제 87 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0
8421312000	항공기용	8	0
8421319000	기타	8	0
8421391000	가정형	5	0
8421392000	제 87 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5	0
8421399010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5	0
8421399020	반도체 제조용	0	0
8421399030	항공기용	8	0
8421399090	기타	5	0
842191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	0
8421991000	제 87 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5	0
842199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의 것	5	0
8421999020	정수기 교체용 필터	5	0
8421999030	반도체 제조용	0	0
8421999090	기타	5	0
8422110000	가정형	8	3
8422190000	기타	8	0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8	0
8422301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8	0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합용·봉지용 기계	8	0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레이블 첨부용 기계	8	0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	0
8422309000	기타	8	0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8	0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8	0
8422409020	자동결속기	8	0
8422409030	진공포장기	8	0
8422409090	기타	8	0
8422901000	접시세척기의 것	8	0
8422902000	그 밖의 포장기계의 것	8	0
8422909000	기타	8	0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23201000	컨베이어 스케일	8	0
8423202000	피드미터(feed meter) · 피드웨이어(feed weigher)	8	0
8423209000	기타	8	0
842330000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8	0
8423810000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23820000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23891000	트럭 스케일	8	0
8423899000	기타	8	0
8423901010	정확도 등급을 가진 분동	8	0
8423901090	기타	8	0
8423909000	저울의 부분품	8	0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424201000	스프레이건	8	0
8424202010	로봇트형	8	0
8424202090	기타	8	0
8424209000	기타	8	0
8424301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8	0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8	0
8424309000	기타	8	0
8424811000	자주식(自走式) 방제기	8	0
8424812000	그 밖의 방제기	8	0
8424819000	기타	8	0
8424891000	반도체 제조용	0	0
8424899000	기타	8	0
8424901000	소화기의 것	8	0
8424902000	스프레이건의 것	8	0
8424903000	방제기의 것	8	0
84249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8424909090	기타	8	0
8425111010	체인블록	0	0
8425111090	기타	0	0
8425112010	체인블록	0	0
8425112090	기타	0	0
8425190000	기타	0	0
842531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25319000	기타	0	0
842539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25399000	기타	0	0
84254100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0	0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8426110000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0	0
84261210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0	0
8426122000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0	0
8426190000	기타	0	0
8426200000	타워크레인(tower crane)	0	0
8426301000	문형 크레인	0	0
8426302000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0	0
8426410000	타이어가 달린 것	0	0
8426491000	신축봉식(telescopic boom type)	0	0
8426492000	앵글식(latticed boom type)	0	0
8426499000	기타	0	0
8426910000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0	0
8426991000	선박의 데릭(derrick)	0	0
8426999000	기타	0	0
8427101010	신품	8	0
8427101020	중고품	8	0
8427102010	신품	8	0
8427102020	중고품	8	0
8427201011	신품	8	0
8427201012	중고품	8	0
8427201021	신품	8	0
8427201022	중고품	8	0
8427209000	기타	8	0
8427901000	수동식 팰릿(pallet) 트럭	8	0
8427909000	기타	8	0
8428101000	리프트	0	0
8428102000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0	0
8428201000	뉴매틱 엘리베이터	0	0
8428202000	뉴매틱 컨베이어	0	0
842831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0	0
8428320000	그 밖의 버켓형	0	0
8428331010	분당 속도가 240 미터 미만인 것	0	0
8428331020	분당 속도가 240 미터 이상인 것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28332000	컨베이어	0	0
8428390000	기타	0	0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0	0
8428402000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0	0
8428600000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0	0
8428901000	광산용 왜건푸셔·기관차·화차의 트레버서·화차 경사기와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0	0
8428909000	기타	0	0
8429111000	불도저(bulldozer)	0	0
8429112000	앵글도저(angledozer)	0	0
8429190000	기타	0	0
842920000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0	0
8429300000	스크래퍼(scraper)	0	0
8429401000	탬핑머신(tamping machine)	0	0
8429402000	로드롤러(road roller)	0	0
8429511011	신품	0	0
8429511012	중고품	0	0
8429511021	신품	0	0
8429511022	중고품	0	0
8429511031	신품	0	0
8429511032	중고품	0	0
8429511091	신품	0	0
8429511092	중고품	0	0
8429519000	기타	0	0
8429521011	신품	0	0
8429521012	중고품	0	0
8429521021	신품	0	0
8429521022	중고품	0	0
8429521090	기타	0	0
8429529000	기타	0	0
8429591000	메커니컬 셔블(shovel)	0	0
8429599000	기타	0	0
843010000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0	0
843020000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0	0
8430310000	자주식(自走式)	0	0
8430390000	기타	0	0
8430411000	천공용 기계	0	0
8430412000	시굴용 기계	0	0
8430491000	시추기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30499000	기타	0	0
843050000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0	0
8430610000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0	0
8430690000	기타	0	0
843110000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0	0
843120000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8	0
8431310000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에스컬레이터의 것	0	0
8431390000	기타	0	0
8431411000	엑스캐베이터(excavator)의 것	0	0
8431419000	기타	0	0
8431420000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0	0
8431430000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0	0
8431491000	유압브레이크	0	0
8431492000	크러셔(crusher)	0	0
8431499000	기타	0	0
8432100000	플라우(쟁기)	0	0
843221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0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0	0
8432292000	제초기	0	0
8432299000	기타	0	0
8432301000	파종기	0	0
8432302000	식부기(植付機)	0	0
8432303000	이식기	0	0
8432309000	기타	0	0
8432401000	퇴비 살포기	0	0
8432402000	비료 살포기	0	0
8432800000	그 밖의 기계	0	0
8432901000	플라우(쟁기)의 것	0	0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0	0
8432909000	기타	0	0
84331100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33190000	기타	0	0
8433200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0	0
843330000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0	0
843340000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0	0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0	0
8433520000	그 밖의 탈곡기	0	0
8433530000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33590000	기타	0	0
8433601000	새의 알 선별기	0	0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0	0
8433609090	기타	0	0
843390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0	0
8433902000	풀베는 기계의 것	0	0
8433909000	기타	0	0
8434100000	착유기	0	0
8434201000	균질기	0	0
8434209000	기타	0	0
8434901000	착유기의 것	0	0
8434902000	균질기의 것	0	0
8434909000	기타	0	0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8	0
843510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8	0
8435103000	과실주스 제조용 균질기	8	0
8435109000	기타	8	0
8435900000	부분품	8	0
8436101000	사료절단기	8	0
8436102000	사료분쇄기	8	0
8436103000	사료배합기	8	0
8436109000	기타	8	0
8436211000	부란기	8	0
8436219000	기타	8	0
8436290000	기타	8	0
8436800000	그 밖의 기계	8	0
8436910000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8	0
8436990000	기타	8	0
8437101000	목초종자 정전기	8	0
8437109000	기타	8	0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8	0
8437802000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용	8	0
8437901000	종자·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용의 것	8	0
8437909000	기타	8	0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8	0
8438109000	기타	8	0
8438200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8	0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38400000	양조용 기계	8	0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8	0
8438509000	기타	8	0
8438600000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8	0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8	0
8438809000	기타	8	0
8438900000	부분품	8	0
8439101000	쇄목기	8	0
8439102000	절단기	8	0
8439103000	스트레이너	8	0
8439104000	프레스빠데(press-pate)기	8	0
8439105000	비터(beater)	8	0
8439109000	기타	8	0
8439201000	초지 준비기	8	0
8439202000	초지기	8	0
8439209000	기타	8	0
8439301000	종이·판지를 감는 기계	8	0
8439302000	표면 가공기	8	0
8439303000	침투 가공기	8	0
8439309000	기타	8	0
84399100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8	0
8439990000	기타	8	0
8440101000	재분용 재봉기	8	0
8440102000	재분용 접는 기계	8	0
8440109000	기타	8	0
8440901000	재분용 재봉기의 것	8	0
8440909000	기타	8	0
8441100000	절단기	8	0
8441201000	종이백·봉지 제조용 기계	8	0
8441202000	봉투 제조기	8	0
8441300000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8	0
8441400000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8	0
8441801000	종이·판지의 트리밍기	8	0
8441809000	기타	8	0
8441900000	부분품	8	0
8442301000	활자 주조용 기계류, 장치	8	0
8442302000	특수 성형 프레스	8	0
8442303000	산 부식용 기기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42304000	사진 식자기	8	0
8442305000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 기계류, 장치, 장비(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	0
8442309000	기타	8	0
8442401000	식자용 기계류·장치의 것	8	0
8442402000	활자주조용 기계류·장치의 것	8	0
8442409000	기타	8	0
8442500000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	0
844311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8	0
844312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않은 상태의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43130000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8	0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	0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	0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8	0
8443170000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8	0
8443191000	직물날염기	8	0
8443192000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노름 또는 그 밖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그 밖의 인쇄기	8	0
8443199000	기타	8	0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11020	도트 프린터	0	0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11090	기타	0	0
8443312000	팩시밀리(프린터, 복사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43313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8443313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8	0
8443314000	잉크젯방식 인쇄기(제 8443.31.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21020	도트 프린터	0	0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21090	기타	0	0
8443322000	팩시밀리	0	0
8443323000	텔레프린터	0	0
8443324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8443324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43325010	반도체 제조용	0	0
8443325090	기타	8	0
8443391010	반도체 제조용	0	0
8443391090	기타	8	0
8443392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8443392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8	0
8443393010	광학기구를 갖춘 것	0	0
8443393020	밀착식	8	0
8443394000	열식 복사기	8	0
8443399000	기타	8	0
8443911010	자동급지기	8	0
8443911020	접기용, 폴칠용, 천공용, 지철용의 기계	8	0
8443911030	연속번호기	8	0
8443911090	기타	8	0
8443919000	기타	8	0
8443991000	제 8443.31.10 호나 제 8443.32.10 호의 것	0	0
8443992000	팩시밀리의 것	0	0
8443993000	텔레프린터의 것	0	0
8443994010	자동 문서공급기	0	0
8443994020	종이공급기	0	0
8443994030	분류기	0	0
8443994090	기타	0	0
8443995000	제 8443.31.4000 호, 제 8443.32.5010 호, 제 8443.32.5090 호, 제 8443.39.1010 호, 제 8443.39.1090 호의 것	8	0
8443999000	기타	8	0
8444001000	방사(紡絲)기	5	0
8444002000	연신(drawing)기	5	0
8444003000	텍스처(texture)기	5	0
8444004000	절단기	5	0
8444009000	기타	5	0
8445110000	카드기(carding machine)	5	0
8445120000	코밍기(combing machine)	5	0
8445130000	연조기나 조방기	5	0
8445191000	훈타면기	5	0
8445192000	래프성형기	5	0
8445193000	조면기	8	0
8445199000	기타	5	0
8445201010	정방기	5	0
8445201090	기타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45202010	정방기	5	0
8445202090	기타	5	0
8445203000	견방용	5	0
8445209000	기타	5	0
8445301000	필라멘트사용	5	0
8445302000	방적사용	5	0
8445309000	기타	5	0
8445401000	콘 와인더	5	0
8445402000	치즈 와인더	5	0
8445409000	기타	5	0
8445901000	정경기	8	0
8445902000	정경호부기	8	0
8445903000	통경기	8	0
8445904000	연경기	8	0
8445909000	기타	8	0
8446100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8	0
8446211000	면직기	8	0
8446212000	모직기	8	0
8446213000	견직기	8	0
8446219000	기타	8	0
8446290000	기타	8	0
8446301010	면직기	8	0
8446301020	견직기	8	0
8446301030	타올직기	8	0
8446301090	기타	8	0
8446302010	면직기	8	0
8446302020	견직기	8	0
8446302030	타올직기	8	0
8446302090	기타	8	0
8446303010	면직기	8	0
8446303020	견직기	8	0
8446303030	타올직기	8	0
8446303090	기타	8	0
8446309010	면직기	8	0
8446309020	견직기	8	0
8446309030	타올직기	8	0
8446309090	기타	8	0
8447111000	양말편기	8	0
844711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47120000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47201010	수(手) 편직기[반자동 횡(橫) 편직기는 포함한다]	8	0
8447201020	자동 횡(橫) 편직기	8	0
8447201090	기타	8	0
8447202010	랏셀기	8	0
8447202020	트리코트기	8	0
8447202090	기타	8	0
8447209000	기타	8	0
8447901000	레이스기	8	0
8447902010	자동자수기	8	0
8447902090	기타	8	0
8447903000	결망기	8	0
8447909000	기타	8	0
8448111000	도비(dobby)기	8	0
8448112000	자카드기	8	0
8448113000	카드 천공기	8	0
8448119000	기타	8	0
8448191000	경사용 빔스탠드와 크랄(creel)	8	0
8448192000	자동정지기	8	0
8448193000	경사연접기	8	0
8448199010	실 제조용 보조기계(조면기는 제외한다)	5	0
8448199090	기타	8	0
8448201000	방사 니플	5	0
8448209000	기타	5	0
8448310000	침포	8	0
8448321000	카드기(carding machine)용[가넷와이어(garnet wire)는 제외한다]	5	0
8448329000	기타	8	0
8448331000	스핀들 플라이어	5	0
8448339010	스핀들	8	0
8448339020	스피닝링	8	0
8448339030	링트래블러	8	0
8448391000	경사빔	8	0
8448399000	기타	8	0
8448420000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8	0
8448491000	셔틀	8	0
8448499000	기타	8	0
8448511000	메리야스용 바늘	8	0
8448512000	자수기용 바늘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48513000	레이스기용 바늘	8	0
8448519000	기타	8	0
8448590000	기타	8	0
8449001010	펠트모자 제조용 기계	8	0
8449001090	기타	8	0
8449002000	모자제조용 형(型)	8	0
8449009000	부분품	8	0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8	0
8450120000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50190000	기타	8	0
8450200000	1 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	0
8450900000	부분품	8	3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8	0
8451210000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51290000	기타	8	0
8451301000	스팀 프레스	8	0
8451309000	기타	8	0
8451401000	세척기	8	0
8451402000	표백기	8	0
8451403000	염색기	8	0
8451501000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	8	0
8451502000	절단기	8	0
8451509000	기타	8	0
8451801000	열처리기	8	0
8451802000	폭출기(幅出機)	8	0
8451803000	머서라이징(mercerizing)기	8	0
8451809010	방축가공기	8	0
8451809020	도포기, 침투기	8	0
8451809030	기모기(起毛機)	8	0
8451809040	패딩기	8	0
8451809090	기타	8	0
8451901000	드라이클리닝기의 것	8	0
8451902000	건조기의 것	8	0
8451909000	기타	8	0
8452101010	직진형	8	0
8452101020	지그재그형	8	0
8452101030	프리암식	8	0
845210109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52102000	수동식	8	0
8452211000	신발 제조용	8	0
8452212000	포장대 봉합용	8	0
8452213000	가죽과 그 밖의 후물용	8	0
8452214000	모피용	8	0
8452219000	기타	8	0
8452291000	신발제조용	8	0
8452292000	포장대 봉합용	8	0
8452293000	가죽과 그 밖의 후물용	8	0
8452294000	모피용	8	0
8452299000	기타	8	0
8452300000	재봉기용 바늘	8	0
845290100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덮개와 그 부분품	8	0
8452909000	그 밖의 재봉기 부분품	8	0
8453101000	유평준비기계	8	0
8453102000	유평기계	8	0
8453103000	원피·가죽 가공기계	8	0
8453201000	신발 제조기계	8	0
8453202000	신발 수선기계	8	0
8453800000	그 밖의 기계	8	0
8453900000	부분품	8	0
8454100000	전로	8	0
845420000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드ل(ladle)	8	0
8454301010	다이캐스팅기	8	0
8454301090	기타	8	0
8454309000	기타	8	0
8454901000	전로의 것	8	0
8454909000	기타	8	0
8455100000	관 압연기	8	0
8455210000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8	0
8455220000	냉간(冷間) 압연기	8	0
8455301000	주조제의 것	8	0
8455302000	단조제의 것	8	0
8455309000	기타	8	0
8455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0
8456103000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8	0
8456109000	기타	8	0
8456200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8	0
8456301010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56301090	기타	8	0
8456309000	기타	8	0
8456901000	워터제트 절단기	8	0
8456909000	기타	8	0
8457101000	수직형	8	0
8457102000	수평형	8	0
8457103000	문형	8	0
8457109000	기타	8	0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8	0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	0
8458110000	수치제어식	8	0
8458190000	기타	8	0
8458910000	수치제어식	8	0
8458990000	기타	8	0
845910000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8	0
8459210000	수치제어식	8	0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8	0
8459292000	직립 드릴링 머신	8	0
8459293000	다축 드릴링 머신	8	0
8459299000	기타	8	0
8459310000	수치제어식	8	0
8459390000	기타	8	0
8459401000	지그 보링머신	8	0
8459402000	수평 보링머신	8	0
8459409000	기타	8	0
8459510000	수치제어식	8	0
8459590000	기타	8	0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0
845961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8	0
8459619000	기타	8	0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0
845969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8	0
8459693000	만능공구 밀링머신	8	0
8459694000	프로필 밀링머신	8	0
8459699000	기타	8	0
8459701000	태핑머신(tapping machine)	8	0
8459709000	그 밖의 나사절삭기	8	0
8460110000	수치제어식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60190000	기타	8	0
8460211000	원통연삭기	8	0
8460212000	내면연삭기	8	0
8460213000	무심연삭기	8	0
846021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8	0
8460219000	기타	8	0
8460291000	원통연삭기	8	0
8460292000	내면연삭기	8	0
8460293000	무심연삭기	8	0
846029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8	0
8460299000	기타	8	0
8460310000	수치제어식	8	0
8460390000	기타	8	0
8460401000	호닝머신(honing machine)	8	0
8460402000	래핑머신(lapping machine)	8	0
8460900000	기타	8	0
8461200000	셰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8	0
846130000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8	0
8461401010	수치제어식	8	0
8461401090	기타	8	0
8461402000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	8	0
8461500000	톱기계나 절단기	8	0
8461900000	기타	8	0
8462101000	에어해머	8	0
8462109000	기타	8	0
8462210000	수치제어식	8	0
8462290000	기타	8	0
8462310000	수치제어식	8	0
8462390000	기타	8	0
846241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62412000	넛칭기(notching machine)	8	0
846249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62492000	넛칭기(notching machine)	8	0
846291100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200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을 초과하고 3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3000	최고가압이 300 메트릭톤을 초과하고 1,0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4000	최고가압이 1,00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8	0
8462991010	최고가압이 3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62991020	최고가압이 30 메트릭톤을 초과하고 1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3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을 초과하고 3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40	최고가압이 300 메트릭톤을 초과하고 6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50	최고가압이 600 메트릭톤을 초과하고 1,5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90	기타	8	0
8462999000	기타	8	0
8463100000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63200000	나사 전조기	8	0
8463300000	선 가공기	8	0
8463900000	기타	8	0
8464100000	톱기계	8	0
8464201000	광학유리용·안경유리용	8	0
8464202000	그 밖의 유리용	8	0
8464209000	기타	8	0
8464901000	유리 냉간 가공용 공작기계	8	0
8464902000	콘크리트 가공용 공작기계	8	0
8464903000	도자기 가공용 공작기계	8	0
8464909000	기타	8	0
846510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109000	기타	8	0
846591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19000	기타	8	0
846592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29000	기타	8	0
846593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39000	기타	8	0
846594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49000	기타	8	0
846595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59000	기타	8	0
846596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69000	기타	8	0
846599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99000	기타	8	0
846610000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8	0
8466201000	항공기용	8	0
8466209000	기타	8	0
8466300000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66910000	제 8464 호의 기계용	8	0
8466920000	제 8465 호의 기계용	8	0
8466930000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8	0
8466940000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8	0
8467111000	착암기	8	0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8	0
8467113000	그라인더	8	0
8467114000	임팩트 렌치	8	0
8467115000	드릴	8	0
8467119000	기타	8	0
8467191000	착암기	8	0
8467199000	기타	8	0
8467210000	각종 드릴	8	0
8467220000	톱	8	0
8467290000	기타	8	0
8467810000	체인톱	8	0
8467891010	소호 제 8430.49 호, 제 8479.10 호의 것	0	0
8467891020	제 8479.89.9010 호, 제 8479.89.9030 호, 제 8479.89.9091 호의 것	8	0
8467891090	기타	8	0
8467899000	기타	8	0
8467910000	체인톱의 것	8	0
84679200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8	0
8467990000	기타	8	0
8468100000	수지식 취관(吹管)	8	0
8468201000	가스 용접기	8	0
8468202000	가스 자동절단기	8	0
8468209000	기타	8	0
8468800000	그 밖의 기기	8	0
8468900000	부분품	8	0
8469001010	워드프로세싱 머신	0	0
8469001020	자동타자기	8	0
8469002000	그 밖의 전동식 타자기	8	0
8469003000	그 밖의 수동식 타자기	8	0
8470103010	17 단위 미만인 것	0	0
8470103020	17 단위 이상인 것	0	0
8470104010	제 8472.90.9000 호의 것	0	0
8470104090	기타	0	0
8470211000	17 단위 미만인 것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8470212000	17 단위 이상인 것	0	0
8470290000	기타	0	0
8470300000	그 밖의 계산기	0	0
8470500000	금전 등록기	0	0
8470901000	우편요금계기	0	0
8470902000	표권 발행기	0	0
8470903000	회계기	0	0
8470909000	기타	0	0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19000	기타	0	0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91090	기타	0	0
8471499000	기타	0	0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509000	기타	0	0
8471601010	문자(표식) 판독장치	0	0
8471601020	키 입력장치	0	0
8471601030	마우스	0	0
8471601040	스캐너	0	0
8471601090	기타	0	0
8471602000	출력장치	0	0
8471603020	비디오텍스 · 텔레텍스	0	0
8471603030	음성 입출력장치	0	0
8471603090	기타	0	0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 · 롬)	0	0
8471702010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0	0
8471702032	디브이디(DVD) 드라이브	0	0
8471702033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39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71702090	기타	0	0
8471709000	기타	0	0
8471800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0	0
8471900000	기타	0	0
8472100000	등사기	8	0
8472301000	편지 분류기	8	0
8472302000	소인기	8	0
8472309000	기타	8	0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0	0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0	0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입금기	0	0
8472901050	주화계수 포장기	8	0
8472901090	기타	8	0
8472902000	등사용과 인쇄용 자동제판기	8	0
8472903000	표권발행기	8	0
8472904000	연필절삭기	8	0
8472905000	서류절단기	8	0
8472906000	주소인쇄기와 주소판 엠보싱기	8	0
8472909000	기타	8	0
8473101000	워드프로세싱머신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473102000	워드프로세싱머신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인쇄회로가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3109000	기타	8	0
8473210000	소호 제 8470.10 호·제 8470.21 호·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0
8473291000	소호 제 8470.3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3293000	소호 제 8470.5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3294000	소호 제 8470.9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3301000	자기헤드	0	0
8473302000	주기관(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3303000	컴퓨터 케이스	0	0
8473304010	사운드카드	0	0
8473304020	비디오 카드	0	0
8473304030	멀티미디어 카드	0	0
8473304050	통신접속카드	0	0
8473304060	디램 모듈	0	0
8473304090	기타	0	0
847330901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제 8542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3309090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73401000	현금자동처리기(제 8472.90.1050 호와 제 8472.90.1090 호는 제외한다)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473402000	현금자동처리기(제 8472.90.1050 호와 제 8472.90.1090 호는 제외한다)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인쇄회로가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3409000	기타	8	0
8473501000	소호 제 8470.10 호, 제 8470.21 호,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473509000	기타	0	0
8474100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0	0
8474201000	파쇄·분쇄능력이 시간당 20 톤 이하인 것	0	0
8474209000	기타	0	0
8474311000	배치 플랜트	0	0
8474319000	기타	0	0
8474321000	아스팔트 플랜트	0	0
8474329000	기타	0	0
8474390000	기타	0	0
847480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0	0
8474802000	조괴기(造塊機)·형입기와 성형기	0	0
8474809000	기타	0	0
8474900000	부분품	0	0
8475100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8	0
8475210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8	0
8475291000	판유리 제조용	8	0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	8	0
8475299000	기타	8	0
8475901000	판유리 제조용 기계의 것	8	0
8475909000	기타	8	0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	0
8476290000	기타	8	0
847681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0
8476819000	기타	8	0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0
8476893000	담배 자동판매기	8	0
8476894000	화폐 교환기	8	0
8476899000	기타	8	0
8476900000	부분품	8	0
8477101000	고무 공업용	8	0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77201000	고무 공업용	8	0
8477202000	플라스틱 공업용	8	0
8477300000	취입 성형기	8	0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8	0
847751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8	0
8477590000	기타	8	5
8477800000	그 밖의 기계	8	0
8477900000	부분품	8	0
8478100000	기계류	8	0
8478900000	부분품	8	0
8479101000	모올타르나 콘크리트 살포기	0	0
8479102000	그 밖의 도로공사용 기계	0	0
8479109000	기타	0	0
847920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8	0
8479300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8	0
8479400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8	0
8479501000	제 8479.81 호, 제 8479.82 호, 제 8479.89.9010 호, 제 8479.89.9030 호, 제 8479.89.9040 호, 제 8479.89.9060 호, 제 8479.89.9091 호의 것	8	0
8479502000	제 8479.89.9080 호의 것	8	0
8479509000	기타	8	0
8479600000	증발식 에어컨	8	0
8479710000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8	0
8479790000	기타	8	0
8479811000	금속 세척기	8	0
8479812010	반도체 제조용	3	0
8479812090	기타	8	0
8479813000	권선기	8	0
8479814000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8	0
8479819000	기타	8	0
8479821000	혼합기	8	0
-	- 고품 폐기물과 폐수 처리용	5	0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8	0
-	- 고품 폐기물과 폐수 처리용	5	0
8479823000	균질기	8	0
-	- 고품 폐기물과 폐수 처리용	5	0
8479824000	교반기	8	0
-	- 고품 폐기물과 폐수 처리용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79829000	기타	8	0
-	- 고품 폐기물과 폐수 처리용	5	0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79891090	기타	8	0
8479899010	프레스·압출기	5	0
8479899020	선박용·어업용 기기	8	0
8479899030	아이레팅(eyeletting)기·튜블러리벤팅(tubular revetting)기	8	0
8479899040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	8	0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8	0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8	0
8479899080	조상기(釣上機)	8	0
8479899091	제 87 류의 차량용	8	0
8479899092	전자부품장착기	8	0
8479899099	기타	8	0
-	- 흡입기·방사성 폐기물 압착기·진흙 스크레이퍼(scraper)·쓰레기 압축기·팬 머플러(fan muffler)·폐기물 처리용 분쇄기·혐기성 정화조·퇴비화 시스템·토양 샘플링 장비·토양 개간 시스템·수생 해초류 수확기·공기 가습기나 제습기	5	0
8479901010	냉방기기용(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8	0
8479901020	가정형 기기용	8	0
8479901030	제 87 류의 차량용	8	0
8479902000	제 8479.89.9080 호의 것	8	0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8	0
8479904000	제 8479.7 호의 것	8	0
8479909010	토목공사, 건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8	0
847990902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 기계의 것	8	0
8479909030	로프, 케이블 제조기의 것	8	0
847990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5	0
8479909050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교반기의 것	8	0
-	- 고품 폐기물과 폐수 처리용	5	0
8479909060	프레스·압출기의 것	5	0
8479909070	선박용·어업 기기의 것	8	0
8479909080	자동 마그네틱 제조기의 것	8	0
8479909090	기타	5	0
8480100000	금속 주조용 주형틀	8	0
8480200000	주형 베이스	8	0
8480300000	주형 제조용 모형	8	0
84804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80490000	기타	8	0
8480500000	유리 성형용 주형	8	0
848060000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8	0
84807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8	0
8480790000	기타	8	0
8481100000	감압밸브	8	0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8	0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8	0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8	0
8481400000	안전밸브	8	0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8	0
8481801020	액압 작동식의 것	8	0
8481801030	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8	0
8481801090	기타	8	0
8481802000	탭·코크와 트랩	8	0
8481809000	기타	8	0
8481901000	액츄에이터	8	0
8481909000	기타	8	0
8482102000	내경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0
8482109000	기타	8	0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8	0
848230000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0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0
8482500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0
8482800000	기타[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82910000	볼·니들·롤러	8	0
8482990000	기타	8	0
8483101000	항공기용	3	0
8483109010	제 87 류 차량용	8	0
8483109090	기타	8	0
8483201000	항공기용	3	0
8483209000	기타	8	0
8483301000	항공기용	3	0
8483309000	기타	8	0
8483401010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3	0
8483401090	기타	3	0
8483409010	기어	8	0
8483409020	기어박스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83409030	무단변속기	8	0
8483409041	제 87 류 차량용	8	0
8483409049	기타	8	0
8483409090	기타	8	0
8483501000	항공기용	8	0
8483509000	기타	8	0
8483601000	항공기용	3	0
8483602000	풍력발전기용	5	0
8483609000	기타	8	0
8483901000	항공기용	3	0
8483902000	풍력발전기용	5	0
8483909000	기타	8	0
8484101000	제 87 류 차량용	8	0
8484109000	기타	8	0
848420000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	0
8484900000	기타	8	0
84861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	0
8486102000	단결정 보울(boule)을 성장시키는 기계	0	0
8486103011	레이저 작동식 절단기	0	0
8486103019	기타	0	0
8486103020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8486103090	기타	8	0
8486104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8486104019	기타	8	0
8486104021	웨이퍼를 스트리핑·세척하는 기기	0	0
8486104029	기타	8	0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0
8486105020	전자유도식·유전식 노(爐)와 오븐	0	0
84861050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0	0
8486109000	기타	8	0
84862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	0
848620210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0
8486202210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용도의 것	0	0
8486202290	기타	8	0
8486202310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0	0
8486202390	기타	0	0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0	0
8486204000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862051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8486205190	기타	8	0
84862059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8486205990	기타	8	0
8486206010	반도체웨이퍼 위에 직접 그리는 기기	0	0
8486206020	스텝 앤 리프트 얼라이너	0	0
8486206091	레이저 작동식 기기	0	0
8486206099	기타	0	0
848620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0	0
8486208110	반도체 제조공정 중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0	0
8486208120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8486208190	기타	8	0
848620841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0	0
8486208420	반도체웨이퍼를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0
8486208490	기타	8	0
8486209110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을 위한 분사기	0	0
8486209120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과 오염물질제거기	0	0
8486209190	기타	0	0
8486209200	포토리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0	0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8486209321	레이저 작동식 기기	0	0
8486209329	기타	0	0
8486209390	기타	8	0
8486209400	웨이퍼·캐리어·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8486209500	반도체웨이퍼 위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0	0
8486209600	반도체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0	0
8486209900	기타	8	0
8486301000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0
848630200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	0
84863030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8	0
8486303020	초음파 방식에 의한 것	8	0
8486303030	방전 방식에 의한 것	8	0
8486303042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건식 식각기	5	0
8486303043	그 밖의 건식식각기	8	0
8486303049	기타	8	0
8486304010	연마기·광택기	8	0
848630409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86305011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5	0
8486305019	기타	8	0
8486305020	도포·현상기	8	0
8486305041	물리적 방식의 것	5	0
8486305042	화학적 방식의 것	5	0
8486305049	기타	8	0
8486305051	물리적 방식의 것	8	0
8486305052	화학적 방식의 것	8	0
8486305059	기타	8	0
8486306010	실(seal), 쇼트, 스페이서, 액정 디스펜서	8	0
8486306020	스크라이빙 머신	8	0
8486306030	패널 어셈블러	8	0
8486306090	기타	8	0
8486307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	0
8486308000	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	8	0
84863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로봇트	8	0
8486309090	기타	8	0
8486401010	패턴형성기(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와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8640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수리하기 위한 포커스트 이온빔 밀링기	0	0
8486401030	포토리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0	0
8486401040	마스크와 레티클을 식각, 세척, 스트리핑하는 기계와 기기	8	0
8486401090	기타	8	0
8486402010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와이어접착기	0	0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제거시키는 기계	8	0
8486402031	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0	0
8486402039	기타	8	0
8486402040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3	0
8486402050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분리하는 기계	8	0
8486402070	사출식·압축식의 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0	0
848640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 캐리어,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8486402091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0	0
8486402092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 외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8	0
8486402093	웨이퍼의 절단 이전에 전체 웨이퍼에 연결접점(범프)을 형성하는 웨이퍼 범핑용 기기	8	0
8486402094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이나 오염물질제거기(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으로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한정한다)		
8486402095	저항가열식의 전기식 노(爐)와 오븐	0	0
8486402099	기타	8	0
8486403010	반도체 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캐세트, 상자와 그 밖의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자동화된 기계와 기기	0	0
8486403090	기타	0	0
8486901010	제 8486.10.1000 호, 제 8486.10.2000 호, 제 8486.10.3010 호, 제 8486.10.3020 호, 제 8486.10.4011 호, 제 8486.10.4021 호, 제 8486.10.5010 호, 제 8486.10.5020 호, 제 8486.10.5030 호의 것	0	0
8486901020	제 8486.10.3090 호, 제 8486.10.4019 호, 제 8486.10.4029 호, 제 8486.10.9000 호의 것	8	0
8486902010	제 8486.20.1000 호, 제 8486.20.2100 호, 제 8486.20.2210 호, 제 8486.20.2310 호, 제 8486.20.2390 호, 제 8486.20.3000 호, 제 8486.20.4000 호, 제 8486.20.5110 호, 제 8486.20.5910 호, 제 8486.20.6010 호, 제 8486.20.6020 호, 제 8486.20.6090 호, 제 8486.20.7000 호, 제 8486.20.8110 호, 제 8486.20.8120 호, 제 8486.20.8410 호, 제 8486.20.8420 호, 제 8486.20.9110 호, 제 8486.20.9120 호, 제 8486.20.9190 호, 제 8486.20.9200 호, 제 8486.20.9310 호, 제 8486.20.9320 호, 제 8486.20.9400 호, 제 8486.20.9500 호, 제 8486.20.9600 호의 것	0	0
8486902020	제 8486.20.2290 호, 제 8486.20.5190 호, 제 8486.20.5990 호, 제 8486.20.8190 호, 제 8486.20.8490 호, 제 8486.20.9390 호, 제 8486.20.9900 호의 것	8	0
8486903010	제 8486.30.1000 호, 제 8486.30.2000 호의 것	0	0
8486903020	제 8486.30.3010 호, 제 8486.30.3020 호, 제 8486.30.3030 호, 제 8486.30.3042 호, 제 8486.30.3043 호, 제 8486.30.3049 호, 제 8486.30.4010 호, 제 8486.30.4090 호, 제 8486.30.6020 호, 제 8486.30.7000 호, 제 8486.30.8000 호, 제 8486.30.9020 호, 제 8486.30.9090 호의 것	8	0
8486903030	제 8486.30.5011 호, 제 8486.30.5019 호, 제 8486.30.5020 호, 제 8486.30.5041 호, 제 8486.30.5042 호, 제 8486.30.5049 호, 제 8486.30.5051 호, 제 8486.30.5052 호, 제 8486.30.5059 호, 제 8486.30.6010 호, 제 8486.30.6030 호, 제 8486.30.6090 호의 것	8	0
8486904010	제 8486.40.1010 호, 제 8486.40.1020 호, 제 8486.40.1030 호, 제 8486.40.2010 호, 제 8486.40.2031 호, 제 8486.40.2070 호, 제 8486.40.2080 호, 제 8486.40.2091 호, 제 8486.40.2094 호, 제 8486.40.2095 호, 제 8486.40.3010 호, 제 8486.40.3090 호의 것	0	0
8486904020	소호 제 8486.40.1040 호, 제 8486.40.1090 호, 제 8486.40.2020 호, 제 8486.40.2039 호, 제 8486.40.2040 호, 제 8486.40.2050 호, 제 8486.40.2092 호, 제 8486.40.2093 호, 제 8486.40.2099 호의 것	8	0
848710000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8	0
8487901000	제 87 류 차량용	8	0
8487909010	오일 실링	8	0
8487909090	기타	8	0
8501101000	직류 전동기	8	3
8501102000	교류 전동기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01103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8	0
8501201000	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고 10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202000	출력이 100 와트를 초과하고 75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203000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311010	출력이 10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311090	기타	8	0
8501312000	직류 발전기	8	0
8501321000	직류 전동기	8	0
8501322000	직류 발전기	8	0
8501331000	직류 전동기	8	0
8501332000	직류 발전기	8	0
8501341000	직류 전동기	8	0
8501342000	직류 발전기	8	0
8501401000	출력이 10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2000	출력이 100 와트를 초과하고 75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3000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4000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510000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20000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31000	출력이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32000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1,5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34000	출력이 1,5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611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12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20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3100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1639000	기타	8	0
8501640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111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12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20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3101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2131090	기타	8	0
8502132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8502134000	출력이 3,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20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20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0220301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2203090	기타	8	0
850220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31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231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23130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231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0
850239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239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23930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239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	- 가스터빈 · 열병합발전 · 복합 사이클(combined cycle) · 지열(地熱) · 유압 · 해양/파도/조수/태양열 발전세트	5	0
8502400000	회전변환기	8	0
8503001000	전동기의 것	8	3
8503002010	풍력발전기용	5	0
8503002090	기타	8	0
-	-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교류 발전기용 - 가스터빈용 · 열병합발전용 · 복합 사이클(combined cycle)용 · 지열(地熱)용 · 유압용 · 해양/파도/조수/태양열 발전세트용	5	0
8503003000	회전변환기의 것	8	0
8504101010	전류가 1 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1020	전류가 1 암페어를 초과하고 20 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2000	전류가 20 암페어를 초과하고 60 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3000	전류가 60 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21901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1902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229010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9020	용량이 1,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5,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9030	용량이 5,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30000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1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19010	용량이 10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04319020	용량이 100 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50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3
8504319040	용량이 500 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2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29010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29020	용량이 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3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39010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9020	용량이 3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904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4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49010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2,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49030	용량이 2,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1090	기타	8	3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2019	기타	8	0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2099	기타	8	3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3090	기타	8	0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4090	기타	8	3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5090	기타	8	0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0	0
8504409019	기타	0	0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9099	기타	8	0
85045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501090	기타	8	0
8504502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502090	기타	8	0
850450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04509090	기타	8	3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 8504.40 호 · 제 8504.50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 8534 호의 인쇄회로가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04909000	기타	8	3
-	- 태양열 · 풍력 에너지 인버터의 부분품	5	3
8505111000	알니코(alnico)의 것	8	0
8505119000	기타	8	0
8505191000	산화철의 것	8	0
8505199000	기타	8	0
8505200000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 · 브레이크	8	0
8505901000	전자석	8	0
8505902000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의 척(chuck) · 클램프 · 바이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8	3
850590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lifting head)	8	0
8505909000	부분품	8	0
8506101000	망간건전지	13	0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13	0
8506109000	기타	8	0
8506300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8	0
8506400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8	0
8506500000	리튬으로 만든 것	8	0
8506600000	에어징크로 만든 것	8	0
8506801000	산화아연으로 만든 것	8	0
8506809000	기타	8	0
8506900000	부분품	8	0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8	0
850720000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8	0
8507300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8	0
8507400000	니켈-철 축전지	8	0
850750000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8	0
8507600000	리튬이온 축전지	8	0
8507803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8	0
8507809000	기타	8	0
8507901000	격리판	8	0
8507909000	기타	8	0
8508111000	로봇트형	8	0
8508119000	기타	8	0
8508192000	로봇트형	8	0
850819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08600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8	0
8508701000	제 8508.11.9000 호의 것	8	3
8508702000	제 8508.19.9000 호, 제 8508.60.0000 호의 것	8	0
8508703000	제 8508.19.2000 호(가정용은 제외한다), 제 8508.11.1000 호, 제 8508.19.2000 의 것	8	3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채소즙 추출기	8	3
8509801000	커피분쇄기	8	0
8509802000	얼음분쇄기	8	0
8509803000	바닥광택기	8	0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8	0
8509809000	기타	8	3
8509900000	부분품	8	0
8510100000	면도기	8	3
8510200000	이발기	8	3
8510300000	모발제거기	8	0
8510901000	면도기의 것	8	3
8510902000	이발기의 것	8	0
8510903000	모발제거기의 것	8	3
8511101000	항공기용	3	0
8511109000	기타	8	0
8511201000	항공기용	3	0
8511209000	기타	8	0
8511301000	항공기용	3	0
8511309000	기타	8	0
8511401000	항공기용	3	0
8511409000	기타	8	3
8511501000	항공기용	3	0
8511509000	기타	8	0
8511801000	항공기용	3	0
8511809000	기타	8	3
8511901000	항공기용	3	0
8511909000	기타	8	0
8512101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8512109000	기타	8	0
8512201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8512201090	기타	8	0
851220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8512202090	기타	8	0
8512300000	음향신호용 기구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12400000	윈드스크린 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 제무기(demister)	8	0
8512900000	부분품	8	0
8513101000	광산용 안전등	8	0
8513102010	발광다이오드(LED)의 것	8	0
8513102090	기타	8	0
8513109010	발광다이오드(LED)의 것	8	0
8513109090	기타	8	0
8513900000	부분품	8	0
8514101000	실험실용	8	0
8514102000	금속공업용	8	3
8514103000	식품공업용	8	0
8514109000	기타	8	0
-	- 폐기물 소각용	5	0
8514201000	실험실용	8	0
8514202000	금속공업용	8	0
8514203000	식품공업용	8	0
8514209000	기타	8	0
-	- 폐기물 소각용	5	0
851430000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8	0
-	- 폐기물 소각용	5	0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8514409000	기타	8	0
85149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8514909000	기타	8	0
-	- 폐기물 소각용	5	0
8515110000	납땜용 인두와 건(gun)	8	0
8515190000	기타	8	0
8515211010	로봇트형	8	0
8515211090	기타	8	0
8515212010	로봇트형	8	0
8515212090	기타	8	0
8515213010	로봇트형	8	0
8515213090	기타	8	0
8515219010	로봇트형	8	0
8515219090	기타	8	0
8515291000	점 용접기기	8	0
8515292000	봉합 용접기기	8	0
8515293000	바트 용접기기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15299000	기타	8	0
8515311010	로봇형	8	0
8515311090	기타	8	0
8515319010	로봇형	8	0
8515319090	기타	8	0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8	0
8515399000	기타	8	0
8515801000	초음파 응용기기	8	0
8515802000	전자빔용 기기	8	0
851580300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	0
8515809000	기타	8	0
8515901010	레이저 작동식의 것	8	0
8515901090	기타	8	0
8515909000	기타	8	0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8	0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	0
8516290000	기타	8	0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8	3
8516320000	그 밖의 이용기기	8	3
8516330000	손 건조기	8	0
8516400000	전기다리미	8	3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8	3
8516601000	전기오븐	8	0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8	0
8516609000	기타	8	0
8516710000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8	0
8516720000	토스터	8	0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8	0
8516799000	기타	8	0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8	3
8516900000	부분품	8	5
85171100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7121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1090	기타	0	0
8517122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2090	기타	0	0
8517123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3090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17124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4090	기타	0	0
8517129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9090	기타	0	0
8517181000	푸쉬 버튼식 전화기	0	0
8517189000	기타	0	0
8517611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0	0
8517619000	기타	0	0
8517621000	텔레프린터	0	0
851762201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0	0
8517622020	사설통신용 교환기	0	0
8517622090	기타	0	0
8517623110	단국장치	0	0
8517623120	중계장치	0	0
8517623190	기타	0	0
8517623210	단국장치	0	0
8517623220	중계장치	0	0
8517623290	기타	0	0
8517623310	광중계장치	0	0
8517623320	광단국장치	0	0
8517623390	기타	0	0
8517623410	에이/디(A/D), 디/에이(D/A)변환기	0	0
8517623420	코덱	0	0
8517623430	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	0	0
8517623490	기타	0	0
8517623510	아날로그 신호전송 방식	0	0
8517623520	디지털 신호전송 방식	0	0
8517623590	기타	0	0
8517623900	기타	0	0
8517624010	키-폰	0	0
8517624020	영상전신기기	0	0
8517624090	기타	0	0
851762500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	0	0
8517626010	인쇄전신기기	0	0
8517626020	영상전신기기	0	0
8517626031	워키토키 세트	0	0
8517626039	기타	0	0
8517626040	모사전송기기	0	0
8517626050	무선통신용 교환기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17626060	무선통신용 중계기	0	0
8517626090	기타	0	0
8517627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	0
8517629000	기타	0	0
8517691100	장중단파 수신기	8	3
8517691211	휴대용 무선호출기	0	0
8517691219	기타	8	0
8517691290	기타	8	0
8517691900	기타	8	3
8517692000	영상전화기	0	0
8517699000	기타	0	0
8517701010	유선전화기의 것	0	0
8517701021	키패드	0	0
8517701022	케이스	0	0
8517701029	기타	0	0
8517701090	기타	0	0
8517702000	소호 제 8517.61 호의 것	0	0
8517703010	텔레프린터의 것	0	0
8517703021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것	0	0
8517703022	사설통신용 교환기의 것	0	0
8517703029	기타	0	0
8517703031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	0	0
8517703032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0	0
8517703039	기타	0	0
8517703041	영상전신기기의 것	0	0
8517703049	기타	0	0
851770305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의 것	0	0
851770306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것(제 8517.70.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51770307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	0
8517703090	기타	0	0
8517704011	호출용·경보용·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의 것	0	0
8517704019	기타	8	0
8517704020	영상전화기의 것	0	0
8517704090	기타	8	3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 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 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 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8109000	기타	8	3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	3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 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 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8299000	기타	8	3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셋	0	0
8518309000	기타	8	0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8	3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8	3
8518901000	인쇄회로조립품(제 8518.10.1000 호 · 제 8518.29.1000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8909000	기타	8	3
8519201000	코인이나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209000	기타(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301000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8	0
8519309000	기타	8	0
8519500000	전화응답기	0	0
8519811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812100	카세트 플레이어(제 85 류 소호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812210	자동차용	8	0
8519812220	휴대용(제 85 류 소호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8	0
8519812290	기타	8	0
8519812310	자동차용	8	0
8519812320	휴대용	8	0
8519812390	기타	8	0
8519812900	기타	8	0
8519813000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814111	자동차용	8	0
8519814112	휴대용	8	0
8519814119	기타	8	0
8519814190	기타	8	0
8519814210	자동차용	8	0
8519814220	휴대용	8	0
8519814290	기타	8	0
8519814310	릴형	8	0
8519814390	기타	8	0
8519815010	릴형	8	0
8519815020	디스크형	8	0
8519815030	카세트형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19815090	기타	8	0
851981900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3
8519891010	확성기를 갖추지 않은 것	8	0
8519891090	기타	8	0
8519892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893000	데크(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519899010	그 밖의 음성재생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3
851989902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521101000	폭이 12.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521102000	폭이 12.7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8521901000	디스크형	8	0
8521909000	기타	8	3
8522100000	픽업 카트리지	8	0
8522901010	오디오 녹음용	8	0
8522901020	비디오 녹화용	8	0
8522901090	기타	8	0
8522902000	레이저 픽업	8	0
8522909010	전화응답기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522909020	전화응답기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2909090	기타	8	0
852321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523291110	폭이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1120	폭이 4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1130	폭이 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523291210	플로피 디스크	0	0
8523291290	기타	0	0
8523291900	기타	0	0
852329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19	기타	0	0
852329212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29	기타	0	0
852329213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39	기타	0	0
852329221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219	기타	8	0
852329222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229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23292231	비디오 녹화된 것	20 원/m(표준 속도)	3
8523292239	기타	8	0
852329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919	기타	0	0
852329299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992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292999	기타	8	0
8523410000	기록이 안 된 것	0	0
85234910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491019	기타	0	0
8523491020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8	3
8523491031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491039	기타	8	0
85234990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499019	기타	0	0
8523499091	비디오 녹화된 것	8	3
8523499092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499099	기타	8	3
852351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852351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512190	기타	0	0
852351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512920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512990	기타	8	3
8523521000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갖춘 것과 그 부분품	0	0
8523529000	기타와 그 부분품	8	3
852359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852359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592190	기타	0	0
852359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592920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592990	기타	8	0
8523593000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2380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8523802100	축음기용 레코드판	8	0
85238022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802290	기타	0	0
852380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802920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802990	기타	8	0
8525501000	라디오 방송용	8	0
8525502000	텔레비전용	8	0
8525509000	기타	8	0
8525601000	라디오 방송용	0	0
8525602000	텔레비전용	0	0
8525609000	기타	0	0
8525801010	녹화기용	8	0
8525801020	모니터용	8	3
8525801090	기타	8	3
852580201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0	0
8525802090	기타	0	0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	0	0
8526101000	항공기용	8	3
8526109000	기타	8	3
8526911010	항공기용	8	3
8526911090	기타	8	0
8526912010	항공기용	8	0
8526912090	기타	8	0
8526913010	항공기용	8	3
8526913020	자동차용	8	3
8526913090	기타	8	3
8526914000	로란 리시버	8	0
8526919010	항공기용	8	3
8526919020	자동차용	8	0
8526919090	기타	8	5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8	0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8	0
8527131000	카세트형	8	0
8527132000	디스크형	8	0
852713300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13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27190000	기타	8	3
8527211000	카세트형	8	0
8527212000	디스크형	8	3
852721300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219000	기타	8	0
8527290000	기타	8	0
8527911010	카세트형	8	0
8527911020	디스크형	8	0
852791103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911090	기타	8	0
8527919000	기타	8	0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	0
8527990000	기타	8	0
85284100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28491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28491090	기타	8	0
8528492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28492090	기타	8	0
8528511000	액정모니터	0	0
8528519000	기타	0	0
8528591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	3
8528591090	기타	8	3
8528592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28592090	기타	8	3
85286100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28690000	기타	8	3
8528711010	천연색	8	0
8528711020	흑백이나 그 밖의 단색	8	0
8528712020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춘 것	8	3
8528712090	기타	8	3
8528719010	천연색	8	0
8528719020	흑백이나 그 밖의 단색	8	0
8528721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1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2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2020	디지털의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28723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3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4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4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5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5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9000	기타	8	3
8528731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 센티미터 미만인 것	8	0
8528732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 센티미터 이상 45.72 센티미터 미만인 것	8	0
8528733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 센티미터 이상인 것	8	0
8528739000	기타	8	0
8529101000	레이더기기용	8	3
8529109100	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용	8	7
8529109210	위성방송 수신용	8	0
8529109290	기타	8	0
852910930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기기의 것	0	0
8529109900	기타	8	3
8529901000	레이더기기의 것	8	0
8529909100	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의 것	8	3
8529909200	라디오 방송용·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8	0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8	0
8529909500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8	3
8529909610	천연색 튜너	8	0
8529909620	흑백이나 단색 튜너	8	0
8529909630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8	0
852990964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	8	0
8529909642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8	0
8529909643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방식용	8	0
8529909649	기타	8	0
8529909650	그 밖의 흑백이나 단색용 부분품	8	0
8529909910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 디지털카메라용(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을 포함한다)	0	0
8529909920	소호 제 8528.51 호·제 8528.41.0000 호·제 8528.61.0000 호의 것	0	0
8529909990	기타	8	3
8530101010	지상장치용	8	0
8530101090	기타	8	0
8530109000	기타	8	0
8530800000	그 밖의 기기	8	3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30900000	부분품	8	3
8531101000	도난경보기	8	0
8531102000	화재경보기	8	0
8531103000	가스경보기	8	0
8531104000	전기식의 벨	8	0
8531105000	사이렌	8	0
8531109000	그 밖의 신호기기	8	3
85312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0	0
8531201090	기타	0	0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	0
85318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8	0
8531801090	기타	8	0
8531809000	기타	8	0
8531901000	소호 제 8531.10 호의 것	8	3
8531902000	소호 제 8531.20 호의 것	0	0
8531909000	기타	8	3
853210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0
8532210000	탄탈륨의 것	0	0
8532220000	알루미늄 전해의 것	0	0
853223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	0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	0
8532250000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	0
8532290000	기타	0	0
8532301000	폴리에틸렌 가변식 축전기	0	0
8532309000	기타	0	0
8532901000	고정식	0	0
8532902000	가변식	0	0
8532909000	기타	0	0
8533100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0	0
8533211000	칩형	0	0
8533219000	기타	0	0
8533291000	칩형	0	0
8533299000	기타	0	0
8533310000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	0
8533390000	기타	0	0
8533401000	탄소가변의 것	0	0
8533402000	써머스터	0	0
8533403000	바리스터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33409000	기타	0	0
8533901000	가변식 저항기의 것	0	0
8533909000	기타	0	0
8534001000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inductance), 저항기, 축전지 등]이 형성된 것	0	0
8534002000	테이프형이나 리드프레임(lead frame)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0	0
8534009000	기타	0	0
8535100000	퓨즈	8	0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91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92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이상인 것	8	0
8535301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2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200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4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이상인 것	8	0
8535400000	피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8	0
8535901000	커넥터	8	0
8535902000	터미널	8	0
8535909000	기타	8	0
8536101000	관형	8	0
8536109000	기타	8	0
8536200000	자동차단기	8	0
853630000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8	0
8536410000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8	0
8536490000	기타	8	0
8536501000	회전형	8	0
8536502000	푸쉬 버튼형	8	0
8536503000	마이크로형	8	0
8536504000	전자개폐형(전자접속기를 포함한다)	8	0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 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0	0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것(1,000 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36509090	기타	8	3
8536610000	램프홀더	8	0
8536691000	동축케이블 · 인쇄회로용의 것	0	0
8536699000	기타	8	3
85367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36702000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것	8	0
8536703010	주조·주형·압착·단조(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36703090	기타	8	0
8536901000	접속함	0	0
8536909010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	0
8536909090	기타	8	3
8537101000	배전반	8	3
8537102000	제어반	8	3
8537109000	기타	8	0
8537201000	배전반	8	0
8537202000	제어반	8	3
8537209000	기타	8	3
853810000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8	3
8538901000	개폐기의 것	8	0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것	8	0
8538903000	계전기의 것	8	0
8538904000	제어반의 것	8	0
8538909000	기타	8	3
853910000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8	0
8539210000	탕스텐 할로겐의 것	8	0
8539221000	백열램프	8	0
8539222000	장식용 램프	8	0
8539223000	빔 램프	8	0
8539224000	집어(集魚)용 램프	8	0
8539229000	기타	8	0
8539290000	기타	8	0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8	0
8539321000	수은램프	8	0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8	0
8539323000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램프	8	0
8539391000	냉음극 형광램프	8	0
8539399000	기타	8	0
8539410000	아크램프	8	0
8539491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8539491090	기타	8	0
8539492000	적외선 램프	8	0
85399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39902000	방전램프의 것	8	0
8539909000	기타	8	0
8540110000	천연색	8	0
8540120000	단색	8	0
854020100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8	0
8540209000	기타	8	0
8540401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40402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8	0
8540601000	천연색	8	0
8540609000	기타	8	0
8540710000	자전관(magnetron)	8	0
8540791000	속도변조관(klystron)	8	0
8540799000	기타	8	0
8540810000	수신관이나 증폭관	8	0
8540891000	송신기용 열전자관	8	0
8540892000	방전관	8	0
8540893000	디지트론	8	0
8540899000	기타	8	0
8540911000	디플렉션 코일	8	0
8540912000	전자총	8	0
8540913000	새도우마스크	8	0
8540919000	기타	8	0
8540990000	기타	8	0
85411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109000	기타	0	0
854121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219000	기타	0	0
85412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299000	기타	0	0
85413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302000	사이리스터(thyristor)	0	0
8541303000	다이액(diac)	0	0
8541304000	트라이액(triac)	0	0
85414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402010	레이저소자	0	0
8541402090	기타	0	0
8541409010	광전도 셀	0	0
8541409020	광전지(태양전지·포토다이오드·포토커플·포토릴레이를 포함한다)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41409030	전하결합소자	0	0
8541409090	기타	0	0
85415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502000	정류소자	0	0
8541509000	기타	0	0
8541601000	수정진동자	0	0
8541609000	기타	0	0
8541902000	다이오드의 것	0	0
8541903000	트랜지스터의 것	0	0
8541909000	기타	0	0
854231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854231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1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21010	디램	0	0
8542321020	에스램	0	0
8542321030	플래시 메모리	0	0
8542321090	기타	0	0
854232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2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3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854233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3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9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854239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9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90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의 것	0	0
854290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의 것	0	0
854290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것	0	0
8543100000	입자가속기	8	0
8543200000	신호발생기	8	3
8543300000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전기영동(泳動)용 기기	8	0
854370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저장	8	0
8543702010	이온정수기	8	3
8543702020	미용기기	8	3
8543702030	오디오믹서	8	0
8543702040	이퀄라이저	8	0
8543702050	오존 발생기	8	0
8543702090	기타	8	0
8543703000	전자변역기·전자사전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43704010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8	0
8543704090	기타	8	0
8543709010	고주파증폭기	8	3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8	0
8543709030	전기신경자극기	0	0
8543709090	기타	8	5
8543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3909011	유기발광다이오드	0	0
8543909019	기타	0	0
8543909020	전자변역기·전자사전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인쇄회로가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43909090	기타	8	3
-	- 자외선 살균 오존 발생기의 부분품	5	3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8	0
8544119000	기타	8	0
8544190000	기타	8	0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8	0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8	0
8544421010	전기통신용	0	0
8544421090	기타	8	0
8544422010	전기통신용	0	0
8544422090	기타	8	3
8544429010	전기통신용	0	0
8544429090	기타	8	3
8544491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1012	전압이 80 볼트를 초과하고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1090	기타	8	0
8544492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2012	전압이 80 볼트를 초과하고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2090	기타	8	0
8544499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9012	전압이 80 볼트를 초과하고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9090	기타	8	0
854460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1090	기타	8	0
854460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2090	기타	8	0
854460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309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0	0
8545110000	노(爐)용	5	0
8545190000	기타	5	0
8545200000	브러시	8	0
8545901000	탄소봉	8	0
8545909000	기타	8	0
8546101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6102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46201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2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고 10 킬로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3000	정격전압이 10 킬로볼트를 초과하고 100 킬로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4000	정격전압이 100 킬로볼트를 초과하고 300 킬로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5000	정격전압이 300 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4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자	8	0
8546909000	기타	8	0
8547100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8	0
8547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8	0
8547900000	기타	8	0
8548101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6.5	0
8548102000	소호 제 7204.21 호, 제 7204.29 호, 제 7204.30 호, 제 7204.49 호의 것	0	0
8548103000	소호 제 7404.00 호의 것	0	0
8548104010	소호 제 7503.00 호의 것	0	0
8548104020	소호 제 7902.00 호의 것	0	0
8548105000	소호 제 7802.00 호의 것	0	0
8548106010	소호 제 8107.30 호의 것	3	0
8548106020	소호 제 8111.00 호의 것	3	0
8548107000	소호 제 8506.10 호, 제 8506.30 호, 제 8506.40 호, 제 8506.50 호, 제 8506.60 호, 제 8506.80 호의 것	8	0
8548109000	기타	8	0
8548901000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8909000	기타	8	0
860110000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0
8601200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	0
8602100000	디젤 전기기관차	0	0
8602900000	기타	0	0
8603101000	객차	5	0
8603102000	화차	5	0
8603901000	객차	5	0
8603902000	화차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604001000	공작차(workshop)	5	0
8604002000	기중기차(crane)	5	0
8604003000	검사차	5	0
8604004000	궤도검사차	5	0
8604009000	기타	5	0
8605001010	침대차	5	0
8605001090	기타	5	0
8605002000	수하물차	5	0
8605003000	우편차	5	0
8605004000	병원차	5	0
8605009000	기타	5	0
860610000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0	0
860630000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606911000	단열용·냉동용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606919000	기타	0	0
86069200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606990000	기타	0	0
8607110000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0
8607120000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0
8607191000	차축	5	0
8607192000	차륜	5	0
8607193000	윤축(輪軸)	5	0
8607199000	기타	5	0
86072100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0
8607290000	기타	5	0
8607301000	축	5	0
8607302000	연결장치	5	0
8607303000	완충장치	5	0
8607309000	기타	5	0
8607910000	기관차용	5	0
8607990000	기타	5	0
8608001000	철도·궤도선로용 장치물	8	0
8608002000	기계식의 신호·안전·교통 관제용 기기	8	0
8608009000	부분품	8	0
8609001000	액체 운반용	0	0
8609002000	압축가스 운반용	0	0
8609003000	일반화물 운반용	0	0
8609004000	살아있는 동물 운반용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609005000	냉동용과 냉장용	0	0
8609009000	기타	0	0
8701100000	보행운전형 트랙터	8	0
8701201000	신차	8	0
8701202000	중고차	8	0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0	0
8701901010	신차	8	0
8701901020	중고차	8	0
8701909110	50 마력 미만인 것	0	0
8701909190	기타	0	0
8701909900	기타	8	0
8702101010	신차	10	0
8702101020	중고차	10	0
8702102010	신차	10	0
8702102020	중고차	10	0
8702103010	신차	10	0
8702103020	중고차	10	0
8702901010	신차	10	0
8702901020	중고차	10	0
8702902010	신차	10	0
8702902020	중고차	10	0
8702903010	신차	10	0
8702903020	중고차	10	0
8703101000	설상주행용	8	0
8703102000	골프용차	8	0
8703109000	기타	8	0
8703217000	신차	8	0
8703218000	중고차	8	0
8703227000	신차	8	0
8703228000	중고차	8	0
8703231010	신차	8	0
8703231020	중고차	8	0
8703239010	신차	8	0
8703239020	중고차	8	0
8703241010	신차	8	0
8703241020	중고차	8	0
8703249010	신차	8	0
8703249020	중고차	8	0
8703317000	신차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703318000	중고차	8	0
8703321010	신차	8	0
8703321020	중고차	8	0
8703329010	신차	8	0
8703329020	중고차	8	0
8703337000	신차	8	0
8703338000	중고차	8	0
8703907000	전기자동차	8	0
8703909000	기타	8	0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704211010	신차	10	0
8704211020	중고차	10	0
8704219010	냉동차·냉장차	10	0
8704219020	탱크차	10	0
8704219090	기타	10	0
8704221011	신차	10	0
8704221012	중고차	10	0
8704221091	신차	10	0
8704221092	중고차	10	0
8704229010	냉동차·냉장차	10	0
8704229020	탱크차	10	0
8704229090	기타	10	0
8704231010	신차	10	0
8704231020	중고차	10	0
8704239010	냉동차·냉장차	10	0
8704239020	탱크차	10	0
8704239090	기타	10	0
8704311010	신차	10	0
8704311020	중고차	10	0
8704319010	냉동차·냉장차	10	0
8704319020	탱크차	10	0
8704319090	기타	10	0
8704321010	신차	10	0
8704321020	중고차	10	0
8704329010	냉동차·냉장차	10	0
8704329020	탱크차	10	0
8704329090	기타	10	0
8704901010	신차	10	0
8704901020	중고차	1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704909010	냉동차·냉장차	10	0
8704909020	탱크차	10	0
8704909090	기타	10	0
8705101000	신축봉식	8	0
8705102000	앵글식	8	0
8705109000	기타	8	0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8	0
8705300000	소방차	8	0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	0
8705901010	농업용 살포차	8	0
8705901090	기타	8	0
8705909010	구난차	8	0
8705909020	도로청소차	8	0
8705909030	이동공작차	8	0
8705909040	이동방송차	8	0
8705909050	이동진료차	8	0
87059090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8	0
8705909070	제설차	8	0
8705909090	기타	8	0
8706001010	소호 제 8701.20 호·제 8701.90.10 호의 것	8	0
8706001090	기타	8	0
8706002000	제 8702 호의 것	8	0
8706003000	제 8703 호의 것	8	0
8706004000	제 8704 호의 것	8	0
8706005000	제 8705 호의 것	8	0
8707100000	제 8703 호의 차량용	8	0
8707901010	소호 제 8701.20 호·제 8701.90.10 호의 것	8	0
8707901090	기타	8	0
8707902000	제 8702 호의 것	8	0
8707903000	제 8704 호의 것	8	0
8707904000	제 8705 호의 것	8	0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	0
8708210000	안전벨트	8	0
8708290000	기타	8	0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	0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8	0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8	0
8708309000	기타	8	0
870840000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8	0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	0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8	0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8	0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8	0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8	0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8	0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8	0
8708951000	에어백	8	0
8708959000	기타	8	0
8708991010	제 8701 호의 것	8	0
8708991020	제 8702 호의 것	8	0
8708991030	제 8703 호의 것	8	0
8708991040	제 8704 호의 것	8	0
8708991050	제 8705 호의 것	8	0
8708999000	기타	8	5
8709110000	전기식의 것	8	0
8709190000	기타	8	0
8709900000	부분품	8	0
8710001000	전차	0	0
8710002000	그 밖의 장갑차량	0	0
8710009000	부분품	0	0
87111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102000	모페드	8	0
8711103000	사이드카	8	0
8711109000	기타	8	0
87112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202000	사이드카	8	0
8711209000	기타	8	0
87113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302000	사이드카	8	0
8711309000	기타	8	0
87114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402000	사이드카	8	0
8711409000	기타	8	0
87115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502000	사이드카	8	0
871150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7119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902000	사이드카	8	0
8711909000	기타	8	0
8712001000	경기용	8	0
8712009010	화물운반용	8	0
8712009020	삼륜자전거	8	0
8712009090	기타	8	0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0
8713900000	기타	0	0
8714101000	안장	8	0
8714109000	기타	8	0
8714200000	신체장애인을 위한 차량의 것	0	0
8714911000	프레임	8	0
8714912000	포크	8	0
8714919000	이들의 부분품	8	0
8714921000	휠 림	8	0
8714922000	스포크	8	0
87149310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8	0
8714932000	프리휠(free-wheel) 스프로킷 휠(sprocket-wheel)	8	0
8714941000	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	8	0
8714942000	그 밖의 브레이크	8	0
8714949000	이들의 부분품	8	0
8714950000	안장	8	0
8714961000	페달	8	0
8714962000	크랭크 기어(crankgear)	8	0
8714969000	이들의 부분품	8	0
8714990000	기타	8	0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5	0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8	0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0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8	0
8716390000	기타	8	0
871640000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0
8716801000	손수레	8	0
8716802000	우마차	8	0
8716803000	썰매	8	0
871680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71690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8	0
8716909000	기타	8	0
8801001010	글라이더	0	0
8801001020	행글라이더	0	0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8	0
8801009090	기타	0	0
8802111000	군용	0	0
8802119000	기타	0	0
8802121000	군용	0	0
8802129000	기타	0	0
8802201000	프로펠러식	0	0
88022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8802203000	터보제트식	0	0
8802209000	기타	0	0
8802301000	프로펠러식	0	0
88023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8802303000	터보제트식	0	0
8802309000	기타	0	0
8802401000	프로펠러식	0	0
88024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8802403000	터보제트식	0	0
8802409000	기타	0	0
8802601010	인공위성	0	0
8802601090	기타	0	0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0	0
8802603000	서보비틀(suborbital)	0	0
8803100000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0	0
880320000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0	0
8803301000	비행기의 것	0	0
8803302000	헬리콥터의 것	0	0
8803901000	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의 것	0	0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것	0	0
8803909000	기타	0	0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0	0
8804002000	로토슈트(rotachute)	0	0
880400901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0	0
8804009020	로토슈트(rotachute)의 것	0	0
8805101010	군용·경찰용	0	0
8805101090	기타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805102010	군용·경찰용	0	0
8805102090	기타	5	0
8805109010	군용·경찰용	0	0
8805109090	기타	5	0
8805211010	군용·경찰용	0	0
8805211090	기타	5	0
8805212010	군용·경찰용	0	0
8805212090	기타	5	0
8805291010	군용·경찰용	0	0
8805291090	기타	5	0
8805292010	군용·경찰용	0	0
8805292090	기타	5	0
890110000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0	0
8901200000	탱커(tanker)	0	0
890130000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901901000	화물선	0	0
8901902000	화객선	0	0
8902001010	철강선	0	0
8902001020	에프·알·피(FRP)선	0	0
8902001030	목조선	0	0
8902001090	기타	0	0
8902002010	어획물의 가공선·저장선	0	0
8902002090	기타	0	0
8903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8	0
8903910000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89039200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8	0
8903991000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	8	0
8903999000	기타	8	0
8904001000	예인선	5	0
8904002000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5	0
8904009000	기타	5	0
8905100000	준설선	5	0
8905201000	시추대	5	0
8905202000	작업대	5	0
8905209000	기타	5	0
8905901000	조명선	5	0
8905902000	소방선	5	0
8905903000	기중기선	5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905904000	발전선	5	0
8905905000	해난구조선	5	0
8905906000	공작선	5	0
8905907000	시추선	5	0
8905908000	부선거(解船渠)	5	0
8905909000	기타	5	0
8906100000	군함	0	0
8906900000	기타	0	0
8907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5	0
8907901000	부교(소호 제 8907.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0
8907902000	탱크	5	0
8907903000	코퍼댐(coffer-dam)	5	0
8907904000	부잔교(landing stage)	5	0
8907905000	부표	5	0
8907906000	수로부표	5	0
8907909000	기타	5	0
8908001000	해체용 선박	0	0
8908009000	기타	0	0
9001101000	광섬유	8	0
9001102000	광섬유다발	8	0
9001103000	광섬유 케이블	8	0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8	0
9001300000	콘택트렌즈	8	3
9001401000	시력 교정용	8	0
9001409000	기타	8	0
9001501000	시력 교정용	8	0
9001509000	기타	8	0
9001901000	프리즘	8	0
9001902000	반사경	8	0
9001903000	그 밖의 렌즈	8	0
9001909000	기타	8	0
9002111000	사진기용	8	0
9002119010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8	0
9002119020	영사기용	8	0
9002119090	기타	8	0
9002191000	현미경용	8	0
9002192000	천체망원경용	8	0
9002199000	기타	8	0
9002201000	사진기용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02209000	기타	8	0
9002901000	사진기용	8	0
90029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9002909090	기타	8	0
90031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00319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3199000	기타	8	0
9003900000	부분품	8	0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109000	기타	8	0
9004901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901090	기타	8	0
9004902000	3D 입체영상용 안경(능동방식인지 수동방식인지에 상관없다)	8	0
9004909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909090	기타	8	3
9005100000	쌍안경	8	0
9005801000	단안경	8	0
9005802010	반사망원경	8	0
9005802020	굴절식 천체망원경	8	0
9005802030	자오의 · 적도의 · 천정의와 경위의	8	0
9005802090	기타	8	0
9005809000	기타	8	0
900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8	0
9006100000	인쇄재판용 사진기	8	0
9006301000	수중촬영용 사진기	8	0
9006302000	공중측량용 사진기	8	0
9006303000	내부기관의 내과용 · 외과용 검진용 사진기	8	5
9006304000	법정비교용 사진기	8	0
9006401000	폴라로이드 사진기	8	0
9006402000	스티커 사진기	8	0
9006409000	기타	8	0
900651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0
9006519000	기타	8	0
900652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0
900652901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이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용으로 한정한다)	8	0
9006529090	기타	8	0
900653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0
9006539010	일회용사진기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06539020	문서수룩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이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용으로 한정한다)	8	0
9006539090	기타	8	0
900659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0
9006599010	문서수룩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이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용으로 한정한다)	8	0
9006599090	기타	8	0
900661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9006691000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0
9006699000	기타	8	0
9006910000	카메라용	8	0
9006990000	기타	8	0
9007100000	촬영기	8	0
9007201000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	8	0
9007209010	폭이 20 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	8	0
9007209020	폭이 20 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용	8	0
9007910000	촬영기용	8	0
9007920000	영사기용	8	0
900850100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세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는 상관없다)	8	0
9008502000	그 밖의 투영기	8	0
9008503000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8	0
900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0101000	인쇄 제판용	8	0
9010102000	마이크로필름용	8	0
90101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9010109090	기타	8	0
901050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0	0
9010509000	기타	8	0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8	0
9010901010	제 9010.50.1000 호의 것	0	0
9010901090	기타	0	0
9010909000	기타	8	0
901110100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0
9011109000	기타	8	0
901120101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0
9011201090	기타	8	0
9011209000	기타	8	0
9011801000	편광 현미경	8	0
9011802000	금속 현미경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11803000	위상차 현미경	8	0
9011804000	생물 현미경	8	0
9011805000	비교 현미경	8	0
9011809000	기타	8	0
9011901000	제 9011.10.1000 호, 제 9011.20.1010 호의 것	0	0
9011909000	기타	8	0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9012101090	기타	8	0
9012102000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8	0
9012901000	제 9012.10.1010 호의 것	0	0
9012909000	기타	8	0
9013100000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8	0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8	0
9013801110	광전자식 시계용	8	0
9013801120	전자계산기용	0	0
9013801130	텔레비전용	8	0
9013801140	모니터용	8	0
9013801190	기타	8	0
9013801910	광전자식 시계용	8	0
9013801920	전자계산기용	0	0
9013801930	텔레비전용	8	0
9013801990	기타	8	0
901380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8	0
9013803000	도어아이	8	0
9013809000	기타	8	0
-	- 태양열 헬리오스타트(heliostat)	5	0
9013901000	제 9013.80.1120 호, 제 9013.80.1920 호의 것	0	0
9013909000	기타	8	0
-	- 태양열 헬리오스타트(heliostat)의 것	5	0
9014101010	항공기용	8	0
9014101090	기타	8	0
9014102010	항공기용	8	0
9014102090	기타	8	0
9014109000	기타	8	0
901420000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8	0
901480000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8	0
9014901000	항공기용	8	0
901490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15100000	거리측정기	8	0
901520000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8	0
9015300000	수준기(水準器)	8	0
9015400000	사진측량기기	8	0
9015801000	토지 측량용	5	0
9015802000	수로 측량용	5	0
9015803000	해양 측량용	5	0
9015804000	수리 계측용	5	0
9015805000	기상 관측용	5	0
9015809000	기타	5	0
901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6001000	직시식	8	0
9016002000	전자식	8	0
9016008000	기타	8	0
9016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7101000	플로터	0	0
9017109000	기타	8	0
9017201010	플로터	0	0
9017201090	기타	8	0
9017202010	플로터	0	0
9017202090	기타	8	0
9017203000	계산용구	8	0
9017209000	기타	8	0
9017301000	마이크로미터	8	0
9017302000	다이알 게이지류	8	0
9017303000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liper)	8	0
9017309000	기타	8	0
9017801000	눈금이 든 공은 자와 줄자	8	0
90178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9017809090	기타	8	0
90179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9017909010	플로터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9017909020	플로터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와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9017909090	기타	8	0
9018111000	심전계	8	0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120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8	0
9018130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8	3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181400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8	3
9018191000	뇌파계	8	10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8	3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8	5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8	3
9018198000	기타	8	3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8	5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831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	0
9018321000	주사침	8	5
9018322000	봉합침	8	5
9018329000	기타	8	3
9018391000	수혈세트 또는 수액세트	8	5
9018392000	카테터(catheter)	8	5
9018398000	기타	8	5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5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8	5
90184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5
9018491000	치과용 버(bur)	8	5
9018492000	치과용 유닛	8	5
9018493000	치석 제거기	8	7
9018498000	기타	8	3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7
9018501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	0
9018501090	기타	8	3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8901000	임신진단기	8	3
9018909011	레이저 작동식 기기	8	5
9018909019	기타	8	5
9018909020	산부인과용 기기	8	0
901890903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8	10
9018909040	인공신장기	8	3
9018909050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8	3
9018909060	수의과용 기기	8	3
9018909071	내과용·피부과용의 것	8	5
9018909079	기타	8	10
9018909080	기타	8	5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1890909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0	0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0	0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	0
9019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9201000	오존 흡입기	0	0
9019202000	산소 흡입기	0	0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0	0
9019204000	인공호흡기	0	0
9019208000	기타	0	0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0001000	가스마스크	8	0
9020008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	8	3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1100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0	0
9021210000	의치	0	0
9021290000	기타	0	0
9021310000	인조관절	0	0
9021390000	기타	0	0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9021901000	스크루·스테인블·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0	0
9021908000	기타	0	0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8	3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8	5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8	5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8	5
9022141090	기타	8	0
9022142000	수의과용	8	0
9022191000	물리·화학시험용	8	0
9022192000	공업용	8	3
9022199000	기타	8	3
9022211010	감마사진기 장치	8	0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8	5
9022211030	코발트 치료기	8	0
9022211090	기타	8	0
9022212000	수의과용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22291000	물리·화학시험용	8	0
9022292000	공업용	8	0
9022299000	기타	8	0
9022300000	엑스선관	8	0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8	0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8	0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8	0
9022901090	기타	8	0
9022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23001000	인체나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8	0
9023009000	기타	8	0
9024101000	경도시험기	8	0
902410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8	0
9024103000	압축시험기	8	3
9024104000	피로시험기	8	0
9024105000	만능시험기	8	0
9024106000	인쇄회로기판, 반도체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의 불이나 와이어의 접착력·전단력 측정을 위한 기기	8	0
9024109000	기타	8	0
9024801010	신축시험기	8	0
9024801020	마모시험기	8	0
9024801090	기타	8	0
9024809010	탄성시험기	8	0
9024809020	소성시험기	8	0
9024809090	기타	8	0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9024909000	기타	8	0
9025111000	의료용·수의과용 온도계	0	0
9025119000	기타	8	5
9025191000	온도계	8	5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8	5
9025192090	기타	8	3
9025801000	액체 비중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8	0
9025802010	수은 기압계	8	0
9025802090	기타	8	0
9025803010	건습구 습도계	8	0
9025803020	모발 습도계	8	0
9025803090	기타	8	0
902580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02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6101000	유량계	0	0
9026102000	액면계	0	0
9026109000	기타	0	0
9026201110	액체형	0	0
9026201120	금속형	0	0
9026201190	기타	0	0
9026201900	기타	0	0
9026209000	기타	0	0
9026801000	열측정계	0	0
9026802000	풍력계	0	0
9026809000	기타	0	0
9026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710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미립자 센서는 제외한다)	5	0
-	미립자 센서	0	0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0
9027301000	분광계	0	0
9027302000	분광광도계	0	0
9027303000	분광사진기	0	0
9027501000	편광계	0	0
9027502000	굴절계	0	0
9027503000	비색계	0	0
9027504000	조도계	0	0
9027509000	기타	0	0
902780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화학분석용 기기	0	0
9027802010	피·에이치(PH) 미터	0	0
9027802020	열량계	0	0
9027802030	점도계	0	0
9027802040	팽창계	0	0
9027802050	노출계(센서는 제외한다)	8	0
-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9027802090	기타	0	0
9027901000	마이크로톰(microtome)	5	3
90279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9027909091	가스·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톰(microtome)의 것	5	0
9027909099	기타	0	0
9028101010	디지털식	8	0
902810109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281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201010	디지털식	8	0
9028201090	기타	8	0
90282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301010	전류가 50 암페어 이상인 것	8	0
9028301020	전류가 50 암페어 미만인 것	8	0
90283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9101000	적산(積算)회전계	8	0
9029102000	생산량계	8	0
9029103000	택시미터	8	0
9029104000	주행거리계	8	0
9029105000	기계 등의 작동시간 지시용 적산(積算)계기	8	0
9029109000	기타	8	0
9029201010	시계식	8	0
9029201090	기타	8	0
9029202000	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	8	0
9029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방사선 센서는 제외한다)	0	0
-	방사선 센서	8	0
9030201010	음극선관의 것	8	0
9030201090	기타	8	0
9030202010	음극선관의 것	8	0
9030202090	기타	8	0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8	0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8	0
9030331000	전압계	8	0
9030332000	전류계	8	0
9030333000	회로계	8	0
9030334000	저항계	8	0
9030335000	검류계	8	0
9030336000	주파수 측정기	8	0
9030339000	기타	8	0
9030391000	전압계	8	0
9030392000	전류계	8	0
9030393000	회로계	8	0
9030394000	저항계	8	0
9030395000	검류계	8	0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30399000	기타	8	0
9030401000	누화계(cross-talk meter)(센서는 제외한다)	0	0
-	센서(방사선 센서는 제외한다)	8	0
9030402000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센서는 제외한다)	0	0
-	센서(방사선 센서는 제외한다)	8	0
9030403000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센서는 제외한다)	0	0
-	센서(방사선 센서는 제외한다)	8	0
9030404000	잡음전압계(psophometer)(센서는 제외한다)	0	0
-	센서(방사선 센서는 제외한다)	8	0
9030409000	기타(센서는 제외한다)	0	0
-	센서(방사선 센서는 제외한다)	8	0
90308200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센서는 제외한다)	0	0
-	센서(방사선 센서는 제외한다)	8	0
903084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	0
9030890000	기타	8	0
9030901000	소호 제 9030.82 호의 것	0	0
9030909000	기타	8	0
9031100000	균형시험기	8	0
9031200000	테스트벤치(Test bench)	8	0
9031411000	포시미터	0	0
903141200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0	0
9031419000	기타	0	0
903149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8	0
9031492000	광학식 각도계와 앵글게이지	8	0
9031493000	포시미터	8	0
9031494010	반도체 제조용	0	0
9031494090	기타	5	0
9031499000	기타	8	0
-	- 진동계	5	0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8	0
9031802000	로드셀	8	0
9031809010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	8	0
9031809020	기어 테스터	8	0
9031809030	면적계	8	0
9031809040	구면계	8	0
9031809050	직물 검사장치	8	5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8	0
9031809070	흙·균열 등 측정기	8	0
9031809080	동력시험기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	0	0
9031809099	기타	8	0
-	- 진동계	5	0
9031901010	소호 제 9031.41 호의 것	0	0
9031901090	그 밖의 것	0	0
9031909000	기타	8	0
-	- 진동계 · 윤곽투영기의 것	5	0
9032101010	냉장고용	8	0
9032101020	항공기용	5	0
9032101090	기타	8	0
9032102000	고정식	8	0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manostat)	8	0
9032811010	항공기용	5	0
9032811090	기타	8	0
9032812010	항공기용	5	0
9032812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9032812099	기타	8	0
9032819010	항공기용	5	0
9032819090	기타	8	0
9032891010	항공기용	5	0
9032891090	기타	8	0
9032892010	항공기용	5	0
9032892090	기타	8	0
9032893010	항공기용	5	0
9032893090	기타	8	0
9032899010	항공기용	5	0
9032899090	기타	8	0
-	- 태양열 보일러용 · 물가열기용 차동 온도 조절기	5	0
9032901000	항공기용	5	0
9032909000	기타	8	0
-	- 태양열 보일러용 · 물가열기용 차동 온도 조절기의 것	5	0
9033000000	제 90 류의 기계 · 기기 · 장치 · 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0
9101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0
9101191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0
9101199000	기타	8	0
9101210000	자동권(自動捲)식	8	0
9101290000	기타	8	0
9101910000	전기구동식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	양허유형
9101990000	기타	8	0
9102111000	맹인용	8	0
91021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119010	бат데리·축전지 구동식	8	0
9102119090	기타	8	0
9102121000	бат데리·축전지 구동식	8	0
9102129010	맹인용	8	0
910212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129090	기타	8	3
9102191000	бат데리·축전지 구동식	8	0
9102199010	맹인용	8	0
910219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199090	기타	8	0
9102211000	맹인용	8	0
91022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219000	기타	8	0
9102291000	맹인용	8	0
910229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299000	기타	8	0
9102911000	스톱워치	8	0
9102912000	맹인용	8	0
9102919010	бат데리·축전지 구동식	8	0
9102919090	기타	8	0
9102991000	스톱워치	8	0
9102992000	맹인용	8	0
9102999000	기타	8	0
9103101000	여행용 시계	8	0
9103109000	기타	8	0
9103901000	여행용 시계	8	0
9103909000	기타	8	0
9104001000	차량용	8	0
9104002000	항공기용	8	0
9104004000	선박용	8	0
9104009000	기타	8	0
9105110000	전기구동식	8	0
9105190000	기타	8	0
9105210000	전기구동식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105290000	기타	8	0
9105910000	전기구동식	8	0
9105990000	기타	8	0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8	0
9106901000	순찰시계	8	0
9106902000	타이머	8	0
9106903000	주차시간 기록계	8	0
9106909000	기타	8	0
9107001000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	8	0
9107009000	기타	8	0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5	0
910812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0
9108190000	기타	5	0
9108200000	자동권(自動捲)식	5	0
9108900000	기타	5	0
9109100000	전기구동식	8	0
9109900000	기타	8	0
9110111000	батери・축전지 구동식	8	0
9110112000	자동권(自動捲)식	8	0
9110119000	기타	8	0
9110121000	батери・축전지 구동식	8	0
9110122000	자동권(自動捲)식	8	0
9110129000	기타	8	0
9110191000	батери・축전지 구동식	8	0
9110192000	자동권(自動捲)식	8	0
9110199000	기타	8	0
9110901000	батери・축전지 구동식	8	0
9110909000	기타	8	0
9111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0
9111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9111800000	그 밖의 케이스	8	0
911190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0
9111909000	기타	8	0
9112200000	케이스	8	0
9112900000	부분품	8	0
9113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13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9113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113902000	가죽이나 컴퍼지션레더로 만든 것	8	0
9113909000	기타	8	0
9114100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8	0
9114300000	문자판	8	0
9114400000	지판과 브리지(bridge)	8	0
9114900000	기타	8	0
9201101000	자동식	8	0
9201109000	기타	8	0
9201200000	그랜드 피아노	8	0
9201901000	하프시코드(harpsichord)	8	0
9201909000	기타	8	0
9202101000	바이올린	8	0
9202102000	첼로	8	0
9202109000	기타	8	0
9202901000	기타	8	0
9202902000	하프	8	0
9202903000	만도린	8	0
9202904000	밴조(banjo)	8	0
9202909000	기타	8	0
9205101000	트럼펫	8	0
9205102000	트럼본	8	0
9205109000	기타	8	0
9205901010	플루트	8	0
9205901020	클라리넷	8	0
9205901030	색소폰	8	0
9205901040	리코더(recorder)	8	0
9205901090	기타	8	0
9205902010	파이프 오르간	8	0
9205902020	리드 오르간	8	0
9205902090	기타	8	0
9205903010	아코디언	8	0
9205903020	멜로디카	8	0
9205903090	기타	8	0
9205904000	하모니카	8	0
9205909000	기타	8	0
9206001000	북	8	0
9206002000	목금	8	0
9206003000	심벌	8	0
9206004000	캐스터네츠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206005000	마라카스(maracas)	8	0
9206006000	탬버린	8	0
9206009000	기타	8	0
920710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8	0
9207103000	피아노	8	0
9207109000	기타	8	0
9207901000	기타	8	0
9207902000	아코디언	8	0
9207903000	리듬박스	8	0
9207909000	기타	8	0
9208100000	뮤지컬박스	8	0
9208901000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8	0
9208902000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8	0
9208903000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8	0
9208904000	뮤지컬소(musical saw)	8	0
9208909000	기타	8	0
9209301000	금속선으로 만든 것	8	0
9209309000	기타	8	0
92099100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20000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40000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91000	뮤지컬 무브먼트의 것	8	0
9209992000	박절기(metronom) · 소리굽쇠와 각종 조율관(調律管)	8	0
9209993000	뮤지컬 박스용 메커니즘	8	0
9209999000	기타	8	0
9301101000	자주식(自走式)	0	0
9301109000	기타	0	0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0	0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0	0
9301902010	노리쇠작동	0	0
9301902020	반자동	0	0
9301902030	완전자동	0	0
9301902090	기타	0	0
9301903000	기관총	0	0
9301904010	완전자동 피스톨(pistol)	0	0
9301904090	기타	0	0
9301909000	기타	0	0
9302001010	리볼버(revolver)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302001021	반자동	0	0
9302001029	기타	0	0
9302001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	0
9302001090	기타	0	0
9302009010	리볼버(revolver)	0	0
9302009021	반자동	0	0
9302009029	기타	0	0
9302009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	0
9302009090	기타	0	0
9303100000	총구장전 화기	8	0
9303201011	펌프작동	8	0
9303201012	반자동	8	0
9303201019	기타	8	0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은 포함한다]	8	0
9303201090	기타	8	0
9303209011	펌프작동	8	0
9303209012	반자동	8	0
9303209019	기타	8	0
9303209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9303209090	기타	8	0
9303301010	단발	8	0
9303301020	반자동	8	0
9303301090	기타	8	0
9303309010	단발	8	0
9303309020	반자동	8	0
9303309090	기타	8	0
9303900000	기타	8	0
9304001000	공기총	8	0
9304009000	기타	8	0
9305101010	격발장치	0	0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0	0
9305101030	총열	0	0
9305101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가스완충기	0	0
930510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0
930510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0
9305101070	개머리판·손잡이·플레이트	0	0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pistol)용]와 실린더[리볼버(revolver)용]	0	0
9305101090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305109010	격발장치	8	0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8	0
9305109030	총열	8	0
9305109040	피스톤 · 잠금러그(locking lug) · 가스완충기	8	0
9305109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8	0
9305109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8	0
9305109070	개머리판 · 손잡이 · 플레이트	8	0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8	0
9305109090	기타	8	0
9305201000	산탄총의 총열	8	0
9305209010	라이플 총열	8	0
9305209020	탄알집과 그 부분품	8	0
9305209090	기타	8	0
9305911010	격발장치	0	0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0	0
9305911030	총열	0	0
9305911040	피스톤 · 잠금러그(locking lug) · 가스완충기	0	0
930591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0
930591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0
930591107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0
9305911080	브리치(breech) · 노리쇠와 노리쇠집	0	0
9305911090	기타	0	0
9305919000	기타	0	0
9305990000	기타	8	0
9306210000	탄약	0	0
9306290000	기타	0	0
9306301000	리벳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 · 무통 도살기용 탄약과 이들의 부분품	0	0
9306309000	기타	0	0
9306900000	기타	0	0
9307000000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0	0
9401100000	항공기용 의자	0	0
9401200000	차량용 의자	8	0
9401302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303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309000	기타	0	0
9401401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402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409000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401510000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591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599000	기타	0	0
940161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619000	기타	0	0
940169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699000	기타	0	0
940171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719000	기타	0	0
940179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799000	기타	0	0
9401801000	석재로 만든 것	0	0
9401809000	기타	0	0
9401901000	목재로 만든 것	8	0
9401902000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401909000	기타	8	0
9402101010	치과용 의자	0	0
9402101020	안과용 의자	0	0
9402101090	기타	0	0
9402109010	이발용·미용실용 의자	0	0
9402109090	기타	0	0
9402901000	수술대	0	0
9402902000	산부인과용 검진대	0	0
9402903000	분만대	0	0
9402908000	기타	0	0
9402909000	부분품	0	0
94031000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0	0
9403201000	침대	0	0
9403209000	기타	0	0
9403301000	책상	0	0
9403309000	기타	0	0
9403401000	식탁	8	0
9403409000	기타	8	0
9403501000	침대	0	0
9403509000	기타	0	0
9403601010	문갑	0	0
9403601020	화장대	0	0
9403601030	장롱	0	0
9403601090	기타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403609010	문갑	0	0
9403609020	화장대	0	0
9403609030	장롱	0	0
9403609090	기타	0	0
9403701000	보행기	0	0
9403709000	기타	0	0
9403810000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3890000	기타	0	0
9403900000	부분품	8	0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8	0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94042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0
9404300000	침낭(sleeping bag)	8	0
9404900000	기타	8	0
94051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9405102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103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9405109000	기타	8	0
94052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9405202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203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9405209000	기타	8	0
9405301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0
94053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9405309000	기타	8	0
9405401000	방폭형	8	0
9405402000	투광형	8	0
9405403000	가로등의 것	8	0
9405409000	기타	8	0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	0
9405601000	네온관의 것	8	0
9405602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0
9405603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604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9405609000	기타	8	0
9405911000	상들리에용	8	0
9405919000	기타	8	0
9405921000	상들리에용	8	0
940592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405991000	상들리에용	8	0
9405999000	기타	8	0
9406001000	나무로 만든 것	8	12
9406009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406009020	철강으로 만든 것	8	0
9406009030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0
9406009090	기타	8	0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0	0
9503001200	스쿠터	0	0
9503001300	페달차	0	0
9503001400	인형용 차	0	0
9503001800	기타	0	0
95030019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50300211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9503002120	고무로 만든 것	0	0
950300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503002140	도자제의 것	0	0
9503002150	유리로 만든 것	0	0
9503002160	나무로 만든 것	0	0
9503002190	기타	8	0
9503002910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8	0
9503002990	기타	0	0
9503003110	전기식 기차	0	0
9503003190	부속품	0	0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제 9503.00.31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50300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0	0
950300341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9503003419	기타	8	0
950300349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9503003492	고무로 만든 것	0	0
950300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503003494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503003495	도자제의 것	0	0
9503003496	유리로 만든 것	0	0
9503003497	나무로 만든 것	0	0
9503003499	기타	8	0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8	0
9503003600	퍼즐	0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503003700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0
950300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503003911	풍선·완구용 공·연과 이와 유사한 것	8	0
9503003919	기타	8	0
9503003990	부분품과 부속품(제 9503.00.3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504201000	당구대	0	0
9504202000	당구공	0	0
9504209000	기타	0	0
9504300000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0	0
9504400000	오락용 카드	0	0
9504501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9504509000	기타	0	0
9504901010	핀 테이블	0	0
9504901020	핀 세터	0	0
9504901030	볼링 볼	0	0
9504901040	레인	0	0
9504901050	볼링 핀	0	0
9504901090	기타	0	0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0	0
9504903000	그 밖의 용구	0	0
9504909010	비디오 게임용구의 것	0	0
95049090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0	0
9504909090	기타	0	0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8	0
9505900000	기타	8	0
9506110000	스키	8	0
9506120000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8	0
9506190000	기타	8	0
9506210000	세일보드(sailboard)	8	0
9506290000	기타	8	0
9506310000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8	0
9506320000	골프공	8	0
9506391000	골프채의 부분품	8	0
9506399000	기타	8	0
9506401000	탁구대	8	0
9506402000	탁구라켓	8	0
9506403000	탁구공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506409000	기타	8	0
9506510000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9506591000	배드민턴 라켓	8	0
9506599000	기타	8	0
9506610000	론테니스(lawn-tennis) 공	8	0
9506621000	축구공	8	0
9506622000	농구공	8	0
9506623000	배구공	8	0
9506624000	핸드볼공	8	0
9506625000	미식축구용	8	0
9506629000	기타	8	0
9506691000	배드민턴 셔틀콕	8	0
9506692000	야구공	8	0
9506699000	기타	8	0
950670000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0
950691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8	0
9506990000	기타	8	0
9507101000	유리섬유로 만든 것	8	0
9507102000	카본으로 만든 것	8	0
9507109000	기타	8	0
9507200000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0
9507300000	낚시 릴	8	0
9507901000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	8	0
9507909000	기타	8	0
950810000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8	0
9508900000	기타	8	0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8	0
9601901010	진주 양식용 핵	0	0
9601901090	기타	8	0
9601902000	뿔로 된 것	8	0
9601903000	뼈로 된 것	8	0
9601904000	산호로 만든 것	8	0
9601909010	진주양식용 핵	0	0
9601909090	기타	8	0
9602001000	젤라틴 캡슐	8	0
9602009010	가공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예: 상아야자)와 식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	8	0
9602009020	흑옥(광물성 흑옥 유사품을 포함한다)·호박·해포석·응결한 호박·응결한 해포석의 가공품과 그 제품	8	0
960200909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9603210000	치술[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8	0
9603290000	기타	8	0
960330000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8	0
9603400000	페인트용·디스탬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8	0
9603500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03900000	기타	8	0
9604000000	수동식 채와 어레이	8	0
960500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8	0
960610000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 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8	0
96062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8	0
960622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8	0
9606291000	조개껍질로 만든 것	8	0
9606299000	기타	8	0
960630000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그 밖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8	0
9607110000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0
960719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607199000	기타	8	0
960720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0
9607202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607209000	기타	8	0
9608100000	볼펜	8	0
960820000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8	0
9608301000	만년필	8	0
9608309000	기타	8	0
9608401000	프로펠링 펜슬(propelling pencil)	8	0
9608402010	메커니컬 타입의 것	8	0
9608402090	기타	8	0
96085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8	0
960860000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08911000	펜촉	8	0
9608912000	닙 포인트(nib point)	8	0
9608991000	부분품	8	0
9608999000	기타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609101000	연필	8	0
9609102000	색연필	8	0
9609103000	크레용	8	0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09901000	크레용·오일파스텔	8	0
9609902000	파스텔	8	0
9609903010	필기용	8	0
9609903090	기타	8	0
9609909000	기타	8	0
9610001000	석판	8	0
9610002000	흑판	8	0
9610009000	기타	8	0
9611001000	스탬프	8	0
9611002000	수동식 인쇄용 세트	8	0
9611009000	기타	8	0
9612101000	타자기용	8	0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	8	0
9612109000	기타	8	0
9612200000	잉크 패드	8	0
961310000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1320000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13800000	그 밖의ライター	8	0
9613901000	압전식 점화 유닛	8	0
9613909000	기타	8	0
9614001000	파이프와 파이프 볼(pipe bowl)	8	0
9614009000	기타	8	0
9615111000	빗	8	0
9615119000	기타	8	0
9615191000	빗	8	0
9615199000	기타	8	0
9615901000	머리핀	8	0
9615909000	기타	8	0
961610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8	0
9616200000	화장용 분침과 패드	8	0
9617001000	보온병	8	0
9617002000	보온 도시락	8	0
9617008000	기타	8	0
9617009000	부분품	8	0

HSK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618001000	마네킹 인형	8	0
9618002000	자동 인형	8	0
9618009000	기타	8	0
961900101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0	0
9619001090	기타	0	0
9619002000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8	0
9619003010	제 6108.21 호, 제 6108.22 호, 제 6108.29 호, 제 6111.20 호, 제 6111.30 호, 제 6111.90 호, 제 6209.20 호, 제 6209.30 호, 제 6209.90 호, 제 6210.50 호의 것	13	0
9619003020	제 6113 호, 제 6208.91 호, 제 6208.92 호, 제 6208.99 호의 것	13	0
9619004000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 63 류 주 제 2 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0	0
9619009000	기타	6.5	0
9701101000	회화	0	0
9701102000	대생	0	0
9701103000	파스텔	0	0
9701900000	기타	0	0
9702001000	판화	0	0
9702002000	인쇄화	0	0
9702003000	석판화	0	0
9703001000	조각	0	0
9703002000	조상(彫像)	0	0
9704001000	우표	0	0
9704009000	기타	0	0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9706001000	도자기류	0	0
9706002000	악기류	0	0
9706009000	기타	0	0

부속서 2-나
이스라엘 양허표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1010000	살아 있는 말 · 당나귀 · 노새 · 버새							
01012000	말							
01012100	번식용	0	0	0	0	개별	없음	0
0101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01013000	당나귀	0	0	0	0	개별	없음	0
0101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01020000	살아 있는 소							
01022000	축우(畜牛)							
01022100	번식용	0	0	0	0	개별	없음	0
01022900	기타							
01022910	평균 중량이 240 킬로그램 이하인 것(사육용으로서 농업농촌개발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01022920	평균 중량이 240 킬로그램 초과 250 킬로그램 이하인 것(사육용으로서 농업농촌개발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5	0	0	개별	없음	X
01022930	세관 감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0	0	0	0	Kg	없음	0
01022990	기타	0	1.15	0	0	Kg	없음	X
01023000	버팔로							
01023100	번식용	0	0	0	0	개별	없음	0
01023900	기타							
01023910	평균 중량이 240 킬로그램 이하인 것(사육용으로서 농업농촌개발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01023920	평균 중량이 240 킬로그램 초과 250 킬로그램 이하인 것(사육용으로서 농업농촌개발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5	0	0	개별	없음	X
01023930	세관 감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0	0	0	0	Kg	없음	0
01023990	기타	0	1.15	0	0	Kg	없음	X
01029000	기타							
01029030	세관 감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0	0	0	0	Kg	없음	0
01029040	평균 중량이 240 킬로그램 이하인 것(사육용으로서 농업농촌개발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01029050	평균 중량이 240 킬로그램 초과 250 킬로그램 이하인 것(사육용으로서 농업농촌개발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5	0	0	개별	없음	X
01029080	기타	0	1.15	0	0	Kg	없음	X
01030000	살아 있는 돼지							
01031000	번식용	0	0	0	0	개별	없음	0
0103900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1039100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01039110	연구용 미니피그(minipig)종[유럽동물실험과학협회 연맹(felasa)의 지침에 따른 건강과 유전학 증명서(승인된 건강 모니터링 보고서)가 첨부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01039190	기타	30	0	0	0	개별	없음	X
01039200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30	0	0	0	개별	없음	X
01040000	살아 있는 면양과 산양							
01041000	면양							
01041010	번식용	0	0	0	0	개별	없음	0
01041090	기타	0	6.22	170	0	Kg	없음	X
01042000	산양							
01042010	번식용	0	0	0	0	개별	없음	0
01042090	기타	170	0	0	0	개별	없음	X
01050000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오리·거위·칠면조·기니아새 로 한정한다]							
01051000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010511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01051200	칠면조							
01051210	개 당 가격이 12 세켈(nis) 이하인 것	0	6.6	35	0	개별	없음	X
010512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01051300	오리							
01051310	개 당 가격이 12 세켈(nis) 이하인 것	0	6.6	35	0	개별	없음	X
010513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01051400	거위							
01051410	개 당 가격이 12 세켈(nis) 이하인 것	0	6.6	35	0	개별	없음	X
010514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01051500	기니아새							
01051510	개 당 가격이 12 세켈(nis) 이하인 것	0	6.6	35	0	개별	없음	X
010515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01059000	기타							
010594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	0	8.4	150	0	개별	없음	X
01059900	기타	0	67.5	150	0	개별	없음	X
01060000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01061000	포유동물							
01061100	영장류	0	0	0	0	개별	없음	0
010612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0	0	0	0	개별	없음	0
010613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0	0	0	0	개별	없음	0
01061400	토끼	0	0	0	0	개별	없음	0
0106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0106200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1063000	조류							
01063100	앵금류	0	0	0	0	개별	없음	0
01063200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01063210	공립 동물원용(관리자의 허가 하에 수입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01063290	그 밖의 기타	12	0	0	30	개별	없음	10
01063300	타조와 에뮤(emu)[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드리아(Dromaius novaehollandiae)]	0	0	0	0	개별	없음	0
01063900	기타							
01063910	관상용 조류·앵금류 및 애완용 조류							
01063911	공립 동물원용(관리자의 허가 하에 수입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01063919	기타	12	0	0	30	개별	없음	X
01063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01064000	곤충류							
01064100	벌	0	0	0	0	개별	없음	0
01064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0106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02010000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11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12	13	0	0	Kg	없음	X
02012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12	13	0	0	Kg	없음	X
02013000	뼈 없는 것	12	13	0	0	Kg	없음	X
02020000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1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	0	Kg	없음	0
02022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0	0	0	Kg	없음	0
02023000	뼈 없는 것	0	0	0	0	Kg	없음	0
02030000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20311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30	0	0	0	Kg	없음	10
020312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0	0	0	Kg	없음	10
02031900	기타	30	0	0	0	Kg	없음	10
02032000	냉동한 것							
020321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0	0	0	0	Kg	없음	10
020322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0	0	0	Kg	없음	10
02032900	기타	20	0	0	0	Kg	없음	10
02040000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1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1010	신선한 것	0	7	30	0	Kg	없음	X
02041090	기타	0	7	30	0	Kg	없음	X
02042000	그 밖의 면양의 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20421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7	30	0	Kg	없음	X
020422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7	30	0	Kg	없음	X
02042300	뼈 없는 것	0	7	30	0	Kg	없음	X
02043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7	30	0	Kg	없음	X
02044000	그 밖의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41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7	30	0	Kg	없음	X
020442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7	30	0	Kg	없음	X
02044300	뼈 없는 것	0	7	30	0	Kg	없음	X
02045000	산양의 고기	0	7	30	0	Kg	없음	X
02050000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0010	신선한 것	10	0	0	0	Kg	없음	10
02050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5
02060000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100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1010	신선한 것	50	0	0	0	Kg	없음	X
02061090	기타	50	0	0	0	Kg	없음	X
02062000	소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2100	혀	0	0	0	0	Kg	없음	0
02062200	간	0	0	0	0	Kg	없음	0
0206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206300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0	0	0	Kg	없음	10
02064000	돼지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4100	간	20	0	0	0	Kg	없음	5
02064900	기타	20	0	0	0	Kg	없음	10
020680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60	0	0	0	Kg	없음	X
020690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2070000	제 0105 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11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3.75	170	0	Kg	없음	10
020712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2.5	170	0	Kg	없음	TRQ-부록 2-나-1의 제 3항 참조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2071300	절단육과 설육(脬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6.75	111	0	Kg	없음	10
02071400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4.5	102	0	Kg	없음	TRQ- 부록 2- 나- 1 의 제 3 항 참조
02072000	철면조의 것							
020724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4.5	170	0	Kg	없음	10
020725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3	170	0	Kg	없음	X
02072600	절단육과 설육(脬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6.75	111	0	Kg	없음	10
02072700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4.5	102	0	Kg	없음	X
02074000	오리의 것							
020741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6.75	170	0	Kg	없음	10
020742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4.5	170	0	Kg	없음	5
020743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9	111	0	Kg	없음	5
020744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6.75	111	0	Kg	없음	10
020745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4510	간	0	4.5	102	0	Kg	없음	5
02074590	기타	0	4.5	170	0	Kg	없음	X
02075000	거위의 것							
020751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6.75	170	0	Kg	없음	X
020752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20753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9	111	0	Kg	없음	X
020754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6.75	111	0	Kg	없음	X
020755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5510	간	0	4.5	102	0	Kg	없음	X
020755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2076000	기니아새의 것							
0207601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9	111	0	Kg	없음	5
0207602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6.75	170	0	Kg	없음	X
02076090	기타	0	4.5	170	0	Kg	없음	X
02080000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脬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1000	토끼의 것	25	0	0	0	Kg	없음	10
02083000	영장류의 것	18	0	0	0	Kg	없음	10
02084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18	0	0	0	Kg	없음	1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02085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8	0	0	0	Kg	없음	10
02086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18	0	0	0	Kg	없음	10
02089000	기타	18	0	0	0	Kg	없음	10
02090000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1000	돼지의 것	0	0	0	0	Kg	없음	0
0209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2100000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02101000	돼지고기							
021011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417	85	0	Tons	없음	10
021012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0	417	85	0	Tons	없음	10
02101900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0	417	85	0	Tons	없음	10
02102000	쇠고기	0	417	85	0	Tons	없음	10
02109000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02109100	영장류의 것							
02109110	육과 설육(屑肉)	0	417	85	0	Tons	없음	10
02109190	기타	16	417	85	0	Tons	없음	10
021092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02109210	육과 설육(屑肉)	0	417	85	0	Tons	없음	10
02109290	기타	16	417	85	0	Tons	없음	10
021093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2109310	육과 설육(屑肉)	0	417	85	0	Tons	없음	10
02109390	기타	16	417	85	0	Tons	없음	10
02109900	기타							
02109910	간(닭장 또는 자연 방사된 닭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Tons	없음	0
02109920	육과 설육(屑肉)	0	417	85	0	Tons	없음	10
02109990	기타	16	417	85	0	Tons	없음	10
03010000	활어							
03011000	관상용							
03011100	민물의 것							
03011110	공립 동물원용(관리자의 허가 하에 수입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3011190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03011900	기타							
03011910	공립 동물원용(관리자의 허가 하에 수입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3011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03019000	그 밖의 활어							
030191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19110	번식용 · 양식용 어류(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3019190	기타	0	2.5	0	0	Kg	없음	5
03019200	뱀장어[앙굴라(Anguilla)종]							
03019210	번식용 · 양식용 어류(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3019290	기타	0	2.5	0	0	Kg	없음	5
030193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i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 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03019310	번식용 · 양식용 어류(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3019390	기타	0	2.5	0	0	Kg	없음	5
03019400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03019410	번식용 · 양식용 어류(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3019490	기타	0	2.5	0	0	Kg	없음	5
030195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3019510	번식용 · 양식용 어류(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3019590	기타	0	2.5	0	0	Kg	없음	5
03019900	기타							
03019910	번식용 · 양식용 어류(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3019990	기타	0	2.5	0	0	Kg	없음	5
03020000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3021000	연어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11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6.5	0	0	Kg	없음	X
030213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벨카(Oncorhynchus nerka)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0	0	0	0	Kg	없음	0
030214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0	0	0	Kg	없음	0
030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22000	넙치류[플루로벡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2100	넙치[레인하르트투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0	3	0	0	Kg	없음	5
03022200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0	3	0	0	Kg	없음	5
03022300	서대[솔레이(Solea)종]	0	3	0	0	Kg	없음	5
03022400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 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	0	3	0	0	Kg	없음	5
03022900	기타	0	3	0	0	Kg	없음	5
03023000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31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0	3	0	0	Kg	없음	5
030232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0	3	0	0	Kg	없음	10
03023300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0	3	0	0	Kg	없음	1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3023400	눈다랑어 [터너스 오베서스 (Thunnus obesus)]	0	3	0	0	Kg	없음	10
03023500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 [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 (Thunnus orientalis)]	0	3	0	0	Kg	없음	10
03023600	남방 참다랑어 [터너스 맥코이 (Thunnus maccoyii)]	0	3	0	0	Kg	없음	10
03023900	기타	0	3	0	0	Kg	없음	10
03024000	청어 [클루페아 하렌구스 (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 (Clupea pallasii)], 멸치 [엔그라울리스 (Engraulis) 종], 정어리 [사르디나 필차르두스 (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 (Sardinops) 종], 사르디넬라 [사르디넬라 (Sardinella) 종], 브리스링 (brisling) 이나 스프랫 (sprats) [스프라투스 (Sprattus sprattus)], 고등어 [스콤버 스콤브루스 (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 (Scomber japonicus)], 전갱이 [트라커러스 (Trachurus) 종], 날쌔기 [라키센트론 카나둠 (Rachycentron canadum)], 황새치 [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gladius)]. 다만, 간과 어란 (魚卵)은 제외한다.							
03024100	청어 [클루페아 하렌구스 (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 (Clupea pallasii)]	0	1	0	0	Kg	없음	5
03024200	멸치 [엔그라울리스 (Engraulis) 종]	0	1	0	0	Kg	없음	5
03024300	정어리 [사르디나 필차르두스 (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 (Sardinops) 종], 사르디넬라 [사르디넬라 (Sardinella) 종], 브리스링 (brisling) 이나 스프랫 (sprats) [스프라투스 (Sprattus sprattus)]	0	1	0	0	Kg	없음	5
03024400	고등어 [스콤버 스콤브루스 (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 (Scomber japonicus)]	0	1	0	0	Kg	없음	5
03024500	전갱이 [트라커러스 (Trachurus) 종]	0	1	0	0	Kg	없음	5
03024600	날쌔기 [라키센트론 카나둠 (Rachycentron canadum)]	0	1	0	0	Kg	없음	5
03024700	황새치 [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gladius)]	0	1	0	0	Kg	없음	5
03025000	브레그마세로티대 (Bregmacerotidae) 과 · 유 클리티대 (Euclichthyidae) 과 · 가디대 (Gadidae) 과 · 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 과 · 멜라 노니대 (Melanonidae) 과 · 메르루치대 (Merluccius)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ciidae) 과 · 모리대 (Moridae) 과 · 무라에놀레 피디대 (Muraenolepididae) 과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5100	대구[가두스 모르화 (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 (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Gadus macrocephalus)]	0	1	0	0	Kg	없음	5
030252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Melanogrammus aeglefinus)]	0	1	0	0	Kg	없음	5
030253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Pollachius virens)]	0	1	0	0	Kg	없음	5
03025400	민대구[메루키우스 (Merluccius) 종 · 유르피 키스 (Urophycis) 종]							
03025410	민대구[유르피키스 (Urophycis) 종]	0	1	0	0	Kg	없음	5
03025490	기타	0	7.5	0	0	Kg	없음	X
030255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Theragra chalcogramma)]	0	1	0	0	Kg	없음	5
03025600	블루 화이트잉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 (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Micromesistius australis)]	0	1	0	0	Kg	없음	5
03025900	기타							
03025910	그 밖의 어류(이스라엘이나 지중해에서 자라거나 잡히지 않는 어종으로서 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	0	0	Kg	없음	5
03025990	기타	0	7.5	0	0	Kg	없음	10
03027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 종], 메기[판가시우스 (Pangasius) 종 · 실루루스 (S ilurus) 종 · 클라리아스 (Clarias) 종 · 익타루 러스 (Ictalurus) 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 ichthys) 종 · 시리누스 (Cirrhinus) 종 · 마일 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r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귤라 (Anguilla) 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 (Channa) 종].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71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 종]	0	6.5	0	0	Kg	없음	X
03027200	메기[판가시우스 (Pangasius) 종 · 실루루스 (S ilurus) 종 · 클라리아스 (Clarias) 종 · 익타루 러스 (Ictalurus) 종]							
03027210	메기[판가시우스 (Pangasius) 종 · 실루루스 (S ilurus) 종 · 익타루러스 (Ictalurus) 종]	0	1	0	0	Kg	없음	5
03027290	기타	0	7.5	0	0	Kg	없음	X
030273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Carassius	0	6.5	0	0	Kg	없음	X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 ichthys) 종 · 시리누스 (Cirrhinus) 종 · 마일 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03027400	뱀장어 [앙굴라 (Anguilla) 종]	0	1	0	0	Kg	없음	5
03027900	기타							
03027910	나일 퍼치 [라테스 니로티쿠스 (Lates niloticus)]	0	5	0	0	Kg	없음	5
03027990	가물치 [카나 (Channa) 종]	0	1	0	0	Kg	없음	5
03028000	그 밖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 (魚卵)은 제외한다.							
03028100	곰상어와 그 밖의 상어	0	1	0	0	Kg	없음	5
03028200	가오리와 홍어 [라지대 (Rajidae) 과]	0	1	0	0	Kg	없음	5
03028300	이빨고기 [디소스티쿠스 (Dissostichus) 종]	0	1	0	0	Kg	없음	5
03028400	농어 [디센트라르쿠스 (Dicentrarchus) 종]	0	7.5	0	0	Kg	없음	X
03028500	돔 [스파리대 (Sparidae) 과]							
03028510	백색 참돔 [디플로두스 사르구스 (Diplodus sargus)]	0	8.5	0	0	Kg	없음	X
03028520	먹도미 [스파루스 아우라투스 (Sparus auratus)]	0	7.5	0	0	Kg	없음	X
03028590	기타	0	7.5	0	0	Kg	없음	X
03028900	기타							
03028910	송어 [무길대 (Mugilidae) 과]	0	6.5	0	0	Kg	없음	X
03028920	흰농어 [에피네펠루스 아이네우스 (epinephelus aeneus)], 노랑촉수 [물루스 바르바투스 (mullus barbatus)], 물치다래 [아욱시스 타자르드 (auxis thazard)], 젓방어 [세리올라 두메릴리 (seriola dumerili)], 백색 참돔 [디플로두스 사르구스 (diplodus sargus)]	0	8.5	0	0	Kg	없음	X
03028930	홍어 (red fish)	0	5	0	0	Kg	없음	10
03028980	그 밖의 어류 (이스라엘이나 지중해에서 자라거나 잡히지 않는 어종으로서 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	0	0	Kg	없음	5
03028990	기타	0	7.5	0	0	Kg	없음	X
03029000	간과 어란 (魚卵)	0	0	0	0	Kg	없음	0
03030000	냉동어류 [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 (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1000	연어과. 다만, 간과 어란 (魚卵)은 제외한다.							
03031100	소크아이 연어 [홍연어 (red salmon)] [옹코링쿠스 넬카 (Oncorhynchus nerka)]	0	0	0	0	Kg	없음	0
03031200	그 밖의 태평양 연어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 (Oncorhynchus gorbuscha) · 옹코링쿠스 케타 (Oncorhynchus keta) · 옹코링쿠스 차비차 (Oncorhynchus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tsc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030313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0	0	0	Kg	없음	0
030314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3141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훈제생선 산업용으로서 산업무역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6.5	0	0	Kg	없음	X
03031490	기타	0	6.5	0	0	Kg	없음	X
0303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32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 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 ias)종 · 익타루 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 inus)종 · 카라시우 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 l 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 al m 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 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카틀라 카틀라(Cat 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겔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제 0303.9100 호부터 제 0303.9900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23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03032310	산업용으로서 산업무역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0	0	0	0	Kg	없음	0
03032390	그 밖의 틸라피아	0	6.5	0	0	Kg	없음	X
030324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 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 ias)종 · 익타루 러스(Ictalurus)종]							
0303241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 iluru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0	0	0	0	Kg	없음	0
03032490	기타	0	6.5	0	0	Kg	없음	X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30325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03032510	산업용으로서 산업무역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0	0	0	0	Kg	없음	0
03032590	그 밖의 잉어	0	6.5	0	0	Kg	없음	X
03032600	뱀장어[앙굴라(Anguilla)종]	0	0	0	0	Kg	없음	0
03032900	기타							
03032910	산업용으로서 산업무역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0	0	0	0	Kg	없음	0
03032920	나일 퍼치. 다만, 소호 제 29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1	0	0	Kg	없음	5
03032980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소호 제 29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6.5	0	0	Kg	없음	5
03033000	넙치류[플루로벡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키포탈미대(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3100	넙치[레인하르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0	0	0	0	Kg	없음	0
03033200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0	0	0	0	Kg	없음	0
03033300	서대[솔레이(Solea)종]	0	0	0	0	Kg	없음	0
03033400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0	0	0	0	Kg	없음	0
0303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34000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Katsuwonus) pelamis)].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41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0	0	0	0	Kg	없음	0
030342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0	0	0	0	Kg	없음	0
03034300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0	0	0	0	Kg	없음	0
030344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0	0	0	0	Kg	없음	0
03034500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티너스 (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 (Thunnus orientalis)]							
03034600	남방 참다랑어 [티너스 맥코이 (Thunnus maccoyi)]	0	0	0	0	Kg	없음	0
0303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35000	청어 [클루페아 하렌구스 (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 (Clupea pallasii)], 정어리 [사르디나 필차르두스 (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 (Sardinops) 종], 사르디넬라 [사르디넬라 (Sardinella) 종], 브리스링 (brisling) 이나 스프랫 (sprats)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Sprattus sprattus)], 고등어 [스콤버 스콤브루스 (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 (Scomber japonicus)], 전갱이 [트라커러스 (Trachurus) 종], 날쌔기 [라키센트론 카나둠 (Rachycentron canadum)], 황새치 [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gladius)]. 다만, 간과 어란 (魚卵)은 제외한다.							
03035100	청어 [클루페아 하렌구스 (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 (Clupea pallasii)]	0	0	0	0	Kg	없음	0
03035300	정어리 [사르디나 필차르두스 (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 (Sardinops) 종], 사르디넬라 [사르디넬라 (Sardinella) 종], 브리스링 (brisling) 이나 스프랫 (sprats)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Sprattus sprattus)]	0	0	0	0	Kg	없음	0
03035400	고등어 [스콤버 스콤브루스 (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 (Scomber japonicus)]	0	0	0	0	Kg	없음	0
03035500	전갱이 [트라커러스 (Trachurus) 종]	0	0	0	0	Kg	없음	0
03035600	날쌔기 [라키센트론 카나둠 (Rachycentron canadum)]	0	0	0	0	Kg	없음	0
03035700	황새치 [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gladius)]	0	0	0	0	Kg	없음	0
03036000	브레그마세로티대 (Bregmacerotidae) 과 · 유 클리티대 (Euclichthyidae) 과 · 가디대 (Gadidae) 과 · 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 과 · 멜라 노니대 (Melanonidae) 과 · 메르루치대 (Merlucciidae) 과 · 모리대 (Moridae) 과 · 무라에놀레 피디대 (Muraenolepididae) 과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 (魚卵)은 제외한다.							
03036300	대구 [가두스 모르화 (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 (Gadus ogac) · 가두스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마크로세팔루스 (Gadus macrocephalus)]							
03036400	해덕 [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Melanogrammus aeglefinus)]	0	0	0	0	Kg	없음	0
03036500	검정대구 [폴라치우스 비렌스 (Pollachius virens)]	0	0	0	0	Kg	없음	0
03036600	민대구 [메루키우스 (Merluccius) 종 · 유르피 키스 (Urophycis) 종]	0	0	0	0	Kg	없음	0
03036700	명태 [테라그라 찰코그라마 (Theragra chalcogramma)]	0	0	0	0	Kg	없음	0
03036800	블루 화이트잉스 (blue whittings)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 (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Micromesistius australis)]	0	0	0	0	Kg	없음	0
03036900	기타							
03036910	산업용으로서 산업무역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0	0	0	0	Kg	없음	0
03036920	이스라엘이나 지중해에서 자라거나 잡히지 않는 어종으로서 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0	0	0	0	Kg	없음	0
03036990	기타	0	6.5	0	0	Kg	없음	10
03038000	그 밖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 (魚卵)은 제외한다.							
03038100	곰상어와 그 밖의 상어	0	0	0	0	Kg	없음	0
03038200	가오리와 흉어 [라지대 (Rajidae) 과]	0	0	0	0	Kg	없음	0
03038300	이빨고기 [디소스티쿠스 (Dissostichus) 종]	0	0	0	0	Kg	없음	0
03038400	농어 [디센트라르쿠스 (Dicentrarchus) 종]	0	6.5	0	0	Kg	없음	X
03038900	기타							
03038910	홍어 (red fish). 다만, 소호 제 89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1	0	0	Kg	없음	5
03038920	송어 [무길대 (Mugilidae) 과]. 다만, 소호 제 89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6.5	0	0	Kg	없음	X
03038930	산업용으로서 산업무역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0	0	0	0	Kg	없음	0
03038980	이스라엘이나 지중해에서 자라거나 잡히지 않는 어종으로서 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0	0	0	0	Kg	없음	0
03038990	기타	0	6.5	0	0	Kg	없음	X
03039000	간과 어란 (魚卵)	0	0	0	0	Kg	없음	0
03040000	어류의 필레 (fillet)와 그 밖의 어육 (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43000	틸라피아 [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 종], 메기 [판가시우스 (Pangasius) 종 · 실루러스 (S ilurus) 종 · 클라리아스 (Clarias) 종 · 익타루 러스 (Ictalurus) 종], 잉어 [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i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 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겔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31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0	11	0	0	Kg	없음	X
030432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루스(S 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 루스(Ictalurus)종]							
0304321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루스(S ilurus)종 · 익타루루스(Ictalurus)종]	0	0	0	0	Kg	없음	0
03043290	기타	0	5	0	0	Kg	없음	5
030433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0	5	0	0	Kg	없음	5
03043900	기타							
03043910	잉어의 것	0	11	0	0	Kg	없음	X
03043920	이스라엘이나 지중해에서 자라거나 잡히지 않는 어종으로서 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0	0	0	0	Kg	없음	0
03043990	기타	0	11	0	0	Kg	없음	X
03044000	그 밖의 어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41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벨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0	0	0	Kg	없음	0
030442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11	0	0	Kg	없음	X
03044300	넙치류[플루로벡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 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코 프탈미대(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Citharidae)과]	0	5	0	0	Kg	없음	5
030444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 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 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oidae)과 · 멜라 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ciidae) 과 · 모리대 (Moridae) 과 · 무라에놀레 피디대 (Muraenolepididae) 과의 어류							
03044410	대구 [가두스 모르화 (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 (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Gadus macrocephalus)]	0	5	0	0	Kg	없음	5
03044420	민대구 [메루키우스 (Merluccius) 종 · 유르피 키스 (Urophycis) 종]	0	5	0	0	Kg	없음	5
03044430	그 밖의 어류의 필레 (fillet). 다만, 이스라엘이나 지중해에서 자라거나 잡히지 않는 어종으로서 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3044490	기타	0	11	0	0	Kg	없음	10
03044500	황새치 [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gladius)]	0	11	0	0	Kg	없음	10
03044600	이빨고기 [디소스티쿠스 (Dissostichus) 종]	0	0	0	0	Kg	없음	0
03044900	기타							
03044910	송어 [무질리대 (mugilidae)] 의 것	0	11	0	0	Kg	없음	X
03044920	홍어 (red fish)	0	5	0	0	Kg	없음	X
03044930	소호 제 0302.3000 호 · 제 0302.4000 호 · 제 0302. 5200 호 · 제 0302.5300 호 · 제 0302.7400 호 · 제 0302.8100 호의 어류의 것	0	5	0	0	Kg	없음	X
03044950	그 밖의 어류의 필레 (fillet). 다만, 이스라엘이나 지중해에서 자라거나 잡히지 않는 어종으로서 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3044990	기타	0	11	0	0	Kg	없음	10
03045000	기타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45100	틸라피아 [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 종], 메기 [판가시우스 (Pangasius) 종 · 실루러스 (S ilurus) 종 · 클라리아스 (Clarias) 종 · 익타루 러스 (Ictalurus) 종], 잉어 [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i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 ichthys) 종 · 시리누스 (Cirrhinus) 종 · 마일 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 [앙귤라 (Anguilla) 종], 나일 퍼치 [라테스 니로티쿠스 (Lates niloticus)], 가물치 [카나 (Channa) 종]	0	0	0	0	Kg	없음	0
03045200	연어과	0	0	0	0	Kg	없음	0
03045300	브레그마세로티대 (Bregmacerotidae) 과 · 유 클리티대 (Euclichthyidae) 과 · 가디대 (Gadid ae) 과 · 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 과 · 멜라 노니대 (Melanonidae) 과 · 메르루치대 (Merluc ciidae) 과 · 모리대 (Moridae) 과 · 무라에놀레 피디대 (Muraenolepididae) 과의 어류	0	0	0	0	Kg	없음	0
03045400	황새치 [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gladius)]							
03045500	이빨고기 [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 종]	0	0	0	0	Kg	없음	0
03045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46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 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 종 · 실루러스(Silurus) 종 · 클라리아스(Clarias) 종 · 익타루러스(Ictalurus) 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 종 · 시리누스(Cirrhinus) 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귤라(Anguilla) 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 종]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61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 종]	0	15	0	0	Kg	없음	X
030462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 종 · 실루러스(Silurus) 종 · 클라리아스(Clarias) 종 · 익타루러스(Ictalurus) 종]							
0304621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 종 · 실루러스(Silurus) 종 · 익타루러스(Ictalurus) 종]	0	0	0	0	Kg	없음	0
03046290	기타	0	11	0	0	Kg	없음	10
030463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0	0	0	0	Kg	없음	0
03046900	기타							
03046910	잉어의 것	0	11	0	0	Kg	없음	X
03046990	가물치[카나(Channa) 종]	0	0	0	0	Kg	없음	0
030470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 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 과 · 가디대(Gadidae) 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oidae) 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 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 과 · 모리대(Moridae) 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 과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71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0	0	0	Kg	없음	0
030472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	0	0	0	Kg	없음	0
030473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	0	0	0	Kg	없음	0
030474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 종 · 유르피키스(Urophycis) 종]	0	0	0	0	Kg	없음	0
030475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	0	0	0	Kg	없음	0
03047900	기타							
03047910	이스라엘이나 지중해에서 자라거나 잡히지 않는 어종으로서 농업부장관에 의하여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승인된 것							
03047990	기타	0	11	0	0	Kg	없음	10
03048000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81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o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0	0	0	Kg	없음	0
030482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11	0	0	Kg	없음	X
03048300	넙치류[플루로벡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코 프탈미대(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Citharidae)과]	0	0	0	0	Kg	없음	0
030484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11	0	0	Kg	없음	10
030485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11	0	0	Kg	없음	10
030486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	0	0	0	Kg	없음	0
03048700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Katsuwonus) pelamis)]	0	0	0	0	Kg	없음	0
03048900	기타							
03048910	송어[무질리대(mugilidae)]의 것	0	11	0	0	Kg	없음	X
03048920	소호 제 0302.4400 호 · 제 0302.5200 호 · 제 0302. 5300 호 · 제 0302.7400 호 · 제 0302.8100 호 의 어류의 것	0	0	0	0	Kg	없음	0
03048940	홍어(red fish)	0	0	0	0	Kg	없음	0
03048980	이스라엘이나 지중해에서 자라거나 잡히지 않는 어종으로서 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0	0	0	0	Kg	없음	0
03048990	기타	0	11	0	0	Kg	없음	10
030490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491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gladius)]							
03049200	이빨고기 [디소스티쿠스 (Dissostichus) 종]	0	0	0	0	Kg	없음	0
03049300	틸라피아 [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 종], 메기 [판가시우스 (Pangasius) 종 · 실루러스 (Silurus) 종 · 클라리아스 (Clarias) 종 · 익타루러스 (Ictalurus) 종], 잉어 [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 종 · 시리누스 (Cirrhinus) 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 [앙귤라 (Anguilla) 종], 나일 퍼치 [라테스 니로티쿠스 (Lates niloticus)], 가물치 [카나 (Channa) 종]	0	0	0	0	Kg	없음	0
03049400	명태 [테라그라 찰코그라마 (Theragra chalcogramma)]	0	0	0	0	Kg	없음	0
03049500	브레그마세로티대 (Bregmacerotidae) 과 · 유클리티대 (Euclichthyidae) 과 · 가디대 (Gadidae) 과 · 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 과 · 멜라노니대 (Melanonidae) 과 · 메르루치대 (Merlucciidae) 과 · 모리대 (Moridae) 과 · 무라에놀레피디대 (Muraenolepididae) 과의 어류 [명태 (테라그라 찰코그라마 (Theragra chalcogramma)) 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0304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50000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 (屑肉)							
03051000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 (pellet)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5
03052000	해덕 [멜라노그라마투스 애그레피누스 (Melanogrammus aeglefinus)]							
0305201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52020	기타	8	0	0	0	Kg	없음	5
03053000	어류의 필레 (fillet) (건조하거나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3100	틸라피아 [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 종], 메기 [판가시우스 (Pangasius) 종 · 실루러스 (Silurus) 종 · 클라리아스 (Clarias) 종 · 익타루러스 (Ictalurus) 종], 잉어 [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 종 · 시리누스 (Cirrhinus) 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 [앙귤라 (Anguilla) 종], 나일 퍼치 [라테스 니로티쿠스 (Lates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305311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53190	기타	8	0	0	0	Kg	없음	5
030532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 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 ae)과·마크로우리대(Macrouidae)과·멜라 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 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 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0305321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53220	건조한 대구	0	0	0	0	Kg	없음	0
03053290	기타	8	0	0	0	Kg	없음	5
03053900	기타							
0305391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53990	기타	8	0	0	0	Kg	없음	5
03054000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41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8	0	0	0	Kg	없음	5
030542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8	0	0	0	Kg	없음	5
030543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8	0	0	0	Kg	없음	5
030544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 ilurus)종·클라리아스(Clar ias)종·익타루 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i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 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 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8	0	0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piceus]], 뱀장어[앙굴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3054900	기타	8	0	0	0	Kg	없음	5
03055000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51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3055110	염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55120	건조한 플레이크(flake)	0	0	0	0	Kg	없음	0
03055130	기타	8	0	0	0	Kg	없음	5
03055900	기타							
03055910	염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55920	건조한 플레이크(flake)	0	0	0	0	Kg	없음	0
03055930	기타	8	0	0	0	Kg	없음	5
03056000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61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	0	0	0	Kg	없음	0
030562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0	0	0	Kg	없음	0
03056300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0	0	0	0	Kg	없음	0
030564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 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 ias)종 · 익타루 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i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 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 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굴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	0	0	0	Kg	없음	0
03056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57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 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 ias)종 · 익타루 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i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 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굴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57100	상어 지느러미							
03057110	염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57190	기타	8	0	0	0	Kg	없음	5
03057200	어류의 머리 · 꼬리 · 부레							
03057210	염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57290	기타	8	0	0	0	Kg	없음	5
03057900	기타							
03057910	염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57990	기타	8	0	0	0	Kg	없음	5
03060000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61000	냉동한 것							
030611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ınurus)종 · 파누리 루스(Panulirus)종 · 자수스(Jasus)종]							
0306112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118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61200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0306122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128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61400	게							
030614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14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61500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306152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158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61600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 · 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0306162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1680	기타	26	0	0	0	Kg	없음	10
03061700	그 밖의 새우류							
0306172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1780	기타	26	0	0	0	Kg	없음	1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3061900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19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1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62000	냉동하지 않은 것							
030621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0306212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218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62200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0306222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228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62400	게							
030624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24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62500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30625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25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62600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030626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2690	기타	26	0	0	0	Kg	없음	10
03062700	그 밖의 새우류							
030627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2790	기타	26	0	0	0	Kg	없음	10
03062900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2910	민물가재[케락스 콰드리카리노투스(Cherax Quadrica Rinotus)]							
03062911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2919	기타	26	0	0	0	Kg	없음	10
03062990	기타							
03062991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629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70000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1000	굴							
03071100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7190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30719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71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72000	가리비과의 조개[Pecten(Pecten)·클라미스(Chlamys)·프 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00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72900	기타							
030729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72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73000	홍합[미틸루스(Mytilus)종·페르나(Perna) 종]							
03073100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73900	기타							
030739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73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74000	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o)종·옴마스 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 종·노토타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 투디스(Sepioteuthis)종]							
03074100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35	0	0	0	Kg	없음	X
03074900	기타							
030749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74990	기타	35	0	0	0	Kg	없음	X
03075000	문어[옥토퍼스(Octopus)종]							
03075100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35	0	0	0	Kg	없음	10
03075900	기타							
030759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75990	기타	35	0	0	0	Kg	없음	10
030760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03076010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6	0	0	0	Kg	없음	10
03076090	기타							
03076091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76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77000	클램(clam), 새조개와 피조개[아르치대(Arcidae)과·아르크티치대 (Arctidae)과·카르디대(Cardidae)과· 도나치대(Donacidae)과·히아텔리대(Hiatel idae)과·마르크트리대(Mactridae)과·메 소데스마티대(Mesodesmatidae)과·마이이대 (Myidae)과·세멜리대(Semelidae)과·솔레 쿠르티대(Solecurtidae)과·솔레니대(Solen idae)과·트리다크니대(Tridacnidae)과·베 네리대(Veneridae)과]							
03077100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77900	기타							
030779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77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3078000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03078100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78900	기타							
030789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78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79000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9100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79900	기타							
030799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79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80000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1000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리오이데(Holothurioidea)과]							
03081100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81900	기타							
030819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81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82000	성게[스트롱길로센트로투스(Strongylocentrotus)종·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Paracentrotus lividus)·록세치누스 알버스(Loxechinus albus)·에치치누스 에스쿨렌투스(Echichinus esculentus)]							
03082100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3082900	기타							
030829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82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83000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종]							
030830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83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3089000	기타							
03089010	훈제한 것	12	0	0	0	Kg	없음	5
0308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4010000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11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40	0	0	0	Kg	없음	1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4012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초과 100 분의 6 이하인 것	40	0	0	0	Kg	없음	10
04014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초과 100 분의 10 이하인 것	0	5.5	60	0	Kg	없음	10
04015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	0	5.5	60	0	Kg	없음	10
04020000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1000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04021020	초콜릿·캔디(candy)·동물성 식품 또는 제 1901 호의 조제 식료품 제조용으로서 경제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162	0	0	0	Kg	없음	X
04021090	기타	162	0	0	0	Kg	없음	X
04022000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0402210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04022120	초콜릿·캔디(candy)·동물성 식품 또는 제 1901 호의 조제 식료품 제조용으로서 경제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212	0	0	0	Kg	없음	X
04022190	기타	212	0	0	0	Kg	없음	X
04022900	기타	212	0	0	0	Kg	없음	X
04029000	기타							
0402910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40	0	0	0	Kg	없음	X
04029900	기타	40	0	0	0	Kg	없음	X
04030000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31000	요구르트							
04031010	카카오와 향미료를 첨가한 것(과실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31011	가루·알갱이 모양이나 다른 고체 상태의 것(유지방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0	5.5	60	0	Kg	없음	X
04031012	가루·알갱이 모양이나 다른 고체 상태의 것(유지방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초과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0	5.5	60	0	Kg	없음	X
04031013	기타(유지방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하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0	5.5	60	0	Kg	없음	X
04031019	기타	0	5.5	60	0	Kg	없음	X
04031020	고체 상태의 것[초콜릿·캔디(candy) 제조용으로 산업무역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5.5	60	0	Kg	없음	X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4031030	요구르트 음료	0	5.5	60	0	Kg	없음	X
04031090	기타	0	5.5	60	0	Kg	없음	X
04039000	기타							
04039010	카카오와 향미료를 첨가한 것(과실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39011	가루·알갱이 모양이나 다른 고체 상태의 것(유지방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0	5.5	60	0	Kg	없음	X
04039012	가루·알갱이 모양이나 다른 고체 상태의 것(유지방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초과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0	5.5	60	0	Kg	없음	X
04039013	기타(유지방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하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0	5.5	60	0	Kg	없음	X
04039019	기타	0	5.5	60	0	Kg	없음	X
04039090	기타	0	5.5	60	0	Kg	없음	X
04040000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100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1010	초콜릿·캔디(candy)·유아식품·동물성 식품의 제조용으로서 산업무역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0	0	0	0	Kg	없음	0
04041090	기타	40	0	0	0	Kg	없음	X
04049000	기타	40	0	0	0	Kg	없음	X
04050000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1000	버터							
04051030	중량이 1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							
04051032	초콜릿·캔디(candy)·유아식품·동물성 식품의 제조용으로서 산업무역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0	0	0	0	Kg	없음	0
04051039	기타	160	0	0	0	Kg	없음	X
04051090	기타							
04051092	초콜릿·캔디(candy)·유아식품·동물성 식품의 제조용으로서 산업무역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0	0	0	0	Kg	없음	0
04051099	기타	140	0	0	0	Kg	없음	X
0405200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140	0	0	0	Kg	없음	X
04059000	기타							
04059020	탈수한 버터나 버터 기름(ghee)	140	0	0	0	Kg	없음	X
04059090	기타	140	0	0	0	Kg	없음	X
04060000	치즈와 커드(curd)							
0406100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04061010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양유(羊乳)로	0	13.49	0	0	Kg	없음	X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만들어진 것							
04061090	기타	0	8.19	0	0	Kg	없음	X
04062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04062020	가루 모양의 것(동물성 식품 제조용으로서 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X
04062090	기타	0	8.5	0	0	Kg	없음	X
04063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0	8.5	0	0	Kg	없음	X
04064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0	8.5	0	0	Kg	없음	X
04069000	그 밖의 치즈							
04069020	흰 할루미 치즈(짜서 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	0	8.5	0	0	Kg	없음	X
04069030	자미드(jammed) 종류(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	4.17	0	0	Kg	없음	X
04069090	기타	0	8.19	0	0	Kg	없음	X
04070000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71000	부화용 수정란							
040711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04071900	기타	0	3.6	50	0	개별	없음	X
04072000	그 밖의 신선란							
040721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3	170	0	개별	없음	X
04072900	기타	0	0.3	170	0	개별	없음	X
04079000	기타	0	0.3	170	0	개별	없음	X
04080000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1000	알의 노른자위							
04081100	건조한 것	14	8	100	0	Kg	없음	X
04081900	기타	14	3.25	100	0	Kg	없음	X
04089000	기타							
04089100	건조한 것	14	8	100	0	Kg	없음	X
04089900	기타	14	3.25	100	0	Kg	없음	X
04090000	천연꿀							
04090020	기타(중량이 1.5 킬로그램 초과 5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11.43	255	0	Kg	없음	X
04090030	중량이 50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	0	11.06	255	0	Kg	없음	X
04090090	기타	0	17.04	255	0	Kg	없음	X
04100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	0	0	0	Kg	없음	10
0501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05020000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2100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Kg	없음	0
050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5040000	동물(여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40010	양의 장	0	0	0	0	Kg	없음	0
05040020	두꺼운 장	0	0	0	0	Kg	없음	0
05040030	송아지 위의 레닌(renin)	8.5	0	0	0	Kg	없음	10
05040090	기타	8	0	0	0	Kg	없음	10
0505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소독·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5100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0	0	0	0	Kg	없음	0
050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5060000	뿔과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1000	골소(骨素)와 뿔[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506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5070000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1000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	0	0	0	Kg	없음	0
0507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50800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510000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 빋(civet)과 사향, 칸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물(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5110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 1 류나 제 3 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05111000	소의 정액	0	0	0	0	Kg	없음	0
05119000	기타							
05119100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 3 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05119130	관상용 어류와 조류의 먹이로 사용되는 것	8	0	0	0	Kg	없음	5
0511914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5119900	기타							
05119920	관상용 어류와 조류의 먹이로 사용되는 것	8	0	0	0	Kg	없음	10
0511993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601000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 (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제 1212 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1100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 (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06011010	파종용이나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것							
06011011	양귀비[파파베르(Papaver)종]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0601101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06011020	기타							
06011021	양귀비[파파베르(Papaver)종]의 것	10	0	0	0	개별	없음	10
0601102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10
0601200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 (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							
06012010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것							
06012011	양귀비[파파베르(Papaver)종]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0601201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0601202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10	0	0	0	개별	없음	10
06012030	기타							
06012031	양귀비[파파베르(Papaver)종]의 것	10	0	0	0	개별	없음	10
06012039	기타	10	0	0	0	Kg	없음	10
06020000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							
0602100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6021010	과수용 대추야자의 접붙임용 가지	0	0	0	0	개별	없음	0
0602102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06022000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10	0	0	0	개별	없음	10
0602300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10	0	0	0	개별	없음	10
0602400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10	0	0	0	개별	없음	10
06029000	기타							
06029010	버섯의 종균(種菌)	0	0	0	0	Kg	없음	0
06029020	거베라 묘목	0	0	0	0	Kg	없음	0
06029090	기타							
06029091	양귀비[파파베르(Papaver)종]의 것	10	0	0	0	Kg	없음	10
0602909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06030000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31000	신선한 것							
06031100	장미	10	0	0	0	Kg	없음	10
06031200	카네이션	20	0	0	0	Kg	없음	10
06031300	난	10	0	0	0	Kg	없음	10
06031400	국화	10	0	0	0	Kg	없음	10
06031500	백합[릴리움(Lilium)종]	10	0	0	0	Kg	없음	10
06031900	기타							
06031910	양귀비[파파베르(Papaver)종]의 것	10	0	0	0	Kg	없음	10
06031990	기타	10	0	0	0	Kg	없음	10
06039000	기타							
06039020	양귀비[파파베르(Papaver)종]의 것	10	0	0	0	Kg	없음	10
06039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10
06040000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이끼·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2000	신선한 것							
06042010	종려나무 가지[룰라브(Lulavs)]	0	0	0	0	Kg	없음	0
06042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10
06049000	기타							
06049010	종려나무 가지[룰라브(Lulavs)]	0	0	0	0	Kg	없음	0
06049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5
07010000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11000	종자							
07011010	6 월부터 9 월까지 나오는 것	97	0	0	0	Kg	없음	10
07011090	10 월부터 5 월까지 나오는 것	10	0	0	0	Kg	없음	10
07019000	기타							
07019010	1 월부터 4 월까지 나오는 것							
07019011	종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	0	1.85	230	0	Kg	없음	X
07019019	기타	0	1.85	230	0	Kg	없음	X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7019020	5 월부터 12 월까지 나오는 것							
07019021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	0	1.6	234	0	Kg	없음	X
07019029	기타	0	1.6	634	0	Kg	없음	X
0702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20010	6 월부터 10 월까지 나오는 것							
07020019	기타(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	0	0.93	272	0	Kg	없음	X
07020090	11 월부터 5 월까지 나오는 것							
07020099	기타(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	0	1.23	272	0	Kg	없음	10
07030000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1000	양파와 쪽파							
07031010	7 월부터 4 월까지 나오는 것							
07031019	기타	0	1.13	298	0	Kg	없음	X
07031090	기타							
07031099	기타	0	0.78	298	0	Kg	없음	X
07032000	마늘							
07032030	쪽마늘	0	10.12	340	0	Kg	없음	X
07032090	기타	0	7.38	340	7.17	Kg	없음	X
0703900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75	0	0	0	Kg	없음	X
07040000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100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0	0.85	128	0	Kg	없음	X
07042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0	0.85	128	0	Kg	없음	X
07049000	기타							
07049010	배추	0	0.65	128	0	Kg	없음	X
07049020	콜라비	0	0.75	128	0	Kg	없음	X
07049030	적양배추·백양배추							
07049039	기타(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	0	0.73	128	0	Kg	없음	X
07049090	기타	0	0.73	75	0	Kg	없음	X
07050000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1000	상추							
07051100	결구(結球) 상추							
07051190	기타(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	0	0.72	89	0	Kg	없음	X
07051900	기타							
07051990	기타(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	0	0.72	89	0	Kg	없음	X
07052000	치커리(chicory)							
07052100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0	0	0	0	Kg	없음	0
07052900	기타	10	0	0	0	Kg	없음	10
07060000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1000	당근과 순무							
07061010	12 월부터 5 월까지 나오는 것							
07061019	기타(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	0	1.1	213	0	Kg	없음	X
07061090	6 월부터 11 월까지 나오는 것							
07061099	기타(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	0	1.44	213	0	Kg	없음	X
07069000	기타							
07069010	셀러리액(celeriac) 뿌리							
07069019	기타(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	0	0.84	145	0	Kg	없음	X
07069030	무와 총각무	0	0.51	145	0	Kg	없음	X
07069040	겨자무(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							
07069049	기타(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	0	3.87	75	0	Kg	없음	X
07069090	기타	0	3.87	75	0	Kg	없음	X
0707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0090	기타(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	0	0.99	170	0	Kg	없음	5
07080000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1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	1.03	114	0	Kg	없음	X
0708200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 종]	0	1.03	114	0	Kg	없음	X
0708900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07089020	누에콩	0	0.87	114	0	Kg	없음	5
07089090	기타	0	0.87	75	0	Kg	없음	5
07090000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2000	아스파라거스							
07092010	기타	75	0	0	0	Kg	없음	X
07092090	5 월부터 9 월까지 나오는 것	75	0	0	0	Kg	없음	X
07093000	가지(에그플랜트)	0	0.47	89	0	Kg	없음	5
0709400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0	0.78	89	0	Kg	없음	X
07095000	버섯과 송로(松露)							
070951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7095110	6 월부터 9 월까지 나오는 것	10	0	0	0	Kg	없음	MFN- 25%
07095190	기타	0	5.78	344	0	Kg	없음	MFN- 25%
07095900	기타							
070959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10	0	0	0	Kg	없음	X
07095920	송로(松露)	10	0	0	0	Kg	없음	X
07095990	기타	0	5.78	344	0	Kg	없음	X
0709600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7096090	기타(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	0	1.39	93	0	Kg	없음	10
07097000	시금치류	0	1.34	106	0	Kg	없음	X
07099000	기타							
07099100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0	1.48	114	0	Kg	없음	1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7099200	올리브	0	1.85	127	0	Kg	없음	X
07099300	호박류 [쿠쿠르비타(Cucurbita) 종]							
07099310	주키니	0	0.56	128	0	Kg	없음	5
07099390	기타	75	0	0	0	Kg	없음	X
07099900	기타							
07099920	스위트콘	0	0.55	128	0	Kg	없음	X
07099940	파슬리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							
07099949	기타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	75	0	0	0	Kg	없음	X
07099990	기타	75	0	0	0	Kg	없음	X
07100000	냉동채소 (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썰어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1000	감자	12	0	0	2.51	Kg	없음	X
07102000	채두류 (菜豆類) (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07102100	완두 [피섬 새티범 (Pisum sativum)]	12	0	0	1.24	Kg	없음	X
07102200	콩 [비그나 (Vigna) 종 · 파세러스 (Phaseolus) 종]	12	0	0	1.24	Kg	없음	X
07102900	기타							
07102920	누에콩 [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 (Vicia faba var. major)]	8	0	0	0	Kg	없음	10
07102990	기타	20	0	0	0	Kg	없음	X
07103000	시금치류	20	0	0	0	Kg	없음	X
07104000	스위트콘 (EU 5)	12	0	0	1.67	Kg	없음	X
07108000	그 밖의 채소							
07108010	꽃양배추 · 브로콜리 (broccoli) · 양배추 · 고 추속 · 셀러리	20	0	0	0	Kg	없음	X
07108020	버섯	8	0	0	0	Kg	없음	X
07108030	리크 (leek) · 오크라 (okra) 또는 아티초크 (artichoke)	8	0	0	0	Kg	없음	X
07108040	당근	12	0	0	0.99	Kg	없음	X
07108090	기타	30	0	0	0	Kg	없음	X
07109000	채소류의 혼합물	12	0	0	1.56	Kg	없음	X
07110000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 (예: 이산화황가스 · 염수 · 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 한 채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2000	올리브	12	0	0	1.02	Kg	없음	X
07114000	오이류	12	0	0	0.63	Kg	없음	10
07115000	버섯과 송로 (松露)							
07115100	아가리쿠스 (Agaricus) 속의 버섯	8	0	0	0	Kg	없음	10
07115900	기타	8	0	0	0	Kg	없음	10
0711900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07119010	고추류 [후추 (piper) 속, 캡시컴 (Capsicum) 속이나 피멘타 (Pimenta) 속]	12	0	0	0	Kg	없음	X
07119020	토마토 [주스와 페이스트 (paste)를 포함한다]	12	0	0	1.02	Kg	없음	X
07119030	감자	40	0	0	0	Kg	없음	X
0711904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7119041	스위트콘	12	0	0	1.66	Kg	없음	X
07119042	양파	12	0	0	0	Kg	없음	10
07119043	케이퍼	0	0	0	0	Kg	없음	0
07119049	기타	30	0	0	0	Kg	없음	X
07120000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2000	양파	12	0	0	0	Kg	없음	10
07123000	버섯·속의 버섯[아가리쿠스(Agaricus)종]·목이버섯· 속의 버섯[트레멜라(Tremella)종] 젤리균류 및 송로(松露)							
071231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8	0	0	0	Kg	없음	10
071232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8	0	0	0	Kg	없음	10
07123300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8	0	0	0	Kg	없음	10
0712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712900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07129010	마늘	16	0	0	0	Kg	없음	X
07129020	히속	0	0	0	0	Kg	없음	0
07129030	배추·셀러리액(celeriac)	8	0	0	0	Kg	없음	X
07129040	스위트콘	0	0	0	0	Kg	없음	0
0712905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8	0	0	0	Kg	없음	X
07129070	아스파라거스(asparagus)·콩(꼬투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브로콜리(broccoli)	0	0	0	0	Kg	없음	0
0712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X
0713000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713100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0	0	0	0	Kg	없음	0
0713200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0	1.09	140	0	Kg	없음	X
0713300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 종]							
07133100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잭(Vigna radiata (L) Wilczek)종]	0	0	0	0	Kg	없음	0
07133200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 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0	0	0	0	Kg	없음	0
07133300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	0	0	0	0	Kg	없음	0
07133400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0	0	0	0	Kg	없음	0
07133500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0	0	0	0	Kg	없음	0
0713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7134000	렌즈콩	0	0	0	0	Kg	없음	0
0713500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faba var. equina) · 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07136000	비둘기콩 [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0	0	0	0	Kg	없음	0
071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7140000	매니옥(manioc) · 칩뿌리 · 살렘(salep) · 돼 지감자(Jerusalem artichoke) · 고구마와 그 밖에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 · 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 ·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100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0	0	0	0	Kg	없음	0
07142000	고구마	0	1.1	230	0	Kg	없음	10
07143000	양[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8	0	0	0	Kg	없음	10
07144000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종]	8	0	0	0	Kg	없음	10
07145000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종]	8	0	0	0	Kg	없음	10
07149000	기타	8	0	0	0	Kg	없음	10
08010000	코코넛 · 브라질너트 · 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11000	코코넛							
08011100	말린 것	0	0	0	0	Kg	없음	0
08011200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0801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8012000	브라질너트							
08012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	0	0	0	Kg	없음	5
08012200	껍데기를 벗긴 것	4	0	0	0	Kg	없음	5
08013000	캐슈너트(cashew nut)							
08013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	0	0	0	Kg	없음	5
08013200	껍데기를 벗긴 것	4	0	0	0	Kg	없음	5
08020000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1000	아몬드							
08021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8021110	초콜릿이나 과자 제조용으로 산업무역부장관이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08021190	기타	0	8.67	102	0	Kg	없음	X
08021200	껍데기를 벗긴 것							
08021210	초콜릿 · 과자 및 유아식품 제조용으로 산업무역부장관이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08021290	기타	0	15.42	102	0	Kg	없음	X
08022000	헤즐너트(hazelnut)나 필버트(filbert)[코리루스(Corylus)종]							
08022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	0	0	0	Kg	없음	5
08022200	껍데기를 벗긴 것							
08022210	초콜릿이나 과자 제조용으로 산업무역부장관이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8022290	기타	4	0	0	0	Kg	없음	5
08023000	호두							
08023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	0	0	0	Kg	없음	5
08023200	껍데기를 벗긴 것	4	0	0	0	Kg	없음	5
08024000	밤 [카스타네아 (Castanea) 종]							
08024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	0	0	0	Kg	없음	5
08024200	껍데기를 벗긴 것	4	0	0	0	Kg	없음	5
08025000	피스타치오 (pistachio)							
08025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3	0	0	3.52	Kg	없음	X
08025200	껍데기를 벗긴 것	23	0	0	3.52	Kg	없음	X
08026000	마카다미아 너트 (macadamia nut)							
08026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	0	0	0	Kg	없음	MFN- 15%
08026200	껍데기를 벗긴 것	4	0	0	0	Kg	없음	MFN- 15%
08027000	콜라 너트 (kola nut) [콜라 (Cola) 종]	4	0	0	0	Kg	없음	MFN- 15%
08028000	빈랑자 (areca nut)	4	0	0	0	Kg	없음	MFN- 15%
08029000	기타							
08029020	피칸 (pecan)	0	6.52	100	0	Kg	없음	X
08029090	그 밖의 견과류							
08029093	솔방울	4	0	0	0	Kg	없음	5
08029099	기타	8	0	0	0	Kg	없음	MFN- 15%
08030000	바나나 [플랜틴 (plantain) 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1000	플랜틴 (plantain)							
08031010	신선한 것	0	1.03	136	0	Kg	없음	X
08031090	건조한 것	8	0	0	0	Kg	없음	10
08039000	기타							
08039010	신선한 것	0	1.03	136	0	Kg	없음	X
08039090	건조한 것	8	0	0	0	Kg	없음	10
08040000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아보카도 (avocado) · 구아바 (guava) · 망고 (mango) · 망고 스텐 (mangosteen)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1000	대추야자							
08041010	압착한 것	12	0	0	3.82	Kg	없음	X
08041090	기타	0	5.45	560	0	Kg	없음	X
08042000	무화과							
08042010	신선한 것							
08042011	5 월부터 11 월까지 나오는 것	0	2.52	102	0	Kg	없음	X
08042019	12 월부터 4 월까지 나오는 것	0	1.58	102	0	Kg	없음	10
08042020	건조한 것	8	0	0	0	Kg	없음	MFN- 15%
08043000	파인애플							
08043010	신선한 것	0	4.61	25	0	Kg	없음	X
08043020	건조한 것	8	0	0	0	Kg	없음	5
08044000	아보카도 (avocado)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8044010	신선한 것	0	1.9	85	0	Kg	없음	X
08044020	건조한 것	8	0	0	0	Kg	없음	10
08045000	구아바(guava) · 망고(mango) 및 망고스틴(mangosteen)							
08045010	6 월부터 12 월까지 나오는 것	0	2.03	85	0	Kg	없음	X
08045020	1 월부터 5 월까지 나오는 것	0	1.28	85	0	Kg	없음	10
08045090	건조한 것	8	0	0	0	Kg	없음	5
08050000	감귤류의 과일(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1000	오렌지							
08051010	신선한 것	0	0.74	162	0	Kg	없음	X
08051020	건조한 것	8	0	0	0	Kg	없음	5
08052000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 · 세 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2010	신선한 것							
08052020	건조한 것	8	0	0	0	Kg	없음	5
08054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 s)를 포함한다]							
08054010	신선한 것							
08054011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0	0.66	162	0	Kg	없음	X
08054019	포멜로(pomelos)	75	0	0	0	Kg	없음	X
08054020	건조한 것	8	0	0	0	Kg	없음	5
0805500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 · 시트러스 리머눔(Citrus limonum)],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08055010	신선한 것	0	0.81	246	0	Kg	없음	X
08055090	건조한 것	8	0	0	0	Kg	없음	5
08059000	기타							
08059010	신선한 것							
08059011	에트로그[시트러스 메디카(citrus medica) · 감귤(kumquat) 및 라임(lime)]	0	2.64	144	0	Kg	없음	X
08059019	기타	75	0	0	0	Kg	없음	X
08059020	건조한 것	25	0	0	0	Kg	없음	10
08060000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1000	신선한 것							
08061010	4 월과 5 월에 나오는 것	0	3.29	349	0	Kg	없음	X
08061090	기타	0	0.96	349	0	Kg	없음	X
08062000	건조한 것							
08062030	총량이 200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건포도 제조 및 가공용으로서 농업부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6.75	340	0	Kg	없음	X
08062090	기타	0	6.75	340	0	Kg	없음	X
08070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8071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1100	수박	0	0.45	102	0	Kg	없음	X
08071900	기타							
08071910	10 월부터 5 월까지 나오는 것	0	1.25	102	0	Kg	없음	X
08071990	6 월부터 9 월까지 나오는 것	0	0.68	102	0	Kg	없음	X
08072000	포포(papaw)[파파야(papaya)]	0	2.54	85	0	Kg	없음	10
08080000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1000	사과	0	1.92	553	0	Kg	없음	X
08083000	배	0	2.13	438	0	Kg	없음	X
08084000	마르멜로(quince)	0	1.46	315	0	Kg	없음	X
08090000	살구·체리·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1000	살구							
08091010	4 월부터 8 월까지 나오는 것	0	1.59	89	0	Kg	없음	X
08091090	9 월부터 3 월까지 나오는 것	0	1	89	0	Kg	없음	X
08092000	체리							
08092100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08092110	4 월부터 7 월까지 나오는 것	0	3.83	81	0	Kg	없음	X
08092190	8 월부터 3 월까지 나오는 것	0	1.8	81	0	Kg	없음	X
08092900	기타							
08092910	4 월부터 7 월까지 나오는 것	0	3.83	81	0	Kg	없음	X
08092990	8 월부터 3 월까지 나오는 것	0	1.8	81	0	Kg	없음	X
08093000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08093010	기타(4 월부터 11 월까지 나오는 것)	0	1.38	89	0	Kg	없음	X
08093090	12 월부터 3 월까지 나오는 것	0	0.88	89	0	Kg	없음	X
08094000	자두와 슬로(sloe)							
08094010	5 월부터 11 월까지 나오는 것	0	1.18	102	0	Kg	없음	X
08094090	12 월부터 4 월까지 나오는 것	0	0.73	102	0	Kg	없음	X
0810000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1000	초본류 딸기							
08101010	10 월부터 5 월까지 나오는 것	0	4.37	94	0	Kg	없음	X
08101090	6 월부터 9 월까지 나오는 것	0	1.43	94	0	Kg	없음	10
0810200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loganberry)	20	0	0	0	Kg	없음	10
08103000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20	0	0	0	Kg	없음	10
08104000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20	0	0	0	Kg	없음	10
08105000	키위프루트(kiwifruit)							
08105010	10 월부터 5 월까지·6 월부터 9 월까지 나오는 것	0	3.56	94	0	Kg	없음	X
08105090	7 월부터 8 월까지 나오는 것	0	1.76	94	0	Kg	없음	X
08106000	두리안(durian)	20	0	0	0	Kg	없음	5
08107000	감							
08107010	8 월부터 3 월까지 나오는 것	0	1.39	94	0	Kg	없음	10
08107090	4 월부터 7 월까지 나오는 것	0	0.94	94	0	Kg	없음	5
0810900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8109020	리치(litchi)							
08109021	6월부터 9월까지 나오는 것	0	5.72	94	0	Kg	없음	X
08109029	10월부터 5월까지 나오는 것	0	3.6	94	0	Kg	없음	10
08109030	서양모과							
08109031	3월부터 7월까지 나오는 것	0	5.02	94	0	Kg	없음	X
08109039	8월부터 2월까지 나오는 것	0	3.54	94	0	Kg	없음	10
08109090	기타	75	0	0	0	Kg	없음	X
08110000	냉동 과일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1000	초본류 딸기							
08111010	요거트 제조용으로서 산업무역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12	0	0	1.54	Kg	없음	10
08111090	기타	12	0	0	1.56	Kg	없음	10
08112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08112010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081120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08119000	기타							
08119010	체리(cherry)·블루베리(blueberry)	8	0	0	0	Kg	없음	X
081190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08120000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황가스·염수·유허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일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21000	체리	8	0	0	0	Kg	없음	X
08129000	기타							
08129010	초본류 딸기	30	0	0	0	Kg	없음	X
0812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X
08130000	건조한 과일(제 0801 호부터 제 0806 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일의 혼합물							
08131000	살구	8	0	0	0	Kg	없음	10
08132000	프룬(prune)							
08132010	수분 함량이 100 분의 24 미만이고 내용물의 함량이 30 킬로그램 이상인 것(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1	30	0	Kg	없음	X
08132090	기타	0	4.17	102	0	Kg	없음	X
08133000	사과	12	0	0	0	Kg	없음	10
08134000	그 밖의 과일	8	0	0	0	Kg	없음	10
08135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일의 혼합물							
08135010	견과류의 혼합물(견과류와 건조한 과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08135012	아몬드 100 분의 50 이상 함유된 것	0	16	82	0	Kg	없음	10
08135019	기타	0	16	46	0	Kg	없음	10
08135020	건조한 과일의 혼합물	0	7	51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81400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9010000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11000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1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1110	잘게 부순 것	0	0	0	0	Kg	없음	0
0901112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90112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09011210	잘게 부순 것	0	0	0	0	Kg	없음	0
0901122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9012000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090122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0	0	0	Kg	없음	0
09019000	기타							
09019010	볶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Kg	없음	0
0901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9020000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9021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9022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9023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9024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0	0	0	0	Kg	없음	0
09030000	마테(mate)	0	0	0	0	Kg	없음	0
09040000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쿰(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41000	후추							
09041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0	0	0	Kg	없음	5
09041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	0	0	Kg	없음	12
09042000	고추류[캡시쿰(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421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2	0	0	0	Kg	없음	X
09042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12	0	0	0	Kg	없음	X
09050000	바닐라							
09051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09052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Kg	없음	0
09060000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9061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61100	계피[신나모름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0	0	0	0	Kg	없음	0
0906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09062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Kg	없음	0
09070000	정향(丁香)(과실·꽃·꽃대로 한정한다)							
09071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	0	0	0	Kg	없음	5
09072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4	0	0	0	Kg	없음	5
09080000	육두구(肉荳蔻)·메이스(mace)·소두구(小荳蔻)							
09081000	육두구(肉荳蔻)							
09081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	0	0	0	Kg	없음	5
09081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4	0	0	0	Kg	없음	5
09082000	메이스(mace)							
09082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	0	0	0	Kg	없음	5
09082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4	0	0	0	Kg	없음	5
09083000	소두구(小荳蔻)							
09083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	0	0	0	Kg	없음	5
09083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4	0	0	0	Kg	없음	5
09090000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회향(茴香)·코리앤더(corriander)·커민(cumin)·캐러웨이(caraway)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2000	코리앤더(corriander)의 씨							
09092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	0	0	0	Kg	없음	5
09092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4	0	0	0	Kg	없음	5
09093000	커민(cumin)의 씨							
09093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	0	0	0	Kg	없음	5
09093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4	0	0	0	Kg	없음	5
09096000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캐러웨이(caraway)·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6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9611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	0	0	0	Kg	없음	0
09096190	기타	8	0	0	0	Kg	없음	5
09096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909621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	0	0	0	Kg	없음	0
09096290	기타	8	0	0	0	Kg	없음	5
09100000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09101000	생강							
09101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101110	10 월부터 1 월까지 나오는 것	0	6	0	0	Kg	없음	10
09101190	기타	4	0	0	0	Kg	없음	5
09101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4	0	0	0	Kg	없음	5
09102000	사프란(saffron)	4	0	0	0	Kg	없음	5
09103000	심황[강황(薑黃)]	4	0	0	0	Kg	없음	5
09109000	그 밖의 향신료							
09109100	혼합물(이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으로	4	0	0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한정한다)							
09109900	기타							
09109910	종자 (파종용으로서 농업농촌개발부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09109920	호로파씨 (helbeh)	0	0	0	0	Kg	없음	0
09109940	타임과 월계수의 잎	4	0	0	0	Kg	없음	5
09109990	기타	8	0	0	0	Kg	없음	12
10010000	밀과 메슬린 (meslin)							
10011000	듀럼종 밀 (Durum wheat)							
10011100	종자	50	0	0	0	Kg	없음	X
10011900	기타	50	0	0	0	Kg	없음	X
10019000	기타							
10019100	종자	50	0	0	0	Kg	없음	X
10019900	기타							
10019910	동물 사료용으로서 농업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	50	0	0	0	Kg	없음	X
10019990	기타	50	0	0	0	Kg	없음	X
10020000	호밀							
10021000	종자	0	0	0	0	Kg	없음	0
100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0030000	보리							
10031000	종자	0	0	0	0	Kg	없음	0
100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0040000	귀리							
10041000	종자	0	0	0	0	Kg	없음	0
100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0050000	옥수수							
10051000	종자	0	0	0	0	Kg	없음	0
10059000	기타							
10059010	팝콘	0	2.3	114	0	Kg	없음	X
1005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0060000	쌀							
10061000	벼	0	0	0	0	Kg	없음	0
10062000	현미	0	0	0	0	Kg	없음	0
10063000	정미 (연마 ·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10064000	깨미 (broken rice)	0	0	0	0	Kg	없음	0
10070000	수수							
10071000	종자	0	0	0	0	Kg	없음	0
1007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0080000	메밀 · 밀리트 (millet) · 카나리시드 (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0081000	메밀	0	0	0	0	Kg	없음	0
10082000	밀리트 (millet)							
10082100	종자	0	0	0	0	Kg	없음	0
1008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0083000	카나리시드 (canary seed)	0	0	0	0	Kg	없음	0
10084000	포니오 (Fonio) [디지털리아 (Digitaria) 종]	0	0	0	0	Kg	없음	0
10085000	퀴노아 (quinoa) [체노포디움 퀴노아 (Chenopodium quinoa)]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10086000	라이밀(triticale)	0	0	0	0	Kg	없음	0
10089000	그 밖의 곡물	0	0	0	0	Kg	없음	0
110100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10020	중량이 5.5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11010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11020000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22000	옥수수가루	0	0	0	0	Kg	없음	0
110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1030000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							
11031000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100	밀가루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11031300	옥수수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11031900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11032000	펠릿(pellet)	0	0	0	0	Kg	없음	0
11040000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 1006 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11041000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1200	귀리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11041900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11041910	보리	0	0	0	0	Kg	없음	0
11041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1042000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11042200	귀리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11042300	옥수수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11042900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11042910	부수거나 거칠게 부순 밀	0	0	0	0	Kg	없음	0
11042930	보리	0	0	0	0	Kg	없음	0
11042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1043000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11043010	보리	0	0	0	0	Kg	없음	0
11043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1050000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 릿(pellet)							
11051000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0	0	0	0	Kg	없음	0
11052000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0	0	0	0	Kg	없음	0
1106000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 0713 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 0714 호의 것), 제 8 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1106100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11062000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 0714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11063000	제 8 류 물품의 것	0	0	0	0	Kg	없음	0
11070000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71000	볶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11072000	볶은 것	0	0	0	0	Kg	없음	0
11080000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1000	전분							
11081100	밀로 만든 것	4	0	0	0	Kg	없음	MFN- 15%
11081200	옥수수로 만든 것							
11081210	찰옥수수(waxy corn)로 만든 것	4	0	0	0	Kg	없음	5
11081290	기타							
11081291	내용물의 무게가 6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11081299	기타	12	0	0	0	Kg	없음	X
11081300	감자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1108140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11081900	그 밖의 전분	0	0	0	0	Kg	없음	0
11082000	이눌린(inulin)	0	0	0	0	Kg	없음	0
1109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12010000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1000	종자	0	0	0	0	Kg	없음	0
120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2020000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3000	종자							
12023010	파종용으로서 농업부장관이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12023090	기타	12	0	102	2.58	Kg	없음	5
12024000	기타							
12024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12	0	102	1.55	Kg	없음	X
120242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4210	기름·피넛 버터 제조용으로서 산업무역부장관이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12024290	기타	12	0	102	2.57	Kg	없음	X
12030000	코프라(copra)	0	0	0	0	Kg	없음	0
1204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12050000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510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0	0	0	0	Kg	없음	0
120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206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60010	기름 제조용으로서 산업무역부장관이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12060020	조류 사료용으로서 농업부장관이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12060090	기타	0	2	114	0	Kg	없음	X
12070000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100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0	0	0	0	Kg	없음	0
12072000	목화씨							
12072100	종자	4	0	0	0	Kg	없음	5
12072900	기타	4	0	0	0	Kg	없음	5
12073000	피마자	0	0	0	0	Kg	없음	0
12074000	참깨	0	0	0	0	Kg	없음	0
12075000	겨자씨	10	0	0	0	Kg	없음	10
1207600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us tinctorius)] 종자	4	0	0	0	Kg	없음	5
12077000	멜론 종자	10	0	0	0	Kg	없음	5
12079000	기타							
12079100	양귀비씨	4	0	0	0	Kg	없음	5
12079900	기타	8	0	0	0	Kg	없음	5
12080000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81000	대두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12089000	기타							
12089010	양귀비씨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5
1208903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2090000	파종용 종자·과실·포자(孢子)							
12091000	사탕무 종자	0	0	0	0	Kg	없음	0
12092000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2100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	0	0	0	Kg	없음	0
120922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0	0	0	0	Kg	없음	0
12092300	페스큐(fescue) 종자	0	0	0	0	Kg	없음	0
12092400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0	0	0	0	Kg	없음	0
12092500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0	0	0	0	Kg	없음	0
1209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209300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	0	0	0	Kg	없음	0
12099000	기타							
12099100	채소 종자							
12099120	수박 종자	12	0	0	0	Kg	없음	10
12099130	주키니 종자	0	0	0	0	Kg	없음	0
12099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2099900	기타							
12099920	수박 종자							
12099922	파종용으로서 농업부장관이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12099929	기타	0	4	105	0	Kg	없음	X
12099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12100000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1210100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1210200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0	0	0	0	Kg	없음	0
12110000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12000	인삼							
12112010	식물성 차(개별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12112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2113000	코카잎	0	0	0	0	Kg	없음	0
12114000	양귀비줄기	0	0	0	0	Kg	없음	0
12119000	기타							
12119010	양귀비[파파베르(papaver)종]	0	0	0	0	Kg	없음	0
12119020	식물성 차(개별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1211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21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2122000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12122100	식용	0	0	0	0	Kg	없음	0
12122900	기타							
12122910	화장품·의약품·세균박멸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12122911	의약품용(보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될 물품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12122919	기타	4	0	0	0	Kg	없음	5
12122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2129000	기타							
12129100	사탕무	4	0	0	0	Kg	없음	5
12129200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0	0	0	0	Kg	없음	0
12129300	사탕수수	4	0	0	0	Kg	없음	5
12129400	치커리(chicory) 뿌리	4	0	0	0	Kg	없음	5
12129900	기타							
12129960	수박[쿠쿠르비타 페포(cucurbita pepo)]의 씨(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볶은 것·염장한 것은 제외하며, 종자용이 아닌 식용에	12	0	0	0	Kg	없음	1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2129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213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12140000	스위드(swede) · 망골드(mangold) ·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 건초 · 루우산(lucerne)(알팔파) · 클로버(clover) · 샌포인(sainfoin) · 사료용 케일(kale) · 루핀(lupine) · 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100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0	0	0	0	Kg	없음	0
121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3010000	락(lac), 천연 검 · 수지 · 검 수지 · 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13012000	아라비아 검	0	0	0	0	Kg	없음	0
130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3020000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 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1000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21100	아편							
13021110	보건부장관의 승인으로 수입된 물품	0	0	0	0	Kg	없음	0
13021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3021200	감초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13021300	홉(hop)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13021900	기타							
13021910	보건부장관의 승인으로 수입된 물품으로 알로에 · 큐라리(curare) · 포도필럼(podophyllum) · 만나(manna) · 벨라돈나(belladonna) · 블랙알더(black alder) · 카스카라 사그라다(cascara sagrada) · 겐티안(gentian) · 알랍(jalap) · 콜라(kola) · 싱코우나(cinchona) · 대황근(rhubarb) · 벨러리안(valerian) · 코카(coca) · 콜로신드(colocynth) · 헬베인(helbane) · 맥각(ergot of rye) · 메일편(male fern) · 마황(ephedra) · 콘두란고 유동(condurango fluid) · 세네가(senega) · 히드라스티스 카나덴시스(hydrastis cand.) · 토근 농축물(ipecac. concentr.) · 센나 프로틴(senna protein) · 라타니(rhathany)[크라메리아(kf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ameria]] · 비부르눔 프루니포리움(viburnum prunifolium) · 푸쿠스 베시쿨로수스(Fucus vesiculosus)의 추출물							
13021920	알코올을 용제(溶劑)로 한 천연 추출물	10	0	0	0	Kg	없음	5
13021940	제충국(除蟲菊)에서 추출한 것이나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	0	0	0	0	Kg	없음	0
13021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3022000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0	0	0	0	Kg	없음	0
13023000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100	한천	4	0	0	0	Kg	없음	0
13023200	로커스트콩(locust bean) ·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4	0	0	0	Kg	없음	0
1302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4010000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 · 표백 ·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14011000	대나무	0	0	0	0	Kg	없음	0
14012000	등나무	0	0	0	0	Kg	없음	0
140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4040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42000	면(綿) 린터(linter)	0	0	0	0	Kg	없음	0
14049000	기타							
14049010	꽃가루							
14049011	수분 함량이 100 분의 15 이상인 것(동물 사료용으로서 산업무역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14049019	기타	0	19.5	170	0	Kg	없음	X
14049020	헨나(henna)	0	0	0	0	Kg	없음	0
1404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5010000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 0209 호나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11000	라드(lard)	12	0	0	0	Kg	없음	X
1501200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12	0	0	0	Kg	없음	X
1501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X
15020000	소 · 면양 · 산양의 지방(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1000	탈로우(tallow)							
15021010	식용에 적합한 것	0	0.18	21	0	Kg	없음	X
1502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502900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15029010	식용에 적합한 것	0	0.18	21	0	Kg	없음	X
1502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50300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팜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 또는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15030010	식용에 적합한 것	0	0.18	21	0	Kg	없음	X
1503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5040000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41000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1504102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041090	기타	8	0	0	0	Kg	없음	10
15042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15043000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1504302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043040	경유(鯨油)	12	0	0	0	Kg	없음	X
150430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050000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150600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15070000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100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15071010	식용에 적합한 것	7	0	0	0	Kg	없음	15
150710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079000	기타							
15079010	식용에 적합한 것	7	0	0	0	Kg	없음	X
15079090	기타	8	0	0	0	Kg	없음	15
15080000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1000	조유(粗油)	8	0	0	0	Kg	없음	X
15089000	기타							
1508902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0890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090000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1000	버진(virgin)							
15091010	1월부터 9월까지 나오는 것(내용물의	12	4.68	0	5.73	Kg	없음	X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무게가 8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5091090	기타	12	4.68	0	5.73	Kg	없음	X
15099000	기타							
15099030	식용에 적합한 것							
15099031	1월부터 9월까지 나오는 것(내용물의 무게가 8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4.68	0	5.73	Kg	없음	X
15099039	기타	12	4.68	0	5.73	Kg	없음	X
150990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00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00030	식용에 적합한 것	12	4.68	0	5.73	Kg	없음	X
151000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10000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11000	조유(粗油)							
1511101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1102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19000	기타							
1511902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190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20000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1000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100	조유(粗油)							
15121110	식용에 적합한 것							
15121111	해바라기씨유	7	0	0	0	Kg	없음	X
151211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151211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21900	기타							
15121920	식용에 적합한 것							
15121921	해바라기씨유	7	0	0	0	Kg	없음	X
15121929	기타	0	0	0	0	Kg	없음	0
151219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22000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151221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1512211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221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22900	기타							
1512292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229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30000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31000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15131100	조유(粗油)							
1513111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311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31900	기타							
1513192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319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32000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							
15132100	조유(粗油)							
1513211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3212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32900	기타							
1513292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329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40000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410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15141100	조유(粗油)							
15141110	식용에 적합한 것	7	0	0	0	Kg	없음	X
151411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41900	기타							
15141910	식용에 적합한 것	7	0	0	0	Kg	없음	X
151419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49000	기타							
15149100	조유(粗油)							
15149110	식용에 적합한 것							
15149111	유채유	7	0	0	0	Kg	없음	X
151491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151491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49900	기타							
15149910	식용에 적합한 것							
15149911	유채유	7	0	0	0	Kg	없음	X
151499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151499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50000	그 밖의 비취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1000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15151100	조유(粗油)							
1515111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51190	기타	4	0	0	0	Kg	없음	X
15151900	기타							
1515193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51990	기타	4	0	0	0	Kg	없음	X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1515200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2100	조유(粗油)							
1515211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5212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52900	기타							
1515292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529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53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8	0	0	0	Kg	없음	X
15155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155020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550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59000	기타							
15159020	식용에 적합한 것							
15159021	스위트아몬드오일	8	0	0	0	Kg	없음	X
15159022	그 밖의 기름[제 0802 호나 제 1212 호의 견과류·과실의 핵(核)이나 씨의 것]	8	0	0	0	Kg	없음	X
15159029	기타	0	0	0	0	Kg	없음	0
15159030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60000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테르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1000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15161010	고체화 된 것							
15161011	식용에 적합한 것	0	0.18	28	0	Kg	없음	X
15161019	기타	6.8	0	0	0	Kg	없음	X
15161090	기타							
15161091	식용 어유(魚油)나 다량의 비타민이 함유된 것	0	0	0	0	Kg	없음	0
15161092	경유(鯨油)	12	0	0	0	Kg	없음	X
15161093	기타(어유 또는 바다 포유동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X
15161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15162000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15162010	고체화 된 것							
15162011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62019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62030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15162090	기타							
15162091	피마자유	12	0	0	0	Kg	없음	X
15162092	아마씨유	4	0	0	0	Kg	없음	X
15162099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170000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 1516 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15179000	기타							
15179010	액상 마가린	0	0	0	0	Kg	없음	0
15179020	지방이나 식물성 지방의 혼합물							
15179021	올리브유를 함유한 것	12	4.68	0	5.73	Kg	없음	X
15179022	대두유 · 해바라기유씨 · 잇꽃유 · 목화씨유 · 옥수수유나 리프트트 오일(liftit oil)을 함유한 것	7	0	0	0	Kg	없음	X
15179024	제 15 류 추가규칙의 규칙 1(이스라엘)에 규정된 기름(올리브유를 함유한 기름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15179029	기타	0	0	0	0	Kg	없음	0
15179030	기름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15180000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 · 탈수 · 황화 · 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5180010	식물성 지방과 기름 · 동물성 지방과 이들의 유도체(끓이거나 산화 · 탈수 · 황화 · 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5180012	화학적 조성에 에폭시 계를 함유한 기름	0	0	0	0	Kg	없음	0
15180013	아마씨유	0	0	0	0	Kg	없음	0
15180015	기타	6	0	0	0	Kg	없음	X
15180020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지방 · 기름이나 지방유도체 또는 여러 기름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5180021	피마자유	12	0	0	0	Kg	없음	X
15180022	아마씨유	4	0	0	0	Kg	없음	X
15180023	동물성 지방	0	0	0	0	Kg	없음	0
15180029	기타	8	0	0	0	Kg	없음	X
152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15200010	용기에 넣은 것(내용물의 무게가 100 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15200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X
15210000	식물성 납(蠟)[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제외한다] · 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납(昆蟲蠟) · 경납(鯨蠟)(정제했는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15211000	식물성 납(蠟)	6	0	0	0	Kg	없음	X
152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52200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0	0	0	0	Kg	없음	0
16010000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16010010	닭고기를 함유한 것	12	2.9	22	0	Kg	없음	10
1601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602000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16021000	균질화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16022000	동물 간으로 만든 것							
16022010	균질화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16022090	기타							
16022091	닭의 간을 함유한 것	12	2.9	22	0	Kg	없음	5
16022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16023000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 01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3100	철면조의 것							
16023110	균질화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16023190	기타	12	2.9	22	0	Kg	없음	X
160232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16023210	균질화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16023290	기타	12	2.9	22	0	Kg	없음	X
16023900	기타							
16023910	균질화한 조제품	10	0	0	0	Kg	없음	5
16023990	기타	12	2.9	22	0	Kg	없음	10
16024000	돼지의 것							
16024100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12	0	0	0	Kg	없음	5
16024200	어깨살과 그 절단육	12	0	0	0	Kg	없음	5
16024900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16024910	균질화한 조제품	12	0	0	0	Kg	없음	5
16024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16025000	소의 것							
16025010	균질화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16025090	기타							
16025091	닭고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16025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1602900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16029010	균질화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1602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6030000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12	0	0	0	Kg	없음	1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16040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41000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1100	연어	0	0	0	0	Kg	없음	0
16041200	청어	0	0	0	0	Kg	없음	0
16041300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브리스링(brisling)·스프랫(sprat)	0	0	0	0	Kg	없음	0
16041400	다랑어·가다랑어·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종]							
16041430	다랑어 필레(fillet)(냉동한 것으로서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16041440	냉동한 필레(fillet)(단순히 입힌 것이나 조미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16041490	기타	12	0	0	0	Kg	없음	TRQ-부록 2-나-1의 제3항 참조
16041500	고등어	0	0	0	0	Kg	없음	0
16041600	멸치	0	0	0	0	Kg	없음	0
16041700	뱅장어	0	0	0	0	Kg	없음	0
16041900	기타							
16041930	단순히 입힌 냉동한 틸라피아 필레(fillet)(조미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	14.41	0	0	Kg	없음	X
16041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604200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0	0	0	0	Kg	없음	0
16043000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3100	캐비아	0	0	0	0	Kg	없음	0
16043200	캐비아 대용물	0	0	0	0	Kg	없음	0
16050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1000	게	12	0	0	0	Kg	없음	0
16052000	새우류							
1605210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2	0	0	0	Kg	없음	5
1605290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16053000	바닷가재	12	0	0	0	Kg	없음	5
16054000	그 밖의 갑각류	12	0	0	0	Tons	없음	5
16055000	연체동물							
16055100	굴	12	0	0	0	Kg	없음	5
16055200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12	0	0	0	Kg	없음	5
16055300	홍합	12	0	0	0	Kg	없음	5
16055400	갑오징어와 오징어	12	0	0	0	Kg	없음	5
16055500	문어	12	0	0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16055600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12	0	0	0	Kg	없음	5
16055700	전복	12	0	0	0	Kg	없음	5
160558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12	0	0	0	Kg	없음	5
1605590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16056000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6100	해삼	12	0	0	0	Kg	없음	5
16056200	성게	12	0	0	0	Kg	없음	5
16056300	해파리	12	0	0	0	Kg	없음	5
1605690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17010000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1000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7011200	사탕무당	0	0	0	0	Kg	없음	0
17011300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0	0	0	0	Kg	없음	0
17011400	그 밖의 사탕수수당	0	0	0	0	Kg	없음	0
17019000	기타							
17019100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0	0	0	0	Kg	없음	0
17019900	기타							
17019910	각설탕·설탕 덩어리 및 설탕 캔디(소호 제 91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17019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7020000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1000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17021100	건조 상태에서 측정하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170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702200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0	0	0	0	Kg	없음	0
1702300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23010	포도당(액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17023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702400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 100 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17025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0	0	0	0	Kg	없음	0
17026000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17029000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17029020	무기염 캐러멜 혼합물(캐러멜 함량이 100 분의 9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1702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7030000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3100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0	0	0	0	Kg	없음	0
170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7040000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7041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17041010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이상 껌 베이스(gum base)를 함유한 것	4	0	0	0	Kg	없음	5
17041090	기타	4	0	0	0	Kg	없음	MFN- 15%
17049000	기타							
17049010	할바(halvah)	4	0	0	0	Kg	없음	5
17049030	가당한 아몬드나 견과류 · 당이 도포된 곡물 플레이크(flake)	0	0	0	0	Kg	없음	0
17049040	백색 초콜릿(white chocolate)	0	0	0	0	Kg	없음	0
1704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80100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18020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0	0	0	0	Kg	없음	0
18030000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100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18032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0	0	0	0	Kg	없음	0
1804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0	0	0	0	Kg	없음	0
1805000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18060000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100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캐나다 3)(체코 3)(슬로바키아 3)	0	0	0	0	Kg	없음	0
18062000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 · 슬래브 모양 · 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 · 페이스트(paste) · 가루 · 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18063000	기타[블록 모양 · 슬래브 모양 · 막대(bar)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8063100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0	0	0	0	Kg	없음	0
18063200	속을 채우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18069000	기타							
18069010	할바(halvah)	0	0	0	0	Kg	없음	0
18069020	초콜릿	0	0	0	0	Kg	없음	0
18069090	기타							
18069091	과자류	5	0	0	0	Kg	없음	5
18069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19010000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1000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9011010	대부분으로 만든 식이요법용 조제품[대두유와 다른 식물성 기름·탄수화물 및 염을 함유한 것, 글루텐(gluten)이 없는 고운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Kg	없음	0
19011090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만들어진 조제 식료품	0	0	0	0	Kg	없음	0
19012000	제 1905 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19012010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맥아 추출물(extract)로 만들어진 조제 식료품	0	0	0	0	Kg	없음	0
19012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9019000	기타							
19019010	대부분으로 만든 식이요법용 조제품[대두유와 다른 식물성 기름·탄수화물 및 염을 함유한 것, 글루텐(gluten)이 없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Kg	없음	0
19019020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만들어진 조제 식료품							
19019021	가루 모양인 것	25	0	0	0	Kg	없음	10
19019022	치즈 대용물	25	0	0	0	Kg	없음	10
19019029	기타	25	0	0	0	Kg	없음	10
1901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9020000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스파게티 · 마카로니 · 누들 · 라자니아 (lasagne) · 뇨키(gnocchi) · 라비올리(ravioli) · 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021000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1100	새의 알을 넣은 것	0	0	0	0	Kg	없음	0
190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9022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19023000	그 밖의 파스타	0	0	0	0	Kg	없음	0
19024000	쿠스쿠스(couscous)	0	0	0	0	Kg	없음	0
190300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 · 낱알 모양 · 진주 모양 · 무거리 모양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1904000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100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19041010	코코아를 함유한 것	0	0	0	0	Kg	없음	0
1904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9042000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19042010	코코아를 함유한 것	0	0	0	0	Kg	없음	0
19042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9043000	불거 밀(bulgur wheat)	0	0	0	0	Kg	없음	0
19049000	기타							
19049010	메밀	0	0	0	0	Kg	없음	0
1904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19050000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 실링웨이퍼(sealing wafer) · 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00	귀리빵	0	0	0	0	Kg	없음	0
1905200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19052010	당뇨병 환자용	0	0	0	0	Kg	없음	0
19052090	기타	4	0	0	0	Kg	없음	5
19053000	스위트 비스킷, 와플, 웨이퍼							
19053100	스위트 비스킷	4	0	0	0	Kg	없음	5
19053200	와플과 웨이퍼	4	0	0	0	Kg	없음	5
19054000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19054030	꿀·계란·유제품·과일이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	0	0.32	112	0	Kg	없음	10
19054090	기타	0	0.32	112	0	Kg	없음	5
19059000	기타							
19059020	당뇨병 환자용 비스킷이나 케이크	0	0	0	0	Kg	없음	0
19059030	제 1905 호 제품 제조용 사전 조리 가루반죽	0	0	0	0	Kg	없음	0
19059090	기타							
19059091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이상 계란을 함유한 것(유지방은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상이고 유단백은 전 중량의 100 분의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32	112	0	Kg	없음	7
19059092	기타[고운 가루(밀가루는 제외한다)가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32	112	0	Kg	없음	7
19059099	기타	0	0.32	112	0	Kg	없음	5
20010000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00	오이류	12	0	0	0.63	Kg	없음	X
20019000	기타							
20019010	올리브	12	0	0	0.73	Kg	없음	10
20019030	콘	12	0	0	1.67	Kg	없음	X
20019040	양·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소의 부분(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상 전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0	0	0	0	Kg	없음	X
2001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X
20020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100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12	0	0	1.03	Kg	없음	X
20029000	기타							
20029010	토마토 페이스트							
20029013	케첩 제조용으로 산업무역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12	0	0	1.03	Kg	없음	X
20029019	기타	12	0	0	1.03	Kg	없음	X
20029020	가루 모양인 것	8	0	0	0	Kg	없음	X
20029090	기타	12	0	0	1.03	Kg	없음	X
20030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10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8	0	0	0	Kg	없음	10
20039000	기타							
20039010	송로(松露)	8	0	0	0	Kg	없음	10
20039090	기타	8	0	0	0	Kg	없음	1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0040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00	감자							
20041010	고운 가루·거친 가루로 만든 제품	40	0	0	0	Kg	없음	X
20041020	균질화한 조제품	4	0	0	0	Kg	없음	5
20041090	기타	50	0	0	2.51	Kg	없음	X
20049000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49010	고운 가루·거친 가루로 만든 제품	12	0	0	0	Kg	없음	X
20049020	균질화한 조제품	4	0	0	0	Kg	없음	5
20049090	기타							
20049093	스위트콘	12	0	0	1.67	Kg	없음	X
20049094	콩류(EU 5)	12	0	0	1.03	Kg	없음	5
20049095	스위트콘·콩류(중량이 1.5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1.03	Kg	없음	X
20049099	기타(EU 5)	12	0	0	1.25	Kg	없음	X
20050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00	균질화한 채소	4	0	0	0	Kg	없음	5
20052000	감자							
20052010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 나 펠릿(pellet)으로 만든 제품	12	0	0	2.51	Kg	없음	MFN- 15%
20052020	균질화한 조제품	12	0	0	0	Kg	없음	10
20052090	기타	12	0	0	2.51	Kg	없음	X
20054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054010	고운 가루·거친 가루로 만든 제품	4	0	0	0	Kg	없음	MFN- 15%
20054020	균질화한 조제품	4	0	0	0	Kg	없음	5
20054090	기타	12	0	0	1.24	Kg	없음	X
2005500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 종]							
20055100	껍데기를 벗긴 콩	12	0	0	0	Kg	없음	X
20055900	기타							
20055910	고운 가루·거친 가루로 만든 제품	4	0	0	0	Kg	없음	MFN- 15%
20055920	균질화한 조제품	4	0	0	0	Kg	없음	5
20055990	기타	12	0	0	1.24	Kg	없음	5
20056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4	0	0	0	Kg	없음	5
20057000	올리브							
20057010	내용물의 무게가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2	0	0	1.54	Kg	없음	X
20057090	기타	12	0	0	0.73	Kg	없음	X
20058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20058010	소형 옥수수	12	0	0	0	Kg	없음	10
20058090	기타	12	0	0	1.67	Kg	없음	X
20059000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0059100	죽순	12	0	0	0	Kg	없음	10
20059900	기타							
20059910	고운 가루 · 거친 가루로 만든 제품	4	0	0	0	Kg	없음	MFN- 15%
20059920	균질화한 조제품	4	0	0	0	Kg	없음	5
20059930	당근(소호 제 90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0	0	0	Kg	없음	X
20059940	이집트콩	12	0	0	1.03	Kg	없음	X
20059950	오이류	12	0	0	0.63	Kg	없음	10
20059960	건조한 렌즈콩(미리 조리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0059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200600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 과일 · 견과류 · 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é)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12	0	0	0	Kg	없음	X
20070000	잼 · 과일젤리 · 마말레이드(marmalade) · 과 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 과일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71000	균질화한 조제품	4	0	0	0	Kg	없음	5
20079000	기타							
20079100	감귤류의 과일	8	0	0	0	Kg	없음	10
20079900	기타							
20079920	딸기							
20079921	중량이 10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	12	0	0	1.54	Kg	없음	10
20079929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20079990	기타							
20079991	헤즐너트(hazelnut)로 만든 것	4	0	0	0	Kg	없음	X
20079992	과실의 퓨레(puree)(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중량이 50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	0	0	0	Kg	없음	5
20079993	복숭아 · 살구 · 망고 · 자두 · 키위 · 구아바 또는 바나나의 농축물(중량이 50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0079999	기타	12	0	0	0	Kg	없음	X
2008000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1000	견과류 · 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1100	땅콩							
20081110	조제 식료품[피넛 버터 · 피넛 스프레드(spread)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0081120	피넛 버터 또는 지방 가공용으로서 경제부장관이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20081190	기타	12	0	0	2.58	Kg	없음	X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0081900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0081910	으깬 견과류나 그 밖의 씨로 만든 조제 식료품	0	0	0	0	Kg	없음	0
20081930	기타(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1931	초콜릿이나 캔디(candy) 제조용으로 산업무역부장관이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20081932	그 밖의 아몬드	30	0	0	0	Kg	없음	X
20081933	피스타치오(pistachio)	23	0	0	3.52	Kg	없음	X
20081934	코코넛	4	0	0	0	Kg	없음	5
20081939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20081990	기타							
20081991	아몬드	30	0	0	0	Kg	없음	X
20081999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20082000	파인애플							
20082030	비농축 혼합물(내용물의 무게가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0082090	기타	4	0	0	0	Kg	없음	5
20083000	감귤류의 과실							
20083030	오렌지나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의 과실 펄프(중량이 50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0083090	기타	4	0	0	0	Kg	없음	5
20084000	배							
20084030	비농축 혼합물(내용물의 무게가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00840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20085000	살구							
20085030	비농축 혼합물(내용물의 무게가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0085090	기타	8	0	0	0	Kg	없음	X
20086000	체리	8	0	0	0	Kg	없음	X
20087000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8	0	0	0	Kg	없음	X
20088000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20088020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8	0	0	0	Kg	없음	5
20088040	중량이 4.5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	12	0	0	1.56	Kg	없음	X
20088090	기타	12	0	0	1.56	Kg	없음	10
20089000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 2008.1900 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100	팜 하트(palm heart)	4	0	0	0	Kg	없음	5
200893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 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12	0	0	0	Kg	없음	X
20089700	혼합물							
20089710	제 20 류 추가규칙의 규칙 2 에 규정된 과실의 것	8	0	0	0	Kg	없음	X
20089790	기타	8	0	0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0089900	기타							
20089910	자두							
20089913	으깬 것(조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0089919	기타	8	0	0	0	Kg	없음	X
20089940	바나나 매시(mash)(조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0089950	구아바 혼합물(조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0089990	기타	8	0	0	0	Kg	없음	5
20090000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1000	오렌지주스							
20091100	냉동한 것							
20091110	농축액(내용물의 무게가 100 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0091111	내용물의 무게가 2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20091119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20091120	그 밖의 농축액	12	0	0	0	Kg	없음	10
20091130	내용물의 무게가 1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2	0	0	0	Kg	없음	10
20091140	내용물의 무게가 23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2	0	0	0	Kg	없음	10
20091190	그 밖의 주스	12	0	0	0	Kg	없음	10
200912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091210	내용물의 무게가 1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2	0	0	0	Kg	없음	10
20091290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20091900	기타							
20091910	농축액(내용물의 무게가 100 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0091911	내용물의 무게가 2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20091919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20091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20092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주스							
200921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09212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20092121	내용물의 무게가 1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2	0	0	0	Kg	없음	X
20092129	기타	12	0	0	0	Kg	없음	X
20092130	기타							
20092131	내용물의 무게가 1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2	0	0	0	Kg	없음	10
20092133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20092900	기타							
20092910	내용물의 무게가 1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20092911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내용물의 무게가 230 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0092912	포멜로(pomelo)[내용물의 무게가 230 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서	12	0	0	0	Kg	없음	1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브릭스(Brix) 값이 5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092913	그 밖의 포장된 그레이프프루트 (grapefruit)	12	0	0	0	Kg	없음	X
20092914	그 밖의 포멜로 (pomelo)	12	0	0	0	Kg	없음	10
20092980	그 밖의 포멜로 (pomelo)	12	0	0	0	Kg	없음	10
20092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20093000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31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093110	내용물의 무게가 1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2	0	0	0	Kg	없음	X
20093190	기타	12	0	0	0	Kg	없음	X
20093900	기타							
20093910	내용물의 무게가 1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20093911	내용물의 무게가 230 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4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20093919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20093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20094000	파인애플주스							
200941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2009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0095000	토마토주스							
20095020	내용물의 무게가 1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20	0	0	0	Kg	없음	X
20095080	기타	30	0	0	0	Kg	없음	X
20096000	포도주스 (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6100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096110	내용물의 무게가 1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2	0	0	1.56	Kg	없음	X
20096190	기타	12	0	0	1.56	Kg	없음	X
20096900	기타							
20096920	브릭스(Brix) 값이 67 을 초과하지 않은 것	30	0	0	1.56	Kg	없음	X
20096990	기타	30	0	0	1.56	Kg	없음	X
20097000	사과주스							
200971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097110	내용물의 무게가 1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2	0	0	0	Kg	없음	X
20097190	기타	12	0	0	0	Kg	없음	X
20097900	기타							
20097930	내용물의 무게가 1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20097931	내용물의 무게가 23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20097939	기타	12	0	0	0	Kg	없음	X
20097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X
20098000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20098100	크랜베리 (cranberry) [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 (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 (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 이다에아 (Vaccinium vitis-idaea)] 주스							
20098110	농축액							
20098111	브릭스(Brix) 값이 67 을 초과하는 것	12	0	0	0	Kg	없음	X
200981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0098190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20098900	기타							
20098910	농축주스							
20098911	시계꽃(passion-flower) · 키위(kiwi) 또는 구아바(guava)	0	0	0	0	Kg	없음	0
20098912	배	0	0	0	0	Kg	없음	0
20098913	살구	0	0	0	0	Kg	없음	0
20098914	복숭아	0	0	0	0	Kg	없음	0
20098915	망고(mango)	0	0	0	0	Kg	없음	0
20098916	흑색 라즈베리(raspberry)나 아로니아(aronia)	0	0	0	0	Kg	없음	0
20098917	체리나 아세로라(acerola)	0	0	0	0	Kg	없음	0
20098918	당근	0	0	0	0	Kg	없음	0
20098919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20098930	농축주스 [브릭스(Brix) 값이 67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X
20098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7
20099000	혼합 주스							
20099010	포도주스 함유량이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20099011	농축액	30	0	0	0	Kg	없음	X
20099019	기타	12	0	0	1.56	Kg	없음	X
20099020	토마토주스 함유량이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12	0	0	0	Kg	없음	X
20099030	감귤류주스 또는 사과주스의 함유량이 100 분의 50 초과하는 것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X
2009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10
21010000	커피 · 차 ·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 · 차 ·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 ·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21011000	커피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100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0	0	0	0	Kg	없음	0
21011200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21012000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21013000	볶은 치커리(chicory) ·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1013010	볶은 치커리(chicory)	0	0	0	0	Kg	없음	0
21013020	인스턴트 커피 대용물	0	0	0	0	Kg	없음	0
21013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1020000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00	활성 효모							
21021010	제빵용 건조 효모	0	0	0	0	Kg	없음	0
2102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1022000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21022010	불활성 효모	0	0	0	0	Kg	없음	0
21022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1023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0	0	0	0	Kg	없음	0
21030000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1000	간장	4	0	0	0	Kg	없음	0
21032000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12	0	0	1.04	Kg	없음	10
2103300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0	0	0	0	Kg	없음	0
21039000	기타							
21039020	소스 조제용 조제품(밀가루·거친 통밀가루·전분·맥아 추출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1039090	기타	4	0	0	0	Kg	없음	0
21040000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41000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21041010	밀가루·거친 통밀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것	0	0	0	0	Kg	없음	0
2104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1042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0	0	0	0	Kg	없음	0
210500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21050010	아이스크림							
21050011	유지방의 함유량이 100 분의 3 미만인 것	4	0	0	0	Kg	없음	5
21050012	유지방의 함유량이 100 분의 3 이상 100 분의 7 미만인 것	4	0	0	0	Kg	없음	5
21050013	유지방의 함유량이 100 분의 7 이상인 것	4	0	0	0	Kg	없음	5
2105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1060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100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0	0	0	0	Kg	없음	0
21069000	기타							
21069010	그 밖의 젤리파우더·아이스크림 파우더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파우더	0	0	0	0	Kg	없음	0
21069020	치즈 대용물	25	0	0	0	Kg	없음	10
21069030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5	0	0	0	Kg	없음	1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1069040	크림 대용물 및 지방과 설탕의 혼합물	0	0	0	0	Kg	없음	0
2106905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농축 추출물	0	0	0	0	Kg	없음	0
21069060	다른 형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카린[동글넓적한(tablet) 모양의 것으로 유사한 성질 또는 용도를 지닌 물질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21069070	단과자	0	0	0	0	Kg	없음	0
21069080	보건부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다음 조건들을 구비하는 조제품에 해당하는 것: 1. 의약품 등록부(drugs register)에 등록(listed in)된 것 2. 의료진단에서 정의하고 있는 질병 치료 또는 건강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거나 가장 중요한 것 3.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	0	0	0	0	Kg	없음	0
21069090	기타							
21069091	기타 모든 형태의 감자를 함유한 것	12	0	0	2.52	Kg	없음	X
21069092	주정의 함유량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고 20 밀리리터 이하로 포장한 것[점적기(dropper) 또는 분무기(sprayer)만 사용하도록 설계되고 이들을 갖춘 것]	12	0	0	2.41	Lt.a lcoh ol	없음	X
21069094	꽃가루를 함유한 조제품	40	0	0	0	Kg	없음	10
21069095	농축 과일 또는 채소 주스(미네랄 또는 비타민을 강화한 것으로 한가지 과일이나 채소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	0	0	0	Kg	없음	5
21069096	농축 과일 또는 채소 주스(미네랄 또는 비타민을 강화한 것으로 채소류와 과일류가 혼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1069097	농축 과일 또는 채소 주스[미네랄 또는 비타민을 강화한 것으로 전지분유(milk solid) 함유량이 전 종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0	0	0	Kg	없음	5
21069098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하나나 그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음료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1069099	기타	4	0	0	0	Kg	없음	0
22010000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1000	광천수와 탄산수	0	0	0	0	Lite r	없음	0
22019000	기타	0	0	0	0	Lite r	없음	0
2202000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 2009 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제외한다)							
2202100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0	0	0	0	Lite r	없음	0
22029000	기타							
22029020	밀크를 함유한 음료	0	0	0	0	Kg	없음	0
22029030	보건부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다음 조건을 구비한 조제품: 1. 의약품 등록부(drugs register)에 등록(listed in)되어 있을 것 2. 의료진단에서 정의하고 있는 질병 치료 또는 건강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거나 가장 중요한 것 3.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	0	0	0	0	Kg	없음	0
2202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2030000	맥주							
22030010	알코올을 최대 100 분의 2 까지 함유한 것	0	0	0	0	Lite r	없음	0
22030020	기타[알코올을 최대 100 분의 3.8 까지 함유하고, 45 센티리터(cl) 이상의 재사용이 가능한 병에 넣어 판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Lite r	없음	0
22030090	기타	0	0	0	0	Lite r	없음	0
22040000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 20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100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12	0	0	3.65	Lite r	없음	X
22042000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2204210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2	1.42	0	5.09	Lite r	없음	X
22042900	기타	12	1.42	0	5.09	Lite r	없음	X
22043000	그 밖의 포도즙	12	1.2	0	2.54	Lite r	없음	X
22050000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5100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2	0	0	2.1	Lite r	없음	X
22059000	기타	12	0	0	2.1	Lite r	없음	X
220600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0	0	0	0	Lite r	없음	0
2207000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100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2071010	병원·보건소(health fund clinics)·이스라엘 적십자사(Red Magen David) 또는 보건부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하도록 보건부장관이 확인하고 규정된 바와 같이 사용되는 것(조건부)	0	0	0	0	Lite r	없음	0
22071020	의약품의 생산에 사용하도록 보건부장관이 확인하고 규정된 바와 같이 사용되는 것(알코올을 함유한 의약품으로 희석되거나 보충 물질이 첨가된 것은 제외한다)(조건부)	0	0	0	0	Lite r	없음	0
22071050	주류 제조 면허를 지닌 제조업자가 주류(intoxicating beverage)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조건부)							
22071051	포도 알코올(조건부)	0	0	0	0	Lite r	없음	0
22071059	기타(조건부)	0	0	0	0	Lite r	없음	0
22071060	기타(구매세 면제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조건부)	0	0	0	0	Lite r	없음	0
22071070	고등교육의회장관이 승인하고 규정된 바와 같이 사용하는 것(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고등교육기관이 재정한 통제 절차에 따르는 것)(조건부)	0	0	0	0	Lite r	없음	0
22071080	보건부장관이 승인하고 규정된 바와 같이 사용하는 것[실험실에서 의료용 또는 보건용으로 사용이 인정(recognized)되거나 등록된(registrated) 것](조건부)	0	0	0	0	Lite r	없음	0
22071090	기타							
22071091	포도 알코올	0	0	0	0	Lite r	없음	0
22071092	기타(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0	0	0	0	Lite r	없음	0
22071099	기타	0	0	0	0	Lite r	없음	0
22072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0	0	0	0	Lite r	없음	0
2208000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82000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0	0	0	0	Lite r	없음	0
22083000	위스키류	0	0	0	0	Lite r	없음	0
22084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0	0	0	0	Lite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얼은 그 밖의 증류주					r		
22085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0	0	0	0	Lite r	없음	0
22086000	보드카	0	0	0	0	Lite r	없음	0
22087000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0	0	0	0	Lite r	없음	0
22089000	기타							
22089040	보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고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병원·이스라엘 적십자사 건강관리기관(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Magen David Adom) 또는 보건부의 의료수요에 의한 것](조건부)	0	0	0	0	Lite r	없음	0
22089050	의약품의 생산에 사용하도록 보건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고,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되는 것(알코올을 함유한 의약품으로 희석되거나 보충 물질이 첨가된 것은 제외한다)(조건부)	0	0	0	0	Lite r	없음	0
22089060	메스칼(데킬라)	0	0	0	0	Lite r	없음	0
22089090	기타							
22089095	1986년 의약품 규정 제1조[제제(製劑, preparations)]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된 제제(200밀리리터 이하로 포장되고, 알코올이 100분의 70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Lite r	없음	0
22089099	기타	0	0	0	0	Lite r	없음	0
22090000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0	0	0	0	Lite r	없음	0
23010000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 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2301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과 수지박	0	0	0	0	Kg	없음	0
23012000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0	0	0	0	Kg	없음	0
23020000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또는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1000	옥수수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23023000	밀가루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23024000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2302500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0	0	0	0	Kg	없음	0
2303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당을 제조할 때 생기는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1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0	0	0	0	Kg	없음	0
23032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당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0	0	0	0	Kg	없음	0
2303300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0	0	0	0	Kg	없음	0
2304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7.5	0	0	0	Kg	없음	X
2305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23060000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304 호나 제 2305 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1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0	0	0	0	Kg	없음	0
23062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0	0	0	0	Kg	없음	0
23063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2.8	0	0	0	Kg	없음	5
23064000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230641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0	0	0	0	Kg	없음	0
2306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306500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0	0	0	0	Kg	없음	0
23066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0	0	0	0	Kg	없음	0
2306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30700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0	0	0	0	Kg	없음	0
230800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3090000	사료용 조제품							
2309100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3091020	단백질계 물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상 100 분의 35 이하이고, 지방성 물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것	3	0	0	0	Kg	없음	5
2309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3099000	기타							
23099020	단백질계 물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상 100 분의 35 이하이고, 지방성 물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것	4	0	0	0	Kg	없음	5
23099030	관상어용 또는 조류용 조제 사료	4	0	0	0	Kg	없음	5
2309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4010000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4011000	잎담배 [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4012000	잎담배 [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4013000	담배 부산물	0	0	0	0	Kg	없음	0
24020000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 · 쥘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21000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4021010	필터를 제외한 중량이 1.3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없음	0
2402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4022000	쥘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000 Cig.	없음	0
24029000	기타							
24029010	시가(cigars) · 셔루트(cheroot) 및 시가릴로(cigarillos)	0	0	0	0	Kg	없음	0
24029020	쥘련	0	0	0	0	1000 Cig.	없음	0
24030000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 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24031000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24031100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0	0	0	0	Kg	없음	0
24031900	기타							
24031910	쥘련용 담배	12	0	0	0	Kg	없음	10
24031920	파이프 담배	0	0	0	0	Kg	없음	0
24031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4039000	기타							
24039100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6	0	0	0	Kg	없음	5
24039900	기타							
24039910	코 담배	0	0.31	0	0	Kg	없음	5
240399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250100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 [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12	0	0	0	Tons	없음	10
25020000	황화철광 [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5030000	황[승화황(昇華黃) · 침강황(沈降黃) ·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25040000	천연 흑연							
25041000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0	0	0	0	Kg	없음	0
250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5050000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6 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51000	규사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50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5060000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61000	석영	0	0	0	0	Kg	없음	0
25062000	규암	0	0	0	0	Kg	없음	0
250700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25080000	그 밖의 점토(제 6806 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珪線石)[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25081000	벤토나이트(bentonite)	0	0	0	0	Kg	없음	0
25083000	내화(耐火)점토	0	0	0	0	Kg	없음	0
25084000	그 밖의 점토	0	0	0	0	Kg	없음	0
25085000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珪線石)	0	0	0	0	Kg	없음	0
25086000	멀라이트(mullite)	0	0	0	0	Kg	없음	0
25087000	샤모트(chamotte),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0	0	0	0	Kg	없음	0
25090000	초크	0	0	0	0	Kg	없음	0
25100000	천연 인산칼슘·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0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25102000	잘게 부순 것	0	0	0	0	Kg	없음	0
2511000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16 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1100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0	0	0	0	Kg	없음	0
2511200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0	0	0	0	Kg	없음	0
25120000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5130000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31000	부석	0	0	0	0	Kg	없음	0
25132000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0	0	0	0	Kg	없음	0
251400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50000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에코신(eca 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겔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51000	대리석과 트래버틴(travertine)							
25151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	0	0	0	Kg	없음	0
251512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0	0	0	0	Kg	없음	0
2515200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 석고(alabaster)	0	0	0	0	Kg	없음	0
25160000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61000	화강암							
25161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	0	0	0	Kg	없음	0
251612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0	0	0	0	Kg	없음	0
25162000	사암	0	0	0	0	Kg	없음	0
25169000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	0	0	0	0	Kg	없음	0
25170000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 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1000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 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5172000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2517300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0	0	0	0	Kg	없음	0
25174000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4100	대리석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25174900	기타							
25174910	응회암(凝灰岩)	0	0	0	0	Kg	없음	0
25174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5180000	백운석(白雲石)[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25181000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0	0	0	0	Kg	없음	0
25182000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0	0	0	0	Kg	없음	0
2518300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0	0	0	0	Kg	없음	0
2519000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그 밖의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9100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0	0	0	0	Kg	없음	0
2519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520000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煨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01000	석고와 무수(無水)석고	0	0	0	0	Kg	없음	0
25202000	플라스터(plaster)	0	0	0	0	Kg	없음	0
25210000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5220000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수경성(水硬性) 석회(제 2825 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21000	생석회(生石灰)	0	0	0	0	Kg	없음	0
25222000	소석회(消石灰)	0	0	0	0	Kg	없음	0
25223000	수경성(水硬性) 석회	0	0	0	0	Kg	없음	0
25230000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31000	시멘트 클링커(clinker)	0	0	0	0	Kg	없음	0
25232000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25232100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2523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523300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0	0	0	0	Kg	없음	0
25239000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0	0	0	0	Kg	없음	0
25240000	석면							
25241000	청(靑)석면	0	0	0	0	Kg	없음	0
252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5250000	운모(또한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waste)							
2525100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갬 운모	0	0	0	0	Kg	없음	0
25252000	운모 가루	0	0	0	0	Kg	없음	0
25253000	운모 웨이스트(waste)	0	0	0	0	Kg	없음	0
25260000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25261000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0	0	0	0	Kg	없음	0
25262000	부수거나 가루인 것	0	0	0	0	Kg	없음	0
25280000	천연 봉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봉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봉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된 봉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5290000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1000	장석(長石)	0	0	0	0	Kg	없음	0
25292000	형석(螢石)							
25292100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25292200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25293000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0	0	0	0	Kg	없음	0
25300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25301000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5302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0	0	0	0	Kg	없음	0
2530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6010000	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26011000	철광과 그 정광[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6011100	응결시키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26011200	응결시킨 것	0	0	0	0	Kg	없음	0
2601200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0	0	0	0	Kg	없음	0
2602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2603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04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05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06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07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08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09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1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11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120000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6121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122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130000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6131000	볶은 것	0	0	0	0	Kg	없음	0
261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61400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150000	니오븀광 · 탄탈륨광 · 바나듐광 · 지르코늄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26151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1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6160000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26161000	은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16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6170000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71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Kg	없음	0
2617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618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0	0	0	0	Kg	없음	0
2619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Kg	없음	0
26200000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 · 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26201000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1100	경(硬)아연 스펠터(spellter)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620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6202000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							
26202100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0	0	0	0	Kg	없음	0
2620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620300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26204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26206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0	0	0	0	Kg	없음	0
26209000	기타							
262091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2620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6210000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켄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6211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0	0	0	0	Kg	없음	0
262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7010000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27011000	석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7011100	무연탄	0	0	0	0	Tons	없음	0
27011200	유연탄	0	0	0	0	Tons	없음	0
27011900	그 밖의 석탄	0	0	0	0	Tons	없음	0
27012000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0	0	0	0	Tons	없음	0
27020000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2100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0	0	0	0	Tons	없음	0
27022000	응결시킨 갈탄	0	0	0	0	Tons	없음	0
270300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6	0	0	0	Kg	없음	0
270400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0	0	0	0	Tons	없음	0
2705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 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27060000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인지 상관없고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27070000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71000	벤조올(벤젠)	0	0	0	0	Kg	없음	0
27072000	톨루올(톨루엔)	0	0	0	0	Kg	없음	0
27073000	크실롤(크실렌)	0	0	0	0	Kg	없음	0
27074000	나프탈렌	0	0	0	0	Kg	없음	0
27075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7079000	기타							
27079100	크레오소트(creosote)유	0	0	0	0	Kg	없음	0
2707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7080000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81000	피치(pitch)	0	0	0	0	Kg	없음	0
27082000	피치코크스(pitch cokes)	0	0	0	0	Tons	없음	0
270900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090010	가스 콘덴세이트	0	0	0	0	Kg	없음	0
2709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71000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10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1200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7101210	가솔린(벤젠)							
27101211	생산 기지로부터 판매되었고, 연료 소비세법 1958 5718 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소비세가 모두 납부된 것	0	0	0	0	Liter	없음	0
27101219	기타	0	0	0	0	1000 Liter	없음	0
27101220	솔벤트	0	0	0	0	Liter	없음	0
27101900	기타							
27101910	연료유[중유(mazout)] 또는 디젤유							
27101911	연료유[중유(mazout)](제조 지역에서	0	0	0	0	Tons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판매되었고, 연료 소비세법 1958 5718 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소비세가 납부될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27101919	기타	0	0	0	0	Tons	없음	0
27101920	함람유(含蠟油)	0	0	0	0	Kg	없음	0
27101930	윤활유 페이스트(paste)							
27101931	제조 지역에서 판매되었고, 유류세법 1958 5718 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유류세가 납부될 예정인 것	0	0	0	0	Lite r	없음	0
27101939	기타	0	0	0	0	1000 Lite r	없음	0
27101940	솔벤트	0	0	0	0	Lite r	없음	0
27101950	식물 감염 퇴치 및 예방을 위한 분사 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백유(white oil)[세관당국 통제하에서(인증받은 매장을 포함한다) 혼합한 물품들이 제공되었을 것](조건부)	0	0	0	0	Kg	없음	0
27101960	경유							
27101961	생산 기지로부터 판매되었고, 소비세법 1958 5718 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소비세가 모두 납부된 것	0	0	0	0	Lite r	없음	0
27101969	기타	0	0	0	0	1000 Lite r	없음	0
27101970	윤활유							
27101971	반고형 윤활유	0	0	0	0	Kg	없음	0
27101979	기타	0	0	0	0	Kg	없음	0
27101980	변압기 및/또는 회로 차단용 기름(변압기 일차 충전용 또는 1,000 볼트 이상의 회로 차단기 일차 충전용의 것)(조건부)	0	0	0	0	Tons	없음	0
27101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7102000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이고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오일은 제외한다)							
27102010	경유(벤젠)	0	0	0	0	1000 Lite r	없음	0
27102020	솔벤트	0	0	0	0	Lite r	없음	0
27102030	연료유[중유(mazout)]	0	0	0	0	Tons	없음	0
27102040	등유	0	0	0	0	1000 Lite r	없음	0
27102050	경유	0	0	0	0	1000 Lite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r		
27102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7109000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91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8	0	0	0	Kg	없음	0
27109900	기타							
27109910	사용한 오일	8	0	0	0	Kg	없음	0
271099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27110000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1000	액화한 것							
27111100	천연가스	0	0	0	0	Tons	없음	0
27111200	프로판	0	0	0	0	Tons	없음	0
27111300	부탄	0	0	0	0	Tons	없음	0
27111400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틸렌 · 부타디엔	0	0	0	0	Tons	없음	0
27111900	기타	0	0	0	0	Tons	없음	0
27112000	가스 상태인 것							
27112100	천연가스							
27112110	소비세법 1958 5718 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소비세가 납부된 천연가스	0	0	0	0	Tons	없음	0
27112190	기타	0	0	0	0	Tons	없음	0
27112900	기타	0	0	0	0	Tons	없음	0
27120000	석유젤리 · 파라핀왁스 · 마이크로크리스탈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 · 슬랙왁스(slack wax) · 오조케라이트(ozokerite) · 갈탄왁스 · 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121000	석유젤리	0	0	0	0	Kg	없음	0
27122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71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7130000	석유코크스 · 석유역청(瀝靑)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27131000	석유코크스							
27131100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0	0	0	0	Tons	없음	0
27131200	하소(煨燒)한 것	0	0	0	0	Tons	없음	0
27132000	석유역청(瀝靑)	0	0	0	0	Kg	없음	0
2713900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0	0	0	0	Kg	없음	0
27140000	천연의 역청(瀝靑) · 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00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0	0	0	0	Kg	없음	0
271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7150000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8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28010000	플루오르 · 염소 · 브롬 · 요드							
28011000	염소	0	0	0	0	Kg	없음	0
28012000	요드	0	0	0	0	Kg	없음	0
28013000	플루오르와 브롬	0	0	0	0	Kg	없음	0
28020000	승화황(昇華黃) · 침강황(沈降黃) · 콜로이드 황	0	0	0	0	Kg	없음	0
280300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28040000	수소 · 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1000	수소	0	0	0	0	Kg	없음	0
28042000	희가스(rare gas)							
28042100	아르곤	0	0	0	0	Kg	없음	0
2804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043000	질소	0	0	0	0	Kg	없음	0
28044000	산소	0	0	0	0	Kg	없음	0
28045000	붕소와 텔루르	0	0	0	0	Kg	없음	0
28046000	규소							
28046100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28046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047000	인	0	0	0	0	Kg	없음	0
28048000	비소	0	0	0	0	Kg	없음	0
28049000	셀렌	0	0	0	0	Kg	없음	0
28050000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류금속 ,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28051000	알칼리나 알칼리토류 금속							
28051100	나트륨	0	0	0	0	Kg	없음	0
28051200	칼슘	0	0	0	0	Kg	없음	0
2805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053000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28054000	수은	0	0	0	0	Kg	없음	0
28060000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28061000	염화수소(염산)	0	0	0	0	Kg	없음	0
28062000	클로로황산	0	0	0	0	Kg	없음	0
28070000	황산과 발연황산	0	0	0	0	Kg	없음	0
28080000	질산과 황질산	0	0	0	0	Kg	없음	0
28090000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91000	오산화인	0	0	0	0	Kg	없음	0
28092000	인산과 폴리인산	0	0	0	0	Kg	없음	0
28100000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0	0	0	0	Kg	없음	0
28110000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1000	그 밖의 무기산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8111100	플루오르화수소 (플루오르화수소산)	0	0	0	0	Kg	없음	0
2811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112000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100	이산화탄소	0	0	0	0	Kg	없음	0
28112200	이산화규소	0	0	0	0	Kg	없음	0
2811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120000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21000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0	0	0	0	Kg	없음	0
281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130000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28131000	이황화탄소	0	0	0	0	Kg	없음	0
281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140000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41000	무수(無水)암모니아	0	0	0	0	Kg	없음	0
28142000	암모니아수	0	0	0	0	Kg	없음	0
28150000	수산화나트륨 [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 [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 · 과산화칼륨							
28151000	수산화나트륨 [가성(苛性)소다]							
28151100	고체	0	0	0	0	Kg	없음	0
281512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0	0	0	0	Kg	없음	0
28152000	수산화칼륨 [가성(苛性)칼륨]	0	0	0	0	Kg	없음	0
28153000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0	0	0	0	Kg	없음	0
28160000	수산화마그네슘 ·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 수산화물 · 과산화물							
2816100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0	0	0	0	Kg	없음	0
2816400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0	0	0	0	Kg	없음	0
28170000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0	0	0	0	Kg	없음	0
28180000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00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28182000	산화알루미늄 [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28183000	수산화알루미늄	0	0	0	0	Kg	없음	0
28190000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00	삼산화크로뮴	0	0	0	0	Kg	없음	0
2819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200000	산화망간							
28201000	이산화망간	0	0	0	0	Kg	없음	0
2820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210000	산화철 · 수산화철 · 어스컬러 (earth colour)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 ₂ O ₃)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8211000	산화철과 수산화철	0	0	0	0	Kg	없음	0
28212000	어스컬러 (earth colour)	0	0	0	0	Kg	없음	0
28220000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 (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0	0	0	0	Kg	없음	0
28230000	산화티타늄	0	0	0	0	Kg	없음	0
28240000	산화납 · 연단 (鉛丹) · 오렌지납							
28241000	일산화납 [리사지 (litharge) · 메시코트 (massicot)]	0	0	0	0	Kg	없음	0
282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250000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 · 금속 과산화물							
28251000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0	0	0	0	Kg	없음	0
28252000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0	0	0	0	Kg	없음	0
28253000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0	0	0	0	Kg	없음	0
28254000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0	0	0	0	Kg	없음	0
2825500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0	0	0	0	Kg	없음	0
28256000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0	0	0	0	Kg	없음	0
28257000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0	0	0	0	Kg	없음	0
28258000	산화안티모니	0	0	0	0	Kg	없음	0
282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260000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 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28261000	플루오르화물							
282612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0	0	0	0	Kg	없음	0
2826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263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 [인조 빙정석 (氷晶石)]	0	0	0	0	Kg	없음	0
2826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270000	염화물 · 산화염화물 ·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 · 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 · 산화요드화물							
28271000	염화암모늄	0	0	0	0	Kg	없음	0
28272000	염화칼슘	0	0	0	0	Kg	없음	0
28273000	그 밖의 염화물							
28273100	마그네슘 염화물	0	0	0	0	Kg	없음	0
28273200	알루미늄 염화물	0	0	0	0	Kg	없음	0
28273500	니켈 염화물	0	0	0	0	Kg	없음	0
2827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274000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4100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0	0	0	0	Kg	없음	0
2827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275000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28275100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0	0	0	0	Kg	없음	0
28275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276000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0	0	0	0	Kg	없음	0
28280000	하이포아염소산염 · 상관습 (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 아염소산염 · 하이포아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브롬산염							
2828100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0	0	0	0	Kg	없음	0
2828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290000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28291000	염소산염							
28291100	염소산나트륨	0	0	0	0	Kg	없음	0
28291900	기타							
28291910	염소산칼륨 또는 염소산마그네슘	8	0	0	0	Kg	없음	0
28291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29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300000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01000	황화나트륨	0	0	0	0	Kg	없음	0
2830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310000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28311000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	0	0	0	0	Kg	없음	0
283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320000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28321000	아황산나트륨	0	0	0	0	Kg	없음	0
28322000	그 밖의 아황산염	0	0	0	0	Kg	없음	0
28323000	티오황산염	0	0	0	0	Kg	없음	0
28330000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1000	황산나트륨							
28331100	황산이나트륨	0	0	0	0	Kg	없음	0
2833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332000	그 밖의 황산염							
28332100	황산마그네슘	0	0	0	0	Kg	없음	0
28332200	황산알루미늄	0	0	0	0	Kg	없음	0
28332400	황산니켈	0	0	0	0	Kg	없음	0
28332500	황산구리	0	0	0	0	Kg	없음	0
28332700	황산바륨	0	0	0	0	Kg	없음	0
2833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333000	명반	0	0	0	0	Kg	없음	0
28334000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0	0	0	0	Kg	없음	0
28340000	아질산염과 질산염							
28341000	아질산염	0	0	0	0	Kg	없음	0
28342000	질산염							
28342100	질산칼륨	12	0	0	0	Kg	없음	5
2834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350000	포스포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51000	포스포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0	0	0	0	Kg	없음	0
28352000	인산염							
28352200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8352400	질산칼륨	0	0	0	0	Kg	없음	0
283525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 (인산이칼슘)	12	0	0	0	Kg	없음	5
28352600	그 밖의 인산칼슘	12	0	0	0	Kg	없음	5
28352900	기타							
28352910	인산크로뮴	6	0	0	0	Kg	없음	0
28352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353000	폴리인산염							
28353100	삼인산나트륨 (트리폴리인산나트륨)	8	0	0	0	Kg	없음	0
2835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360000	탄산염, 과산화탄산염 (과탄산염), 상관습 (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 (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2000	탄산이나트륨	0	0	0	0	Kg	없음	0
28363000	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나트륨)	0	0	0	0	Kg	없음	0
28364000	탄산칼륨	0	0	0	0	Kg	없음	0
28365000	탄산칼슘	0	0	0	0	Kg	없음	0
28366000	탄산바륨	0	0	0	0	Kg	없음	0
28369000	기타							
28369100	탄산리튬	0	0	0	0	Kg	없음	0
28369200	탄산스트론튬	0	0	0	0	Kg	없음	0
2836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370000	시아나화물 · 산화시아나화물 · 시안착염							
28371000	시아나화물과 산화시아나화물							
28371100	시아나화나트륨과 산화시아나화나트륨	0	0	0	0	Kg	없음	0
2837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372000	시아나착염	0	0	0	0	Kg	없음	0
28390000	규산염과 상관습 (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391000	규산나트륨							
28391100	메타규산나트륨	0	0	0	0	Kg	없음	0
2839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39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400000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 (과붕산염)							
28401000	사붕산이나트륨 [정제붕사 (精製硼砂)]							
28401100	무수물 (無水物)	0	0	0	0	Kg	없음	0
2840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402000	그 밖의 붕산염	0	0	0	0	Kg	없음	0
28403000	과산화붕산염 (과붕산염)	0	0	0	0	Kg	없음	0
28410000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3000	중크롬산나트륨	0	0	0	0	Kg	없음	0
2841500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0	0	0	0	Kg	없음	0
28416000	아망간산염 · 망간산염 · 과망간산염							
28416100	과망간산칼륨	0	0	0	0	Kg	없음	0
28416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417000	몰리브덴산염	0	0	0	0	Kg	없음	0
28418000	텅스텐산염 [울프라메이트 (wolframate)]	0	0	0	0	Kg	없음	0
284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8420000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 (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1000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284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430000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 (amalgam)							
28431000	콜로이드 귀금속	0	0	0	0	Kg	없음	0
28432000	은 화합물							
28432100	질산은	0	0	0	0	Kg	없음	0
2843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433000	금 화합물	0	0	0	0	Kg	없음	0
28439000	그 밖의 화합물과 아말감 (amalgam)	0	0	0	0	Kg	없음	0
28440000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 (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41000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 (分散物) [서멧 (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 (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Mk.K iri	없음	0
2844200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 (分散物) [서멧 (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 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Mk.K iri	없음	0
28443000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 (分散物) [서멧 (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Mk.K iri	없음	0
28444000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 2844.1000 호 · 제 2844.2000 호 · 제 2844. 3000 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 (分散物) [서멧 (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 (이들의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0	0	0	0	Mk.K iri	없음	0
28445000	핵반응로에서 사용 [조사 (照射)]된 연료 요소 [카트리지 (cartridge)]	0	0	0	0	Mk.K iri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8450000	동위원소 (제 2844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1000	중수 (重水) (산화 중수소)	0	0	0	0	Kg	없음	0
284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460000	희토류 (稀土類) 금속 · 이트륨 · 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 유기 화합물							
28461000	세륨화합물	0	0	0	0	Kg	없음	0
2846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470000	과산화수소 (요소로 대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28480000	인화물 (磷化物)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28490000	탄화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1000	탄화칼슘	0	0	0	0	Kg	없음	0
28492000	탄화규소	0	0	0	0	Kg	없음	0
2849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500000	수소화물 · 질화물 · 아지드화물 · 규화물 · 붕화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49 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28520000	무기나 유기 수은화합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 (amalgam) 은 제외한다]							
2852100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0	0	0	0	Kg	없음	0
285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8530000	인화물 (磷化物)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 [증류수나 전도도수 (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 [희가스 (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 (amalgam) [귀금속의 아말감 (amalgam)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29010000	비환식탄화수소							
2901100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1010	에탄가스 또는 부탄가스	0	0	0	0	Tons	없음	0
2901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12000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2100	에틸렌	0	0	0	0	Kg	없음	0
29012200	프로펜 (프로필렌)	0	0	0	0	Kg	없음	0
29012300	부텐 (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	0	0	0	Kg	없음	0
29012400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0	0	0	0	Kg	없음	0
2901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20000	환식탄화수소							
2902100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							
29021100	시클로헥산	0	0	0	0	Kg	없음	0
290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9022000	벤젠	0	0	0	0	Kg	없음	0
29023000	톨루엔	0	0	0	0	Kg	없음	0
29024000	크실렌							
29024100	오르토-크실렌	0	0	0	0	Kg	없음	0
29024200	메타-크실렌	0	0	0	0	Kg	없음	0
29024300	파라-크실렌	0	0	0	0	Kg	없음	0
29024400	혼합크실렌 이성체	0	0	0	0	Kg	없음	0
29025000	스티렌	0	0	0	0	Kg	없음	0
29026000	에틸벤젠	0	0	0	0	Kg	없음	0
29027000	큐멘	0	0	0	0	Kg	없음	0
290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30000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31000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1100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0	0	0	0	Kg	없음	0
290312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0	0	0	0	Kg	없음	0
290313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0	0	0	0	Kg	없음	0
29031400	사염화탄소	0	0	0	0	Kg	없음	0
290315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0	0	0	0	Kg	없음	0
29031900	기타							
2903191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0	0	0	0	Kg	없음	0
29031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32000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21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0	0	0	0	Kg	없음	0
29032200	삼염화에틸렌	0	0	0	0	Kg	없음	0
290323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0	0	0	0	Kg	없음	0
2903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33000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요드화유도체							
29033100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0	0	0	0	Kg	없음	0
2903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37000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2903710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0	0	0	0	Kg	없음	0
2903720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0	0	0	0	Kg	없음	0
29037300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	0	0	0	0	Kg	없음	0
2903740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0	0	0	0	Kg	없음	0
2903750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0	0	0	0	Kg	없음	0
290376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	0	0	0	0	Kg	없음	0
29037700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0	0	0	0	Kg	없음	0
29037800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037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38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탄 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8100	1,2,3,4,5,6-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290382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헵타클로르 (ISO)							
29038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39000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9100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 디클로로벤젠	0	0	0	0	Kg	없음	0
29039200	헥사클로로벤젠 (ISO)과 디·디·티 (ISO) [클로페노탄 (INN), 1,1,1- 트리클로로-2,2-비스(파라- 클로로페닐)에탄]	0	0	0	0	Kg	없음	0
2903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40000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041000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042000	니트로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0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50000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1000	포화 1 가알코올							
29051100	메탄올 (메틸알코올)	0	0	0	0	Kg	없음	0
29051200	1-프로판올 (프로필알코올)과 2- 프로판올 (이소프로필알코올)	0	0	0	0	Kg	없음	0
29051300	1-부탄올 (노르말-부틸알코올)	0	0	0	0	Kg	없음	0
29051400	그 밖의 부탄올	0	0	0	0	Kg	없음	0
29051600	옥탄올 (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0	0	0	0	Kg	없음	0
29051700	1-도데칸올 (라우릴알코올), 1- 헥사데칸올 (세틸알코올), 1- 옥타데칸올 (스테아릴알코올)	0	0	0	0	Kg	없음	0
2905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52000	불포화 1 가알코올							
29052200	비환식테르펜알코올	0	0	0	0	Kg	없음	0
2905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53000	2 가알코올							
29053100	에틸렌글리콜 (에탄디올)	0	0	0	0	Kg	없음	0
29053200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판-1,2-디올)	0	0	0	0	Kg	없음	0
2905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54000	그 밖의 다가알코올							
290541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 디올 (트리메틸올프로판)	0	0	0	0	Kg	없음	0
29054200	펜타에리트리톨	0	0	0	0	Kg	없음	0
29054300	만니톨	0	0	0	0	Kg	없음	0
29054400	디-글루시톨 (소르비톨)	0	0	0	0	Kg	없음	0
29054500	글리세롤	0	0	0	0	Kg	없음	0
2905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55000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00	에스클로비놀 (INN)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9055900	기타							
29055910	라우릴알코올술포네이트	6	0	0	0	Kg	없음	0
29055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60000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 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6100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							
29061100	멘톨	0	0	0	0	Kg	없음	0
29061200	시클로헥산올 · 메틸시클로헥산올 · 디메틸시 클로헥산올	0	0	0	0	Kg	없음	0
29061300	스테롤과 이노시톨	0	0	0	0	Kg	없음	0
2906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62000	방향족 (芳香族)							
29062100	벤질알코올	0	0	0	0	Kg	없음	0
2906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70000	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1000	1 가페놀							
29071100	페놀 (석탄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071200	크레졸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071300	옥틸페놀 · 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071500	나프톨과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07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72000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2100	레소르시놀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072200	히드로퀴논 (퀴놀)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0723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 (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07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80000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 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81000	할로겐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29081100	펜타클로로페놀 (IS0)	0	0	0	0	Kg	없음	0
2908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89000	기타							
29089100	디노셉 (IS0)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089200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 [DNOC (IS0)] 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08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90000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 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 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000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 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100	디에틸에테르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909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92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에 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09300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094000	에테르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41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0	0	0	0	Kg	없음	0
290943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0	0	0	0	Kg	없음	0
29094400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0	0	0	0	Kg	없음	0
2909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09500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096000	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100000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 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0	0	0	0	Kg	없음	0
29102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0	0	0	0	Kg	없음	0
29103000	1-클로로-2,3- 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0	0	0	0	Kg	없음	0
29104000	디엘드린(ISO, INN)	0	0	0	0	Kg	없음	0
2910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10000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120000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21000	비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11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0	0	0	0	Kg	없음	0
291212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0	0	0	0	Kg	없음	0
291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22000	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2100	벤즈알데히드	0	0	0	0	Kg	없음	0
2912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9124000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							
291241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0	0	0	0	Kg	없음	0
29124200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0	0	0	0	Kg	없음	0
2912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2500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0	0	0	0	Kg	없음	0
29126000	파라포름알데히드	0	0	0	0	Kg	없음	0
291300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140000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1000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1100	아세톤	0	0	0	0	Kg	없음	0
291412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0	0	0	0	Kg	없음	0
291413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0	0	0	0	Kg	없음	0
2914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42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케 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2200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0	0	0	0	Kg	없음	0
29142300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0	0	0	0	Kg	없음	0
2914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43000	방향족 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31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0	0	0	0	Kg	없음	0
2914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44000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0	0	0	0	Kg	없음	0
29145000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0	0	0	0	Kg	없음	0
29146000	퀴논							
29146100	안트라퀴논	0	0	0	0	Kg	없음	0
29146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47000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VII.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 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150000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 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1000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51100	포름산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9151200	포름산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151300	포름산의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52000	초산과 그 염, 무수(無水)초산							
29152100	초산	0	0	0	0	Kg	없음	0
29152400	무수(無水)초산	0	0	0	0	Kg	없음	0
2915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53000	초산에스테르							
29153100	초산에틸	0	0	0	0	Kg	없음	0
29153200	초산비닐	0	0	0	0	Kg	없음	0
29153300	초산노르말부틸	0	0	0	0	Kg	없음	0
29153600	초산디노셉 (IS0)	0	0	0	0	Kg	없음	0
2915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54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55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56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57000	팔미트산·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60000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61000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1100	아크릴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161200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61300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161400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61500	올레산·리놀레산·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61600	비나파크릴 (IS0)	0	0	0	0	Kg	없음	0
2916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62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163000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3100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63200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0	0	0	0	Kg	없음	0
29163400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16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70000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 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71000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 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71100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71200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71300	아젤라산 · 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71400	무수말레산	0	0	0	0	Kg	없음	0
2917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7200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폴 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 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173000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 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73200	오르토프탈산디옥틸	0	0	0	0	Kg	없음	0
29173300	오르토프탈산디노닐과 오르토프탈산디데실	0	0	0	0	Kg	없음	0
29173400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73500	무수프탈산	0	0	0	0	Kg	없음	0
29173600	테레프탈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173700	테레프탈산디메틸	0	0	0	0	Kg	없음	0
2917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80000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 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 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1000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 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81100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81200	타르타르산	0	0	0	0	Kg	없음	0
29181300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81400	시트르산	8	0	0	0	Kg	없음	0
29181500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8	0	0	0	Kg	없음	0
29181600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81800	클로로벤질레이트 (ISO)	8	0	0	0	Kg	없음	0
2918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82000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 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82100	살리실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182200	오르트-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9182300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18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83000	알데히드·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189000	기타							
291891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2918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190000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0	0	0	0	Kg	없음	0
29199000	기타							
29199010	2,2-디클로로비닐 디메틸 포스페이트(D.D.V.P)	0	0	0	0	Kg	없음	0
29199020	1,2-디브로모-2,2-디클로로에틸 디메틸 포스페이트	0	0	0	0	Kg	없음	0
2919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0000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000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리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00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0	0	0	0	Kg	없음	0
2920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09000	기타							
29209010	엔도설판	0	0	0	0	Kg	없음	0
29209020	라우릴 황산과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20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10000	아민관능화합물							
29211000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1100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21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12000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2100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212200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21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13000	포화지환식아민·불포화지환식아민·시클로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테르펜 모노아민 ·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4000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4100	아닐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214200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214300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214400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21450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214600	암페타민(INN) · 벤즈페타민(INN) · 맥스암페타민(INN) · 에틸암페타민(INN) · 펜캄파민(INN) · 레페타민(INN) · 레브암페타민(INN) · 메페노렉스(INN) · 펜터민(INN),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21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15000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5100	오르토-페닐렌디아민 · 메타-페닐렌디아민 · 파라-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215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20000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1000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 ·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1100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221200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221300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2214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2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22000	아미노나프톨 · 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 ·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2100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22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23000	아미노-알데히드 · 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29223100	암페프라몬(INN) · 메타돈(INN) · 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22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24000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4100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224200	글루탐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224300	안트라닐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224400	틸리딘(INN)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922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25000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0	0	0	0	Kg	없음	0
29230000	제 4 암모늄염과 수산화 제 4 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31000	콜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232000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29232010	레시틴	12	0	0	0	Kg	없음	5
29232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40000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1000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1100	메프로바메이트(INN)	0	0	0	0	Kg	없음	0
292412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0	0	0	0	Kg	없음	0
2924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42000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2100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2110	3-(파라-클로로페닐)-1,1-디메틸우레아	8	0	0	0	Kg	없음	0
29242130	1-부틸-3(3,4-디클로로페닐)-1-메틸우레아	8	0	0	0	Kg	없음	0
29242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423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242400	에치나메이트(INN)	0	0	0	0	Kg	없음	0
29242900	기타							
29242920	3,5-디아세트아미도-2,4,6-트리요오드벤조산	0	0	0	0	Kg	없음	0
29242930	리그노케인, 리그노케인 히드로클로라이드	0	0	0	0	Kg	없음	0
29242940	3,5-디니트로-o-톨루아미드(D.O.T.)	0	0	0	0	Kg	없음	0
29242950	오르토-이소프로폭시페닐 메틸카바산	0	0	0	0	Kg	없음	0
29242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50000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1000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1100	사카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251200	구루테치미드(INN)	0	0	0	0	Kg	없음	0
2925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52000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2100	클로르디메포름(ISO)	0	0	0	0	Kg	없음	0
2925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60000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00	아크릴로니트릴	0	0	0	0	Kg	없음	0
29262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0	0	0	0	Kg	없음	0
29263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디페닐부탄)							
2926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270000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 아족시화합물	0	0	0	0	Kg	없음	0
29280000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290000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1000	이소시아네이트	0	0	0	0	Kg	없음	0
2929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00000	유기-황 화합물							
29302000	티오키아바메이트와 디티오키아바메이트	0	0	0	0	Kg	없음	0
29303000	티우람모노술파이드 · 티우람디술파이드 ·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0	0	0	0	Kg	없음	0
29304000	메티오닌	0	0	0	0	Kg	없음	0
29305000	캅탈폴 (ISO), 메타미도포스 (ISO)	0	0	0	0	Kg	없음	0
2930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10000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00	테트라에칠납, 테트라에칠납	0	0	0	0	Kg	없음	0
29312000	트리부틸틴 화합물							
29312010	트리부틸틴 산화물	0	0	0	0	Kg	없음	0
29312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29319000	기타							
29319010	주석 화합물[모노부틸 틴 옥사이드(monobutyl tin oxide) · 디부틸 틴 옥사이드(dibutyl tin oxide) · 트리부틸 틴 옥사이드(tributyl tin oxide) · 트리페닐 틴 아세테이트(triphenyl tin acetate) 및 디옥틸 틴 옥사이드(dioctyl tin oxide)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29319020	오,오-디메틸 (2,2,2-트리클로로-1-하이드록시에틸) 포스포네이트	0	0	0	0	Kg	없음	0
2931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20000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1000	불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1100	테트라하드로푸란	0	0	0	0	Kg	없음	0
29321200	2-푸르알데히드 (푸르푸르알데히드)	0	0	0	0	Kg	없음	0
29321300	푸르푸릴 알코올, 테트라하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0	0	0	0	Kg	없음	0
293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22000	락톤							
29322010	후랄타돈(furaltadone) · 후랄타돈 염산염(furaltadone hydrochloride) · 후랄타돈 타르타르산염(furaltadone tartrate)	0	0	0	0	Kg	없음	0
29322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29000	기타							
29329100	이소사프롤	0	0	0	0	Kg	없음	0
293292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0	0	0	0	Kg	없음	0
29329300	피페로날	0	0	0	0	Kg	없음	0
29329400	사프롤	0	0	0	0	Kg	없음	0
29329500	테트라하드로카나비놀 (모든 이성체)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932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30000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1000	불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1100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33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32000	불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2100	히단톤인과 그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33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33000	불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3100	피리딘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333200	피페리딘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333300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 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디페녹신(I 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일(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 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 (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333900	기타							
29333910	말레인산메피라민(mepyramine maleate)[말레인산피릴라민(pyrimilamine maleate)]	8	0	0	0	Kg	없음	0
29333920	오,오-디에틸 오-3,5,6-트리클로로-2- 피리딜티오인산	8	0	0	0	Kg	없음	0
29333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34000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4100	레보파놀(INN)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33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35000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52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335300	아로바르비탈(INN) · 아모바르비탈(INN) · 바 르비탈(INN) · 부탈비탈(INN) · 부도바르비탈 (INN) · 싸이클로바르비탈(INN) · 메틸페노바 르비탈(INN) · 펜토바르비탈(INN) · 페노바르 비탈(INN) · 섹부타바르비탈(INN) · 세코바르 비탈(INN) · 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335400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유도체 (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29335500	로프라졸람 (INN) · 메크로과론 (INN) · 메타과론 (INN) · 지페프롤 (INN)과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335900	기타							
29335910	오, 오-디에틸 오-(2-이소프로필-6-메틸-4-피리미딘일) 포스포로티오에이트	0	0	0	0	Kg	없음	0
29335920	2,4-디아미노-5-(3,4,5-3 메톡시벤질)피리미딘 (트리메소프림)	0	0	0	0	Kg	없음	0
29335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36000	불지 않은 트리아진고리 (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6100	멜라민	0	0	0	0	Kg	없음	0
29336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37000	락탐							
29337100	6-핵산락탐 (에프시론-카프로락탐)	0	0	0	0	Kg	없음	0
29337200	클로바잠 (INN)과 메치푸리론 (INN)	0	0	0	0	Kg	없음	0
29337900	그 밖의 락탐	0	0	0	0	Kg	없음	0
29339000	기타							
29339100	알프라졸람 (INN) · 카마제팜 (INN) ·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INN) · 클로나제팜 (INN) · 클로라제페이트 · 델로라제팜 (INN) · 디아제팜 (INN) · 에스타졸람 (INN) · 에틸로프라제페이트 (INN) · 플르디아제팜 (INN) · 플루니트라제팜 (INN) · 플루라제팜 (INN) · 할라제팜 (INN) · 로라제팜 (INN) · 로르메타제팜 (INN) · 마진돌 (INN) · 메다제팜 (INN) · 미다졸람 (INN) · 니메타제팜 (INN) · 니트라제팜 (INN) · 놀다제팜 (INN) · 옥사제팜 (INN) · 피나제팜 (INN) · 프라제팜 (INN) · 피로발레톤 (INN) · 테마제팜 (INN) · 테트라제팜 (INN) · 트리아졸람 (INN)과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339900	기타							
29339910	3-아미노-1,2,4-트리아졸	0	0	0	0	Kg	없음	0
29339920	판퀴논	0	0	0	0	Kg	없음	0
29339930	이미프라민	0	0	0	0	Kg	없음	0
29339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40000	핵산과 이들의 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1000	불지 않은 티아졸고리 (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0	0	0	0	Kg	없음	0
2934200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29343000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9343010	클로르프로마진	8	0	0	0	Kg	없음	0
29343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49000	기타							
29349100	아미노렉스 (INN) · 브로티졸람 (INN) · 클로티 아제팜 (INN) · 클록사졸람 (INN) · 텍스트로모 라마이드 (INN) · 할록사졸람 (INN) · 케타졸람 (INN) · 메소카브 (INN) · 옥사졸람 (INN) · 페 올린 (INN) · 펜디메트라진 (INN) · 펜메트라진 (INN) · 서펜타닐 (INN)과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34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50000	숄폰아미드							
29350010	클로로티아지드 (CHLOROTHIAZIDE)	0	0	0	0	Kg	없음	0
29350020	프로베네시드 (PROBENECID)	0	0	0	0	Kg	없음	0
29350030	푸로세미드 (FRUSEMIDE)	0	0	0	0	Kg	없음	0
29350040	기타(제 11 절 프로비타민 · 비타민 · 호르몬)	0	0	0	0	Kg	없음	0
29360000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9362000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62100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362200	비타민 B1 과 이들의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362300	비타민 B2 와 이들의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3624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362500	비타민 B6 와 이들의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362600	비타민 B12 와 이들의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362700	비타민 C 와 이들의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362800	비타민 E 와 이들의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362900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369000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29370000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 · 트롬복산 · 류코트 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9371000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100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0	0	0	Kg	없음	0
29371200	인슐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37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72000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2100	코르티손 · 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손 (데 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손 (데히드로히 드로코르티손)	0	0	0	0	Kg	없음	0
293722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3723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0	0	0	0	Kg	없음	0
2937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75000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0	0	0	Kg	없음	0
2937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80000	글리코시드 (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29381000	루토시드 (루틴)와 그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38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90000	알칼로이드 (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29391000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1100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 (INN) · 코데인 · 디히드로코데인 (INN) · 에틸모르핀 · 에토르핀 (INN) · 헤로인 · 히드로코돈 (INN) · 히드로모르핀 (INN) · 모 르핀 · 니코모르핀 (INN) · 옥시코돈 (INN) · 옥 시모르핀 (INN) · 폴코딘 (INN) · 테바콘 (INN) · 테바인, 이들의 염							
29391110	양귀비 줄기 농축물							
29391111	보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수입한 것	0	0	0	0	Kg	없음	0
293911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91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9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92000	기타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393000	카페인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394000	에페드린과 이들의 염							
29394100	에페드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394200	슈도에페드린 (INN)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394300	캐진 (INN)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394400	놀에페드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39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95000	테오피린 · 아미노피린 (테오피린- 에틸렌디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5100	페네틸린 (INN)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395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9396000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이들의 염							
29396100	엘고메트린 (INN)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396200	엘고타민 (INN)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396300	리세르그산과 그 염	0	0	0	0	Kg	없음	0
29396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399000	기타							
29399100	코카인, 에크코닌, 레보메탐페타민, 메탐페타민 (INN),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이들의 에스테르와 그 밖의 이들의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2939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400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 2937 호·제 2938 호·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29410000	항생물질							
29411000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41200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41300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414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415000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294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294200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0	0	0	0	Kg	없음	0
30010000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12000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0	0	0	0	Kg	없음	0
30019000	기타							
30019010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3001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0020000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100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0021010	인체 파상풍(human tetanus)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일정한 투여량으로 소매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3002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002200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0023000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0029000	기타							
30029010	보건부장관의 승인으로 수입한 것(일정한 투여량으로 하지 않았거나 소매용으로 포장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30029020	항독소·투베르쿨린 및 쥐 바이러스	0	0	0	0	Kg	없음	0
3002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3
30030000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 3002 호·제 3005 호·제 3006 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3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10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0031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30032000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00320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0032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30033000	제 2937 호의 호르몬 또는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331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300331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00331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30033900	기타							
300339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0033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30034000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340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30034090	기타	10.8	0	0	0	Kg	없음	0
30039000	기타							
300390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003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30040000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 · 제 3005 호 ·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10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004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0042000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00420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0042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0043000	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431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300431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0043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0043200	부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300432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00432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0043900	기타							
300439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30043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0044000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440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0044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0045000	그 밖의 의약품(제 2936 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450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0045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0049000	기타							
300490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004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0050000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30051000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질							
30051020	의약물질을 침투·도포한 것(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승인한 것)	2	0	0	0	Kg	없음	0
30051030	반창고(소호 제 10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30051040	신축성 있거나 탄력성이 있는 반창고	12	0	0	0	Kg	없음	5
30051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0059000	기타							
30059010	반창고 및 거즈							
30059011	의약물질을 침투·도포한 것(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승인한 것)	2	0	0	0	Kg	없음	0
3005901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0059020	신축성 있거나 탄력성이 있는 반창고	12	0	0	0	Kg	없음	3
30059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0060000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 4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3006100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30062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0	0	0	0	Kg	없음	0
30063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30063010	미생물로부터 얻은 것(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 포장을 한 것이 아니며, 보건부의 승인을 받고 수입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0063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30064000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6	0	0	0	Kg	없음	0
30065000	구급상자와 구급대(구급상자 또는 구급대를 구성하는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관세율은 부록에 수록된 세부사항에 따른다)	12	0	0	0	Kg	없음	15
30066000	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30066010	호르몬 또는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30066011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0066019	기타	12	0	0	0	Kg	없음	5
3006602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006700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0069000	기타							
30069100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0	0	0	0	Kg	없음	0
30069200	폐(廢)의료용품							
30069210	보건부장관 또는 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대체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00692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31010000	동물성 ·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 ·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1010010	구아노(guano)와 동물성·식물성의 그 밖의 천연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31010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1020000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100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Tons	없음	0
31022000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31022100	황산암모늄	0	0	0	0	Kg	없음	0
310229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1023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31024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31025000	질산나트륨	0	0	0	0	Kg	없음	0
31026000	질산칼슘·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8	0	0	0	Kg	없음	0
31028000	요소·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310290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1030000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31000	과인산석회	8	0	0	0	Kg	없음	0
31039000	기타	8	0	0	0	Tons	없음	0
31040000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2000	염화칼륨	0	0	0	0	Kg	없음	0
31043000	황산칼륨							
31043010	비료용으로 수입한 것(농업부장관으로부터 규정된 바에 따라 사용될 것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1043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10490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1050000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0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8	0	0	0	Kg	없음	0
31052000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8	0	0	0	Kg	없음	0
31053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8	0	0	0	Kg	없음	0
31054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혼합물							
31055000	두 가지 비료성분 질소와 인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310551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5	0	0	0	Kg	없음	0
310559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1056000	두 가지 비료성분 인과 칼륨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 비료	8	0	0	0	Kg	없음	0
310590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2010000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32011000	케브라초 추출물(quebracho extract)	0	0	0	0	Kg	없음	0
3201200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0	0	0	0	Kg	없음	0
320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2020000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1000	합성 유기유연제	0	0	0	0	Kg	없음	0
320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2030000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30010	헤나	6	0	0	0	Kg	없음	0
32030020	튤머릭	0	0	0	0	Kg	없음	0
32030030	수성 펄프 유기안료	0	0	0	0	Kg	없음	0
32030040	천연 인디고(indigo)	0	0	0	0	Kg	없음	0
32030090	기타							
32030091	건조한 상태의 것	0	0	0	0	Kg	없음	0
32030099	기타	6	0	0	0	Kg	없음	0
32040000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000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1100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2041200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2041300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2041400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2041500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416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20417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2041900	기타(소호 제 3204.1100 호부터 제 3204.1900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3204200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	0	0	0	0	Kg	없음	0
320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2050000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2060000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 3203 호 · 제 3204 호 · 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1000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1100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0	0	0	0	Kg	없음	0
3206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2062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2064000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32064100	군청(群靑)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2064200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도폰(lithopone) · 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206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206500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0	0	0	0	Kg	없음	0
32070000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 · 법랑 · 유약 · 유약용 슬립 · 액체 상대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 · 에나멜공업 ·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1000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2071010	건조한 상태에서 크로뮴안료나 산화철, 수산화물이나 감청(purssian blue), 페로시아화물 · 페리시아화물 · 감청(azure blue) · 산화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안료의 함유량이 100 분의 10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32071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2072000	법랑과 유약·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2072010	건조한 상태의 법랑 또는 유약	0	0	0	0	Kg	없음	0
32072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32073000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32073010	제 71 류 주(note) 귀금속의 열은 현탁액의 형태나 페이스트 상태의 조제품(전자산업의 도체와 저항체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2073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3207400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2080000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32081000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81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콜로디온(collodions)은 제외하고, 직물·종이·가죽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성용 글레이즈 및 조제 마감재(prepared finishing materials)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2081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3208200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82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콜로디온(collodions)은 제외하고, 직물·종이·가죽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성용 글레이즈 및 마감재(finishing materials)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2082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32089000	기타							
32089030	연필의 흑연 화합물 또는 그 밖의 착색제 생산용 과립[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스티렌 공중합체(ABS) 및 알루미늄 스타트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208905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콜로디온(collodions)은 제외하고, 직물·종이·가죽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성용 글레이즈 및 마감재(finishing materials)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208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32090000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100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	0	0	0	Kg	없음	0
32099000	기타	6	0	0	0	Kg	없음	0
3210000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족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00010	화장품과 비누 산업에서 사용되는 혼합물	0	0	0	0	Kg	없음	0
32100030	니트로소화 페인트(nitroso paint)[태양광성 흡수 개선을 위한 것으로 카널라이트(carnallite) 수염장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2100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32110000	조제 드라이어	0	0	0	0	Kg	없음	0
32120000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1000	스탬프용 박(箔)	0	0	0	0	Kg	없음	0
321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2130000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31000	세트인 것	6	0	0	0	Kg	없음	0
32139000	기타	6	0	0	0	Kg	없음	0
3214000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 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0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 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0	0	0	0	Kg	없음	0
321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2150000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1000	인쇄용 잉크							
32151100	흑색	0	0	0	0	Kg	없음	0
3215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2159000	기타	6	0	0	0	Kg	없음	0
33010000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앰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33011000	정유(essential oil)(감귤류로 한정한다)							
33011200	오렌지유	10	0	0	0	Kg	없음	0
33011300	레몬유	10	0	0	0	Kg	없음	0
3301190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33012000	정유(essential oil)(감귤류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330124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0	0	0	0	Kg	없음	0
33012500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10	0	0	0	Kg	없음	0
33012900	기타							
33012910	제라늄(geranium)·자스민(jasmine)·라벤다(lavender) 또는 라반딘(lavandin)의 것	10	0	0	0	Kg	없음	0
33012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3013000	레지노이드(resinoid)	0	0	0	0	Kg	없음	0
330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3020000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1000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8	0	0	0	Kg	없음	0
330290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3030000	향수와 화장수	0	0	0	0	Kg	없음	0
33040000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41000	입술화장용 제품류	12	0	0	0	Kg	없음	0
33042000	눈화장용 제품류	12	0	0	0	Kg	없음	0
3304300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2	0	0	0	Kg	없음	0
33049000	기타							
33049100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	0	0	0	Kg	없음	0
33049900	기타							
33049930	성형수술용 제품류(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용으로 전용되는 것으로, 수입되기전 책임자의 요건 충족을 입증한 것으로	6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한정한다)							
33049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33050000	두발용 제품류							
33051000	샴푸	12	0	0	0	Kg	없음	0
33052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12	0	0	0	Kg	없음	5
33053000	헤어 래커(hair lacquer)	12	0	0	0	Kg	없음	5
3305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33060000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61000	치약							
33061010	의치 관리용 특수 조제품	10.8	0	0	0	Kg	없음	3
33061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3062000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0	0	0	0	Kg	없음	0
33069000	기타							
33069010	의치 관리용 특수 조제품	12	0	0	0	Kg	없음	3
3306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33070000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항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71000	면도용 제품류	12	0	0	0	Kg	없음	5
33072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12	0	0	0	Kg	없음	3
3307300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12	0	0	0	Kg	없음	5
33074000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41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12	0	0	0	Kg	없음	3
330749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3079000	기타							
33079030	콘택트렌즈 관리용 특수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307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4010000	비누·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34011000	비누·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34011100	화장용(악용을 포함한다)	12	0	0	0	Kg	없음	7
340119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4012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34012010	약용비누	10.8	0	0	0	Kg	없음	0
34012020	칩(chip) 모양 · 플레이크(flake) 모양 · 낱알 모양의 것으로 중량이 25 킬로그램 초과로 포장한 것	0	0	0	0	Kg	없음	0
34012030	세척용	12	0	0	0	Kg	없음	3
34012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4013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34020000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 ·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4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1000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1100	음이온성							
34021110	라우릴 황산, 라우릴 술포산과 이들의 염	0	0	0	0	Kg	없음	0
34021120	수용성 알칼리금속의 나프텐산	0	0	0	0	Kg	없음	0
34021140	선형알킬벤젠술포산	0	0	0	0	Kg	없음	0
34021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4021200	양이온성	0	0	0	0	Kg	없음	0
34021300	비이온성	0	0	0	0	Kg	없음	0
340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4022000	소매용 조제품							
34022010	개인위생용 제품	0	0	0	0	Kg	없음	0
34022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4029000	기타							
34029020	개인위생용 제품	0	0	0	0	Kg	없음	0
34029090	기타							
34029091	산업무역부장관이 공업용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4029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34030000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 · 볼트나 너트 방출제 · 방청제 · 부식방지제 ·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1000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34031100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34031110	가죽 유연처리용 기름 또는 지방	0	0	0	0	Kg	없음	0
34031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403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4039000	기타							
34039100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34039110	가죽 유연처리용 기름 또는 지방	0	0	0	0	Kg	없음	0
34039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403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4040000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2000	폴리(옥시에틸렌)의 것	0	0	0	0	Kg	없음	0
340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4050000	신발용 · 가구용 · 마루용 · 차체 (coachwork) 용 · 유리용 · 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 ·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 · 셀룰러 플라스틱 · 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 3404 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510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4052000	목제가구 · 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4053000	차체 (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340540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 · 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40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406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Kg	없음	0
340700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 · 말굽 모양 · 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3407002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0	0	0	0	Kg	없음	0
3407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5010000	카세인(casein) · 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35011000	카세인(casein)	0	0	0	0	Kg	없음	0
35019000	기타							
35019010	카세인(casein) 또는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0	0	0	0	Kg	없음	0
35019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35020000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5021000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1100	건조한 것	0	5	50	0	Kg	없음	X
35021900	기타	10	3.25	50	0	Kg	없음	X
35022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10	0	0	0	Kg	없음	X
35029000	기타	10	0	0	0	Kg	없음	X
350300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 3501 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10	0	0	0	Kg	없음	5
3504000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3505000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100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35051020	전분							
35051021	밀 또는 옥수수를 기본 재료로 한 것(찰옥수수의 것은 제외한다)	4	0	0	0	Kg	없음	MFN- 15%
35051029	기타	6	0	0	0	Kg	없음	5
3505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5052000	글루(glue)	12	0	0	0	Kg	없음	MFN- 25%
35060000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00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0
35069000	기타							
35069100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8	0	0	0	Kg	없음	0
350699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5070000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3507100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0	0	0	0	Kg	없음	0
3507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6010000	화약	6	0	0	0	Kg	없음	0
3602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6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60300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6	0	0	0	Kg	없음	0
36040000	불꽃제품 · 신호용 조명탄 · 레인로켓(rain rocket) · 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36041000	불꽃제품							
36041010	시각 신호용의 것	0	0	0	0	Kg	없음	0
36041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36049000	기타	6	0	0	0	Kg	없음	0
360500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12	0	0	0	Kg	없음	7
36060000	폐로세름 ·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 2 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100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 액화가스연료	12	0	0	0	Kg	없음	3
3606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7010000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 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 · 판지 ·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11000	엑스선용	0	0	0	0	Sq.M eter	없음	0
37012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	0	0	0	Kg	없음	0
37013000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Sq.M eter	없음	0
37019000	기타							
37019100	천연색 사진용	0	0	0	0	Kg	없음	0
37019900	기타	0	0	0	0	Sq.M eter	없음	0
37020000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 · 판지 ·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21000	엑스선용	0	0	0	0	Sq.M eter	없음	0
37023000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7023100	천연색 사진용	0	0	0	0	Sq.M eter	없음	0
37023200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Sq.M eter	없음	0
37023900	기타	0	0	0	0	Sq.M eter	없음	0
37024000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7024100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0	0	0	0	RunM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t.		
37024200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은 제외한다)	0	0	0	0	RunM t.	없음	0
37024300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것	0	0	0	0	RunM t.	없음	0
37024400	폭이 105 밀리미터 초과 6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RunM t.	없음	0
37025000	그 밖의 필름[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37025200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RunM t.	없음	0
37025300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RunM t.	없음	0
37025400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0	0	0	0	RunM t.	없음	0
37025500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RunM t.	없음	0
37025600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RunM t.	없음	0
37029000	기타							
37029600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0	0	0	0	RunM t.	없음	0
37029700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RunM t.	없음	0
37029800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RunM t.	없음	0
37030000	사진 인화지·판지·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1000	롤 모양(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7032000	기타(천연색 사진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70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7040000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7050000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37051000	오프셋 복사용	8	0	0	0	Kg	없음	0
37059000	기타							
37059010	마이크로필름	0	0	0	0	Kg	없음	0
37059020	유리를 기본 재료로 한 마스크(glass based masks)[사진 방법(photographic method)에 따라 마이크로전자회로(micro electronic circuits) 제작용으로 특별히 고안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7059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7060000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61000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3706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7070000	사진용 화학조제품 [바니시(vernish) · 글루(glue) · 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7071000	감광유제	0	0	0	0	Kg	없음	0
3707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010000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 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페이스트(paste) · 블록 · 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1000	인조흑연	0	0	0	0	Kg	없음	0
3801200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0	0	0	0	Kg	없음	0
38013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8	0	0	0	Kg	없음	0
380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020000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21000	활성탄	0	0	0	0	Kg	없음	0
380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03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38040000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 3803 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38050000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 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종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51000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 황산테레빈유	0	0	0	0	Kg	없음	0
380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060000	로진(rosin) · 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38061000	로진(rosin)과 수지산	0	0	0	0	Kg	없음	0
38062000	로진염, 수지산염, 로진(rosin) ·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38063000	에스테르 검(ester gum)	0	0	0	0	Kg	없음	0
3806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0700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38080000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5000	이 류의 소호주 제 1호의 물품							
38085010	농업에 사용되는 것(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임을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8085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38089000	기타							
38089100	살충제							
38089110	농업에 사용되는 것(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임을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8089120	산화구리와 그 염·크로뮴 비소를 함유한 조제품 [활성산화물의 함유량이 100 분의 70 을 초과하며, 목재 기둥과 빔(beams)을 보호하기 위한 살충제 또는 살균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80891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8089200	살균제							
38089210	농업에 사용되는 것(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임을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8089220	산화구리와 그 염·크로뮴 비소를 함유한 조제품 [활성산화물의 함유량이 100 분의 70 을 초과하며, 목재 기둥과 빔(beams)을 보호하기 위한 살충제 또는 살균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80892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8089300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38089310	농업에 사용되는 것(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임을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80893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38089400	소독제							
38089410	농업에 사용되는 것(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임을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80894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38089900	기타							
38089910	농업에 사용되는 것(농업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임을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8089920	산화구리와 그 염·크로뮴 비소를 함유한 조제품 [활성산화물의 함유량이 100 분의 70 을 초과하며, 목재 기둥과 빔(beams)을 보호하기 위한 살충제 또는 살균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8089930	다공질(多孔質) 물질을 흡수시킨 액상 시안화수소산	0	0	0	0	Kg	없음	0
38089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8090000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100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Kg	없음	0
38099000	기타							
38099100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38099200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380993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381000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뿔질용·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땜용·뿔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뿔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0	0	0	0	Kg	없음	0
3810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110000	안티녹(anti- 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38111000	안티녹(anti-knock)제							
38111100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10.8	0	0	0	Kg	없음	0
381119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8112000	윤활유 첨가제							
38112100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12	0	0	0	Kg	없음	3
381129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811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812000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고무용 ·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100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0	0	0	0	Kg	없음	0
38122000	고무용 ·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0	0	0	0	Kg	없음	0
38123000	고무용 ·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0	0	0	0	Kg	없음	0
38130000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12	0	0	0	Kg	없음	3
381400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 · 바니시(vernish) 제거제							
38140010	비환식탄화수소의 퍼할로겐화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38140011	불소와 염소 할로겐만을 함유한 것	0	0	0	0	Kg	없음	0
381400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14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150000	반응시작제 · 반응촉진제 · 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51000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1100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0	0	0	0	Kg	없음	0
38151200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0	0	0	0	Kg	없음	0
3815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1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160000	내화시멘트 · 내화모르타르 · 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 3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8	0	0	0	Kg	없음	0
3817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 · 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38180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 · 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0	0	0	0	Kg	없음	0
381900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8190020	초음속 항공기용 특수 유압액	0	0	0	0	Kg	없음	0
3819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200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방액	12	0	0	0	Kg	없음	3
3821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식물 · 인간 ·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0	0	0	0	Kg	없음	0
38220000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002 호 ·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보증된 참조물질							
38220010	보증된 참조물질	0	0	0	0	Kg	없음	0
3822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230000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31000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38231100	스테아르산	0	0	0	0	Kg	없음	0
38231200	올레인산	0	0	0	0	Kg	없음	0
38231300	톨유(tall oil) 지방산	0	0	0	0	Kg	없음	0
3823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23700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0	0	0	0	Kg	없음	0
38240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약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1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824300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8244000	시멘트용 · 모르타르용 ·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0	0	0	0	Kg	없음	0
38245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0	0	0	0	Kg	없음	0
3824600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 2905.4400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38247000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38247100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 과불화탄소(P FCs) ·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382472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382473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382474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82475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382476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38247700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38247800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							
38247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248000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혼합물과 조제품							
382481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0	0	0	0	Kg	없음	0
382482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382483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0	0	0	0	Kg	없음	0
38249000	기타							
38249010	액상 클로로파라핀(chloroparaffins)	0	0	0	0	Kg	없음	0
38249020	액상 폴리클로로디페닐(polychlorodiphenyls)	0	0	0	0	Kg	없음	0
38249030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s) 혼합물	0	0	0	0	Kg	없음	0
38249040	주류와 그 밖의 발효음료의 청징(淸澄)(clarifying)용으로 사용하는 조제품	0	0	0	0	Kg	없음	0
38249050	니켈염·카드뮴염 또는 시안화물을 기본 재료로 한 도금용 보조 재료, 또는 질소와 방향족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함유한 유기화합물	0	0	0	0	Kg	없음	0
38249060	디페닐 옥사이드 및 디페닐의 등방성 혼합물(디페닐 옥사이드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1 부터 100분의 75 까지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824907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0	0	0	0	Kg	없음	0
38249080	산화납과 납의 가루 혼합물[산화납이 함유량이 100분의 65 이상 100분의 80 이하인 것으로 전지 판(plates)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824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250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 6 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51000	생활폐기물	0	0	0	0	Kg	없음	0
38252000	하수 찌꺼기	0	0	0	0	Kg	없음	0
38253000	감염성 폐기물	0	0	0	0	Kg	없음	0
38254000	폐유기용제							
382541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12	0	0	0	Kg	없음	3
3825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255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38255010	금속플레이트용 세정액 폐기물	0	0	0	0	Kg	없음	0
38255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8256000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폐기물							
382561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38256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2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8260000	바이오디젤 및 그 혼합물(석유 및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총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000 Liter	없음	0
39010000	에틸렌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1000	폴리에틸렌 (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012000	폴리에틸렌 (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013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0	0	0	0	Kg	없음	0
390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0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1000	폴리프로필렌	0	0	0	0	Kg	없음	0
39022000	폴리이소부틸렌	0	0	0	0	Kg	없음	0
39023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0	0	0	0	Kg	없음	0
390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030000	스티렌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1000	폴리스티렌							
39031100	발포성의 것	0	0	0	0	Kg	없음	0
3903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032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SAN)	0	0	0	0	Kg	없음	0
39033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ABS)	0	0	0	0	Kg	없음	0
390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04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1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042000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							
390421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39042120	도포 재료	0	0	0	0	Kg	없음	0
39042140	조제 마감재	0	0	0	0	Kg	없음	0
39042190	기타							
39042191	산업무역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390421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042200	가소화한 것							
39042220	도포 재료	0	0	0	0	Kg	없음	0
39042240	조제 마감재	0	0	0	0	Kg	없음	0
39042290	기타							
39042291	산업무역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임을 승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90422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043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0	0	0	0	Kg	없음	0
3904400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0	0	0	0	Kg	없음	0
39045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0	0	0	0	Kg	없음	0
39046000	플루오르 중합체							
390461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0	0	0	0	Kg	없음	0
39046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0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050000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51000	폴리(초산비닐)							
39051200	물에 분산된 것							
39051220	도포 재료	0	0	0	0	Kg	없음	0
39051230	조제 마감재	0	0	0	0	Kg	없음	0
390512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051900	기타							
39051920	도포 재료	0	0	0	0	Kg	없음	0
39051930	조제 마감재	0	0	0	0	Kg	없음	0
390519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052000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100	물에 분산된 것							
39052120	도포 재료	0	0	0	0	Kg	없음	0
39052130	조제 마감재	0	0	0	0	Kg	없음	0
39052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05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053000	폴리(비닐알코올) [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39059000	기타							
39059100	공중합체(共重合體)							
39059120	도포 재료	0	0	0	0	Kg	없음	0
39059130	조제 마감재	0	0	0	0	Kg	없음	0
39059140	에틸렌과 비닐알코올(EVOH)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059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059900	기타							
39059920	도포 재료	0	0	0	0	Kg	없음	0
39059930	조제 마감재	0	0	0	0	Kg	없음	0
390599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060000	아크릴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1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0	0	0	0	Kg	없음	0
39069000	기타							
39069010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아크릴로니트릴의 함유량이 100 분의 85 이상 100 분의 9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069020	비이온성 합성 유기 잉크제 (분자량이 450 만에서 600 만인 것으로 광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069030	메틸 메타크리레이트와 스티렌의 공중합체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9069040	도포 재료	0	0	0	0	Kg	없음	0
39069050	조제 마감재	0	0	0	0	Kg	없음	0
39069060	기타(고체 상태인 것)	0	0	0	0	Kg	없음	0
39069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070000	폴리아세탈수지 · 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에스 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1000	폴리아세탈수지	0	0	0	0	Kg	없음	0
39072000	그 밖의 폴리에테르	0	0	0	0	Kg	없음	0
39073000	에폭시수지	0	0	0	0	Kg	없음	0
39074000	폴리카보네이트	0	0	0	0	Kg	없음	0
39075000	알키드수지	0	0	0	0	Kg	없음	0
39076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0	0	0	0	Kg	없음	0
39077000	폴리(락트산)	0	0	0	0	Kg	없음	0
39079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39079100	불포화의 것	0	0	0	0	Kg	없음	0
3907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080000	폴리아미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1000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 6,10 또는 -6,12	0	0	0	0	Kg	없음	0
3908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090000	아미노수지 · 페놀수지 · 폴리우레탄 [일차제 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1000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	0	0	0	0	Kg	없음	0
39092000	멜라민수지	0	0	0	0	Kg	없음	0
39093000	그 밖의 아미노수지	0	0	0	0	Kg	없음	0
39094000	페놀수지	0	0	0	0	Kg	없음	0
39095000	폴리우레탄	0	0	0	0	Kg	없음	0
39100000	실리콘수지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110000	석유수지 · 쿠마론- 인덴수지 · 폴리테르펜 · 폴리술폰파이드 · 폴리 술폰과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그 밖의 물품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11000	석유수지 · 쿠마론 · 인덴 · 쿠마론- 인덴수지 · 폴리테르펜	0	0	0	0	Kg	없음	0
391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120000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21000	초산셀룰로오스							
391211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39121200	가소화한 것	0	0	0	0	Kg	없음	0
39122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39123000	셀룰로오스 에테르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91231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0	0	0	0	Kg	없음	0
3912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1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130000	천연중합체 (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 (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1000	알긴산과 그 염·에스테르	0	0	0	0	Kg	없음	0
391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140000	이온교환수지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150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3915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10	0	0	0	Kg	없음	0
39152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10	0	0	0	Kg	없음	0
39153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10	0	0	0	Kg	없음	0
39159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0	0	0	0	Kg	없음	0
39160000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6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16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169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170000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 e)]							
39171000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0	0	0	0	Kg	없음	0
39172000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							
391721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72110	에틸렌 중합체로 도포한 철강으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0
39172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1722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72210	프로필렌 중합체로 도포한 철강으로 만든 것	5.4	0	0	0	Kg	없음	0
391722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1723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72310	염화비닐 중합체로 도포한 철강으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0
391723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1729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17291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9172930	아크릴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172960	플라스틱 재료로 도포한 철강으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0
391729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173000	그 밖의 관 · 파이프 · 호스							
39173100	연질(軟質)의 관 · 파이프 · 호스 [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3917311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173130	아크릴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173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173200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7321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173230	아크릴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1732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173300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7331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173330	아크릴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1733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17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174000	연결구류							
3917401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174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18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 9 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81000	영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12	0	0	0	Kg	없음	3
39189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18903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으로 만든 것	9	0	0	0	Kg	없음	0
39189090	기타							
39189092	두께가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제 3912 호의 재료로 만든 것[발포 재료(foam material)로 구성되거나 발포 재료(foam material)를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3918909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919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 시트(sheet) · 필름 · 박(箔) · 테이프 · 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3919102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191040	기타(별도의 층이 없고 접착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9191041	철강 관(管)의 포장용으로 특별히 고안한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0 그램 초과하고, 접착성 재료가 부틸고무와 수지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191042	접착성 폴리프로필렌의 것[일회용의 유아용 법킨(기저귀)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면에 인쇄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191049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191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199000	기타							
39199020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199030	폴리싱(polishing)용 패드·오볼·스티키(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199060	기타(별도의 층이 없고 접착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9199061	철강 관(管)의 포장용으로 특별히 고안한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0 그램 초과하고, 접착성 재료가 부틸고무와 수지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199062	접착성 폴리프로필렌의 것[일회용의 유아용 법킨(기저귀)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면에 인쇄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199069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199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 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392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3920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39204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4300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8	0	0	0	Kg	없음	0
392049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205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392051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39205110	고형 표면의 아크릴 판(두께가 6 밀리미터에서 12 밀리미터의 것으로 산화알루미늄을 기본 재료로 한 충전물의 함유량이 100 분의 3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205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205900	기타							
39205910	아크릴 공중합체 시트(sheet)(두께가 100 마이크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2059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206000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92061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392062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39206210	두께가 최대 0.18 밀리미터까지인 것	0	0	0	0	Kg	없음	0
392062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2063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392069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207000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92071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392073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207900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209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0910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2092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20930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39209400	페놀수지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392099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0994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2099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2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1000	셀룰러							
39211100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21120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2113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2114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2119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392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3922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1000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대							
39221010	목욕통·샤워 트레이(shower tray)·설거지통·세면대(영구설치용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39221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922200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12	0	0	0	Kg	없음	3
39229000	기타							
39229010	변기(화학적 처리용 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229020	싱크대(sink stand)·화장실용 팬·비데(영구설치용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3922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923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0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10	자기식 매체용의 카트리지가나 카세트의 포장용의 특수 상자(오디오 레코더에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전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39231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9232000	포장대 [콘(cone)을 포함한다]							
392321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39232110	화학 살균용	0	0	0	0	Kg	없음	0
392321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92329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32910	화학 살균용	0	0	0	0	Kg	없음	0
39232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9233000	카보이(carboy) · 병 · 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39233010	캔[에어로졸 스프레이(aerosol spray) 시스템용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39233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9234000	스풀(spool) · 콕(cop) · 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4010	자기식 매체용 카세트 · 카트리지	0	0	0	0	Kg	없음	0
39234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9235000	뚜껑 · 마개 ·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0	0	Kg	없음	3
39239000	기타							
39239010	화학 살균용	0	0	0	0	Kg	없음	0
3923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924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위생용품 · 화장용품							
39241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12	0	0	0	Kg	없음	0
3924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925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51000	저장기 · 탱크 · 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252000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0	0	0	0	Kg	없음	0
39253000	셔터 ·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39259000	기타							
39259010	유리섬유를 도포한 저장기 및 수영장	10.8	0	0	0	Kg	없음	0
3925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3926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 호부터 제 3914 호까지의 그 밖의 물품의 제품							
39261000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12	0	0	0	Kg	없음	0
39262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39262010	검사용 장갑	0	0	0	0	Kg	없음	0
39262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39263000	가구 · 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39263010	모터 차량용의 것[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12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포크리프트(forklifts) ·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은 제외한다](반사 장치도 제외한다)							
39263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264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12	0	0	0	Kg	없음	0
39269000	기타							
39269010	양면에 구멍을 뚫은 리본 또는 판(직물용 기계의 제어 기기의 것으로 한정한다), 원통형 슬리브(sleeve)[합성 방적용으로 특별히 직물 기계에 스푼(spool)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적용 캔(can)(방직사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39269020	수공구(개별 중량이 5그램 이하이고, 커넥터 핀 조립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도로용 스티드(road-stud)[반사장치(cat's eye)를 포함한다], 얼굴 보호기(face guards)	0	0	0	0	Kg	없음	0
39269030	신발의 골	8	0	0	0	Kg	없음	0
39269040	앨범과 앨범 페이지	12	0	0	0	Kg	없음	3
3926905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구멍용품(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 제 4202 호의 여행용품 및 그 밖의 물품의 것							
39269051	구멍용품(수영용)	12	0	0	0	Kg	없음	3
3926905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39269060	실험실용 제품 · 내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전용 제품	0	0	0	0	Kg	없음	0
39269070	비강광성(non-sensitised) 타공필름(perforated film) · 연질(軟質)의 중공(中空) 실린더(도로 안전용으로 한정한다) · 수편침	6	0	0	0	Kg	없음	0
3926908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 ·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은 제외한다](반사 장치도 제외한다)							
39269081	차륜 보호용 장치[안전차륜(run flat)]	0	0	0	0	Kg	없음	0
39269082	미끄럼방지 체인	0	0	0	0	Kg	없음	0
39269089	기타	8	0	0	0	Kg	없음	0
3926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40010000	천연고무 · 발라타(balata) · 구타페르카(gut ta- percha) · 구아울(guayule) · 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1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 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40012000	천연고무(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2100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0	0	0	0	Kg	없음	0
400122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0	0	0	Kg	없음	0
4001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40013000	발라타(balata) · 구타페르카(gutta-percha) · 구아울(guayule) · 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0	0	0	0	Kg	없음	0
40020000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1000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1100	라텍스	0	0	0	0	Kg	없음	0
400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0022000	부타디엔 고무(BR)	0	0	0	0	Kg	없음	0
40023000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 · 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 이나 BIIR)							
40023100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0	0	0	0	Kg	없음	0
4002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0024000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4100	라텍스	0	0	0	0	Kg	없음	0
4002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0025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40025100	라텍스	0	0	0	0	Kg	없음	0
40025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0026000	이소프렌 고무(IR)	0	0	0	0	Kg	없음	0
4002700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0	0	0	0	Kg	없음	0
40028000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0	0	0	0	Kg	없음	0
40029000	기타							
40029100	라텍스	0	0	0	0	Kg	없음	0
4002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003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004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 ·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0	0	0	0	Kg	없음	0
40050000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51000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4005200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 4005.100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40059000	기타							
400591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0	0	0	0	Kg	없음	0
4005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0060000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막대(rod) · 관 · 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 · 링)							
4006100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 back)” 스트립	7.2	0	0	0	Kg	없음	0
4006900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40070000	가황한 고무로 만든 고무실과 고무끈	0	0	0	0	Kg	없음	0
40080000	고무로 만든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막대(rod) · 형재 (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4008100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00811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40081110	특별하게 고안된 것, 그리고, 전용(專用)하거나 주로 특정종류의 기계나 기구와 함께 사용되는 것(제 16 부 또는 제 18 부 중 제 90 류 상의 호에 분류되는 기계나 기구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00811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4008190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40082000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							
400821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40082110	특별하게 고안된 것, 그리고, 전용(專用)하거나 주로 특정종류의 기계나 기구와 함께 사용되는 것(제 16 부 또는 제 18 부 중 제 90 류 상의 호에 분류되는 기계나 기구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00821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4008290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40090000	고무로 만든 관 · 파이프 · 호스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 · 엘보(elbow) · 플랜지(flang 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091000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400911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00911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 · 면세 트랙터용인 것]	12	0	0	0	Kg	없음	3
40091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0912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00912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 · 면세 트랙터용인 것]	12	0	0	0	Kg	없음	3
400912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092000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21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00921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 · 면세 트랙터용인 것]	12	0	0	0	Kg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40092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0922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00922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면세 트랙터용인 것]	12	0	0	0	Kg	없음	3
400922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093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31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00931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면세 트랙터용인 것]	12	0	0	0	Kg	없음	3
40093190	기타	7.2	0	0	0	Kg	없음	0
400932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00932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면세 트랙터용인 것]	12	0	0	0	Kg	없음	3
400932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094000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41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00941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면세 트랙터용인 것]	12	0	0	0	Kg	없음	3
40094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0942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00942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면세 트랙터용인 것]	12	0	0	0	Kg	없음	3
400942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10000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0101000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							
40101100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8	0	0	0	Kg	없음	0
401012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8	0	0	0	Kg	없음	0
401019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103000	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							
401031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010313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은 제외한다]	8	0	0	0	Kg	없음	0
40103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1032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010323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면세 트랙터용인 것]	8	0	0	0	Kg	없음	0
401032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103300	휠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40103400	휠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0	0	0	Kg	없음	0
401035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01035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은 제외한다]	8	0	0	0	Kg	없음	0
401035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1036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 초과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0	0	Kg	없음	0
401039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110000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1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40112000	버스용·화물차용	0	0	0	0	개별	없음	0
40113000	항공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40114000	모터사이클용	0	0	0	0	개별	없음	0
40115000	자전거용	0	0	0	0	개별	없음	0
40116000	기타(헤링본 또는 유사한 모양의 트레드를 가진 것)							
40116100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0116110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401161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40116200	건설용·산업용 차량 및 기계용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40116300	건설용·산업용 차량 및 기계용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12	0	0	0	개별	없음	0
40116900	기타							
40116910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401169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40119000	기타							
40119200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0119210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401192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40119300	건설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40119400	건설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0	0	0	개별	없음	0
4011990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40119910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401199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40120000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타이어 플랩(flap)							
40121000	재생타이어							
401211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40121200	버스용·화물차용	0	0	0	0	개별	없음	0
40121300	항공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4012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40122000	중고 공기타이어	0	0	0	0	개별	없음	0
4012900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40130000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1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버스용, 로리용	0	0	0	0	개별	없음	0
40132000	자전거용	0	0	0	0	개별	없음	0
4013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40140000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젓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41000	콘돔	0	0	0	0	Kg	없음	0
40149000	기타							
40149010	의료용, 치과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용품(뜨거운 물을 담는 물병용은 제외한다)	6	0	0	0	Kg	없음	0
4014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40150000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방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40151000	장갑, 방어리장갑							
40151100	외과용	0	0	0	0	Pair	없음	0
40151900	기타	0	0	0	0	Pair	없음	0
4015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40160000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100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0161010	제 16 부 또는 제 90 류에 분류되는 기기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또는 전기식 기기에 전용(專用)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품 및 부속품							
40161011	인쇄 또는 완성가공 기계에 사용되는 고무 코팅된 금속 롤러	8	0	0	0	Kg	없음	0
40161012	제 9018 호에 특개된 주사기용	5.4	0	0	0	Kg	없음	0
40161013	관세 면제(免除)품	0	0	0	0	Kg	없음	0
40161019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161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면세 트랙터용인 것]							
40161021	전면 현가장치(front suspension)에 사용되는 브레이크(brake) 또는 조종(steering)장치용, 등속조인트(homokinetic)에 사용되는 드라이브 샤프트용,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s)용	6	0	0	0	Kg	없음	0
40161022	흡반이	6	0	0	0	개별	없음	0
4016102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40161030	실링(sealing)용	8	0	0	0	Kg	없음	0
40161050	제 6306 호의 방직용섬유재로 만든 차양막(sunshades)·어닝(awning)·텐트 및 이와 유사한 캠핑 용품	12	0	0	0	Kg	없음	3
40161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40169000	기타							
40169100	바닥깔개와 매트	12	0	0	0	Kg	없음	3
40169200	지우개	10	0	0	0	Kg	없음	0
40169300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40169310	600 밀리미터 이상의 직경을 가진 내부 철재링으로 강화된 가스켓							
4016931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면세 트랙터용인 것]	0	0	0	0	Kg	없음	0
401693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40169390	기타							
4016939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면세 트랙터용인 것]	8	0	0	0	Kg	없음	0
401693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169400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40169500	그 밖의 팽창성 제품							
40169510	타이어 생산에 특화된 제혁업자	0	0	0	0	Kg	없음	0
401695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40169900	기타							
40169910	제 16 부 또는 제 90 류에 분류되는 장치, 기계, 기기 또는 전기식 기기와 전용(專用)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품 및 부속품							
40169911	인쇄용 기계에 사용되는 고무 코팅된 금속 롤러	8	0	0	0	Kg	없음	0
40169912	제 9018 호에 특개된 주사기용	6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40169913	관세 면제(免除)품	0	0	0	0	Kg	없음	0
401699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401699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s)·면세 트랙터용인 것]							
40169921	전면 현가장치(front suspension)에 사용되는 브레이크(brake) 또는 조향(steering)장치용, 등속조인트(homokinetic)에 사용되는 드라이브 샤프트용,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s)용	6	0	0	0	Kg	없음	0
40169922	흡반이	6	0	0	0	개별	없음	0
40169923	차륜 보호용 장치[안전차륜(run flat)]	0	0	0	0	Kg	없음	0
4016992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40169930	몰드(용적이 750 갤런 이상인 연질의 연료저장 탱크용으로 한정한다)							
40169931	몰드	8	0	0	0	Kg	없음	0
40169939	기타	0	0	0	0	Kg	없음	0
40169940	탭, 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개별 순중량이 1,5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수동 개폐방식과 세번 40169920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6	0	0	0	Kg	없음	0
40169960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공(中空)을 가진 원추모양의 것으로, 교통국의 승인을 받고 수입된 것	0	0	0	0	Kg	없음	0
40169970	내과·치과 또는 수의과용의 것	0	0	0	0	Kg	없음	0
401699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0170000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0	0	0	0	Kg	없음	0
41010000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1012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1015000	전신 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1019000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벨리(belly)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41020000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21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41022000	털을 제거한 것							
41022100	산처리한 것	0	0	0	0	Kg	없음	0
4102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1030000	그 밖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32000	파충류의 원피	0	0	0	0	Kg	없음	0
41033000	돼지의 원피	0	0	0	0	Kg	없음	0
410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1040000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41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411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0	0	0	Kg	없음	0
4104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1044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41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0	0	0	Kg	없음	0
4104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1050000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1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41053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0	0	0	Kg	없음	0
41060000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62000	산양의 원피							
410621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410622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0	0	0	Kg	없음	0
41063000	돼지의 원피							
410631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410632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0	0	0	Kg	없음	0
41064000	파충류의 원피	0	0	0	0	Kg	없음	0
41069000	기타							
410691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410692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0	0	0	Kg	없음	0
41070000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071000	전신 가죽							
410711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0	0	0	0	Kg	없음	0
410712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0	0	0	Kg	없음	0
4107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1079000	기타(반신의 가죽을 포함한다)							
410791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0	0	0	0	Kg	없음	0
410792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0	0	0	Kg	없음	0
4107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1120000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41130000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1000	산양의 원피	0	0	0	0	Kg	없음	0
41132000	돼지의 가죽	0	0	0	0	Kg	없음	0
41133000	파충류의 가죽	0	0	0	0	Kg	없음	0
411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1140000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1141000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4114200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1150000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성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패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1151000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성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1152000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패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0	0	0	0	Kg	없음	0
420100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10	0	0	0	개별	없음	0
42020000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zek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000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zek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00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42021200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4202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42022000	핸드백 (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00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42022200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시트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4202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42023000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42023100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42023200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시트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42023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42029000	기타							
42029100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42029200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시트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42029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4203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31000	의류	12	0	0	0	개별	없음	3
42032000	장갑, 병어리장갑							
42032100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10	0	0	0	Pair	없음	0
42032900	기타							
42032910	공업 또는 경공업 노동자의 보호와 안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12	0	0	0	Pair	없음	3
42032990	기타	10	0	0	0.43	Pair	없음	0
42033000	벨트와 띠							
42033010	벨트	10	0	0	0.19	개별	없음	0
42033090	띠	12	0	0	0	개별	없음	5
4203400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12	0	0	0	개별	없음	3
420500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							
42050010	컨베이어용 · 전동(transmission)용 또는 리프팅용 벨트	6	0	0	0	개별	없음	0
42050020	개스킷(gasket) · 오일리테이너(oil retainers) · 그리스 실(grease seal)							
42050021	자동차용	12	0	0	0	개별	없음	3
4205002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42050030	기타(기기 또는 기술적 용도의 것으로 한정한다)							
42050031	관세를 면제받은 기계 또는 기계용	0	0	0	0	개별	없음	0
4205003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420500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420600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 ·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 · 방광 · 건(腱)의 제품	0	0	0	0	개별	없음	0
43010000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 4101 호 · 제 4102 호 · 제 4103 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43011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43013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Caracul) ·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 · 중국 · 몽고 ·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43016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43018000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43019000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0	0	0	0	Kg	없음	0
43020000	모피(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30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3021000	전신 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021100	밍크의 것	0	0	0	0	Kg	없음	0
430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3022000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302300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3030000	모피의류 · 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4303100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43031010	부상 압박치료 및 부상방지용	0	0	0	0	Kg	없음	0
43031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43039000	기타							
43039010	부상 압박치료 및 부상방지용	0	0	0	0	Kg	없음	0
43039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430400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12	0	0	0	Kg	없음	3
44010000	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11000	멜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4012000	침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44012100	침엽수류	0	0	0	0	Kg	없음	0
44012200	활엽수류	0	0	0	0	Kg	없음	0
44013000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13100	목재 펠릿(pellet)	0	0	0	0	Kg	없음	0
4401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4020000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1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40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4030000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31000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0	0	0	0	Cub. Mt.	없음	0
44032000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0	0	0	0	Cub. Mt.	없음	0
44034000	기타(제 44 류 소호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							
440341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0	0	0	Cub. Mt.	없음	0
44034900	기타	0	0	0	0	Cub. Mt.	없음	0
44039000	기타							
440391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0	0	0	0	Cub. Mt.	없음	0
440392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0	0	0	0	Cub. Mt.	없음	0
44039900	기타	0	0	0	0	Cub. Mt.	없음	0
44040000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뽕죽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휨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41000	침엽수류	0	0	0	0	Kg	없음	0
44042000	활엽수류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44050000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0	0	0	0	Kg	없음	0
44060000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44061000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0	0	0	0	Cub. Mt.	없음	0
44069000	기타	0	0	0	0	Cub. Mt.	없음	0
44070000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71000	침엽수류	0	0	0	0	Cub. Mt.	없음	0
44072000	제 44 류 소호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							
440721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0	0	0	0	Cub. Mt.	없음	0
44072200	비롤라(Virola)·임부아(Imbua)·발사(Balsa)	0	0	0	0	Cub. Mt.	없음	0
440725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0	0	0	Cub. Mt.	없음	0
440726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0	0	0	0	Cub. Mt.	없음	0
44072700	사펠리(Sapelli)	0	0	0	0	Cub. Mt.	없음	0
44072800	이로코(Iroko)	0	0	0	0	Cub. Mt.	없음	0
44072900	기타	0	0	0	0	Cub. Mt.	없음	0
44079000	기타							
440791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0	0	0	0	Cub. Mt.	없음	0
440792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0	0	0	0	Cub. Mt.	없음	0
44079300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0	0	0	0	Cub. Mt.	없음	0
44079400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0	0	0	0	Cub. Mt.	없음	0
440795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0	0	0	0	Cub. Mt.	없음	0
44079900	기타	0	0	0	0	Cub. Mt.	없음	0
44080000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 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1000	침엽수류	0	0	0	0	Kg	없음	0
44083000	제 44 류 소호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							
440831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0	0	0	Kg	없음	0
4408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408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4090000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홀가공·은축이음가공·경사 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 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 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91000	침엽수류	0	0	0	0	Kg	없음	0
44092000	활엽수류							
440921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409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4100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44101000	목재로 만든 것							
441011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0	0	0	0	Cub. Mt.	없음	0
44101200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0	0	0	0	Cub. Mt.	없음	0
44101900	기타	0	0	0	0	Cub. Mt.	없음	0
44109000	기타	0	0	0	0	Cub. Mt.	없음	0
44110000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111000	중밀도 섬유판(MDF)							
44111200	두께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Cub. Mt.	없음	0
441113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 9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Cub. Mt.	없음	0
44111400	두께가 9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Cub. Mt.	없음	0
44119000	기타							
44119200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Cub. Mt.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44119300	말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Cub. Mt.	없음	0
44119400	말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Cub. Mt.	없음	0
44120000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1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Cub. Mt.	없음	0
44123000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0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4123110	도포된 것	0	0	0	0	Cub. Mt.	없음	0
44123190	기타	0	0	0	0	Cub. Mt.	없음	0
441232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	0	0	0	0	Kg	없음	0
44123900	기타							
44123910	도포된 것	0	0	0	0	Cub. Mt.	없음	0
44123990	기타	0	0	0	0	Cub. Mt.	없음	0
44129000	기타							
44129400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0	0	0	0	Kg	없음	0
44129900	기타	0	0	0	0	Cub. Mt.	없음	0
4413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414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0	0	0	0	Kg	없음	0
44150000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팔렛(pallet), 박스팔렛(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렛칼러(pallet collar)							
44151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0	0	0	0	Kg	없음	0
44152000	팔렛(pallet)·박스팔렛(box pallet)·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렛칼러(pallet collar)	0	0	0	0	Tons	없음	0
44160000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텀(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44170000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44170010	나무로 만든 신발 골(lasts) 제작용 가위로서 반제품 형태로 수입된 것	0	0	0	0	Kg	없음	0
44170020	나무로 만든 신발 골(lasts)	0	0	0	0	Pair	없음	0
4417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4180000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81000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0	0	0	0	Kg	없음	0
44182000	문·문틀·문지방	0	0	0	0	Kg	없음	0
44184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0	0	0	0	Kg	없음	0
44185000	지붕을 이는 판자	10.8	0	0	0	Kg	없음	0
44186000	기둥과 들보	0	0	0	0	Kg	없음	0
44187000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7100	모자이크 바닥용	0	0	0	0	Kg	없음	0
44187200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4187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4189000	기타							
44189010	목재 셀룰로오스로 만든 시트	0	0	0	0	Kg	없음	0
44189020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0	0	0	Kg	없음	0
4418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4190000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0	0	0	0	Kg	없음	0
44200000	마르케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44201000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0	0	0	0	Kg	없음	0
4420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4210000	그 밖의 목제품							
44211000	옷걸이	0	0	0	0	Kg	없음	0
44219000	기타							
44219010	의류용 걸이(pegs)	0	0	0	0	Kg	없음	0
44219030	조각된 목재로 만들어진 스폴·콥·보빈·재봉용 서포트(support)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Kg	없음	0
44219050	노(oars)	0	0	0	0	Kg	없음	0
4421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501000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							
4501100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9	0	0	0	Kg	없음	0
450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4502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감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45030000	천연 코르크(cork) 제품							
45031000	마개	0	0	0	0	Kg	없음	0
450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5040000	응집 코르크(cork)(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집 코르크(cork)의 제품							
45041000	블록·판·시트(sheet)·스트립(strip)·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450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6010000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46012000	매트류와 발(식물성 재료로 한정한다)							
460121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60122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601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6019000	기타							
460192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60193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6019400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601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6020000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 4601 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46021000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60211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60212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60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60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7010000	기계목재펠프	0	0	0	0	Kg	없음	0
47020000	화학목재펠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7030000	화학목재펠프(소다펠프나 황산펠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31000	표백하지 않은 것							
470311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70319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4703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321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70329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7040000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41000	표백하지 않은 것							
470411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70419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704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421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70429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7050000	반화학목재펄프	0	0	0	0	Kg	없음	0
4706000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6100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0	0	0	0	Kg	없음	0
4706200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펄프	0	0	0	0	Kg	없음	0
47063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7069000	기타							
47069100	기계펄프	0	0	0	0	Kg	없음	0
47069200	화학펄프	0	0	0	0	Kg	없음	0
47069300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조합으로 생산된 것	0	0	0	0	Kg	없음	0
4707000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710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47072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707300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0	0	0	Kg	없음	0
4707900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480100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8020000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 4801 호와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8021000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0	0	0	0	Kg	없음	0
48022000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지와 판지	0	0	0	0	Kg	없음	0
48024000	벽지용 원지(原紙)	6	0	0	0	Kg	없음	0
48025000	그 밖의 종지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 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254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48025500	롤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8025510	성서용 종이(Bible paper)인 백색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60 그램을 초과하고 불투명도가 100 분의 9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8025520	목재 섬유(펄프)가 포함되지 않은(groundwood free) 흰색종이(폭 60 센티미터 이상의 롤에 중량이 1 제곱미터당 최대 60 그램인 것)	0	0	0	0	Kg	없음	0
48025530	제탄(製炭, charcoaling)용 원지(base paper)	0	0	0	0	Kg	없음	0
480255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8025600	시트(sheet) 모양인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번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48025610	목재 섬유(펄프)가 없는(groundwood free) 흰색 종이[1 제곱미터당 중량이 60 그램 이하이고, 콕스(cobb mehod) 수분 흡수성이 1 제곱미터당 11 부터 22 그램이고, 63 에서 100 분의 90 의 불투명도를 가지며, 폭이 151 센티미터 이상이고 내경이 120 부터 153 밀리미터까지인 롤 모양인 것]	0	0	0	0	Kg	없음	0
48025620	제탄(製炭, charcoaling)용 원지(base paper)	0	0	0	0	Kg	없음	0
480256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8025700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25710	성서용 종이(Bible paper)인 백색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60 그램을 초과하고 불투명도가 100 분의 9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8025720	목재 섬유(펄프)가 없는(groundwood free) 흰색 종이[1 제곱미터당 중량이 60 그램 이하이고, 콕스(cobb mehod)수분 흡수성이 1 제곱미터당 11 부터 22 그램까지이고, 63 에서 100 분의 90 의 불투명도를 가지며, 폭이 151 센티미터 이상이고 내경이 120 부터 153 밀리미터까지인 롤 모양인 것]	0	0	0	0	Kg	없음	0
48025730	제탄(製炭, charcoaling)용 원지(base paper)	0	0	0	0	Kg	없음	0
480257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480258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인 것	6	0	0	0	Kg	없음	0
48026000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 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026100	롤 모양인 것	0	0	0	0	Kg	없음	0
48026200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0	0	0	Kg	없음	0
48026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8030000	화장지·안면용 티슈스톡, 타월·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30050	표면에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제 49 류의 인쇄물이 아닌 것),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또는 주름진(creped) 것	12	0	0	0	Kg	없음	0
48030060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상인 것으로, 여러층의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48030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48040000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2 호나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41000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480411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4804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8042000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							
480421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4804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8043000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31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4804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8044000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 225 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41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48044200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4804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8045000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480451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48045200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48045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8050000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8051000	플루팅지(fluting paper)							
48051100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0	0	0	0	Kg	없음	0
48051200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0	0	0	0	Kg	없음	0
4805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8052000	테스트라이너(testliner)(재생라이너판)							
480524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480525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인 것	0	0	0	0	Kg	없음	0
48053000	아황산포장지	0	0	0	0	Kg	없음	0
48054000	여과지와 판지	0	0	0	0	Kg	없음	0
48055000	펠트지와 판지	0	0	0	0	Kg	없음	0
48059000	기타							
480591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480592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 225 그램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480593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48060000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 ng paper)·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61000	황산지	0	0	0	0	Kg	없음	0
48062000	내지지(耐脂紙)	0	0	0	0	Kg	없음	0
4806300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0	0	0	0	Kg	없음	0
48064000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0	0	0	0	Kg	없음	0
48070000	검불인 종지와 판지[접착제로 검불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6	0	0	0	Kg	없음	0
48080000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81000	물결 모양의 종지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48084000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6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48089000	기타							
48089030	글라신지(glassine paper)	0	0	0	0	Kg	없음	0
4808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48090000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92000	셀프복사지	10	0	0	0	Kg	없음	0
4809900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4810000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01000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101300	롤 모양인 것	0	0	0	0	Kg	없음	0
48101400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0	0	0	Kg	없음	0
4810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8102000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22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0	0	0	0	Kg	없음	0
48102900	기타							
48102930	그 밖의 인쇄 없이 궤선(Rule), 선(Line)이나 방안선(Square)을 그은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180 그램 이하인 것)	9	0	0	0	Kg	없음	0
4810295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이얼	0	0	0	0	Kg	없음	0
48102990	기타	7.6	0	0	0	Kg	없음	0
48103000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은 제외한다)							
48103100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으로 한정한다)							
48103200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810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8109000	그 밖의 종이와 판지							
48109200	두 겹 이상의 것	0	0	0	0	Kg	없음	0
4810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8110000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제 4809 호·제 4810 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1000	타르 종이와 판지, 역청물질 종이와 역청물질 아스팔트 처리를 한 판지, 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0	0	0	0	Kg	없음	0
48114000	접착지와 판지							
48114100	셀프접착지	12	0	0	0	Kg	없음	0
48114900	기타	4	0	0	0	Kg	없음	0
48115000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48115100	표백한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8115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811600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0	0	0	0	Kg	없음	0
48119000	그 밖의 종이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0	0	0	0	Kg	없음	0
4812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12	0	0	0	Kg	없음	0
48130000	권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813100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0	0	0	0	Kg	없음	0
4813200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0	0	0	0	Kg	없음	0
481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8140000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48142000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4814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48160000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전사지(제 48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62000	셀프복사지	0	0	0	0	Kg	없음	0
4816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8170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71000	봉투	12	0	0	0	Kg	없음	5
48172000	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카드	12	0	0	0	Kg	없음	3
48173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48180000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 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 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 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81000	화장지	12	0	0	0	Kg	없음	5
48182000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12	0	0	0	Kg	없음	7
4818300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12	0	0	0	Kg	없음	5
48185000	의류와 의류의 부속품	12	0	0	0	Kg	없음	3
4818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48190000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 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5
4819200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Kg	없음	5
4819300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12	0	0	0	Kg	없음	3
4819400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4819401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48194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8195000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48195010	화학 살균용	0	0	0	0	Kg	없음	0
48195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4819600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12	0	0	0	Kg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200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 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 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4820100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 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48201010	편지지철	12	0	0	0	Kg	없음	5
48201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48202000	연습장	12	0	0	0	개별	없음	5
4820300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서류철 표지	12	0	0	0	Kg	없음	5
48204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12	0	0	0	Kg	없음	5
4820500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12	0	0	0	개별	없음	3
48209000	기타							
48209010	언어 학습에 사용되는 자음 학습용 워크북	0	0	0	0	Kg	없음	0
4820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48210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00	인쇄한 것	12	0	0	0	Kg	없음	5
4821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48220000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콤팩트(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1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9	0	0	0	Kg	없음	0
48229000	기타	9	0	0	0	Kg	없음	0
48230000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 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 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2000	여과지와 판지	0	0	0	0	Kg	없음	0
48234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이얼	8	0	0	0	Kg	없음	0
48236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쟁반·접시·플레이트·컵과 이와 유사한 것							
48236100	대나무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48236900	기타	8	0	0	0	Kg	없음	5
48237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48237010	알 트레이(Egg tray)	9	0	0	0	Kg	없음	0
48237020	장식품 및 장신구류(모조 신변장식품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8237040	개스킷(gasket)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48237041	자동차용	0	0	0	0	개별	없음	0
4823704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48237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7
48239000	기타							
48239010	검극지(pole finding paper) 등의 지시약 종이, 살균 모니터링법을 포함하고 있거나, 펀치 카드 기계를 위한 펀칭되지 않은 카드(리본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담배 제조용 필터	0	0	0	0	Kg	없음	0
48239020	글라스지(glassine paper), 리노타입(linotype), 모노타입(monotype) 또는 인터타입(intertype type)설정 기계에 사용하기 위한 키보드 스펀 페이퍼 종류의 롤 용지, 재커드 머신(jackard machine) 또는 이와 유사한 편직기 등에 사용되는 종류의 종이 및 판지, 섬유(textile) 스레드(thread) 슬리브 제조에 사용되는 방적용 캔(can), 염색용 실 등에 이용하는 원뿔모양의 여과지	0	0	0	0	Kg	없음	0
48239030	제 4804 호부터 제 4806 호까지와 소호 제 4808.1000 호에 기재된 물품(이 류의 주 제 8 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48239040	제 4807 호 및 제 4808 호에 기재된 물품(소호 제 4808.1000 호에 기재된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8 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0
48239060	접착제가 있거나 접착성이 있는 종이(접착성이 없는 것으로 스트립이나 롤모양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4823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49010000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1000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개별	없음	0
49019000	기타							
49019100	사전·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49019120	부가가치세 1976 년 규정(5736) 9B 에 해당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49019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9019900	기타							
49019920	부가가치세 1976 년 규정(5736) 9B 에 해당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49019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9020000	신문·잡지·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21000	1 주에 4 회 이상 간행되는 것	0	0	0	0	Kg	없음	0
490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903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12	0	0	0	Kg	없음	5
4904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49050000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51000	지구의	0	0	0	0	Kg	없음	0
49059000	기타							
49059100	책자로 된 것	0	0	0	0	Kg	없음	0
4905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90600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 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0	0	0	0	Kg	없음	0
49070000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예정된 국가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0	0	0	0	Kg	없음	0
49080000	전사지[디칼커매니아(decalsomania)]							
4908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아(decals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0	0	0	0	Kg	없음	0
4908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490900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으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12	0	0	0	Kg	없음	5
49100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9100010	무상으로 수입된 광고판	0	0	0	0	Kg	없음	0
49100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49110000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0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49111010	무상으로 수입된 광고물	0	0	0	0	Kg	없음	0
49111020	스크립트류	0	0	0	0	Kg	없음	0
49111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49119000	기타							
49119100	서화·디자인·사진							
49119110	사진	0	0	0	0	Kg	없음	0
49119120	실크스크린 인쇄된 종이(만약 동일한 블록에서 인쇄된 프린트의 수가 250 개 이하인 경우 각각 예술가의 싸인과 인쇄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	0	0	0	0	Kg	없음	0
491191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49119900	기타							
49119910	해부학·식물학 등의 교육용 또는 과학용의 차트(charts)와 도표(diagrams)	0	0	0	0	Kg	없음	0
49119920	스크립트류	0	0	0	0	Kg	없음	0
49119930	허가증·공연용 티켓·스테이크경마(sweepstakes) 티켓 및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Kg	없음	0
49119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001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0020000	생사(곤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00300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5004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00500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0060000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0	0	0	0	Kg	없음	0
50070000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50071000	견 노일(noil) 직물	0	0	0	0	Kg	없음	0
50072000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0079000	그 밖의 직물	0	0	0	0	Kg	없음	0
51010000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11000	그리지(greasy)[플리스와시한(fleece-washed) 양모를 포함한다]							
51011100	깎은 양모	0	0	0	0	Kg	없음	0
5101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1012000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51012100	깎은 양모	0	0	0	0	Kg	없음	0
5101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1013000	탄화처리한 것	0	0	0	0	Kg	없음	0
51020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21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							
510211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0	0	Kg	없음	0
510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1022000	동물의 거친 털	0	0	0	0	Kg	없음	0
510300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3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0	0	0	0	Kg	없음	0
5103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Kg	없음	0
5103300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Kg	없음	0
510400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0	0	0	Kg	없음	0
510500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1051000	카드(card)한 양모	0	0	0	0	Kg	없음	0
51052000	울퉁과 그 밖의 코움(comb)한 양모							
51052100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105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1053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10531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0	0	Kg	없음	0
5105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105400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1060000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6100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106200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51070000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100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107200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51080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1081000	카드(card)한 것	0	0	0	0	Kg	없음	0
51082000	코움(comb)한 것	0	0	0	0	Kg	없음	0
51090000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10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109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11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질프한(gimpe)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51110000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1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111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00 그램 이하인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111190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111200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1113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111900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1120000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2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211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불가리아 2)(요르단 4)(멕시코 3)	6	0	0	0	Sq.M eter	없음	5
5112190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112200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1123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112900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113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51130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을 포함하고 있는 것(함유량에 상관없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11300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520100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2020000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2100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52029000	기타							
52029100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0	0	0	Kg	없음	0
5202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203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2040000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2041000	소매용이 아닌 것							
5204110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6	0	0	0	Kg	없음	5
52041900	기타	6	0	0	0	Kg	없음	5
52042000	소매용	6	0	0	0	Kg	없음	5
52050000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51000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1100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1200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1300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1400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1500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0	0	0	0	Kg	없음	0
52052000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한정한다]							
52052100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2200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2300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2400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2600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2700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2800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120 수 초과)	0	0	0	0	Kg	없음	0
52053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31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32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3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3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3500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0	0	0	0	Kg	없음	0
52054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41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42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4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4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4600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54700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52054800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0	0	0	0	Kg	없음	0
52060000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61000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1100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1200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1300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1400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1500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0	0	0	Kg	없음	0
52062000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2100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2200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2300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2400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2500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0	0	0	Kg	없음	0
52063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31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32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3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3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3500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0	0	0	Kg	없음	0
52064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20641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42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4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4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0	0	0	Kg	없음	0
52064500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2070000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7100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207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208000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1000	표백하지 않은 것							
520811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Sq.M eter	없음	0
520812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Sq.M eter	없음	0
520813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破斜文織, cross-twill)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Sq.M eter	없음	0
52081900	그 밖의 직물의 것	0	0	0	0	Sq.M eter	없음	0
52082000	표백한 것							
520821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2110	100 퍼센트 면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5 그램 이하인 것(표백 및 친수성 강화를 통하여 특별히 의료용으로 준비된 것으로 소호 제 5208.2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6	0	0	0	Kg	없음	5
5208212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082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822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22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082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20823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082310	100 퍼센트 면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5 그램 이하인 것(표백 및 친수성 강화를 통하여 특별히 의료용으로 준비된 것으로 소호 제 23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6	0	0	0	Kg	없음	5
5208232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0823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82900	그 밖의 직물							
52082910	100 퍼센트 면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5 그램 이하인 것(표백 및 친수성 강화를 통하여 특별히 의료용으로 준비된 것으로 소호 제 29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6	0	0	0	Kg	없음	5
5208292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Sq.M eter	없음	0
520829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83000	염색한 것							
520831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31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083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832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32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083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833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0833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0833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83900	그 밖의 직물							
520839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20839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84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841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842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843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84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85000	날염한 것							
520851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852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85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9000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091000	표백하지 않은 것							
520911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Sq.M eter	없음	0
52091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Sq.M eter	없음	0
52091900	그 밖의 직물	0	0	0	0	Sq.M eter	없음	0
52092000	표백한 것							
52092100	평직물(平織物)							
520921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092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92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0922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092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92900	그 밖의 직물							
520929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0929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2093000	염색한 것							
52093100	평직물(平織物)							
520931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093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93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0932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093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93900	그 밖의 직물							
520939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0939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94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94100	평직물(平織物)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94200	데님(denim)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94300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94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95000	날염한 것							
52095100	평직물(平織物)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95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2095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0000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101000	표백하지 않은 것							
521011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Sq.M eter	없음	0
52101900	그 밖의 직물	0	0	0	0	Sq.M eter	없음	0
52102000	표백한 것							
52102100	평직물(平織物)							
521021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52102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02900	그 밖의 직물							
521029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1029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03000	염색한 것							
52103100	평직물(平織物)							
521031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103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03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1032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103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03900	그 밖의 직물							
521039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1039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04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04100	평직물(平織物)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04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05000	날염한 것							
52105100	평직물(平織物)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05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1000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111000	표백하지 않은 것							
521111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Sq.M eter	없음	0
52111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Sq.M eter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2111900	그 밖의 직물	0	0	0	0	Sq.M eter	없음	0
52112000	표백한 것							
521120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1120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13000	염색한 것							
52113100	평직물(平織物)							
521131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113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13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1132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113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13900	그 밖의 직물							
521139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521139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14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14100	평직물(平織物)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14200	데님(denim)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14300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14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15000	날염한 것							
52115100	평직물(平織物)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152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15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20000	그 밖의 면직물							
52121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521211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Sq.M eter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2121200	표백한 것							
521212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121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21300	염색한 것							
521213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1213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214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21500	날염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22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521221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Sq.M eter	없음	0
52122200	표백한 것							
521222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122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22300	염색한 것							
52122310	산업무역부장관이 제 3005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것	0	0	0	0	Kg	없음	0
521223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224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2122500	날염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3010000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1100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0	0	0	0	Kg	없음	0
53012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530121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0	0	0	0	Kg	없음	0
5301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3013000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0	0	0	0	Kg	없음	0
53020000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얇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100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0	0	0	0	Kg	없음	0
530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3030000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아마·대마·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1000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30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3050000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53060000	아마사							
53061000	단사	0	0	0	0	Kg	없음	0
53062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0	0	0	Kg	없음	0
53070000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사							
53071000	단사	0	0	0	0	Kg	없음	0
53072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0	0	0	Kg	없음	0
53080000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53081000	코이어(coir)사	0	0	0	0	Kg	없음	0
53082000	대마사	0	0	0	0	Kg	없음	0
5308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3090000	아마직물							
53091000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3091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Kg	없음	0
5309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3092000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3092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Kg	없음	0
5309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3100000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의 직물							
5310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5310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311000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54010000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00	합성필라멘트의 것							
54011010	소매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54011011	텍스처드사[전부 폴리에스테르 장사(長絲)로 만든 것은 제외하며, 가장 얇은 단사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4011012	전부 아라미드(aramid)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1101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4011090	소매용							
54011091	텍스처드사	6	0	0	0	Kg	없음	5
54011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54012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54012010	최대 67 데시텍스인 것 [텍스처화(textured) 한 것을 제외하고 소매용이 아닌 것]	0	0	0	0	Kg	없음	0
540120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54020000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1000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4021100	아라미드의 것	0	0	0	0	Kg	없음	0
540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402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Kg	없음	0
54023000	텍스처드사							
540231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232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233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Kg	없음	0
54023400	폴리프로필렌의 것	0	0	0	0	Kg	없음	0
5402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4024000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 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4400	탄성사	0	0	0	0	Kg	없음	0
54024500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24600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24700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248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2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4025000	그 밖의 실(단사로서 미터당 50 회 초과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51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Kg	없음	0
540252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Kg	없음	0
54025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4026000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261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Kg	없음	0
540262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Kg	없음	0
54026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4030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1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33000	그 밖의 실(단사)							
540331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332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 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333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Kg	없음	0
5403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4034000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341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0	0	0	0	Kg	없음	0
540342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Kg	없음	0
5403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4040000	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41000	모노필라멘트							
54041100	탄성사	0	0	0	0	Kg	없음	0
540412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4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40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40500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600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4060010	텍스처드 사(textured yarn)와 이펙트 사(effect yarn)	6	0	0	0	Kg	없음	5
5406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4070000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4 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00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0	0	0	0	Kg	없음	0
5407200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0	0	0	0	Kg	없음	0
54073000	제 11 부 주 제 9 호의 직물	0	0	0	0	Kg	없음	0
54074000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4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407412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4130	염색되지 않은 것으로서 합성 플라스틱 재질의 표면을 가지기 위해 합성 플라스틱 수지로 사전 코팅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a) 100 퍼센트 합성의 꼬이지 않은 멀티필라멘트사로 제조할 것 (b) 1 제곱미터당 직물의 중량이 145 그램 이하일 것 (c) 씨실 또는 날실에서 센티미터당 실의 개수가 10 개 이하일 것 (d) 실의 총 굵기가 100 데니어 이상일 것	0	0	0	0	Kg	없음	0
5407414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0 그램을 초과하지 않고, 섭씨 100 도의 온도에서 용융되는 것으로서, 자수 직물의 제조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마무리 공정에서 분해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7415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거나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전부 만들어 진 것	0	0	0	0	Kg	없음	0
5407416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고,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4170	염색되지 않고, 그림이 없으며(not figured), 직조된 단(hems)이 없되, 단(hems)은 접착제 또는 열 접착에 의하여 길이에 따라 접착되고, 타자기·계산기·자동 데이터 처리기·텔레프린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인쇄리본 생산용으로 고안된 것	0	0	0	0	Kg	없음	0
54074180	멀티필라멘트 폴리아미드사로 전부(100 퍼센트) 만들어진 것으로서 굵기가 210 데니어 초과 300 데니어 이하인 것(산업무역부장관이 도포된 직물의 생산용으로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4074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4074200	염색한 것							
5407422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423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거나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전부 만들어진 것	0	0	0	0	Kg	없음	0
5407424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4250	립스톱(Rip stop) 방식의 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60 그램 이하인 100 퍼센트 나일론사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4260	전부 폴리아미드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의 굵기가 200 데니어를 초과하고,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2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4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4074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407431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432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거나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완전히 만들어진 것	0	0	0	0	Kg	없음	0
540743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43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74400	인쇄한 것							
5407441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442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거나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완전히 만들어진 것	0	0	0	0	Kg	없음	0
540744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44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75000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5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407511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512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75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75200	염색한 것							
5407521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522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75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0
54075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5407531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532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753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75400	인쇄한 것							
5407541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542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754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76000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6100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4076110	립스톱(Rip stop) 방식의 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60 그램 이하인 100 퍼센트 폴리에스테르사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612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6130	염색되지 않은 것으로서 합성 플라스틱 재질의 표면을 가지기 위해 합성 플라스틱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수지로 사전 코팅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a) 100 퍼센트 합성의 꼬이지 않은 멀티필라멘트사로 제조할 것 (b) 1 제곱미터당 직물의 중량이 145 그램 이하일 것 (c) 씨실 또는 날실에서 센티미터당 실의 개수가 10 개 이하일 것 (d) 실의 총 굵기가 100 데니어 이상일 것							
54076140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50 그램 이상이고, 섭씨 100 도의 온도에서 용융되는 것으로서, 자수 직물의 제조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마무리 공정에서 분해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6150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거나,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전부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6160	기타[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6170	염색되지 않고, 그림이 없으며(not figured), 직조된 단(hems)이 없되, 단(hems)은 접착제 또는 열 접착에 의하여 길이에 따라 접착되고, 타자기·계산기·자동 데이터 처리기·텔레프린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인쇄리본 생산용으로 고안된 것	0	0	0	0	Kg	없음	0
5407618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굵기가 210 데니어를 초과하되, 300 데니어 이하인 것으로, 산업무역부장관이 도포된 직물의 생산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확인한 것	6	0	0	0	Kg	없음	5
54076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0
54076900	기타							
5407691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6920	염색되지 않은 것으로서 합성 플라스틱 재질의 표면을 가지기 위해 합성 플라스틱 수지로 사전 코팅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a) 100 퍼센트 합성의 꼬이지 않은 멀티필라멘트사로 제조할 것 (b) 1 제곱미터당 직물의 중량이 145 그램 이하일 것 (c) 씨실 또는 날실에서 센티미터당 실의 개수가 10 개 이하일 것 (d) 실의 총 굵기가 100 데니어 이상일 것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407694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거나,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전부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5407695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6960	염색되지 않고, 그림이 없으며(not figured), 직조된 단(hems)이 없되, 단(hems)은 접착제 또는 열 접착에 의하여 길이에 따라 접착되고, 타자기·계산기·자동 데이터 처리기·텔레프린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인쇄리본 생산용으로 고안된 것	0	0	0	0	Kg	없음	0
540769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77000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7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407712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7130	염색되지 않은 것으로서 합성 플라스틱 재질의 표면을 가지기 위해 합성 플라스틱 수지로 사전 코팅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a) 100 퍼센트 합성의 꼬이지 않은 멀티필라멘트사로 제조할 것 (b) 1 제곱미터당 직물의 중량이 145 그램 이하일 것 (c) 씨실 또는 날실에서 센티미터당 실의 개수가 10 개 이하일 것 (d) 실의 총 굵기가 100 데니어 이상일 것	0	0	0	0	Kg	없음	0
5407714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0 그램을 초과하지 않고, 섭씨 100 도의 온도에서 용융되는 것으로서, 자수 직물의 제조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마무리 공정에서 분해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7715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거나,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전부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5407716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7170	염색되지 않고, 그림이 없으며(not figured), 직조된 단(hems)이 없되, 단(hems)은 접착제 또는 열 접착에 의하여 길이에 따라 접착되고, 타자기·계산기·자동 데이터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처리기·텔레프린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인쇄리본 생산용으로 고안된 것							
54077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4077200	염색한 것							
5407722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723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거나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필라멘트단사로 완전히 만들어진 것	0	0	0	0	Kg	없음	0
5407724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7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77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407731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732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거나,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전부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540773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73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4077400	인쇄한 것							
5407741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742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거나,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전부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540774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74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4078000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4078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407812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8130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8140	염색되지 않고, 그림이 없으며(not figured), 직조된 단(hems)이 없되, 단(hems)은 접착제 또는 열 접착에 의하여 길이에 따라 접착되고, 타자기·계산기·자동 데이터 처리기·텔레프린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인쇄리본 생산용으로 고안된 것	0	0	0	0	Kg	없음	0
54078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4078200	염색한 것							
5407822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8230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8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78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407831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8320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83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78400	인쇄한 것							
5407841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842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784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4079000	그 밖의 직물							
54079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407912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9130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407914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9150	염색되지 않고, 그림이 없으며(not figured), 직조된 단(hems)이 없되, 단(hems)은 접착제 또는 열 접착에 의하여 길이에 따라 접착되고, 타자기·계산기·자동 데이터 처리기·텔레프린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인쇄리본 생산용으로 고안된 것	0	0	0	0	Kg	없음	0
54079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4079200	염색한 것							
5407922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9230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924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9250	제 5605 호 물품을 100 분의 15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79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79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407931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9320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93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9340	제 5605 호 물품을 100 분의 15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793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79400	인쇄한 것							
54079410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서 멀티필라멘트사의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고, 직물의 중량이 1 제곱미터당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4079420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40794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79440	제 5605 호 물품을 100 분의 15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794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80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5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5408101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81020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전부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540810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81040	제 11 부 주 제 9 호의 직물	0	0	0	0	Kg	없음	0
54081050	염색되지 않고, 그림이 없으며(not figured), 직조된 단(hems)이 없되, 단(hems)은 접착제 또는 열 접착에 의하여 길이에 따라 접착되고, 타자기·계산기·자동 데이터 처리기·텔레프린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로 사용되는 인쇄리본 생산용으로 고안된 것	0	0	0	0	Kg	없음	0
540810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4082000	그 밖의 직물[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82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408211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82120	전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만든 것 또는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	0	0	0	0	Kg	없음	0
540821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82140	제 11 부 주 제 9 호의 직물	0	0	0	0	Kg	없음	0
54082150	염색되지 않고, 그림이 없으며(not figured), 직조된 단(hems)이 없되, 단(hems)은 접착제 또는 열 접착에 의하여 길이에 따라 접착되고,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타자기 · 계산기 · 자동 데이터 처리기 · 텔레프린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인쇄리본 생산용으로 고안된 것							
54082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4082200	염색한 것							
5408221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82220	전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만든 것 또는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	0	0	0	0	Kg	없음	0
540822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82240	제 11 부 주 제 9 호의 직물	0	0	0	0	Kg	없음	0
54082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82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408231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82320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전부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540823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82340	제 11 부 주 제 9 호의 직물	0	0	0	0	Kg	없음	0
540823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82400	인쇄한 것							
5408241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82420	전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만든 것 또는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	0	0	0	0	Kg	없음	0
540824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82440	제 11 부 주 제 9 호의 직물	0	0	0	0	Kg	없음	0
540824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4083000	그 밖의 직물							
54083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408311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83120	전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만든 것 또는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40831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83140	제 11 부 주 제 9 호의 직물	0	0	0	0	Kg	없음	0
54083150	염색되지 않고, 그림이 없으며(not figured), 직조된 단(hems)이 없되, 단(hems)은 접착제 또는 열 접착에 의하여 길이에 따라 접착되고, 타자기·계산기·자동 데이터 처리기·텔레프린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인쇄리본 생산용으로 고안된 것	0	0	0	0	Kg	없음	0
54083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4083200	염색한 것							
5408321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83220	전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만든 것 또는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	0	0	0	0	Kg	없음	0
540832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83240	제 11 부 주 제 9 호의 직물	0	0	0	0	Kg	없음	0
54083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4083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408331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83320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전부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540833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83340	제 11 부 주 제 9 호의 직물	0	0	0	0	Kg	없음	0
540833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4083400	인쇄한 것							
5408341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54083420	전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만든 것 또는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	0	0	0	0	Kg	없음	0
54083430	전부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것[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한(textured) 것과 이펙트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54083440	제 11 부 주 제 9 호의 직물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40834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5010000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550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1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14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5020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0	0	0	0	Kg	없음	0
55030000	합성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 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31100	아라미드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3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50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3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34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504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5050000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실의 웨이스트·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51000	합성섬유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5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	0	0	0	0	Kg	없음	0
55060000	합성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 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6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6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6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6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507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5080000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8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82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090000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0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1100	단사	0	0	0	0	Kg	없음	0
550912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0	0	0	Kg	없음	0
55092000	폴리에스테르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2100	단사	0	0	0	0	Kg	없음	0
550922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0	0	0	Kg	없음	0
5509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3100	단사	0	0	0	0	Kg	없음	0
550932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0	0	0	Kg	없음	0
55094000	그 밖의 실(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094100	단사	0	0	0	0	Kg	없음	0
550942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0	0	0	Kg	없음	0
55095000	그 밖의 실(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5100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0	0	0	0	Kg	없음	0
55095200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0	0	0	0	Kg	없음	0
55095300	주로 면과 혼방한 것	0	0	0	0	Kg	없음	0
55095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5096000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6100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0	0	0	0	Kg	없음	0
55096200	주로 면과 혼방한 것	0	0	0	0	Kg	없음	0
55096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5099000	그 밖의 실							
55099100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0	0	0	0	Kg	없음	0
55099200	주로 면과 혼방한 것	0	0	0	0	Kg	없음	0
5509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510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01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01100	단사	0	0	0	0	Kg	없음	0
551012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0	0	0	Kg	없음	0
55102000	그 밖의 실(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5103000	그 밖의 실(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5109000	그 밖의 실	0	0	0	0	Kg	없음	0
55110000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511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51120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55113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0	0	0	0	Kg	없음	0
551200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2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21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2190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5122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22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2290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29000	기타							
55129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2990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30000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3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31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5131110	폴리에스테르코튼(polyester cotton)의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31190	기타	0	0	0	0	Sq.M eter	없음	0
551312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313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31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32000	염색한 것							
55132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323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5132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3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5133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33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34000	날염한 것							
55134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34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40000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14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41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412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41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42000	염색한 것							
55142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422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423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42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4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44000	날염한 것							
55144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442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443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44900	그 밖의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500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5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의 것							
55151100	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5151200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55151300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5190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52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2100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52200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5290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59000	그 밖의 직물							
55159100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5990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516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55161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61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611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 이하인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1190	기타	0	0	0	0	Sq.M eter	없음	0
55161200	염색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55161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1400	날염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2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5162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2200	염색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55162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2400	날염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3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양모 또는 부드러운 동물의 털과 혼방한 것							
55163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3200	염색한 것	6	0	0	0	Sq.M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eter		
55163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3400	날염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4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							
55164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4200	염색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4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4400	날염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9000	기타							
55169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9200	염색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9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5169400	날염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6010000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56012000	워딩(wadding), 그 밖의 워딩(wadding) 제품							
56012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5601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5601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6013000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	0	0	0	0	Kg	없음	0
56020000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21000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 bonded) 섬유직물	6	0	0	0	Kg	없음	5
56022000	그 밖의 펠트(felt)(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6022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560229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56029000	기타	6	0	0	0	Kg	없음	5
56030000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31000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56031110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6	0	0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으로 한정한다)							
56031120	30x30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크기의 것으로, 섬유 염색 작업에서 염색용 스풀(spool)을 랩핑(wrapping)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	6	0	0	0	Kg	없음	5
56031190	기타							
56031191	일회용 냅킨에 사용되는 접착제	0	0	0	0	Kg	없음	0
5603119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60312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을 초과하고 70 그램 이하인 것							
56031210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6031220	100 퍼센트 폴리에틸렌 장섬유로 만든 것[점결제 또는 증량제(filler)를 첨가하지 않고, 흰색의, 프린트되어 있지 않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6031230	30x30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크기의 것으로, 섬유 염색작업에서 염색용 스풀(spool)을 랩핑(wrapping)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3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6031290	기타							
56031291	일회용 냅킨에 사용되는 접착제	0	0	0	0	Kg	없음	0
5603129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60313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							
56031310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6031320	100 퍼센트 폴리에틸렌 장섬유로 만든 것[점결제 또는 증량제(filler)를 첨가하지 않고, 흰색의, 프린트되어 있지 않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이상 12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6031330	두 개 이상 적층된 것으로 접착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560313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560314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56031410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6031420	두 개 이상 적층된 것으로 접착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56031490	기타	6	0	0	0	Kg	없음	3
56039000	기타							
560391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6	0	0	0	Kg	없음	5
560392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을 초과하고 70 그램 이하인 것	6	0	0	0	Kg	없음	5
560393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							
56039310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6	0	0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으로 한정한다)							
56039390	기타	6	0	0	0	Kg	없음	3
560394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56039420	두 개 이상 적층하여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56039490	기타	6	0	0	0	Kg	없음	3
5604000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100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6049000	기타							
56049010	고무로 처리한 것							
56049011	비스코스레이온사 또는 폴리에스터사(침투·도포하거나 가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6049012	그 밖의 가황하지 않은 것	6	0	0	0	Kg	없음	5
56049019	가황한 것	6	0	0	0	Kg	없음	3
5604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605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60600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 yarn)	0	0	0	0	Kg	없음	0
56070000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72000	사이잘(sisal)마 또는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6072100	포장용 끈	6	0	0	0	Kg	없음	5
56072900	기타	6	0	0	0	Kg	없음	5
56074000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							
56074100	포장용 끈	6	0	0	0	Kg	없음	5
56074900	기타	6	0	0	0	Kg	없음	3
56075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6079000	기타							
56079010	천연견으로 만든 장사(長絲)(continuous yarn)로 짠(braided) 것	0	0	0	0	Kg	없음	0
5607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56080000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5608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081100	제품으로 된 어망	0	0	0	0	Kg	없음	0
5608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608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6090000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7010000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1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	10.66	22	0	Sq.M eter	없음	5
5701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	10.66	22	0	Sq.M eter	없음	5
57020000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57021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manie) 및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7022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 깔개	12	0	0	0	Sq.M eter	없음	5
57023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702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7023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57023210	파일(pile) 직물로 만든 것[폴리프로필렌으로 전부 만든 피브릴 스트립 타입(fibrillating strip type)의 것으로 한정한다]	10.8	0	0	0	Sq.M eter	없음	5
57023290	기타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702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23910	제품의 노출된 부분이 이 류의 주 제 1 호의 것으로, 제 53 류의 것(아마를	12	0	0	0	Sq.M eter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제외한다)으로 전부 만든 제품							
57023990	기타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7024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7024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57024210	파일(pile) 직물로 만든 것[폴리프로필렌으로 전부 만든 피브릴 스트립 타입(fibrillating strip type)의 것으로 한정한다]	10.8	0	0	0	Sq.M eter	없음	5
57024290	기타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702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24910	제품의 노출된 부분이 이 류의 주 제 1 호의 것으로, 제 53 류의 것(아마를 제외한다)으로 전부 만든 제품	12	0	0	0	Sq.M eter	없음	5
57024990	기타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7025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7025010	제품의 노출된 부분이 이 류의 주 제 1 호의 것으로, 제 53 류의 것(아마를 제외한다)으로 전부 만든 제품	10.8	0	0	0	Sq.M eter	없음	5
57025090	기타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7029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9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7029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702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29910	제품의 노출된 부분이 이 류의 주 제 1 호의 것으로, 제 53 류의 것(아마를 제외한다)으로 전부 만든 제품	12	0	0	0	Sq.M eter	없음	5
57029990	기타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7030000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3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7031010	펠트(felt)	12	0	0	0	Sq.M eter	없음	5
57031090	기타	4	10.66	22	0	Sq.M eter	없음	5
57032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7032010	펠트(felt)	12	0	0	0	Sq.M eter	없음	5
57032020	제 5404 호의 스트립(strip)의 파일(pile)로	12	0	0	0	Sq.M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전부 만든 것					eter		
57032090	기타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703300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33010	펠트(felt)	12	0	0	0	Sq.M eter	없음	5
57033020	제 5404 호 또는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의 파일(pile)로 전부 만든 것							
57033021	자외선 차단물질을 100 분의 4 이상 함유한 것	0	0	0	0	Sq.M eter	없음	0
57033029	기타	12	0	0	0	Sq.M eter	없음	5
57033090	기타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703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39010	펠트(felt)	12	0	0	0	Sq.M eter	없음	5
57039020	제품의 노출된 부분이 이 류의 주 제 1 호의 것으로, 제 53 류의 것(아마를 제외한다)으로 전부 만든 제품	12	0	0	0	Sq.M eter	없음	5
57039090	기타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7040000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41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Sq.M eter	없음	5
57049000	기타							
57049010	니들룸공법으로 제조한 것(고무나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고,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5
57049090	기타	12	0	0	0	Sq.M eter	없음	5
5705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50010	플록(flock)한 펠트(felt)	12	0	0	0	Sq.M eter	없음	5
57050090	기타							
57050091	제품의 노출된 부분이 이 류의 주 제 1 호의 것으로, 제 53 류의 것(아마를 제외한다)으로 전부 만든 제품	12	0	0	0	Sq.M eter	없음	5
57050092	피브릴(fibrilating) 스트립 타입의 폴리프로필렌으로 전부 만든 파일(pile)	12	0	0	0	Sq.M eter	없음	5
57050099	기타	4	15.58	22	0	Sq.M eter	없음	5
58010000	파일(pile)직물 · 셔닐(chenille)직물(제 58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02 호나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1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58012000	면으로 만든 것							
580121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0	0	0	0	Kg	없음	0
580122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0	0	0	0	Kg	없음	0
580123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0	0	0	0	Kg	없음	0
58012600	셔닐(chenille)직물	0	0	0	0	Kg	없음	0
58012700	경(經)파일(pile)직물	0	0	0	0	Kg	없음	0
5801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0131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0	0	0	0	Kg	없음	0
580132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0	0	0	0	Kg	없음	0
580133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0	0	0	0	Kg	없음	0
58013600	셔닐(chenille)직물	0	0	0	0	Kg	없음	0
58013700	경(經)파일(pile)직물	0	0	0	0	Kg	없음	0
5801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58020000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8021000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58021100	표백하지 않은 것							
58021110	플라스틱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58021112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802111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111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21120	플라스틱을 침투시킨 것	6	0	0	0	Kg	없음	5
58021130	고무를 입힌 것							
58021132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8021133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5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113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21140	그 밖의 재료를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6	0	0	0	Kg	없음	5
58021190	기타							
58021191	가장자리의 절단 및 재봉에 의하여 분리가 필요한 기장의 타월과 가장자리 재봉이 요구되는 타월	6	0	0	0	Kg	없음	5
58021199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1900	기타							
58021910	플라스틱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58021912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802191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6	0	0	0	Sq.M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					eter		
5802191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21920	플라스틱을 침투시킨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1930	고무를 입힌 것							
58021931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8021933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500 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193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21940	그 밖의 재료를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6	0	0	0	Kg	없음	5
58021990	기타							
58021991	가장자리의 절단 및 재봉에 의하여 분리가 필요한 기장의 타월과 가장자리 재봉이 요구되는 타월	6	0	0	0	Kg	없음	5
58021999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2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58022010	플라스틱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58022013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8022015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201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22020	플라스틱을 침투시킨 것	6	0	0	0	Kg	없음	5
58022030	고무를 입힌 것							
58022032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8022034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5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203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22040	그 밖의 재료를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6	0	0	0	Kg	없음	5
58022090	기타							
58022091	가장자리의 절단 및 재봉에 의하여 분리가 필요한 기장의 타월과 가장자리 재봉이 요구되는 타월	6	0	0	0	Kg	없음	5
58022099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3000	터프트(tuft)한 직물							
58023010	플라스틱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58023014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8023015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301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23020	플라스틱을 침투시킨 것	6	0	0	0	Kg	없음	5
58023030	고무를 입힌 것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8023032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802303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303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23040	그 밖의 재료를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6	0	0	0	Kg	없음	5
58023050	메리야스 편물							
58023051	직물재료를 터프트(tufts) 형태화한 것으로, 실에 의하여 생성된 행의 수가 10 센티미터당 50 이하인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3059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3060	직물재료를 펠트로 만들 때							
58023061	직물재료를 터프트(tufts) 형태화한 것으로, 실에 의하여 생성된 행의 수가 10 센티미터당 50 이하인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306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23070	직물 재료를 부직포로 만들 때							
58023071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8023072	기타[직물재료를 터프트(tufts)를 생산시 실에 의하여 생성된 열의 수가 10 센티미터당 50 이하인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307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23090	기타							
58023091	직물재료를 터프트(tufts) 형태화한 것으로, 실에 의하여 생성된 행의 수가 10 센티미터당 50 이하인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23099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300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6	0	0	0	Kg	없음	5
58040000	튴(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작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상대·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 6002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41000	튴(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58041010	플라스틱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58041013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804101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41020	플라스틱을 침투시킨 것	6	0	0	0	Kg	없음	5
58041030	고무처리한 것							
58041032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8041034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5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41039	기타	6	0	0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8041040	그 밖의 재료를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6	0	0	0	Kg	없음	5
58041090	기타							
58041092	평직인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58041099	무늬를 넣은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58042000	기계로 만든 레이스							
580421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042110	플라스틱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42120	플라스틱을 침투시킨 것	6	0	0	0	Kg	없음	5
58042130	고무처리 한 것							
5804213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00 그램 이하인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4213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42140	그 밖의 재료를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9	0	0	0	Kg	없음	5
58042190	기타							
58042191	모티프(motif)로 된 것	6	0	0	0	Kg	없음	5
58042192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을 포함한 것(함유량에 상관없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42199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804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58043000	손으로 만든 레이스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50000	고블랭(gobelin)직·플랜더스(flanders)직 · 오뵈송(aubusson)직·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0	0	0	Kg	없음	5
58060000	세폭(細幅)직물(제 5807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덱)							
58061000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 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셔닐(chenille)직물							
58061040	파스너(fasteners)	6	0	0	0	Sq.M eter	없음	3
5806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806200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8062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터프트(tuft)한 직물은 제외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62020	전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6	0	0	0	Sq.M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모노필라멘트로 만든 것이나 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는 멀티필라멘트사로 전부 만든 것					eter		
58062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8063000	그 밖의 직물							
58063100	면으로 만든 것							
58063110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직조된 스트립 [전동(transmission)용 · 컨베이어용 벨트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8063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63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063210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직조된 스트립 [전동(transmission)용 · 컨베이어용 벨트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8063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806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6400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덱)	6	0	0	0	Kg	없음	5
58070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 · 스트립(strip) 모양인 것 · 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00	직조한 것	6	0	0	0	Kg	없음	5
58079000	기타							
58079010	펠트(felt)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58079020	부직포로 만든 것							
58079021	접착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807902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79090	메리야스 편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8080000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 · 품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0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58081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거나, 그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 섬유로 전부 만든 것, 또는 가장 얇은 단사의 굵기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는 멀티필라멘트사[텍스처드 사(textured yarn)와 이펙트 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로 전부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580810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8900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58089010	기장에 장식하는 용품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거나, 그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사로 전부 만든 것, 또는 가장 얇은 단사의 굵기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는 멀티필라멘트사[텍스처드 사(textured yarn)와 이펙트 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로 전부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5808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5809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810000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0100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8101010	모티프(motif)로 된 것	6	0	0	0	Kg	없음	5
581010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8109000	그 밖의 자수천							
58109100	면으로 만든 것							
58109110	모티프(motif)로 된 것	6	0	0	0	Kg	없음	5
581091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8109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109210	모티프(motif)로 된 것	6	0	0	0	Kg	없음	5
58109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0
581099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8109910	모티프(motif)로 된 것	6	0	0	0	Kg	없음	3
581099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58110000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3
5811004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 ·세폭(細幅)직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901000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100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5901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59020000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90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59021010	1 제곱미터당 총량이 500 그램 이하인 고무가공한 것(양면을 고무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21020	기타(고무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90210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590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9022010	1 제곱미터당 총량이 500 그램 이하인 고무가공한 것(양면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22020	기타(고무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90220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59029000	기타							
59029010	1 제곱미터당 총량이 5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고무가공한 것이나 편직한 것이나 튜브형태로 만든 것(양면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29020	그 밖의 고무가공한 것이나 직조한 것이나 관 모양의 것	6	0	0	0	Kg	없음	5
5902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59030000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1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59031010	전기절연용의 절연 직물(소호 제 1020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1011	지름이 2 센티미터 미만인 관(管)이나 슬리브(sleeve)	6	0	0	0	Kg	없음	5
5903101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9031020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9031021	1 제곱미터당 총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6	0	0	0	Kg	없음	5
5903102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9031030	메리야스 편물(레이스·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9031040	기타(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59031041	1 제곱미터당 총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6	0	0	0	Kg	없음	5
59031042	필라멘트 단사로 전부 만들어진 것으로 그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전체 총량이 미터당 1 그램을 초과하는 천연 라피아라, 코코넛, 종이 또는 아마사로	6	0	0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전부 만들어진 것							
59031043	가장 얇은 단사의 굵기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는 멀티필라멘트사[텍스처드 사(textured yarn)와 이펙트 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로 전부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59031044	파스너(fasteners)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31049	기타	6	0	0	0	Kg	없음	3
59031090	기타							
590310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6	0	0	0	Kg	없음	5
59031092	필라멘트 단사로 전부 만들어진 것으로 그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전체 중량이 미터당 1 그램을 초과하는 천연 라피아, 코코넛, 종이 또는 아마사로 전부 만들어진 것 또는 스트립으로 전부 만들어진 것	6	0	0	0	Kg	없음	5
59031093	가장 얇은 단사의 굵기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는 멀티필라멘트사[텍스처드 사(textured yarn)와 이펙트 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로 전부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59031099	기타	6	0	0	0	Kg	없음	3
59032000	폴리우레탄의 것							
59032010	전기절연용의 절연 직물(소호 제 2020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2011	지름이 2 센티미터 미만인 관(管)이나 슬리브(sleeve)	6	0	0	0	Kg	없음	5
5903201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9032020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903202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6	0	0	0	Kg	없음	5
59032022	필라멘트 단사로 전부 만들어진 것으로 그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전체 중량이 미터당 1 그램을 초과하는 천연 라피아, 코코넛, 종이 또는 아마사로 전부 만들어진 것 또는 스트립으로 전부 만들어진 것	6	0	0	0	Kg	없음	5
59032023	가장 얇은 단사의 굵기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는 멀티필라멘트사[텍스처드 사(textured yarn)와 이펙트 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로 전부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5903202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9032030	메리야스 편물(레이스·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9032040	기타(도포·피복·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5903204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6	0	0	0	Kg	없음	5
59032042	필라멘트 단사로 전부 만들어진 것으로 그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전체 중량이 미터당 1 그램을 초과하는	6	0	0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천연 라피아, 코코넛, 종이 또는 아마사로 전부 만들어진 것							
59032043	가장 얇은 단사의 굵기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는 멀티필라멘트사[텍스처드 사(textured yarn)와 이펙트 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로 전부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59032044	파스너(fasteners)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32049	기타	6	0	0	0	Kg	없음	3
59032090	기타							
590320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6	0	0	0	Kg	없음	5
59032092	필라멘트 단사로 전부 만들어진 것으로 그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전체 중량이 미터당 1 그램을 초과하는 천연 라피아, 코코넛, 종이 또는 아마사로 전부 만들어진 것 또는 스트립으로 전부 만들어진 것	6	0	0	0	Kg	없음	5
59032093	가장 얇은 단사의 굵기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는 멀티필라멘트사[텍스처드 사(textured yarn)와 이펙트 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로 전부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59032099	기타	6	0	0	0	Kg	없음	3
59039000	기타							
59039010	전기절연용의 절연 직물(소호 제 9020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9011	지름이 2 센티미터 미만인 관(管)이나 슬리브(sleeve)	6	0	0	0	Kg	없음	5
59039019	기타	6	0	0	0	Kg	없음	3
59039020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903902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6	0	0	0	Kg	없음	5
5903902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9039030	메리야스 편물(레이스·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903904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00 그램을 초과하고 800 그램 미만인 것(그 굵기가 1,000 데니어를 초과하는 것으로, 100 퍼센트 연속식 폴리아미드사로 만들어 지고 페놀수지나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도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9039050	기타(도포·피복·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5903905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6	0	0	0	Kg	없음	5
59039052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6	0	0	0	Kg	없음	5
59039053	필라멘트 단사로 전부 만들어진 것으로 그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전체 중량이 미터당 1 그램을 초과하는 천연 라피아, 코코넛, 종이 또는 아마사로	6	0	0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전부 만들어진 것							
59039054	가장 얇은 단사의 굵기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는 멀티필라멘트사[텍스처드 사(textured yarn)와 이펙트 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로 전부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59039055	파스너(fasteners)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39056	립스톱(rip stop) 방식의 직물(나일론 또는 폴리에테르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9039057	100 퍼센트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관모양의 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5903905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9039090	기타							
590390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6	0	0	0	Kg	없음	5
59039092	필라멘트 단사로 전부 만들어진 것으로 그 굵기가 150 데니어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전체 중량이 미터당 1 그램을 초과하는 천연 라피아, 코코넛, 종이 또는 아마사로 전부 만들어진 것 또는 스트립으로 전부 만들어진 것	6	0	0	0	Kg	없음	5
59039093	가장 얇은 단사의 굵기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는 멀티필라멘트사[텍스처드 사(textured yarn)와 이펙트 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로 전부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59039099	기타	6	0	0	0	Kg	없음	0
59040000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 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041000	리놀륨	6	0	0	0	Kg	없음	5
59049000	기타	6	0	0	0	Kg	없음	5
5905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59050010	견·견방사(silk combings) 또는 그 밖의 견 웨이스트의 것[금속사 또는 금속을 함유하는 원사로 만들어진 레이스 또는 자수(레이스 형태의 편직물 포함)의 것, 튜(tulle)와 그물 모양의 직물로 만들어진 것, 말의 털 또는 동물의 거친 털, 면 거즈, 부직포의 것, 펠트의 것, 터프트(tuft)한 직물의 것, 제 5609 호의 물품]							
59050011	견·견방사(silk combings) 또는 그 밖의 견 웨이스트의 것[금속사 또는 금속을 함유하는 원사로 만들어진 레이스 또는 자수의 것, 튜(tulle)와 그물 모양의 직물로 만들어진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13	말의 털 또는 동물의 거친털 또는 면	6	0	0	0	Sq.M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거즈의 것					eter		
59050014	접착성이 있는 부직포의 것(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9050015	기타(부직포의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17	펠트의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18	터프트(tuft)한 직물의 것[실에 의하여 생긴 줄의 수가 바탕천에 터프트(tuft)를 생성하되, 10 센티미터당 50 개 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19	제 5609 호의 물품의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20	인조필라멘트사로 만든 직물[모노필라멘트사나 인조 스트립으로 만든 것 또는 파일(pile)편물을 포함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30	양모, 부드러운 동물의 털 또는 양모를 함유하는 부드러운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것, 아마로 만들어진 것, 라미(ramie)로 만들어진 것, 면으로 만들어진 것, 인조 섬유(스테이플 또는 웨이스트)로 만들어진 것,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靸皮)섬유로 만들어진 것, 그 밖의 편물제로 만들어진 것, 탄성이 있는 직물 또는 장식품으로 만들어진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4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또는 종이실(paper yarns)로 만들어진 직물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50	그 밖의 편물제로 만들어진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6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직물의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70	고무가공을 한 직물의 것							
59050071	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접착제(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9050072	기타(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접착제)	6	0	0	0	Kg	없음	5
59050073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500 그램 미만인 것으로 양면에 고무가 도포되어있는 직물은 제외하고, 전부 인조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가장 얇은 단사가 300 데니어를 초과하되, 텍스처화(textured)한 것과 이펙트 사(effect yarn)는 제외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74	기타[접착성이 없는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00 그램 미만인 것(직물 양면을 고무로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79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80	플라스틱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							
59050081	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접착제 (1 제곱미터 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59050083	기타(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접착제)	6	0	0	0	Kg	없음	5
59050084	파일직물의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되, 터프트(tuft)한 직물은 제외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86	레이스 모양의 자수 · 레이스 · 편물 (함유량을 불문하고 합성섬유를 포함한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87	기타(레이스 모양의 자수 · 레이스 · 편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5008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9050090	플라스틱을 침투시킨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60000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6100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59061010	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접착제							
590610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6	0	0	0	Kg	없음	5
59061019	기타	6	0	0	0	Kg	없음	3
59061020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500 그램 이하이되, 양면을 고무로 도포한 직물은 제외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61090	기타							
59061095	파스너(fasteners)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61099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69000	기타							
590691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	0	0	0	Kg	없음	5
59069900	기타							
59069910	분리될 수 있는 보호층이 없는 접착제							
590699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6	0	0	0	Kg	없음	5
59069919	기타	6	0	0	0	Kg	없음	5
59069920	기타(1 제곱미터당 중량이 500 그램 이하이되, 양면을 고무로 도포한 직물은 제외한다)	6	0	0	0	Sq.M eter	없음	5
590699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5907000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 ·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0	0	0	0	Kg	없음	0
59080000	램프용 · 스톱브용 · 라이터용 · 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 · 편조 · 편직한 것으로	6	0	0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5909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5910000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59110000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 7 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9111000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6	0	0	0	Kg	없음	3
5911200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59113000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endless)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591131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591132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591140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6	0	0	0	Kg	없음	5
59119000	기타							
59119010	개스킷(gasket)·오일실(oil seal)·그리스실(grease seal)·오일리테이너(oil retainers)	6	0	0	0	Kg	없음	5
59119020	청소기용 먼지봉투(bag)	6	0	0	0	Kg	없음	5
59119040	광택용 직물제 디스크(disks)	6	0	0	0	Kg	없음	5
5911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60010000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11000	롱파일(long pile) 편물	6	0	0	0	Sq.M eter	없음	3
60012000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60012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1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0012210	파스너 (fasteners)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12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6001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19000	기타							
60019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19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0019210	파스너 (fasteners)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192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6001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6002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24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2900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3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 6001 호나 제 60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320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33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34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3900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4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6	0	0	0	Sq.M eter	없음	0
6004900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60050000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 호부터 제 6004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52000	면으로 만든 것							
60052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0052200	염색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523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52400	날염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53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53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60053200	염색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0
600533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53400	날염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60054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54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54200	염색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543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54400	날염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5900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60000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60062000	면으로 만든 것							
60062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62200	염색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600623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62400	날염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60063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63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63200	염색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0
600633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60063400	날염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60064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64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64200	염색한 것	6	0	0	0	Sq.M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eter		
600643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0064400	날염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3
60069000	기타							
60069010	견으로 만든 물품[견의 함유량이 100 퍼센트인 것으로 한정하고, 특히 방한용 스크린(thermal screen) 및 농업용 에너지 절약용(agricultural energy saving)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Sq.M eter	없음	0
60069090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3
61010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 coat) · 케이프(cape) · 클록(cloak) · 아노락 (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 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120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1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1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20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 coat) · 케이프(cape) · 클록(cloak) · 아노락 (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 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220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2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2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30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 앙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b lazer)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31000	슈트	6	0	0	0	개별	없음	5
61032000	앙상블(ensemble)							
61032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32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3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33000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103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33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33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3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34000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							
6103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34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34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3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0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 앙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b lazer) · 드레스 · 스커트 · 치마바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41000	슈트							
61041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2000	앙상블(ensemble)							
61042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2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3000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4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3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3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4000	드레스							
6104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4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4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4400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5000	스커트와 치마바지							
61045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5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5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5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6000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							
61046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6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6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46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50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10510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5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5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60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 셔츠 · 셔츠블라우스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10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6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6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70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 · 브리프 (brief) · 나이트셔츠 · 파 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71000	언더팬츠와 브리프 (brief)							
61071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71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7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72000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2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7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7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79000	기타							
61079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7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80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 · 페티코트 (petticoat) · 브리프 (brief)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 (n egligee)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81000	슬립과 페티코트 (petticoat)							
610811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8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82000	브리프 (brief)와 팬티							
61082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8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8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83000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83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8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89000	기타							
61089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89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8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090000	티셔츠 · 싱글리트 (singlet)와 그 밖의 조끼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1000	면으로 만든 것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1091010	티셔츠	6	0	0	0	개별	없음	5
61091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109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099010	티셔츠	6	0	0	0	개별	없음	5
61099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1100000	저지(jersey) · 풀오버(pullover) · 카디건(c ardigan) · 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01100	양모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1012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10190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11020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1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110000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12000	면으로 만든 것							
61112010	장갑류	6	0	0	0	Pair	없음	5
61112030	양말 · 로워삭스(lower socks) · 숏삭스(short socks) · 앵글삭스(angle socks)와 수영복	6	0	0	0	Pair	없음	5
61112040	언더팬츠와 팬티호스(panty hose)	6	0	0	0	개별	없음	5
61112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1113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13010	장갑류	6	0	0	0	Pair	없음	5
61113030	양말 · 로워삭스(lower socks) · 숏삭스(short socks) · 앵글삭스(angle socks)와 수영복	6	0	0	0	Pair	없음	5
61113040	언더팬츠와 팬티호스(panty hose)	6	0	0	0	개별	없음	5
61113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111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19010	장갑류	6	0	0	0	Kg	없음	5
61119030	양말 · 로워삭스(lower socks) · 숏삭스(short socks) · 앵글삭스(angle socks)	6	0	0	0	Pair	없음	5
61119040	언더팬츠와 팬티호스(panty hose)	6	0	0	0	개별	없음	5
61119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1120000	트랙슈트 · 스키슈트 · 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21000	트랙슈트							
61121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121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12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122000	스키슈트	6	0	0	0	개별	없음	5
61123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수영복							
611231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12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124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11241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3
6112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130000	의류(제 5903 호 · 제 5906 호 · 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30020	제 5903 호 직물로부터 만들어진 것[보강을 위한 방직용 원료(Base)를 제외한 방직 직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61130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1140000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20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14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14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1150000	팬티호스(panty hose) · 타이츠(tights) ·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1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4	0	0	0	개별	없음	5
61152000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61152100	합성섬유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61152200	합성섬유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6115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1153000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61159000	기타							
611594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59420	보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수입된 장애인(절단된 다리용) 스타킹	0	0	0	0	Kg	없음	0
611594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1159500	면으로 만든 것							
61159520	보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수입된 장애인(절단된 다리용) 스타킹	0	0	0	0	Kg	없음	0
61159590	기타	6	0	0	0	Kg	없음	3
611596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59620	보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수입된 장애인(절단된 다리용) 스타킹	0	0	0	0	Kg	없음	0
611596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115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59920	보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수입된 장애인(절단된 다리용) 스타킹	0	0	0	0	Kg	없음	0
611599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1160000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한정한다)							
61161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6	0	0	0	Pair	없음	5
61169000	기타							
61169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Pair	없음	5
61169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Pair	없음	5
61169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Pair	없음	5
6116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Pair	없음	3
61170000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61171000	솔(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	0	0	0	개별	없음	5
61178000	그 밖의 부속품							
61178010	고무 섬유와 혼방된 것(고무를 침투시키거나, 피복 또는 도포된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611780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1179000	부분품	6	0	0	0	Kg	없음	5
62010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룩(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11000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룩(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1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11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113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1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19000	기타							
62019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19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193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1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20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룩(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1000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룩(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2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2021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213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2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29000	기타							
62029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29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293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2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30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 앙상블 (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 (b lazer)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 (breeches) · 반바지 (shorts) (수영복은 제외한다)							
62031000	슈트							
6203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31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3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32000	앙상블 (ensemble)							
62032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32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3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33000	재킷과 블레이저 (blazer)							
6203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33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33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3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34000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 (breeches) · 반바지 (shorts)							
6203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34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34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3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0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 앙상블 (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 (b lazer) · 드레스 · 스커트 · 치마바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 (breeches) · 반바지 (shorts) (수영복은 제외한다)							
62041000	슈트							
6204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1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1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2000	앙상블 (ensemble)							
62042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2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2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2043000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4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3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3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4000	드레스							
6204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4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4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44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5000	스커트와 치마바지							
62045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5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5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5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6000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62046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62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6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46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50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520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5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5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60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							
62061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6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630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6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6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70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 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071000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2071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7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72000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2072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7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7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79000	기타							
62079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7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2080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 ·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 · 브리프(brief)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81000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20811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8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82000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8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8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89000	기타							
62089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89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8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090000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092000	면으로 만든 것							
62092010	수영복	6	0	0	0	개별	없음	5
62092040	장갑류	6	0	0	0	Pair	없음	5
62092050	양말 · 쏫삭스(short socks)와 양말 쉴드(shield)	6	0	0	0	Pair	없음	5
62092060	벨트	6	0	0	0	개별	없음	5
62092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093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93010	수영복	6	0	0	0	개별	없음	5
62093040	장갑류	6	0	0	0	Pair	없음	5
62093050	양말 · 쏫삭스(short socks)와 양말 쉴드(shield)	6	0	0	0	Pair	없음	5
62093060	의류 부속품	6	0	0	0	Kg	없음	5
62093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09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2099010	수영복	6	0	0	0	개별	없음	5
62099040	장갑류	6	0	0	0	Pair	없음	5
62099050	양말 · 쏫삭스(short socks)와 양말 쉴드(shield)							
6209905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Pair	없음	5
62099059	기타	6	0	0	0	Pair	없음	5
62099060	의류 부속품	6	0	0	0	개별	없음	5
62099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100000	의류(제 5602 호 · 제 5603 호 · 제 5903 호 · 제 5906 호 · 제 5907 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01000	제 5602 호나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210200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1.1100 호부터 제 6201.1900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62102010	제 5903 호 직물로부터 만들어진 것[보강을 위한 방직용 원료(base)를 제외한 방직	6	0	0	0	개별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직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2102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10300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2.1100 호부터 제 6202.1900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62103010	제 5903 호 직물로부터 만들어진 것[보강을 위한 방직용 원료(base)를 제외한 방직 직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개별	없음	5
62103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104000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62104020	제 5903 호 직물로부터 만들어진 것[보강을 위한 방직용 원료(base)를 제외한 방직 직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62104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105000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62105020	제 5903 호 직물로부터 만들어진 것[보강을 위한 방직용 원료(base)를 제외한 방직 직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62105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110000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62111000	수영복							
62111100	남성용이나 소년용	6	0	0	0	개별	없음	5
62111200	여성용이나 소녀용	6	0	0	0	개별	없음	5
62112000	스키슈트	6	0	0	0	개별	없음	5
62113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62113200	면으로 만든 것							
62113210	셔츠	6	0	0	0	개별	없음	5
621132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1133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113310	셔츠	6	0	0	0	개별	없음	5
621133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11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2113910	셔츠	6	0	0	0	개별	없음	5
621139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114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							
62114200	면으로 만든 것							
62114210	셔츠	6	0	0	0	개별	없음	5
621142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1143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114310	셔츠	6	0	0	0	개별	없음	5
621143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11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2114910	셔츠	6	0	0	0	개별	없음	5
621149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120000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2121000	브래지어							
62121010	수영복 제조용	6	0	0	0	개별	없음	5
62121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122000	거들과 팬티거들	6	0	0	0	개별	없음	5
62123000	코르슬렛(corselette)	6	0	0	0	개별	없음	5
62129000	기타							
62129010	소호 제 1000 호와 제 2000 호나 소호 제 1000 호와 제 3000 호에 해당하는 복합물	6	0	0	0	개별	없음	5
62129090	기타							
62129091	제 90 류 주 제 1 호 나목의 물품	6	0	0	0	개별	없음	5
62129099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2130000	손수건							
621320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213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2140000	솔(shawl)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 · 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214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2143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2144000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214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2150000	넥타이류							
62151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15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15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2160000	장갑, 병어리장갑							
62160010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62160011	고무로 만든 것	6	0	0	0	Pair	없음	5
62160019	기타	6	0	0	0	Pair	없음	5
62160090	기타	6	0	0	0	Pair	없음	5
62170000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 ·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2171000	부속품							
62171010	양말 · 쏫삭스(short socks)와 양말 쉴드(shield)	6	0	0	0	Pair	없음	5
62171020	벨트	6	0	0	0	개별	없음	5
62171030	자수작업으로 만든 것(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개별	없음	5
62171090	기타	6	0	0	0	Pair	없음	5
62179000	부분품	6	0	0	0	개별	없음	5
63010000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63011000	전기모포	6	0	0	0	Kg	없음	5
6301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6	0	0	0	Kg	없음	5
6301300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6	0	0	0	Kg	없음	5
6301400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6	0	0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63019000	기타							
6301901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1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3020000	베드린넨 (bed linen) · 테이블린넨 (table linen) · 토일렛린넨 (toilet linen) · 주방린넨 (kitchen linen)							
63021000	베드린넨 (bed linen)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63022000	그 밖의 베드린넨 (bed linen) (날염된 것으로 한정한다)							
63022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2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3022210	부직포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222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302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022910	전기가열식의 것	6	0	0	0	Kg	없음	5
630229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3023000	그 밖의 베드린넨 (bed linen)							
63023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23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3023210	부직포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23220	전기가열식의 것	6	0	0	0	Kg	없음	5
630232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302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023910	전기가열식의 것	6	0	0	0	Kg	없음	5
630239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3024000	테이블린넨 (table linen)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5
63025000	그 밖의 테이블린넨 (table linen)							
63025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253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25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26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 (toilet linen) 과 주방린넨 (kitchen linen) [테리타월지 (terry towelling fabric)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 (terry) 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3
63029000	기타							
63029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293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3029310	부직포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293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302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30000	커튼 [드레이프 (drape) 를 포함한다] · 실내용 블라인드 (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 (valance)							
63031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3031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3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3900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3039100	면으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39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3
6303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40000	그 밖의 실내용품(제 94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3041000	침대덮개							
630411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5
6304190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3049000	기타							
630491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	0	0	0	Kg	없음	5
63049200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	0	0	0	Kg	없음	5
63049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	0	0	0	Kg	없음	3
6304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	0	0	0	Kg	없음	5
63050000	포장용 빈 포대							
63051000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鞣皮)섬유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63052000	면으로 만든 것							
63052010	중고품	6	0	0	0	Kg	없음	5
630520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305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3053200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3053300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3053900	기타							
63053910	화학물질로 살균된 특수제작된 것	0	0	0	0	Kg	없음	0
63053920	폴리에틸렌사로 만든 직물	0	0	0	0	Kg	없음	0
630539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305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059020	중고품	6	0	0	0	Kg	없음	5
6305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3060000	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63061000	방수포(tarpaulin)·천막·차양							
63061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306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3062000	텐트							
63062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5
6306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개별	없음	3
63063000	돛							
63063010	국제 모델로 경기용 범선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63063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3064000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6	0	0	0	개별	없음	5
6306900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5
63070000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포함한다]							
63071000	마루닦이포 · 접시닦이포 · 더스터 (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6	0	0	0	Kg	없음	3
63072000	구멍재킷과 구멍벨트	6	0	0	0	Kg	없음	5
63079000	기타							
63079010	수술용 마스크	0	0	0	0	개별	없음	0
63079020	전기절연용의 절연 슬리브(sleeve)	6	0	0	0	Kg	없음	5
63079030	전문가용의 특수 벨트	0	0	0	0	개별	없음	0
63079040	제 90 류 주 제 1 호나목의 물품	6	0	0	0	개별	없음	0
63079050	파일 웨더로 직조된 스트립핑	6	0	0	0	Kg	없음	0
63079060	일회용 냅킨에 사용되는 접착제의 것	0	0	0	0	Kg	없음	0
6307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3
63080000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 수한 테이블보용 ·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6	0	0	0	Sq.M eter	없음	5
6309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6	0	0	0	Kg	없음	3
63100000	넙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101000	선별한 것	6	0	0	0	Kg	없음	5
63109000	기타	6	0	0	0	Kg	없음	5
64010000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 · 리베팅(riveting) · 네 일링(nailing) · 스크루잉(screwing) · 플러 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1100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12	0	0	0	Pair	없음	5
64019000	그 밖의 신발							
64019200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Pair	없음	5
64019900	기타	12	0	0	0	Pair	없음	5
64020000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21000	스포츠용 신발류							
640212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 츠	12	0	0	0	Pair	없음	5
64021900	기타	12	0	0	0	Pair	없음	5
6402200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Pair	없음	5
64029000	그 밖의 신발							
64029100	발목을 덮는 것	12	0	0	0	Pair	없음	5
64029900	기타	12	0	0	0	Pair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4030000	신발류 [바깥 바닥을 고무 · 플라스틱 · 가죽 · 콤포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1000	스포츠용 신발류							
640312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 츠	12	0	0	0	Pair	없음	5
64031900	기타	12	0	0	0	Pair	없음	5
64032000	신발류 [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Pair	없음	5
64034000	그 밖의 신발류 [보호용 금속 토캡(toe- 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Pair	없음	5
64035000	그 밖의 신발류 (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5100	발목을 덮는 것							
64035120	모피 가죽의 것	0	0	0	0	Kg	없음	0
64035900	기타	12	0	0	0	Pair	없음	5
64039000	그 밖의 신발류							
64039100	발목을 덮는 것	12	0	0	0	Pair	없음	5
64039900	기타	12	0	0	0	Pair	없음	5
64040000	신발류 [바깥 바닥을 고무 · 플라스틱 · 가죽 · 콤포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000	신발류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100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64041110	스포츠용 신발류	12	0	0	0	Pair	없음	5
64041190	기타							
64041191	갑피(甲皮)를 바닥에 부착하지 않은 것	0	0	0	0	Pair	없음	0
64041199	기타	12	0	0	0	Pair	없음	5
64041900	기타							
64041910	속을 채우지 않은 바닥으로 만든 것 [앞면에만 갑피(甲皮)를 지닌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Pair	없음	3
64041920	바닥을 부착한 안창(sock) [바닥은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플라스틱 시트(shee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Pair	없음	3
64041990	기타	12	0	0	0	Pair	없음	7
64042000	신발류 [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Pair	없음	3
64050000	그 밖의 신발							
6405100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2	0	0	0	Pair	없음	3
64052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2	0	0	0	Pair	없음	3
64059000	기타							
64059010	나무로 만든 것	12	0	0	0	Pair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4059090	기타	12	0	0	0	Pair	없음	5
64060000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1000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0	0	0	0	Pair	없음	0
64062000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406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6501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6502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504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65050000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직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50010	종교용 두건[야물커(yarmulke)]	12	0	0	0	Kg	없음	5
6505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65060000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61000	안전모자	0	0	0	0	개별	없음	0
65069000	기타							
650691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650699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65069910	모피로 만든 것	10	0	0	0	개별	없음	0
6506999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65070000	모자용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0	0	0	0	Kg	없음	0
66010000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601100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10	0	0	0	개별	없음	0
66019000	기타							
660191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66019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66020000	지팡이 · 시트스틱(seat- 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개별	없음	0
66030000	제 6601 호나 제 6602 호의 물품의 부분품 · 트리밍(trimming) · 부속품							
6603200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660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6701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 깃털과 그 부분 · 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 깃촉(quill)은 제외한다]							
67010010	장식품과 장신구	12	0	0	0	Kg	없음	3
6701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67020000	인조 꽃 · 잎 · 과일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 · 잎 · 과실로 만든 제품							
6702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2	0	0	0	Kg	없음	3
67029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12	0	0	0	Kg	없음	3
67030000	사람 머리카락(정돈 · 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0	0	0	0	Kg	없음	0
67040000	가발 · 가수염 · 눈썹 · 속눈썹 · 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 · 동물의 털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7041000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67041100	전체가발	0	0	0	0	Kg	없음	0
6704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67042000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67049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68010000	포석 · 연석 ·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68020000	가공한 석비용 · 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 6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 · 조각 · 가루							
68021000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 · 조각 · 가루							
68022000	그 밖의 석비용 · 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							
68022100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 설화석고(a labaster)	0	0	0	0	Kg	없음	0
68022300	화강암	0	0	0	0	Kg	없음	0
68022900	그 밖의 돌	0	0	0	0	Kg	없음	0
68029000	기타							
68029100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 설화석고(a labaster)	0	0	0	0	Kg	없음	0
680292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0	0	0	0	Kg	없음	0
68029300	화강암	0	0	0	0	Kg	없음	0
68029900	그 밖의 돌	0	0	0	0	Kg	없음	0
680300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0	0	0	0	Kg	없음	0
68040000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 · 버리기용 · 광택용 · 정형용 · 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 · 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磁)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4100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 · 그라인딩(grinding)용 · 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68041020	개당 중량이 1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다이아몬드 알갱이 · 가루를 함유한 층 또는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은 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8041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68042000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68042100	합성 ·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0
68042200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68042220	개당 중량이 1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다이아몬드 알갱이 · 가루를 함유한 층 또는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은 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80422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8042300	천연석으로 만든 것							
68042320	각 중량이 1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다이아몬드 가루·알갱이·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은 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80423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68043000	수지석(手砥石)							
68043020	개당 중량이 1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다이아몬드 알갱이·가루를 함유한 층 또는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은 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8043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68050000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5100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0	0	Kg	없음	0
6805200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0	0	Kg	없음	0
6805300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0	0	Kg	없음	3
68060000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 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 6811 호·제 6812 호나 제 69 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1000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시트(sheet) 모양·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68062000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 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8	0	0	0	Kg	없음	0
680690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68070000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71000	롤 모양인 것	8	0	0	0	Kg	없음	0
680790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68080000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패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68090000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제품							
68091000	보드 · 시트(sheet) · 패널 · 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한다)							
68091100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8	0	0	0	Kg	없음	0
68091900	기타	7.2	0	0	0	Kg	없음	0
68099000	그 밖의 제품							
68099010	공업용 몰드	0	0	0	0	Kg	없음	0
68099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68100000	시멘트 제품 · 콘크리트 제품 · 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01000	타일 · 판석 · 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							
68101100	건축용 블록과 벽돌	4	0	0	0	Kg	없음	0
68101900	기타							
68101920	물품의 결합제가 플라스틱 수지인 것							
68101921	두께가 2.5 센티미터 이하인 타일(예: 바닥 · 가열장치 · 벽 및 벽 피복재 패널)과 모자이크 타일	12	0	0	0	Kg	없음	3
68101922	그 밖의 보드형태를 가지는 것(표면적이 0.1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8	0	0	0	Kg	없음	3
6810192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68101990	기타	10	0	0	0	Kg	없음	3
68109000	그 밖의 제품							
681091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68109900	기타							
68109920	설거지통 · 설거지통 받침 · 변기 · 욕조 · 비데 등 영구 설치되는 모든 종류의 것	8	0	0	0	Kg	없음	0
681099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68110000	석면시멘트 제품 · 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14000	석면을 함유한 것	8	0	0	0	Kg	없음	0
68118000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18100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7.2	0	0	0	Kg	없음	0
68118200	그 밖의 시트(sheet) · 패널 · 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8	0	0	0	Kg	없음	0
68118900	그 밖의 제품	8	0	0	0	Kg	없음	0
68120000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 · 직물 · 의류 · 모자 · 신발 · 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6811 호와 제 681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8000	청석면의 것	0	0	0	0	Kg	없음	0
68129000	기타							
68129100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 모자류	8	0	0	0	Kg	없음	0
68129200	종이 · 표지용 판지 · 펄트(felt)	8	0	0	0	Kg	없음	0
681293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8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68129900	기타							
68129910	타일(예: 바닥·벽 및 벽 피복재 패널)	8	0	0	0	Kg	없음	0
68129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68130000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 ·디스크(disc)·와셔(washer)·패드](장착 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32000	석면을 함유한 것	8	0	0	0	Kg	없음	0
68138000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38100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8	0	0	0	Kg	없음	0
681389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68140000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100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응결시키 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0	0	Kg	없음	0
681490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68150000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1000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68151010	주형틀	0	0	0	0	Kg	없음	0
68151020	제 84 류의 기기와 그 부분품(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8151030	스프링 실(spring seal)	0	0	0	0	개별	없음	0
6815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68152000	이탄(泥炭)제품	0	0	0	0	Kg	없음	0
68159000	그 밖의 제품							
68159100	마그네사이트·백운석·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68159110	제 84 류의 기기와 그 부분품(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8159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68159900	기타							
68159910	굽지 않은 벽돌	0	0	0	0	Kg	없음	0
68159920	식기, 주방용품, 위생용품, 사무용품, 내부 장식용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기구(다만, 유리제품의 경우 제 7013 호에 분류된다)							
68159921	설거지통·설거지통 받침·변기·욕조·비데 등 영구 설치되는 모든 종류의 것	8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8159929	기타	12	0	0	0	Kg	없음	0
68159930	실험실용 자기제품	0	0	0	0	Kg	없음	0
68159940	제 84 류의 기기와 그 부분품(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8159950	합성흑연과 수지의 혼합물 [판·막대기·롤·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8159960	스프링 실(spring seal)	6	0	0	0	개별	없음	0
68159990	기타							
68159991	타일(예: 바닥·가열장치·벽 및 벽 피복재 패널)과 모자이크 타일	8	0	0	0	Kg	없음	0
681599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690100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 [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트리폴리트·다이어도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9020000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21000	마그네슘·칼슘·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69022000	알루미나·실리카,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690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69030000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 [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00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69032000	알루미나(Al2O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690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69040000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 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support tile)·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41000	건축용 벽돌	5.4	0	0	0	Tons	없음	0
69049000	기타							
69049010	타일(예: 바닥·가열장치·벽 및 벽 피복재 타일)과 모자이크 타일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9049011	길이와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것	6	0	0	0	Kg	없음	0
69049012	그 밖의 광택 및 장식되지 않은 것으로 다음의 특성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a. 최대 두께는 2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b. 굽힘 강도는 1 제곱센티미터 당 2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c. 견인 강도는 1 제곱센티미터 당 1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d. 살리실산(salicylic acid)에 내성이 있는 것	6	0	0	0	Kg	없음	0
69049019	기타	6	0	0	0	Sq.M eter	없음	0
6904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69050000	기와 · 굴뚝통 · 굴뚝갓 · 굴뚝용 내장재 · 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51000	기와(지붕타일)	12	0	0	0	Kg	없음	5
6905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7
69060000	도자제의 관(管) · 도관(導管) · 흡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0	0	0	0	Kg	없음	0
69070000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 · 노(爐)용 · 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9071000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내로 한정한다)	0	0	0	0	Sq.M eter	없음	0
69079000	기타							
69079010	타일(예: 바닥 · 가열장치 · 벽 및 벽 피복재 타일)							
69079011	장식되지 않은 것으로 다음의 특성에 해당해야 한다. a. 최대 두께는 2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b. 굽힘 강도는 1 제곱센티미터 당 2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c. 견인 강도는 1 제곱센티미터 당 1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d. 살리실산(salicylic acid)에 내성이 있는 것	5.4	0	0	0	Sq.M eter	없음	0
69079019	기타	12	0	0	0	Sq.M eter	없음	7
69079090	기타	8	0	0	0	Sq.M eter	없음	0
69080000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 · 노(爐)용 · 벽용 타일(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908100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내로 한정한다)	0	0	0	0	Sq.M eter	없음	0
69089000	기타							
69089010	타일(예: 바닥·가열장치·벽 및 벽 피복재 타일)	12	0	0	0	Sq.M eter	없음	5
69089090	기타	12	0	0	0	Sq.M eter	없음	7
69090000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69091000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69091100	자기제의 것	0	0	0	0	Kg	없음	0
690912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0	0	0	0	Kg	없음	0
6909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6909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6910000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저수탱크·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00	자기제의 것							
69101010	수세식 기계장치를 갖춘 변기(수동으로 작동되는 유체 펌프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9101020	설거지통·설거지통 받침·변기·욕조·비데·수세식 변기용 저수탱크·소변기	12	0	0	0	Kg	없음	7
69101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7
69109000	기타							
69109010	수세식 기계장치를 갖춘 변기(수동으로 작동되는 유체 펌프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9109020	설거지통·설거지통 받침·변기·욕조·비데·수세식 변기용 저수탱크·소변기	0	0	0	0	Kg	없음	0
69109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7
69110000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							
69111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0	0	0	0	Kg	없음	0
6911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7
691200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Kg	없음	7
69130000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31000	자기제의 것	12	0	0	0	Kg	없음	7
6913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69140000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69141000	자기제의 것							
69141010	스토브(stove)와 가열기	0	0	0	0	Kg	없음	0
69141020	도로용 스터드(stud)[반사장치(cat's eye)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69141030	두께는 1.1밀리미터 이하이고 각 변의 길이가 10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69141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7
69149000	기타							
69149010	스토브(stove)와 가열기							
69149011	등유로 작동되는 것(영구 설치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691490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69149020	도로용 스터드(stud)[반사장치(cat's eye)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6914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7
70010000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유리괴(塊)	0	0	0	0	Kg	없음	0
70020000	유리로 만든 구(球)[제 7018 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21000	구(球)	0	0	0	0	Kg	없음	0
70022000	막대(rod)	0	0	0	0	Kg	없음	0
70023000	관(管)							
70023100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00232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002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0030000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31000	망입(網入)하지 않은 시트(sheet) 유리							
7003120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12	0	0	0	Kg	없음	3
700319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7003200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12	0	0	0	Kg	없음	3
70033000	프로파일(profile)							
70033010	광학유리로 만든 것	0	0	0	0	Sq.M eter	없음	0
70033090	기타(MEX 2)	12	0	0	0	Kg	없음	3
70040000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200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12	0	0	0	Kg	없음	3
70049000	그 밖의 유리	12	0	0	0	Kg	없음	3
70050000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00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10	측면의 값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직사각형인 것(착색 도포한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0051020	두께가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Sq.M eter	없음	0
70051030	엑스선기기에 대한 보호용으로 특수 제작된 납 유리의 것(산화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5 이상이고 두께가 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Sq.M eter	없음	0
70051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70052000	그 밖의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7005210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70052110	측면의 값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직사각형인 것(착색 도포한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0052120	두께가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Sq.M eter	없음	0
700521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70052900	기타							
70052910	측면의 값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직사각형인 것(착색 도포한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0052920	두께가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Sq.M eter	없음	0
70052930	자동차용 오목 안전유리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산업무역부장관이 승인한 유리	0	0	0	0	Kg	없음	0
70052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5
70053000	망입(網入) 유리	12	0	0	0	Kg	없음	5
70060000	제 7003 호·제 7004 호·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70060010	두께가 1 밀리미터 이하이고, 면적이 1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0060030	원형인 것으로서 두께가 1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두께가 지름의 8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0060090	기타							
70060091	광학유리용	0	0	0	0	Kg	없음	0
70060099	기타	12	0	0	0	Kg	없음	0
70070000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1000	강화 안전유리							
70071100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70071110	면세 트랙터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70071111	오목한 것	12	0	0	0	Kg	없음	3
7007111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70071190	기타							
70071191	오목한 것	12	0	0	0	Kg	없음	5
7007119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70071900	기타							
70071910	경화 연마 안전 유리(단면이 250x129 센티미터, 189x129 센티미터, 159x209 센티미터, 159x209 센티미터이고 시트의 두께가 8 밀리미터 또는 10 밀리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Sq.M eter	없음	0
70071920	유리자기(단면이 30x30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불투명하고 섭씨 1,100 도 이상의 연속적인 온도에서 열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Sq.M eter	없음	0
70071930	두께가 4 밀리미터 또는 5 밀리미터인 연마한 시트(sheet)로 모든 면이 0.65 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가정 조리용·보조 오븐용·냉장고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5
70071990	기타							
70071991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12	0	0	0	Kg	없음	5
70071999	기타	12	0	0	0	Kg	없음	5
70072000	접합 안전유리							
70072100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70072110	면세 트랙터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70072111	오목한 것	12	0	0	0	Kg	없음	3
7007211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70072120	방탄인 것(두께가 2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70072190	기타							
70072191	오목한 것	12	0	0	0	Kg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0072199	기타	12	0	0	0	Kg	없음	5
700729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7008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0	0	0	0	Kg	없음	0
70090000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0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70099000	기타							
70099100	틀이 붙지 않은 것	12	0	0	0	Kg	없음	3
70099200	틀이 붙은 것	12	0	0	0	Kg	없음	3
70100000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 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1000	앰플	8	0	0	0	Kg	없음	0
7010200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8	0	0	0	Kg	없음	0
70109000	기타							
70109010	카보이(carboy)·데미존(demi john)(용량이 1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0109020	에어로졸 구조를 갖춘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이들의 부분품	8	0	0	0	Kg	없음	5
70109030	병·단지							
70109031	용량이 0.18 리터 초과 1.5 리터 이하인 것	16.9	0	0	0.05	Kg	없음	7
7010903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0109090	기타							
70109091	용량이 0.15 리터 초과 0.33 리터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70109099	기타	8	0	0	0	Kg	없음	5
70110000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1000	전등용	0	0	0	0	Kg	없음	0
70112000	음극선관용	0	0	0	0	Kg	없음	0
70119000	기타	0	0	0	0	Sq.M eter	없음	0
70130000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 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 7010 호나 제 7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1000	유리 도자제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70132000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22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701328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70133000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33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701337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0134000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과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41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701342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70134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70139000	그 밖의 유리제품							
701391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70139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70140000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 7015 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0150000	시계용 유리나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나 그 세그먼트							
70151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0	0	0	0	Kg	없음	0
701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0160000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셸(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6100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Sq.M eter	없음	0
70169000	기타							
70169010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Kg	없음	0
70169020	타일(예: 바닥·벽 및 벽 피복재 타일)	12	0	0	0	Kg	없음	3
7016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70170000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70171000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0
701720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0179000	기타	6	0	0	0	Kg	없음	0
70180000	유리로 만든 비드(bead) · 모조 진주 · 모조 귀석과 반귀석 ·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1000	유리로 만든 비드(bead) · 모조 진주 · 모조 귀석과 반귀석 ·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0	0	0	0	Kg	없음	0
70182000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12	0	0	0	Kg	없음	3
7018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70190000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 · 직물)							
70191000	슬리버(silver) · 로빙(roving) · 실 · 단연사							
70191100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0191200	로빙(roving)	0	0	0	0	Kg	없음	0
7019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0193000	얇은 시트(sheet)(보일) · 웹(web) · 매트(mat) · 매트리스(mattress) · 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							
70193100	매트(mat)							
70193110	보강된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매트류(matting of strands)	0	0	0	0	Kg	없음	0
70193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0193200	얇은 시트(sheet)(보일)	0	0	0	0	Kg	없음	0
70193900	기타							
70193910	플라스틱 재료와 혼방한 유리섬유로 만든 것							
70193911	두께가 1.3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7019391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01939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0194000	로빙(roving) 직물	0	0	0	0	Kg	없음	0
70195000	그 밖의 직물							
701951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70195110	보강된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0195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0195200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70195210	보강된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01952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019590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0195910	보강된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0195920	구멍을 뚫은 디스크 모양의 것	0	0	0	0	Kg	없음	0
701959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0199000	기타							
70199010	플라스틱 재료와 혼방한 판·시트·박·스트립·밴드·유리섬유로 만든 슬리브 모양인 것으로 두께가 1.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70199020	직조한 여과용 슬리브(woven filtering sleeve)(지름이 15 센티미터 이하이고 금속 링이 삽입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0199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02000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0200010	제 84 류의 기계와 그 부분품(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0200020	파이프·파이프 부속품(예: 커넥터, 엘보 등)·탭·코크·밸브·조정기·열교환기	0	0	0	0	Kg	없음	0
70200030	유리로 만든 구조물(문·창·벽 또는 그 밖의 구조물)	12	0	0	0	Kg	없음	3
70200040	유리로 만든 내부용기[진공 단지(jar)·그 밖의 진공 용기용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7020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1010000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꿰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꿰 것을 포함한다)							
71011000	천연진주	0	0	0	0	Kg	없음	0
71012000	양식진주							
71012100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71012200	가공한 것	0	0	0	0	Kg	없음	0
71020000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71021000	선별하지 않은 것	0	0	0	0	Karat	없음	0
71022000	공업용							
710221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arat	없음	0
71022900	기타	0	0	0	0	Karat	없음	0
71023000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arat	없음	0
71023900	기타	0	0	0	0	Karat	없음	0
71030000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꿰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켤 것을 포함한다)							
71031000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0	0	0	0	Kg	없음	0
71039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9100	루비 · 사파이어 · 에메랄드	0	0	0	0	Kg	없음	0
7103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1040000	합성 ·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이 실로 켤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켤 것을 포함한다)							
71041000	압전기용 석영	0	0	0	0	Kg	없음	0
71042000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10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1050000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 · 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71051000	다이아몬드의 것	0	0	0	0	Karat	없음	0
710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1060000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1000	가루	0	0	0	0	Kg	없음	0
71069000	기타							
71069100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71069200	반가공한 것	0	0	0	0	Kg	없음	0
710700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1080000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81000	화폐용이 아닌 것							
71081100	가루	0	0	0	0	Kg	없음	0
71081200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0	0	0	0	Kg	없음	0
71081300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0	0	0	0	Kg	없음	0
71082000	화폐용	0	0	0	0	Kg	없음	0
7109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110000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 ·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101000	플라티늄(platinum)							
71101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0	0	Kg	없음	0
7110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1102000	팔라듐(palladium)							
71102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0	0	Kg	없음	0
7110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1103000	로듐(rhodium)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1103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0	0	Kg	없음	0
7110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1104000	이리듐(iridium) · 오스뮴(osmium) · 루테튬(ruthenium)							
71104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0	0	Kg	없음	0
7110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111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 · 은 ·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1120000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7112300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0	0	0	0	Kg	없음	0
71129000	기타							
71129100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1129200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112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1130000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3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1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110	클래드(clad)한 것(클립과 이와 유사한 부착물은 제외한다)	12	0	0	0	Kg	없음	0
71131120	클립과 이와 유사한 부착물	12	0	0	0	Kg	없음	0
71131130	클립이 없는 로프 체인(연마와 광택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11311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71131900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910	클립과 이와 유사한 부착물	12	0	0	0	Kg	없음	0
71131920	클립이 없는 로프 체인(연마와 광택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1131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7113200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71132010	클립과 이와 유사한 부착물	8	0	0	0	Kg	없음	0
71132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1140000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4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1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110	귀금속을 입힌 스푼 · 포크 · 나이프 · 생선용 칼 · 버터용 칼과 이와 유사한 테이블 세트	12	0	0	0	Kg	없음	0
71141120	메달용 블랭크	7.2	0	0	0	Kg	없음	0
71141130	메달	12	0	0	0	Kg	없음	0
71141140	기타(은을 입힌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71141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1141900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910	귀금속을 입힌 스푼 · 포크 · 나이프 · 생선용 칼 · 버터용 칼과 테이블 세트	12	0	0	0	Kg	없음	0
71141920	메달용 금 블랭크	3.6	0	0	0	Kg	없음	0
71141930	메달	12	0	0	0	Kg	없음	0
711419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114200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71142010	은으로 만든 스푼 · 포크 · 나이프 · 생선용 칼 · 버터용 칼과 테이블 세트	12	0	0	0	Kg	없음	0
71142020	메달용 은 블랭크	7.2	0	0	0	Kg	없음	0
71142030	메달용 금 블랭크	3.6	0	0	0	Kg	없음	0
71142040	메달	10.8	0	0	0	Kg	없음	0
71142050	기타(은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1142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1150000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51000	촉매제 [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11590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1160000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 재생한 것)의 제품							
71161000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71161010	목걸이	12	0	0	0	Kg	없음	0
71161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71162000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 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71162010	드로잉 금속와이어와 마노로 만든 실(絲)방적용 가이드용	0	0	0	0	Kg	없음	0
71162020	목걸이	12	0	0	0	Kg	없음	0
71162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71170000	모조 신변장식용품							
7117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71100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10	0	0	0	Kg	없음	0
71171900	기타							
71171910	손목시계 팔찌	12	0	0	0	Kg	없음	0
71171990	기타와 부분품	8	0	0	0	Kg	없음	0
71179000	기타							
71179060	가공처리한	12	0	0	0	Kg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귀갑(龜甲)·아이보리(ivory)·뽕·뿔·자 개(천연 또는 겹쳐진 것) 및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71179070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 ·디자인 펄프 또는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으로 만든 것(다만,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0
71179080	커프슬리브와 그 밖의 장식용 단추와 이들의 부분품	10	0	0	0	Kg	없음	0
71179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1180000	주화							
7118100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	0	0	0	Kg	없음	0
71189000	기타							
71189010	귀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118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010000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블 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11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012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015000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0	0	0	0	Kg	없음	0
72020000	합금철(ferro-alloy)							
72021000	페로망간							
720211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0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022000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2100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 분의 55 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02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02300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0	0	0	0	Kg	없음	0
72024000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41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02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02500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0	0	0	0	Kg	없음	0
72026000	페로니켈(ferro-nickel)	0	0	0	0	Kg	없음	0
7202700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0	0	0	0	Kg	없음	0
7202800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텅스텐(ferro-silico-tungsten)	0	0	0	0	Kg	없음	0
72029000	기타							
72029100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2029200	페로바나듐 (ferro-vanadium)	0	0	0	0	Kg	없음	0
72029300	페로니오븀 (ferro-niobium)	0	0	0	0	Kg	없음	0
7202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03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 [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 분의 99.94 인 철[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31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0	0	0	Kg	없음	0
720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040000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100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72042000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21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04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043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72044000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4100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스탬핑(stamping)(변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7204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045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0	0	0	0	Kg	없음	0
72050000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72051000	알갱이	0	0	0	0	Kg	없음	0
72052000	가루							
72052100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05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060000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 7203 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00	잉곳(ingot)	0	0	0	0	Kg	없음	0
7206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070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7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72071100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071200	기타[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07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072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이상인 것							
72080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100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08200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산세(酸洗)한 것으로 한정한다]							
720825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0826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82700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8300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3600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0837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838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83900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8400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085000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5100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0852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853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85400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8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090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1000	코일 모양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15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91600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917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20918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9200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25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92600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927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928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09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00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 · 도금 ·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0100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11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012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0200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합석판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0300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3010	물결 모양의 것	3.6	0	0	0	Kg	없음	0
72103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04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4100	물결 모양의 것	3.6	0	0	0	Kg	없음	0
72104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0500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Kg	없음	0
72106000	알루미늄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61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Kg	없음	0
72106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07000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0	0	0	0	Kg	없음	0
7210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10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 도금 ·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1000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1300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 [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Tons	없음	0
72111400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Tons	없음	0
72111900	기타	0	0	0	0	Tons	없음	0
72112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							
721123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0	0	0	0	Tons	없음	0
72112900	기타	0	0	0	0	Tons	없음	0
72119000	기타	0	0	0	0	Tons	없음	0
72120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클래드(clad) · 도금 ·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100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Tons	없음	0
7212200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Tons	없음	0
72123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Tons	없음	0
72124000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0	0	0	0	Tons	없음	0
72125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Tons	없음	0
72126000	클래드(clad)한 것	0	0	0	0	Tons	없음	0
72130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1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 리브(rib) · 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0	0	0	0	Tons	없음	0
72132000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72132010	횡단면의 치수가 2,500 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3204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3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32090	기타							
72132091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7.2	0	0	0	Kg	없음	0
72132092	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32093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32094	정사각형 봉(square bar)(횡단면의 각 리브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32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39000	기타							
72139100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72139110	탄소가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 함유된 것	0	0	0	0	Kg	없음	0
72139130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39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39900	기타							
721399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39920	기타(횡단면의 치수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500 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2139940	기타[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39950	기타[횡단면의 어느 한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정사각형 봉(square rod)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39960	기타(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39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40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00	단조(鍛造)한 것							
72141010	횡단면의 치수가 2,500 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41020	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							
7214102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철강의 것	1.8	0	0	0	Kg	없음	0
72141029	기타	1.8	0	0	0	Kg	없음	0
72141090	기타							
721410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치수가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41092	정사각형 봉(square bar)[횡단면의 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41093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7.2	0	0	0	Kg	없음	0
721410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2142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0	0	0	0	Tons	없음	0
72143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72143010	횡단면의 치수가 2,500 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4304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3 을 초과하는 것							
72143041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43042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43043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43044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43045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2143049	기타	1.8	0	0	0	Kg	없음	0
72143050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4305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철강의 것	1.8	0	0	0	Kg	없음	0
72143059	기타	1.8	0	0	0	Kg	없음	0
72143090	기타							
72143091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43092	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	1.8	0	0	0	Kg	없음	0
72143093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치수가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43094	정사각형 봉(square bar)[횡단면의 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43099	기타	7.2	0	0	0	Kg	없음	0
72149000	기타							
721491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72149110	압연한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49120	기타(횡단면의 치수가 2,500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49190	기타							
72149191	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49192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491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49900	기타							
72149910	압연한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49920	압연하지 않은 것(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49930	기타(횡단면의 치수가 2,500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49990	기타							
72149991	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49992	정사각형 봉(square rod)[횡단면의 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49993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499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50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100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51010	냉간(冷間)처리한 정밀 제품[스무스(smooth) · 연마한 표면을 갖는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으로 한정한다]							
7215101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45 이하인 것[횡단면이 원형 또는 정육각형인 것으로서 원형의 지름이 4 밀리미터 이상 101.6 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정육각형의 두 개의 평행한 리브(rib)의 맞변 거리가 6.35 밀리미터 이상 50.8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510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51020	횡단면의 치수가 2,500 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51030	돌기(protr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리브(rib)·홈·딴플(dimple)]으로 된 봉(bar)(꼬임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	0	0	90	Tons	없음	0
72151040	압연한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3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2151041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51042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51045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51046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51047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51049	기타	1.8	0	0	0	Kg	없음	0
72151050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215105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철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151059	기타	1.8	0	0	0	Kg	없음	0
72151090	기타							
721510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51092	정사각형 봉(square bar)[횡단면의 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51093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7.2	0	0	0	Kg	없음	0
721510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215500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55010	냉간(冷間)처리한 정밀 제품[스무스(smooth)·연마한 표면을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7215501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45 이하인 것[횡단면이 원형 또는 정육각형인	7.2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으로서 원형의 지름이 4 밀리미터 이상 101.6 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정육각형의 두 개의 평행한 리브(rib)의 맞변 거리가 6.35 밀리미터 이상 50.8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550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55020	횡단면의 치수가 2,500 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55030	돌기(prot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리브(rib)·홈·딴플(dimple)]으로 된 봉(bar)(꼬임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	0	0	90	Tons	없음	0
72155040	기타							
72155041	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	1.8	0	0	0	Kg	없음	0
72155042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55043	정사각형 봉(square bar)[횡단면의 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55044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7.2	0	0	0	Kg	없음	0
72155049	기타	7.2	0	0	0	Kg	없음	0
72155050	기타(압연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55051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55052	압연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55053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55054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55059	기타	1.8	0	0	0	Kg	없음	0
72155060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0	0	0	Kg	없음	0
72155090	기타							
721550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55092	정사각형 봉(square bar)[횡단면의 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55093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7.2	0	0	0	Kg	없음	0
721550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2159000	기타							
72159010	냉간(冷間)처리한 정밀 제품[스무스(smooth)·연마한 표면을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7215901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45 이하인 것[횡단면이 원형 또는 정육각형인 것으로서 원형의 지름이 4 밀리미터 이상	7.2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101.6 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정육각형의 두 개의 평행한 리브(rib)의 맞변 거리가 6.35 밀리미터 이상 50.8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590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59020	횡단면의 치수가 2,500 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59030	돌기(prot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리브(rib)·홈·딴플(dimple)]으로 된 봉(bar)(꼬임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0	0	100	Tons	없음	0
72159040	기타[압연한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3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2159041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59042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59045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59046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59047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59049	기타	1.8	0	0	0	Kg	없음	0
72159050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5905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철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159059	기타	1.8	0	0	0	Kg	없음	0
72159090	기타							
721590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59092	정사각형 봉(square bar)[횡단면의 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72159093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7.2	0	0	0	Kg	없음	0
721590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2160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61000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6200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2100	엘(L)형강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2162200	티(T)형강	0	0	0	0	Kg	없음	0
72163000	유(U)형강 · 아이(I)형강 ·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3100	유(U)형강	0	0	0	0	Kg	없음	0
72163200	아이(I)형강	0	0	0	0	Kg	없음	0
72163300	에이치(H)형강	0	0	0	0	Kg	없음	0
7216400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6500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66000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661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2166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69000	기타							
721691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0	0	0	0	Kg	없음	0
7216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70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100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217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71090	기타							
721710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지름이 0.6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71092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0	0	0	0	Kg	없음	0
72171093	기타(산업무역부장관이 해당 물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710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2172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72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72090	기타							
721720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지름이 0.6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72092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0	0	0	0	Kg	없음	0
72172093	기타(산업무역부장관이 이들 물품이 산업플랜트에서 납땜 및 용접하지 않은 망을 제조하기 위한 것 또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21720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217300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73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73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79000	기타							
72179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79090	기타							
721790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지름이 0.6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79092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0	0	0	0	Kg	없음	0
72179093	기타(산업무역부장관이 해당 물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790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2180000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0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89000	기타							
721891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218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19000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1000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1100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912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913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91400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92000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72192100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1922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923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92400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93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931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93200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93300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21934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935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19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0000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1000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011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2012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202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7220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1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20000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72221000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211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2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2200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23000	그 밖의 봉	0	0	0	0	Kg	없음	0
72224000	형강(形鋼)	0	0	0	0	Kg	없음	0
7223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iv. 그 밖의 합금강, 합금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中空) 드릴봉	0	0	0	0	Kg	없음	0
72240000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0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2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50000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51000	규소전기강의 것							
722511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0	0	0	Kg	없음	0
7225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5300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5400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5500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59000	기타							
7225910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Kg	없음	0
722592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도포한 것							
7225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60000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61000	규소전기강의 것							
72261100	방향성(方向性)인 것							
72261110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							
72261111	돌기(prot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리브(rib)·홈·딴플(dimple)]으로 된 것	9	0	0	90	Tons	없음	0
72261113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61114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61116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611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61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61900	기타							
72261910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							
72261911	돌기(prot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리브(rib)·홈·딴플(dimple)]으로 된 것	9	0	0	90	Tons	없음	0
72261913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61914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61916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619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61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62000	고속도강의 것							
72262010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							
72262011	돌기(prot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리브(rib)·홈·딴플(dimple)]으로 된 것	9	0	0	90	Tons	없음	0
72262013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62014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62015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262016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620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62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69000	기타							
72269100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2269110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							
72269111	돌기(prot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 · 리브(rib) · 홈 · 딤플(dimple)] 으로 된 것	9	0	0	90	Tons	없음	0
72269113	강으로 된 것[하나 이상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한도(탄소 100 분의 0.6 · 크로뮴 100 분의 0.5 · 니켈 100 분의 0.5 · 몰리브데늄 100 분의 0.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69114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69115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69116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269117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691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69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692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69210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							
72269211	돌기(prot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 · 리브(rib) · 홈 · 딤플(dimple)] 으로 된 것	9	0	0	90	Tons	없음	0
72269213	강으로 된 것[하나 이상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한도(탄소 100 분의 0.6 · 크로뮴 100 분의 0.5 · 니켈 100 분의 0.5 · 몰리브데늄 100 분의 0.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69214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69215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69216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269217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692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692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69900	기타							
72269910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							
72269911	돌기(prot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 · 리브(rib) · 홈 · 딤플(dimple)] 으로 된 것	9	0	0	90	Tons	없음	0
72269913	강으로 된 것[하나 이상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한도(탄소 100 분의 0.6 · 크로뮴 100 분의 0.5 · 니켈 100 분의 0.5 · 몰리브데늄 100 분의 0.1) 이상인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으로 한정한다]							
72269914	황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황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69915	황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69916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269917	황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699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69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70000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71000	고속도강의 것							
72271010	돌기(protr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리브(rib)·홈·딴플(dimple)]으로 된 봉(bar)(꼬임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	0	0	90	Tons	없음	0
72271090	기타							
72271092	황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황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71093	황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71094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271095	황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71096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71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72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72272010	돌기(protr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리브(rib)·홈·딴플(dimple)]으로 된 봉(bar)(꼬임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	0	0	90	Tons	없음	0
72272090	기타							
72272092	황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황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72093	황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72094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272095	황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72096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72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2279000	기타							
72279010	돌기(prot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리브(rib)·홈·딴플(dimple)] 으로 된 봉(bar)(꼬임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	0	0	90	Tons	없음	0
72279090	기타							
72279091	강으로 된 것[하나 이상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한도(탄소 100 분의 0.6·크로뮴 100 분의 0.5·니켈 100 분의 0.5·몰리브데늄 100 분의 0.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79092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79093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79094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279095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79096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79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80000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1000	고속도강의 봉							
72281010	돌기(prot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리브(rib)·홈·딴플(dimple)] 으로 된 봉(bar)(꼬임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	0	0	90	Tons	없음	0
72281090	기타							
72281092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1093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1094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281095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81096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1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82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72282010	돌기(prot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리브(rib)·홈·딴플(dimple)] 으로 된 봉(bar)(꼬임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2282011	송전선(electricity power line) 지지용 콘크리트 기둥 제조에 사용되는 것(조건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2282019	기타	9	0	0	90	Tons	없음	0
72282090	기타							
72282092	황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황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2093	황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2094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282095	황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82096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2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8300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83010	돌기(protr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 · 리브(rib) · 홈 · 딩플(dimple)]으로 된 봉(bar)(꼬임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2283011	송전선(electricity power line) 지지용 콘크리트 기둥 제조에 사용되는 것(조건부)	0	0	0	0	Kg	없음	0
72283019	기타	9	0	0	90	Tons	없음	0
72283090	기타							
72283091	강으로 된 것[하나 이상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한도(탄소 100 분의 0.6 · 크롬 100 분의 0.5 · 니켈 100 분의 0.5 · 몰리브데늄 100 분의 0.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3092	황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황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3093	황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3094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283095	황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83096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3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84000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84010	돌기(protr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 · 리브(rib) · 홈 · 딩플(dimple)]으로 된 봉(bar)(꼬임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2284011	송전선(electricity power line) 지지용 콘크리트 기둥 제조에 사용되는 것(조건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2284019	기타	9	0	0	90	Tons	없음	0
72284090	기타							
72284091	강으로 된 것[하나 이상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한도(탄소 100 분의 0.6 · 크로뮴 100 분의 0.5 · 니켈 100 분의 0.5 · 몰리브데늄 100 분의 0.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4092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4093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 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4094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284095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84096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4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8500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85010	정밀제작(precision made)된 봉[스무스(smooth) · 연마한 표면을 갖으며, 황 100 분의 0.15 부터 100 분의 0.6 까지, 망간 100 분의 0.7 부터 100 분의 1.8 까지, 탄소 최대 100 분의 0.4 까지 함유하는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 또는 정육각형이며 원형 지름이 4 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정육각형(across flat)의 두 개의 평행하는 리브간 간격이 6.35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다만, 크로뮴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봉은 제외한다)]	3.6	0	0	0	Kg	없음	0
72285020	돌기(protr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 · 리브(rib) · 홈 · 딤플(dimple)] 으로 된 봉(bar)(꼬임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0	0	100	Tons	없음	0
72285090	기타							
72285091	강으로 된 것[하나 이상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한도(탄소 100 분의 0.6 · 크로뮴 100 분의 0.5 · 니켈 100 분의 0.5 · 몰리브데늄 100 분의 0.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5092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5093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 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5094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2285095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85096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5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86000	그 밖의 봉							
72286010	돌기(protr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 · 리브(rib) · 홈 · 딤플(dimple)]으로 된 봉(bar)(꼬임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2286011	송전선(electricity power line) 지지용 콘크리트 기둥 제조에 사용되는 것(조건부)	0	0	0	0	Kg	없음	0
72286019	기타	10	0	0	100	Tons	없음	0
72286090	기타							
72286091	강으로 된 것[하나 이상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한도(탄소 100 분의 0.6 · 크로뮴 100 분의 0.5 · 니켈 100 분의 0.5 · 몰리브데늄 100 분의 0.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6092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횡단면의 폭이 두께의 2.5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6093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각 리브(rib)의 길이가 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6094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286095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2286096	기타(지름이 8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6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87000	형강(形鋼)							
72287010	강으로 된 것[하나 이상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한도(탄소 100 분의 0.6 · 크로뮴 100 분의 0.5 · 니켈 100 분의 0.5 · 몰리브데늄 100 분의 0.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2287020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합금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287030	횡단면의 치수가 5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단면이 고체가 아닌 것	0	0	0	0	Kg	없음	0
72287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2288000	중공(中空)드릴봉	0	0	0	0	Kg	없음	0
72290000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72292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0	0	Kg	없음	0
72299000	기타							
72299010	정밀제작(precision made)된 선[스무스(smooth) · 연마한 표면을 갖으며, 황 100 분의 0.15 부터 100 분의 0.6 까지, 망간 100 분의 0.7 부터 100 분의 1.8 까지, 탄소 최대 100 분의 0.4 까지 함유하는	3.6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 또는 정육각형이며 원형 지름이 4 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정육각형(across flat)의 두 개의 평행하는 리브간 간격이 6.35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다만, 크로뮴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봉은 제외한다)]							
72299020	돌기(protruberance)나 톱니 모양[예: 범프(bump)·리브(rib)·홈·딴플(dimple)] 으로 된 선(線)(꼬임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고속도강의 것은 제외한다)	9	0	0	90	Tons	없음	0
7229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010000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73011000	널말뚝(sheet piling)	0	0	0	0	Kg	없음	0
73012000	형강(形鋼)	0	0	0	0	Kg	없음	0
73020000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체크레일(check- 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로스 타이)·이음매판(fis- h- plate)·좌철(座鐵)·좌철(座鐵)쌓기·밑판 (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받침판 (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21000	레일(rail)	0	0	0	0	Kg	없음	0
7302300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0	0	0	0	Kg	없음	0
730240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0	0	0	0	Kg	없음	0
730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0300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12	0	0	0	Kg	없음	3
730400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 目)으로 한정한다]							
73041000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411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304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042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튜빙·드릴파이프							
730422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0	0	0	0	Kg	없음	0
73042300	그 밖의 드릴파이프	0	0	0	0	Kg	없음	0
730424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한정한다)							
7304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043000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31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0	0	Kg	없음	0
7304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044000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41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0	0	Kg	없음	0
730449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045000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51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0	0	Kg	없음	0
73045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0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05000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51000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51100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0	0	0	0	Kg	없음	0
730512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305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052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0	0	0	0	Kg	없음	0
73053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53100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0	0	0	0	Kg	없음	0
7305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0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06000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73061000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611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73061900	기타							
73061910	횡단면이 원형인 것							
73061911	비합금강의 것	8	0	0	0	Kg	없음	0
73061912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730619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0619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062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과 튜빙							
730621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2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3062900	기타							
73062910	횡단면이 원형인 것							
73062911	비합금강의 것	7.2	0	0	0	Kg	없음	0
73062912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730629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0629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063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6304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3063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064000	경제부장관이 이들 물품을 생산공정용 원재료로 승인한 경우(다만, 건축용·그 밖의 건설용은 제외한다)							
73064010	경제부장관이 이들 물품을 생산공정용 원재료로 승인한 경우(다만, 건축용·그 밖의 건설용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3064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065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3066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73066100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7306611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73066120	제 72 류 주 제 1 호바목의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3066190	기타							
73066191	둘레가 56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3066192	경제부장관이 이들 물품을 생산공정용 원재료로 승인한 경우(다만, 건축용·그 밖의 건설용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30661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066900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7306691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73066920	제 72 류 주 제 1 호바목의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3066990	기타							
73066991	둘레가 56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3066992	경제부장관이 이들 물품을 생산공정용 원재료로 승인한 경우(다만, 건축용·그 밖의 건설용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30669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069000	기타							
7306901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3069020	제 72 류 주 제 1 호바목의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3069090	기타							
73069091	경제부장관이 이들 물품을 생산공정용 원재료로 승인한 경우(다만, 건축용·그 밖의 건설용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30690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070000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3071000	주조한 연결구류							
730711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12	0	0	0	Kg	없음	3
73071900	기타							
73071910	소스매터리얼(source material)로 만든 것	8	0	0	0	Kg	없음	0
73071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730720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72100	플랜지(flange)							
73072110	블랭크(blank)	0	0	0	0	Kg	없음	0
73072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072200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73072210	블랭크(blank)	0	0	0	0	Kg	없음	0
730722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0723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73072310	블랭크(blank)	0	0	0	0	Kg	없음	0
7307232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072900	기타							
73072910	블랭크(blank)	0	0	0	0	Kg	없음	0
7307292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079000	기타							
73079100	플랜지(flange)							
73079110	중량이 25 킬로그램 이하인 것	11.9	0	0	0.11	Kg	없음	0
73079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079200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73079210	제 72 류 주 제 1 호바목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3079220	각 중량이 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3079230	강화 블랭크(blank)	0	0	0	0	Kg	없음	0
730792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0793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73079310	제 72 류 주 제 1 호바목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3079330	강화 블랭크(blank)	0	0	0	0	Kg	없음	0
73079340	관(管)용 엘보(elbow)·유파이프(U pipe)·아치(arche)·앵글(angle)(내부지름 이 48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합금강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Kg	없음	3
7307939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3079391	각 중량이 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307939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079900	기타							
73079910	관(管)용 엘보(elbow) · 유파이프(U pipe) · 아치(arche) · 앵글(angle)에 사용되는 강화 블랭크(blank)(내부지름이 48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합금강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3079920	관(管)용 엘보(elbow) · 유파이프(U pipe) · 아치(arche) · 앵글(angle)(내부지름이 48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합금강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Kg	없음	3
73079930	제 72 류 주 제 1 호바목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3079950	강화 블랭크(blank)	0	0	0	0	Kg	없음	0
73079990	기타							
73079991	각 중량이 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307999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080000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 수문 · 탑 · 격자주(格子柱) · 지붕 · 지붕틀 ·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 셔터 · 난간 ·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 · 대 · 봉 · 형재(形材) · 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1000	다리와 교량							
73081010	선박용 특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구성된 것	0	0	0	0	Kg	없음	0
73081090	기타	10.5	0	0	0	Kg	없음	0
73082000	탑과 격자주(格子柱)							
73082010	선박용 특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구성된 것	0	0	0	0	Kg	없음	0
73082090	기타	10.5	0	0	0	Kg	없음	0
73083000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73083010	유리가 설치된 것							
73083011	제 7008 호의 유리로 만든 것(흡수층 · 반사층 · 무반사층을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9.5	0	0	0	Kg	없음	0
73083012	소호 제 7007.2999 호의 유리로 만든 것	9.5	0	0	0	Kg	없음	0
73083013	기타(흡수층 · 반사층 · 무반사층을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9.5	0	0	0	Kg	없음	0
73083019	기타	10.5	0	0	0	Kg	없음	0
73083090	기타	10.5	0	0	0	Kg	없음	0
73084000	비계(飛階) · 차단기 · 지주 · 광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0	0	0	0	Kg	없음	0
73089000	기타							
73089010	선실 문 · 광산구멍(mine opening)용 틀 및 상부구조 · 수문 · 선창 · 부두 · 방파제(마린 몰) · 등대용 상부구조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3089020	선박용 특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구성된 것	0	0	0	0	Kg	없음	0
73089030	유리가 설치된 구조물							
73089032	제 7008 호의 유리로 만든 것 (흡수층 · 반사층 · 무반사층을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10.8	0	0	0	Kg	없음	0
73089033	소호 제 7007, 2999 호의 유리로 만든 것	10.8	0	0	0	Kg	없음	0
73089034	기타 (흡수층 · 반사층 · 무반사층을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10.8	0	0	0	Kg	없음	0
73089039	기타	12	0	0	0	Kg	없음	5
73089040	철근 콘크리트용의 것	9.5	0	0	0	Kg	없음	0
73089090	기타							
73089091	토지 고정 (land fixing) 용 강 (steel) 으로 만든 벨트 (양면에 날이 붙은 것으로서 길이가 3 미터 이상 폭이 8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30890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09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09001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0
7309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1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 · 통 · 드럼 · 캔 · 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100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8	0	0	0	Kg	없음	0
73102000	용적이 50 리터 미만인 것							
73102100	납땜이나 크림핑 (crimping) 으로 봉합되는 통	8	0	0	0	Kg	없음	0
731029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110000	철강으로 만든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3110020	용접하지 않은 것 (길이가 7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바깥지름이 2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3110090	기타							
73110091	압축용 프로판 가스 용기 (용적이 5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0	0	0	Kg	없음	0
73110092	압축용 석유 가스 용기 (용적이 최대 20 리터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2	0	0	0	Kg	없음	0
73110093	기타 (용적이 15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0	0	0	Kg	없음	0
73110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3120000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 엮은 밴드 · 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00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73121010	콘크리트 보강용 세븐 와이어 스트랜드(seven wire strand)(탄소의 함유량이 전 총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3121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1290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1300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銑) · 대 · 평선을 끈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끈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10	0	0	0	Kg	없음	0
73140000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 · 그릴 · 망 · 울타리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73141000	직조한 클로스(cloth)							
73141200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141210	산업용 기계용으로 사용되는 것[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폭이 12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2. 엔드리스(endless)인 것 3. 길이 1 인치 당 오픈닝(opening) 수가 15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3141220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 · 컨베이어용 벨트 · 리프팅(lifting)용 벨트	0	0	0	0	Kg	없음	0
731412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141400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141410	산업용 기계용으로 사용되는 것[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폭이 12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2. 엔드리스(endless)인 것 3. 길이 1 인치 당 오픈닝(opening) 수가 15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3141420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 · 컨베이어용 벨트 · 리프팅(lifting)용 벨트	0	0	0	0	Kg	없음	0
731414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141900	기타							
73141910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 · 컨베이어용 벨트 · 리프팅(lifting)용 벨트	5.4	0	0	0	Kg	없음	0
73141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73142000	그릴 · 망 · 울타리 [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3142010	총 · 망 · 체인링크(chain link) 울타리(다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것은 제외한다. a.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b.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	9	0	0	0	Tons	없음	0
73142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143000	그 밖의 그릴 · 망 ·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1431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10	0	0	0	Kg	없음	0
7314390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144000	그 밖의 클로스(cloth) · 그릴 · 망 · 울타리							
731441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10	0	0	0	Kg	없음	0
731442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10	0	0	0	Kg	없음	0
73144900	기타							
73144910	산업용 기계용으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폭이 12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2. 엔드리스(endless)인 것 3. 길이 1 인치 당 오픈(opening) 수가 15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3144990	기타							
73144991	컨베이어용 벨트와 철강으로 만든 벨트	10	0	0	0	Kg	없음	0
7314499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14500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7	0	0	0	Kg	없음	0
73150000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73151000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과 그 부분품							
73151100	롤러체인(roller chain)							
73151110	주조 · 강화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다만, 소호 제 1180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3151180	모터 차량용의 것[철도로 이동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면세 트랙터를 제외한다](반사장치를 제외한다)	10	0	0	0	Kg	없음	0
731511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151200	그 밖의 체인							
73151210	주조 · 강화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다만, 소호 제 1280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3151280	모터 차량용의 것[철도로 이동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면세 트랙터를 제외한다](반사 장치를 제외한다)	10	0	0	0	Kg	없음	0
731512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151900	부분품							
73151910	주조 · 강화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0	0	0	0	Kg	없음	0
731519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152000	스키드체인(skid chain)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3158000	그 밖의 체인							
73158100	스터드링크(stud-link)							
73158110	주조·강화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다만, 소호 제 8180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3158120	미터당 중량이 2.5 킬로그램 이하인 것(탄소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Kg	없음	0
73158180	모터 차량용의 것[철도로 이동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면세 트랙터를 제외한다](반사 장치를 제외한다)	10	0	0	0	Kg	없음	0
73158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1582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73158210	주조·강화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다만, 소호 제 8280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3158220	미터당 중량이 2.5 킬로그램 이하인 것(탄소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Kg	없음	0
73158280	모터 차량용의 것[철도로 이동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면세 트랙터를 제외한다](반사 장치를 제외한다)	10	0	0	0	Kg	없음	0
731582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158900	기타							
73158910	주조·강화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다만, 소호 제 8980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3158920	미터당 중량이 2.5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탄소를 함유한 것(다만, 소호 제 898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Kg	없음	0
73158980	모터 차량용의 것[철도로 이동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면세 트랙터를 제외한다]	10	0	0	0	Kg	없음	0
73158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159000	그 밖의 부분품							
73159010	주조·강화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0	0	0	0	Kg	없음	0
73159020	최종 부분품(한 개의 중량이 0.5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Kg	없음	0
73159030	그 밖의 체인 부분품(미터당 중량이 2.5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탄소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Kg	없음	0
7315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1600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73170000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73170010	카드(card)·코움(comb)이나 이와 유사한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방적가공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73170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180000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 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 (cotter- 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1000	나선가공한 제품							
73181100	코치 스크루(coach screw)	8	0	0	0	Kg	없음	0
73181200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10	0	0	0	Kg	없음	0
73181300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12	0	0	0	Kg	없음	0
73181400	셀프타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10	0	0	0	Kg	없음	0
73181500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12	0	0	0	Kg	없음	0
73181600	너트(nut)	0	0	0	0	Kg	없음	0
7318190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73182000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73182100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0	0	0	0	Kg	없음	0
73182200	그 밖의 와셔(washer)	0	0	0	0	Kg	없음	0
73182300	리벳(rivet)	12	0	0	0	Kg	없음	3
73182400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12	0	0	0	Kg	없음	0
7318290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73190000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돛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4000	안전핀과 그 밖의 핀	10	0	0	0	Kg	없음	0
73199000	기타							
73199010	특수 점자(braille) 필기용	0	0	0	0	Kg	없음	0
73199020	수편침이나 수바늘	6	0	0	0	개별	없음	0
73199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20000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00	판상 스프링과 그 판							
732010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Kg	없음	0
73201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202000	나선용 스프링							
73202010	구리를 도금한 원형의 선(線)(지름이 1.5 밀리미터 초과 4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Kg	없음	0
73202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1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은 제외한다]							
73202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209000	기타							
73209010	구리로 도금한 원형의 선(round copper plated wire)(지름이 1.5 밀리미터 초과 4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9	0	0	0	Kg	없음	0
73209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73209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210000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양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 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3211000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11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0	0	0	0	개별	없음	0
73211200	액체연료용	0	0	0	0	개별	없음	0
732119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73218000	그 밖의 기구							
732181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0	0	0	0	개별	없음	0
73218200	액체연료용	0	0	0	0	개별	없음	0
732189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73219000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73220000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양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73221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100	주철로 만든 것	12	0	0	0	Kg	없음	3
732219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7322900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73230000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100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10	0	0	0	Kg	없음	0
73239000	기타							
732391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가 아닌 것	12	0	0	0	Kg	없음	3
732392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12	0	0	0	Kg	없음	3
73239300	스테인리스강의 것	12	0	0	0	Kg	없음	5
732394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12	0	0	0	Kg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32399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73240000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0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73242000	목욕통							
73242100	주철로 만든 것(범람재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0	0	0	개별	없음	0
7324290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73249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73249010	설거지통 · 설거지통 받침대 · 변기통 · 비데 · 샤워트레이(shower tray) 및 이들의 부분품	10	0	0	0	개별	없음	0
73249020	소호 제 1000 호 또는 제 2000 호의 물품에 사용되는 부분품	10	0	0	0	Kg	없음	0
73249090	기타 및 부분품	10	0	0	0	Kg	없음	0
7325000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1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73251010	상하수도용 · 위생용 · 통신용 · 전기용 · 지하 용에 사용되는 제어기의 링(ring) · 커버(cover) · 프레임(frame), 보도용 연석(curb) · 빗물드레이닝(rain water draining)용 프레임(frame)과 그리드(grid)	12	0	0	0	Kg	없음	3
73251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259000	기타							
732591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Kg	없음	0
73259900	기타							
73259910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야금(冶金)용의 도가니	8	0	0	0	Kg	없음	0
732599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26000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1000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611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Kg	없음	0
73261900	기타							
73261910	선박용 특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73261920	철강으로 만든 와이어 로프(wire rope) 연결구류							
73261921	각 연결구류의 중량이 0.5 킬로그램 이하인 것	10	0	0	0	Kg	없음	0
7326192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261930	송전선용 제품용 부속품과 절연용 고전압 부속품[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미리 성형되어 외장이 장갑된(armored) 막대, 송전선 접합용 조인트, 절연용 서스펜션 링(suspension ring)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7326194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1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은 제외한다]							
732619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26200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73262010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 컨베이어용 벨트와 리프팅 벨트							
73262011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3262019	기타	4	0	0	0	Kg	없음	0
73262020	벨트용 커넥터	0	0	0	0	Kg	없음	0
7326203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73262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269000	기타							
73269010	시트와 플레이트, 스트립 후드와 튜브로 만든 제품							
73269011	개인용 용기	12	0	0	0	Kg	없음	3
73269013	도로용 스티드(stud)[반사장치(cat's eye)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73269014	폭이 32 밀리미터 이하이며 두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포장 밴드	3.6	0	0	0	Kg	없음	0
73269015	메탈 배럴의 라벨용 링	0	0	0	0	Kg	없음	0
73269016	가구	12	0	0	0	Kg	없음	3
73269017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Kg	없음	0
73269018	공구박스	8	0	0	0	Kg	없음	0
7326901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3269020	와셔와 스틸 링[아래의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각 중량이 3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철로 만든 것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합금 원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탄소를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3269030	선박용 특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73269040	철강으로 만든 와이어 로프 연결구류							
73269041	각 연결구류의 중량이 0.5 킬로그램 이하인 것	10	0	0	0	Kg	없음	0
7326904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269050	송전선용 제품용 부속품과 절연용 고전압 부속품[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s), 미리 성형되어 외장이 장갑된(armored) 막대, 위쪽의 전선 접합용 조인트, 절연용 서스펜션 링(suspension rings)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73269060	보빈(bobbin)·스풀(spool)·콕(cop)·콘(c one)·코어, 재봉사 지지대와 유사한 방직기계용 캐리어	0	0	0	0	Kg	없음	0
73269070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 컨베이어용 벨트와 리프팅 벨트, 벨트용 커넥터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3269071	봉으로 만든 벨트(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	0	0	0	Kg	없음	0
73269072	그 밖의 벨트	0	0	0	0	Kg	없음	0
73269079	벨트용 커넥터	0	0	0	0	Kg	없음	0
73269080	제 7310 호의 용기의 부분품							
73269081	탭 밸류 하우징	0	0	0	0	Kg	없음	0
7326908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3269090	기타							
73269091	제 7309 호와 제 7311 호의 용기나 탱크의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73269092	주형	10	0	0	0	Kg	없음	0
73269093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8	0	0	0	Kg	없음	0
73269094	룸와이어 종광(heald)의 제조용 듀플렉스 와이어	0	0	0	0	Kg	없음	0
73269095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Kg	없음	0
73269096	사다리	10	0	0	0	Kg	없음	0
73269097	기타	0	0	0	0	Kg	없음	0
7326909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4010000	구리의 매트(mat), 시멘트동(침전동)	0	0	0	0	Kg	없음	0
74020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0	0	0	0	Kg	없음	0
74030000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031000	정제한 구리							
740311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0	0	0	0	Kg	없음	0
74031200	와이어바(wire-bar)	0	0	0	0	Kg	없음	0
74031300	빌릿(billet)	0	0	0	0	Kg	없음	0
7403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032000	구리합금							
74032100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0	0	0	0	Kg	없음	0
74032200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0	0	0	0	Kg	없음	0
74032900	그 밖의 구리합금[제 7405 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404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7405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0	0	0	0	Kg	없음	0
74060000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4061000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0	0	0	0	Kg	없음	0
74062000	충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	0	0	0	Kg	없음	0
74070000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1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71010	봉(지름이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4071020	냉간인발한 것의 지름이 7.93 밀리미터(5/16") 이하인 것	3.6	0	0	0	Kg	없음	0
74071030	그 밖의 막대	0	0	0	0	Kg	없음	0
74071090	기타	2	0	0	0	Kg	없음	0
74072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721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72110	중공(中空) 도파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4072120	모터 차량용 중공(中空)바[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740721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74072900	기타							
74072910	중공(中空) 도파관	0	0	0	0	Kg	없음	0
74072920	차량용 중공(中空)바							
7407292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74072929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74072930	그 밖의 중공(中空)봉	6	0	0	0	Kg	없음	0
74072990	기타	2	0	0	0	Kg	없음	0
74080000	구리의 선							
74081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81100	최대 횡단면의 지름이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4081110	냉간인발한 것의 지름이 7.93 밀리미터(5/16") 이하인 것	4	0	0	0	Kg	없음	0
74081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081900	기타							
74081910	지름이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74081990	기타	4	0	0	0	Kg	없음	0
74082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821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2	0	0	0	Kg	없음	0
740822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2	0	0	0	Kg	없음	0
74082900	기타	2	0	0	0	Kg	없음	0
74090000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4091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91100	코일 모양							
74091110	플라스틱 재료나 종이와 판지의 부분품 세트	0	0	0	0	Kg	없음	0
74091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091900	기타							
74091910	플라스틱 재료나 종이와 판지의 부분품 세트	12	0	0	0	Kg	없음	3
74091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092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92100	코일 모양							
74092110	플라스틱 재료나 종이와 판지의 부분품 세트	12	0	0	0	Kg	없음	3
74092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092900	기타							
74092910	플라스틱 재료나 종이와 판지의 부분품 세트	12	0	0	0	Kg	없음	3
74092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093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4093100	코일 모양							
74093110	플라스틱 재료나 종이와 판지의 부분품 세트	10.8	0	0	0	Kg	없음	0
74093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093900	기타							
74093910	플라스틱 재료나 종이와 판지의 부분품 세트	10.8	0	0	0	Kg	없음	0
74093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094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4094010	플라스틱 재료나 종이와 판지의 부분품 세트	10.8	0	0	0	Kg	없음	0
74094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099000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99010	플라스틱 재료나 종이와 판지의 부분품 세트	12	0	0	0	Kg	없음	3
7409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10000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01000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11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41012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4102000	뒷면을 붙인 것							
741021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41022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4110000	구리로 만든 관(管)							
74111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1110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411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112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121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1121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4112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1122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41122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741122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112900	기타							
741129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4112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120000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4121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121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7412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122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22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74122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13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얇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4130010	연선	0	0	0	0	Kg	없음	0
74130020	케이블·브레이트 벨트와 이와 유사한 것							
7413002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74130029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13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4150000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인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 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 (cotter- 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00	못과 압정·제도용 핀·스테인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10	0	0	0	Kg	없음	0
74152000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74152100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10	0	0	0	Kg	없음	0
7415290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4153000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00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10	0	0	0	Kg	없음	0
7415390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4180000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418100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4181010	구리로 만든 가정용에 사용하는 조리용이나 가열용(전자식은 제외한다) 기구와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74181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418200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82010	설거지통·설거지통 받침대·욕조·변기·비데	10	0	0	0	Kg	없음	0
74182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4190000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1000	체인과 그 부분품	12	0	0	0	Kg	없음	0
74199000	기타							
74199100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199110	아래의 물품의 것							
74199111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저장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 유무에 상관없으며, 기계장치나 가열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4	0	0	0	Kg	없음	0
74199112	개인용 용기	10	0	0	0	Kg	없음	0
74199120	송전선용 제품과 절연용 고전압 제품과 그 부분품[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스트레인 클램프(strain clamp), 미리 성형되어 외장이 장갑된(armored) 막대, 송전선 연결용 와이어 조인트, 절연용 서스펜션 링(suspension ring)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74199130	선박용 특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74199140	상수도 네트워크(water network) 상 중양난방이나 온수용 공급용의 것	9	0	0	0	Kg	없음	0
74199150	가열기용(소호 제 9140 호는 제외한다)	9	0	0	0	Kg	없음	0
74199160	주형	7.2	0	0	0	Kg	없음	0
74199170	전기도금용 양극	0	0	0	0	Kg	없음	0
74199190	기타							
74199191	자동차용	10	0	0	0	Kg	없음	0
74199199	기타[주물용이나 가공용(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0
74199900	기타							
74199910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저장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열절연 유무에 상관없으며, 기계장치나 가열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0
74199920	개인용 용기	9	0	0	0	Kg	없음	0
74199930	문·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유리가 부착된 구조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10.8	0	0	0	Kg	없음	0
74199940	송전선용 제품과 절연용 고전압 제품과 그 부분품[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clamp), 스트레인 클램프(strain clamp), 미리 성형되어 외장이 장갑된(armored) 막대, 송전선 연결용 와이어 커넥터, 절연용 서스펜션 링(suspension ring)을 포함한다]							
74199950	선박용 특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74199960	상수도 체계상 중앙난방이나 온수용 공급용의 것	9	0	0	0	Kg	없음	0
74199980	난방용(소호 제 9960 호와 제 9970 호는 제외한다)	10	0	0	0	Kg	없음	0
74199990	그 밖의 물품							
74199991	주형	8	0	0	0	Kg	없음	0
74199992	전기도금용 양극	0	0	0	0	Kg	없음	0
74199993	자동차용	10	0	0	0	Kg	없음	0
74199994	구리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 구리로 만든 익스팬디드메탈	0	0	0	0	Kg	없음	0
74199995	동전 제조용 디스크	0	0	0	0	Kg	없음	0
7419999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5010000	니켈의 매트(mat)·소결(燒結)한 산화니켈·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75011000	니켈의 매트(mat)	0	0	0	0	Kg	없음	0
7501200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0	0	0	0	Kg	없음	0
75020000	니켈의괴(塊)							
75021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	0	0	0	0	Kg	없음	0
75022000	니켈 합금	0	0	0	0	Kg	없음	0
7503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750400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	0	0	0	Kg	없음	0
75050000	니켈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75051000	봉과 프로파일(profile)							
750511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50512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5052000	선							
750521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50522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5060000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75061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5062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5070000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5071000	관(管)							
750711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50712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5072000	관(管) 연결구류	0	0	0	0	Kg	없음	0
75080000	니켈로 만든 그 밖의 제품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508100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 그릴 · 망	0	0	0	0	Kg	없음	0
7508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6010000	알루미늄의 괴(塊)							
7601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0	0	0	0	Kg	없음	0
76012000	알루미늄 합금	0	0	0	0	Kg	없음	0
7602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76030000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31000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0	0	0	0	Kg	없음	0
76032000	충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	0	0	0	Kg	없음	0
76040000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4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41010	은이나 금을 도금한 것	0	0	0	0	Kg	없음	0
76041020	차량용 문 또는 창문에 사용되는 섬유 소재나 고무로 도포된 것	6	0	0	0	Kg	없음	0
76041030	도파관	0	0	0	0	Kg	없음	0
76041050	자동차용							
76041051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 포크리프트(forklift) 또는 면세 트랙터용의 것	8	0	0	0	Kg	없음	0
7604105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6041090	기타							
76041092	원형의 것(동으로 도금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60410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6042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421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76042110	자동차용							
76042111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 포크리프트(forklift) 또는 면세 트랙터용	8	0	0	0	Kg	없음	0
7604211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60421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6042900	기타							
76042910	은이나 금을 도금한 것	0	0	0	0	Kg	없음	0
76042920	차량용 문 또는 창문에 사용되는 섬유 소재나 고무로 도포된 것	6	0	0	0	Kg	없음	0
76042990	기타							
76042991	원형의 것(지름이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압연이나 인발한 것으로 제곱인치당 45,000 파운드를 초과하는 인장강도를 가진 것으로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6042992	기타(원형의 것으로 구리로 도금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60429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6050000	알루미늄의 선							
7605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51100	최대 횡단면의 지름이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605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6052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6052100	최대 횡단면의 지름이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7605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6060000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61000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11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60612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6069000	기타							
760691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60692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76070000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1000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6071100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Kg	없음	0
7607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6072000	뒷면을 붙인 것	0	0	0	0	Kg	없음	0
7608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8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81010	도파관	0	0	0	0	Kg	없음	0
76081020	자동차용							
76081021	면세 트랙터용, 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	8	0	0	0	Kg	없음	0
7608102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6081090	기타							
76081091	무계목(無繼目)(외부 지름이 2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60810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6082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82010	도파관	0	0	0	0	Kg	없음	0
76082020	자동차용							
76082021	면세 트랙터용, 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	8	0	0	0	Kg	없음	0
7608202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6082090	기타							
76082091	무계목(無繼目)(외부 지름이 2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60820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7609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6090020	도파관용 조인트(joint)	0	0	0	0	Kg	없음	0
7609003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6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6090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761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 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01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10	0	0	0	Kg	없음	0
76109000	기타							
76109010	광업용 망원경 지지대	0	0	0	0	Kg	없음	0
76109020	원양 항해선용 부분품과 부속품 형태의 것	0	0	0	0	Kg	없음	0
76109030	유리가 설치된 구조물							
76109031	제 7008 호 유리의 것(흡수층을 포함하고 반사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9	0	0	0	Kg	없음	0
76109032	제 7007.2999 호 유리의 것	9	0	0	0	Kg	없음	0
76109033	기타(흡수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반사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10	0	0	0	Kg	없음	0
7610903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6109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611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0	0	0	Kg	없음	0
7612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1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10	0	0	0	Kg	없음	0
76129000	기타							
76129020	운송용 우유 통(용량이 15 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	0	0	0	Kg	없음	0
76129030	방직용 섬유사 제조용 스피닝 캔(spinning can)	0	0	0	0	Kg	없음	0
76129040	에어로졸 분무기용 캔	10	0	0	0	Kg	없음	5
76129050	용기(제 7611 호의 용적이 2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0	0	0	Kg	없음	0
76129090	기타	8	0	0	0	Kg	없음	3
7613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614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제외한다)							
76141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0	0	0	0	Kg	없음	0
761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615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00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10	0	0	0	Kg	없음	0
7615200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2010	설거지통·설거지통 받침대·욕조·변기·비데	8	0	0	0	Kg	없음	0
76152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7616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1000	못·압정·스테인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76161010	도로용 스티드(stud)[반사장치(cat's eye)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76161020	못·리벳(rivet)(머리부분 아래로 전체 길이가 직선으로 뻗은 것으로 한정한다)·후크	10	0	0	0	Kg	없음	0
76161030	와셔(washer)(지름이 1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6161090	기타							
7616109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Kg	없음	0
7616109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76169000	기타							
76169100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10	0	0	0	Kg	없음	0
76169900	기타							
76169910	상수도 체계[네트워크(network)]상 중앙난방이나 온수용 공급용의 것	9	0	0	0	개별	없음	0
76169920	슬러지(slug)(압축과 폴링에 의한 패키징 튜브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6169930	열풍 분배기(자체 모터로 작동되는 팬 또는 송풍기가 장착된 신선한 또는 조절된 공기 분배기를 포함하며, 그들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10.8	0	0	0	개별	없음	0
76169940	전문가용 용기	6	0	0	0	개별	없음	0
76169960	주조기(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6169970	송전선용 연결구류와 절연용 고전압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연결구류와 그 부분품[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s) 스트레인 클램프(strain clamps), 미리 성형되어 외장이 장갑된(armored) 막대, 송전선 연결용 조인트, 절연용 서스펜션 링(suspension rings)을 포함한다]							
7616998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4	0	0	0	Kg	없음	0
7616999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제품							
76169991	원예와 농업용 비기계적 스프링클러(각 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손 뜨개질 바늘이나 수편침(그들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76169992	주형	10	0	0	0	개별	없음	0
76169993	사다리	10	0	0	0	개별	없음	0
76169994	보빈(bobbin) · 스푼(spool) · 콕(cop) · 코어 · 콘(cone) · 릴 및 방직기계용 유사한 재봉사 지지대	0	0	0	0	개별	없음	0
76169995	원양항해선용 특별한 부속품 및 부분품 형태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76169996	제 7611 호 용기의 부분품	5.4	0	0	0	개별	없음	0
76169997	제 7613 호 용기의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76169998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7616999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78010000	납의 괴(塊)							
78011000	정제한 납	0	0	0	0	Kg	없음	0
78019000	기타							
780191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0	0	0	0	Kg	없음	0
7801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802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78040000	납의 판(sheet) · 스트립 · 박(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8041000	판(sheet) · 스트립 · 박(箔)							
78041100	시트(sheet) · 스트립 · 박[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7804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8042000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	0	0	0	Kg	없음	0
78060000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8060010	납의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線)(선형 미터당 중량이 1.5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	0	0	0	Kg	없음	0
7806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9010000	아연의 괴(塊)							
79011000	합금하지 않은 아연							
790111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790112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79012000	아연 합금	0	0	0	0	Kg	없음	0
7902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79030000	아연의 더스트(dust) · 가루 · 플레이크(flake)							
79031000	아연 더스트(dust)	0	0	0	0	Kg	없음	0
790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79040000	아연의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線)	0	0	0	0	Kg	없음	0
79050000	아연의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박(箔)	0	0	0	0	Kg	없음	0
79070000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0	0	0	Kg	없음	0
80010000	주석의 괴(塊)							
80011000	합금하지 않은 주석							
80011010	주조한 봉(선형 미터당 중량이 1.5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	0	0	0	Kg	없음	0
8001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0012000	주석 합금							
80012010	주조한 봉(선형 미터당 중량이 1.5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	0	0	0	Kg	없음	0
80012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002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80030000	주석의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線)	0	0	0	0	Kg	없음	0
80070000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0	0	0	Kg	없음	0
81010000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11000	가루	0	0	0	0	Kg	없음	0
81019000	기타							
810194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81019600	선	0	0	0	0	Kg	없음	0
810197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8101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1020000	몰리브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21000	가루	0	0	0	0	Kg	없음	0
81029000	기타							
810294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81029500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 · 판 · 시트(sheet) · 스트 립 · 박(箔)	0	0	0	0	Kg	없음	0
81029600	선	0	0	0	0	Kg	없음	0
810297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8102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1030000	탄탈롬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가루	0	0	0	0	Kg	없음	0
8103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810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1040000	마그네슘과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41000	괴(塊)							
810411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8104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1042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8104300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출발(rasping)·연삭설(tuming)·알갱이, 가루	0	0	0	0	Kg	없음	0
810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105000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5200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괴(塊), 가루	0	0	0	0	Kg	없음	0
8105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810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1060000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81070000	카드뮴과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72000	카드뮴의 괴(塊), 가루	0	0	0	0	Kg	없음	0
8107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8107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1080000	티타늄과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2000	티타늄의 괴(塊), 가루	0	0	0	0	Kg	없음	0
8108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8108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1090000	지르코늄과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92000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0	0	0	0	Kg	없음	0
8109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8109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1100000	안티모니와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0100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0	0	0	0	Kg	없음	0
81102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8110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1110000	망간과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81120000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 하프늄·인듐·니오븀(컬럼븀)·레늄·탈륨 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21000	베릴륨							
81121200	괴(塊), 가루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11213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811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1122000	크로뮴							
81122100	괴(塊), 가루	0	0	0	0	Kg	없음	0
811222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8112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1125000	탈륨							
81125100	괴(塊), 가루	0	0	0	0	Kg	없음	0
811252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Kg	없음	0
81125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1129000	기타							
81129200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0	0	0	0	Kg	없음	0
8112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113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82010000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 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울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製材)용 썰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							
82011000	가래와 삽	10	0	0	0	Kg	없음	0
82013000	곡괭이·픽스(picks)·괭이·쇠스랑	10	0	0	0	Kg	없음	0
82014000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82014010	낫과 건조용 커터	0	0	0	0	Kg	없음	0
82014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2015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12	0	0	0	Kg	없음	3
8201600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82016010	가위형태의 절단기 블랭크(단조품 이후의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2016090	기타							
82016091	전지가위	12	0	0	0	Kg	없음	3
8201609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2019000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수공구							
82019010	쇠스랑	10	0	0	0	Kg	없음	0
82019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2020000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1000	수동식 톱	10	0	0	0	Kg	없음	0
82022000	띠톱의 날	0	0	0	0	Kg	없음	0
82023000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82023100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82023110	금속 절단용(지름이 30 밀리미터 이상	1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3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2023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20239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2023910	모서리에 다이아몬드 그라인드 또는 다이아몬드 파우더의 레이어를 장착한 것	10	0	0	0	Kg	없음	0
82023920	지름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이가 없는 블랭크를 제외하며, 이를 가진 소결 금속 카바이드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2023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2024000	체인톱의 날	0	0	0	0	Kg	없음	0
82029000	그 밖의 톱날							
82029100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82029110	이가 없는 것	0	0	0	0	Kg	없음	0
820291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202990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2030000	줄·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 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0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8	0	0	0	Kg	없음	0
8203200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8	0	0	0	Kg	없음	0
8203300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8	0	0	0	Kg	없음	0
82034000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8	0	0	0	Kg	없음	0
82040000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82041000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							
82041100	조절할 수 없는 것	8	0	0	0	Kg	없음	0
82041200	조절할 수 있는 것	8	0	0	0	Kg	없음	0
8204200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0	0	Kg	없음	0
82050000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2051000	드릴링·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12	0	0	0	Kg	없음	3
82052000	망치(hammer, sledge hammer)	12	0	0	0	Kg	없음	0
82053000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12	0	0	0	Kg	없음	3
8205400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12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2055000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5100	가정용 공구	12	0	0	0	Kg	없음	0
82055900	기타							
82055910	스테이플러(개별 무게가 3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Kg	없음	0
82055920	그 밖의 스테이플러							
82055921	사무용	8	0	0	0.63	Kg	없음	0
82055929	기타	8	0	0	0.63	Kg	없음	0
82055930	직물 기계에 사용되는 타이 톤(tying torn) 방직사용 수공구	0	0	0	0	Kg	없음	0
82055990	기타							
82055991	사무용	12	0	0	0	Kg	없음	3
82055999	기타	12	0	0	0	Kg	없음	0
82056000	블로램프(blow lamp)	12	0	0	0	Kg	없음	3
82057000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10	0	0	0	Kg	없음	0
82059000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82059010	스테이플러(개별 무게가 3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Kg	없음	0
82059020	그 밖의 사무용 스테이플러	8	0	0	0.63	개별	없음	0
82059090	기타							
82059091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	12	0	0	0	Kg	없음	3
82059099	기타	12	0	0	0	Kg	없음	0
820600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2060010	스테이플러(개별 무게가 3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9	0	0	0	Kg	없음	0
82060020	그 밖의 사무용 스테이플러	7.2	0	0	0.56	Kg	없음	0
82060030	사무용 공구나 기구	12	0	0	0	Kg	없음	3
82060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82070000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 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 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 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 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인발)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71000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							
82071300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20719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2072000	금속의 인발(인발)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10	0	0	0	Kg	없음	0
82073000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 펀칭(punching)용 공구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2074000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82074010	나사 전조용 공구[가: 나무 스크류 생산용에 사용하는 것, 나: 기타(펼침용 공구를 제외하며 활성 부분이 3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82074020	드레드밀링컷터	0	0	0	0	Kg	없음	0
82074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82075000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82075010	프린트 서킷 생산용 특수화된 자동차 기계용 드릴[각 드릴의 길이가 38.1 밀리미터(1.3 인치), 손잡이(shank) 반지름은 3.175 밀리미터(1/8 인치)이며 드릴 헤드 반지름은 0.1 에서 1 밀리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2075030	돌 또는 콘크리트 드릴링용 유리 드릴의 원재료(길이가 400 밀리미터 이상인 활성 부분품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2075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10
82076000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12	0	0	0	Kg	없음	3
82077000	밀링(milling)용 공구	0	0	0	0	Kg	없음	0
82078000	터닝(turning)용 공구	12	0	0	0	Kg	없음	3
82079000	그 밖의 호환성 공구							
82079010	고속도강으로 만든 캐스트 블랭크(캐스팅 후에 추가적인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밀링커터용으로 하단의 특성을 가진 것이 해당된다. 외부 지름이 20 밀리미터 이상이고 255 밀리미터 이하인 것, 하나의 끝부분에서 다른 끝부분까지 축방향 홀을 가진 것, 각 중량이 4.5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2079020	회전 파일	0	0	0	0	Kg	없음	0
82079030	선반, 셰이핑 머신(shaping machine), 그루빙(grooving)용 공구(가공을 필요로 하는 재료의 제거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의 사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2079040	두 번 용접되지 않은 철막대로부터 만든 드릴용 블랭크(물품의 길이가 4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2079050	절삭 구멍용 공구(컵형태의 톱니날로 구성된 것으로 홀더와 하나의 드릴 비트의 유무에 상관 없으나, 추가적인 드릴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8207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2080000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00	금속 가공용	8	0	0	0	Kg	없음	0
82082000	목재 가공용	0	0	0	0	Kg	없음	0
8208300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2083010	식품산업용	0	0	0	0	Kg	없음	0
82083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2084000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기계의 것							
82084010	농업용	0	0	0	0	Kg	없음	0
82084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2089000	기타							
82089010	고무용 · 담배용이나 가죽용	0	0	0	0	Kg	없음	0
82089020	종이, 직물 또는 플라스틱용	8	0	0	0	Kg	없음	0
82089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2090000	공구용 판 · 봉 · 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82100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총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Kg	없음	0
82110000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 8208 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82111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12	0	0	0.05	개별	없음	3
82119000	기타							
821191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2119110	칼	12	0	0	0.05	개별	없음	3
82119190	손잡이	12	0	0	0	개별	없음	3
821192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82119210	부엌이나 정육점용(분리된 손잡이는 제외한다)	12	0	0	0.05	개별	없음	3
821192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21193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12	0	0	0	개별	없음	3
82119400	칼날							
82119410	연마용 · 광택용이나 도금한 것으로 식탁용 칼 · 부엌칼이나 정육점 칼	12	0	0	0	Kg	없음	3
821194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8211950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12	0	0	0	Kg	없음	3
82120000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21000	면도기	0	0	0	0	개별	없음	0
82122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2129000	그 밖의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21300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0	0	0	0	Kg	없음	0
82140000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 · 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 · 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 · 종이용 칼], 매니큐어 ·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00	종이용 칼 · 편지 개봉기 · 지우개용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칼 · 연필깎이와 그 날							
8214200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821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2150000	스푼 · 포크 · 국자 · 스키머(skimmer) · 케이 크서버(cake-server) · 생선용 칼 · 버터용 칼 · 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2151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215200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0	0	0	0	Kg	없음	0
82159000	기타							
821591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0	0	0	0	Kg	없음	0
821599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301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 · 다이얼식 · 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83011000	자물쇠	0	0	0	0	Kg	없음	0
8301200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12	0	0	0	Kg	없음	3
8301300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12	0	0	0	Kg	없음	3
83014000	그 밖의 자물쇠	0	0	0	0	Kg	없음	0
83015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12	0	0	0	Kg	없음	3
83016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3017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12	0	0	0	Kg	없음	3
8302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 ·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 문 · 계단 · 창 · 블라인드 · 차체 (coachwork) · 마구 · 트렁크 · 장 · 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 · 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1000	경첩	8	0	0	0	Kg	없음	0
83022000	카스터(caster)	8	0	0	0	Kg	없음	0
830230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 ·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3010	모터차량용 [조명시스템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을 제외하며,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83023011	상자덮개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 용기와 그 밖의 용기	8	0	0	0	Kg	없음	0
83023012	제 9401 호에 분류되는 영유아용 기본 고정시트(이러한 목적으로 안전벨트나 고정시스템이 있는 차량에 부착될 수 있는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것으로 한정한다)							
83023019	기타	8	0	0	0	Kg	없음	0
83023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83024000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100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8	0	0	0	Kg	없음	0
83024200	기타(가구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83024900	기타	8	0	0	0	Kg	없음	0
8302500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	0	0	0	Kg	없음	0
83026000	자동도어 폐지기	8	0	0	0	Kg	없음	0
8303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 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83030010	저축 또는 자선상자	12	0	0	0	Kg	없음	3
83030020	철판이나 강판으로 만든 박스(중량이 5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83030030	스트롱룸(strong-room), 스트롱룸(strong- room)용 문, 스트롱룸(strong-room) 내부 도금판	12	0	0	0	Kg	없음	3
83030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8304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	0	0	0	Kg	없음	0
8305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 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리프·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리프·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8305100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0	0	0	0	Kg	없음	0
8305200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12	0	0	0	Kg	없음	3
830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306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3061000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83061010	교회 벨	0	0	0	0	Kg	없음	0
83061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3062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830621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3062110	예배용 장소에 종교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0	0	0	0	Kg	없음	0
830621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3062900	기타							
83062910	예배용 장소에 종교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0	0	0	0	Kg	없음	0
83062920	동으로 만든 것	12	0	0	0	Kg	없음	3
83062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3063000	사진틀 · 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10	0	0	0	Kg	없음	3
8307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1000	철강으로 만든 것							
83071010	도파관	0	0	0	0	Kg	없음	0
83071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307900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3079010	도파관	0	0	0	0	Kg	없음	0
83079020	자동온도조절장치 생산에 사용되는 활동 주름통	0	0	0	0	Kg	없음	0
83079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308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 · 걸쇠가 붙은 프레임 · 버클(buckle) · 버클(buckle)걸쇠 · 훅(hook) · 아이(eye) · 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 신발류 · 차양 · 핸드백 · 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구슬과 스팅글(spangle)							
83081000	훅(hook) · 아이(eye) · 아일릿(eyelet)	12	0	0	0	Kg	없음	3
8308200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12	0	0	0	Kg	없음	3
83089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12	0	0	0	Kg	없음	3
8309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 · 캡 · 뚜껑[병마개 · 스크루캡(screw cap) · 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 · 병용 캡슐 · 나선형 마개 · 마개용 커버 · 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09100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0	0	0	0	Kg	없음	0
83099000	기타							
83099010	금속 용기용 마개, 그들을 위한 마개 커버	0	0	0	0	Kg	없음	0
83099020	뚜껑(금속 용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3099030	폭이 32 밀리미터 이하이며 두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포장용 림	4	0	0	0	Kg	없음	0
83099040	나선형 마개구멍	0	0	0	0	Kg	없음	0
83099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31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 · 명판 · 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3100010	광고용 사인	0	0	0	0	Kg	없음	0
83100020	자동차용	6	0	0	0	Kg	없음	0
83100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83110000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83112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3113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불로 납땜·납접·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8311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4010000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84011000	원자로	0	0	0	0	Kg	없음	0
8401200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01300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 요소(카트리지)	0	0	0	0	Kg	없음	0
84014000	원자로의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020000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4021000	증기발생보일러							
840211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0	0	0	0	Kg	없음	0
840212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8	0	0	0	Kg	없음	0
84021900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8	0	0	0	Kg	없음	0
8402200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	0	0	0	Kg	없음	0
84029000	부분품	8	0	0	0	Kg	없음	0
84030000	중앙난방용 보일러(제 8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1000	보일러	12	0	0	0	개별	없음	3
84039000	부분품	12	0	0	0	Kg	없음	3
84040000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 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1000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0	0	0	0	Kg	없음	0
84042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04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050000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4051000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8405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060000	증기터빈							
84061000	선박추진용 터빈	0	0	0	0	개별	없음	0
84068000	그 밖의 터빈							
84068100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068200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06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070000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1000	항공기용 엔진	0	0	0	0	개별	없음	0
84072000	선박추진용 엔진							
840721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							
84072110	외부출력이 21 마력 이하인 것(전문 낚시 보트에 설치되도록 농업부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072190	기타	4	0	0	0	개별	없음	0
8407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073000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8407310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84073110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40731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407320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것							
84073210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40732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4073300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1,000 시시 이하인 것							
84073310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40733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40734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84073410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40734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4079000	그 밖의 엔진							
84079010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407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08000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1000	선박추진용 엔진	0	0	0	0	개별	없음	0
84082000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082030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4082040	중량이 2,5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082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4089000	그 밖의 엔진							
84089010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408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090000	제 8407 호나 제 8408 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1000	항공기 엔진용	0	0	0	0	Kg	없음	0
84099000	기타							
84099100	볼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							
84099110	특별히 고안된 엔진[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으로 한정한다]	8.5	0	0	0	Kg	없음	0
84099120	선박 엔진 부분품(외부엔진 보트용 부분품을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84099130	엔진 블록과 엔진헤드, 농업용 트랙터의 엔진용 또는 땅고르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 그리고 명시된 것(조건부)	0	0	0	0	Kg	없음	0
84099140	특정한 모양으로 조형된 실린더 라이너 캐스트(추가적인 가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0
84099150	소호 제 8407.9090 호의 엔진에 사용하는 부분품(유사한 자동차용 부분품과 구조와 중량측면에서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4099160	보트 외부 엔진용에 적합한 부분품	8.5	0	0	0	Kg	없음	0
84099190	기타	8.5	0	0	0	Kg	없음	0
84099900	기타							
84099910	특별히 고안된 것[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으로 한정한다]	8.5	0	0	0	Kg	없음	0
84099920	선박 엔진 부분품(보트용 외부엔진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84099930	엔진 블록과 엔진헤드, 농업용 트랙터의 엔진용 또는 땅고르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 그리고 명시된 것(조건부)	0	0	0	0	Kg	없음	0
84099940	특정한 모양으로 조형된 실린더 라이너 캐스트(추가적인 가공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Kg	없음	0
84099950	소호 제 8407.9090 호의 엔진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차량 엔진용 유사 부분품과 구조와 중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4099990	기타	8.5	0	0	0	Kg	없음	0
84100000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01000	수력터빈과 수차							
84101100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01200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101300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09000	부분품 (조정기를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84110000	터보제트 · 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84111000	터보제트							
84111100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11200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12000	터보프로펠러							
84112100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12200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18000	그 밖의 가스터빈							
84118100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18200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19000	부분품							
84119100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0	0	0	0	Kg	없음	0
8411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120000	그 밖의 엔진과 모터							
84121000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0	0	0	0	개별	없음	0
84122000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841221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84122110	모터차량 조향장치 시스템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포크리프트(forklift),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1221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12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23000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841231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10	0	0	0	개별	없음	0
84123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28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29000	부분품							
841290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소호 제 2100 호와 제 3100 호의 제품의 부분품	10	0	0	0	Kg	없음	0
8412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130000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1000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추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31100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413190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2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00 호나 제 8413.19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3000	연료 · 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84133010	모터 차량에 적합한 것[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 면세 트랙터에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30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134000	콘크리트 펌프	0	0	0	0	개별	없음	0
84135000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84135010	피스톤 펌프							
84135011	최대 작동 압력이 제곱 인치당 1,500 파운드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35012	특별히 고안된 것[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면세 트랙터용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5014	기타(자동차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501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5020	다이어프램 펌프							
84135021	면세 트랙터·포크리프트(forklift)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5022	그 밖의 차량용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502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50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6000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84136010	기어 펌프							
84136011	최대 작동 압력이 제곱 인치당 2,500 파운드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36012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면세 트랙터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6014	기타(자동차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601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6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37000	그 밖의 원심펌프							
84137010	면세 트랙터·포크리프트(forklift)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의 엔진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4137020	그 밖의 자동차용	6	0	0	0	개별	없음	0
84137030	금속으로 만든 전동기를 갖춘 것[중량(모터를 포함한다)이 2.5 킬로그램 이하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7040	연속 작동 압력이 99 기압(atmosphere)을 초과하고 중량이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37050	용적이 시간당 17,000 큐빅미터 이상이고 중량이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37060	절대압이 140 수은주 밀리미터(MM/HG) 미만인 음압의 압력의 것으로 중량이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37070	면세 트랙터·포크리프트(forklift)·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	8	0	0	0	개별	없음	0
84137080	기타(자동차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8413709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137091	국가 공급망에 사용되는 물과 연료의 펌핑용 펌프(산업무역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임을 승인하였을 경우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37099	기타	10.5	0	0	0	개별	없음	0
84138000	그 밖의 펌프, 액체엘리베이터							
84138100	펌프							
84138110	이젝터나 인젝터							
84138111	중량이 1,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유닛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38112	증기터빈이나 증기 보일러용에 특별히 사용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38113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트랙터·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811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8130	압축된 공기가 전이되어 작동되는 펌프	10	0	0	0	개별	없음	0
84138190	기타							
84138191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트랙터·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38193	기타(자동차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381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38200	액체엘리베이터	0	0	0	0	개별	없음	0
84139000	부분품							
84139100	펌프의 것							
84139110	소호 제 7020 호의 펌프 바디의 것	12	0	0	0	Kg	없음	3
84139120	소호 제 3010 호, 제 5014 호, 제 5022 호, 제 6014 호, 제 7020 호, 제 7080 호, 제 8113 호와 제 8193 호의 부분품의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84139130	소호 제 7091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Kg	없음	0
84139190	기타	10.5	0	0	0	Kg	없음	0
84139200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10	0	0	0	Kg	없음	0
84140000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1000	진공펌프							
84141010	절대압이 8 수은주 밀리미터(MM/HG)미만인 진공압을 가진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41020	기타[추진용(예: 전기 모터) 수단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141022	총중량이 6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6,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4102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41030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트랙터·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8414109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141092	총중량이 45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3,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41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42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12	0	0	0	개별	없음	3
8414300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84143010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트랙터·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43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44000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10	0	0	0	개별	없음	0
84145000	팬							
84145100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 붕용 팬(출력이 125 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45900	기타							
84145910	서리로부터의 농작물 성장 보호용 공기 혼합 단위	0	0	0	0	개별	없음	0
84145920	각 중량이 50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45930	각 중량이 1,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45990	기타							
84145991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트랙터·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145992	12 볼트의 직류전압(D.C.) 전기모터가 장착된 것(자동차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45993	제 8415 호의 에어컨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송풍기로 전자 엔진, 가속장치와 송풍기 하우스 케이스로 구성된 것(제 8414.5991 호에 특개된 것은 제외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8414599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4146000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4146010	증발(수증기) 수집기나 쿠키후드(가정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46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4148000	기타							
84148010	내연기관용의 것							
84148011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트랙터·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14801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148020	추진용 장치(예: 전동기)을 갖춘 것							
84148021	총중량이 6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4148022	총중량이 6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6,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소호 제 8023 호나 제 8024 호를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148023	총중량이 3,0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6,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제조과정에서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사용하기 위해 산업용 공장에 설치될 것(조건부)으로 한정한다]							
84148024	총중량이 6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전기 추진 모터가 장착된 공기 압축기[유출구의 압력이 200 기압(atmosphere)을 초과하고 3 단계를 달성하는 압축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48025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48090	기타							
84148092	중량이 3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10	0	0	0	개별	없음	3
84148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49000	부분품							
84149010	폐쇄형 또는 반폐쇄형 압축기의 주요 부분품(주물 후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84149020	소호 제 5910 호로 특별히 고안된 것	0	0	0	0	Kg	없음	0
84149030	합성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날개(각각의 유닛의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4149040	소호 제 5991 호나 제 8011 호로 특별히 고안된 것	10.5	0	0	0	Kg	없음	0
84149050	소호 제 5100 호로 특별히 고안된 것	12	0	0	0	Kg	없음	5
84149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3
84150000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1000	창형이나 벽형(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84151010	공기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기[물품을 가공하는 홀에서 사용하기 위해 산업용 공장에 설치된 것이나 군사용 통신 하우징 또는 레이더 하우징을 위해 설치된 것(조건부)으로 한정한다]	9.5	0	0	0	개별	없음	3
84151030	전기 장치를 포함하는 냉각 캐비닛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출력이 시간당 12,000 비티유(btu)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4151040	냉각 출력이 시간당 48,000 비티유(btu) 이하인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4151090	기타	10.5	0	0	0	개별	없음	3
84152000	탐승자용(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4152010	자동차 설치용일 경우 제 8414.5991 호의 것을 제외하며, 관세율 7 퍼센트 이하가 적용되고, 세율이 8 퍼센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인 것으로 한정한다)	10.5	0	0	0	개별	없음	3
84152090	기타	10.5	0	0	0	개별	없음	3
84158000	기타							
841581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10.5	0	0	0	개별	없음	3
841582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158210	공기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기[물품을 가공하는 홀에서 사용하기 위해 산업용 공장에 설치된 것이나 군사용 통신 하우징 또는 레이더 하우징을 위해 설치된 것(조건부)으로 한정한다]	9.5	0	0	0	개별	없음	3
84158230	모바일기구에 설치된다면 제 8427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인용 물품에 사용하는 것(조건부)	9.5	0	0	0	개별	없음	3
84158240	냉각 출력이 시간당 48,000 비티유(btu) 이하인 것							
84158241	전투기용으로 특별히 설치된 것(전기모토 없이 사용하는 압축기의 추진용 에어 터빈을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5824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158290	기타	10.5	0	0	0	Output	없음	3
841583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84158310	공기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기[물품을 가공하는 홀에서 사용하기 위해 산업용 공장에 설치된 것이나 군사용 통신 하우징 또는 레이더 하우징을 위해 설치된 것(조건부)으로 한정한다]	9.5	0	0	0	개별	없음	3
84158340	자동차용(제 8427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모바일 기기를 포함한다)							
84158341	자동차 설치용일 경우, 관세가 7 퍼센트 이하이며 세금이 8 퍼센트 이하인 것 또는 제 8427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모바일 기기로 한정한다(조건부)	10.5	0	0	0	개별	없음	3
84158349	기타	10.5	0	0	0	개별	없음	3
84158350	냉각 출력이 시간당 48,000 비티유(btu) 이하인 것	12	0	0	0	Output	없음	5
84158390	기타	10.5	0	0	0	Output	없음	3
84159000	부분품							
84159010	콘덴서나 콘덴서 유닛							
84159011	자동차용	12	0	0	0	개별	없음	3
84159014	제 9011 호 물품 중 냉각 출력이 시간당 48,000 비티유(btu) 이하인 것	12	0	0	0	Output	없음	3
84159019	기타	10.5	0	0	0	1000 Un.	없음	3
84159020	소호 제 1030 호, 제 1040 호, 제 8240 호와 제 8350 호로 특별히 고안된 것(소호 제 9050 호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4159030	증발기 또는 증발기 유닛, 증발 또는 응축 코일							
84159031	증발기·단단한 플라스틱 커버를 가진 증발기 유닛·차량용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송풍기, 전기모터 확장밸브와 같은 액세서리의 포함여부에 상관 없다), 응축 코일(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과 철로 만들어진 것)(자동차용으로 특별하게	12	0	0	0	개별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고안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5903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159040	머플러 · 흡입 어큐뮬레이터 · 플라스틱 가속장치	0	0	0	0	개별	없음	0
84159050	에어컨 시스템에서 증발 릴(reel) 또는 응축 릴(reel) 생산에 독점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동제 매니폴드(manifold)	0	0	0	0	개별	없음	0
84159090	기타	10.5	0	0	0	개별	없음	3
84160000	액체연료 · 잘게 부순 고체연료 ·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 · 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00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0	0	0	0	개별	없음	0
84162000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163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 · 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169000	부분품	10	0	0	0	개별	없음	0
84170000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1000	배소(焙燒)용 · 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 · 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72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178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79000	부분품	10	0	0	0	Kg	없음	0
84180000	냉장고 · 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00	냉장고 · 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181010	총 용적이 800 리터 이하인 가정용의 것	12	0	0	0	개별	없음	0
84181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182000	가정형 냉장고	12	0	0	0	개별	없음	3
84182100	압축식							
84182110	총 용적이 800 리터 이하인 것	12	0	0	0	개별	없음	0
841821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418290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4183000	체스트형(chest)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4184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4185000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전시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84185010	가정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냉장고에	12	0	0	0	개별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냉동고가 포함된지 여부에 상관없이 총 용적이 800 리터 이하인 것							
84185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186000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 열펌프							
84186100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0
84186900	기타							
84186910	사체 냉동에 적합한 것	10.8	0	0	0	개별	없음	0
84186920	냉각탑	10.8	0	0	0	개별	없음	0
84186930	물이나 음료의 냉장용 전기기구(사무실이나 소매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혼합된 기기유무에 상관없다)	12	0	0	0	개별	없음	0
84186940	운송 중 물품의 냉장을 위한 것으로 차량에 설치가 적합한 냉장 유닛	12	0	0	0	개별	없음	0
84186950	냉장실 설치에 적합한 냉장 유닛	12	0	0	0	개별	없음	3
84186960	응축기가 열교환기인 압축식 유닛							
84186961	액체 냉각 유닛[산업용 공장에 설치되고 제조 공정에만 사용되거나 농작물 처리에 사용되는 경우(조건부)로 한정한다]	9.5	0	0	0	개별	없음	0
84186962	액체 냉각 유닛[냉각 출력이 이 시간당 48,000 비티유(btu)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0
84186965	그 밖의 액체 냉각 유닛	10.5	0	0	0	개별	없음	0
8418696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4186990	기타							
84186994	아이스크림 제조 또는 막대형 아이스크림 제작용 연속 냉동고(냉장 시스템을 포함하여 총 중량이 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8699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4189000	부분품							
841891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12	0	0	0	개별	없음	3
84189900	기타							
84189910	응축기, 응축기 유닛							
84189913	압축기를 포함하지 않는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4189914	냉각 출력이 시간당 48,000 비티유(btu) 이하인 것	12	0	0	0	1000 Un.	없음	3
84189919	기타	10.5	0	0	0	1000 Un.	없음	0
84189920	응축기, 코일 응축기(냉장고나 냉동고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한정한다)	10.5	0	0	0	개별	없음	0
84189930	증발기·증발기 유닛·증발 또는 응축 코일	10.5	0	0	0	개별	없음	0
84189940	단일 용기에 담긴 음료(예: 병이나 캔)의 냉장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으로 중량이 2.5 킬로그램 이하인 것	10.5	0	0	0	개별	없음	0
841899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190000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 ·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 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 [전기가열식(제 851 4 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8419100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4191100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19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92000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193000	건조기							
84193100	농산물용							
84193110	중량이 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931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93200	목재·제지용 펄프 또는 카드보드(cardboard)용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93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94000	증류기나 정류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195000	열교환기							
84195010	판형 열교환기(제 503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95020	중량이 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9503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5	0	0	0	개별	없음	0
84195040	콘덴서 또는 콘덴싱 유닛							
84195041	압축기를 포함하지 않는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4195042	냉각 출력이 시간당 48,000 비티유(btu) 이하인 것	12	0	0	0	1000 Un.	없음	3
84195049	기타	10.5	0	0	0	1000 Un.	없음	0
84195050	증발기·콘덴싱 유닛·응축 코일 또는 증발 코일	12	0	0	0	개별	없음	3
84195090	기타	10.5	0	0	0	개별	없음	0
84196000	기체 액화용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198000	그 밖의 기기							
841981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0	0	0	0	개별	없음	0
84198900	기타							
84198910	배소(焙燒)용 기계(중량이 2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98920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용기, 보일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간접 가열 또는 냉각용의 것으로서 가열 또는 냉각 순환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98921	물이나 음료 냉각용의 것(사무실용 또는 소매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98923	식품이나 음료 제조용의 것(중량이 2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19892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98930	제빵 산업용	0	0	0	0	Tons	없음	0
84198990	기타							
84198991	중량이 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198992	전기나 가스 또는 전기와 가스 방식으로 하는 음식이나 음료 제조용의 것(중량이 2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198993	커피 로스팅 머신	0	0	0	0	개별	없음	0
841989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199000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8420000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0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84201010	제빵 산업용(중량이 2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	0	0	226.2 6	Tons	없음	0
8420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09000	부분품							
84209100	실린더							
84209110	소호 제 1010 호에 해당하는 기계	9	0	0	0	Kg	없음	0
84209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20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21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1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100	크림분리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211200	의류탈수기	10	0	0	0	개별	없음	0
8421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12000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2100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84212110	전기 투석이나 역삼투 방식의 것(유효 표면적이 4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212120	전기 투석이나 역삼투 방식의 것[멤브레인(membrane)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212190	기타[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10	0	0	0	개별	없음	0
842122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10	0	0	0	개별	없음	0
84212300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12	0	0	0	개별	없음	0
84212900	기타							
84212910	자동차용	0	0	0	0	개별	없음	0
84212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13000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3100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12	0	0	0	개별	없음	0
84213900	기타							
84213910	자동차용							
84213911	축매 변환기	12	0	0	0	개별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21391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213920	필터(제 9018 호 · 제 9019 호 · 제 9020 호 · 제 9021 호의 의료산업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213930	공기압축시스템에 적합한 것(소호 제 39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213940	공기조절시스템에 적합한 것(소호 제 39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213950	바이러스 여과용 필터[20 나노미터 푸어(pour)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2139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219000	부분품							
842191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4219110	소호 제 1200 호의 것	10	0	0	0	Kg	없음	0
842191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219900	기타							
84219910	자동차용의 것(소호 제 99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Kg	없음	3
84219920	소호 제 2920 호 또는 소호 제 3920 호의 것	0	0	0	0	Kg	없음	0
84219930	연료 여과용 외부 메탈 재킷(metal jacket)(자동차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42199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4220000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 · 광통 · 상자 · 자루 ·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 봉합용 · 실링(sealing)용 ·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 · 단지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84221000	접시세척기							
84221100	가정형	0	0	0	0	개별	없음	0
8422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2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223000	병 · 광통 · 상자 · 자루 ·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 봉합용 · 실링(sealing)용이나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 · 단지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84223010	용기의 봉합용 · 실링(sealing)용 기계나 공구(열가소성 물질로 만들어진 자루를 포함하며, 개당 중량이 25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223020	탄산 음료용 기계(개당 중량이 2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223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24000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22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230000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 밀리그램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							
84231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8423101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231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232000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12	0	0	0	개별	없음	3
8423300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84233010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233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238000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							
84238100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4238200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238210	건축 자재 혼합물(mixture)에 대한 중량 측정기기(자동적재식 기계장치와 자동 디스펜싱 기계가 장착된 저울 또는 중량 측정기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2382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238900	기타							
84238910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장용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238920	건축 자재 혼합물(mixture)에 대한 중량 측정기기(자동적재식 기계장치와 자동 디스펜싱 기계가 장착된 저울 또는 중량 측정기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2389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239000	각종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240000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424200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84242010	스프레이 건(gun)과 이와 유사한 분무용 기기[분무는 건(gun) 또는 공구의 배출구를 통한 압축공기나 가스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며, 액체 상태 금속의 분무나 정전기식의 것과 두 개 이상의 액체 주입구가 있는 공구는 제외한다]							
84242011	건(gun)과 공구(각 중량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24201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242090	기타							
84242091	가정형	10	0	0	0	개별	없음	0
84242092	세차용	10	0	0	0	개별	없음	0
84242093	금속제품 세척용과 기름 제거용의 것(소호 제 2092 호의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242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43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3010	세차용 기계	10	0	0	0	개별	없음	0
84243020	금속제품 세척용 및 기름 제거용의 기계와 기구(소호 제 30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4243021	모래나 금속 알갱이의 것(개별 중량이 250 킬로그램을 초과하며, 압축기와 시동장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24302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243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48000	그 밖의 기기							
84248100	농업용이나 원예용의 것							
84248110	살수기							
84248111	각 중량이 15 킬로그램 이하인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424811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48120	가정형	10	0	0	0	개별	없음	0
842481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48900	기타							
84248910	에어로졸(aerosol) 분무기	10	0	0	0	개별	없음	0
84248920	자동차용	10	0	0	0	개별	없음	0
84248940	공압 장치용 윤활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248950	공기 습도 변환용 기계 및 기구	12	0	0	0	개별	없음	3
84248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49000	부분품							
84249010	소호 제 8950 호의 것	12	0	0	0	Kg	없음	3
84249020	소호 제 3020 호의 것	10	0	0	0	Kg	없음	0
84249030	소호 제 2011 호의 것	10	0	0	0	Kg	없음	3
84249040	소호 제 8110 호의 것	12	0	0	0	Kg	없음	3
8424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250000	폴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							
84251000	폴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84251100	전동식	0	0	0	0	개별	없음	0
8425190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253000	윈치(winch)							
84253100	전동식							
84253110	광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9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42531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53900	기타							
8425391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원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9	0	0	0	개별	없음	0
842539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254000	잭(jack)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842541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10	0	0	0	개별	없음	0
84254200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hoist)(액압식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25490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260000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84261000	천장주행 크레인·트랜스포터 크레인·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교각(橋脚)형 크레인·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100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84261110	크레인(각 총중량이 100 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261190	기타	7.2	0	0	0	개별	없음	0
842612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0	0	0	0	개별	없음	0
8426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62000	타워크레인(tower crane)	0	0	0	0	개별	없음	0
84263000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84263010	항만 청장이나 이 소호의 목적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교통부 항만 국장이나 그가 승인한 사람으로부터 물품의 적재 또는 하역을 허가받은 크레인(소호 제 1110 호와 제 20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263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6400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84264100	타이어가 달린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4264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69000	그 밖의 기계							
84269100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8	0	0	0	개별	없음	0
84269900	기타							
84269910	데릭(derrick)	0	0	0	0	개별	없음	0
84269920	제 87 류 주 제 2 호에 정의된 트랙터에 조립되거나 장착되는 기계							
84269921	유압식의 것[셔블(shovel) 용량이 1.25 입방미터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269922	기타[트랙터(tractor)와 함께 수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26992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69930	환자를 들거나 운반하기에 적합한 타입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269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70000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4271000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84271010	포크리프트(fork-lift)	0	0	0	0	개별	없음	0
84271011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27101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71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4272000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84272010	포크리프트(fork-lift)	0	0	0	0	개별	없음	0
84272011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27201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72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4279000	그 밖의 작업트럭	6	0	0	0	개별	없음	0
84280000	그 밖의 권양(捲揚)용 · 취급용 · 적하용 · 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 · 에스컬레이터 · 컨베이어 · 텔레페릭 (teleferic)]							
8428100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6	0	0	0	개별	없음	0
8428200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84282010	뉴매틱 컨베이어	0	0	0	0	개별	없음	0
84282090	엘리베이터	6	0	0	0	개별	없음	0
84283000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842831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84283110	엘리베이터	5.4	0	0	0	개별	없음	0
84283190	컨베이어	8	0	0	0	개별	없음	0
84283200	그 밖의 버켓형							
84283210	엘리베이터	6	0	0	0	개별	없음	0
84283290	컨베이어	0	0	0	0	개별	없음	0
84283300	그 밖의 벨트형							
84283310	엘리베이터	6	0	0	0	개별	없음	0
84283390	컨베이어	0	0	0	0	개별	없음	0
84283900	기타							
84283910	엘리베이터	6	0	0	0	개별	없음	0
84283990	컨베이어	0	0	0	0	개별	없음	0
8428400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6	0	0	0	개별	없음	0
84286000	텔레페릭(teleferic)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 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0	0	0	0	개별	없음	0
84289000	그 밖의 기계							
84289010	영화용 카메라 장착 및 작동용의 수레	0	0	0	0	개별	없음	0
84289020	유압식의 것	10	0	0	0	개별	없음	0
8428909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289091	정지(整地), 지균(地均)용, 돌 또는 건설공사용의 것	10	0	0	0	개별	없음	0
84289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290000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 그레이더(grader) · 레벨러(leveller) · 스 크래퍼(scraper)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 · 엑스커베이터(excavator) · 셔블로 더(shovel loader) · 탬핑머신(tamping machine) · 로드롤러(road roller)							
84291000	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84291100	무한 케도식	7.2	0	0	0	개별	없음	0
84291900	기타	7.2	0	0	0	개별	없음	0
8429200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8	0	0	0	개별	없음	0
84293000	스크래퍼(scraper)	7.2	0	0	0	개별	없음	0
84294000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2	0	0	0	개별	없음	0
84295000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과 엑스커베이터(excavator) · 셔블로더(shovel loader)							
84295100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0	0	0	0	개별	없음	0
84295200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29590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300000	그 밖의 이동용 · 정지(整地)용 · 지균(地均)용 · 스크 래핑(scraping)용 · 굴착용 · 탬핑(tamping) 용 · 컴팩팅(compacting)용 · 채굴용 · 천공용 기계(토양용 · 광석용 · 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향타기와 향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84301000	향타기(杙打機)와 향발기(抗拔機)	8	0	0	0	개별	없음	0
8430200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7.2	0	0	0	개별	없음	0
84303000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84303100	자주식(自走式)	7.2	0	0	0	개별	없음	0
84303900	기타	7.2	0	0	0	개별	없음	0
84304000	그 밖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							
84304100	자주식(自走式)	8	0	0	0	개별	없음	0
8430490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30500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7.2	0	0	0	개별	없음	0
8430600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84306100	탬핑(tamping)용이나 컴팩팅(compacting)용 기계	8	0	0	0	개별	없음	0
8430690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310000	제 8425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0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8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312000	제 8427 호의 기계의 컷	6	0	0	0	Kg	없음	0
84313000	제 8428 호의 기계의 컷							
84313100	리프트 · 스캐프홀더(skip hoist) · 에스컬레이터의 컷	0	0	0	0	Kg	없음	0
8431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314000	제 8426 호 · 제 8429 호 · 제 8430 호의 기계의 컷							
84314100	버킷(bucket) · 셔블(shovel) · 그랩(grab)과 그립(grip)	8	0	0	0	Kg	없음	0
84314200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8	0	0	0	Kg	없음	0
84314300	소호 제 8430.4100 호 또는 제 8430.4900 호의 보링(boring)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8	0	0	0	Kg	없음	0
84314900	기타							
84314910	안전틀이나 안전용 구성부품(compartment)(건설주택부장관이 이동식 기계의 작동 보호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4314920	비평창식 타이어가 장착된 휠	12	0	0	0	Kg	없음	3
84314930	소호 제 8429.4000 호의 물품에 전용되는 부분품	2	0	0	0	Kg	없음	0
84314940	이스라엘 추가 규칙의 규칙 4(rule 4)에 분류된 부분품	8	0	0	0	개별	없음	0
843149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84320000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84321000	플라우(쟁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322000	하로우(쇄토기) · 스카리파이어 · 컬티베이터 (중경기) · 제초기와 호우							
843221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32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323000	파종기 · 식부기(植付機) · 이식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324000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328000	그 밖의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32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330000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 · 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 · 분류기 · 선별기(제 8437 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84331000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							
843311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33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332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33300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33400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335000	그 밖의 수확기와 탈곡기							
84335100	수확 · 탈곡 겸용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335200	그 밖의 탈곡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335300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335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336000	새의 알 · 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 · 분류기 · 선별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33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340000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41000	착유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342000	낙농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34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350000	포도주 · 사과술 · 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 · 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84351000	기계							
84351010	중량이 2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35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35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360000	그 밖의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 가금(家禽) 사육용 · 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0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362000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2100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36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368000	그 밖의 기계							
84368010	자동 깃털 제거기	9	0	0	0	개별	없음	0
84368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369000	부분품							
84369100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0	0	0	0	Kg	없음	0
8436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370000	종자 · 곡물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 · 분류기 ·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84371000	종자 · 곡물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 · 분류기 · 선별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378000	그 밖의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37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380000	식음료의 조제 · 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제외한다)							
84381000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84381010	제빵 산업용	12	0	0	0	Kg	없음	0
84381020	그 밖의 기계(중량이 2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38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382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84382010	중량이 200 킬로그램 이하인 기계	10	0	0	0	개별	없음	0
84382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383000	설탕 제조용 기계							
84383010	중량이 200 킬로그램 이하인 기계	10	0	0	0	개별	없음	0
84383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384000	양조용 기계							
84384010	중량이 200 킬로그램 이하인 기계	9	0	0	0	개별	없음	0
84384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385000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84385010	중량이 200 킬로그램 이하인 기계	10	0	0	0	개별	없음	0
84385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386000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84386010	중량이 200 킬로그램 이하인 기계	10	0	0	0	개별	없음	0
84386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388000	그 밖의 기계							
84388010	중량이 1,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388020	중량이 2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000 킬로그램 이하인 기기(산업무역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제조되는 유형이 아니거나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유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388090	그 밖의 기기	10	0	0	0	개별	없음	0
84389000	부분품							
84389010	소호 제 1010 호의 부분품	10	0	0	0	Kg	없음	0
84389020	소호 제 1020 호·제 2010 호·제 3010 호·제 4010 호·제 5010 호 및 제 6010 호의 부분품	10	0	0	0	Kg	없음	0
8438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39000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							
8439100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392000	종이·판지의 제조용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393000	종이·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399000	부분품							
843991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0	0	0	0	Kg	없음	0
8439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40000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00	기계							
84401010	페이지 넘버링머신(천공장치와 나선을 통과시키는 장치로 구성되어 페이지를 조합하는 기계)	1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40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09000	부분품							
84409010	소호 제 1010 호의 부분품	10	0	0	0	Kg	없음	0
84409090	소호 제 1090 호의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410000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1000	절단기							
84411010	수동 방식의 기계							
84411011	사진이나 영화 현상실(現像室)용	0	0	0	0	개별	없음	0
8441101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41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12000	종이백·봉지·봉투 제조용 기계							
84412010	수동 방식의 기계	9	0	0	0	개별	없음	0
84412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13000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84413010	수동 방식의 기계	9	0	0	0	개별	없음	0
84413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14000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84414010	수동 방식의 기계	9	0	0	0	개별	없음	0
84414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18000	그 밖의 기계							
84418010	수동 방식의 기계	10	0	0	0	개별	없음	0
84418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19000	부분품							
84419010	소호 제 1010 호·제 2010 호·제 3010 호·제 4010 호 및 제 8010 호의 부분품	10	0	0	0	Kg	없음	0
8441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420000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장비(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3000	기계류·장치·장비							
84423010	저스티파잉(justifying) 장치를 갖춘 타자기용 기계	12	0	0	0	개별	없음	3
84423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24000	위의 기계류·장치·장비의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425000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5010	인쇄 사인(sign)(인쇄 활자를 포함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425020	몰드(mould)와 라이너(liner)(조판과 활자체 주조기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84425030	플라스틱이나 고무재질로 도포한 금속 실린더	8	0	0	0	개별	없음	0
84425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30000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1000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11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4312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431300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4314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4315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431600	곡면인쇄용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431700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43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33000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4433100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433200	기타(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기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433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39000	부분품과 부속품							
84439100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9110	플라스틱이나 고무재질로 도포한 금속 실린더	8	0	0	0	개별	없음	0
844391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39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40000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절단용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450000	방직준비기계, 방직기·합사기(合絲機)·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 8446 호나 제 8447 호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84451000	방직준비기계							
84451100	카드기(carding machine)	0	0	0	0	개별	없음	0
84451200	코밍기(combing machine)	0	0	0	0	개별	없음	0
84451300	연조기나 조방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45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52000	방직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453000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0	0	0	0	개별	없음	0
84454000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45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60000	직기(직조기)							
84461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462000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형으로 한정한다)							
84462100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46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63000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470000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튤(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터프팅(tufting) 기계							
84471000	원형 편기							
84471100	실린더의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471200	실린더의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472000	횡(橫) 편직기와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84472010	가정용 편직기(양말 수선용을 포함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84472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79000	기타							
84479010	가정용 편직기(양말 수선용을 포함한다)	5.4	0	0	0	개별	없음	0
8447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480000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제 8447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펀들·스핀들 플라이어·침포·코움(comb)·방사니플·셔틀·종광(heald)·종광 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84481000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84481100	도비(dobby)기·자카드기와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축소용 · 복사용 · 천공용 · 조립용 기계							
8448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482000	제 8444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84483000	제 8445 호의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3100	침포	0	0	0	0	Kg	없음	0
84483200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0	0	0	0	Kg	없음	0
84483300	스핀들 · 스핀들 플라이어 · 스피닝 링 · 린트래블러	0	0	0	0	Kg	없음	0
8448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484000	직기(직조기)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4200	직조기용 바디 · 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84484210	직조기용 스틸종광(steel heald)	6	0	0	0	Kg	없음	0
844842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484900	기타							
84484910	직조기용과 그 부분품의 샤프트(shaft)[종광(heald)의 샤프트(shaft)를 포함한다]	7.2	0	0	0	Kg	없음	0
84484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485000	제 8447 호의 기계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5100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 · 바늘과 그 밖의 물품	0	0	0	0	Kg	없음	0
84485900	기타							
84485910	가정용 편직기의 것(양말 수선용을 포함한다)	6	0	0	0	Kg	없음	0
84485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490000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 · 완성이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0	0	0	0	Kg	없음	0
8450000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 · 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84501000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1100	완전자동 세탁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501200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50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502000	1 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50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510000	세탁용 · 클리닝용 · 쥐어짜기용 · 건조용 · 다림질용 · 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 표백용 · 염색용 · 드레싱용 · 완성이공용 · 도포용 · 침지(沈漬)용 기계류[제 8450 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 · 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갈래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 용·절단용·핑킹(pinking)용 기계							
84511000	드라이클리닝기	10	0	0	0	개별	없음	0
84512000	건조기							
84512100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51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513000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84513010	섬유산업 제조과정에 전용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5130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514000	세탁기·표백기·염색기							
84514010	섬유산업 제조과정에 전용되는 세척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514090	기타							
84514091	세척기	10	0	0	0	개별	없음	0
84514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515000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518000	그 밖의 기계							
84518010	짜는 기계(wringer) 및 셰이커 텀블러(shaker tumbler)							
84518012	건조한 섬유제품용 짜는 기계(wringer)(드럼의 용량이 25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51801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518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519000	부분품							
84519010	소호 제 1000 호·제 2000 호·제 3000 호 및 제 8010 호 기계의 것							
84519011	소호 제 1100 호부터 소호 제 2900 호의 물품용 건조기 구성부품과 건조기 구성부품을 포함한 그 밖의 건조기용 부분품	10	0	0	0	Kg	없음	0
84519012	가구(소호 제 2100 호부터 제 2900 호까지의 제품을 홀드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9	0	0	0	Kg	없음	0
8451901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4519030	플라스틱 또는 고무재질로 도포한 금속 실린더(완성가공용 기계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8451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520000	재봉기(제 8440 호의 재봉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1000	가정형 재봉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522000	그 밖의 재봉기							
84522100	자동식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52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523000	재봉기용 바늘	0	0	0	0	Kg	없음	0
8452900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84529010	압착주조한 알루미늄 암(arm)[소호 제 1010 호·제 2120 호 및 제 2920 호의 기계 또는 헤드(head)와 그 내부 부분품으로서, 주조 후 각종 가공을 거치지 않은 암(arm)의 경우로 한정한다]							
84529011	암(arm)(내부 부분품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4529019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529020	그 밖의 재봉기용 부분품과 헤드(head)(재봉 직물과 직물 생상품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84529040	헤드(head)(중량이 16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	12	0	0	0	개별	없음	3
8452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530000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가공기계 , 원피·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84531000	원피·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가공기계							
84531010	유압식 프레스(press)[수압식 공기 프레스(press)를 포함한다]	9	0	0	0	개별	없음	0
8453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532000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84532010	유압식 프레스(press)[수압식 공기 프레스(press)를 포함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532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538000	그 밖의 기계							
84538010	유압식 프레스(press)[수압식 공기 프레스(press)를 포함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538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539000	부분품							
84539010	소호 제 1010 호·제 2010 호 및 제 8010 호 물품의 것	10	0	0	0	Kg	없음	0
8453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540000	전로·레이들(ladle)·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84541000	전로	0	0	0	0	개별	없음	0
8454200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0	0	0	0	개별	없음	0
84543000	주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54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550000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1000	관 압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552000	그 밖의 압연기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552100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552200	냉간(冷間) 압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553000	압연기용 롤	0	0	0	0	개별	없음	0
84559000	그 밖의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560000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8456100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562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563000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56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570000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457100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0	0	0	0	개별	없음	0
84572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0	0	0	0	개별	없음	0
8457300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0	0	0	0	개별	없음	0
84580000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84581000	수평 선반							
84581100	수치제어식	0	0	0	0	개별	없음	0
8458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589000	그 밖의 선반							
84589100	수치제어식	0	0	0	0	개별	없음	0
84589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590000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보링(boring)·밀링(milling)·나선가공·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 8458 호의 선반(터닝센터)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100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84591010	각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591090	기타	9	0	0	0	개별	없음	0
84592000	그 밖의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84592100	수치제어식							
84592110	각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5921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59290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592910	각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5929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593000	그 밖의 보링밀링머신(boring-milling machine)							
84593100	수치제어식							
84593110	각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5931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593900	기타							
84593910	각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5939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594000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84594010	각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5940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595000	무릎형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5100	수치제어식	0	0	0	0	개별	없음	0
84595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596000	그 밖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6100	수치제어식	0	0	0	0	개별	없음	0
84596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597000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0	0	0	0	개별	없음	0
84600000	디버링(deburring) · 샤프닝(sharpening) · 그라인딩(grinding) · 호닝(honing) · 래핑(lapping) · 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 연마재 ·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 8461 호의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84601000	평면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최대 0.01 밀리미터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84601100	수치제어식	0	0	0	0	개별	없음	0
8460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02000	그 밖의 평면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최대 0.01 밀리미터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84602100	수치제어식	0	0	0	0	개별	없음	0
8460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03000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나 커터를 연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03100	수치제어식	0	0	0	0	개별	없음	0
84603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04000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0	0	0	0	개별	없음	0
8460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10000	플래이닝(planing)용 · 셰이핑(shaping)용 · 슬로팅(slotting)용 · 브로칭(broaching)용 · 기어절삭용 · 기어연삭용 · 기어완성가공용 · 톱질용 · 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612000	셰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0	0	0	0	개별	없음	0
8461300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0	0	0	0	개별	없음	0
84614000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615000	톱기계나 절단기							
84615010	각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디스크 절단용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615090	기타(디스크 절단용의 것을 포함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61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20000	단조(鍛造)용 · 해머링(hammering)용 · 다이 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펼침용 · 전단용 · 편칭용 · 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84621000	단조기(鍛造機) · 다이스탬핑기(die- stamp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84621010	유압식 프레스(press)[수압식 공기 프레스(press)를 포함한다]와 편심프레스(press)	2	0	0	0	개별	없음	0
8462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22000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84622100	판지(모든 종류의 절단기를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622900	기타							
84622910	유압식 프레스(press)[수압식 공기 프레스(press)를 포함한다]와 편심프레스(press)	2	0	0	0	개별	없음	0
84622920	건설용 철강 바(bar) · 스트립(strip) · 와이어(wire)의 굽힘기 · 교정기 및 절단기(소호 제 29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622930	전동기에 의하여 작동하지 않는 기계(각 중량이 5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622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23000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4623100	수치제어식							
84623110	절단기(각 중량이 1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623190	기타							
84623191	유압식 프레스(press)[수압식 공기 프레스(press)를 포함한다]와 편심프레스(press)	2	0	0	0	개별	없음	0
84623192	전동기에 의하여 작동하지 않는 기계(각 중량이 5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1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한정한다)							
846231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23900	기타							
84623910	절단기(각 중량이 1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84623990	기타							
84623991	유압식 프레스(press)[수압식 공기 프레스(press)를 포함한다]와 편심프레스(press)	2	0	0	0	개별	없음	0
84623992	전동기에 의하여 작동하지 않는 기계(각 중량이 5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6239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24000	편칭기나 낫칭기(notch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하며,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4100	수치제어식	0	0	0	0	개별	없음	0
84624900	기타							
84624910	전동기에 의하여 작동하지 않는 기계(각 중량이 5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624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29000	기타							
84629100	액압 프레스	2	0	0	0	개별	없음	0
84629900	기타							
84629910	전동기에 의하여 작동하지 않는 기계(각 중량이 5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629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30000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84631000	드로우벤치(draw- 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632000	나사 전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633000	선 가공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639000	기타							
84639010	전동기에 의하여 작동하지 않는 기계(각 중량이 5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63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40000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기계							
84641000	톱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642000	연마기나 광택기							
84642020	아스팔트·콘크리트 표면이나 바닥 타일 연마용	10	0	0	0	개별	없음	0
84642030	유리 렌즈 모서리의 냉간 가공용	1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642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49000	기타							
84649010	드릴							
84649011	각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64901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649020	유압식 프레스(press)[수압식 공기 프레스(press)를 포함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649030	유리의 냉간 가공용							
84649031	렌즈 모서리 가공용	10	0	0	0	개별	없음	0
8464903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49040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표면 절단용	10	0	0	0	개별	없음	0
8464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50000	목재 · 코르크 · 뼈 · 경질 고무 · 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 · 스테이플용 · 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84651000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659000	기타							
84659100	톱기계							
84659110	각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디스크 절단기를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6591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659200	평삭기 · 밀링머신(milling machine) · 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659300	연삭기 · 샌딩머신(sanding machine) · 광택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659400	굽힘기나 조립기							
84659410	유압식 프레스(press)[수압식 공기 프레스(press)를 포함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6594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59500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84659510	각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6595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659600	스플리팅(splitting)기 · 슬라이싱(slicing)기 · 박피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659900	기타							
84659910	유압식 프레스(press)[수압식 공기 프레스(press)를 포함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659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660000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 · 툴홀더(tool holder)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66100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84661010	조절할 수 없는 원뿔형이나 원통형 클램프(clamp)(회전 공구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0
84661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84662000	가공용 홀더							
84662010	공작기계용 클램프[조(jaw)의 폭이 60 밀리미터 초과 20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압축공기식 클램프와 유압식 클램프는 제외한다]	10	0	0	0	Kg	없음	0
846620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84663000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8	0	0	0	Kg	없음	0
84669000	기타							
84669100	제 8464 호의 기계용	0	0	0	0	Kg	없음	0
84669200	제 8465 호의 기계용							
84669210	조절할 수 없는 원뿔형이나 원통형 클램프(clamp)(회전 공구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846692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84669300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84669310	조절할 수 없는 원뿔형이나 원통형 클램프(clamp)(회전 공구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4669320	다음 물품의 것[베드·베이스·테이블·헤드·테일·안 장·요람·크로스·슬라이드·칼럼(column) ·암(arm)·톱 암(arm)·휠헤드·심압대·주축대·램(ram) ·프레임·아버(arbour) 작업 지지대 및 씨(C) 프레임 주물용·용접물이나 구조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84669390	기타							
84669391	워터제트 절단기용	8	0	0	0	Kg	없음	0
846693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669400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84669410	조절할 수 없는 원뿔형이나 원통형 클램프(clamp)(회전 공구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84669420	다음 물품의 것[베드·베이스·테이블·칼럼(column)· 요람·프레임·송풍기·크라운(crown)·슬 라이드(slide)·막대(rod)·심압대·주축대 주물·용접물이나 구조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4669490	기타	8	0	0	0	Kg	없음	0
84670000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671000	압축공기식의 것							
84671100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67190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672000	전동기를 갖춘 것							
84672100	각종 드릴							
84672110	드릴[호닝(honing)·톱질이나 폴리싱(polishing)·플레이닝(planing)용 공구 또는 교체가능한 호환성 부속품을 포함하며, 드릴의 중량이 스탠드나 공구 홀더 또는 호환성 부속품을 제외하고 5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6721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672200	톱	10	0	0	0	개별	없음	0
84672900	기타							
84672910	앵글그라인더(angle grinder)·모래광택기 및 브러싱기(스탠드와 호환성 부속품을 제외하고, 각 중량이 2.5킬로그램 초과 10킬로그램 이하이며, 모터의 축이 공구 고정 축에 수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672920	수치제어식	0	0	0	0	개별	없음	0
846729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678000	그 밖의 공구							
84678100	체인톱	8	0	0	0	개별	없음	0
8467890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679000	부분품							
84679100	체인톱의 것	8	0	0	0	Kg	없음	0
846792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8	0	0	0	Kg	없음	0
84679900	기타							
84679910	소호 제 2000 호의 물품	10	0	0	0	개별	없음	0
846799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680000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 8515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81000	수지식 취관(吹管)	10	0	0	0	개별	없음	0
84682000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688000	그 밖의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689000	부분품							
84689010	소호 제 1000 호에 전용되는 것	10	0	0	0	Kg	없음	0
8468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690000	타자기(제 8443 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 워드프로세싱머신	0	0	0	0	개별	없음	0
8470000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 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0100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0	0	0	0	개별	없음	0
84702000	그 밖의 전자계산기							
84702100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70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703000	그 밖의 계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05000	금전 등록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0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71000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13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4713010	휴대용의 것(무선 전화기와 통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13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714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00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14900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15000	처리장치(소호 제 8471.4100 호나 제 8471.4900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및 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16000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17000	기억장치	0	0	0	0	개별	없음	0
84718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1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720000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지철기(stapling machine)]							
84721000	등사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23000	우편물의 분류기·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봉합기·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12	0	0	0	개별	없음	3
84729000	기타							
84729010	연필절삭기	10	0	0	0	개별	없음	0
84729020	천공 기계	10	0	0	0	개별	없음	0
84729030	태킹(tacking) 기계							
84729031	개별 중량이 300 그램 이하인 것	10	0	0	0	개별	없음	0
84729039	기타	8	0	0	0.63	개별	없음	0
84729050	표관발행기(프린트나 스탬프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표관취소기, 버스티켓 자동판매기	6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729070	기타[의료용 처방전 스탬핑(stamping)용 코인 작동식 기계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4729080	주소 인쇄용 기계와 주소 표시용 기계	12	0	0	0	개별	없음	3
8472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730000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31000	제 8469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1010	점자 타자기용 레터(letter) 세트	0	0	0	0	Kg	없음	0
8473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732000	제 8470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2100	전자계산기용(소호 제 1000 호·소호 제 2100 호·소호 제 2900 호나 제 8470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473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733000	제 8471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84734000	제 8472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4010	소호 제 8472.3000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2	0	0	0	Kg	없음	3
84734020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84734030	카드 또는 보드(반도체·저항기·축전기 등의 요소들과 결합된 것으로서 소호 제 40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84734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4735000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84740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 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84741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84741010	콘크리트 아스팔트용 플랜트(선별기·기계식 체·아스팔트 믹서·왕자갈 세척기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741020	가장자리를 따라 장착된 철 스트레칭 장치가 있는 네트(net)(기계식 체에 장착할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4741090	기타							
84741091	정지(整地), 돌, 포장 또는 건설공사용의 기계	10	0	0	0	개별	없음	0
84741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742000	파쇄기나 분쇄기							
84742010	볼 압연기와 볼 그라인더	0	0	0	0	개별	없음	0
847420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743000	혼합기나 반죽기							
84743100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84743110	자동차 설치용	0	0	0	0	개별	없음	0
847431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743200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9	0	0	0	개별	없음	0
84743900	기타							
84743910	정지(整地), 돌, 포장 또는 건설공사용의 기계	10	0	0	0	개별	없음	0
84743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748000	그 밖의 기계							
84748010	콘크리트 아스팔트 재료용 플랜트[암(arm)이 있는 콘크리트 조제용 레이크(rake)와 정지(整地)·돌 ·포장(鋪裝)·건설공사용의 기계 또는 굳지 않은 시멘트의 조괴기(造塊機)·형입기와 성형기(예: 타일·벽돌·시멘트 블록 등을 제조하는 기계)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748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749000	부분품							
84749010	소호 제 1010 호·제 1091 호·제 3190 호·제 3200 호 및 제 8010 호의 물품의 것	10	0	0	0	Kg	없음	0
84749020	소호 제 2090 호 물품의 것	8	0	0	0	Kg	없음	0
8474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750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 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와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1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 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752000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21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75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75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760000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762000	음료 자동판매기							
847621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12	0	0	0	개별	없음	0
8476290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768000	그 밖의 기계							
847681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	0	0	0	개별	없음	0
84768900	기타							
84768910	버스 탑승용 티켓 자동판매기	5.4	0	0	0	개별	없음	0
84768920	코인 삽입 작동방식 기계[의료용 처방전 스탬핑(stamping)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10.8	0	0	0	개별	없음	0
847689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4769000	부분품	12	0	0	0	Kg	없음	0
84770000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1000	사출 성형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72000	압출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73000	취입 성형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74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75000	그 밖의 성형기							
847751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75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778000	그 밖의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77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780000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81000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478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4790000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1000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84791010	왕자갈 살포기·도로 표시 기계·콘크리트와 플라스터 살포기, 콘크리트 인젝터(injector)·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vibrator) 및 그 밖의 정지(整地)·돌 포장(鋪裝) 또는 건설공사용의 기계							
84791011	콘크리트와 플라스터 살포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9101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4791090	드릴 톱기계[디스크커터(disc cutter)를 포함한다]							
84791091	개별 중량이 750 킬로그램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791092	기타(산업무역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제조되는 유형이 아니며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유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9109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792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792010	중량이 1,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92020	중량이 2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000 킬로그램 이하인 기기(산업무역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제조되는 유형이 아니며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유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92030	식품 또는 음료 제조용 기계(전기·가스·전기와 가스 작동식의 것으로 중량이 2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9	0	0	0	개별	없음	0
847920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793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84793010	드릴 톱기계[디스크커터(disc cutter)를 포함한다]							
84793011	개별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793012	기타(산업무역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제조되는 유형이 아니며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유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9301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793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794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95000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96000	증발식 에어컨	10.5	0	0	0	개별	없음	0
84797000	탐승교							
84797100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797900	기타							
84797910	항해 목적용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7979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798000	그 밖의 기기							
84798100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84798110	일반적 용도의 기계 및 기계장치							
84798111	유압식 프레스(press)[수압식 공기 프레스(press)를 포함한다]	9	0	0	0	개별	없음	0
84798119	전기 테이블 분쇄기 및 전기 테이블 연마기(스탠드나 테이블과 함께 수입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연마석·브러시·그 밖의 호환성 공구 장착용으로 양 면에 축이 돌출된 것으로서, 연마석·브러시·공구 또는 스탠드·테이블을 제외한 개별 분쇄기나 연마기의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Rfg. Ton	없음	0
84798120	드릴 톱기계[디스크커터(disc cutter)를 포함한다]							
84798121	개별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798122	기타(산업무역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제조되는 유형이 아니며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유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12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798130	금속 제품 세척용이나 금속 제품의 기름 제거용(강력한 교반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798190	기타							
84798191	공업 제조용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199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798200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회기·교반기							
84798210	일반적 용도의 기계 및 기계장치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220	비누·식품·음료·화학품 또는 약품 제조용 타입에 적합한 기계나 기기							
84798221	중량이 1,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222	중량이 2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000 킬로그램 이하인 기기(산업무역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제조되는 유형이 아니며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유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22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798290	기타							
84798291	공업 제조용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299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798900	기타							
84798910	일반적 용도의 기계 및 기계장치							
84798911	교반기와 같은 기계장치가 장착된 용기[배럴(barrel)과 배트(vat)를 포함한다]	9	0	0	0	개별	없음	0
8479891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프레스(press)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13	금속 제품 세척용과 금속 제품의 기름 제거용 공구(강력한 교반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14	유압식 프레스(press)[수압식 공기 프레스(press)를 포함한다]	2	0	0	0	Kg	없음	0
84798918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798920	드릴 톱기계[디스크커터(disc cutter)를 포함한다]							
84798921	개별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22	기타(산업무역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제조되는 유형이 아니며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유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2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30	위커(wicker)와 브러쉬(brush) 제조용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40	비누·식품·음료·화학품 또는 약품 제조용 타입에 적합한 기계나 기기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798941	중량이 1,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42	중량이 2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000 킬로그램 이하인 기기(산업무역부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제조되는 유형이 아니며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유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49	그 밖의 기기	1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50	환기용 기기(공기의 습도나 온도 변환용으로 한정한다)							
84798951	항공기 설치용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52	물품을 가공하는 홀(hall)에서 사용하기 위해 산업 공장에 설치된 것이나 레이더실 또는 군용 통신실에 설치되는 것(조건부)	9	0	0	0	개별	없음	0
84798953	공기의 습도를 높이기 위한 전기기기(연구 설치용이 아니며, 개별 중량이 5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5	0	0	0	개별	없음	0
84798954	냉각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은 습도 감소용의 것, 냉장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은 공기 칠러(chiller)	10.5	0	0	0	개별	없음	0
84798959	기타	12	0	0	0	Kg	없음	0
84798960	다음 물품의 것							
84798961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62	금속 다이빙 벨이나 다이빙 슈트(기계식 옷이나 이와 유사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63	항공기나 수륙양용기용 기계와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64	쓰레기 분리기나 파쇄기(개별 중량이 1,000 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65	쓰레기 파쇄기나 처리기(소호 제 8964 호의 것을 제외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84798966	전기작동식 바닥 매트(부속품이나 보조장치가 파손이나 작동에 의하여 교체용 부속품이 없는 경우로, 최대 중량이 20 킬로그램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84798969	양탄자 세척기(모터 작동식은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4798990	기타							
84798991	산업용 기계와 기구	0	0	0	0	개별	없음	0
84798992	기타(식품 또는 음료 제조용 전기·가스·전기와 가스 작동식으로서 최대 중량이 20 킬로그램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84798999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799000	부분품							
84799010	소호 제 8100 호·제 8210 호 및 제 8910 호의 기계의 것	0	0	0	0	Kg	없음	0
84799020	소호 제 1010 호·제 1090 호·제 2000 호·제 3010 호·제 8220 호·제 8920 호 및 제 8940 호의 기계의 것	10	0	0	0	Kg	없음	0
84799060	콘덴서 및 콘덴싱 유니트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799061	소호 제 8951 호 전용의 기구	0	0	0	0	개별	없음	0
84799062	압축기를 포함하지 않은 것	12	0	0	0	Kg	없음	3
84799063	냉각 출력이 시간당 48,000 비티유(BTU)를 초과하지 않는 것	10.8	0	0	0	Output	없음	0
84799069	기타	10.5	0	0	0	Output	없음	0
84799070	증발기·증발 유닛·증발이나 콘덴싱 코일	10.5	0	0	0	개별	없음	0
84799090	기타							
84799091	산업용 기계와 기구	0	0	0	0	Kg	없음	0
84799099	기타	8	0	0	0	Kg	없음	0
8480000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1000	금속 주조용 주형틀	10	0	0	0	Kg	없음	0
84802000	주형 베이스	10	0	0	0	Kg	없음	0
84803000	주형 제조용 모형							
84803010	주조용의 심(core)·심상자·몰딩(moulding)보드 및 모형판[사형(砂型)의 준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4803020	기타							
84803021	합성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것	12	0	0	0	Kg	없음	3
84803022	목재로 만든 것	12	0	0	0	Kg	없음	3
84803023	철강이나 구리로 만든 것	10	0	0	0	Kg	없음	0
84803025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12	0	0	0	Kg	없음	3
84803029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804000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84804100	사출식이나 압축식							
84804110	개별 성형용 주형의 총량이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8041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4804900	기타							
84804910	개별 성형용 주형의 총량이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848049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4805000	유리 성형용 주형							
84805010	유리로 만든 용기나 가정용 기구 제조용의 것	0	0	0	0	Kg	없음	0
84805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480600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84806010	콘크리트(concrete) 주물용의 것(목재로 만든 성형용 주형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84806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4807000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7100	사출식이나 압축식	0	0	0	0	Kg	없음	0
84807900	기타							
84807910	타이어 제조용 몰드(mould)	0	0	0	0	Kg	없음	0
84807920	제 64 류 물품 제조용의 것	0	0	0	0	Kg	없음	0
84807930	고무나 합성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제품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제조용의 것[개별 몰드(mould)의 중량이 1,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807940	가스 마스크(gas mask) 제조용의 것[개별 몰드(mould)의 중량이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48079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4810000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00	감압밸브							
84811010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는 밸브(valve)[1. 개별 중량이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 지속적인 작동 압력이 99 기압(atmosphere)을 초과하는 것 3. 공칭지름이 12 인치를 초과하는 파이프용의 것]	0	0	0	0	Kg	없음	0
84811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5	0	0	0	Kg	없음	0
84811090	기타	10.5	0	0	0	Kg	없음	0
84812000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84812010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는 밸브(valve)[1. 개별 중량이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 지속적인 작동 압력이 99 기압(atmosphere)을 초과하는 것 3. 공칭지름이 12 인치를 초과하는 파이프용의 것]	0	0	0	0	Kg	없음	0
84812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5	0	0	0	Kg	없음	0
84812090	기타	10.5	0	0	0	Kg	없음	0
84813000	체크(논리턴)밸브							
84813010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는 밸브(valve)[1. 개별 중량이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 지속적인 작동 압력이 99 기압(atmosphere)을 초과하는 것 3. 공칭지름이 12 인치를 초과하는 파이프용의 것]	0	0	0	0	Kg	없음	0
84813020	모터 차량용[면세 트랙터,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은 제외하고, 소호 제 3040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10.5	0	0	0	Kg	없음	0
84813030	공기조절기용 밸브(소호 제 3020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84813040	공기타이어의 공기 충전용 밸브[내부가 없는(tubeless)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Kg	없음	0
84813090	기타	10.5	0	0	0	Kg	없음	0
84814000	안전밸브							
84814010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는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밸브(valve)[1. 개별 중량이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 지속적인 작동 압력이 99 기압(atmosphere)을 초과하는 것 3. 공칭지름이 12 인치를 초과하는 파이프용의 것]							
84814020	모터 차량용의 것[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5	0	0	0	Kg	없음	0
84814090	기타	10.5	0	0	0	Kg	없음	0
84818000	그 밖의 기기							
84818010	슬루스 밸브(sluiice valve)와 게이트 밸브(gate valve)와 같은 주조 밸브(공칭지름이 16 인치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0
84818020	버터플라이 밸브(butterfly valve)(공칭지름이 12 인치 초과 40 인치 이하인 파이프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0
84818030	온수와 냉수 혼합용 기능을 갖춘 탭(하나의 손잡이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5	0	0	0	Kg	없음	0
84818040	탭·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소호 제 8010 호·제 80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 개별 중량이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 지속적인 작동 압력이 99 기압(atmosphere)을 초과하는 것(지속적인 작동 압력이 250 기압 이하인 볼 밸브는 제외한다) 3. 공칭지름이 12 인치를 초과하는 파이프용의 것]	0	0	0	0	Kg	없음	0
84818050	에어컨용 절환 밸브(냉·열 반전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481806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5	0	0	0	Kg	없음	0
84818070	에어컨 전용 탭(소호 제 8060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84818090	기타							
84818091	파이프용 볼 밸브(지름이 0.5 인치부터 3 인치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0
84818099	기타	10.5	0	0	0	Kg	없음	0
84819000	부분품							
84819010	강화 블랭크(blank)	0	0	0	0	개별	없음	0
84819030	볼탭(ball tap) 제조용 특수 주물	0	0	0	0	개별	없음	0
84819040	볼탭(ball tap)용 특수 플라스틱 소켓과 볼	0	0	0	0	개별	없음	0
84819050	가공하지 않은 주강이나 주철(탭·밸브 및 수도꼭지 제조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819060	부분적으로 가공된 주강이나 주철[공칭(公稱) 반경이 1 인치 연장되는 파이프에 적합한 것으로 탭·밸브 및 수도꼭지 제조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한정하며 착색이나 코팅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819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4820000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00	볼베어링(ball bearing)	0	0	0	0	개별	없음	0
84822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82300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0	0	0	개별	없음	0
84824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0	0	0	개별	없음	0
84825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0	0	0	개별	없음	0
84828000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829000	부분품							
84829100	볼·니들·롤러	0	0	0	0	Kg	없음	0
84829900	기타							
84829910	내외부용 레이스나 링	0	0	0	0	Kg	없음	0
848299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483000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폴리(pulley)[폴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100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84831010	내부 파이프(코어)의 지름이 10 밀리미터 미만인 플렉시블 샤프팅(flexible shafting)							
8483101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83101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831020	내연기관용							
84831021	제 87 류의 차량용(소호 제 1022 호의 것은 제외한다)	9.6	0	0	0	개별	없음	0
84831022	볼탭(ball tap)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용 특수 볼[구조적인 면에서 농용(農用)트랙터나 그 밖의 이동식 농업 기구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83102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831090	기타							
84831091	모터 차량용의 것[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831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83200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83300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8483301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0	0	0	0	개별	없음	0
8483302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이 없는 일반 샤프트베어링(shaft bearing)[제 848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완전히 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1. 철강 백(iron or steel back)이 있는 것 2. 분리된 두 개의 하프베어링(half bearing)으로 구성된 것 3. 각 하프베어링(half bearing)의 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4833021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트랙터, 포크리프트(forklift)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용 또는 소호 제 8407.9090 호와 제 8408.9090 호의 엔진을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83302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833090	그 밖의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이 없는 일반 샤프트베어링(shaft bearing)(제 8482 호의 것은 제외한다)							
84833091	모터 차량용[개당 중량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하고 소결한 슬립 베어링은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833092	기타(개당 중량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833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834000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과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84834010	웜기어(worm gear)와	6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유성(遊星)기어(planetary gear)(개별 중량이 2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834090	기타							
84834091	개별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834092	기타[모터 차량용의 것으로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483409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835000	플라이휠(flywheel)과 폴리(pulley)[폴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848350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848350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836000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6010	내연기관용							
84836011	제 8427 호의 포크리프트(forklift)용	9.6	0	0	0	개별	없음	0
84836012	제 8427 호의 그 밖의 물품용	5.4	0	0	0	개별	없음	0
84836013	제 87 류의 모터 차량용	9.6	0	0	0	개별	없음	0
8483601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836090	기타							
8483609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836092	제 8427 호의 포크리프트(forklift)용	9.6	0	0	0	개별	없음	0
84836093	제 8427 호의 그 밖의 물품용	6	0	0	0	개별	없음	0
84836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483900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848390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84839011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83901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839020	기어							
84839021	모터 차량용[개당 중량이 50 그램 이하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면세 트랙터용,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839022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개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839023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839029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4839090	기타							
84839091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483909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4840000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1000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848410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Kg	없음	3
84841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8484200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20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Kg	없음	3
84842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84849000	기타							
848490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Kg	없음	3
8484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84860000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 반도체디바이스 · 전자집적 회로 ·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00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86200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86300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864000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486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개별	없음	0
84870000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 · 절연체 · 코일 · 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은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100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4879000	기타							
84879010	방열판	0	0	0	0	개별	없음	0
84879020	윤활 니플	10	0	0	0	개별	없음	0
84879030	쇼크업소버 (shock absorber)	0	0	0	0	개별	없음	0
84879040	기계나 기기를 수납하도록 설계 된 캐비닛, 박스, 드로우, 선반, 프레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기 또는 전자 부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모두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4879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5010000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00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011010	셀신모터(selsyn motor) · 스텝핑모터 (stepping motor) · 선형전동기(linear motor) 및 보조전동기(servo motor)	0	0	0	0	개별	없음	0
85011020	영구 자석 고정자 직류 전동기(타코 발전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011040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트랙터 · 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85011041	중량이 0.6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11049	기타	11.2	0	0	0.41	Kg	없음	3
85011090	기타							
85011091	중량이 12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1109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012000	교류 · 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012010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트랙터 · 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85012011	중량이 0.6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12019	기타	11.2	0	0	0.41	Kg	없음	3
85012090	기타							
85012091	중량이 12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12092	중량이 8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1209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013000	그 밖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85013100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85013110	영구 자석 고정자 직류 전동기(타코 발전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013120	발전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013150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트랙터 · 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85013151	중량이 0.6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13159	기타	11.2	0	0	0.41	Kg	없음	3
85013190	기타							
85013191	중량이 12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013199	기타	11.2	0	0	0.41	Kg	없음	3
85013200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5013210	영구 자석 고정자 직류 전동기(타코 발전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013220	전압이 220 볼트 이상인 발전기, 중량이 4 톤을 초과하는 발전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01325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1.2	0	0	0.41	Kg	없음	3
85013260	그 밖의 발전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013270	기타(중량이 4 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0132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5013300	출력이 75 킬로와트 초과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13400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14000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85014010	셀신모터(selsyn motor) · 스텝핑모터(stepping motor) · 선형전동기(linear motor) 및 보조전동기(servo motor)	0	0	0	0	개별	없음	0
85014090	기타							
85014091	중량이 12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14092	기타[인공 호흡기 제조에 사용되는 것(조건부)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01409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015000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 전동기							
85015100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85015110	셀신모터(selsyn motor) · 스텝핑모터(stepping motor) · 선형전동기(linear motor) 및 보조전동기(servo motor)	0	0	0	0	개별	없음	0
85015190	기타							
85015191	중량이 12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1519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015200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5015210	중량이 8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15220	산업무역부장관에 의하여 스펙들 구동에 특화되어 있으며 컴퓨터화된 밀링머신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	0	0	0	0	Kg	없음	0
850152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015300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5015310	1,000 킬로볼트나 그 이상의 동기 진상기(同期進相機)(synchronous condenser)	0	0	0	0	개별	없음	0
85015320	중량이 8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153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016000	교류 발전기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0161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162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163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16310	전압이 220 볼트 이상이고 중량이 4 톤을 초과하는 것	10.2	0	0	0	개별	없음	3
85016390	기타	10.1	0	0	0.36	Kg	없음	3
850164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20000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100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							
850211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212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213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2200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0	0	0	0	개별	없음	0
85023000	그 밖의 발전세트							
85023100	풍력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23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024000	회전변환기							
85024010	용접기나 기기 제조용	12	0	0	0	개별	없음	3
85024020	중량이 4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24090	기타							
85024091	중량이 0.6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24099	기타	11.2	0	0	0.41	Kg	없음	0
85030000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030010	각 부분품의 중량이 7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5030011	로터(rotor)나 스테이터(stator)(제 8501 호의 물품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5030019	기타	0	0	0	0	Kg	없음	0
8503003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Kg	없음	3
85030090	기타							
85030091	로터(rotor)나 스테이터(stator)(제 8501 호의 물품의 것으로 감지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503009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040000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1000	방전응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12	0	0	0	개별	없음	3
85042000	유입식 변압기							
85042100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2	0	0	0	개별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042200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0.8	0	0	0	개별	없음	3
85042300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10.8	0	0	0	개별	없음	3
85043000	그 밖의 변압기							
85043100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43110	용접·납땜임 또는 땀질에 전용(專用)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12	0	0	0	개별	없음	5
85043120	전위나 전류 측정 변압기(1 차측 전압이 22 킬로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85043121	최대 45 킬로볼트까지의 것	12	0	0	0	개별	없음	5
8504312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043130	텔레비전용 커패시터·임피던스 매치·디플렉션 코일	0	0	0	0	개별	없음	0
85043190	기타							
85043191	중량이 0.5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43199	기타	10.5	0	0	0	개별	없음	3
85043200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43210	용접·납땜임 또는 땀질에 전용(專用)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10.8	0	0	0	개별	없음	3
85043290	기타	10.5	0	0	0	개별	없음	3
85043300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5043400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5044000	정지형 변환기							
85044010	셀레늄 정류기와 같은 추가 구성 부품이 없는 정류기 스택(다만, 소호 제 40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044020	바이브레이터(vibrator)	8	0	0	0	개별	없음	0
85044030	자동차용 정류기	6	0	0	0	개별	없음	0
85044040	삼상 전기모터용 속도 조정기(전압이나 전류의 주파수 제어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044050	배터리를 포함하는 가정용 배터리 충전기	12	0	0	0	개별	없음	5
8504406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용 파워서플라이 유닛							
85044061	외부 접속으로 장치에 연결된 외부용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4406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044070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작동기							
85044071	축전지와 함께 수입된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504407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5
85044080	기타(축전지와 함께 수입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5
85044090	기타							
85044091	외부 접속으로 장치에 연결된 외부 파워서플라이 유닛	0	0	0	0	개별	없음	0
85044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045000	그 밖의 유도자							
85045010	60 킬로볼트 이상의 고주파 통신 선로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설치용 안정기							
85045020	22 킬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용 접지 코일	10.8	0	0	0	개별	없음	5
85045030	커패시터 · 임피던스 매치 · 디플렉션 코일(텔레비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045090	기타							
85045091	개별 중량이 0.5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45092	개별 중량이 0.500 킬로그램 초과 2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45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049000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85050000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 ·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1000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1100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5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052000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 · 브레이크							
850520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50520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5059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5059010	전자석							
85059011	최대 500 볼트암페어까지의 것(리프팅 헤드는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5059012	리프팅 헤드(lifting head)	0	0	0	0	Kg	없음	0
8505901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059020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의 그립(grip) · 바이스(vice) · 클램프(clamp) 및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0	0	0	0	개별	없음	0
850590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5060000	일차전지							
85061000	이산화망간	0	0	0	0	개별	없음	0
85063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64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85064010	개당 중량이 9.5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64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065000	리튬							
85065010	개당 중량이 9.5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65020	심장박동조율기 삽입용(정격 전류가 25 마이크로암페어이며 중량이 35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065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066000	에어징크로 만든 것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066010	개당 중량이 9.5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66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068000	그 밖의 일차전지							
85068010	개당 중량이 9.5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68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069000	부분품	10	0	0	0	Kg	없음	0
85070000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1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85071020	자동차용(탱크의 측벽 높이가 37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0
85071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507200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85072020	자동차 점화용(탱크의 측벽 높이가 37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5072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073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85073010	개별 중량이 1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85073012	제 8471.3010 호 · 제 8517.1290 호로 분류된 기기의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5073013	자동차용	12	0	0	0	개별	없음	3
8507301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073020	개별 중량이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5073022	제 8517.1200 호로 분류된 전화 장치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073023	자동차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07302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074000	니켈-철 축전지							
85074020	제 8471.3010 호 · 제 8517.1290 호로 분류된 기기의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5074030	자동차용	12	0	0	0	개별	없음	3
85074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07500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85075020	제 8517.1290 호 · 제 8471.3010 호로 분류된 기기의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5075030	자동차용	12	0	0	0	개별	없음	3
85075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076000	리튬이온 축전지							
85076020	제 8517.1290 호 · 제 8471.3010 호로 분류된 기기의 것	12	0	0	0	개별	없음	0
85076030	자동차용	12	0	0	0	개별	없음	3
85076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5078000	그 밖의 축전지							
85078020	제 8471.3010 호 · 제 8517.1290 호로 분류된 기기의 것	12	0	0	0	개별	없음	0
85078030	자동차용	12	0	0	0	개별	없음	3
85078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5079000	부분품	12	0	0	0	개별	없음	3
85080000	진공청소기							
85081000	전동기를 갖춘 것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081100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며,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08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086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087000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85090000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4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채소즙 추출기	6	0	0	0	개별	없음	0
85098000	그 밖의 기구							
85098030	구강 세정 및 마사지용 칫솔	0	0	0	0	개별	없음	0
85098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099000	부분품							
85099040	구강 세정 및 마사지용 칫솔의 부분품	8	0	0	0	개별	없음	0
8509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00000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101000	면도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102000	이발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103000	모발제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109000	부분품							
85109010	헤드·블레이드 및 커팅 플레이트	10	0	0	0	개별	없음	3
8510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10000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1000	점화플러그							
85111010	항공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111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85111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511200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							
85112010	항공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112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85112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5113000	배전기와 점화코일							
85113010	항공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113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85113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11400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85114010	항공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114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85114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5115000	그 밖의 발전기							
85115010	항공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115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85115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5118000	그 밖의 기기							
85118010	항공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118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85118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5119000	부분품							
851190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8511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85120000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 85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 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 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85121010	발전기와 조명장치(발전기에 내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121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512200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85122010	적외선 스포트라이트(빛의 반사 지름이 3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122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5123000	음향신호용 기구	6	0	0	0	개별	없음	0
85124000	윈드스크린 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 er)	6	0	0	0	개별	없음	0
85129000	부분품							
85129010	감지기[제 87 류의 추가 주(Additional Note)의 규칙 5(c)(Rule 5(c))와 교통 법규 1961(5721) 270D의 규정에 명시된 보안용 부속품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외한다](소호 제 9020 호와 제 9030 호에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85129020	후진 주행 시 배리어(barrier) 경고용 감지기	6	0	0	0	개별	없음	0
85129030	차량 타이어 공기 부족 경고용 감지기	6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129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3
85130000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12 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131000	전등	0	0	0	0	개별	없음	0
8513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5140000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100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85141010	개별 중량이 1,0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4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42000	전자유도식·유전식 노(爐)와 오븐							
85142010	개별 중량이 1,0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42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4300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85143010	개별 중량이 1,0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43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44000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4010	개별 중량이 1,0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440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5149000	부분품							
85149010	유리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8514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5150000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agnetic pulse)식·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85151000	납땜임이나 땜질용 기기							
85151100	납땜용 인두와 건(gun)	10	0	0	0	개별	없음	0
85151900	기타							
85151910	구동 수단이 없는 발전기를 포함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51920	인쇄회로 납땜용 자동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51519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5152000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152100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0	0	0	0	개별	없음	0
8515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53000	금속의 아크[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3100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85153110	알갱이나 가루 모양의 용제(融劑)를 도포한 상태로 용접이 수행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153120	구동 수단이 없는 발전기를 포함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531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5153900	기타							
85153910	알갱이나 가루 모양의 용제(融劑)를 도포한 상태로 용접이 수행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53920	구동 수단이 없는 발전기를 포함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539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5158000	그 밖의 기기							
85158010	빔(예: 전자빔이나 전자기빔)에 의한 처리가 수행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58020	구동 수단이 없는 발전기를 포함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58030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용접용 전기기기							
85158031	개별 중량이 1,0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58032	사무실용[제 84 류의 이스라엘(Israel)측 추가 주 제 2 호(additional Note 2)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5158039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51580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5159000	부분품							
85159010	가스나 압축 공기가 장착된 전극 홀더(손 분무형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5159020	원형의 구리전극(지름이 2 인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5159030	유리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85159040	아크 방식의 핀이나 스크루(screw) 용접용 특수 장치	0	0	0	0	Kg	없음	0
85159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8516000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 854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0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85161010	공업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161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162000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851621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5162110	공업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1621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162900	기타							
85162910	전원출력이 5,000 와트 이상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629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163000	전기가열식 이용기구나 손 건조기							
85163100	헤어드라이어	0	0	0	0	개별	없음	0
85163200	그 밖의 이용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163300	손 건조기	8	0	0	0	개별	없음	0
85164000	전기다리미	0	0	0	0	개별	없음	0
85165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0	0	0	0	개별	없음	0
85166000	그 밖의 오븐, 쿠커·조리판·보일러링·그릴러·로스터	6	0	0	0	개별	없음	0
85167000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85167100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167200	토스터	0	0	0	0	개별	없음	0
85167900	기타							
85167910	우유 크림 제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1679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5168000	전열용 저항체							
85168010	비금속 재료로 만들어진 도체	0	0	0	0	개별	없음	0
85168020	개별 중량이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68030	저항선을 삽입한 전기절연재료로 만든 플렉시블 저항기(flexible resistor)	0	0	0	0	개별	없음	0
85168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169000	부분품							
85169040	전열용 저항체의 것(개별 중량이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5169090	기타							
85169095	조리용 구성부품(compartment)(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	0	0	0	Kg	없음	3
85169096	상단표면(가열이나 제어요소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12	0	0	0	Kg	없음	3
85169099	기타	0	0	0	0	Kg	없음	0
85170000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 호·제 8525 호·제 8527 호·제 8528 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85171000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171200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85171220	자동차에 설치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712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718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76000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6100	기지국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176200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85176210	텍스트·문서내용·스틸 사진 수신용 기기	4	0	0	0	개별	없음	0
851762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76900	기타							
85176950	수신만 되는 것							
85176951	우편 통신용 수신기	10.8	0	0	0	개별	없음	0
85176952	동시 통역시스템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수신기	12	0	0	0	개별	없음	3
85176958	유선 전화 통신망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17695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76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77000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8518000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100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85181010	전화기용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마이크로폰	0	0	0	0	개별	없음	0
85181020	마이크로폰용 스탠드	12	0	0	0	개별	없음	3
85181030	용량형 마이크로폰(중량이 최대 10 그램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18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82000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1821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5182110	폭발 방어형	0	0	0	0	개별	없음	0
851821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822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18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8300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8518301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결합된 것인지 상관없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183020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가 결합된 세트	0	0	0	0	개별	없음	0
85184000	가청주파증폭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185000	음향증폭세트							
85185010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용 음성증폭시스템(청각 훈련 장치)(보건부장관 승인을 받아 수입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185020	페이징 시스템(소방차·구급차·경찰차	12	0	0	0	개별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또는 민방위 차량용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185030	사이렌/페이징 시스템[민방위 장이 승인한 공공용 및 규정된 용도의 것으로 승인한(조건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185040	특별히 고안된 전화 통신용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85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89000	부분품							
85189010	확성기 인클로저	0	0	0	0	개별	없음	0
8518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85190000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2000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19300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0	0	0	0	개별	없음	0
85195000	전화응답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198000	그 밖의 기기							
85198100	자기식·광학식이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85198110	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							
85198111	크기가 180 밀리미터 x 150 밀리미터 x 4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19811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98130	음성기록장치가 없는 테이프(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1981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198900	기타							
85198910	마스터 레코드의 음성 재판용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5198920	영화용 음성재생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198930	외부전원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크기가 180 밀리미터 x 150 밀리미터 x 4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19894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0	0	0	0	개별	없음	0
85198950	카세트 복제용 특수 기계	0	0	0	0	개별	없음	0
85198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10000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11000	마그네틱 테이프형	0	0	0	0	개별	없음	0
85219000	기타							
85219010	MPEG2 형식의 디지털 비디오 파일 및 하드 드라이브 또는 그 밖의 고정기억장치 연속 작동용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219020	포켓사이즈형	0	0	0	0	개별	없음	0
8521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20000	제 8519 호부터 제 8521 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1000	픽업 카트리지	12	0	0	0	Kg	없음	3
85229000	기타							
85229020	캐비닛	8	0	0	0	개별	없음	0
8522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30000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 37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2000	마그네틱 디스크							
852321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	12	0	0	0	개별	없음	3
85232900	기타							
85232910	마그네틱 테이프							
85232911	기록이 안 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232912	기록된 것(음성 또는 영상 이외 현상 제작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232919	기타	2.5	0	0	0	개별	없음	0
85232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34000	광학식 매체							
85234100	기록이 안 된 것							
85234110	저장용[굽기(burn)] 씨디(CD)	0	0	0	0	개별	없음	0
852341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34900	기타							
85234910	음성·영상 또는 비디오 제작용	5	0	0	0	개별	없음	0
85234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35000	반도체 매체							
85235100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0	0	0	0	개별	없음	0
85235200	스마트카드							
85235210	소호 제 8517.1290 호 및 제 8471.3010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235220	소호 제 8528.7140 호 및 제 8528.7190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2352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35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38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50000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00	송신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25600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258000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0	0	0	0	개별	없음	0
85260000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00	레이더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269000	기타							
85269100	항행용 무선기기							
85269110	자동차에 영구 설치용(기록용 또는 음성이나 영상 제작용 기기와 결합되고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차량 배터리로만 작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691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69200	무선원격조절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2700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710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12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0	0	0	0	개별	없음	0
85271300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5271310	포켓사이즈형	0	0	0	0	개별	없음	0
85271330	씨디(CD) 플레이어(외부 전원없이 작동하는 것으로서 크기는 180 밀리미터 x 150 밀리미터 x 45 밀리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2713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71900	기타							
85271910	포켓사이즈형	0	0	0	0	개별	없음	0
85271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72000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 외부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2100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27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79000	기타							
85279100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2792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279900	기타							
85279910	라디오 방송용(부반송파 주파수 57 킬로헤르츠에서, 주파수 대역폭이 87 메가헤르츠부터 108 메가헤르츠인 하나만의 기지국 수신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279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80000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4000	음극선관 모니터							
852841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85284110	디스플레이 장비(대각선 측정 스크린 크기가 25 인치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2841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84900	기타							
85284910	산업 플랜트용·과학기관용·의료기관용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또는 교통 통제용 및 통제 센터용(조건부)							
85284920	특별히 자동차용으로 제작된 것(후진 영상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284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85000	그 밖의 모니터							
852851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85285110	대각선 측정 스크린 크기가 25 인치를 초과하고 50 인치 미만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285160	대각선 측정 스크린 크기가 50 인치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2851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85900	기타							
85285910	산업 플랜트용·과학기관용·의료기관용 또는 교통 통제용 및 통제 센터용(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5285920	특별히 자동차용으로 제작된 것(후진 영상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285930	액정 디스플레이(LCD) 방식 스크린(대각선 측정 스크린 크기가 50 인치 이하이며, 스크린 조립용 모듈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285940	대각선 측정 크기가 10 인치 이하인 것(렌즈 또는 카메라의 끝과 광섬유나 전기도체와 일치시켜 내장한 탄력성 있는 튜브로, 전체 길이가 5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사람의 눈으로 침투하여 관찰할 수 없는 내부를 관통하여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비디오 내시경)	0	0	0	0	개별	없음	0
8528595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또는 액정 디스플레이(LCD) 방식의 것[다음의 특성을 가진 모듈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 빛 세기 4,000 니트(NIT) 이상인 것 2.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또는 라이트 유닛의 두 가까운 중심간의 거리가 8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285960	기타(대각선 측정 스크린 크기가 50 인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285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86000	프로젝터(projector)							
852861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286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87000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7100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85287120	위성으로 부터 900 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 수신용(흑백이나 단색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287130	비 규격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위성 또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수신용으로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설치되는 디코더는 제외한다)							
85287140	기타(위성 또는 지상파 케이블 수신용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852871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5287200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85287210	대각선 측정 스크린 크기가 50 인치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2872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87300	기타(단색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290000	부분품(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0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85291010	소호 제 8528.7190 호 또는 제 8528.7300 호의 기기용	12	0	0	0	개별	없음	3
85291020	소호 제 8527.2000 호의 기기용 안테나	12	0	0	0	개별	없음	3
85291040	제 8526 호의 기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29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99000	기타							
85299010	제 8528 호의 기기용							
85299011	소호 제 8528.4190 호 · 제 8528.5190 호 및 제 8528.6100 및 제 8528.7130 호의 기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299012	소호 제 8528.7140 호의 기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299013	소호 제 8528.6900 호의 기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299014	특수 모듈(소호 제 8528.5950 호에 분류되는 영상모니터용으로, 그 소호의 세부 특성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29901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299020	소호 제 8525.8000 호의 기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299030	소호 제 8525.5000 호 · 제 8525.6090 호 또는 제 8525.9910 호의 기기용							
85299031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 8525.5000 호 또는 제 8525.6090 호중 하나에 분류되는 기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299039	기타[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연합(EU)]	0	0	0	0	개별	없음	0
85299040	제 8526 호의 기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299090	기타[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연합(EU)]	0	0	0	0	개별	없음	0
85300000	철도용 · 궤도용 · 도로용 · 내륙수로용 · 주차장용 · 항만용 · 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 · 안전기기 · 교통관제기기(제 8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308000	그 밖의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309000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85310000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 · 사이렌 · 표시반 · 도난경보기 · 화재경보기). 다만, 제 8512 호나 제 85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311000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85311010	도난경보기	12	0	0	0	개별	없음	0
8531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312000	액정 디스플레이(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	0	0	0	개별	없음	0
85318000	그 밖의 기기							
85318040	벨	12	0	0	0	개별	없음	3
85318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319000	부분품							
85319010	디렉터	12	0	0	0	개별	없음	0
8531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320000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1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322000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85322100	탄탈륨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22200	알루미늄 전해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223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	0	0	0	개별	없음	0
853224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	0	0	0	개별	없음	0
85322500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22900	기타							
85322910	교류전압용 전해 전열체의 것(작동 전압이 100 볼트 이상이며, 중량이 7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322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323000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329000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85330000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1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332000	그 밖의 고정식 저항기							
85332100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3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333000	권선(捲線)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85333100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85333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334000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85334010	텔레비전 채널 및 기지국 선택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334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339000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85340000	인쇄회로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350000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 [예: 개폐기 · 퓨즈 · 피뢰기 · 전압제한기 · 서지 (s urge) 억제기 · 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1000	퓨즈							
85351010	작동 전압이 12,000 볼트 이상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51020	구조물 안에 또는 구조물 위에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옥외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10.8	0	0	0	개별	없음	0
85351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52000	자동차단기							
85352100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5352110	작동 전압이 12,000 볼트 이상으로 설계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52120	구조물 안에 또는 구조물 위에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옥외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10.8	0	0	0	개별	없음	3
85352130	전류 로스 또는 접지 전류에 의하여 작동되는 보호 계폐기	4	0	0	0	개별	없음	3
853521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5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35300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85353010	작동 전압이 12,000 볼트 이상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53030	구조물 안에 또는 구조물 위에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옥외 설치용으로 설계된 장치	12	0	0	0	개별	없음	3
85353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54000	피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 억제기							
85354010	피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354020	작동 전압이 12,000 볼트 이상 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54030	구조물 안에 또는 구조물 위에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옥외 설치용으로 설계된 장치	12	0	0	0	개별	없음	3
85354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59000	기타							
85359010	전선용 링 터미널 (개별 중량이 5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개별	없음	3
85359020	제 71 류 주 제 4 호에 정의된 커넥터로 만들거나 도금한 접촉자 (추가 부품없이 수입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359030	구조물 안에 또는 구조물 위에 설치용으로 설계된 장치, 옥외 설치용으로 설계된 장치	10.8	0	0	0	개별	없음	0
85359040	전선용 폐쇄 접속함 및 터미널							
85359041	중량이 0.5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5904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359050	작동 전압이 12,000 볼트 이상으로 설계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59060	광원용 또는 전원용 플러그 또는 소켓 (두 개 또는 세 개의 접촉자를 갖춘 것으로, 플러그 또는 소켓 사용을 위해 어댑터 또는 분배기를 갖춘 것) · 전구 소켓 (형광등용을 포함한다) · 커넥터 (구조물에 설치되는 접속함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359090	기타							
85359091	플러그 또는 소켓(개별 중량이 3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359092	개별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5909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0000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surge)억제기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 케이블용 커넥터							
85361000	퓨즈							
85361010	구조물 안에 또는 구조물 위에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옥외 설치용으로 설계된 장치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1090	기타							
85361091	개별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6109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2000	자동차단기							
85362010	구조물 안에 또는 구조물 위에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옥외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2020	전류 로스 또는 접지 전류에 의하여 작동되는 보호 계폐기	4	0	0	0	Kg	없음	3
85362030	전자회로 보호용 반자동식 스위치(공칭 전류가 가변적이지 않고, 중량이 6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2090	기타							
85362091	개별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6209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300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85363010	구조물 안에 또는 구조물 위에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옥외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3020	전자회로 보호용 반자동식 스위치(공칭 전류가 가변적이지 않고, 중량이 6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3030	전류 로스 또는 접지 전류에 의하여 작동되는 보호 계폐기	4	0	0	0	개별	없음	0
85363090	기타							
85363091	개별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6309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364000	계전기(繼電器)							
85364100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85364110	리드 계전기	0	0	0	0	Kg	없음	0
85364120	전화선 또는 텔레그래프선용							
85364121	반송장치용	8	0	0	0	Kg	없음	0
8536412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364130	구조물 안에 또는 구조물 위에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옥외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12	0	0	0	Kg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364190	기타							
85364191	개별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8536419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364900	기타							
85364910	리드 계전기	0	0	0	0	Kg	없음	0
85364920	전화선 또는 텔레그래프선용							
85364921	반송장치용	7.2	0	0	0	Kg	없음	0
8536492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364930	구조물 안에 또는 구조물 위에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옥외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12	0	0	0	Kg	없음	3
85364990	기타							
85364991	개별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85364992	공칭 전류가 20 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6499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365000	그 밖의 개폐기							
85365010	회전 웨이퍼 스위치	0	0	0	0	Kg	없음	0
85365030	구조물 안에 또는 구조물 위에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옥외 설치용으로 설계된 장치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5090	기타							
85365091	개별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65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366000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							
85366100	램프홀더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6900	기타							
85366910	광원용 또는 전원용 플러그 또는 소켓(두 개 또는 세 개의 접촉자를 갖춘 것으로, 플러그 또는 소켓 사용을 위한 어댑터 또는 분배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6920	구조물 안에 또는 구조물 위에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옥외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85366921	통신 케이블용 소켓(플라스틱 부분품 없이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36692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6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367000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7010	개별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67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9000	그 밖의 기기							
85369010	전화선 또는 텔레그래프선용 특수 기기							
85369011	반송장치용	8	0	0	0	개별	없음	0
8536901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9020	전선용 링 터미널(개별 중량이 5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85369030	제 71 류 주 제 4 호에 정의된 귀금속으로 만들거나 도금한 접촉자(추가 부품없이 수입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369040	스크류 터미널 블록(구조물에 설치되는 접속함용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9050	램프용 스위치(starter)							
85369051	형광등용 열스위치(thermostarter)(중량이	1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20 그램을 초과하며, 세 개 이상의 터미널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36905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9060	구조물 안에 또는 구조물 위에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옥외 설치용으로 설계된 장치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9070	케이블 통신용 커넥터	0	0	0	0	개별	없음	0
85369080	플러그나 다중 플러그용 어댑터 또는 분배기	12	0	0	0	개별	없음	3
85369090	기타							
85369091	개별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36909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7000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5 호나 제 8536 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 90 류의 기기와 수차제어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 8517 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00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85371010	브리지·분리기 및 케이블 통신용 분할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371070	제어 기기							
85371071	자동차에 영구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녹음 장치 또는 음성이나 영상 재생 장치와 결합된 것으로 차량 배터리만으로 작동 되는 것으로, 제 8710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용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371072	모터 차량용[면세 트랙터·포크리프트(forklifts)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제 8710 호에 분류되는 차량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37107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371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72000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85372070	제어 기기							
8537207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8537207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372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80000	부분품(제 8535 호·제 8536 호·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100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5389000	기타							
85389020	전화선 또는 텔레그래프선용	12	0	0	0	개별	없음	3
85389030	반송장치용	5.4	0	0	0	개별	없음	0
85389040	소호 제 1070 호 및 제 2070 호에 분류되는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제어 장비용							
85389050	플러그나 소켓용(중량이 3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389060	그 밖의 기기용(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389070	작동 전압이 12,000 볼트 이상으로 설계된 기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389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390000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8539100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85391010	자동차용	6	0	0	0	개별	없음	0
853910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5392000	그 밖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2100	텅스텐 할로겐의 것	8	0	0	0	개별	없음	0
85392200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8539290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5393000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3100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85393200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85393210	나트륨 증기 램프	0	0	0	0	개별	없음	0
853932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5393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394000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4100	아크램프							
85394110	크립톤 또는 크세논 가스를 채운 아크램프(트리거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3941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539490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8539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5400000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 [예: 진공관·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85401000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85401100	천연색	0	0	0	0	개별	없음	0
85401200	단색	0	0	0	0	개별	없음	0
8540200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0	0	0	0	개별	없음	0
85404000	데이터/그래픽 표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06000	그 밖의 음극선관	0	0	0	0	개별	없음	0
85407000	마이크로웨이브관 [예: 자전관(magnetron) · 속도변조관(klystron) · 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 · 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제어관은 제외한다.							
85407100	자전관(magnetron)	0	0	0	0	개별	없음	0
85407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408000	그 밖의 관							
85408100	수신관이나 증폭관	0	0	0	0	개별	없음	0
85408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409000	부분품							
85409100	음극선관의 것							
85409110	텔레비전용과 영상디스플레이용							
85409111	디플렉션 코일(소호 제 911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409112	페이스 인셋 패널	5.4	0	0	0	개별	없음	0
85409113	특히 소호 제 1200 호의 튜브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409119	기타	10.8	0	0	0	개별	없음	0
854091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409900	기타							
85409910	전자총 또는 소호 제 8540.7100 호부터 제 8540.7900 호의 마이크로웨이브관의 라디오주파수 상호 작용 체계가 있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409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410000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0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412000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85412100	전력 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41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413000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41400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	0	0	0	0	개별	없음	0
85415000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0	0	0	0	개별	없음	0
8541600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0	0	0	0	개별	없음	0
85419000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85420000	전자집적회로							
85423000	전자집적회로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423100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 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423200	메모리	0	0	0	0	개별	없음	0
85423300	증폭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423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429000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85430000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1000	입자가속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432000	신호발생기	6	0	0	0	개별	없음	0
85433000	전기도금용 · 전기분해용 ·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85437000	그 밖의 기기							
85437010	사운드 믹서							
85437011	파워 믹서에 통합된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543701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437020	조명 또는 전원장치, 구조물 안에 또는 구조물 위에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 옥외 설치용으로 설계된 장치							
85437021	LED 조명전구	0	0	0	0	개별	없음	0
8543702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437030	자동차용							
85437031	모터 차량용의 것(세금을 제외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543703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5437040	전자기 시스템에 의한 금속 검출용	12	0	0	0	개별	없음	3
85437050	제 8517 호 부터 제 8529 호 까지의 장치용(원격조정 장치와 모터 차량용의 것은 제외한다)							
85437051	특히 제 8525.1020 호, 제 8526.1000 호, 제 8526.9100 호, 제 8526.9220 호, 제 8526.9230 호 중 하나에 분류된 장치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437052	시각신호 컨버터용 카드	0	0	0	0	개별	없음	0
85437054	고주파 라이너 시스템용 컨버터	0	0	0	0	개별	없음	0
85437056	비디오 신호의 출입만 갖는 비디오 신호의 변환 · 증폭 · 처리를 위한 장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접시 중앙에 고정된 증폭기 및 주파수 변환기가 결합된 안테나 피드[저잡음 블록(LNB)]	0	0	0	0	개별	없음	0
85437057	기타(텔레비전용으로 한정한다)	5.4	0	0	0	개별	없음	0
85437058	기타(특히 반송장치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43705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5437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439000	부분품							
85439030	자동차용							
85439031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트랙터 · 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12	0	0	0	개별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85439032	제 8713 호의 차량용							
8543903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439040	소호 제 8543.7059 호의 기기용	12	0	0	0	개별	없음	3
85439090	기타							
85439092	특히 소호 제 8543.7054 호의 기기용	0	0	0	0	개별	없음	0
85439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5440000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1000	권선(捲線)용 전선							
85441100	구리로 만든 것							
85441110	비원형 횡단면의 것	0	0	0	0	Kg	없음	0
85441120	기타(추가 절연선이 없는 피복전선 또는 플라스틱 절연전선)	9	0	0	0	Kg	없음	3
85441190	기타	5.6	0	0	0	Kg	없음	3
85441900	기타	5.6	0	0	0	Kg	없음	3
8544200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85442010	두 개의 컨덕터인 것(외부 컨덕터가 브레이드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5442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443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85443010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트랙터·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10.5	0	0	0	Kg	없음	3
85443090	기타	10.5	0	0	0	Kg	없음	3
85444000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44200	접속자가 부착된 것							
85444210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종이 절연선을 포함한 단선 도체가 16 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444220	플라스틱 절연재를 포함한 플랫(절연선을 포함하여 각 도체의 두께가 1.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다중 연선도체가 6 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444230	기타(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444240	2 개 또는 3 개의 다중연선 도체(각 연선도체의 횡단면이 1.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54442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5444900	기타							
85444910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5444920	플라스틱 절연재를 포함한 플랫(절연선을 포함하여 각 도체의 두께가 1.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도체가 6 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5444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446000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446040	플라스틱 절연재를 포함한 플랫(절연선을 포함하여 각 도체의 두께가 1.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다중 연선도체가 6 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5446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5447000	광섬유 케이블	0	0	0	0	Kg	없음	0
85450000	탄소전극 · 탄소브러시 · 램프용 탄소 · 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51000	전극							
85451100	노(爐)용	0	0	0	0	Kg	없음	0
8545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5452000	브러시	0	0	0	0	Kg	없음	0
8545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5460000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85461000	유리로 만든 것							
85461010	전압이 3,300 볼트 이상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4610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5462000	도자제의 것							
85462010	전압이 3,300 볼트 이상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4620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5469000	기타							
85469010	전압이 3,300 볼트 이상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54690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85470000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 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71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0	0	0	0	개별	없음	0
85472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12	0	0	0	Kg	없음	3
85479000	기타							
85479010	구멍을 뚫은 것(소결한 유리 파우더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5479020	비금속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Kg	없음	0
8547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5480000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1000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85481010	중고 일차전지와 축전지, 중고 배터리	0	0	0	0	Kg	없음	0
8548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548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6010000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601100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6012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6020000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車)							
86021000	디젤 전기기관차	0	0	0	0	개별	없음	0
8602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6030000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3100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603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60400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 · 기중기차(crane) · 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 · 트랙라이너(trackliner) · 검사차 · 궤도검사차]	0	0	0	0	개별	없음	0
860500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 · 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6060000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6100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0	0	0	0	개별	없음	0
86063000	자기방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6069000	기타							
86069100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60692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6069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60700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86071000	보기(bogie) · 비셀보기(bissel-bogie) · 차축 · 차륜과 이들의 부분품							
86071100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0	0	0	0	Kg	없음	0
86071200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0	0	0	0	Kg	없음	0
860719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8607200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60721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607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6073000	축과 그 밖의 연결장치 · 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6079000	기타							
86079100	기관차용	0	0	0	0	Kg	없음	0
8607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6080000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 · 궤도 · 도로 · 내륙수로 · 주차장 · 항만 ·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 · 안전용 · 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860900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10000	트랙터(제 8709 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00	보행 조종식 트랙터	0	0	0	0	개별	없음	0
8701200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0	0	0	0	개별	없음	0
87013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0	0	0	0	개별	없음	0
87019000	기타							
87019030	도로주행식 트랙터							
87019031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을 갖춘것)	7	0	0	0	개별	없음	5
87019039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1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7020000	10 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0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을 갖춘 것							
87021040	클러스터 차량(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21080	허가된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7	0	0	0	개별	없음	0
870210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29000	기타							
87029012	기타(다만, 추진용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소호 제 9012 호와 제 9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7	0	0	0	개별	없음	0
87029013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29020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다만, 소호 제 90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7	0	0	0	개별	없음	0
87029030	허가된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7	0	0	0	개별	없음	0
87029040	클러스터 차량(소호 제 90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7	0	0	0	개별	없음	0
870290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0000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 870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00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87031010	면허 당국이 도로주행 관련 차량 면허 또는 도로 주행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도로주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	0	0	0	개별	없음	5
87031030	현장차량(field vehicle)	7	0	0	0	개별	없음	5
87031080	허용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7	0	0	0	개별	없음	0
870310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00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321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87032110	택시(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32120	사막 차량 또는 관광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용 차량(다만, 감독을 위한 법령 제 23 조 또는 제 24 조에 근거하여 도로운송 컨트롤러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승인되고 승인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130	시신 운구용으로 특별히 장착된 차량(수입전 승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32140	구급차, 구급차 조립에 사용되는 운전자 캡이 장착된 새시							
87032141	환자 수송용으로만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다만, 이 소호의 목적에 따라 보건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32149	기타(특히 환자이송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150	면허 당국의 도로주행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용[다만, 제 87 류에 규정된 추가규칙(이스라엘)의 규칙 7(rule 7)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도로주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170	소형 트랙터, 현장차량(field vehicle)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1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2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 1,500 시시 이하인 것							
87032210	택시(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32220	사막 차량 또는 관광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용 차량(다만, 감독을 위한 법령 제 23 조 또는 제 24 조에 근거하여 도로운송 컨트롤러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승인되고 승인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230	시신 운구용으로 특별히 장착된 차량(수입전 승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32240	구급차, 구급차 조립에 사용되는 운전자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캡이 장착된 새시							
87032241	환자 수송용으로만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다만, 이 소호의 목적에 따라 보건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32249	기타(특히 환자이송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270	그 밖의 차량(대기오염정도가 1 또는 2 수준인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하이브리드)							
87032271	녹색등급이 100 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외부의 전원으로 충전하여 추진되는 여류물레이터 용량이 3 킬로와트시를 초과하는 것	7	0	0	0	개별	없음	5
87032279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2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300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3,000 시시 이하인 것							
87032310	택시(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32330	사막 차량 또는 관광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용 차량(다만, 감독을 위한 법령 제 23 조 또는 제 24 조에 근거하여 도로운송 컨트롤러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승인되고 승인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340	시신 운구용으로 특별히 장착된 차량(수입전 승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32350	구급차, 구급차 조립에 사용되는 운전자 캡이 장착된 새시							
87032351	환자 수송용으로만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다만, 이 소호의 목적에 따라 보건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32359	기타(특히 환자이송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360	대여용 모터 홈(명시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이 항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하다.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370	기타(대기오염정도가 1 또는 2 수준인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하이브리드)							
87032371	녹색등급이 100 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외부의 전원으로 충전하여 추진되는 여류물레이터 용량이 3 킬로와트시를 초과하는 것	7	0	0	0	개별	없음	5
87032379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380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7	0	0	0	개별	없음	5
870323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400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2410	택시(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7032430	클러스터 차량(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440	시신 운구용으로 특별히 장착된 차량(수입전 승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32450	구급차, 구급차 조립에 사용되는 운전자 캡이 장착된 새시							
87032451	환자 수송용으로만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다만, 이 소호의 목적에 따라 보건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32459	기타(특히 환자이송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460	대여용 모터 홈(명시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이 항목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7	0	0	0	개별	없음	0
87032480	총중량이 4,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7	0	0	0	개별	없음	5
870324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00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33100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87033110	택시(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120	사막 차량 또는 관광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용 차량(다만, 감독을 위한 법령 제 23 조 또는 제 24 조에 근거하여 도로운송 컨트롤러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승인되고 승인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130	시신 운구용으로 특별히 장착된 차량(수입전 승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33140	구급차, 구급차 조립에 사용되는 운전자 캡이 장착된 새시							
87033141	환자 수송용으로만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다만, 이 소호의 목적에 따라 보건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33149	기타(특히 환자이송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150	그 밖의 차량(대기오염정도가 1 또는 2 수준인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하이브리드)							
87033151	녹색등급이 100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외부의 전원으로 충전하여 추진되는 여류물레이터 용량이 3킬로와트시를 초과하는 것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159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5
87033170	도로주행식 트랙터, 소형 트랙터, 필드(field) 차량	7	0	0	0	개별	없음	5
870331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200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2,500 시시 이하인 것							
87033210	택시(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7033230	사막 차량 또는 관광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용 차량(다만, 감독을 위한 법령 제 23 조 또는 제 24 조에 근거하여 도로운송 컨트롤러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승인되고 승인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240	시신 운구용으로 특별히 장착된 차량(수입전 승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33250	구급차, 구급차 조립에 사용되는 운전자 캡이 장착된 새시							
87033251	환자 수송용으로만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다만, 이 소호의 목적에 따라 보건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33259	기타(특히 환자이송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260	그 밖의 차량(대기오염정도가 1 또는 2 수준인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하이브리드)							
87033261	녹색등급이 100 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외부의 전원으로 충전하여 추진되는 여유물레이터 용량이 3 킬로와트시를 초과하는 것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269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5
87033270	대여용 모터 홀(명시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이 항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하다.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280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2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300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3310	택시(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330	사막 차량 또는 관광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용 차량(다만, 감독을 위한 법령 제 23 조 또는 제 24 조에 근거하여 도로운송 컨트롤러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승인되고 승인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340	시신 운구용으로 특별히 장착된 차량(수입전 승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33350	구급차, 구급차 조립에 사용되는 운전자 캡이 장착된 새시							
87033351	환자 수송용으로만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다만, 이 소호의 목적에 따라 보건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33359	기타(특히 환자이송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360	대여용 모터 홀(명시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이 항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하다.	7	0	0	0	개별	없음	0
87033380	허가된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을	7	0	0	0	개별	없음	5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초과하는 것							
870333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9000	기타							
87039010	여객 차량							
87039011	차량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87039019	기타							
87039020	차량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7	0	0	0	개별	없음	5
8703903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39050	승인기관의 도로주행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용[다만 제 87 류에 규정된 추가규칙(이스라엘)의 규칙 7(rule 7)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도로주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	0	0	0	개별	없음	0
87039080	허가된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7	0	0	0	개별	없음	5
870390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40000	화물자동차							
87041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42000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87042100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87042130	소방청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으로부터 승인받아 수입한 것(소방청장이 승인한 소방장비가 소방차량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42140	도로주행식 트랙터	7	0	0	0	개별	없음	5
87042180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0421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42200	총중량이 5 톤 초과 20 톤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042300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043000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43100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87043130	소방청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으로부터 승인받아 수입한 것(소방청장이 승인한 소방장비가 소방차량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43140	도로주행식 트랙터	7	0	0	0	개별	없음	0
87043180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0431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43200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049000	기타							
87049020	허가된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7049021	기타(차량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7	0	0	0	개별	없음	0
87049029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704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7050000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 이동방사선차]							
87051000	기중기차(crane lorry)							
87051010	예인차량 대용의 것							
87051011	허가된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051019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5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705200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0	0	0	0	개별	없음	0
87053000	소방차							
87053010	소방청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으로부터 승인받아 수입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053030	허가된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0530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54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0	0	0	0	개별	없음	0
87059000	기타							
87059010	청소 및/또는 살포용 특수 차량	0	0	0	0	개별	없음	0
87059030	쓰레기 수거용 트럭	7	0	0	0	개별	없음	0
87059040	전동 콘크리트 펌프	0	0	0	0	개별	없음	0
87059050	수색 및 구조에 적합하게 개조 또는 조정된 차량, 소방법에 규정된 소방서장 및 소방청장이 승인한 구조 장비로 구성된 차량(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59060	허가된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059080	기타(주행용 차량에 전기식 엔진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7	0	0	0	개별	없음	0
870590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60000	엔진을 갖춘 새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60010	허가된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차량 조립용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060020	환자수송만을 위한 의료기관 구급차의 조립용(다만, 이 소호의 목적에 따라 보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70600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070000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00	제 8703 호의 차량용							
87071010	모터 차량용(여객용 차량)	6	0	0	0	개별	없음	0
87071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7079000	기타							
87079010	버스용 차체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7079011	허가된 총중량이 4,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2	0	0	0	개별	없음	0
8707901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7079020	안전캐빈(건설주택부장관이 트랙터 운전자 보호용으로 특별히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79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7080000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1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7081010	서브차량 충돌 보호에 적합한 화물차용 후방범퍼	6	0	0	0	개별	없음	0
87081020	농업용 또는 정지(整地)용 트랙터(그 밖의 차량용인 유사한 부속품과 부분품과 구조 또는 중량이 상이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7081030	면세트랙터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7081040	총 중량이 25 킬로그램 이상의 예인용 훅(hook)이 장착된 금속제 완충기	6	0	0	0	개별	없음	0
87081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7082000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00	안전벨트와 안전벨트의 부분품, 진흙받이	2	0	0	0	개별	없음	0
87082900	기타							
87082910	농업용 또는 정지(整地)용 트랙터(그 밖의 차량용인 유사한 부속품과 부분품과 구조 또는 중량이 상이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82920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소호 제 8708.2910 호에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87082930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7082940	뒤집힘 방지용 아치, 안전 프레임	0	0	0	0	개별	없음	0
87082950	자동차(제 8703 호의 것)용 윈드 디플렉터(deflector)	6	0	0	0	개별	없음	0
870829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708300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708301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7083011	농업용 또는 정지(整地)용 트랙터(그 밖의 차량용인 유사한 부속품과 부분품과 구조 또는 중량이 상이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83019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7083090	기타							
87083091	농업용 또는 정지(整地)용 트랙터(그 밖의 차량용인 유사한 부속품과 부분품과 구조 또는 중량이 상이한 것으로 제 3093 호에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83092	소호 제 8716.1000 호 물품 제조용 브레이크(조건부)	12	0	0	0	개별	없음	3
87083093	디스크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잠김방지브레이크시스템(ABS)	6	0	0	0	개별	없음	0
87083099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708400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7084010	농업용 또는 정지(整地)용 트랙터(그 밖의 차량용인 유사한 부속품과 부분품과 구조 또는 중량이 상이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84020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소호 제 40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87084030	중량이 1,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상자	0	0	0	0	개별	없음	0
87084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7085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87085010	농업용 또는 정지(整地)용 트랙터(그 밖의 차량용인 유사한 부속품과 부분품과 구조 또는 중량이 상이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85020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7085030	리어 액슬(세 번째 차축으로 지칭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0	0	0	개별	없음	0
87085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7087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87087010	농업용 또는 정지(整地)용 트랙터(그 밖의 차량용인 유사한 부속품과 부분품과 구조 또는 중량이 상이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87020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7087030	차륜 보호용 장치[안전차륜(run flat)]	0	0	0	0	개별	없음	0
87087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7088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87088010	농업용 또는 정지(整地)용 트랙터(그 밖의 차량용인 유사한 부속품과 부분품과 구조 또는 중량이 상이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88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7089000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87089110	농업용 또는 정지(整地)용 트랙터(그 밖의 차량용인 유사한 부속품과 부분품과 구조 또는 중량이 상이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89120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70891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70892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87089210	농업용 또는 정지(整地)용 트랙터(그 밖의 차량용인 유사한 부속품과 부분품과 구조 또는 중량이 상이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89220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70892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70893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87089310	농업용 또는 정지(整地)용 트랙터(그 밖의 차량용인 유사한 부속품과 부분품과 구조 또는 중량이 상이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89320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870893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7089400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 (steering column)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87089410	농업용 또는 정지(整地)용 트랙터(그 밖의 차량용인 유사한 부속품과 부분품과 구조 또는 중량이 상이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894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7089500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그 부분품	6	0	0	0	개별	없음	0
87089900	기타							
87089910	농업용 또는 정지(整地)용 트랙터(그 밖의 차량용인 유사한 부속품과 부분품과 구조 또는 중량이 상이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089920	면세 트랙터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소호 제 99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87089930	공기주입식이 아닌 타이어가 장착된 허브	12	0	0	0	개별	없음	3
87089940	모든 차량용 햇빛 가리개(커튼을 포함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87089950	제동 시스템(다른 호에 특정 되지 않은 것으로 차량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배기 브레이크 시스템 과 특수 부분품), 조향 부속품(다른 호에 특정 되지 않은 것), 유압식 조향기구 및 특수 부분품(다른 호에 특정 되지 않은 것), 커플링(coupling) 판(오른 커플링을 포함한다)(견인 링, 트레일러 견인고리 지지에 적합한 것과 특수 부분품), 엔진용이 아닌 중앙 윤활 시스템 및 특수 부분품(다른 호에 특정 되지 않은 것), 냉각 팬용 클러치, 광반사기	6	0	0	0	개별	없음	0
87089960	진흙받이	2	0	0	0	개별	없음	0
87089980	안전벨트 부분품	2	0	0	0	개별	없음	0
870899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87090000	공장 · 창고 · 부두 ·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091000	차량							
87091100	전기식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09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7099000	부분품							
87099020	공기주입식이 아닌 타이어가 장착되는 허브	12	0	0	0	Kg	없음	3
8709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87100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87110000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711100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7	0	0	0	개별	없음	0
8711200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7	0	0	0	개별	없음	0
87112050	엔진의 출력이 25 킬로와트 이하인 것(이 소호는 2017 년 6 월 30 일까지 유효함)	7	0	0	0	개별	없음	0
87112060	엔진의 출력이 25 킬로와트 초과 35 킬로와트 이하인 것(이 소호는 2017 년 6 월 30 일까지 유효함)	7	0	0	0	개별	없음	0
87112070	엔진의 출력이 35 킬로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이 소호는 2017 년 6 월 30 일 까지 유효함)	7	0	0	0	개별	없음	0
87112090	기타(이 소호는 2017 년 6 월 30 일 까지 유효함)	7	0	0	0	개별	없음	0
87113000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5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7	0	0	0	개별	없음	0
87113050	엔진의 출력이 25 킬로와트 이하인 것(이 소호는 2017 년 6 월 30 일까지 유효함)	7	0	0	0	개별	없음	0
87113060	엔진의 출력이 25 킬로와트 초과 35 킬로와트 이하인 것(이 소호는 2017 년 6 월 30 일까지 유효함)	7	0	0	0	개별	없음	0
87113070	엔진의 출력이 35 킬로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이 소호는 2017 년 6 월 30 일 까지 유효함)	7	0	0	0	개별	없음	0
87113090	기타(이 소호는 2017 년 6 월 30 일 까지 유효함)	7	0	0	0	개별	없음	0
87114000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 초과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7	0	0	0	개별	없음	0
87114060	엔진의 출력이 35 킬로와트 이하인 것(이 소호는 2017 년 6 월 30 일까지 유효함)	7	0	0	0	개별	없음	0
87114070	엔진의 출력이 35 킬로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이 소호는 2017 년 6 월 30 일 까지 유효함)	7	0	0	0	개별	없음	0
87114090	기타(이 소호는 2017 년 6 월 30 일 까지 유효함)	7	0	0	0	개별	없음	0
87115000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 초과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7	0	0	0	개별	없음	0
87119000	기타							
87119020	전기식 엔진으로 구동되는 것(면허 당국이 자동차 면허나 도로주행 허가를 부여하지 않았고 도로주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	0	0	0	개별	없음	0
87119030	보조 전기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	7	0	0	0	개별	없음	0
87119040	기타(전기 엔진만으로 주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7	0	0	0	개별	없음	0
87119090	기타	7	0	0	0	개별	없음	0
8712000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론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7130000	신체장애인을 위한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7131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713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7140000	부분품과 부속품(제 8711 호부터 제 8713 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1000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87141010	안장	12	0	0	0	Kg	없음	3
87141020	타이어가 장착되지 않은 허브, 디스크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잠금방지 브레이크시스템 (ABS)	6	0	0	0	Kg	없음	0
87141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87142000	신체장애인 운송용의 것	0	0	0	0	Kg	없음	0
87149000	기타							
87149100	프레임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7149200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0	0	0	0	Kg	없음	0
87149300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킷 휠(sprocket-wheel)	0	0	0	0	Kg	없음	0
87149400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7149500	안장	0	0	0	0	Kg	없음	0
87149600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이들의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714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715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0	0	0	0	개별	없음	0
8716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7161010	폭이 2.5 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2 미터 이하인 것	12	0	0	0	개별	없음	0
87161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87162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12	0	0	0	개별	없음	3
87163000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00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87163110	소방청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소방용으로 수입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1631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7163900	기타							
87163910	소방청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소방용으로 수입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1639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716400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4010	소방청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소방용으로 수입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164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7168000	그 밖의 차량							
87168010	소방청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소방용으로 수입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7168020	일륜 손수레용의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7168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87169000	부분품							
87169010	공기주입식이 아닌 타이어가 장착된 허브	12	0	0	0	Kg	없음	3
87169020	소호 제 9010 호에 계기되지 않은 차축·휠(Wheel)·스포크·브레이크	10	0	0	0	Kg	없음	0
8716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88010000	기구·비행선·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0	0	0	0	개별	없음	0
88020000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88021000	헬리콥터							
8802110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802120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802200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88022010	부가가치세법 1975(5736) 제 30 조(A)(12)(C)에 해당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8022030	무인항공기	0	0	0	0	개별	없음	0
88022040	분해목적 또는 재수출하기 위하여 면세로 수입된 항공기(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2050	항공 택시(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2060	연구, 개발, 실험 목적의 항공기(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2070	코칭용 항공기(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2080	농업용 항공기(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2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300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초과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88023010	부가가치세법 1975(5736) 제 30 조(A)(12)(C)에 해당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8023030	무인항공기	0	0	0	0	개별	없음	0
88023040	분해목적 또는 재수출하기 위하여 면세로 수입된 항공기(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3050	항공 택시(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3060	연구, 개발, 실험 목적의 항공기(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3070	코칭용 항공기(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3080	농업용 항공기(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3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4000	자체 중량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88024010	부가가치세법 1975(5736) 제 30 조(A)(12)(C)에 해당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8024030	무인항공기	0	0	0	0	개별	없음	0
88024040	분해목적 또는 재수출하기 위하여 면세로 수입된 항공기(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8024050	항공 택시(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4060	연구, 개발, 실험 목적의 항공기(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4070	코칭용 항공기(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4080	농업용 항공기(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4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8026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우주선 운반로켓	0	0	0	0	개별	없음	0
88030000	부분품(제 8801 호나 제 880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31000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803200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803300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803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8040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a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40010	낙하산 부분품과 부속품							
88040011	조난 신호용 로켓 트위스트 낙하산(교통부장관이 해양 구조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8804001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8804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8050000	항공기 발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1000	항공기 발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그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8052000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88052100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8805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89010000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1100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89011010	부가가치세법 1975(5736) 제 30 조(A)(12)(C)에 해당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901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9012000	탱커(tanker)	0	0	0	0	개별	없음	0
89013000	냉동선(소호 제 8901.200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901900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89019010	부가가치세법 1975(5736) 제 30 조(A)(12)(C)에 해당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901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9020000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9030000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89031010	교통부장관이 해양 구조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승인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9031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9039000	기타							
89039100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9039110	길이가 7 미터 이하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것(소호 제 9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9039120	품질에 따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승무원실이 있는 것							
89039121	길이가 7 미터 이하인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903912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90391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90392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89039210	길이가 7 미터 이하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것(소호 제 9220 호, 제 92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9039220	품질에 따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승무원실이 있는 것							
89039221	길이가 7 미터 이하인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903922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9039230	해양 제트기	12	0	0	0	개별	없음	3
890392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9039900	기타							
89039910	길이가 7 미터 이하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것(소호 제 9220 호, 제 92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89039920	품질에 따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승무원실이 있는 것							
89039921	길이가 7 미터 이하인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8903992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9039930	해양 제트기	12	0	0	0	개별	없음	3
89039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9040000	에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s craft)	0	0	0	0	개별	없음	0
89050000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艇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51000	준설선	0	0	0	0	개별	없음	0
8905200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8905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9060000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00	군함	0	0	0	0	개별	없음	0
8906900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89069010	공기주입식 보트							
89069011	교통부장관이 해양 구조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승인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8906901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8906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89070000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 [예: 부교 · 탱크 · 코퍼담 (coffer- dam) · 부잔교 (landing stage) · 부표 · 수로부표]							
89071000	인플렛터블 (inflatable)식 부교	0	0	0	0	개별	없음	0
8907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010000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 8544 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 (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11000	광섬유 ·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0	0	0	0	Kg	없음	0
90012000	편광재료 (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0	0	0	0	Kg	없음	0
90013000	콘택트렌즈	12	0	0	0	개별	없음	0
90014000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12	0	0	0	개별	없음	0
90015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12	0	0	0	개별	없음	0
90019000	기타							
90019010	차량용	6	0	0	0	Kg	없음	0
9001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0020000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 (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021000	대물렌즈							
90021100	카메라용 · 영상기용 · 사진 확대기용 · 사진 축소기용	0	0	0	0	Kg	없음	0
9002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0022000	필터	0	0	0	0	Kg	없음	0
9002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0030000	안경 · 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이들의 부분품							
90031000	테와 장착구							
900311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2	0	0	0	개별	없음	0
900319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12	0	0	0	개별	없음	0
90039000	부분품	12	0	0	0	Kg	없음	3
90040000	시력교정용 · 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 ·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00	선글라스	0	0	0	0	개별	없음	0
9004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050000	쌍안경 · 단안경 · 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 (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0051000	쌍안경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유럽연합 (EU)]	12	0	0	0	개별	없음	0
90058000	그 밖의 기기							
90058010	적외선 감지 망원경, 광 증폭 망원경, 천체관측용 기기류	0	0	0	0	개별	없음	0
90058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9005900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90059010	적외선 감지 망원경, 광 증폭 망원경, 천체관측용 기기류로 특수고안된 것	0	0	0	0	Kg	없음	0
9005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90060000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8539 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1000	인쇄제판용 사진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063000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064000	즉석인화 사진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065000	그 밖의 사진기							
90065100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 [싱글렌즈리플렉스(SLR)](폭이 35 밀리미터 이하의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065200	기타(폭이 35 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065300	기타(폭이 35 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065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066000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900661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066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069000	부분품과 부속품							
90069100	카메라용	12	0	0	0	Kg	없음	3
90069900	기타							
90069910	삼각대	0	0	0	0	Kg	없음	0
90069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90070000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0071000	촬영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072000	프로젝터(projector)							
90072010	폭이 35 밀리미터인 롤필름용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0072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079000	부분품과 부속품							
90079100	카메라용	12	0	0	0	Kg	없음	3
90079200	기타							
90079230	삼각대	0	0	0	0	개별	없음	0
900792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90080000	투영기·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0085000	프로젝터, 확대기와 축소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08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9010000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90101000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10500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와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0	0	0	0	개별	없음	0
90106000	영사용 스크린	0	0	0	0	개별	없음	0
90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90110000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11000	입체현미경	0	0	0	0	개별	없음	0
90112000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118000	그 밖의 현미경	0	0	0	0	개별	없음	0
90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9012000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2100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0	0	0	0	개별	없음	0
9012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90130000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1000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6	0	0	0	개별	없음	0
90132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138000	그 밖의 기기							
90138010	화상부어	10	0	0	0	개별	없음	0
90138020	유리 또는 유사한 장치를 통한 확대장치(모든 재질로 만들어진 텔레비전 화면용을 포함한다), 도어아이	10	0	0	0	개별	없음	0
90138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13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90140000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41000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0	0	0	0	개별	없음	0
9014200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14800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14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90150000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포함한다) · 수로측량기기 · 해양측량기기 · 수리계측기기 · 기상관측기기 · 지구물리학용 기기 [컴퍼스 (compass)는 제외한다] · 거리측정기							
90151000	거리측정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152000	경위의 (經緯儀)와 시거의 (視距儀)	0	0	0	0	개별	없음	0
90153000	수준기 (水準器)	0	0	0	0	개별	없음	0
90154000	사진측량기기	0	0	0	0	Kg	없음	0
9015800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15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90160000	감량 (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 (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160010	저울	6	0	0	0	개별	없음	0
90160090	부분품	2	0	0	0	Kg	없음	0
90170000	제도용구 · 설계용구 · 계산용구 (예: 제도기 · 축소확대기 · 분도기 · 제도세트 · 계산척 · 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 [예: 공은 자와 줄자 ·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 (callipers)]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100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 (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172000	그 밖의 제도용구 · 설계용구 · 계산용구							
90172010	맹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점자 표시가 있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0172020	계산용구	6	0	0	0	개별	없음	0
90172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173000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 (callipers)와 게이지류							
90173010	검사 대상 개체와 일치하는 가변 전기 현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	0	0	0	0	Kg	없음	0
90173090	기타							
90173091	맹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점자 표시가 있는 것							
90173092	섬유용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017309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90178000	그 밖의 기기							
90178010	검사 또는 통제 대상 개체와 일치하는 가변 전기 현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0178090	기타							
90178091	맹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점자 표시가 있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0178092	플렉시블 메탈 측정 테이프 (길이가 7 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0
90178094	기타 (측정용 또는 시험용으로 한정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9017809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9017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90180000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1000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00	심전계	0	0	0	0	개별	없음	0
90181200	초음파 영상진단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181300	자기공명 촬영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1814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18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182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183000	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케놀라(c 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90183110	유리제 피스톤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0183140	플라스틱 재료의 무게가 다른 모든 재료의 무게를 초과하는 것	0	0	0	0	1000 Un.	없음	0
901831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90183200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0	0	0	0	Kg	없음	0
90183900	기타							
90183910	혈액 또는 체액 수혈 시스템 및 그 부품, 멸균 포장용 일회용 카테터(catheter), 혈액 또는 체액 시스템 연결용 액세서리, 인공 신장 연결 부속품	0	0	0	0	개별	없음	0
90183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184000	치과용 그 밖의 기기							
90184100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90184900	기타							
90184910	치과용 드릴에 사용하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작은 드릴·디스크·드릴 비트·브러시, 금 또는 그 밖의 충전제를 위한 위한 기기, 인상용 컴파운드 쟁반, 보철용에 사용되는 도구	6	0	0	0	개별	없음	5
90184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185000	안과용 그 밖의 기기							
90185020	안과용	0	0	0	0	개별	없음	0
90185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18900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89010	의료용 주걱	12	0	0	0	개별	없음	3
90189020	혈액 또는 체액 수혈시스템 및 그 부분품, 진단장비[청진기, 이경(耳鏡), 후두경], 혈액 또는 체액 시스템 연결용 액세서리, 인공 신장 연결 부속품	0	0	0	0	개별	없음	0
90189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19000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019100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90191010	마사지용 기기							
90191011	욕창예방을 위한 매트리스(특정한 리듬과 압력을 가하면 팽창 또는 배기되는 두개의 관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매트리스 압축장치(배관 팽창과 배기의 압력과 리듬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90191012	수중 마사지를 위한 기구	12	0	0	0	개별	없음	3
90191019	기타	12	0	0	0	Kg	없음	0
90191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0192000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0	0	0	0	Kg	없음	0
90200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90200010	수중 호흡용 장치[아쿠아링(aqualung)]	12	0	0	0	Kg	없음	3
90200020	코와 입에 맞게 고안된 것(급식 장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90200021	기기	8	0	0	0.42	개별	없음	0
90200029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9020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0210000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11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212000	의치와 치과용품							
90212100	의치							
90212110	틀니	12	0	0	0	Kg	없음	0
902121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90212900	기타	6	0	0	0	Kg	없음	0
90213000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90213100	인조관절	0	0	0	0	개별	없음	0
9021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0214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215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219000	기타							
90219010	보청기 및 심장박동기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9021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90220000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 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발생기 · 조절반 · 스크린 · 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 ·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21000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인 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2213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221400	기타(내과용 · 외과용 ·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221900	그 밖의 용도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0222000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인 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00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0	0	0	0	개별	없음	0
90222900	그 밖의 용도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0223000	엑스선관	0	0	0	0	개별	없음	0
9022900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902300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90240000	재료(예: 금속 · 목재 · 직물 · 종이 · 플라스틱)의 경도 · 항장력 · 압축성 · 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1000	금속재료 시험기기							
90241010	검사 대상 개체와 일치하는 가변 전기 현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	8	0	0	0	개별	없음	0
90241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90248000	그 밖의 기기							
90248010	검사 대상 개체와 일치하는 가변 전기 현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	8	0	0	0	개별	없음	0
90248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90249000	부분품과 부속품							
90249010	검사 대상 개체와 일치하는 가변 전기 현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기구용	2	0	0	0	Kg	없음	0
90249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90250000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 온도계 · 고온계 · 기압계 · 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251000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251100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90251110	맹인용 온도계	0	0	0	0	개별	없음	0
90251120	그 밖의 의료용 온도계	12	0	0	0	개별	없음	3
902511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0251900	기타							
902519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6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902519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90258000	그 밖의 기기							
90258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90258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90259000	부분품과 부속품	2	0	0	0	Kg	없음	0
90260000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 9014 호·제 9015 호·제 9028 호·제 9032 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61000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검사용							
90261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26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262000	압력의 측정용·검사용							
90262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262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268000	그 밖의 기기							
90268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268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269000	부분품과 부속품							
90269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Kg	없음	0
9026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0270000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 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1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5.6	0	0	0	개별	없음	0
90272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0	0	0	개별	없음	0
90273000	분광계·분광광도계·분광사진기(자외선· 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0273010	검사 대상 개체와 일치하는 가변 전기 현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0273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0275000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0275010	검사 대상 개체와 일치하는 가변 전기 현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							
90275011	사진 형광 측정계, 체액의 자동 측정·시험·분석을 위한 장비	0	0	0	0	개별	없음	0
90275012	감광도계(感光度計)와 농도계	0	0	0	0	개별	없음	0
90275013	사진촬영용 또는 영화촬영용 빛 측정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27501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275090	기타							
90275091	수동용 또는 투입식 굴절계	0	0	0	0	개별	없음	0
90275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278000	그 밖의 기기							
90278010	혈액 가스 분석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278020	체액의 자동 측정·시험·분석을 위한 장비	0	0	0	0	개별	없음	0
90278030	감광도계(感光度計)와 농도계	0	0	0	0	개별	없음	0
90278040	피·에이치(PH) 미터	0	0	0	0	개별	없음	0
90278050	노출계							
90278053	사진촬영용 또는 영화촬영용	12	0	0	0	개별	없음	3
90278059	기타	5.6	0	0	0	개별	없음	3
90278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279000	마이크로톰(microtome), 부분품과 부속품							
90279010	마이크로톰(microtome)	0	0	0	0	Kg	없음	0
9027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0280000	기체·액체·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00	기체용 계기	8	0	0	0	개별	없음	0
90282000	액체용 계기							
90282010	수성용	10	0	0	0	개별	없음	0
902820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90283000	전기용 계기	12	0	0	0	개별	없음	3
90289000	부분품과 부속품							
90289010	수심용							
90289011	수심 또는 수심의 일부를 위한 디지털식(에보나이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90289012	오목한 마노(수심용)	0	0	0	0	Kg	없음	0
9028901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90289020	전기 계량기용	0	0	0	0	Kg	없음	0
90289090	기타	2	0	0	0	Kg	없음	0
90290000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 9014 호나 제 901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1000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90291010	택시미터의 것(활동 기록을 지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291020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6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트랙터 · 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90291090	기타							
90291091	적산(積算)회전계 · 생산량계와 이와 유사한 것(기계 · 모터 등의 작업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포함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291099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9029200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2010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트랙터 · 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90292011	주행 속도 기록장치	6	0	0	0	개별	없음	0
90292019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90292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299000	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은 제외하고 주행 속도 기록장치용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은 제외한다]	2	0	0	0	Kg	없음	0
90299090	기타	2	0	0	0	Kg	없음	0
9030000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 9028 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 엑스선 · 우주선이 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01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9030200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2	0	0	0	개별	없음	0
90303000	전압 · 전류 · 저항 ·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031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2	0	0	0	개별	없음	0
903032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2	0	0	0	개별	없음	0
90303300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0303310	원격 측정장치(전력공급을 위하여 국가전력망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303320	발전소 제어실용 측정장치(국가 또는 도시 발전소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303330	소형 면세용 트랙터, 포크리프트(forklift)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것	6	0	0	0	개별	없음	0
90303340	기타(차량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9030339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0	0	0	개별	없음	0
90303900	기타							
90303910	원격 측정장치(전력공급을 위하여 국가전력망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303920	발전소 제어실용 측정장치(국가 또는 도시 발전소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0303930	모터 차량용의 것[면세 트랙터 · 포크리프트(forklift)용 또는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90303940	기타(차량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90303990	기타	2	0	0	0	개별	없음	0
9030400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 ·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 잡음전압계(psophometer)]	0	0	0	0	개별	없음	0
90308000	그 밖의 기기							
903082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0	0	0	0	개별	없음	0
903084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90308410	원격 측정장치(전력공급을 위하여 국가전력망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308420	발전소 제어실용 측정장치(국가 또는 도시 발전소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308490	기타	2	0	0	0	개별	없음	0
90308900	기타							
90308910	원격 측정장치(전력공급을 위하여 국가전력망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308920	발전소 제어실용 측정장치(국가 또는 도시 발전소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308990	기타	2	0	0	0	개별	없음	0
90309000	부분품과 부속품							
90309010	소호 제 1000 호의 장비 및 도구	0	0	0	0	Kg	없음	0
90309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2	0	0	0	개별	없음	0
9030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0310000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90311000	균형시험기							
90311010	검사 대상 개체와 일치하는 가변 전기 현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0311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0312000	테스트벤치(Test bench)							
90312010	검사 대상 개체와 일치하는 가변 전기 현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0312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90314000	그 밖의 광학식 기기							
90314100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0	0	0	0	개별	없음	0
90314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318000	그 밖의 기기							
90318010	섬유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0318020	기타(검사 대상 개체와 일치하는 가변 전기 현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318090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90319000	부본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9032000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100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90321010	검사 대상 개체와 일치하는 가변 전기 현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							
9032101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90321019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90321020	하우징 또는 부속품을 제외하고 개별 무게가 500 그램 이하인 것							
9032102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9032102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0321090	기타							
9032109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321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322000	매노우스타트(manostat)							
90322010	검사 대상 개체와 일치하는 가변 전기 현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							
9032201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90322019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90322090	기타							
9032209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322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328000	그 밖의 기기							
90328100	액압식이나 공기식							
90328110	레벨 조절기(각각의 무게가 250 그램을 초과하지 않고 전기회로를 연결하거나 연결하지 않고 작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032811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0
9032811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90328120	그 밖의 레벨 조절기							
9032812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32812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32819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032819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90328199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90328900	기타							
90328910	검사 대상 개체와 일치하는 가변 전기 현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							
9032891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0
90328912	기타(차량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0
90328913	삼상 전기모터 속도 자동 조절기(주파수 또는 전압 제어용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328915	에어컨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0328919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90328920	레벨 조절기(각각의 무게가 250 그램을 초과하지 않고 전기회로를 연결하거나 연결하지 않고 작동하는 것으로 소호 제 8910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9032892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0
9032892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90328930	그 밖의 레벨 조절기							
9032893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032893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0328990	기타							
90328991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90328999	기타	6	0	0	0	개별	없음	0
90329000	부품품과 부속품							
903290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부품품							
90329011	온도 자동조절기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소자(황동제)	0	0	0	0	Kg	없음	0
90329012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12	0	0	0	Kg	없음	0
90329019	기타	12	0	0	0	Kg	없음	0
90329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2	0	0	0	Kg	없음	0
90329090	기타	2	0	0	0	Kg	없음	0
90330000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품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330010	금속제 기계류 하우징용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캐비닛 · 박스 · 서랍장 · 선반 · 프레임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 또는 전자부품이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330020	모터 차량용[철도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포크리프트(forklift)용, 면세 트랙터용인 것은 제외한다]	2	0	0	0	Kg	없음	0
90330090	기타	2	0	0	0	Kg	없음	0
91010000	손목시계 · 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1011000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101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1012000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2100	자동권(自動捲)식	0	0	0	0	개별	없음	0
9101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1019000	기타							
91019100	전기구동식	0	0	0	0	개별	없음	0
91019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1020000	손목시계 · 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 91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21000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10212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102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1022000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2100	자동권(自動捲)식	0	0	0	0	개별	없음	0
9102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1029000	기타							
91029100	전기구동식	0	0	0	0	개별	없음	0
91029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1030000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 9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1000	전기구동식	0	0	0	0	개별	없음	0
9103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1040000	차량용 · 항공기용 · 우주선용 · 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0	0	0	0	개별	없음	0
91050000	그 밖의 클록(clock)							
91051000	자명종시계							
91051100	전기구동식							
91051110	맹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1051120	시계추를 통하여 구동되는것	10	0	0	0	개별	없음	0
910511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1051900	기타							
91051910	맹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1051920	중량 또는 시계추를 통하여 구동되거나 두 개 모두를 통하여 구동되는 것	10	0	0	0	개별	없음	0
910519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91052000	벽시계							
91052100	전기구동식							
91052110	시계추를 통하여 구동되는것	10	0	0	0	개별	없음	0
910521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91052900	기타							
91052910	중량 또는 시계추를 통하여 구동되거나 두 개 모두를 통하여 구동되는 것	10	0	0	0	개별	없음	0
910529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91059000	기타							
91059100	전기구동식							
91059110	맹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1059120	시계추를 통하여 구동되는것	10	0	0	0	개별	없음	0
910591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91059900	기타							
91059910	맹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1059920	중량 또는 시계추를 통하여 구동되거나 두 개 모두를 통하여 구동되는 것	10	0	0	0	개별	없음	0
910599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91060000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 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6100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0	0	0	0	개별	없음	0
91069000	기타							
91069010	알람이 장착된 타이머							
91069011	장비를 장치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91069019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91069090	기타							
91069091	기계의 작동시간의 계산용(장비를 장치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91069092	주차 요금 징수기	12	0	0	0	개별	없음	3
91069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107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1080000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81000	전기구동식							
91081100	기계식 또는 기계식 장치부가 부착된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10812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1081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1082000	자동권(自動捲)식	0	0	0	0	개별	없음	0
9108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1090000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91000	전기구동식	0	0	0	0	개별	없음	0
9109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110000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91101000	휴대용 시계의 것							
91101100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12	0	0	0	개별	없음	3
91101200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91101900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10.8	0	0	0	Kg	없음	0
9110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91110000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0	0	0	0	개별	없음	0
9111200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개별	없음	0
91118000	그 밖의 케이스	0	0	0	0	개별	없음	0
9111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91120000	클록(clock) 케이스,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00	케이스	0	0	0	0	개별	없음	0
91129000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91130000	휴대용 시계줄 · 휴대용 시계밴드 · 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113200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91139000	기타	0	0	0	0	Sq.M eter	없음	0
91140000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1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91143000	문자판	0	0	0	0	Kg	없음	0
91144000	지판과 브리지(bridge)	0	0	0	0	Kg	없음	0
911490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2010000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 · 하프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0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0	0	0	0	개별	없음	0
92012000	그랜드 피아노	0	0	0	0	개별	없음	0
9201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2020000	그 밖의 현악기(예: 기타·바이올린·하프)							
92021000	활을 사용하는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202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2050000	관악기(예: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아코디언·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은 제외한다]							
92051000	금관악기	0	0	0	0	개별	없음	0
9205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2060000	타악기[예: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0	0	0	0	개별	없음	0
92070000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기타·아코디언)							
92071000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207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2080000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1000	뮤지컬박스	0	0	0	0	개별	없음	0
9208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2090000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디스크·롤),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 각종 조율관(調律管)							
92093000	악기용 현	0	0	0	0	Kg	없음	0
92099000	기타							
920991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92099200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92099400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Kg	없음	0
92099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3010000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제 9307 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11000	포병 무기(예: 평사포·곡사포·박격포)	0	0	0	0	개별	없음	0
93012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0	0	0	0	개별	없음	0
9301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30200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 9303 호·제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3030000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93031000	총구장전 화기	0	0	0	0	개별	없음	0
93032000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93032010	직경이 5.6 밀리미터(0.22")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3032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3033000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93033010	직경이 5.6 밀리미터(0.22") 이하인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3033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30390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3040000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 930 7 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40010	18 밀리미터 구경 소총이나 13 밀리미터 구경 권총의 사격용 페인트볼(공기 압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3040020	6 밀리미터 구경 공기총의 사격용 세라믹 볼 또는 고무볼(공기 압력이나 전기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3040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3050000	부분품과 부속품(제 9301 호부터 제 9304 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51000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3052000	산탄총과 라이플(rifle)의 것(제 930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3059000	기타							
93059100	제 9301 호의 군용 무기의 것	0	0	0	0	개별	없음	0
93059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3060000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93062000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93062100	탄약	0	0	0	0	Kg	없음	0
93062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3063000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0	0	0	0	Kg	없음	0
93069000	기타							
93069010	총알	12	0	0	0	Kg	없음	3
9306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30700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0	0	0	0	Kg	없음	0
94010000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상관없으며 제 9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1000	항공기용 의자	12	0	0	0	개별	없음	3
94012000	차량용 의자	10	0	0	0	개별	없음	0
9401300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4014000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94014010	플라스틱 또는 주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94014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4015000	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94015100	대나무 또는 등나무로 된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9401590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4016000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6100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94016110	나이트 포트(night pot)용 의자 또는 시트(seat)	12	0	0	0	개별	없음	7
94016120	어린이 또는 유아용의 카시트	0	0	0	0	개별	없음	0
940161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10
94016900	기타							
94016910	나이트 포트(night pot)용 의자 또는 시트(seat)	12	0	0	0	개별	없음	7
940169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7
94017000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7100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94017110	어린이 또는 유아용의 카시트	0	0	0	0	개별	없음	0
94017120	나이트 포트(night pot)용 의자 또는 시트(seat)	12	0	0	0	개별	없음	3
940171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4017900	기타							
94017910	나이트 포트(night pot)용 의자 또는 시트(seat)	12	0	0	0	개별	없음	7
940179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5
94018000	그 밖의 의자							
94018010	어린이 또는 유아용의 카시트	0	0	0	0	개별	없음	0
94018020	나이트 포트(night pot)용 의자 또는 시트(seat)	12	0	0	0	개별	없음	7
94018030	플라스틱 또는 주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것	12	0	0	0	개별	없음	7
94018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5
94019000	부분품							
94019010	플라스틱 또는 주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것	0	0	0	0	Kg	없음	0
94019020	압력 포밍에 의하여 제조된 것	0	0	0	0	Kg	없음	0
94019030	차량용 머리 받침대	0	0	0	0	Kg	없음	0
9401904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94019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4020000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위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1000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94021010	치과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료용 의자	6	0	0	0	Kg	없음	0
94021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94029000	기타							
94029010	환자 운반용	0	0	0	0	Kg	없음	0
94029020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	6	0	0	0	Kg	없음	0
9402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0
94030000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10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12	0	0	0	Kg	없음	5
9403200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94032010	수입된 세면대 또는 싱크대							
94032011	세면대 또는 싱크대(이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관세율은 부록에 수록된 각 세부사항에 따른다)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2019	세면대 또는 싱크대가 부착되지 않은 가구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2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10
94033000	사무실용 목제가구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4000	주방용 목제가구							
94034010	수입된 세면대 또는 싱크대							
94034011	세면대 또는 싱크대(이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관세율은 부록에 수록된 각 세부사항에 따른다)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4019	세면대 또는 싱크대가 부착되지 않은 가구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4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5000	침실용 목제가구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6000	그 밖의 목제가구							
94036010	수입된 세면대 또는 싱크대							
94036011	세면대 또는 싱크대(이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관세율은 부록에 수록된 각 세부사항에 따른다)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6019	세면대 또는 싱크대가 부착되지 않은 가구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6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10
94037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94037010	수입된 세면대 또는 싱크대							
94037011	세면대 또는 싱크대(이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관세율은 부록에 수록된 각 세부사항에 따른다)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7019	세면대 또는 싱크대가 부착되지 않은 가구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7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8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94038100	대나무 또는 등나무로 된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94038900	기타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4038910	수입된 세면대 또는 싱크대							
94038911	세면대 또는 싱크대 (이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관세율 또는 소비세는 부록에 수록된 각 세부사항에 따른다)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8912	세면대 또는 싱크대가 부착되지 않은 가구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891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7
940389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10
94039000	부분품	12	0	0	0	개별	없음	10
9404000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 · 이불 · 우모이불 · 쿠션 · 푸프 (pou ff) · 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100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12	0	0	0	Kg	없음	3
94042000	매트리스							
940421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2110	고무제 품	6	0	0	0	개별	없음	0
940421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0
940429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94043000	침낭(sleeping bag)	12	0	0	0	Kg	없음	3
94049000	기타							
94049010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 품을 제외한 다양한 재질의 침구류(베개 및 쿠션을 포함한다)							
94049011	전기 가열식	0	0	0	0	Kg	없음	0
94049012	어린이용 쿠션으로 차량용 시트에 부착되는 것	8	0	0	0	Kg	없음	0
94049019	기타	8	0	0	0	Kg	없음	0
94049020	고무 또는 플라스틱 품으로 충전된 것							
94049021	플라스틱제 베개(액체 또는 합성, 인공섬유로 채워진 것)로 실리콘으로 코팅되어 욕창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	6	0	0	0	Kg	없음	0
94049029	기타	12	0	0	0	Kg	없음	7
9404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7
94050000	램프 ·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 · 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1000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 ·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94051010	서치라이트(searchlight) · 스포트라이트(sp otlight)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4051011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것	0	0	0	0	Kg	없음	0
9405101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94051020	비상 조명용의 것(자동적으로 전기설비 장애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Kg	없음	0
94051030	기타(수입된 백열등이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51031	백열등(관세 및 소비세는 제 8539 호의 추가내용에 따른다)	8	0	0	0	개별	없음	3
94051032	램프	10	0	0	0	개별	없음	0
94051090	기타	10	0	0	0	개별	없음	0
94052000	전기식의 테이블 · 책상 · 침대 · 마루스탠드 램프							
94052020	수입된 백열등이 부착된 것							
94052021	백열등(관세 및 소비세는 제 8539 호의 추가내용에 따른다)	8	0	0	0	개별	없음	3
94052029	램프	10	0	0	0	Kg	없음	0
94052030	서치라이트(searchlight) · 스포트라이트(sp otlight)							
94052031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것	0	0	0	0	Kg	없음	0
9405203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94052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9405300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12	0	0	0	Kg	없음	0
9405400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94054010	비행장 유도등	0	0	0	0	Kg	없음	0
94054020	서치라이트(searchlight) · 스포트라이트(sp otlight)							
94054021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것	0	0	0	0	Kg	없음	0
94054029	기타	10	0	0	0	Kg	없음	0
94054040	기타(수입된 백열등이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54041	백열등(관세 및 소비세는 제 8539 호의 추가내용에 따른다)	8	0	0	0	개별	없음	3
94054049	전등	10	0	0	0	Kg	없음	0
94054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94055000	비전기식 램프와 램프 연결구							
94055020	광산 또는 굴착용 조명(도로교통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수입된 도로교통 요구 사항에 적합한 오일램프로 한정한다)	0	0	0	0	Kg	없음	0
94055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94056000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 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4056070	금속제의 것							
94056071	광고판의 것	0	0	0	0	Kg	없음	0
94056072	차량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8	0	0	0	Kg	없음	0
94056079	기타	8	0	0	0	Kg	없음	0
940560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94059000	부분품							
94059100	유리로 만든 것	12	0	0	0	Kg	없음	0
940592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0	0	0	0	Kg	없음	0
9405990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4060000	조립식 건축물	10	0	0	0	Kg	없음	5
950300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95030010	볼 베어링이 장착된 어린이용 자전거(일반 자전거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5030020	무게가 750 그램을 초과하지 않은 모형 비행기로 내연 피스톤 엔진이 장착된 것(장착된 프로펠러는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5030030	제 4202 호에 계기된 관세율에 따른 돈주머니 또는 지갑	0	0	0	0	개별	없음	0
95030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5040000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42000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12	0	0	0	개별	없음	3
95043000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95044000	오락용 카드	12	0	0	0	개별	없음	3
95045000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 9504.3000 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0
9504900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5050000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1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0	0	0	0	Kg	없음	0
9505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9506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폴(paddling pool)용품							
95061000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95061100	스키	0	0	0	0	Pair	없음	0
95061200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0	0	0	0	Kg	없음	0
95061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5062000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95062100	세일보드(sailboard)	0	0	0	0	개별	없음	0
95062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5063000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							
95063100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5063200	구(球)	0	0	0	0	개별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506390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5064000	탁구용구							
95064010	탁구공	0	0	0	0	Kg	없음	0
95064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5065000	테니스용 라켓·배드민턴용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95065100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개별	없음	0
9506590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5066000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95066100	론테니스(lawn-tennis) 공	0	0	0	0	개별	없음	0
950662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0	0	0	0	개별	없음	0
95066900	기타							
95066910	테니스 공	0	0	0	0	개별	없음	0
950669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506700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0	0	0	0	Pair	없음	0
95069000	기타							
950691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95069110	회전 페달로 양다리의 근육운동량을 측정하는 장치	0	0	0	0	Kg	없음	0
9506919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95069900	기타	10	0	0	0	Kg	없음	0
95070000	낙싯대·낙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 9208 호나 제 97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95071000	낙싯대	0	0	0	0	개별	없음	0
95072000	낙싯바늘(낙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Kg	없음	0
95073000	낚시 릴	0	0	0	0	개별	없음	0
9507900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5080000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							
9508100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12	0	0	0	개별	없음	3
95089000	기타							
95089010	원형보트·그네·사격장 및 그 밖의 놀이공원 용품	10	0	0	0	개별	없음	0
95089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6010000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가 지진 뿔·산호·자개·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100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12	0	0	0	Kg	없음	3
9601900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96020000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조각품 [왁스 · 스테아린 (stearin) · 천연수지 · 모델링페이스트 (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 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96020010	홍상 · 두상 · 초상 · 조각 또는 왁스로 만들어진 작은 조각상(쇼윈도 또는 박물관 전시용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96020020	젤라틴 캡슐	0	0	0	0	Kg	없음	0
96020090	기타	6	0	0	0	Kg	없음	0
96030000	비 · 브러시(기계 · 기구 ·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 · 모프(mop) · 깃 먼지떨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솔(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 · 롤러 · 스queegee(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31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12	0	0	0	개별	없음	3
96032000	칫솔 · 면도용 브러시 · 헤어 브러시 · 네일 브러시 · 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품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2100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2110	부분품	12	0	0	0	개별	없음	3
960321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6032900	기타							
96032910	의류용 · 면도용 또는 헤어 브러시							
96032911	부분품	12	0	0	0	개별	없음	3
9603291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6032990	기타							
96032991	부분품	12	0	0	0	개별	없음	3
9603299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6033000	회화용 붓 · 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12	0	0	0	개별	없음	3
96034000	페인트용 · 디스탬퍼(distemper)용 · 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12	0	0	0	개별	없음	3
96035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 · 기구 ·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6035010	강철 또는 구리 와이어로 만들어진 브러시용 털(각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4,0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6035090	기타							
96035091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개별	없음	0
96035099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6039000	기타							
96039010	깃털이나 그 부분	6	0	0	0	개별	없음	0
96039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6040000	수동식 채와 어레미	0	0	0	0	개별	없음	0
9605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96050010	브러시가 포함된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96050020	기타(절단기구를 포함한다)	10	0	0	0	개별	없음	0
96050090	기타							
96050091	섬유제 직물로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긴 것	12	0	0	0	Kg	없음	3
96050092	외부 층이 가죽으로 된 용기에 담긴 것	12	0	0	0	Kg	없음	3
9605009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96060000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 fastener)·스냅파스너(snap- 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 stud)·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96061000	프레스파스너(press- fastener)·스냅파스너(snap- 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6	0	0	0	Kg	없음	0
96062000	단추							
960621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6	0	0	0	Kg	없음	0
960622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6	0	0	0	Kg	없음	0
96062900	기타	6	0	0	0	Kg	없음	0
9606300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6	0	0	0	Kg	없음	0
96070000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96071000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96071100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6	0	0	0	Mete r	없음	0
96071900	기타	6	0	0	0	Mete r	없음	0
96072000	부분품	6	0	0	0	Kg	없음	0
96080000	볼펜, 팁(tip)이 펄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 96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6081000	볼펜	0	0	0	0	1000 Un.	없음	0
9608200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12	0	0	0	개별	없음	3
96083000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96083010	인디안 잉크 드로잉 펜	12	0	0	0	개별	없음	3
96083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6084000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12	0	0	0.06	개별	없음	3
96085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12	0	0	0.06	개별	없음	3
9608600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6.85	1000 Un.	없음	3
96089000	기타							
96089100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12	0	0	0	Kg	없음	3
96089900	기타							
96089910	볼펜용 심과 볼펜용 부분품	12	0	0	0	Kg	없음	3
960899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96090000	연필(제 9608 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 용 목탄·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09100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96091010	두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외장이 있는 것	12	0	0	0	Kg	없음	3
96091090	기타	12	0	0	6.85	1000 Un.	없음	3
96092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6092010	직경 2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Kg	없음	0
96092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96099000	기타							
96099010	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	12	0	0	0	Kg	없음	3
96099090	기타	12	0	0	0	1000 Un.	없음	3
961000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12	0	0	0	개별	없음	7
96110000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12	0	0	0	Kg	없음	3
96120000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96121000	리본	0	0	0	0	개별	없음	0
96122000	잉크 패드	10	0	0	0	개별	없음	0
96130000	담배ライター와 그 밖의ライター(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ライター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3100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9613200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0	0	개별	없음	0
96138000	그 밖의ライター							
96138010	차량용	8	0	0	0	개별	없음	0
96138020	조리 기구 조립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8	0	0	0	개별	없음	0
96138090	기타	8	0	0	0	개별	없음	0
96139000	부분품							
96139010	차량용ライター	12	0	0	0	Kg	없음	3
9613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961400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시가홀더·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96140010	파이프 또는 파이프볼의 대략적인 형상을 갖춘 것(나무 또는 뿌리 재질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96140020	기타(파이프 관)	0	0	0	0	개별	없음	0
96140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96150000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85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96151000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1100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2	0	0	0	개별	없음	3
9615190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6159000	기타							
96159010	장신구 및 완구 제품(플라스틱제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다)	12	0	0	0	Kg	없음	3
96159020	기타(철강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96159090	기타							
96159091	모조 신변장식용품	12	0	0	0	Kg	없음	3
96159099	기타	12	0	0	0	Kg	없음	3
9616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침과 패드							
96161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10	0	0	0	개별	없음	0
96162000	화장용 분침과 패드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96170000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12	0	0	0	개별	없음	3
961800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96180010	교체 가능한 투명한 사진 표시 장치(전기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0	0	0	개별	없음	0
96180090	기타	12	0	0	0	개별	없음	3
96190000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96190010	워딩으로 만든 것	0	0	0	0	Kg	없음	0
961900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2	0	0	0	Kg	없음	3
96190040	기타(종이 또는 종이펄프제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96190050	그 밖의 재질로 만든 기저귀 또는 의류	12	0	0	0	Kg	없음	3
9619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7010000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 4906 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00	회화·데생·파스텔							
97011010	박물관 및 교육기관용으로 수입된 물품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용으로 수입된 것(장관이 공공장소에서 영구 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97011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7019000	기타							
97019010	꽃·꽃가루·잎·가지 또는 식물의 그 밖의 부분으로 만들어 진 것	10.8	0	0	0	Kg	없음	0
97019020	올리브 나무로 만든 것	10.8	0	0	0	Kg	없음	0
97019030	기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2	0	0	0	Kg	없음	3
97019040	천연 코르크로 만든 것	9	0	0	0	Kg	없음	0
97019050	상업적 인쇄물	12	0	0	0	Kg	없음	3
97019060	구리로 만든 것	12	0	0	0	Kg	없음	3
97019070	섬유로 만든 것	6	0	0	0	Kg	없음	0
97019090	기타	12	0	0	0	Kg	없음	3
97020000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20010	박물관 및 교육기관용으로 수입된 물품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용으로 수입된 것(장관이 공공장소에서 영구 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개별	없음	0
97020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70300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7030010	박물관 및 교육기관용으로 수입된 물품	0	0	0	0	Kg	없음	0

HSI 2016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세율 (%)	단위별 세액 (NIS)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측정 단위	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용으로 수입된 것(장관이 공공장소에서 영구 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조건부)							
97030090	기타	0	0	0	0	Kg	없음	0
97040000	우표·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0	0	0	0	Kg	없음	0
9705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 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古 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0010	박물관 및 교육기관의 전시용으로 수입될 물품(교육문화부장관이 물품의 수입이 이 소호의 목적에 부합하고 규정한 대로 사용될 것임을 확인하고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Kg	없음	0
97050090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97060000	골동품(제작 후 100 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0010	박물관 및 교육기관의 전시용으로 수입될 물품(교육문화부장관이 물품의 수입이 이 소호의 목적에 부합하고 규정한 대로 사용될 것임을 확인하고 승인한 것으로 한정한다)(조건부)	0	0	0	0	Kg	없음	0
97060090	기타							
97060091	가구	12	0	0	0	개별	없음	3
97060099	기타	0	0	0	0	개별	없음	0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조 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이행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제3.3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다. 이 장에 따라 당사국에서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로만 획득된 상품

제3.2조 원산지 누적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그 밖의 형태의 누적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를 검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1. 다음은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로부터 취득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나. 당사국에서 재배,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성 상품

다.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위 다호와 같은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상품

마. 당사국의 육지,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뿔사냥, 수집, 어로, 양식 및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바.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사. 당사국에서 수행된 사용, 소비 또는 제조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스러기

아. 당사국의 선박에 의해서만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에서 취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상품

자. 아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상품

차.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하층토에서 취득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카. 위 가호부터 차호까지에서 명시된 상품으로만 양 당사국 중 어느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

2. 제1항아호 및 자호의 “당사국의 선박”과 “당사국의 가공선박”이라는 용어는 당사국의 법에 합치되게 그 당사국의 국기가 게양되고 그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된 선

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제3.4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상품

1. 제3.1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않은 상품은 부속서 3-가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¹
2. 그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상품이 되어, 그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제3.5조

최소허용수준

1. 제3.4조제1항 및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3-가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초과되지 않는다.

¹ 상품이 제3.4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당사국에서 개발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제조 공정으로 간주된다.

2. 제1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그리고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다만,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모든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10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3.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3.4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가. 운송 및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단순한² 변경이나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²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 라. 기름 도포를 포함한 단순한²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마.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바.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공정
-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자. 연마, 단순한² 분쇄 또는 단순한² 절단
-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 카.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타. 물 또는 그 밖의 물질에 단순한² 희석. 다만, 상품의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파. 단순한² 시험 또는 측정
- 하.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한²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² 포장 공정
- 거.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²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너.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³

³ “단순한 혼합”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더. 동물의 도살, 또는

러. 위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2. 해당 상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 내에서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수행된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제3.7조 자격 단위

1.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상품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특정 상품이다. 따라서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상품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조건에 따라 단일의 호로 분류되는 경우, 그 전체가 자격 단위를 구성한다.

나. 탁송물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각 상품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5에 따라 포장의 품목분류의 목적상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은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된다.

제3.8조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구분 회계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⁴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재료는 보관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된다.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입증하는 목적상, 그 상품의 제조에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고, 혼합되거나 물리적으로 결합된 경우, 그러한 재료의 원산지는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재고관리기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3.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 당국은 그러한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구분 회계” 기법이 사용되도록 승인할 수 있다.
4. 이 기법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획득된 상품의 수량과 재고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다면 획득되었을 상품의 수량이 같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건하에 그러한 승인을 부여할 수 있다.
6. 이 기법은 상품이 제조된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회계원칙에 근거하여 기록되고 적용된다.
7. 이러한 편의의 수혜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관세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혜자는 그 수량이 관리된 방법에 대하여 진술을 제공한다.
8. 관세 당국은 승인의 사용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그 승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⁴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제3.9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않고 장비, 기계, 기기 또는 차량과 함께 발송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장비, 기계, 기기 또는 차량과 일체로 간주된다.

제3.10조
세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통칙 3에 정의된 세트는 모든 구성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3.11조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는 상품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중립재는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가. 에너지 및 연료

나. 설비 및 장비

다. 기계 및 공구, 그리고

라. 그 상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은 상품

제3.12조

영역 원칙

1. 제3.2조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4조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한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수출 당사국으로 재반입 될 경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 재반입 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 되는 상품이 그 비당사국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을 것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 재반입된 재료에 대해서 한국 또는 이스라엘 밖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재료가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수출되기 전에 제3.6조에서 언급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어야 하고,

나.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1)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획득되었을 것

2) 그러한 작업 또는 가공이 그 재수입된 상품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HS)의 6단위에서 세번변경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3)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한국 또는 이스라엘 밖에서 획득된 총 부가가치⁵는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최종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제3항의 규정이 제3.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에 적용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관한 사실 정보가 부속서 3-다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될 것이다.

4.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3-나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13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물을 구성하는 상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밖의 영역에서 그 관세 당국의 감시하에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러한 영역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가. 상품이 통과 중인 비당사국에서 거래, 소비 또는 사용이 의도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⁵ 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총부가가치”는 한국 또는 이스라엘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 비용에는 한국 또는 이스라엘 밖에서 결합된 재료의 가치가 포함된다.
나. 각주 5가호에 기술된 총부가가치는 제3.4조제1항의 목적상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나.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고안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출함으로써 제공된다.

가. 원산지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나. 상품이 통과 중이었던 비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로서, 상품의 정확한 설명, 그 비당사국에서의 상품의 하역 및 재선적 날짜와 장소, 그리고 상품이 놓여진 상태를 포함한 것, 또는

다. 위의 서류가 없는 경우, 직접 선적을 증명할 그 밖의 서류

3.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출되기 전에 비당사국으로 반출되고 제3.6조에서 정의된 것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산지 상품이 양 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될 조건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잃지 않도록 허용하는 메커니즘의 가능성을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내에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제3.14조

전시회

1. 한국 또는 이스라엘 외의 비당사국에서 전시를 위하여 발송되고 전시 후에 한국 또는 이스라엘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원산지 상품은 수입 시 이 협정의 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가. 수출자가 그 상품을 한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비당사국으로 운송하고, 그 상품을 그 비당사국에서 전시한 사실

나. 상품이 그 수출자에 의하여 한국 또는 이스라엘의인에게 판매 또는 달리 처분된 사실

다. 상품이 전시를 위하여 발송된 비당사국에서 전시회 기간 동안 또는 전시회 직후에 운송된 사실, 그리고

라. 상품이 전시를 위하여 운송된 후 전시회에서 시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

2. 원산지 증명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거나 작성되어야 하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전시회의 명칭 및 주소는 원산지 증명에 기재되어야 한다.

3. 제1항은 전시 기간 동안 전시 상품이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외국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지 않은 모든 무역, 산업, 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개 전시에 적용된다.

제3.15조

일반 요건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영어로 작성되는 다음의 원산지 증명 중 하나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출되는 경우 이 협정의 특혜 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가. 부속서 3-다에 견본이 제시되어 있는 원산지 증명서, 또는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제공된 원산지 신고서

1) 제3.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2) 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3.20조에 따른 수출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 상품은 제3.24조에 명시된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혜택을 받는다.

제3.16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1. 이 장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는 전자적 원산지 증명서 또는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지칭한다.

2.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적 신청 또는 종이 형식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다.

3.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양식은 수출 당사국의 법에 따라 작성된다.

4.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5.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되는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경우 발급된다.

6. 발급 당국은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목적상, 그 발급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장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7. 각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 당국에 의하여 특정 번호를 부여받을 것이다.
8.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 근무일 내에 발급된다.

제3.17조

소급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1. 제3.1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서가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 근무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뜻하지 않은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일부터 1년 내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2.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신청서에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상품의 수출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하고, 요청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3. 발급 당국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서에 제공되는 정보가 상응하는 파일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을 검증한 후에만 원산지 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4. 이 조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는, 부속서 3-다에 기술된 적절한 난에, 원산지 증명서가 소급하여 발급되었다는 것이 기재된다.

제3.18조

제2사본 원산지 증명서

1. 종이 형식의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발급 당국에 발급 당국이 보관 중인 수출 서류를 근거로 작성된 제2사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는, 부속서 3-다에 기술된 적절한 난에, 원산지 증명서가 제2사본이라는 것이 기재된다.
3.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날짜가 기재된 제2사본은 그 발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19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각 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상품의 가치에 관계없이, 부속서 3-라-1에 견본이 제시되어 있는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요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 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 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 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3.20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제3.15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제3.19조의 의미 내에서의 인증 수출자 또는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원산지 상품의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2.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3.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라-2에 제시된 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정자로 작성된다.

제3.21조

원산지 증명의 효력

1. 원산지 증명은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그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원산지 증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대우의 적용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외에 서류의 제출이 늦은 그 밖의 경우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해당 마감일 전에 그 상품이 제출된 경우 그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수리할 수 있다.

제3.22조

원산지 증명의 제출⁶

1.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그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다.
2. 관세 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유효한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자국의 법에 규정된 수입 서류에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 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다만,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수입자가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나.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른 기한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원산지 증명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3.23조

분할 수입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2가의 의미 내에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6부부터 제19부까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상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러한 상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은 첫 번째 분할 수입 시 관세 당국에 제출된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원산지 증명은 상품의 통관 시점 내에 관세 당국에 제출되거나, 제3.22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통관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된다. 다만, 통관 시점에,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신고되었어야 한다.

제3.24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1.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상품이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이나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상품으로만 구성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상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더 나아가, 이러한 상품의 총 가치는 소포의 경우 미화 1천 달러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의 경우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3.25조

증빙서류

1.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3.16조제4항 및 제3.20조제2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부기에 포함된 것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로서, 이 장에 따라 당사국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마. 제3.12조의 적용에 따라 당사국 밖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2. 수출 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 위치하는 운영자가 탁송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 그 사실은 부속서 3-다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다.

제3.26조

원산지 증명 및 증빙서류의 보존

1.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3.16조제4항에서 언급된 서류를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한다.

2.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3.20조제2항에서 언급된 서류를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한다.

3.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제3.16조제3항에서 언급된 신청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한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그들에게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신고서 또는 전자적 원산지 증명서의 참조번호를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한다.

제3.27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상응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 되지 않는다.
2. 원산지 증명에서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3.28조

상호 지원

1.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증명서 및 원산지 신고서의 검증을 담당하는 관세 당국의 주소를 서로 제공한다.
2. 이 장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신고서의 진정성, 그리고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제3.29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그러한 서류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2.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적절한 경우 검증 요청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3.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장부에 대한 모든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5.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 당국은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해당 상품이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한다.

6. 합리적 의심이 있고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 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7.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제공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 상황에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수출 당사국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위의 검증결과에 관하여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 서류 또는 설명 요청. 그러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공된다. 또는

나.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검증. 그 목적을 위하여,

1)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

문을 수행하려는 수입 당사국의 의사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수출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방문 날짜를 정한다. 방문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수행된다.

3) 수출 당사국의 공무원은 수입 당사국의 공무원의 방문을 지원하고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수출자의 사업장에 동반한다. 그리고

4) 검증을 수행하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그 결정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한다.

8.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이 조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9. 이 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는 오직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제3.30조

분쟁해결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 당국과 그 검증의 수행을 담당하는 관세 당국 간에 제3.29조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이 장의 해석에 대하여 관세 당국 중 하나에 의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그 사안은 이 협정의 제19장(협정의 운영)에 따른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된 관세위원회에 제출된다.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협정의 제20장(분쟁해결)을 적용한다. 모든 경우에 수입자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 간 분쟁의 해결은 그 당사국의 법에 따른다.

제3.31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에 있거나, 세관의 통제하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그 상품이 제3.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3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가.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나. **류, 호 및 소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를 구성하는 상품분류 체계에서 사용된 류, 호 및 소호(각각 2단위, 4단위, 그리고 6단위)를 말한다.

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수입 항구로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화물운송 및 보험, 포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수입 당시의 상품 가격을 말한다.

라. **분류된**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따른 상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지칭한다.

마. **탁송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바. **관세가격**이란 1994년도 GATT 제7조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사. **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에게 지급된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상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아. **상품**이란 재료와 생산품 모두를 말한다.

자. **발급 당국**이란 다음을 지칭한다.

1) 한국의 경우,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2) 이스라엘의 경우,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차. **제조**란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카. **재료**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을 말한다.

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시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1994년도 GATT 제7조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주해

다음의 특정한 이유로 한정하여, 원산지 증거가 적용될 수 없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거에 대한 검증 없이 특혜대우가 거부될 수 있다.

가. 제3.13조의 직접 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나. 원산지 신고서가 한국 또는 이스라엘 외 국가의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되었을 경우

다. 제3.15조제1항나호1)목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인에 의하여 발급되었을 경우

라.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원산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마. 수입자가 수입 신고 당시 적절한 원산지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산지 증거가 그 이후에 작성되었음에도 특혜관세대우가 특정 상품에 적용된 경우⁷

바.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3.29조제7항가호에 따른 서면 요청에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제3.29조제7항나호에 따른 방문검증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아.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하지 않은

⁷ 이 규정은 한국에만 적용 가능하다.

경우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부 - 일반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 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 나.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된 경우, 그 규정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 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그 원산지 규정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 마. 호 또는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그러한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규정은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 부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부를 말한다.
 - 류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류를 말한다.
 - 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 소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제2부 -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제1류-제5류)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0101 - 0106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0201 - 0210

사용된 제2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0301 - 0308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 - 0410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01 - 0511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제2부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0601 - 0604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0701 - 0714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 멜론의 껍질

0801 - 0814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제9류

커피 · 차 · 마테(maté) · 향신료

0901 - 0902, 0910.91 - 0910.99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0903 - 0910.30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제10류

곡물

1001 - 1008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01 - 1109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 1214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제13류

락(lac), 검 · 수지 ·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 - 1302.13, 1302.20 - 1302.39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302.19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소호 제1211.20호의 것은 제외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1 - 1404

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된 생산

제3부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 식물성
납(蠟)(제15류)

제15류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 식물성
납(蠟)

1501 - 1503, 1505 - 152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4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 · 주류 · 식초, 담배 · 제조한 담배 대용물(제16류-제24류)

제16류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 - 160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603 - 1605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01.12 - 1701.14, 1703 - 170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701.91 - 1702.90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 18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19류

곡물 · 고운 가루 · 전분 ·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 19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20류

채소 · 과일 ·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 - 2009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 - 21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22류

음료 · 주류 · 식초

2201 - 2209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302 - 2309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1

제2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2402 - 24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5부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2501

제2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2502 - 2530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2601 - 262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青)물질, 광물성 왁스

주:

이 류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제2710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의 지위를 부여한다.

가.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2701 - 271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주1:

제6부의 규칙 1부터 규칙 7까지에서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규칙 1: 화학 반응 원산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3828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정제

정제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 4) 특수 광학용
-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 6) 생명공학용
-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 8) 핵등급용

규칙 3: 혼합 및 배합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정의된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이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5: 표준 물질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표준 물질의 생산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합한 조제품을 말한다.

규칙 6: 이성체 분리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7: 분리 금지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제28류

무기화합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801 - 285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29류

유기화합품

2901 - 294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0류

의료용품

3001 - 30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1류

비료

3101 - 31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201 - 321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301 - 330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 340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501 - 350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 36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701 - 370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 382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제39류-제40류)

주1:

제7부의 규칙 1부터 규칙 5까지에서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규칙 1: 화학 반응 원산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39류 및 제40류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이다.

다음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정제

정제된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 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 4) 특수 광학용
-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 6) 생명공학용
-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 8) 핵등급용

규칙 3: 혼합 및 배합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제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제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제39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제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정의된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5: 이성체 분리

제39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 392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 401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제41류-제43류)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 - 411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1 - 42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4301 - 430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44류-제46류)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 442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501 - 450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46류

짚·에스파트로(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601 - 460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제47류-제49류)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1 - 470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4801 - 482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4901 - 491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제63류)

제50류

견

5001 - 5003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004 - 500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 511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52류

면

5201 - 521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1 - 531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 540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 551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 5609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701 - 57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 581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01 - 591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001 - 60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01 - 6117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함.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6201 - 6217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함.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념마

6301 - 6308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함.

6309 - 6310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64류-제67류)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 64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 650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 66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01 - 670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제68류-제70류)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 681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69류

도자제품

6901 - 691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 - 7020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71류)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 711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제72류
철강

7201 - 7229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73류
철강의 제품

7301 - 732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7401 - 7419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 750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 761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78류
납과 그 제품

7801 - 78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 790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 800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1 - 811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1 - 821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1 - 831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과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제84류-제85류)

주:

호에 상품 관련 소호와 “부품” 및/또는 “부속품” 관련 소호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 “부품” 및/또는 “부속품” 관련 소호는 제외하고, 아래에 정의된 규칙 대신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이라는 규칙이 적용된다.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01 – 848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85류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01 – 854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86류-제89류)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 8609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01 – 871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801 - 88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 890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제92류)**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호에 상품 관련 소호와 “부품” 및/또는 “부속품” 관련 소호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 “부품”
및/또는 “부속품” 관련 소호는 제외하고, 아래에 정의된 규칙 대신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이라는 규칙이 적용된다.

9001 - 903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 911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 9209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 930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20부

잡품(제94류-제96류)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
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 - 94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1 - 950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96류

잡품

9601 - 9619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제97류)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9701 - 97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한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 3.12 조에 따라 설치된다.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1 주년이 되는 날에 회합하며, 그 후 최소 매년 1 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할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원산지 최종상품의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1. 수출자(이름, 주소, 국가)		2. 증명서 번호		
3. 수입자(이름, 전체 주소, 국가)		4. 원산지 국가		
5. 선적항 및 운송 세부사항(선택사항)		6. 목적지 국가		
7. 비고		8. 상업 송장		
9. 물품명세				
번호	관세 품목 번호	물품명세	원산지 기준	총 중량 또는 그 밖의 단위
원산지 증명				
10. 다음에 의한 신고: ☐ 생산자 ☐ 수출자(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래의 서명자는 이 증명서 기입을 위한 설명을 읽었으며, 상품이 이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날짜: _____ 서명		11. 발급 당국에 의한 증명: 이 증명서의 진정성 및 이 증명서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날짜: _____ 관인 및 서명		

원산지 증명서 -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추가 면)				
증명서 번호:				
9. 물품명세				
번호	관세 품목 번호	물품명세	원산지 기준	총 중량 또는 그 밖의 단위
원산지 증명				
10. 다음에 의한 신고: ☐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래의 서명자는 이 증명서 기입을 위한 설명을 읽었으며, 상품이 이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날짜: 서명		11. 발급 당국에 의한 증명: 이 증명서의 진정성 및 이 증명서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었음을 증명합니 다. 날짜: 관인 및 서명		

한국-이스라엘 원산지 증명서 기입 방식에 대한 설명

아래의 설명은 전자 및 종이 원산지 증명서 모두에 적용된다.

제1란- “수출자”

이 난에는 수출자의 세부사항, 수출자의 이름 및 수출국에서의 주소를 기재한다.

제2란- “증명서 번호”

이 난은 수출국 용도로서, 수출국은 증명서 번호를 기입한다.

제3란- “수입자”

이 난에는 최종 목적지 국가의 상품 수입자의 세부사항을 기재한다. 상업적인 이유로 수입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자는 이 난에 “미상”이라고 기입한다.

제4란- “원산지 국가”

이 난에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

제5란- “선적항 및 운송 세부사항” (선택사항)

이 난에는 한국 또는 이스라엘의 선적항을 기재한다.

제6란- “목적지 국가”

이 난에는 상품의 최종 목적지인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

제7란- “비고”

이 난에는 수출국의 비고, 예를 들어 “제2사본”, “소급발급”, “역외가공”에 대한 언급, 생산 지역(장소 및 우편번호¹)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제8란- “상업 송장”

이 난에는 증명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송장의 번호를 기재한다. 상업적인 이유로 송장의 번호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자는 이 난에 “미상”이라고 기입한다.

¹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를 포함한다)

제9란- “물품명세”

이 난에는 증명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번호”라고 명명된 난에는 상품의 연번(색인)이 기재될 것이다.

“관세 품목 번호” 라고 명명된 난에는 HS 코드가 6단위로 기입된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 수출자 및/또는 생산자는 충족한 원산지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 제3.3조의 의미에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러한 재료가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PSR”
다. 원산지 규정에 관한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만으로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PE”
라. 부속서 3-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기초하여 합의된대로 역외가공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OP”

증명서에 상세히 기술된 원산지 기준과 실제 원산지 기준이 상응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증명서가 무효화되는 이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에 대한 난에는 총 중량 또는 상품의 그 밖의 모든 수량 단위를 상세히 기술한다.

*증명서에 상세히 기술된 HS 코드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실제 품목분류가 상응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증명서가 무효화되는 이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10란- “수출자 신고”

수출자는 적절한 난에 자신이 생산자인지 여부를 기재한다. 수출자가 또한 증명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 난에 표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출자”란에 표시한다.

제11란- “증명”

이란에는 증명기관의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그 기관이 서명하고 인장을 찍는다.

부속서 3-라-1

제3.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신고서

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세관인증번호.....¹)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이 특혜원산지 (²) (장소 및 우편번호³) 상품임을 신고한다.

¹ 수출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

² 원산지 국가, 즉 한국 또는 이스라엘

³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를 포함한다)

부속서 3-라-2
제3.20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상품 (¹) (장소 및 우편번호²)이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신고한다.

장소 및 날짜

수출자의 서명

¹ 원산지 국가, 즉 한국 또는 이스라엘

²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를 포함한다)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의 간소화
- 나. 양 당사국의 관세법, 규정 및 행정절차의 적용에서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의 보장
- 다. 가능한 한도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품의 통관 보장
- 라. 양 당사국 간 무역의 원활화, 그리고
- 마.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 관세행정기관 간 협력 증진

제4.2조 관세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 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특혜관세대우 신청절차 및 검증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운영
 - 나.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협정의 이행과 운영
 - 다.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관세 사안

2. 각 당사국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사안이 접촉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안은 이 장에 규정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

제4.3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자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그리고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제4.4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규정한다.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

라.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 또는 대체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마. 자국 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신속하게 특송화물을 반출하도록 규정한다.

제4.5조

위험관리

1. 통관 절차를 운영할 때, 각 관세 당국은 고위험 상품 선적에 자원을 집중한다.
2. 위 규정은 당사국이 보다 광범위한 검사가 요구될 수 있는 품질 관리 및 법규 준수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4.6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각 당사국은 「세계관세기구의 무역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표준」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이하 “AEO”라 한다) 개념의 이행을 증진한다. 국제무역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AEO 안전 지위의 인정이 양 당사국에 의하여 고려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관세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어떠한 당사국이든 그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AEO 지위를 가진 업체에 대하여 무역 원활화의 혜택을 제공한다.

제4.7조

투명성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행정절차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4.8조

종이 없는 통관 절차

각 당사국은 무역 및 무역 관련 정보의 전송에서의 전자 제출 및 문서의 전자본이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을 통하여 무역의 효율성을 현격하게 향상시킬 종이 기반 방식의 대안임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각 당사국은 종이 없는 통관 절차의 이행과 증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제4.9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따라, 상품의 수입 전에, 자국의 관세 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상품의 품목분류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사전심사결정서의 신속한 발급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조사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일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부터 사전심사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조건으로,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판정에 명시된 기간 동안 사전심사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4.10조

통일 절차

양 당사국은 관세 사안 및 관련 주제에서 이 협정의 운영, 적용 및 해석에 필요할 수 있는 통일 절차에 합의한다.

제4.11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자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그 밖의 모든 인이 다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재심사의 대상이 된 결정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당국보다 상위의 기관이나 그러한 공무원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한 최소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사, 그리고

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

2.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보는 청구인에게 제공된다.

제4.12조

비밀유지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비밀유지의 모든 위반은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급된다.
2. 위에서 언급된 정보는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될 수 있는 한도 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제4.13조

관세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된 관세 관련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의 통일된 해석, 적용 및 운영

나. 이 협정의 목적상 품목분류, 평가 및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사안의 처리

다. 원산지 규정의 검토

라. 그들 각자의 법의 변경에 대한 정기적 갱신을 양 당사국의 양자대화 포함

마. HS의 변경에 기초한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바. 품목분류를 포함하여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의 해석, 적용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 양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가 회부한 그 밖의 모든 관세 관련 사안의 고려

2.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회합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3. 위원회는 관세 당국과 필요한 경우, 각 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고,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회의 절차규칙을 작성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결의, 권고 또는 의견을 형성하고 양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통일 절차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4.14조

이행 및 기술적 사안

협 의 후, 필요한 경우, 양측은 행정 방안을 내리거나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에 합의할 수 있다.

제 5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5.1 조 목적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 5.3 조 일반규정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5.4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접촉선

1. 무역 관련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상,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접촉선을 지정하기로 합의한다.

가.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이스라엘의 경우, 경제산업부 대외무역청 또는 그 승계기관

2. 접촉선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정보 교환

나. 제 5.6 조에 언급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조정, 그리고

다.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의 촉진

제 5.5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상,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규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하에 운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 체제하의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제안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3. 양 당사국은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모든 중대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패턴의 불합치 및 수출 당사국이 취할 모든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4. 수입 당사국이 긴급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그 결정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의 수용에 따라, 수출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합의하는 대로 논의를 개최한다.

제 5.6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을 점검한다.

나.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다.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한다.

라.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마.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하에 운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 그리고 식품안전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 포럼의 회의를 위한 문제, 입장 및 의제에 관하여 논의한다.

바.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

사. 제 5.5 조(협력)에 언급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협력 활동을 조정한다.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매년 1 회 회합한다. 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회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에 의한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한다.

제 5.7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협정에 따른 제 20 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 5.8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가에 포함된 정의가 적용된다.

부속서 5-가
권한 있는 당국

이 장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 1)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그 승계기관
- 2)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그 승계기관
- 3)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4)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나. 이스라엘의 경우,

- 1)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식물보호검사소 또는 그 승계기관
- 2)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수의동물보건소 또는 그 승계기관
- 3) 보건부 산하 국립식품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4) 보건부 산하 의약품기준감독연구소 또는 그 승계기관

제 6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6.1 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제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증대하고 촉진하는 것
- 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 다.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

제 6.2 조 적용범위

-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제 8 장(정부조달)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규격을 적용하는 한도에서 그 기술규격, 또는
 - 나. 제 5 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제 6.3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그 협정의 제 2 조부터 제 9 조까지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6.4 조

국제표준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2.4 조 및 제 5.4 조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자국의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2 조와 제 5 조 및 부속서 3 의 의미 내에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 년 11 월 13 일 채택한 협정 제 2 조, 제 5 조 및 부속서 3 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G/TBT/1/Rev13 의 제 1 부에 대한 부속서 2)과 그 이후 개정판에 규정된 원칙에 그 판정의 근거를 둔다.
3. 양 당사국은 국제표준화 기구 내에서 개발된 국제표준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국제표준화 기구에 대한 참여의 맥락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서 각각 자국의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한다.

제 6.5 조

기술 규정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게,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 규정이 자국의 기술 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 규정을 자국의 기술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 규정을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3. 각 당사국은 제 1 항에 언급된 기술 규정의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약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4.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그러한 약정 교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5.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위원회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기술 규정의 동등성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상호 의사소통 및 조정을 강화한다.

제 6.6 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서로의 영역의 인정기관 간 협력 약정의 인정 촉진

나. 특정 기술 규정에 대해서 서로의 영역에 소재하는 정부 지정 기관이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

다. 인정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기존의 지역적, 국제적 그리고 다자간 인정 협정과 약정의 인정

라.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에 대한 인정

마.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에 대한 인정

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일방적 인정

사.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용, 또는

아.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적합성 평가기관 간 자발적 약정 촉진

2.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 규정 또는 표준을 만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3. 제 2 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전에, 그리고 개별 적합성 평가결과의 영구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관련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자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4. 양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또는 약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이 협정 발효 후 2 년 내에,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또는 약정 교섭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개시한다.

5.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용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제 6.7 조

공동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나. 건강, 안전 및 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양 당사국의 규제 기관 간 협력 증진

다. 각 당사국 시장에 대한 접근 촉진

라. 모범규제관행 이행에 따른 무역 촉진, 그리고

마.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그 관련 부분에 기초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협력 강화

2. 제 1 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제 사안에 대하여 협력한다.

가. 위험관리 원칙에 기초한 모범규제관행의 증진

나. 각 당사국의 기술 규정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교환

다.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의 관리 및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한 공동 계획 개발, 또는

라. 적절한 경우, 시장감시 정보의 교환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한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무역원활화 계획을 확인, 개발 및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투명성

나. 국제표준과의 정합

다. 기술 규정의 조화 또는 동등성

라. 상호인정협정 또는 상호인정약정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그리고

마. 준수 사안에 대하여 도달한 이해

4.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협력확대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모든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저압 장비 분야에 대하여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EC)에서 개발된 표준과 같은 국제표준의 조화 및 사용을 증진시키는 것. 자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국제전기기기 인증(IECEE-CB)제도의 회원이 되도록 장려하고, 중복된 시험 및 인증 요건을 줄이기 위하여 그 국가 인증기관이 전기안전 요건에 대한 국가 인증을 위한 기초로 서로의 국제전기기기 인증시험 증명서를 수용하도록 장려하는 것, 그리고

나.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ILAC)를 포함하여 지역적, 국제적 그리고 다자간 인정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체계에서의 협력 증진

제 6.8 조

투명성

1.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된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2.9 조, 제 2.10 조, 제 5.6 조 또는 제 5.7 조에 따라 공고를 공표하거나 통보를 전달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 제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 및 그 사안을 다루는 방법을 포함시킨다.
2.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2.9 조 또는 제 5.6 조에 따라 통보를 전달한 후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 일을 부여한다.
3.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되게, 자국이 채택하려는 제안된 기술 규정 및 제안된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가능한 새로운 기술 규정 또는 새로운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문서를 사전에 공표한다.
4. 각 당사국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관한 협의가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자국의 인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각 당사국은 표준 개발에 관한 협의가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 자국 영역의 비정부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자국의 인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권고한다.

6.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접수한 중요한 의견에 대한 자국의 답변 또는 답변의 요약, 자국이 최종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한 날보다 늦지 않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7.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표준,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 6.9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직접 대면, 원격 회의, 화상 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점검

나.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

다.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보장

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영역에 소재한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기관 간 협력을 포함하여, 규제 당국, 인정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모든 제안의 검토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한 분야에서, 협정 교섭에 대한 요청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

바.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적,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 교환

사.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20 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고,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기술적 논의의 신속한 촉진

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제고하고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촉진하게 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

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러한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 개발, 그리고

차. 이 장에 따른 특정 과제를 수행할 작업반 설치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 년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때에 회합한다.

4. 위원회는 다음의 접촉선이 조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이스라엘의 경우, 경제산업부 무역청 또는 그 승계기관

5. 양 당사국은 자국 접촉선의 변경이나 관련 공무원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제 6.10 조 정보교환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된 형식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 일 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제 6.1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 에 규정된 정의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그리고

나. **지정**이란 양 당사국 영역에서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점검, 지정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정지 해제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적합성 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기관에 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장 무역구제

제 1 절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7.1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에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제 2.4 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제 7.2 조 조건 및 제한

1.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그 개시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 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 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다. 상품무역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5.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과도기간의 첫 해에 적용될 수 없다.

6.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7. 한쪽 당사국은 제1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모든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제안된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는 그 당사국이 이 조에 규정된 조건과 제한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8.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9. 당사국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할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7.3조

잠정 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적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공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를 공표한 날 후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날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잠정 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잠정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협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중대한 상황으로 인하여 잠정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협의를 개최될 수 없는 경우, 협의는 잠정 조치의 적용 후 즉시 개최된다.

4. 모든 잠정 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7.2조제1항 및 제7.2조제2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5. 그 당사국은 제7.2조제1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7.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 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2조제4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7.4조

보상

1.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조치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러한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조치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모든 보상은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총적용기간을 기초로 한다.

제7.5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및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조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그 조치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및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2. 권한 있는 조사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수입 비중, 수입 비중의 변화, 그리고 수입 수준 및 수입 수준의 변화와 같은 그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제7.6조

정의

제1절의 목적상,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무역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이스라엘의 경우, 경제산업부 산하 무역관세위원회 또는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그에 상응하는 기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부속서 2-나의 그 당사국의 관세양허표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7.7조 일반규정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6조,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반덤핑 협정”이라 한다)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관련 세계무역기구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라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상, 양 당사국은 잠정 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 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이해당사자들에게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 동안 그들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한 청문 기회가 부여된다.

제7.8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가능한 한 빨리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는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제7.9조

약속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따른 가격 약속의 접수를 위한 절차를 유지한다.

제7.10조

최소부과 원칙

당사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관세의 세액은 덤핑 또는 상계 가능 보조금 마진을 초과하지 않고, 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관세는 그 마진 미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7.11조

공공이익의 고려

양 당사국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12조
제로잉의 금지

반덤핑 협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교 기준과 관계없이, 반덤핑 협정 제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11조에 따라 반덤핑 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제7.13조
공청회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서면 신청을 접수한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3절
제도 규정

제7.14조
상품무역위원회

양 당사국은 제2.17조(상품무역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 내에서 이 장에 관한 사안을 논의한다.

제8장 정부조달

제8.1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 간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관심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의 맥락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국제적 자유화를 증진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

제8.2조 일반규정

1.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의 부속서(이하 “개정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의 규정과 각 당사국이 이에 관하여 약속한 양허표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개정 정부조달협정과의 일관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추가 개정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이 제22.2조(개정)에 언급된 개정 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개정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8.3조 투명성

요약 공고

1.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에 관하여, 각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예정된 조달 건마다 요약 공고를 공표하기 위한 언어로 영어를 사용한다. 그 공고는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의 대상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 등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그리고

다. 조달과 관련되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의 주소

입찰 절차

2. 조달기관이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입찰 절차에서 복수의 언어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언어 중 하나는 영어로 한다.

제8.4조

추가 교섭

이 협정의 발효 후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된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접근을 비당사자에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동일한 시장 접근 확대를 부여하기 위한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제8.5조

정부조달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 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인정하며 상호 관심 사안을 추구하는 데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 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을 포함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가. 이 장의 이행 점검

나.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 촉진

다. 관련 정보의 교환

라. 시장 접근 확대 추구, 그리고

마. 이 장의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3. 제2항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정부조달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을 문의처로 지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이스라엘의 경우, 경제산업부 무역청 또는 그 승계기관

제9장 투자

제1절 투자

제9.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 9.9 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¹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9.17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않는다.²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의 투자자는 이 장에 기초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² 이 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투자를 한 투자자의 제9.17조제2항에 따른 중재 청구의 제출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제 1.7 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한도에서만 그러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9.2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제9.3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9.4조

최혜국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영역 내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대우(최혜국 대우)는 정의나, 제 2 절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9.5조

일반적 대우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

2. 이 조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국제관습법의 적용 가능한 규칙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각 당사국이 적용 가능한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제9.6조

손실 및 보상

1. 제9.12조제6항나호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전쟁, 그 밖의 무력충돌, 혁명, 반란, 폭동, 내란, 소요 또는 그 밖의 그와 유사한 활동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과 관련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그 밖의 해결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그 당사국이 자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 또는 어느 비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모든 보상은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며,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자유롭게 전환 가능하다.

2.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전투 행위에 기인하지 않았거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않았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제공한다. 모든 보상은 과도한 지체 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며,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자유롭게 전환 가능하다.

3. 제1항은 제9.12조제6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9.3조에 불합치하였을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9.7조

수용 및 보상³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수용)할 수 없다.

³ 제9.7조는 부속서 9-가에 따라 해석된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그리고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지 않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지 않다.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그리고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제2절을 저해함이 없이,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당사국의 법상 그 당사국의 사법 또는 그 밖의 독립적인 당국에 의하여 수용의 합법성 및 자신들의 투자의 가치평가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를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보유한다.

6.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식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그러한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이 제14장(지식재산권)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

제 9.8 조

송금⁴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다. 이자,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또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경상소득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 9.6 조제 1 항과 제 9.6 조제 2 항 및 제 9.7 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9-마는 제9.8조에 적용된다.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투자자가 그 당사국에 대한 모든 재정상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적용대상투자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9.9조

이행요건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할 것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를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다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행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영역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2.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다음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⁵

가. 제 1 항나호, 제 1 항다호, 제 1 항라호 및 제 1 항마호에 명시된 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또는 매각이나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을 부과 또는 강제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제1항바호에 합치해야 한다.

나.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또는 취득,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

다.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제1항나호 및 제1항다호에 명시된 요건, 또는

라. 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요건의 경우, 제1항나호 및 제1항다호에 규정된 요건

3.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다른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다는 청구를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제1항 및 제2항은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비당사국과의 GATT 제24조에 언급된 기존의 또는 미래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의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5. 제1항가호, 나호 및 다호는 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6. 경쟁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는 경우 제1항바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이 조는 당사국이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경우, 민간 당사자 간의 어떠한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도 배제하지 않는다.

제9.10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그 미만이 자국 국민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9.11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이 조의 목적상, 기업은

가. 투자자에 의하여 그 기업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이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 의하여 “소유”된다. 그리고

나. 투자자가 그 기업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기업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투자자에 의하여 “지배”된다.

제9.12조 비합치 조치

1.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2) 지방정부⁶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 9.3 조, 제 9.4 조, 제 9.9 조
또는 제 9.10 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1항다호는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비당사국과의 투자 자유화 규정을 다루는
기존의 또는 미래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이나 유사한 약정에서 제1항다호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시점까지는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제1항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9.3조, 제9.4조,
제9.9조 또는 제9.10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그 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⁷

3.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⁶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⁷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다는 청구는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제1항다호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고 비당사국과의 기존의 또는 미래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이나 유사한 약정에서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채택할 때까지 제2절에 따른 중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5. 제9.3조 및 제9.4조는 제14장(지식재산권) 제1절(일반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로 그 절에 따른 의무의 예외 또는 이탈인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6.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7. 각 당사국은 부속서 I과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명시된 비합치 조치에 대하여 비합치 조치의 감소 또는 제거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수시로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9.13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9.3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의 요건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되거나 등록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과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9.3조 및 제9.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 그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모든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14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국이나 한쪽 당사국의 지정된 기관이 비상업적 위험에 대비하여 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형태의 보장에 따라 그의 투자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지불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가 그 투자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 보유하였을 권리 또는 청구의 대위를 인정한다.

2. 한쪽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그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받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추구하지 않는다.

제9.15조

예외

1. 제9.4조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나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다음에 기인한 대우, 선호 또는 특권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 또는 통화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가 되는 미래의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 또는 통화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

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존의 또는 미래의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정, 또는

라. 어느 한쪽 당사국과 제 3 국 간에 체결되고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서명된
투자 진흥 및 보호를 위한 모든 협정

2. 제1항나호는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제1항나호의 예외를 포함하지 않는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 또는 통화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적용이 종료된다.

제9.16조

존속 및 종료

이 협정이 발효 중인 동안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들은 이 협정의
종료일 후 10년의 기간 동안 그러한 투자에 대하여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그러한
조항들이 적용대상투자의 설립이나 인수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그 후의 일반
국제법 규칙의 적용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9.17조

양자 간 투자 조약의 기간

1. 제2항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양자 간 투자 조약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뿐 아니라 그 조약도 이 협정의 발효일에 효력이 중단될 것이라는 데 합의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양자 간 투자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투자는 그 조약이
발효 중이었던 동안 발생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그 조약의 규칙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투자자는 양자 간 투자 조약이 발효 중이었던 동안 발생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양자 간 투자 조약에 규정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경과하지 않는 한, 그 조약에 따른 중재 청구만 제기할 수
있다.

제2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9.18조
협의 및 교섭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우선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9.19조
중재 청구 제기

1.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위반이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청구의 한도는 제1항에 언급된 위반의 결과로 투자자에게 초래된 손실 또는 손해의 금전적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통보)를 피청구국에 전달한다. 그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나.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과 그 밖의 모든 관련 규정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4. 의사통보를 제출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청구인은 다음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가. 피청구국 및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

나.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규칙

5. 청구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 36 조제 1 항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 또는 중재요청(중재통보)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 3 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 20 조에 언급된 청구서면과 함께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라. 제 4 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그 밖의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그러한 중재통보가 제출된 후 청구인이 최초로 주장하는 청구는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접수일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6. 제4항에 따라 적용 가능하고 이 절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에 유효한 중재규칙은, 이 협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중재를 규율한다.

7. 청구인은 중재통보와 함께 다음을 제출한다.

가. 청구인이 임명하는 중재인의 이름, 또는

나. 사무총장이 그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

제9.20조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와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요건,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

제9.21조

각 당사국의 동의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제9.19조제1항에 따라 주장되는 위반사실과 청구인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을 초과하여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청구도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없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청구도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나. 제9.19조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중재통보에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9.19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포기서가 수반되는 경우, 그리고

다. 제9.19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 해결절차에서 어떠한 판결 또는 판정도 내려지지 않은 경우

3.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제9.22조

중재인의 선정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 사무총장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비당사국의 국민인 경우, 또는 달리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사무차장이 임명을 하도록 요청된다.

3.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사무총장은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않은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7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가. 피청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나. 제9.19조제1항에 언급된 청구인은 다른 분쟁당사자의 국민을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제9.23조

중재의 수행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으로 한다.

2.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다.

3.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부속서 9-바(외부조언자)에 따라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것과는 다른 관점, 특정한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

나.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

다.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중재판정부는 외부조언자 입장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외부조언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4.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9.2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한다.

가. 그러한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자국의 반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 또는 중재통보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수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정한 날 내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다.

나.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그 밖의 본안 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립한 일정에 합치하도록 그 이의제기를 검토할 일정을 수립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다.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중재통보(또는 중재통보의 수정)상의 청구내용을 뒷받침하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된 분쟁의 경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 20 조에 언급된 청구서면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분쟁 중이 아닌 관련 사실도 검토할 수 있다.

라. 피청구국이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제 5 항에 규정된 신속절차를 이용하였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국이 권능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본안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5.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45일 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않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요청일 후 150일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심리를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데 30일을 추가로 소요할 수 있다. 심리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추가적인 단기간 동안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6. 중재판정부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정당한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승소한 분쟁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7. 피청구국은, 제9.14조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항변, 반소 또는 상계권으로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8.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9.19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9. 가.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배상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당사자들 및 비분쟁당사국에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 날 후 60일 내에, 분쟁당사자들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60일의 의견 제출기간이 만료된 날 후 45일 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린다.

나. 가호는 제10항 또는 부속서 9-다에 따라 불복청구가 가능하게 된 이 절에 따라 수행된 어떠한 중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0. 투자분쟁을 심리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을 재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소기구를 설치하는 별도의 다자간 협정이 양 당사국 간에 발효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자간 협정이 양 당사국간에 발효된 후에 개시된 중재에서 제9.29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그러한 상소기구가 재심리하도록 하는 합의를 교섭할 수 있다.

제9.24조
중재절차의 투명성

1.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청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통보

나. 중재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9.23조제2항, 제9.23조제3항 및 제9.28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라. 이용 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 판정 및 결정

2.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심리는 당사자의 입장 및 주장이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비공개로 개최된다. 중재판정부는 심리가 대중의 참석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3.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보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21.2조(필수적 안보) 또는 제21.4조(정보의 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가. 분쟁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당사국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다.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보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그리고

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비분쟁당사국에 제공되고 대중에게 공개된다.

5.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9.25조 준거법

1. 제4항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9.19조제1항에 따라 제기될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의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합법성을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3. 중재판정부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또는 그 밖의 다자간 지식재산 조약에 따른 조치의 합법성을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4. 제19.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해야 한다.

제9.26조

부속서의 해석

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항목의 범위 내에 있다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문제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내에 제19.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결정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2. 제1항에 따라 내려진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해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내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9.27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않는 한 자체 발의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하도록 1명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9.28조

병합

1. 제9.1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별도로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조건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사무총장과 그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요청을 송달하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이름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3.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그 요청이 명백히 근거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4.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 명의 중재인

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 명의 중재인, 그리고

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5.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내에 피청구국 또는 청구인들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않은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피청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고, 청구인들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비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9.19조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다. 제 9.22 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 4 항가호 및 제 5 항에 따라 임명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9.19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였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인은 제6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9. 제9.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받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10. 한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9.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제6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령할 수 있다.

제 9.29 조 판정

1.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절과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없다.

4.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5. 제6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재심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6.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제 9.19 조제 4 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7.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8. 피청구국이 최종 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의 요청의 전달이 있을 때, 제20.7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이 설치된다. 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다.

가. 최종 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 그리고

나. 제 20.11 조(패널 보고서)에 따라 피청구국이 최종 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9. 분쟁당사자는 절차가 제8항에 따라 취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10.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9.30조

문서의 송달

당사국에 대한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9-나에서 그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로 송달된다.

제3절

정의

제9.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자 간 투자 조약이란 1999년 2월 7일 예루살렘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을 말한다.

청구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이 장에 따른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자들란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청구인 또는 피청구국 어느 하나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1.7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다만, 투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식재산권

사. 면허, 인가, 허가과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이와 유사한 권리,⁸ 그리고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⁹

투자과 관련된 이 장의 규정들은 투자 수익의 재투자에 적용되며, 그 재투자가 원래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재투자는 원래의 투자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투자 형태의 변경 또는 재투자 형태의 변경이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그러한 변경은 이 장의 의미에서 투자로서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¹⁰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양 당사국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법령이란 당사국의 법과 규정 및 그 법과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⁸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 있는 명령 또는 판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익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¹⁰ 이스라엘의 경우, 자연인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

보호정보란 비밀 영업정보 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말한다.

피청구국이란 이 장에 따른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을 말한다.

수익이란 투자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하며 배당금, 이윤,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 청산을 통하여 받은 금액, 이자, 자본수익, 로열티 또는 수수료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무총장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2010년 개정된 또는 양 당사국 간에 추후 합의되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부속서 9-가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9.7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물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9.7조제1항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물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한다.

-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다.
-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¹¹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¹¹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를 들어, 규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¹²

나. 예를 들어,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¹³

¹² 한국의 경우, 관련 고려사항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과 같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투자자 또는 투자가 지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¹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않다.

부속서 9-나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한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한국에 송달된다.

대한민국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또는 그 승계기관

이스라엘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이스라엘에 송달된다.

Chief Economist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Quarter, Jerusalem
Israel

또는 그 승계기관

부속서 9-다
상소 메커니즘의 가능성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내에, 양 당사국은 그들이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한 후 개시되는 중재에서 제9.29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재심리하기 위한 양자 간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부속서 9-라

과세 및 수용

과세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9-가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조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라.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부속서 9-마

송금

1. 이 장 또는 제10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 당사국이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관련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려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해서도 다른 쪽 당사국과 조율할 것이다.

나. 몰수적이지 않다.

다.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라. 모든 규제 자산¹⁴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않는다.

마.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¹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호의 “규제 자산”이라는 용어는 한쪽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바.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사.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목록을 조건으로, 제 9.3 조·제 10.2 조(내국민 대우) 및 제 9.4 조·제 10.3 조(최혜국 대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된다.

자. 「국제통화기금협정」 및 그 개정과 합치한다. 그리고

차.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지 않는 한,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않는다.¹⁵

¹⁵ **경상거래**는 「국제통화기금협정」 제30조(d)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지급만기가 도래하며, 지급이 제한되는 분할채무상환에 대한, 대부 또는 채권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

부속서 9-바
외부조언자

중재판정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의 자연인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외부조언자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다.

1.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는 그 의견서는

가. 이해관계인이나 그 대표자에 의하여 날짜가 기재되고 서명되며, 그러한 인의 연락정보를 포함한다.

나. 모든 분쟁당사자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휴관계를 공개하고 그 서면입장을 준비하는 데 재정 또는 그 밖의 지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할 모든 인, 정부 또는 그 밖의 실체를 기재한다.

다. 의장에게 보내지고, 분쟁당사자들에게 의하여 선정된 언어나 언어들로 분쟁당사자들에게 또한 전달된다. 그리고

라.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부속서를 포함하여 15 쪽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그 의견서는 다음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서면 선언을 수반한다.

가. 법인의 경우 그 설립지, 그리고 자연인의 경우 주소, 활동의 성격, 자금조달의 출처, 그리고 적절한 경우, 앞서 언급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

나. 이해관계인이 일반적으로 또는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분쟁당사자, 다른 정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또는 그 밖의 유형의 기여를 받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어떠한 분쟁당사자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서가 중재판정부가 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정을 할 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

3. 중재판정부는 상기 규칙에 합치하지 않는 외부조언자 의견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부속서 9-사
중재 청구 제기

한국

1. 제9.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투자자가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의 절차에서 제1절에 따른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경우, 그 투자자는 한국이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를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의 기업이 한국이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선택은 최종적이며, 그 투자자는 그 후에 제2절에 따른 중재에서 그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제 10 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제 10.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다.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에서의 주재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0.4 조, 제 10.7 조 및 제 10.8 조는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

4.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나. 정기적인지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1)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고 있는 기간 중 그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또는

다.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5. 이 장은 당사국에 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으며, 그 접근 또는 고용에 대하여 그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6.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제 10.2 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0.3 조 최혜국 대우¹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0.4 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산출량², 또는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² 3 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10.5 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제 10.6 조

비합치 조치

1. 제 10.2 조부터 제 10.5 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2) 지방정부³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 10.2 조에 대하여 그 개정

³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또는

라.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 10.3 조, 제 10.4 조 또는 제 10.5 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 1 항라호는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비당사국과의 서비스 자유화 규정을 포함한 기존의 또는 미래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이나 유사한 약정에서 제 1 항라호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시점까지, 제 10.3 조, 제 10.4 조 및 제 10.5 조는 제 1 항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 10.3 조, 제 10.4 조 또는 제 10.5 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그 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제 10.2 조부터 10.5 조까지는 부속서 I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 10.7 조

국내 규제

1.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의무는 부속서 I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승인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국가정책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3. GATS 제 6 조제 4 항과 관련된 교섭의 결과(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교섭의 결과)가 발효하는 경우, 그 결과가 이 협정에 따라 발효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협의 후에 적절한 경우 이 조는 개정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러한 교섭에 대하여 조율한다.

제 10.8 조

규정⁴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제 16 장(투명성)에 더하여,

가.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리고

나.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된 최종 규정의 공포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한다.

제 10.9 조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은 중앙, 지역 및 지방정부에서 면허의 승인 또는 기준을 제정하거나 이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제 5 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 10.3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 또는 자국 영역에서의 관련 기관에 의하여 체결된 어떠한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해서도 적절한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4.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 1 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할 때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할 수 없다.

제 10.10 조

지불 및 송금⁵

1.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관한 그러한 송금과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10.11 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인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9-마(송금)는 이 조에 적용된다.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이 조의 목적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가. 인에 의하여 그 기업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이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그리고

나. 인이 그 기업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기업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인에 의하여 “지배”된다.

제 10.12 조

예외

1. 제 10.3 조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에서 기인한 모든 대우, 선호 또는 특권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 또는 통화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가 될 미래의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 또는 통화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

2. 양 당사국이 제 1 항나호의 예외를 포함하지 않는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 또는 통화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에 개별적으로 당사자인 경우 제 1 항나호의 적용이 종료된다.

제 10.13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이른바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 영역 내의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가. 기업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가. 한_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서비스 공급

나. 한_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투자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이란 제 1.7 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구성된 기업 또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⁶

⁶ 제 10.2 조 및 제 10.3 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는 GATS 제 2 조 및 제 17 조에서 사용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제 11 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 11.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부속서 11-가 또는 11-나의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한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기업인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상용 방문자, 또는

나. 기업 내 전근자

제 11.2 조 일반 원칙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특혜 무역 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고 부속서 11-가 또는 11-나에 따라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 희망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며, 시민권, 국적,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 11.3 조 일반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 11.2 조에 따라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에 따른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용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사증을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이 협정에 따른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11.4 조

일시 입국의 허용¹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11-가 또는 11-나의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따라, 이 장에 따라 달리 입국 자격을 갖춘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부속서 11-가 및 11-나에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자국 영역에서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한 자국의 약속을 포함한 양허를 규정한다. 이러한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포함된 기업인의 각 범주에 대하여 요건과 체류 기간을 포함한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조건 및 제한을 명시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게 다음을 조건으로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

¹ 이 장에 따른 각 당사국의 약속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 에 기재된 조건, 유보 또는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 규정된 출입국 절차를 위한 소정의 신청 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나. 허용 당사국으로의 입국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

4. 이 장에 따라 허용되는 일시 입국은 그 일시 입국을 허가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구체적인 법과 규정에 따라 직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5.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부과하는 수수료가 이 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6. 부속서 11-가 또는 11-나의 구체적인 약속 양허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입국 조건으로서 노동시장테스트나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어떠한 수량제한도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제 11.5 조 정보의 제공

각 당사국은,

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관련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개월 내에, 설명 자료, 관련 양식과 문서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요건을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국의 출입국 관련 웹사이트 등에 공표한다.

다.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출입국 조치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공표된 정보가 그 수정 또는 개정이 발효하는 날

까지 갱신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라. 기업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제 11.6 조 신속한 신청 절차

1.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제출한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 또는 이에 대한 연장을 국내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출입국 절차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승인되는 경우 체류 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하여, 그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인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신청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통보를 제공하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신청인의 법적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3.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완전한 출입국 절차 신청을 접수한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그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11.7 조 접촉선

1. 양 당사국은 제 11.6 조에 기술된 대로 정보를 교환하는 접촉선을 설치한다.
2. 접촉선은

가. 한국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과장 또는 그 승계인

나. 이스라엘의 경우,

내무부 인구이민국 지역 국경출입국관리국 사무소 관리자 또는 그 승계인

제 11.8 조

분쟁해결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 또는 분쟁을 양 당사국 간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출입국 절차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 20 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행정 구제를 완료하였을 경우

3. 권한 있는 관련 당국이 행정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부터 1 년 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제 2 항나호에 언급된 구제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당사국의 자연인이 허용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거주 또는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증, 승인이나 그 밖의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에 관한 제 20 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제 11.9 조

작업반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장과 관련된 사안을 고려하고 검토하도록, 출입국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업인의 일시 입국 작업반을 설치한다.

2. 작업반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 후 첫 해 안에, 그리고 양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결정된 경우 직접 대면 또는 이용 가능한 그 밖의 기술 수단을 통하여 회합한다.

3. 작업반은

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 신청 처리를 위한 수수료 및 더 많은 범주의 기업인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확인하고 권고한다.

나.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한다, 그리고

다.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그 밖의 상호 관심사를 고려한다.

제 11.10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 제 1 장(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 19 장(협정의 운영), 제 11.8 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 20 장(분쟁해결), 제 21 장(예외) 및 제 22 장(최종규정), 그리고 제 16 장(투명성)의 제 16.1 조(공표), 제 16.2 조(통보 및 정보의 제공) 및 제 16.3 조(행정절차)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제 11.1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이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출입국 절차란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허용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거주 또는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증, 허가, 승인이나 그 밖의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를 말한다.
그리고

일시 입국이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 없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11-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1. 한국은 이 장 및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려는 이스라엘의 기업인에 대하여, 입국 전 적절한 출입국 절차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2. 한국은 진행 중인 노동 분쟁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노동 분쟁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상용 방문자

3. 이스라엘의 상용 방문자에 대하여, 고용 허가를 취득할 것을 그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90 일 이하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4. **이스라엘의 상용 방문자**란 다음의 이스라엘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

- 1) 서비스 판매자로서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한국 영역에 입국하는 자연인
- 2) 상품의 판매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협상을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려는 자연인, 또는
- 3)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서 제6항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가이고 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려는 자연인, 그리고

나. 제안된 영업 활동을 위한 보수의 일차적 소득원, 주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한국 밖에 있는 자연인

이스라엘의 기업 내 전근자

5. 이스라엘의 기업 내 전근자는 3 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6. **기업 내 전근자**란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한 조직으로 한국 영역에 설립된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법인, 투자자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일시 입국의 신청일 직전 1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러하게 고용되어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인을 말한다.

가.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리고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그 회사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를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실제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운용과 관련된 임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나.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이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서비스 공급이나 투자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전문가**란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수준의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해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부속서 11-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1. 다음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제 11.4 조에 따른 이스라엘의 약속을 규정한다.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

2. 이스라엘은 노동시장테스트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고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가. **임원:**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며 일반적으로 폭넓은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는 인

나. **관리자:** 조직 또는 그 조직 내 부서를 지휘하고, 인사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그러한 인사 채용 및 해고 그리고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감독 및 통제하고 보유함으로써 그 조직의 서비스 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있는 인²

3. **기업 내 전문가:** 취업 허가는 전문성을 지닌 고급 수준의 지식 또는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달리 필수적이거나 재산권적인 지식을 보유한 기업 내 전문가에게 노동시장테스트를 준수하여 발급될 것이다.

4.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의 입국 및 일시 체류는 63 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허용된다.

5. 국경출입국관리국의 재량에 따르고 모든 규정된 조건이 충족된 후

가.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를 위한 고용 허가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초에 2년까지의 기간 동안 발급될 수 있다.

² 이 항에서, “서비스 공급 기능”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수행된 투자 운용을 포함한다.

나. 최초 고용 허가의 발급 후 그리고 고용인에 의한 관련 연간 수수료의 지불을 조건으로, 주 한국 이스라엘 영사관에 의하여 발급된 B/1 비자와 취업 허가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의 이스라엘 입국 후, 고용 허가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최초 기간 동안, 그리고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 고용 허가의 연장들은 2년까지의 기간들 동안, 이스라엘 법에 규정된 최대까지 요청될 수 있다. B/1 비자와 취업 허가의 추가 연장들은 1년까지의 기간들 동안 발급될 수 있다.

한국의 상용 방문자

6. 한국의 상용 방문자란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 서비스 공급 또는 이스라엘에서의 고용에 종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사업 협상 및 회의에 대한 참여와 같은 일반적인 사업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일시 입국하려는 한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7. 한국의 상용 방문자의 체류 기간은 국경통제기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입국 및 일시 체류는 1년에 90 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용된다.

2021 년 5 월 12 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세종

유명희 본부장 귀하,

본인은 부속서 11-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추가하여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의 이스라엘에서의 체류를 63 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요청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오늘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의 제 11 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이스라엘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국인 전문가에게 발급되는 B/1 비자 및 취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63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기 위한 신청을 검토하는 데에, 1952 년 이스라엘 입국법 제 3a 절제 c1 항과 같이, 특히 다음의 상황이 추천 위원회에 의하여 고려될 것입니다.

가.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러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한 기관의 신원과 기여

나. 외국인 전문가의 자격, 고용기관에서 외국인 전문가의 지위에 관한 특정 사항, 이스라엘의 요청기관에 의한 외국인 전문가의 지속적인 고용의 중요성

다. 이스라엘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국적의 국민의 수 및 외국인 전문가가 이스라엘에 영구 정착할 의사가 없다는 표시

외국인 전문가의 체류 및 고용을 63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기 위한 신청이 이스라엘 경제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기초하는 경우, 위원회는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이 양국 간 무역 관계와 기업인의 이동의 중요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고용기관 및 외국인 전문가의

기여에 대한 추가적인 긍정적 표시로서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장을 포함하는 위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의 존재도 고려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귀하 및 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고대합니다.

아미르 페레츠
경제산업부 장관
이스라엘 예루살렘

2021 년 5 월 12 일

아미르 페레츠
경제산업부 장관
이스라엘 예루살렘

페레츠 장관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늘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부속서 11-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추가하여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의 이스라엘에서의 체류를 63 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요청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오늘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의 제 11 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이스라엘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국인 전문가에게 발급되는 B/1 비자 및 취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을 63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기 위한 신청을 검토하는 데에, 1952 년 이스라엘 입국법 제 3a 절제 c1 항과 같이, 특히 다음의 상황이 추천 위원회에 의하여 고려될 것입니다.

- 가.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러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한 기관의 신원과 기여
- 나. 외국인 전문가의 자격, 고용기관에서 외국인 전문가의 지위에 관한 특정 사항, 이스라엘의 요청기관에 의한 외국인 전문가의 지속적인 고용의 중요성
- 다. 이스라엘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국적의 국민의 수 및 외국인 전문가가 이스라엘에 영구 정착할 의사가 없다는 표시

외국인 전문가의 체류 및 고용을 63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기 위한 신청이 이스라엘 경제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기초하는 경우, 위원회는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이 양국 간 무역 관계와 기업인의 이동의 중요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고용기관 및 외국인 전문가의 기여에 대한 추가적인 긍정적 표시로서 기업인의 이동에 관한 장을 포함하는 위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의 존재도 고려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귀하 및 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고대합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세종

제12장 통신

제12.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을 포함하여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그리고

라.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2. 이 장은 다음을 제외하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12.2조는 케이블 또는 방송 서비스 공급자의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나. 제12.20조는 어떠한 기술적 조치가 공중 통신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도에서 그러한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공급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거나,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또는

다. 사설망을 운영하는 인이 제3자에게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설망을 이용하는 것을 당사국이 금지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4. 이 장은 부속서 12-가를 조건으로 한다.

제1절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제12.2조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 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나. 전용 또는 소유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다. 소유 또는 전용회선을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나 다른 기업의 소유 또는 전용회선과 접속하는 것

라. 교환, 신호, 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마.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거나 공중 통신 서비스 최종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이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또는

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투명하고 당사국의 국내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는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

제2절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제12.3조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의무¹

상호접속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동일한 영역 내에서 간접적으로 상호접속을 합

¹ 제 12.3 조제 3 항은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리적인 효율로 제공할 것, 그리고

나. 가호를 이행할 때,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번호이동성

2. 각 당사국은 인터넷전화 서비스 공급자를 제외한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합리적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전화번호에 대한 접근

3. 각 당사국은,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제외한 그 당사국 영역의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이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제3절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

제12.4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자회사, 계열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

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가. 동종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급, 효율 또는 품질, 그리고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제12.5조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제12.6조

재판매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

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이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최종이용자에게 소매로 제공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재판매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그러한 서비스가 합리적인 효율로 재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제12.7조

망 요소 세분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제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부여한다.

제12.8조

상호접속

일반 조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나.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효율에 따라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라. 시의 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그리고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선택권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들의 설비와 장비를 다음 중 최소한 하나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와 상호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효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다른 표준상호접속제안

나. 발효 중인 기존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또는

다.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을 통하여

상호접속 제안 및 협정의 공개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4.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요율 및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한 수단은 최소한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 자국 영역의 다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공개, 또는

나. 통신규제기관이 정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요율 및 조건의 공개

제12.9조

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책정²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을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의 원가지향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부여한다.

제12.10조

² 제 12.9 조는 지배적 사업자가 세분화된 망 요소로서 전용회선을 제공함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설비 병설

1.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요구되지 않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 효율로 대안적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의 어느 구역이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제12.11조

전주, 관로, 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 관로, 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효율로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전주, 관로, 도관, 선로설치권,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절

그 밖의 조치

제12.12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저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자국 영역에 공급자가 소재한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의 해저 케이블 시스템(육양 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접근³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제12.13조

부가 서비스의 공급조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 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나. 그러한 서비스 효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해저 케이블 육양 설비에 대한 접근은 용량을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설비를 소유하지 않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 자를 위한 접근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허가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임차된 설비, 또는 그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통한 해저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다. 그러한 서비스의 효율표를 제출할 것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마. 공중 통신 망 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기술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14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지분⁴을 소유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허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효율, 그리고 비정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 또는 배분에 관한 결정 및 절차를 포함한 자국의 규제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제12.15조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2.14 조는 통신규제기관 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2.16조

허가 절차

1. 당사국이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그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 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취소, 갱신 거부 또는 조건 부과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2.17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3.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10.4조(시장접근)가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든지 또는 제10.1조(적용범위)제3항의 운영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자에 적용되든지 간에 제10.4조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당사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파의 사용과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비정부 통신 서비스용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도록 노력하고, 당사국이 행정적 유인 가격 책정, 경매 또는 비면허 사용에 의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장려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12.18조

집행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12.2조부터 제12.12조까지 규정된 의무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 권한은 금전적 벌칙, 구제명령(잠정적 또는 최종적), 시정 명령이나 허가의 수정,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제12.19조

통신 분쟁의 해결

제16.3조(행정절차) 및 제16.4조(재심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이의 신청

- 가. 1) 서비스 공급자는 제12.2조부터 제12.12조까지 규정된 사안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 2)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지정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에 의한 심사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적 재심사

-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않는 한, 사법적 재심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제12.20조

투명성

제16.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제 결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달리 공개되도록 할 것

나. 적용 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와 합리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

다.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의견에서 제기된 모든 중대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규범제정 과정에서 응답할 것, 그리고

라.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1) 다음에 관한 조치

(가)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나)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다)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라)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그리고

2) 사법적 및 그 밖의 심판절차에 관한 절차

제12.21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⁵

1. 어떠한 당사국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유연성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⁶

제12.22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12.23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용 이동 서비스란 이동무선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을 제외하고, 이 조는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채택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당사국은 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보유하고, 그리고

나. 그러한 조치가 관련 국제 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1.7조(정의)에 정의된 기업을 말하며, 기업의 지점을 포함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 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의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 요소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징, 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전환할 때 품질, 신뢰성 또는 편의성의 손상 없이,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물리적 설비 병설이란 공급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구역에서 장비를 설치, 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중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고, 부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표준상호접속제안이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제시되고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되거나 통신규제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상호접속제안으로서, 상호접속을 위한 약관, 요율 및 조건이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이를 수락하려는 용의가 있는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이에 기초하여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 영역의 적용대상투자

이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인으로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영역 내로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시도하거나 공급하는 인을 말하며,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책임지는 중앙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란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추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⁷

⁷ 한국의 경우, 이는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12 호에 정의된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부속서 12-가

한국

1. 제12.7조, 제12.8조제1항가호, 제12.8조제1항마호, 제12.8조제2항다호, 제12.10조 및 제12.11조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2.8조제1항나호부터 제12.8조제1항라호까지 그리고 제12.9조에 대하여, 한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한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제12.19조에 규정된 대로 통신규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합치하게, **별정통신 사업자**는 유선이나 무선 또는 다른 전송 설비를 소유하지 않으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를 소유할 수 있으며, 허가된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송 설비를 통하여 자신의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허가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이다.
4. 제12.7조, 그리고 제12.9조부터 제12.11조까지는 상용 이동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1. 이스라엘의 경우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이 장의 목적상, 이스라엘의 허가 제도에 따라 허가된 서비스 공급자를 지칭한다.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3.1조 일반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제13.2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1.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제9장(투자) 및 제10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이 의무는 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2. 이 장은 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3.3조 관세

1. 어떠한 당사국도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당사국이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그 조세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13.4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적인 대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 전자적으로 전송된 일부 디지털제품¹에 대하여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

가. 다음을 근거로 하는 경우

- 1) 불리한 대우를 받는 디지털제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저장, 전송, 계약,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것, 또는
- 2) 그러한 디지털제품의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것, 또는

나. 자국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저장, 전송, 계약,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을 달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2. 제1항은 제9.12조(비합치 조치) 또는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¹ 양국 간 무역을 촉진하려는 양 당사국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제1항의 “일부 디지털제품”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또는 발주되는 그러한 디지털제품 또는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만을 지칭한다.

나. 제10.1조(적용범위)에 정의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제13.5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자국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인증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나. 자신의 전자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가. 정당한 정부 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목적의 달성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제13.6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에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집행기관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과 관련되는 상호 관심이 있는 적절한 사안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집행기관과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3.7조

개인 정보 보호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한다.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의 개발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한다.

제13.8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3.9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특히 다음을 다룰 협력

메커니즘을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대중에게 발급되는 전자 서명 인증서의 인정과 국경 간 인증 서비스의
원활화

나. 개인 정보의 보호

다. 정보의 전송 또는 저장에 관한 제공자의 책임

라. 요청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시지의 취급

마.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술

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사.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2.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겪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협력한다.

3. 전자상거래의 전 세계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다자 포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그러한 포럼의 틀 내에서 필요한 경우 견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제13.10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위하여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2,3}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검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그 전자문서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전자기적 또는 광학적 수단을 사용하는 디지털제품의 이송을 말한다.

개인 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시지이란 인터넷 운반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인의 동의 없이 또는 수령인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송부되는 음성 또는 팩스 서신을 포함한 전자 서신을 말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된 표현은 포함하지 않는다.

³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제품이 상품인지 또는 서비스인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14장 지식재산권

제1절 일반규정

제14.1조 원칙 및 목적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발상, 기술 및 창의적인 활동의 확산을 통하여 국제 무역 및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촉진, 그리고

나.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에 대하여 지식재산의 권리자와 사용자를 위한 명확성의 증진

2.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와 지식재산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간 균형을 달성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제14.2조 국제 협정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¹과 그들이 양 당사자인 지식재산에 관한 그 밖의 모든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제14.3조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4.4조

내국민 대우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3 조 및 제 5 조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식재산의 보호 및 향유²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제14.5조

투명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또는 집행에 관한 법, 규정 및 절차가 명문화되고 공표³되거나, 공표가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² 이 장의 목적상, “보호”는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이용 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포함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법, 규정 또는 절차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제14.5조의 공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제2절 상표

제14.6조 상표 보호

1. 한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기업들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지, 또는 표지의 조합은 상표를 구성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증명 표장, 단체 표장 및 서비스 표장을 포함한 표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⁴
3.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그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⁵
4.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모든 제 3 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선행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양 당사국이 사용에 기반하여 권리를 이용 가능하게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5.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 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증명 표장 또는 단체 표장이 보호되는 한, 이를 자국의 법에서 별도의 범주로 대우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양해된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소리 표장에 대하여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4.7조

예외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14.8조

유명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 유명 상표 목록에 등재되어 있을 것 또는 유명 상표로 사전 인정되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 어떠한 상표가 당사국에서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표의 홍보 결과로 얻어진 관련 당사국에서의 지명도를 포함하여 관련 분야에서 대중의 상표에 대한 지명도를 고려한다.

3. 이 조에 따른 보호는 등록 상표가 각 당사국에서 유명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국한되지 않는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등록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등록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선행 유명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⁶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항의 “유명 상표”라는 용어는 미등록 유명 상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4.9조
상표의 등록 및 출원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요건. 이 경우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나. 출원인이 상표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

다. 어떠한 인도 상표 등록 전에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 및 이해당사자가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의 취소나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

라. 악의로 등록된 상표의 취소나 무효화를 위한 행위. 각 당사국은 해당 행위는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한다. 그리고

마.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결정은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서면 결정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상표의 전자적 출원과 전자적 처리,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⁷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절은 당사국이 그러한 정보를 그 당사국의 자국 언어 외의 언어로 공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4.10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1. 이 협정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2. 각 당사국은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제3절
특허

제14.11조
특허 가능 대상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만 한다.⁸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특허 대상⁹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⁸ 당사국은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각각 “비자명성” 및 “유용성”과 동의어로 취급할 수 있다.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7조와 합치되는 특허 대상에 대한 예외를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제14.12조

예외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14.13조

공지 예외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가. 공지가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그리고

나.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전 12 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

제14.14조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

각 당사국은 특허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¹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 회 제공한다.¹¹

제14.15조

우선 심사

1. 각 당사국은 합리적 근거와 절차적인 요건에 따라, 출원 공개 후 출원인 외의인에 의하여 청구된 발명이 실시되는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 출원인이 우선심사요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우선 심사제도의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심사처리기간의 단축, 또는

나. 우선 심사를 위한 절차적인 요건의 간소화

제14.16조

절차의 간소화

1. 당사국은 우선권이 주장된 특허에 대한 선출원이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그 선출원에 대한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우선권이 주장된 특허에 대한 선출원의 번역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¹⁰ 이 조의 목적상, “의견진술”이란 제출된 출원에 대한 출원인의 서면 통지를 말한다.

¹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이 허용되는 상황의 범위는 자국의 법에 따라 각국 간에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4절
식물품종 보호

제14.17조
식물품종 보호

양 당사국은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91 년)에 따른 그들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제5절
디자인

제14.18조
디자인 보호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서 하나의 물품 또는 물품의 일부에 대한 산업 디자인에 대하여 최소 15 년의 보호 기간 동안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2.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제 3 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4.19조
예외

각 당사국은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6절

부정경쟁 및 미공개 정보

제14.20조

부정경쟁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정경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이나 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성격의 모든 행위

나.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이나 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신용을 해하게 하는 성격의 거래상의 허위 주장, 또는

다. 상품의 성질, 제조방법, 특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수량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거래상의 표시 또는 주장

제14.21조

미공개 정보

양 당사국은 미공개 정보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39 조에 따라 보호한다.

제7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12,13}

제14.22조 부여되는 보호

각 당사국은 다음 협약에 규정된 유보 및 예외를 포함하여 다음을 준수한다.

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61)(로마협약)의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그리고

나.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년)(베른협약)의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제14.23조 복제권

각 당사국은,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자신의 저작물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¹⁴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4.24조 공중에 이용을 제공할 권리

¹² 제 14.25 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목적상,

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라는 용어는 또한 모든 권리승계인을 지칭한다. 그리고

나. “저작자”라는 용어는 또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고용인과 같이 저작물의 첫 번째 저작권 소유자로 간주될 모든 실체를 지칭한다.

¹³ 이 장의 목적상, “실연”이란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말한다.

¹⁴ 이 장의 목적상,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는 배타적 권리를 지칭한다.

각 당사국은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자신의 저작물 및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저작물 및 음반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제14.25조

보호 기간

1. 각 당사국은, 저작물의 보호 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 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보호 기간이 실연이 이루어진 때부터 70 년 이상이 될 것을 규정한다.

제14.26조

무방식주의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규정된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향유와 행사에 어떠한 형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제14.27조

계약에 의한 이전

각 당사국은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저작물 또는 음반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그 권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4.28조

제한 및 예외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되지 않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특정한 경우에, 이 절에서 언급된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를 자국의 법령에 규정할 수 있다.

제14.29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 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양 당사국 간 콘텐츠의 더욱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 각자의 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징수단체의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합리화를 달성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4.30조

실연자의 권리

로마협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제공되는 보호가 다음에 대한 금지의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가. 방송 또는 공중 전달에 사용된 실연 그 자체가 이미 방송된 실연이거나 고정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실연을 동의 없이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동의 없이 고정하는 것

제8절

집행

제1관 일반 의무

제14.31조 지식재산권 관련 집행 관행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가.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사법결정과 행정판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정과 판정이 기초로 하는 관련 사실의 조사결과 및 사유나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각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결정과 판정이 공표¹⁵ 되거나, 공표가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중과 권리자가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자국의 언어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제14.32조 인터넷상 침해에 대한 조치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의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다.¹⁶

제2관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¹⁵ 당사국은 그 결정 또는 판정을 인터넷상에 공개함으로써 공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¹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는 법령, 지침, 정책, 인식 캠페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4.33조
자격 있는 권리자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¹⁷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14.34조
손해배상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 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1)목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

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 자국의 사법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제14.35조

¹⁷ 이 조의 목적상, “권리자”는 어느 지식재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 및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한다.

법정손해배상액

민사 사법절차에서,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각 당사국은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14.36조

법적 비용

각 당사국의 사법당국은 또한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적절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제14.37조

압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와 관련된 침해혐의가 있는 상품, 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위조에 대해서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¹⁸

제14.38조

폐기를 포함한 그 밖의 구제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하여, 양 당사국의 사법당국은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상품을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폐기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에게 초래되는 피해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양 당사국의 사법당국은 또한 그 지배적인 용도가 침해

¹⁸ 당사국은 이 의무를 잠정조치를 통하여 완수할 수 있다.

상품의 생성에 있었던 재료 및 도구를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요청을 검토하는 데에,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 및 제 3 자의 이익 간의 비례성에 대한 필요가 고려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제14.39조

침해 관련 정보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증거 수집의 목적상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자국의 사법당국¹⁹이 당사자에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법당국 또는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4.40조

비밀유지명령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의 사법당국이 내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법당국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당국이 그 절차와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4.41조

¹⁹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침해 수입품과 수출의 금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히 침해 수입품의 상거래로의 유입과 침해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4.42조

대체적 분쟁해결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43조

잠정조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지식재산권 침해발생의 방지와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상품이 당사국의 관할권 내 상거래로 유입되는 것의 방지, 그리고

나. 침해의 혐의에 대한 관련 증거의 보존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적절한 경우, 특히 지연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가 훼손될 것을 입증할 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잠정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3. 사법당국은 신청인이 권리자이며,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했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사법당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3관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제14.44조

국경조치의 범위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3 부제 4 절의 규정에 따라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²⁰의 수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진 권리자가 국경조치 절차가 적용되는 당사국의 권한 있는 행정 또는 사법당국에 그러한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그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정지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당사국은 이 절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그 밖의 침해와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그 영역으로부터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 침해상품의 관세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에 관하여 상응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²¹

제14.45조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

²⁰ 이 장의 목적상,

- 가. “**위조된 상표 상품**”이란 포장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되지 않는 상표를 허락 없이 부착하여, 수입국의 법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 나.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이란 권리자 또는 제작 국가에서 권리자가 정당하게 허락한 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복제물로, 그 복제가 국경조치 절차가 적용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구성하였을 물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말한다.

²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절에 규정된 절차를 다른 국가의 권리자에 의하여 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국가의 시장에 판매된 상품에 적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양해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절에서 규정한 절차를 요청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14.46조

정보의 공개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상품을 정지하거나 압수한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자국법에 따라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권리자에게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그 상품의 견본을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4.47조

최소허용수준 수입

각 당사국은 여행자의 개인적 휴대품에 포함되거나 소량의 탁송 물품으로서 비상업적 성격의 소량 물품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4.48조

폐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 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고,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4관 형사절차와 구제

제14.49조 형사절차와 처벌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고, 저작권접권 침해를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다.²²

제14.50조 처벌, 압수, 몰수 및 폐기

제 14.49 조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 나. 적절한 경우, 이용 가능한 구제는 또한 침해 상품 및 위법행위를 행하는데 주로 사용된 모든 재료 및 도구의 압수, 몰수 및 폐기를 포함한다. 그리고
- 다. 자국의 당국은 이 장에 기술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 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제9절 그 밖의 규정

²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화관에서의 상영으로부터, 그 거래를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의 무단 복사는 이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은 “복사”라는 용어를 “복제”와 동의어로 취급할 수 있다.

제 14.51 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유선 방송의 보호

각 당사국은 고의적인 행위를 통하여 유선 또는 위성 방송의 구독 서비스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한다.

제10절

협력 및 정보 교환

제14.52조

협력 및 정보 교환

1.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의 기존의 협력 형태에 추가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이 장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권리의 집행

나. 국내 및 국제 지식재산 정책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그리고

다. 다자 지식재산 협정의 이행에서의 그리고 산업재산 등록 제도와 관련한 경험의 교환

2.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 활동 및 정보의 교환은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조건으로 하며, 양 당사국 간에 상호 합의되는 조건에 따른다.

제11절

지식재산권위원회

제14.53조

지식재산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 목적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의 검토 및 점검
 - 나.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원활하게 할 방안의 토의
 - 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 제도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
 - 라. 공동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 수행, 그리고
 - 마. 이 장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 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년 회합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²³

제14.54조

검토

²³ 회의는 가상의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3 년차부터 다음의 사안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데 합의한다.

가. 미등록 디자인에 부여되는 보호

나. 비밀 디자인

다. 디자인 등록 요건

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그리고

마. 집행

제 15 장 무역과 환경

제 15.1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자국의 법에 따른 환경 의무와 그들이 당사자인 다자 환경 협정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무역과 환경 정책 간의 상호 지지를 인정하고, 이 협정을 환경 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있는 환경 사안에 대하여 그들 각자의 환경당국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제 15.2 조 보호 수준

자국의 환경 보호 수준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러한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제 15.3 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고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환경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자국의 환경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수립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제 15.4 조

구제 및 절차적 보장에 대한 접근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자국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이해관계인이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자국 환경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2. 각 당사국은 특정 사안에서 자국법에 따라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인에게 그 당사국의 환경법 집행을 위한 행정, 준사법 또는 사법 절차에 대하여, 그리고 그 법 위반에 대한 구제를 요청함에 있어서 적절한 접근을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제 2 항에서 언급된 행정, 준사법 또는 사법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할 것을 보장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절차는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공평하고 독립적인 자연인에 의하여 수행된다.

나. 그 절차는 법 또는 법 운영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 공개된다.

다. 그 절차는 절차 당사자에게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하고 정보 또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라. 그 절차는 자국의 법률 체계의 틀 안에서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고 불합리한 수수료 또는 시간제한이나 부당한 지연을 수반하지 않는다.

4. 각 당사국은 절차에서 본안에 대한 최종 판정이

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적절한 경우, 판정이 기초하고 있는 사유를 기술하며

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절차의 당사자에게, 그리고 자국법에 따라 대중에 공개되고, 그리고

다. 절차의 당사자가 제시한 정보 또는 증거에 기초하도록 규정한다.

5. 각 당사국은 또한 적절한 경우에 절차의 당사자가 자국법에 따라 절차의 최종 판정에 대한 재심사와 정당한 경우 정정 또는 재결정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절차를 수행하거나 재심사하는 재판소가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 15.5 조

투명성

각 당사국은 환경법과 환경법 집행 및 준수에 관한 절차에 대한 관련 정보가 공개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자국의 환경법에 대한 대중 인식을 증진한다.

제 15.6 조

환경과 기업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자국의 환경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5.7 조

환경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1. 양 당사국은 유연하고 자발적이며 유인에 기초한 메커니즘이 환경법에 따른 규제 조치를 보완하면서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의 달성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정책에 따라 그러한 메커니즘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정책에 따라 환경 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성과 목표 및 기준의 개발, 수립, 유지 또는 개선을 장려한다.

제 15.8 조

제도적 장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환경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상호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며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 년 내에 회합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3. 위원회는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각 회의의 요약 기록을 준비한다.

4. 위원회는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 또는 조치에 대한 보고서 및 권고를 준비할 수 있다. 이 보고서와 권고의 사본은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5. 위원회의 요약 기록, 보고서 및 권고는,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공개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의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국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
7. 위원회는 이 장의 운영과 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장의 이행에 대한 검토를 행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 15.9 조

협 의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이 장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협의, 정보 교환 및, 적절한 경우, 협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접촉선에 서면 요청과 함께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에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서는 문제가 되는 사안을 명확히 적시하고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주장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한다. 협의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접촉선에 협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3. 협의 동안, 각 당사국은 제기된 사안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충분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4. 이러한 협의를 목적으로 특별히 준비된 서류를 포함하여, 협의는 비밀로 하며, 어떠한 절차에서도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5. 협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하는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협의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협의는 요청서를 받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사안의 검토에 기여할 수 있는 인, 조직 또는 기관의 정보나 견해를 구할 수 있다.

7. 양 당사국이 제 2 항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요청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 따른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고위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신속하게 응답한다. 이러한 협의를 목적으로 특별히 준비된 서류를 포함하여 고위급 협의는 비밀로 하며, 어떠한 절차에서도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고위급 협의는,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당사국의 요청 접수부터 120 일 내에 종결된다.

제 15.10 조

공공 정보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자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인의 문의를 접수하고 고려함을 규정한다.

제 15.11 조

검토 패널

1. 고위급 협의 종결 후에, 요청 당사국은 협의에서 사안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 패널이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당사국은 또한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에 요청서 사본을 전달한다.

2. 검토 패널은 국가 접촉선이 제 1 항에 언급된 요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설치된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검토 패널의 위임사항은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제 15 장(무역과 환경)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검토 패널 설치 요청서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그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3. 검토 패널이 최종 보고서에서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최종 보고서의 제출부터 3 개월 내에 그리고 그 보고서를 고려하여, 그 사안을 다루기 위한 상호 만족스러운 조치계획에 동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개발한 조치계획은,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대중에 신속하게 공개된다. 조치계획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에 그 사본을 제출한다.

4. 양 당사국은 검토 패널이 설치된 후 어느 시점에서라도 사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하는 경우, 검토 패널에 그 해결안을 통지한다. 검토 패널이 이 통지를 접수하면 패널 절차는 종료된다.

5. 부속서 15-가는 패널위원 선정 및 검토 패널과 관련된 절차에 적용된다.

제 15.12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 15.13 조

대중 참여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수행되는 양 당사국 회의 및 협력 활동을 포함한 활동을 대중에 알린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에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5.14 조

비밀정보의 보호

각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비밀정보로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한 정보, 특히 개인 또는 상업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 15.15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조건으로 상호 관심 있는 협력 활동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협력 활동이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각 당사국의 프로그램, 개발 전략 및 국가적 우선순위와 합치할 것, 그리고

나. 그러한 활동의 개발과 이행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

제 15.16 조

협력 분야

1. 이 장과 관련된 양 당사국 간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양자,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

나.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교환

다. 다자간 환경 협정과 국제 무역 규칙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 교환

라. 환경 재난 및 비상사태의 예방과 관리

마. 화학물질 관리를 포함한 산업 활동의 환경적 측면

바.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2. 양 당사국은 협력 활동을 수립할 우선순위 분야를 확인하기로 합의하고, 이 협정 발효 후 이러한 우선순위 분야 및 활동을 포함한 작업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다.

제 15.17 조

정의

1. 이 장의 목적상,

위원회란 제 15.8 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위원회를 말한다.

환경법이란 다음을 통하여 환경 보호 또는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법령이나 규제 규정 또는 그 밖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말한다.

가. 오염원 또는 환경 오염물질의 방출, 방류 또는 배출의 방지, 저감 또는 통제

나.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와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전파, 또는

다.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야생 식물 또는 야생 동물, 그 서식지 그리고 보호되는 자연 지역의 보전 및 보호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천연자원에 대한 상업적 채취나 개발 또는 자급자족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검토 패널이란 제15.11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한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경우에 있어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가. 조사, 공소, 규제 또는 준수의 사안에 대하여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함을 반영하는 경우, 또는

나. 보다 우선한다고 결정된 다른 환경 사안에 대한 집행에 자원을 할당하도록 하는 선의의 결정의 결과인 경우

부속서 15-가
검토 패널과 관련된 절차

1. 검토 패널은 2명의 패널위원과 1명의 의장으로 구성된다.
2. 패널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가. 당사국의 검토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부터 30일 내에, 각 당사국은 1명의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그리고

나. 한쪽 당사국이 가호에 언급된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당사국의 국민인 자격을 갖춘 후보자 중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3. 의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가.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에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면서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 이름을 제공한다. 이 명단은 당사국의 검토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부터 30일 내에 제공된다.

나. 요청 당사국은 가호에 언급된 3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고, 명단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후보자 중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국에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면서 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의 이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명단은 가호에 따른 명단 접수 후 7일 내 또는 제15.11조에 언급된 검토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 후 37일 내 중 더 빠른 시일에 제공된다. 그리고

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나호에 따른 명단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3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실패할 경우, 의장은 가호와 나호에 따라 양 당사국이 제안한 6명의 후보자 중에서 추가 7일 내에 요청 당사국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4. 검토 패널은 환경법, 이 장에서 다루는 사안 및 가능한 한도에서 국제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다. 검토 패널의 구성원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어느 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어느 당사국 정부와도 연계되지 않는다. 검토 패널은 양 당사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인 개인들로 구성된다.

5.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검토 패널은 부속서 20-가(행동 규범) 및 부속서 20-나(절차 규칙)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변경과 함께, 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한 부속서들과 이 부속서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부속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6. 검토 패널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각 당사국은 검토 패널에 서면 및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발의로, 검토 패널은 적절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그렇게 취득된 모든 정보 또는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7. 검토 패널은 양 당사국에 중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보고서는 사실의 조사 결과, 요청을 받는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패널의 판정 및 검토 패널의 조사 결과, 판정 및 권고의 근거를 명시한다.

8. 검토 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 선정부터 120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다른 기한 내에 중간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양 당사국은 중간 보고서 제출부터 45일 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검토 패널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 패널은 그 보고서를 재검토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9. 검토 패널은 중간 보고서 제출부터 60일 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검토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그 보고서의 양 당사국에 대한 제출 30일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공표될 수 있다.

제16장 투명성

제16.1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자국의 법체계가 요구하는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그러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3.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제2항가호에 따라
공표되는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¹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가. 제안된 규정을 공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나. 그 공표에 제안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4.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채택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¹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상, **규정**이란 한국의 경우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관보에 그 규정을 공표하고 추가적인 경로를 통한 배포를 장려한다. 그리고,

나. 그 공표에 그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제16.2조

통보 및 정보의 제공

1. 최대한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협정상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익에 달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현행 또는 제안된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그 요청 당사국이 이전에 그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현행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3. 이 조에 따라 규정된 모든 통보 또는 정보는 그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4. 이 조에 언급된 정보는 그 정보가 세계무역기구로 적절한 통보가 이루어져 이용 가능하게 되었거나, 무료로 대중이 접근 가능한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6.3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16.1조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보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그러한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 및 진행은 자국 법에 따를 것

제16.4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사를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 재심사를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결정이 그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당사국은 상기 언급된 이행 및 규율을 보장하기 전에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다.

제16.5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판정 또는 해석의 일반적인 범위에 해당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제 17 장 기술 협력

제 17.1 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특히 다음을 목표로, 이 협정의 이행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긴밀한 기술 협력의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다.

- 가. 생산적 상승효과를 제고하는 것, 무역 및 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경쟁력 및 혁신을 증진하는 것
- 나. 부속서 17-가에 상세히 설명된 중소기업 및 벤처 스타트업의 개발 지원¹ 및 증진
- 다.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무역과 투자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더 호의적인 기업 환경의 조성, 그리고
- 라. 자국의 정책과 개발전략에 규정된 우선순위를 이행하도록 양 당사국의 노력을 보완하는 것을 지원

제 17.2 조 방법 및 수단

1.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 간 협력은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도구, 자원 및 메커니즘을 통하여, 각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이행될 것이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지원”은 반드시 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수단을 통하여 적절한 경우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할 것이다.

가.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나. 과학자, 연구원 및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와 같은 전문가 및 기술자의 교류

다. 기술 관련 정책, 법, 규칙, 표준, 인증,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교환

라. 세미나, 심포지엄, 회의, 교육 훈련 및 그 밖의 기술 관련 활동의 공동 주최

마. 협력 활동의 결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화

바. 그들의 기술 이전 기관 간의 공동 활동,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협력 활동

제 17.3 조

협력 분야

1. 기술 및 스타트업 협력은 다음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분야를 포함할 것이다.

가. 항공우주

나. 의약품

다. 정보보안

라. 사이버보안

마. 가상현실

바. 빅데이터

사. 재생가능에너지

아.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

자. 농업과 식량

차. 인공지능, 그리고

카. 보건의료(제약품, 의료 기기 및 화장품을 포함한다)

2. 잠재적으로, 기술의 범위는 기초 연구, 시제품, 실제 적용, 상업화 등의 단계를 포함하여 기술 성숙도의 전 과정에 걸쳐 확장된다.

제 17.4 조

협력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을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위원회의 기능은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가. 협력 활동을 위한 작업 계획을 개발하는 것

나. 이 협정 내에 구성된 각 위원회가 개발한 협력 작업 계획을 수집하고
통합하는 것

다. 협력을 위한 제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라. 협력 프로그램, 협력 사업 및 그 밖의 협력 계획을 점검하는 것

마. 협력 프로그램, 협력 사업 및 그 밖의 협력 계획의 목적을 이행하고 달성할 것을 보장하고 점검하는 것

바. 양 당사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 프로그램, 협력 사업 및 그 밖의 협력 계획 제시를 위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사. 공동위원회가 부여한 그 밖의 기능

3. 위원회는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연 1 회 회합한다.

4.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제 17.5 조

접촉선

1. 양 당사국은 가능한 협력 활동에 관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접촉선은 이 장의 운영을 위하여 각자의 정부 부처 및 기관, 비즈니스 분야 대표 그리고 교육 및 연구기관과 함께 작업할 의무를 가질 것이다.

2.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접촉선이 지정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이스라엘의 경우, 경제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

또는 양 당사국이 통보하는 부서

제 17.6 조
분쟁 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부속서 17-가
벤처 스타트업 협력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통하여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

나. 다음과 같이 양 당사국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 간 모범 사례 교환

1) 한국의 경우,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2)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 혁신청, 이스라엘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및 합작투자
기금과 같은 수단으로 양 당사국의 스타트업 간 합작투자의 창출 지원

라. 회계, 과세 및 인적자본과 같은 분야에서 특히 양국의 법과 규정을 통하여
새로운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지사 설립을 위하여 지원 시스템 마련

마. 포럼, 세미나, 회의, 박람회와 공동혁신 및 기술의 날, 데모데이 및 스타트업
밋업과 같은 그 밖의 스타트업 관련 행사의 공동 주최,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협력 활동

협력위원회는 이 부속서에 따른 모든 활동을 조정한다.

제18장 경쟁

제18.1조 목적

양 당사국의 무역 관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의 금지, 경쟁 정책의 이행 그리고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인정한다.

제18.2조 경쟁법과 경쟁당국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경쟁적 관행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에 대한 모든 제외 또는 면제가 투명하고 공공정책이나 공익에 근거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경쟁법과 규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에 의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18.3조 이행

양 당사국 경쟁당국의 집행 정책은 아래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명성, 적시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을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위반을 판정하는 모든 최종 결정이 서면으로 제공되며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모든 관련 사실 조사 결과와 법적 근거를 기술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경쟁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적시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각국의 경쟁법, 규정, 지침 또는 절차상 조사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경우, 자국의 경쟁당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사를 종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을 국적에 기초하여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집행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하여 인 또는 실체에 제재 또는 시정조치가 부과되기 전에, 그러한 인 또는 실체에 자국의 경쟁법 또는 규정이 위반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서면 이유와 진술 및 증거 제출의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시정조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 또는 실체가 그 당사국의 법원에서 그러한 제재 또는 시정조치의 독립적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8.4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증진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통보, 협의, 정보교환 및 조정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각국의 경쟁법 및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협력한다.

통보

2.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에 관련된 집행 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집행 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영어로 통보한다.
3. 양 당사국의 법에 반하지 않고 진행 중인 다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통보는 집행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협의

4.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5.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정보교환 및 비밀유지

6.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국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는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각 당사국의 비밀유지 규칙과 기준에 합치해야 한다.
7. 각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한 경쟁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실체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18.5조

공기업과 지정독점

1. 양 당사국은 공기업과 지정독점이 그들 각각의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은 공기업과 지정독점에 부여된 특정 공공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 또는 지정독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8.6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18.7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반경쟁적 관행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경쟁의 방해, 제한 또는 왜곡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효과를 유발하는 기업 간 합의 및 기업 단체의 결정

나.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또는

다. 특히 지배적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기업의 합병 또는 그 밖의 구조적 결합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 독점금지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나. 이스라엘의 경우, 「제한적 거래 관행법」(5748-1988)

제19장 협정의 운영

제19.1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관련 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스라엘의 경제산업부장관 또는 그들 각자의 승계인이나 그들이 각자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다. 금융서비스와 같이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로 협정을 더욱 확장하는 가능성과 함께 이 협정의 검토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제 20 장(분쟁해결) 및 제 9 장(투자)과 제 15 장(무역과 환경)의 분쟁해결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마. 패널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채택할 것을 양 당사국에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 22.2 조(개정)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라. 제 20 장(분쟁해결) 및 제 9 장(투자)과 제 15 장(무역과 환경)의 분쟁해결 규정에 따라 설치된 패널 또는 재판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이 협정의 규정에 관한 해석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마.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바. 공동위원회 결정으로 다음을 수정할 수 있다.

1) 관세 인하를 가속화하거나 관세를 철폐할 목적으로, 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

2)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다(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원산지 증명서, 부속서 3-라(원산지 신고서)에 포함된 원산지 신고서, 부속서 3-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제 10.10 조의 면제, 또는

3) 부속서 20-나에 규정된 절차 규칙 및 부속서 20-가에 규정된 행동 규범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한 내에 자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호에 언급된 모든 수정을 이행한다. 그리고

사.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이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또는 이용 가능한 그 밖의 모든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으로부터 30 일 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3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투명성 및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관련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국의 관행을 확인한다.

7.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로 정한다.

제19.2조

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

1. 공동위원회의 산하에 다음의 위원회와 기구가 설치된다.

가. 상품무역위원회

나. 서비스무역위원회

다. 기업인의 일시 입국 작업반

라. 투자위원회

마. 관세위원회

바.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자. 지식재산권위원회

차. 환경과 무역 위원회, 그리고

카. 협력위원회

2.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3조

자유무역협정 조정자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60일 내에 자유무역협정 조정자를 임명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조정자의 세부정보를 통보한다.

2. 조정자는 공동으로

가. 의제를 발굴한다.

나. 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한 그 밖의 준비를 한다.

다.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한다.

라.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제출되는 통보와 정보를 접수한다. 그리고

바.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그들에게 회부된 그 밖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공동위원회를 지원한다.

3. 이 협정의 조정자는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필요시 회합할 수 있다.

제 20 장 분쟁해결

제 20.1 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0.2 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 2 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3 장(원산지 규정), 제 8 장(정부조달) 또는 제 10 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상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2. 당사국은 제 21.1 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제 1 항다호를 원용할 수 없다.

제 20.3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 1 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 20.4 조

협의

1. 어떠한 당사국도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 20.2 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의 접수일부터 10 일 내에 서면으로 응답한다.
2.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30 일 내에 개최되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양 당사국이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55 일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의하는 동안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된다.
3.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한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15 일 내에 개최되고, 요청의 접수일부터 25 일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각각 규정된 기한 내에 협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가 종결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 20.7 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 동안에 자국에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충분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한쪽 당사국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규제 기관의 직원을 이 조에 따른 협의 동안 활용 가능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7. 협의는 비밀로 하며, 이 장에 따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 20.5 조

공동위원회 회부

1. 양 당사국이 제 20.4 조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일부터 55 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이나 계절 상품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한 긴급 사안의 경우 25 일 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만이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서를 전달하며, 그 요청서에는 문제가 되는 조치의 적시와 제소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의 표시를 포함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요청서의 전달로부터 10 일 내에 회합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공동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그 밖의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제 20.6 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3.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어느 쪽 당사국에 의하여도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절차를 언제든지 개시,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위한 절차가 양 당사국 간 합의 없이 종결되면, 제소 당사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0.7 조

패널의 설치

1. 사안이 다음 경우 중 어느 경우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제소 당사국은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하는 서면요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이 제 20.4 조에 규정된 55 일 기간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한 긴급 사안의 경우 25 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협의 동안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경우

나. 공동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토록 하는 요청의 접수 후 20 일 내, 또는 긴급한 경우 10 일 내,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회의가 제 20.5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지 않은 경우, 또는

다.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한 제소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만료하면, 제 20.5 조에 따라 이루어진 협의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포함된 요청의 사유를 명시한다.

3. 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에 설치된다.

제 20.8 조

패널 임명

1. 패널은 3 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2. 제 20.7 조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일부터 30 일 내에,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패널위원의 임명을 통보하고, 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후보자를 4 명까지 제안한다. 한쪽 당사국이 이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당사국이 제안한 의장 후보자 명부가 있다면 제안된 의장 후보자 중에서, 또는 그러한 명부가 없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한 후보자 중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다.

3. 양 당사국은 제 20.7 조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일부터 45 일 내에 제안된 후보자 중에서 의장 역할을 할 패널위원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이 기간 내에 의장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추가 7 일 내에, 양 당사국의 대표 참석 하에, 제안된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 후 임명된다.

4.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0 일 내에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15 일 내에 그 당사국에 의하여 대체자가 임명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대체자는 제 2 항의 두 번째 문장에 따라 의장으로 제안된 후보자 중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다.

5. 패널의 의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30 일 내에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15 일 내에 대체자의 임명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대체자는 제 3 항의 두 번째 문장에 따라 임명된다.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의 임명이 의장으로 제안된 후보자 명부로부터의 선정을 요구하고, 남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각 당사국은 30 일 내에 추가 후보자를 3 명까지 제안하고, 의장은 추가 7 일 내에 양 당사국의 대표 참석 하에 제안된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 후 임명된다.

7.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한은 패널위원 또는 의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날에 정지되고 대체자가 임명되는 날에 재개된다.

제 20.9 조

패널위원의 자격요건

1. 제 20.8 조(패널 임명)에 따라 패널에 임명된 개인은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나.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다. 양 당사국과 외교 관계를 가진 국가의 국민이다.

라.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제 20.6 조에 언급된 대체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

마.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바. 부속서 20-가에 규정된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2. 패널위원의 해임은 행동 규범(부속서 가)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절차 규칙(부속서 나)의 규칙 제 20 항에 상세히 설명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20.10 조

절차 규칙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부속서 20-나에 규정된 절차 규칙을 따르며, 이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패널에서 최소 1 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라호를 조건으로, 패널에서의 모든 심리가 대중에 공개될 것

다.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라.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비공개로 취급하도록 지정된 정보의 보호

2. 패널 설치의 요청 전달부터 20 일 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 20.11 조제 1 항 및 제 20.11 조제 2 항에 규정된 대로 조사, 판정 및 권고를 하며, 제 20.11 조제 1 항 및 제 20.11 조제 4 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3. 보고서의 채택을 포함하여 패널의 결정은 그 구성원들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어떠한 패널도 어느 패널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의 의견에 참여하였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

4. 패널 절차의 장소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양 당사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소는 제소 당사국이 한국인 경우 예루살렘 그리고 제소 당사국이 이스라엘인 경우 서울로 한다.

제 20.11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후 90 일 내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판정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1)문제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는지 여부

2)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는지 여부, 또는

3)문제 되는 조치가 제 20.2 조제 1 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나. 패널이 다루도록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권고를 포함하는 그 밖의 모든 사안 및 그 조사결과와 판정에 대한 사유

2. 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패널은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3.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 일 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30 일 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 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5.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패널 보고서는 사실의 조사결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패널이 한 조사결과 및 판정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한다.

제 20.12 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양 당사국은 패널이 그러한 합의일부터 12 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패널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지된 패널은 재개된다. 패널의 업무가 12 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정지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다.

2. 패널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는 이 장에 따른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다른 절차에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상호 만족할 만한 분쟁의 해결에 이른 경우, 양 당사국은 패널 절차를 종료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양 당사국은 공동으로 패널의 의장에게 통보한다.

4.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패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양 당사국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제 20.13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의 이행을 결정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행은 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와 합치한다.
2. 패널이 최종 보고서에서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거나 당사국의 조치가 제 20.2 조제 1 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이행한다.

제 20.14 조

불이행 및 혜택의 정지

1. 패널이 제 20.13 조제 2 항에 기술된 유형의 판정을 내렸고,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 접수로부터 30 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제 20.13 조제 1 항에 따른 이행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교섭을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가. 그러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 일 내에 보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나. 보상 또는 제 20.13 조제 1 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협정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제소 당사국은, 각 경우에 맞게,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 날 또는 패널이 제 5 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에서 나중에 도래하는 날 후 15 일째 되는 날에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제 2 항에 따라 어떤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제 20.2 조제 1 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분야나 분야들과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제소 당사국은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4.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한다고 판정되거나 제 20.2 조제 1 항다호상의 혜택을 달리 무효화하거나 침해한다고 판정된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될 때까지, 또는 양 당사국이 그 분쟁의 해결에 달리 합의한 그러한 때까지 한정하여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5.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제 2 항에 따라 통보를 한 후 30 일 내에, 원심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그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가호 또는 나호 중 하나에 따른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한 후 90 일 내에, 또는 가호 및 나호 모두에 따른 요청에 대해서는 120 일 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정지하겠다고 제안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혜택의 수준을 판정한다.

6.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지 않는 한, 제소 당사국은 제 5 항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수준, 또는 패널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 2 항에 따라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수준까지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제 20.15 조

이행 검토

1. 제 20.14 조제 5 항에 규정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피소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60 일 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 20.14 조에 따라 정지하였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한다.

제 20.16 조

기한

이 장에 언급된 어떠한 기한도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단축, 면제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제 20.17 조

경비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비용, 패널위원 및 그들의 보조인의 보수, 교통비 및 숙박비, 그리고 모든 일반 비용은 부속서 20-나(절차 규칙)에 따라 양 당사국 간에 동등하게 부담한다.

부속서 20-가

행동 규범

절차에 대한 책임

1. 모든 패널위원은 분쟁해결절차의 완전무결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공개 의무

2. 이 협정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 자신의 선정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사용되는 서식에 기초하게 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3. 일단 임명되면, 패널위원은 제 2 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이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패널위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4. 후보자 또는 패널위원이 패널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임명될 자격, 또는 전문가나 보조인이 패널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양 당사국이 박탈할지 여부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 양 당사국이 이를 박탈할지는 이 행동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 공개로 인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패널위원의 임무 수행

5. 패널위원은 이 장의 규정 및 적용 가능한 절차 규칙을 준수한다.
6. 선정되는 경우, 패널위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7. 패널위원은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사안들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않는다.
8.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보조인, 직원 및 전문가가 이 부속서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않는다.
10. 패널위원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을, 양 당사국 모두에게 전달하거나 해당 패널위원이 이 부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달하지 않는다.

패널위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11.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다. 패널위원은 공평한 태도로 행동하고,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2. 패널위원은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13.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14. 패널위원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5. 패널위원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자신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16. 패널위원은 자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특정 상황에서의 임무

17.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그 패널위원이 패널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비밀의 유지

18. 패널위원이나 전임 패널위원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19. 패널위원이나 전임 패널위원은 공표에 앞서 패널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20. 패널위원이나 전임 패널위원은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중개인

21. 이 행동 규범에 기술된 규정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중개인과 조정자에 적용된다.

정의

22. 이 부속서의 목적상,

보조인이란 패널위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패널위원에게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전문가란 패널이 부속서 20-나의 절차 규칙의 규칙 제 30 항(전문가의 역할)에 따라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하는 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 20.7 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직원이란 보조인을 제외하고 패널 또는 패널위원의 지시와 통제 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부속서 20-나

절차 규칙

적용

1. 다음의 절차 규칙은 제 20.8 조에 따라 수립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2. 이 절차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항에 대한 언급은 이 장에 있는 적절한 조항에 대한 언급이다.

절차의 운영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절차가 열리는 영역의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준비를 담당한다.

패널의 구성

4. 패널위원의 임명일은 후보자가 양 당사국에 수락서를 제출한 날짜로 간주된다. 후보자가 선정을 통보 받은 후 2일 내에 양 당사국에 수락을 알리지 못한 경우, 그러한 후보자는 임명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문서

5. 각 당사국은 서면입장의 원본 및 4 부 이상의 사본을 패널에, 그리고 사본 1 부를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에 전달한다. 패널 절차와 관련된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모든 문서의 전달은, 양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팩스 또는 그 밖의 전자 전송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당사국이 패널 절차와 관련된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모든 문서의 실제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전자적 형태를 동시에 전달한다.

6. 마감시한은 그러한 서면입장 또는 문서의 접수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제소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 후 10 일 내에 피소 당사국에 완전한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이어서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의 접수일 후 30 일 내에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7.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양 당사국의 후속 반박 서면입장 및 패널과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서면입장의 전달일을 정한다.

8. 당사국은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를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

9. 문서 전달 마감일이 한쪽 당사국이 지정한 법정 공휴일이나 그 당사국의 관공서가 정부의 명령 또는 불가항력으로 폐쇄된 그 밖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입증 책임

10.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거나, 당사국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은 조치의 결과로서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당사국은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11.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의 적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패널의 운영

12. 패널 의장은 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절차에 관한 행정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패널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그 설치로부터 7 일 내에 행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을 접촉한다.

13.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및 비디오 또는 컴퓨터 연결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포함하는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4.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절차에 요구될 수 있는 수만큼의 보조인, 통역사나 번역사, 또는 법정 서기를 고용할 수 있고 그들이 그러한 심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5. 이 규칙에서 다루지 않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이 협정과 합치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6. 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기간은 패널 구성원이 활동할 수 없게 되는 날부터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17. 패널은 양 당사국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패널 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을 수정하고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할 수 있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비추어, 패널 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기간을 수정하고 절차의 공정성이나 효율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할 수 있다.

패널위원의 해임

18. 한쪽 당사국이 패널위원 또는 의장이 행동 규범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즉시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경우, 패널위원 또는 의장을 교체하고 대체자를 선정한다.

19. 양 당사국이 패널위원을 교체할 필요성에 대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그 사안이 패널 의장에게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의장은 요청으로부터 10 일 내에 결정을 내린다.

20. 패널위원이 의장 교체 필요성에 대한 요청으로부터 10 일 내에 결정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 20.8 조제 2 항에 따라 의장으로 활동하도록 임명된 나머지 개인 후보자 중 한 명에게 그러한 사안이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후보자의 이름은 의장 또는 의장의 대리인에 의하여 추첨으로 정한다. 의장을 교체할 필요성에 대한 이 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심리

21.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및 패널위원과 협의하여 최초 심리 일시 및 후속 심리 일시를 정하고, 심리 15 일 전까지 그러한 일시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2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23. 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24. 모든 패널위원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25. 각 당사국은 심리일의 5 일 전까지, 그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 출석할 인과 심리에 참석할 그 밖의 대표자 또는 자문인의 명부를 다른 쪽 당사국과 패널에 전달한다.

26. 각 심리는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 주장, 항변 및 재항변을 위한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패널에 의하여 수행된다.

27.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심리는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이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비공개로 개최된다. 패널은 심리가 대중의

참석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28. 패널은 심리 속기록이 있을 경우, 그 속기록이 준비되도록 주선하고, 그러한 속기록이 준비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사본을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전문가의 역할

29. 패널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제 31 항 및 제 32 항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추가 조건에 따라,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20.9 조(패널위원의 자격요건)에 규정된 요건은 적절한 경우 전문가 또는 기관에 적용된다.

30. 패널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한다.

가. 제 30 항에 따라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려는 의사와 그 이유를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또한, 패널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할 전문가를 확인한다. 패널은 양 당사국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에 제 30 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의 사본을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

31. 패널은 자신의 보고서 준비를 위하여 제 30 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과 관련하여 분쟁 당사국들이 제출한 의견이나 견해를 또한 고려한다.

서면 질문

32. 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패널이 제기한 모든 질문의 사본을 받는다.

33. 각 당사국은 패널 질문에 대한 자국의 서면 답변서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또한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전달일부터 5 일 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

일방적 접촉

34.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지 않고 패널과 의사소통할 수 없다.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이 부재한 상황에서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지 않고 한쪽 당사국과 의사소통하지 않는다.

35. 어떠한 패널위원도 다른 패널위원의 참석 없이 양 당사국과 패널 절차의 실질적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할 수 없다.

정보의 이용 가능성

36. 양 당사국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패널 심리, 심의 및 최초 보고서 그리고 패널에 대한 모든 서면입장 및 패널과의 의사소통의 비밀을 유지한다.

가.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을 언제든지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

나. 개인 사생활 또는 특정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적인 비밀유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에 포함되거나 패널 심리에서 제시한 특정 정보를 비밀유지 취급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나호에 따라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그리고

라. 각 당사국은 전문가, 통역사, 번역사, 법정 서기(지정된 기록원) 및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개인이 패널 절차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보수 및 비용의 지불

37.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비용, 패널위원 및 그들의 보조인의 보수, 교통비 및 숙박비 그리고 모든 일반 비용은 이 부속서에 따라 양 당사국 간에 동등하게 부담한다.

38. 각 패널위원은 본인과 보조인의 시간 및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하며, 패널은 모든 일반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한다.

언어

39.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영어로 수행된다.

40. 이 장에 따라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어떠한 원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그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기한

41. 패널이 판정을 제출하는 기한을 포함하여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달력상의 일로 계산되고, 첫째 날은 그 기한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이 된다.

정의

4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 자문하거나 그 당사국을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패널위원에 의한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패널위원에게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 20.7 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법정 서기란 지정된 기록원을 말한다.

전문가란 이 부속서(절차 규칙)의 규칙 제 30 항(전문가의 역할)에 따라 패널이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하는 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법정 공휴일이란 한국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스라엘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당사국이 공식 휴일로 지정한 그 밖의 모든 날을 말한다.

패널이란 제 20.7 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 20.7 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 20.7 조에 따라 패널 설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절차란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대표자란 당사국의 정부 부서 또는 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정부 실체의 피고용인을 말한다.

제21장

예외

제21.1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제7장(무역구제)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10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 제11장(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2장(통신) 및 제13장(전자상거래)¹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주석을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3. 제9장(투자)의 목적상,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고,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환경 조치를 포함하는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¹ 제21.1조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다.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라.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마.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만,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 중 하나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4. 이 협정은 제1.7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1.2조

필수적 안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당사국이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또는 국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이 수용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

제21.3조

과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나.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 2.2 조(내국민 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 년도 GATT 제 3 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리고

나. 제 2.12 조(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2항을 조건으로

가. 제 10.2 조(내국민 대우)는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제 9.3 조(내국민 대우), 제 9.4 조(최혜국 대우), 제 10.2 조(내국민 대우) 및 제 10.3 조(최혜국 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나 상속, 유산취득, 증여, 그리고 세대를 건너뛴 이전에 대한 세금 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가호 및 나호에서 언급된 조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의무

라.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

마.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바.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위의 어떠한 조들에 대해서도 그 개정 시점에서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사. (GATS 제14조라호에서 허용된 대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 또는

아.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 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

5. 제2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제9.9조(이행요건)의 제2항 및 제5항은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6. 가. 제9.19조(중재 청구 제기)는 수용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나. 제9.7조(수용 및 보상)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호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9.7조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9.7조를 원용하려는 투자자는, 제9.19조(중재 청구 제기)에 따라 의사 통보를 할 때,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권한 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해야 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거나,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로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9.19조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이 항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리고

2) 이스라엘의 경우, 재무부 수석경제학자

7. 이 조의 목적상, “세금” 및 “과세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 1.7 조(정의)에 정의된 관세, 또는

나. 그 정의에 대한 예외 나호, 다호 및 라호에 기재된 조치

제21.4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법에 반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한 개인과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2장 최종규정

제22.1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2.2조 개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2.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그들의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에게 통보하는 나중의 외교 공한일 후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날에 발효한다.
3.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2.3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제22.2조에 따라 적절하게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2.4조 추가 당사국

양 당사국은 국가 또는 국가집단이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되도록 권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참여의 조건은 각 당사국과 추가 국가 또는 국가집단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른 승인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과 권유 받은 국가 또는 국가집단 간에 합의된다.

제22.5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그들 각자의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로에게 통보하는 나중의 외교 공한일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외교 공한의 교환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외교 공한에 의하여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한 그러한 통보의 접수일 후 18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30일 내에,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서 규정된 날 후 종료되어야 할 이 협정의 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당사국이 자신의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내에 개시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5월 12일, 히브리력으로는 5781년 Sivan월 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9.12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4조(시장접근)

라. 제10.5조(현지주재)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 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9.12조제1항가호 및 제10.6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조치**¹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9.12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그 조치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라.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들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않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9.12조제1항가호 및 제10.6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9.12조제1항다호 및 제10.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5.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7. 이 부속서에 포함된 유보목록은 이 협정의 발효 당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서비스의 공급 및 유엔 잠정 중앙품목분류에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분류된 것 외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1조제3항에 따라, 제10.4조(시장접근)에 대한 비합치 조치 유보항목은, 유보내용 요소의 표제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자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2조(내국민 대우)와 제10.5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10.5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10.2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1. 분야 건설 서비스

관 련 의 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6415호, 2019. 4. 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국토교통부령 제627호, 2019. 6.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법률 제16020호, 2018. 12.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5366호, 2018. 2. 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총리령 제1247호, 2016. 1. 27.)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한국에서 건설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2. 분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대여·정비·수리·판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 의무 현지주재 (제10.5조)

조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16134호, 2018. 12. 3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대통령령 제30085호, 2019. 9. 1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국토교통부령 제659호, 2019. 10. 1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대여·정비·수리·판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3. 분야 운송 서비스 - 자동차 정비 · 수리 · 판매 · 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발급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국토교통부령 제647호, 2019. 8. 20.)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국토교통부령 제621호,
2019. 4. 23.)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자동차관리 서비스(중고차판매 · 정비 · 수리 및 폐기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하고, 각 경우에 맞게 시장 · 군
수 · 구청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수리시설”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 · 교부 및 봉인 서비
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4. 분야 유통 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대통령령 제29015호, 2018. 7. 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700호, 2018. 12. 7.)

주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법률 제16125호, 2018. 12. 31.)

주세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9531호, 2019. 2. 12.)

국세청고시 제2018-20호(2018. 6. 29.) 및 제2019-11호(2019. 4. 1.)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가 되어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5. 분야 농축산업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6479호, 2019. 8.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0170호, 2019. 10. 29.)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2018. 7. 6.)

유보 내용 투자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또는 2)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

6. 분야 사업 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15268호, 2017. 12.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
설한 인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7. 분야 도·소매 유통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약사법 제42조 및 제45조(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약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통령령 제30170호, 2019. 10. 29.)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대통령령 제24479호, 2013. 3. 23.)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2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10호, 2015. 12. 9.)

 의료기기법 제15조(법률 제16402호, 2019. 4. 2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총리령 제1567호, 2019. 10. 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6295호, 2019. 1.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총리령 제1560호, 2019. 7. 31.)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6431호, 2019. 4. 30.)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대통령령 제29973호, 2019. 7. 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총리령 제1543호, 2019. 6.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법률 제16434호, 2019. 4. 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대통령령 제30157호, 2019. 10. 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총리령 제1561호, 2019. 9.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법률 제16401호, 2019. 4.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9763호, 2019. 5.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총리령 제1546호, 2019. 6. 1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5942호, 2018. 12. 1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총리령 제1547호, 2019. 6.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법률 제15939호, 2018. 12. 11.)

화장품법 제3조(법률 제15947호, 2018. 12. 11.)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총리령 제1566호, 2019. 10. 15.)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

허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건강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를 포함한다)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다. 식품검사 서비스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 서비스, 또는

마. 화장품(기능성化妆품을 포함한다) 공급 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계당국의 허가가 요구된다.

8. 분야 의약품 소매유통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약사법 제20조 및 제21조(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대통령령 제30170호, 2019. 10. 2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의약품 소매유통 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해야 한다.

그 인은 1개의 약국만 설치하고, 회사의 형태로 약국을 설립하지 않는다.

9. 분야 운송 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철도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12조(법률 제13688호, 2015. 12. 29.)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법률 제13692호, 2015. 12. 29.)

철도건설법 제8조(법률 제13490호, 2015. 8. 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38조(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법률 제12995호, 2015. 1. 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주식의 100퍼센트를 소유한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또는 그 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또는 그 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를 포함한다)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10.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법률 제13485호, 2015.8.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7109호, 2016. 4.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국토교통부령 제304호, 2016. 4. 21.)

궤도운송법 제4조(법률 제13476호, 2015. 8. 11.)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1. 분야 운송 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보조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해운법 제24조 및 제33조(법률 제14748호, 2017. 3. 21.)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및 제22조(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 1. 2.)

도선법 제6조(법률 제13265호, 2015. 3. 2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및 제31조(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국제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주식회사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 또한 한국에 주식회사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해운중개 서비스, 해상대리 서비스, 선박유지 서비스 및 선박관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명시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된 회사이어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12. 분야 운송 서비스 - 항공운송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32조 및 제135조(법
률 제14114호, 2016. 3. 29.)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78조, 제278조의3, 제296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 5. 11.)

유보내용 투자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국내항공운송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 언급된 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
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
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
립된 기업

항공기를 소유한 인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인
은 해당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가호부터 마호까지 열
거된 인에게는 항공기의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13. 분야 운송 서비스 – 항공기사용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및 제134조(법률 제14114호, 2016. 3. 29.)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2(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 5. 11.)

유 보 내 용 투자

 항공기사용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 언급된 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 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사용 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

이며, 항공화재진압, 산림화재관리, 항공광고, 비행훈련, 항공지도제작, 항공조사, 항공살포, 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활동, 항공순찰,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 및 관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4.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5781호, 2018. 9.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국토교통부령 제653호, 2019. 10. 1.)

 도로교통법 제36조(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29720호, 2019. 4. 30.)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버스터미널 운영 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며, 각 경우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및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분 야 쿠파어 서비스

관 련 의 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항공법 제139조(법률 제14114호, 2016.3.29.)

항공법 시행규칙 제306조(건설교통부령 제532호, 2006.8.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법률 제13812호, 2016.
1.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4조 및 제41조의2(국토교통부
령 제630호, 2019. 6. 28.)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 서비스를 포함
한 국제 쿠파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
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국내 쿠파
어 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경
제적 수요심사의 적용 대상이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 쿠파어 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인은 피
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16.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및 제87조(법률 제13823호, 2016. 1. 27.)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 8. 28.) 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유보 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부여된다. 기간공중통신서비스 허가는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를 합하여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그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않는다.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모두를 합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KT의 경우,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 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경 간 공중통신 서비스를 한국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 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공중 통신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법률 제14113호, 2016.3.29.)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이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법률 제14113호, 2016.3.29.)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않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이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법률 제13586호, 2015. 12. 22.)의 규정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분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 의무 현지구재(제10.5조)

조치 공인중개사법 제9조(법률 제15724호, 2018. 8. 1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국토교통부령 제570호, 2018. 12. 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법률 제12018호, 2013. 8.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국토교통부령 제303호, 2016. 4. 2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부동산중개 서비스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8. 분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 리스, 임대 및 수리 서비스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7조(총리령 제1567호, 2019. 10. 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 리스, 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9. 분야 대여 서비스 - 자동차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법률 제15781호, 2018. 9.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4조(국토
교통부령 제653호, 2019. 10.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0. 분야 과학조사 서비스 및 해도 제작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법률 제14605호, 2017. 3. 2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15429호, 2018. 3. 1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한국 국민 또는 한국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사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않거나 지배하지 않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21.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21조의2,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6 및 제58조의22(법률 제15974호, 2018. 12. 18.)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법률 제15151호, 2017. 12. 12.)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그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공증인은 그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2.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노무자문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
(법률 제15847호, 2018. 10. 16.)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의2(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의2(고용노동부령 제185호,
2017. 4. 1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만이 노무자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노무자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자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한국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3.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변리사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변리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인은 이러한 형태의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

24. 분야 전문직 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7조, 제12조 및 제23조(법률 제16181호, 2018. 12. 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15514호, 2018. 3. 2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감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5.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세무사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법률 제16103호, 2018. 12. 31.)

법인세법 제60조(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소득세법 제70조(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및 제22조(국세청훈령 제2307호, 2019. 7.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 서비스 및 세무대리 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6. 분야 전문직 서비스 - 통관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8, 제17조의13, 제19조 및 제25조(법률 제16094호, 2018. 12. 3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업에 종사하도록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통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7. 분야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 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52조의4(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136조의8(고용노동부령 제250호, 2019. 4. 19.)
유보 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u>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8. 분야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건축사법 제23조(법률 제16415호, 2019. 4. 30.) 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대통령령 제30075호, 2019. 9. 10.)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3조(국토교통부령 제388호, 2017. 1.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법률 제13852호, 2016. 1. 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기술사법 제6조(법률 제15240호, 2017. 12. 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법률 제15733호, 2018. 8. 1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법률 제16414호, 2019. 4.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대통령령 제29918호, 2019. 6. 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국토교통부령 제632호, 2019. 7.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온천법 제7조(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법률 제15366호, 2018. 2. 9.)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 건축 서비스, 또는 조사 및 지도 제작 서비스(지적측량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한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분야 사업 서비스 - 전광판방송 서비스 및 옥외광고 서비스

관련 의무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방송법 제13조 및 제73조(법률 제16014호, 2018. 12.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4조(대통령령 제29895호, 2019. 6. 2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외국 국민 또는 외국 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전광판방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0. 분야	사업 서비스 - 직업알선 서비스, 인력 공급 및 근로자파견 서비스 및 선원교육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33조(법률 제16413호, 2019. 4. 30.)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3조(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및 제36조(고용노동부령 제263호, 2019. 10. 1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4790호, 2017. 4. 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대통령령 제30177호, 2019. 10. 2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고용노동부령 제234호, 2018. 12. 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선원법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42조 및 143조(법률 제14508호, 2016. 12. 27.)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법률 제13272호, 2015. 3. 27.)
유보 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유료직업소개 서비스, 근로자공급 서비스 또는 근로자파견 서비스(임시 파견)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19년 2월 28일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32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대상 사업 유형을 확대하고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관리사업자 및 「선원법」에 따라 규제되는 해상업무 및 어업 관련 조직이나 기관만이 선원인력공급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명시된 회사여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31. 분야 경비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법률 제16316호, 2019. 4. 16.)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29611호, 2019. 3. 12.)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안전부령 제112호, 2019. 4. 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의 5가지 유형의 경비 서비스만이 허용된다.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변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32. 분야 간행물 관련 유통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3(법률 제16065호,
2018. 12.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국내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은 필요 시 심의의 대상이 된다.

33. 분야	운송 서비스 - 항공기 정비 및 수리 서비스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항공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법률 제13810호, 2016. 1. 19.)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04조 및 제305조(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 5. 1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u> 항공기 정비 및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²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사무소 개설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의 한국 항공기에 대하여 유지 및 정비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요구되지 않는다.

34. 분야 교육 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법률 제16330호, 2019. 4. 2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30131호, 2019. 10. 22.)

사립학교법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법률 제16310호, 2019. 4. 16.)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30108호, 2019. 10. 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1조 및 제2조(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사립 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출연한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만이 외국 국민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고등교육기관의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부속서 II의 한국 유보목록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의학·약학·수의학·한의학·의료기사 분야 및 유아·초등·중등 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그리고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중앙정부만이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35. 분야 교육 서비스 -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법률 제16413호, 2019. 4. 3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고용노동부령 제252호, 2019. 4. 23.)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6. 분야	수의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수의사법 제4조, 제17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법률 제16546호, 2019. 8.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 및 제37조의12(법률 제16209호, 2019. 1. 8.) 민법 제32조(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유보 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u> 동물진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사무소를 한국 내에 설치하고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인만이 수의 또는 수생 동물 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산생물진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사무소를 한국 내에 설치하고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소지한 인만이 수산생물 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7. 분야 환경 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관리 서비스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물환경보전법 제62조(법률 제15832호, 2018.10.16)

폐기물관리법 제25조(법률 제16318호, 2019. 4. 1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30173호, 2019. 10. 29.)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법률 제16266호, 2019. 1. 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5845호, 2018. 10. 16.)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법률 제15662호, 2018. 6. 1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법률 제15102호, 2017. 11. 28.)

지하수법 제29조의2(법률 제15624호, 2018. 6. 8.)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법률 제16084호, 2018. 12. 24.)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38. 분야 공연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공연법 제6조 및 제7조(법률 제16048호, 2018. 12. 24.)

공연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법무부령 제952호, 2019. 6. 1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한국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초청하여 한국 내에서 공연하도록 하려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9.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16조 및 제28조(법률 제16052호, 2018. 12. 2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대통령령 제30059호, 2019. 8. 27.)

전파법 제20조(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 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나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나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지국의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40.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 의무 이행요건(제9.9조)

조치 약사법 제42조(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총리령 제1544호, 2019. 6. 12.)

유보내용 투자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달해야 한다.

41. 분야 정기 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9조(법률 제15822호, 2018. 10. 1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대통령령 제30058호, 2019. 8. 2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장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나. 한국 국민이 아닌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다. 외국인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한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편집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한국 내에서 원어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

42. 분야 유통 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양곡관리법 제12조(법률 제14653호, 2017. 3. 21.)

축산법 제30조 및 제34조(법률 제16550호, 2019. 8. 27.)

종자산업법 제42조(법률 제14483호, 2016. 12. 27.)

사료관리법 제6조(법률 제16123호, 2018. 12. 31.)

인삼산업법 제20조(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6479호, 2019. 8.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0170호, 2019. 10. 29.)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2018. 7.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법률 제16118호, 2018. 12. 31.)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4조 및 제20조의2(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5호, 2018. 12. 2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10.4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 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

43. 분야	에너지 산업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³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6191호, 2018. 12.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대통령령 제30118호, 2019. 10.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6479호, 2019. 8.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0170호, 2019. 10. 29.)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2018. 7. 6.) 재정경제부고시(제2000-17호, 2000. 9. 28.) 증권업감독규정 제7조의6(금융위원회고시 제2008-16호, 2008. 7. 3.)
유보내용	<u>투자</u> 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퍼센트

³ 부속서 II의 한국 유보목록의 아홉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44.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⁴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6191호, 2018. 12. 31.)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2019. 7. 3.)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⁴ 부속서 II의 한국 유보목록의 아홉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45.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상영 서비스

관련 의무 이행요건(제9.9조)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16061호, 2018. 12.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부속서 I
이스라엘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이스라엘의 유보목록은 제9.12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자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4조(시장접근)

라. 제10.5조(현지주재)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언급된 경우, 유보된 특정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언급된 경우, 그리고 투명성 목적으로만, 국내 또는 국제 산업분류코드에 따른, 비합치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라. **관련의무**는 제9.12조(비합치 조치) 제1항가호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 제1항가호에 따라,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란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그 조치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비합치 조치를 규정하거나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 내용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되고, “조치”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4. 이 부속서의 목적상 “CPC”란 유엔 잠정 중앙품목분류 (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 경제사회국, 유엔 통계사무소, 뉴욕, 1991년)를 말한다.

5.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 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은 제10.5조(현지주재) 및 제10.2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기재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기재된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 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은 제10.4조(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으로도 고려된다.

7.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그 위원회 구성원이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으로만 기재된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1조제3항에 따라, 제10.4조(시장접근)에 대한 비합치 조치 유보항목은, 유보내용 요소의 표제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주재를 통한 자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이스라엘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1999년 회사법(제115조, 제118A조, 제239조 및 제240조)

유보내용: 투자

상장회사 또는 대중에게 채무증권을 발행한 회사(이하 “채권발행회사”라 한다)는 그 이사회에 최소 2명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장회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이스라엘 거주자이어야 한다.

모든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의 위원이고 각 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한다. 감사위원회에는 3명 이상의 위원을 두고 보수위원회에는 3명 이상의 위원을 둔다.

다만, 주식이나 채권, 또는 그 주식이나 채권의 일부를 이스라엘 국외에서 공모했거나 이스라엘 국외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상장회사 또는 채권발행회사는 이스라엘 거주자가 아닌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2. 분야: 모든 분야

관 련 의 무: 이행요건(제9.9조)

조치: 1980년 파산법령

1999년 회사법(제350조-제351조)

1983년 회사법령

유 보 내 용: 투자

투자자 또는 투자가 파산 선고 또는 지급불능 선고를 받고 채무재조정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스라엘은 그 절차에 필요한 한도에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3.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93년 유해물질에 관한 법률

2011년 석면위험 및 유해분진 방지에 관한 법률

2012년 전기·전자 장비 및 배터리의 환경적 처리에 관한 법률

1959년 물관리법

1994년 유해물질 규정(유해물질 수입 및 수출)

2016년 병해충 방제 관행의 규제를 위한 법률

2011년 포장재 처리에 관한 법률

1990년 사업면허규정(위험물질 폐기물 처리)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유해물질 취급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가 요구된다.

2. 전기·전자 장비 및 배터리의 환경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 기업은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만 고용한다.

3. 특정 유해물질은 환경서비스회사(Environmental Services Company)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

4. 석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가 요구된다.

5. 석면의 해체 및 제거를 수행하는 석면 계약업자의 직원 중 최소 1명은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다.

6. 2011년 「포장재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폐기물의 수출은 재활용 목표의 20퍼센트까지로 제한된다.

7. 유해물질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보호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4. 분야: 전자서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2001년 전자서명법 (제11조 및 제2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전자인증서의 해외 발행인” 등록은 2001년 「전자서명법」에 규정된 대로 추가 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전자인증서의 해외 발행인” 외 전자인증서 발행인 등록은 이스라엘 국민이나 거주자 또는 이스라엘에서 설립되어 이스라엘에 주 영업활동 및 사업 중심지를 두고 있는 기업임이 요구된다.

5.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조치: 1937년 어업 규정 (제2조 및 제3조)

유보내용: 투자

어업면허의 발행, 지속 및 변경을 위해서는 농업부의 승인이 요구된다.
이스라엘은 1937년 「어업 규정」에 따라 외국 국민 또는 기업에 대한
어업면허를 발행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사업 서비스

하 위 분 야: 법률 서비스

산 업 분 류: CPC 861

관 련 의 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조 치: 1961년 변호사협회법 (제20조, 제42조, 제98조-제98M조)

유 보 내 용: **투자**

1. 이스라엘법 법무활동을 위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자가 요구된다.

2. 외국변호사는 이스라엘에서 외국법 또는 국제법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스라엘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여야 한다.

7. 분야: 사업 서비스

하 위 분 야: 세무 서비스

산 업 분 류: CPC 863

관 련 의 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 치: 1961년 소득세법령 개정편(제236조)

 2005년 세무사법에 의한 대리예 관한 규정(제10조)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조세당국에 대한 기업의 세금신고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면허를 취득한 감사인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면허를 취득한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감사인이 될 수 있다. 세무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가 요구된다.

8. 분야: 사업 서비스

하 위 분 야: 수의료 서비스

산 업 분 류: CPC 932

관 련 의 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 치: 1991년 수의사법(제5조 및 제17조)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된다.

2. 이스라엘 거주자 또는 국민이 아닌 외국 수의사는 자문, 수업 및 연구를 위하여 농업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9. 분야: 사업 서비스

하 위 분 야: 타워 크레인 기사, 이동식 크레인 기사

관 련 의 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타워 크레인 기사 및 이동식 크레인 기사 인증의 갱신 또는 변경에 관한
 가이드라인(Nb 441679)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크레인 운전을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된다.

10. 분야: 사업 서비스

하 위 분 야: 조사 서비스

산 업 분 류: CPC 87301

관 련 의 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 치: 1972년 사설탐정 및 보안서비스법(제4조, 제9조-제11조 및 제13조)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된다. 면허를 소지한 탐정만이 탐정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탐정 및 보안회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설 탐정만 고용할 수 있다.

11. 분야: 사업 서비스

하 위 분 야: 소독 및 병해충 박멸 서비스

산 업 분 류: CPC 87401

관 련 의 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2016년 병해충 방제 관행의 규제를 위한 법률(제7조)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된다.

12. 분야: 사업 서비스

하 위 분 야: 소독 및 병해충 박멸 서비스를 제외한 건물청소 서비스

관 련 의 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 치: 1996년 사설 인력공급업자의 근로자 고용법

 1999년 회사법(제1조)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건물청소서비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설 인력공급업체는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 최소 1명을 직위보유자로 선임한다.

2. 면허 부여 여부는 현지 사무소의 존재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이다. 또한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13. 분야: 커뮤니케이션

하 위 분 야: 국내 유선전화 서비스, 국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무선 및 이동전화 서비스

관 련 의 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2000년 커뮤니케이션규정(통신 및 방송)(국내 유선전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면허 취득 절차 및 조건) 제11조

1982년 커뮤니케이션법(통신 및 방송) 제4조-제4H조 및 제6조-제7조

2010년 커뮤니케이션규정(통신 및 방송)(통합 일반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및 조건) 제10조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국내 유선전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가. 외국인 지분은 80퍼센트까지로 제한된다.

나. 이사회 구성원의 75퍼센트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다. 그리고

다. 사장은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다.

2. 국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가. 외국인 지분은 74퍼센트까지로 제한된다.

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다.

다. 사장은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다. 그리고

라. 그 기업은 이스라엘에 설립되고 이스라엘에 주 영업활동 및 사업 중심지를 두고 있다.

3. 무선 및 이동전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가. 외국인 지분은 80퍼센트까지로 제한된다.

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다. 그리고

다. 그 기업은 이스라엘에 설립되고 이스라엘에 주 영업활동 및 사업 중심지를 두고 있다.

14. 분야: 커뮤니케이션

하 위 분 야: 방송

관 련 의 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1965년 방송공사법 (제44C조-제44F조)

1982년 커뮤니케이션법(통신 및 방송)(제4조-제4H조 및 제6조-제7조)

1998년 커뮤니케이션규정(위성방송면허 조건)(제13조, 제20조 및 제21조)

1990년 텔레비전 및 라디오 제2공사법(제41조 및 제59조)

2014년 공영방송법(제64조)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유선방송 면허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기업 지배수단의 최소 26퍼센트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 보유한다. 외국 정부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는 면허가 부여되지 않으나, 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은 그러한 기업이 면허 보유자 지분의 최대 10퍼센트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2. 위성방송 면허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가. 기업 지배수단의 최소 26퍼센트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 보유한다.

나. 그 기업의 주 영업활동 및 사업 중심지는 이스라엘에 소재한다.

다. 이사회 구성원 및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의 과반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다. 그리고

라. 사장 또는 이와 동등한 경영직위에 있는 인은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다.

3. 상업 텔레비전 방송 또는 지역 라디오 방송 운영권 보유자에 대한 지배수단의 최소 51퍼센트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이 보유해야 한다.

4. 위성 및 유선방송을 포함한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각 방송기업은 “조치”요소에 열거된 법령에 정의된 대로, 해당 기업 연간 예산의 일정 금액을 국내 제작에 지출하고 이를 방송하기로 약속한다.

15. 분야: 교육 서비스

하위 분야: 운전강사

산업 분류: CPC 929의 일부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61년 도로운송규정(제213C조, 제247조, 제251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운전 강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된다.

16. 분야: 관광

하위 분야: 여행 알선 및 대행
관광객 안내 서비스

산업 분류: CPC 7471, 7472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67년 관광서비스 규정(관광객 안내)(제2조 및 제9E조)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관광 안내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된다.

2. 면허를 취득한 관광 안내인만 여행 알선 및 대행 업체에 고용되어 이스라엘에서 관광을 안내할 수 있다.

17. 분야: 운송

하 위 분 야: 해상운송

관 련 의 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60년 해운법(선박)

1971년 항만 법령

1982년 항만 규정(항해 안전)

1973년 해운법(선원)

2002년 해상규정(선원)

2016년 해상규정(선원)(선박 및 예인선 내 이스라엘 선원배치)

2004년 해운항만청법

2005년 해운법(이스라엘 관할 하에 있는 외국해양선박)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이스라엘 선박등기부에 선박을 등록하고 선박에 이스라엘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민이나 이스라엘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이스라엘이 해당 선박의 과반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이스라엘 선박”).

2. 이스라엘 국민이나 거주자 또는 이스라엘에 설립된 기업이 지배하는 외국 선박은 2005년 「해운법」(이스라엘 관할 하에 있는 외국해양선박)에 따라 이스라엘에 등록된다(“외국 선박”).

3. 이스라엘 선박 또는 제2항에서 언급된 외국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의 선원이 있어야 한다.

4. 이스라엘 국민만이 선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증명서 제공은 해운항만청장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18. 분야: 운송

하 위 분 야: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정의된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관 련 의 무: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2013년 항공운항규정(승인된 정비기관) 제25조

유 보 내 용: 투자

이용 가능한 공간이 한정됨에 따라, 각 공항의 기본 정비 및 수리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제한될 수 있다.

19. 분야: 운송

하 위 분 야: 자동차

관 련 의 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1978년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감독명령(자동차의 수입 및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 제3조

2016년 자동차 분야 서비스업 및 종사자의 면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68조, 제89조, 제92조, 제97조, 제98조, 제136조, 제143조 및 제149조

1999년 회사법 제1조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자동차를 상업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요구된다. 면허교부를 신청하는 기업의 사장과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최소한 1명의 이해당사자는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다.

2.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 또는 거래를 위해서는 면허가 요구되고 면허 보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로,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어야 한다. 또는

나. 이스라엘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하고, 그 기업의 사장과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최소한 1명의 이해당사자는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다.

3. 자동차 개인 수입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요구되고 면허보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로,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어야 한다. 또는

나. 이스라엘에 등록된 기업의 피고용인이어야 하고, 그 기업의 사장과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최소한 1명의 이해당사자는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다.

4. 2016년 「자동차 분야 서비스업 및 종사자의 면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교통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요구되고 면허 보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또는

나. 이스라엘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하고, 그 기업의 사장과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최소한 1명의 이해당사자는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다.

5. 이스라엘은 2016년 「자동차 분야 서비스업 및 종사자의 면허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정의된 대로, 특정 교통 관련 제품이 이스라엘 시장 단독에서의 마케팅을 위하여 생산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6. 자동차 감정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자가 요구된다.

7. 자동차 서비스센터(정비소)의 전문 관리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자가 요구되고,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기 위

해서는 최소 한 명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 관리인이 사업장 내 상주해야 한다.

주 1: 2016년 「자동차 분야 서비스업 및 종사자의 면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교통 관련 제품”은 자동차의 조립, 유지 또는 적절한 작동을 위하여, 또는 자동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고안된 부속품, 부품, 부품시스템, 정비소 또는 제조업자만 사용하는 작업공구를 제외한 기구, 액체·고체 또는 기체인 장치나 물질이다.

주 2: 이 유보목록의 목적상,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주 3: 이 유보목록의 목적상,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이해 당사자”는 다음을 말한다:

가. 주요 주주

나. 이사회 구성원 1명 이상 또는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 또는

다. 기업에서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으로 재직 중인 인

20. 분야: 운송

하위 분야: 운전면허 및 여객운송 서비스를 포함한 도로운송 서비스, 자동차 정비
안전 책임자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61년 도로운송규정 제175조-제190조, 제213조-제213H조, 제
216조, 제221조, 제221A조, 제247조, 제251조, 제531조, 제567조,
제567B조 및 제582조

도로운송법령 제14조

1984년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감독명령(택시 미터기의 구매, 설치 및
유지)

1999년 회사법 제1조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1961년 「도로운송규정」 제175조-제185조, 제189조 및 제190조
에 따라, 특정 유형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
는 거주가 요구된다.

2. 택시 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가
요구된다.

3. 택시 미터기의 설치 또는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은 이스라엘 거
주 또는 국적이 요구되고, 택시 미터기의 설치 또는 유지 사업을 운영

하는 기업은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인 최소한 1명의 이해당사자를 두어야 한다.

4. 자동차 정비 안전 책임자로 일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가 요구된다.

21. 분야: 도로운송 서비스

하 위 분 야: 화물운송

가구운송

운전자를 포함한 상용차 대여

산 업 분 류: CPC 71233, 71239, 71234, 7124

관 련 의 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61년 도로운송규정 제189조

2001년 화물서비스규정 제2조 및 제24조

1997년 운송서비스법

유 보 내 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10톤을 초과하는 화물 또는 모든 중량의 위험물질을 운송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자가 요구된다.

2. 화물수송 전문 관리자 및 운영자는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이다.

22. 분야: 운송

하위 분야: 관세사

산업 분류: CPC 749**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1964년 관세사법 제4조 및 제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관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거주 또는 국적이 요구된다.

2. 외국 관세법인을 포함한 모든 관세법인은 최소 1인의 면허 있는 이스라엘 관세사를 현역 관리자, 사무원 또는 파트너로 고용해야 한다.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9.12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한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4조(시장접근)

라. 제10.5조(현지주재)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9.12조제3항 및 제10.6조제3항에 따라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

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9.12조제3항 및 제10.6조제3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명시된 분야, 하위 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5. 이 부속서에 포함된 유보목록은 이 협정의 발효 당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서비스의 공급 및 유엔 잠정 중앙품목분류에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분류된 것 외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1조제3항에 따라, 제10.4조(시장접근)에 관한 비합치 조치 유보항목은, 유보내용 요소의 표제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자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2 조(내국민 대우)와 제10.5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10.5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10.2 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이행요건(제9.9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2019) 제4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8)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한국은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20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8)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6479호, 2019. 8.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0170호, 2019. 10. 29.)

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이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16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상 약속을 저해하지 않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6191호, 2018. 12. 31.)

3.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방위산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방위산업체(「방위사업법」 제3조에 규정된 기업)의 신주발행 주식이 아닌
기발행 주식을 인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규정)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법률 제16479호, 2019. 8. 20.)

방위사업법 제35조(법률 제15344호, 2018. 1. 16.)

4. 분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토지 취득이 계속 허용된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나. 다음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3) 관련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법률 제13797호, 2016. 1. 19.)

농지법 제6조(법률 제16073호, 2018. 12. 24.)

5. 분야 총포, 도검, 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및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 분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 분야 국가 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 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법률 제13796호, 2016. 1.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8. 분야 사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 훈련, 공익사업, 대중교통, 공공주택, 보건, 그리고 보육

9.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한국은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 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그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에 관련한 어떠한 제한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 제10.5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0.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라. 통신 서비스, 또는

마. 철도운송

1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오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 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2. 분야 환경 서비스 - 음용수 처리 및 공급 서비스, 생활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상기 서비스의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분야 에너지 - 원자력 에너지, 전기 에너지 및 가스 에너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와 같은 원자력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한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 산업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 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9.9조제1항바호(이행요건 - 자국 영역의 인에 특정 기술, 생산 공정 또는 다른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기 위한 요건)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3. 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산업에서의 외국 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14. 분야 유통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 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농축산물, 식음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나. 곡물, 육류, 가금류, 곡분, 인삼, 홍삼, 및 비료에 대한 도매 서비스,
그리고

다.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소매 서비스

15. 분야 주류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주류 제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6.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내륙 수상운송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현지주재 의무에 대하여,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연안운송은 제외한다)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 한국은 내륙 수상운송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7. 분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농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8.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속하는 차량 총수 결정과 우체국에의 차량 배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우정당국은 국내 및 해외 서신의 수집, 처리 및 배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 및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우편법(법률 제13584호, 2015. 12. 22.)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6479호, 2019. 8. 20.)

19.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방송 서비스에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0.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 및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2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 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 7. 1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8호, 2019. 6. 17.)

22.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11902호, 2013. 7.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9조(대통령령 제24036호, 2012. 8.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8호, 2012. 8. 17.)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8호, 2019. 6. 17.)

23. 분야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 공급, 관리, 판매 및 임대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4. 분야 사업 서비스 –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5.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 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 판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6. 분야 사업 서비스 –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 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7.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8. 분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29. 분야 교육 서비스 - 유아·초등·중등·고등·성인 및 그 밖의 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 및 보건 관련 고등 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대학,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 그리고 그 밖의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0. 분야 사회 서비스 –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1.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및 현지주재 의무에 대하여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한국은 내국민 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현지주재 의무에 대하여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 7.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036호, 2012. 8. 13.)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1228호, 2012. 1. 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62호, 2012. 6. 1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82호, 2011. 7. 2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2011. 2. 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32. 분야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농어촌지역 관광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3. 분야 도박 및 베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은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관광진흥법 제5조, 제21조 및 제28조(법률 제12406호, 2014. 3. 1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법률 제12154호, 2014. 1. 1.)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법률 제12348호, 2014. 1. 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0조(대통령령 제25511호, 2014. 7. 28.)

한국마사회법(법률 제13146호, 2015. 2. 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43호, 2015. 2. 3.)

경륜·경정법 제4조, 제19조 및 제24조(법률 제12688호, 2014. 5.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및 제22조(법률 제11998호,
2013. 8. 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34. 분야 외국전문직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현지주재의무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든 한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요건에 대한 제한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 한국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라. 외국법자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

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다른 쪽 당사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협정의 다른 쪽 당사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 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자국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다른 쪽 당사국 법무회사(로펌)**란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다른 쪽 당사국 내에 있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4. 한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그리고 제공될 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공인회계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내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해야 한다. 그러한 외국공인회계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5. 내국민 대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현지주재, 그리고 최혜국 대우에 대하여 한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그리고 제공될 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세무사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내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해야 한다. 그러한 외국세무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35. 분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이나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36.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제10.1조(적용범위)제6항에 정의된 바에 따라, 예를 들어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와 같이 정부 권한의 행사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7. 분야 운송 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 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국 선박을 위하여 유보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간 해상운송을 포함한다. 한국 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

나.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다.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라.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가 한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과 관련된 조치는 제21.2조(필수적
안보)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38. 분야 민간조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 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은 민간조사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9.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한국은 부속서 11-가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
허표에 포함된 범주의 적용을 받는, 자연인의 일시 입국 및 체류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부록 II-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연구 및 개발 서비스:	
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나.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다. 학제 간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조사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광업 부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포장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컨벤션대행 서비스 외의 컨벤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건물청소 서비스(CPC 874*, 87409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환경 컨설팅 서비스(CPC 9409*)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가.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제공 서비스 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 나. 여행 대행 서비스 다. 관광객 안내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부속서 II
이스라엘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이스라엘의 유보목록은 제9.12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4조(시장접근)

라. 제10.5조(현지주재)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언급된 경우, 유보된 특정 하위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언급된 경우, 그리고 투명성 목적으로만, 국내 또는 국제 산업분류코드에 따른, 비합치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라. **관련의무**는 제9.12조(비합치 조치)제3항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제3항에 따라,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 또는 성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바. **기존의 조치**는, 명시된 경우, 투명성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의 비한정적 목록을 적시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4. 이 부속서의 목적상 “CPC” 라는 용어는 유엔 잠정 중앙품목분류(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 경제사회국, 유엔 통계사무소, 뉴욕, 1991년)를 말한다.

5. 기재된 유보항목 제11번과 그 밖의 모든 기재된 유보항목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소수 민족, 장애인, 퇴역 군인 및 이스라엘 전사 장병들의 직계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 대한 혜택 및 그 주변 지대 개발을 위한 정책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민영화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때, 이스라엘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한다.

가. 투자자 또는 투자에 의한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부과할 권리

나.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자로서 결과적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투자자 또는 투자의 능력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할 권리

다. 결과적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직위보유자 또는 특정 임원의 국적 또는 거주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또는

라. 결과적 기업의 경영, 주 영업활동 및 사업 중심지의 소재지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할 권리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 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2. 지정 기업 또는 정부기관으로 한정된 서비스의 공급이 그 지정 기업 또는 정부기관 외의 것에 자유화되거나, 그러한 지정 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더 이상 비상업적 기초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이스라엘은 그러한 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975년 공기업법(특별 국유주식 포함)

2005년 공기업명령[아쇼트 아슈켈론 인더스트리즈(Ashot Ashkelon Industries Ltd.)에 대한 필수 국유지분에 대한 발표]

2007년 공기업명령[오일 리파이너리즈(Oil Refineries Ltd.)에 대한 필수 국유지분에 대한 발표]

2006년 공기업명령[오일 리파이너리 - 아시도드(Oil Refinery - Ashdod Ltd.)에 대한 필수 국유지분에 대한 발표]

2004년 공기업명령[엘-알 이스라엘 항공(El-Al Israel Airlines Ltd.)에 대한 필수 국유지분에 대한 발표]

2016년 공기업명령[IMI 시스템즈(IMI Systems Ltd.)에 대한 필수 국유지분에 대한 발표]

이스라엘 케미칼(Israel Chemicals Ltd.) 및 그 자회사들에
대한 특별 국유주식

짐 종합해운서비스(Zim Integrated Shipping Services Ltd.)
에 대한 특별 국유주식

엘-알 이스라엘 항공(El-Al Israel Airlines Ltd.)에 대한 특
별 국유주식

3.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양허, 면허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이행요건(제9.9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양허 및 독점적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투자

1. 1998년 「공공기관 보안법」에 정의된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원, 직위보유자 및 특정 임원과, 사이버 보안에 책임이 있
는 특정 직위에 있는 인은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임이 요
구되며 적절한 기밀정보취급허가 보유가 요구된다.

2. 이스라엘은 사이버 보안과 주로 관련이 있고 국가 사이버 보
안 정책과 합치하는 경우, 자국 영역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또
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도
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
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
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
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장은 최
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기존의 조치: 1998년 공공기관 보안법

2015년 정부 결정 2443

2015년 정부 결정 2444

5.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투자

이스라엘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6. 분야: 방위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9.10조)

최혜국대우(제9.4조)

유보내용: 투자

이스라엘은 방위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007년 방위수출통제법

2005년 방위회사법

7.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색 및 구출과 해난 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다. 영화, 비디오 및 텔레비전의 공동제작 및 배급

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인정, 또는

마. 항공 및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기존의 조치:

8.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공공 독점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서비스는 공공 독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익사업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송수, 환경서비스, 임업 및 벌목 부수 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운송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 존재한다.

기존의 조치:

9.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CPC에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분류된 것 외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0.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이 협정의 발효 당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이스라엘은 부속서 11-나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포함된 임원, 관리자, 전문가 및 상용 방문자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2. 분야: 토지 및 부동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유보내용: 투자

외국 국민 또는 외국 국민이 지배하는 회사에 의한 토지 및 부동산 권리의 취득은 이스라엘 국토청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기존의 조치: 1960년 이스라엘의 토지법

13. 분야: 도박 및 베팅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4. 분야: 보건의료,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보건 기관, 장비, 서비스, 데이터 교환 및 제품, 의료 및 치과 서비스와 조산사·간호사·물리치료사·의료보조인력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거나 유지되는 한도에서,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주택 및 보육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15. 분야: 위성방송, 유선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위성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위성방송, 유선방송, 텔레비전 방송 또는 라디오 방송의 면허권자 내 이사회 구성원 및 직위보유자는, 일부의 경우 기밀 정보취급허가를 보유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임이 요구되고, 관련 규제기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2. 이스라엘은 망 종단점 사이의 음성, 데이터, 문자열, 소리 및 풀 모션 픽처 비디오의 전송을 위한 위성통신시설의 면허에 대하여 그리고 위성 시스템을 통하여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서비스의 면허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 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기존의 조치:

16. 분야: 신원관리, 생체인식 기술, 생체인식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투자

1. 이스라엘은 신원관리, 생체인식 기술과 생체인식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하거나 집행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 제한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 그리고

다. 자국 영역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 이전

2. 신원관리 및/또는 생체인식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직위보유자 및 특정 임원은, 일부의 경우 기밀정보취급허가를 보유하는,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임이 요구될 수 있고, 해당 기업은 이스라엘에 설립되어 이스라엘에 주 영업활동 및 사업 중심지를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

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
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장은 최
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기존의 조치:

17. 분야: 농업

하위분야: 소, 염소 및 양의 낙농업을 포함하는 낙농업

가금류 및 계란

양봉을 포함한 꿀

땅콩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이 농업 분야들의 부수 서비스를 포함하여 “하위 분야” 요소에 열거된 농업 분야들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8. 분야: 인산염 채굴을 포함한 광업, 채석업 및 광업과 채석업의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인산염 채굴을 포함한 광업, 채석업 및 광업과 채석업의 부수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광업 부수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 유역의 평가와 관련된 경제적, 과학적 활동
- 광상, 석유 및 가스의 위치와 관련된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지구화학적 활동 및 지구과학적 자료수집
- 유정 시추 및 시험
- 지진 또는 그 밖의 영상기법을 통한 수역, 토지구역 및 전이구역에 대한 지도제작
-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해석
- 저류층 시뮬레이션
- 위험분석
- 매장량 측정
- 컴퓨터 모델링을 포함한 자료 관리 및 분석
- 개념공학
- 자원 및 시설 설명

- 심사
- 부지 조성 및 측량
- 타당성 및 감정

기존의 조치: 광업법령

19. 분야: 에너지, 가스, 석유 및 전기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에너지, 가스, 석유 및 전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0.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천연가스를 포함한 가스

석유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이스라엘은 천연가스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석유 분야의 필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이스라엘은 1952년 「석유법」에 정의된 대로 석유권 보유자에게 국내 소비 및 사용 용도로 특정 양의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이스라엘은 석유 증류 및 정유공장에 대하여, 그리고 원유 또는 정제유 및 석유제품을 포함한 석유 및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운송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 또는 이행요건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4. 이스라엘은 액체 또는 가스의 저장 및 액체(석유 또는 액화가스) 또는 가스의 대용량저장서비스, 그리고 석유와 가스의 탐사 및 생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1.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액화석유가스(LPG)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가스 공급자, 가스 대리점 또는 가스 기술자/엔지니어 면허를 신청하는 자연인의 경우 이스라엘 국적 및 거주가 요구된다.

2. LPG 면허가 있는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직위보유자 및 특정 임원은, 일부의 경우 기밀정보취급허가를 보유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임이 요구된다.

3. LPG 면허가 있는 기업의 외국인 소유는 제한될 수 있다.

4. 외국인 LPG 기술자는 한시적 면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이스라엘은 LPG 마케팅 및 수출에 대하여 이행요건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 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기존의 조치: 1989년 가스법(안전 및 면허)
 2002년 천연가스 분야 법

22.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전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1996년 「전기시장법」에 정의된 대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서비스 공급자로서 면허권자는 다음 조건의 적용 대상이 된다.

가. 면허권자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나. 이스라엘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면허권자에 대한 지배 수단의 최대 비율은 국가기반시설부장관의 결정 대상이다. 그리고

다. 면허권자의 이사회 구성원, 직위보유자 및 특정 임원은, 일부의 경우 기밀정보취급허가를 보유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임이 요구된다.

2. 전기 송전, 배전, 공급 또는 생산 면허가 있는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직위보유자 및 특정 임원은, 일부의 경우 기밀정보취급허가를 보유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임이 요구된다.

3. 전기 송전, 배전, 공급 또는 생산 면허가 있는 기업의 외국인 소유는 제한될 수 있다.

4. 자연인의 전기 송전, 배전, 공급 또는 생산을 위한 면허교부에 대하여 이스라엘 국적이 요구된다.

5. 전기 판매를 위한 면허권자에 대한 외국 은행의 보증 승인은 이스라엘 전력청의 검토대상이다.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 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기존의 조치: 1996년 전기시장법
이스라엘 전력청 표준서

23.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산업분류: CPC 881의 일부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4.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인력 소개 및 공급

산업분류: CPC 872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조)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이스라엘은 인력 소개 및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5.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조사 서비스

산업분류: CPC 87301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조사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의 이스라엘
유보목록 유보항목 10번의 약속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기존의 조치:

26.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산업분류: CPC 831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사무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임대/리스를 제외하고,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7.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산업분류: CPC 8676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규제 인식 목적의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가 이스라엘에 설립된 승인된 실험실에 의하여 공급된다는 요건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953년 표준법(제12조)

28.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자동차에 대한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하고, 감정평가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9.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운전면허시험 감독관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운전면허시험 감독관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0.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신용보고 서비스

추심대행 서비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사업 서비스

산업분류: CPC 87901, 87902 및 87909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신용보고 서비스, 추심대행 서비스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사업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

산업분류: CPC 7511 및 7512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주소지가 적힌 물품당 500그램 미만의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2.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1982년 「커뮤니케이션법」(통신 및 방송)에 정의된 대로 필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하여 특정 보호장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보호장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가. 면허권자에 대한 지배, 지배 수단 또는 면허권자 내 직위보유자 선임 능력

나. 경영, 주 영업활동 및 사업 중심지의 소재지, 그리고

다. 이사회 구성원, 직위보유자 및 특정 임원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 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기존의 조치: 1975년 공기업법

1982년 커뮤니케이션법(통신 및 방송)

1997년 전기통신 명령[이스라엘 통신회사 “베제크(Bezeq)”
가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의 결정]

33.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홍보 및 광고 서비스

산업분류: CPC 96111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 공급되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경우, 이스라엘은 홍보 및 광고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4.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 서비스

산업분류: CPC 9613 및 7524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5. 분야: 건설 및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최혜국 대우(제 9.4조 및 제10.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건설 및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6. 분야: 유통 서비스

산업분류: CPC 62112, 62113, 62117, 62226, 62228, 6225, 6227, 63107, 63108, 6321 및 63299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다음의 유통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주류, 담배 제품, 연료, 의약품 및 의료용품과 화장품에 대한 위탁 중개인 서비스
-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대한 도매업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용품과 화장품에 대한 도매업 서비스, 농산물을 제외한 중간재에 대한 도매업 서비스, 재활용용 웨이스트(waste) 및 스크랩(scrap)과 재료에 대한 도매업 서비스
-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식품 소매 서비스
- 의약품 및 의료용품과 화장품에 대한 비식품 소매 서비스
- 비식품 전문 소매 판매의 소매 판매

기존의 조치:

37. 분야: 교육 서비스

산업분류: CPC 921, 922, 924, 그리고 923의 일부와 929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다음을 제외하고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자동차, 버스, 트럭 및 오토바이 운전 지도
-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 입학시험 준비 과정 및 어학 교습,
그리고
- 고등교육 서비스의 국경간 무역

기존의 조치:

38. 분야: 폐기물 처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유해 폐기물의 처리 및 국내처리용량의 개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9. 분야: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여행 알선 및 대행

산업분류: CPC 7471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공급되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경우, 이스라엘은 여행 알선 및 대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0. 분야: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관광객 안내 서비스

산업분류: CPC 7472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공급되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경우, 이스라엘은 관광객 안내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1.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해상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이스라엘은 연안운송 및 근해 해상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연안운송이란 선박이 수행하는 상업적 활동으로서 다음 중 하나를 말한다.

2005년 「연안해상운송법」(외국 선박에 대한 허가)에 정의된 대로,

가. 선박 소유자들이 화물 운송을 위하여 소유/임차한 빈 컨테이너를 재배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국제항을 방문하지 않고 그 출발점과 도착점이 연안, 내수 또는 해상지역에 위치한 항구, 선박, 설비 또는 시설인 화물과 여객의 운송, 또는

나. 연안이나 내수 또는 해상지역에서 수행되는 그 밖의 활동

기존의 조치:

2005년 연안운송법(외국 해양선박에 대한 허가)

2012년 연안운송법령(외국 해양선박에 대한 허가)(허가요청)

42.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정의된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와 컴퓨터 예약 시스템을 제외하고, 항공운송 서비스 및 공항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3. 분야: 운송

하위분야: 공항 및 항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항만에서 공급되거나 운영되는 건설 및 서비스, 그리고 2004년 「해운항만청법」에 정의된 대로 항만 개발 및 자산회사, 항만회사 및 승인된 회사를 필수 국유지분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의 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항 및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004년 해운항만청법

1971년 항만법령

2012년 해운 및 항만에 관한 명령 [에일랏(Eilat) 항만회사에 대한 필수 국유지분에 대한 발표]

1977년 공항청법

44. 분야: 우주운송 서비스, 우주선의 임대 및 우주운송 보조 서비스

산업분류: CPC 734의 일부 및 CPC 733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우주운송 서비스, 우주선의 임대 및 우주운송 보조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5. 분야: 운송

하위분야: 철도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CPC 711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철도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6. 분야: 운송

하위분야: 도로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CPC 7121, 7122, 7123, 7124, 6112, 8867 및 744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1. 시장접근의 경우, 이스라엘은 도로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현지주재의 경우, 이스라엘은 도로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대표사무소 또는 모든 형태의 기업의 설립 또는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투자

이스라엘은 도로운송 서비스에 대한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7. 분야: 운송

하위분야: 도로운송 및 그 밖의 정기여객운송 지원 서비스

산업분류: CPC 744 및 7121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주차 서비스와 상업용 도로 차량의 정비 및 소규모 수리 서비스를 제외하고, 도로운송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8. 분야: 원유 및 정제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석유와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운송

산업분류: CPC 7131 및 7139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원유 및 정제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석유 증류와 정유공장 및 석유와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운송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9. 분야: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하위분야: 저장 및 창고 서비스

화물운송대리업 서비스

그 밖의 지원 및 부수 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CPC 742, 748, 749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이스라엘은 저장 및 창고 서비스, 화물운송대리업 서비스, 그리고 그 밖의 지원 및 부수 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투자

이스라엘은 관세사를 제외하고, 저장 및 창고 서비스, 화물운송 대행서비스 및 그 밖의 지원 및 부수 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50. 분야: 공동체, 사회 및 개인 서비스

하위분야: 회원제 조직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피고용인을 둔 개인 가구

역외 조직 및 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분류: CPC 95, 97, 98, 99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이스라엘은 공동체, 사회 및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의 회원제 조직 서비스, 피고용인을 둔 개인 가구, 역외 조직 및 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